

201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201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201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TEL 044-550-4114 | FAX 044-550-4310  
www.kdi.re.kr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 FAX 044-414-2179  
www.kipf.re.kr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2019. 8.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기획재정부에서 의뢰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8.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 정 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      연 구 진      >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 박노옥 선임연구위원(연구총괄)  
김우현 부연구위원  
봉재연 선임연구위원  
박유미 연구원  
전예원 연구원  
박은정 연구원

외부 연구진 : 오영민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검토위원: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목 차

|                                        |     |
|----------------------------------------|-----|
| 요 약 .....                              | 1   |
| <br>                                   |     |
| 제 I 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              | 83  |
| 제1절 사업의 목적과 추진 경과 .....                | 83  |
| 1.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배경 .....                 | 83  |
| 2. 사업 개요 .....                         | 84  |
| 3. 사업의 추진 경과 .....                     | 88  |
| 제2절 사업계획 .....                         | 92  |
|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계획 .....     | 92  |
| 2.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시범사업 계획 .....    | 96  |
|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               | 113 |
|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                   | 113 |
|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                | 114 |
| <br>                                   |     |
|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                   | 116 |
|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 116 |
| 1. 사회서비스 정의 및 현황 .....                 | 116 |
| 2.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 128 |
|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 .....                 | 220 |
| 1.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관련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 | 221 |
| 2.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 법률 .....             | 225 |
| 제3절 해외 사회서비스 사례 조사 .....               | 236 |
| 1. 스웨덴 .....                           | 236 |
| 2. 영국 .....                            | 247 |



|                                            |            |
|--------------------------------------------|------------|
| 3. 네덜란드 .....                              | 259        |
| 4. 국가별 비교 .....                            | 266        |
| <b>제Ⅲ장 경제사회 환경분석 .....</b>                 | <b>284</b> |
| 제1절 경제사회 여건분석 .....                        | 284        |
| 1. 사업추진의 경제사회적 여건 .....                    | 284        |
| 2. 사업의 유사성 .....                           | 288        |
| 3. 정부개입의 적절성 .....                         | 290        |
| 4. 해외비교를 통한 사업추진의 적절성 .....                | 294        |
| 제2절 경제사회 영향분석 .....                        | 300        |
| 1. 사업효과의 경제사회 문제 해결 여부 .....               | 300        |
| 2. 사회적 의견수렴 여부 .....                       | 302        |
| 제3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                        | 305        |
| 1. 재정추계의 적정성 .....                         | 305        |
| 2. 안정적인 자원 조달 가능성 .....                    | 311        |
| 3.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위험성 .....                   | 313        |
| <b>제Ⅳ장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b>              | <b>316</b> |
| 제1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 .....                  | 316        |
| 1. 사업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                    | 316        |
| 2. 사업 목표의 달성 가능성 .....                     | 320        |
| 3. 정부 정책 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 ..... | 323        |
| 제2절 수혜대상의 적절성 .....                        | 324        |
| 제3절 추진방법의 적절성 .....                        | 326        |
| 제4절 전달체계의 적절성 .....                        | 329        |
| <b>제Ⅴ장 비용 효과성 분석 .....</b>                 | <b>332</b> |
| 제1절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                    | 333        |
| 제2절 비용 추정의 적정성 .....                       | 334        |

|                               |            |
|-------------------------------|------------|
| 1.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비용 .....      | 334        |
| 2. 비용 추정 .....                | 337        |
| 3. 비용검토 종합 .....              | 369        |
| 제3절 비용 대비 효과성 .....           | 374        |
| 1. 사업의 효과성 .....              | 374        |
| 2. 성과 대비 비용 .....             | 404        |
| 3. 비용 효과적인 대안 검토 .....        | 417        |
| <b>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b>  | <b>419</b> |
| 제1절 종합평가표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 | 419        |
| 1. 종합평가의 개요 .....             | 419        |
| 2. 평가 대상(주무부처 사업계획) .....     | 420        |
| 3. 조사 대상 집단 .....             | 422        |
| 4. 종합평가 구조 및 평가항목 .....       | 422        |
| 5. 종합평가 방법 .....              | 425        |
| 6. 종합평가 결과 .....              | 426        |
|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 428        |
| 1. 사업개요 및 조사내용 .....          | 428        |
| 2. 종합평가 결과 .....              | 431        |
| 3. 정책 제언 .....                | 433        |
| <b>참고문헌 .....</b>             | <b>435</b> |
| <b>부록 .....</b>               | <b>443</b> |

## 표 목차

|                                                           |     |
|-----------------------------------------------------------|-----|
| <표 I -1> 사업의 추진 경위 .....                                  | 91  |
| <표 I -2> 사회서비스원 소요 예산 변경 내역 .....                         | 93  |
| <표 I -3> 사회서비스원 2019년 소요 예산 변경 세부 내역 .....                | 93  |
| <표 I -4>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 제출안) .....          | 94  |
| <표 I -5>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개요 .....                            | 97  |
| <표 I -6>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개요 .....                              | 99  |
| <표 I -7>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개요 .....                              | 102 |
| <표 I -8>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요 .....                             | 104 |
| <표 I -9>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비교 .....                             | 108 |
| <표 II -1>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정의 .....                             | 120 |
| <표 II -2> 사회서비스의 범위 .....                                 | 121 |
| <표 II -3> 2017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 영역별 주요 사회서비스 유형 .....   | 123 |
| <표 II -4>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제공기관 및 인력현황 .....           | 124 |
| <표 II -5> 사회서비스 영역별 현재 필요도와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생애주기별 비교 ..... | 125 |
| <표 II -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현재 이용률과 2~3년 내 이용 의향 비율 .....       | 126 |
| <표 II -7> 영역별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품질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 .....        | 127 |
| <표 II -8> OECD 주요 국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                  | 131 |
| <표 II -9>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                          | 133 |
| <표 II -10> 2017년 어린이집 일반 현황 .....                         | 135 |
| <표 II -1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2009~2017년) .....              | 136 |
| <표 II -1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                            | 137 |
| <표 II -1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                            | 138 |
| <표 II -14> 보육교사 자격 기준 .....                               | 139 |
| <표 II -15>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현황 .....                        | 141 |

|                                              |     |
|----------------------------------------------|-----|
| <표 II -16> 어린이집 유형별 정부보조지원 .....             | 141 |
| <표 II -17> 한국보육진흥원 주요업무 내용 .....             | 143 |
| <표 II -18>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                | 146 |
| <표 II -19>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예시) ..... | 146 |
| <표 II -20>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내용 .....               | 147 |
| <표 II -21>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 .....       | 148 |
| <표 II -22> 노인 돌봄 정책별 서비스 종류 .....            | 152 |
| <표 II -23>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                  | 155 |
| <표 II -24> 재가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157 |
| <표 II -25> 입소시설 기준 .....                     | 159 |
| <표 II -26> 재가시설 주요 기준 .....                  | 160 |
| <표 II -27>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         | 162 |
| <표 II -28>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현황 .....               | 164 |
| <표 II -29> 노인장기요양 급여 실적 .....                | 164 |
| <표 II -30> 급여유형별 실적 .....                    | 165 |
| <표 II -31>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                 | 166 |
| <표 II -32> 설립구분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유형 .....           | 167 |
| <표 II -33>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 .....                | 168 |
| <표 II -34> 재가기관 근로자 근로계약 형태 .....            | 169 |
| <표 II -35> 입소시설 근로자 고용형태 비율 .....            | 169 |
| <표 II -36> 입소시설부문 요양보호사 평균임금 .....           | 171 |
| <표 II -37> 재가기관부문 근무 요양보호사 평균임금 .....        | 171 |
| <표 II -38> 지역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의 차이 .....          | 172 |
| <표 II -39> 기타 재가서비스 현황 .....                 | 174 |
| <표 II -4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 176 |
| <표 II -4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별 단가 .....           | 177 |
| <표 II -4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현황 .....     | 179 |
| <표 II -4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행기관 수 및 제공인력 .....     | 179 |
| <표 II -44>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별 기본급여 .....            | 180 |

|                                                           |     |
|-----------------------------------------------------------|-----|
| <표 II -45>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                             | 180 |
| <표 II -46> 활동지원급여 내용 및 수가 .....                           | 181 |
| <표 II -47>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 182 |
| <표 II -48>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 182 |
| <표 II -4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체계 및 기능 .....                   | 186 |
| <표 II -50>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표준 .....                        | 188 |
| <표 II -51>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서비스 비용 .....                     | 189 |
| <표 II -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표준 .....                    | 191 |
| <표 II -53>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 193 |
| <표 II -54>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 제공 범위 .....                  | 196 |
| <표 II -55>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198 |
| <표 II -56> 2019년 아이돌보미시간당 활동수당(1인 돌봄시 기준) .....           | 199 |
| <표 II -57> 2014~18년 아이돌보미 현황 .....                        | 200 |
| <표 II -58> 보호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종류와 역할 .....                   | 201 |
| <표 II -59> 보호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실적 .....                           | 202 |
| <표 II -60>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현황 .....                     | 203 |
| <표 II -6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                             | 206 |
| <표 II -62> 경기복지재단 주요업무 .....                              | 209 |
| <표 II -63> 전남복지재단 주요업무 .....                              | 213 |
| <표 II -64> 광주복지재단 주요업무 .....                              | 215 |
| <표 II -65> 기초자치단체별 복지재단 설립현황 .....                        | 217 |
| <표 II -66>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일반 현황 .....                  | 218 |
| <표 II -67>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상위계획 및 관련법 .....                  | 220 |
| <표 II -68>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 간 비교 .....                  | 222 |
| <표 II -6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과제명 ..... | 223 |
| <표 II -70> 스웨덴 보육시설 유형과 특징 .....                          | 241 |
| <표 II -71> 스웨덴의 보육유형별 보육서비스 공급주체(2005년 기준) .....          | 243 |
| <표 II -72> 스웨덴 보육교사 자격기준, 양성과정 및 근무지 .....                | 245 |
| <표 II -73> 영국의 보육유형별 보육서비스 공급주체 .....                     | 253 |

|                                                    |     |
|----------------------------------------------------|-----|
| <표 II -74> 영국 장기요양 제도의 주요 특징 .....                 | 255 |
| <표 II -75> 성인 사회적돌봄 분야 종사자의 부문별 추정인력 .....         | 259 |
| <표 II -76> 네덜란드 보육서비스 유형 .....                     | 261 |
| <표 II -77> 네덜란드 보육교사 최소자격 및 양성과정 .....             | 263 |
| <표 II -78> 네덜란드 유형 및 부담자별 건강비용지출(2014년 기준) .....   | 264 |
| <표 II -79>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3세 미만 아동의 비중 .....         | 273 |
| <표 II -80> 정규보육시설이용 아동조사(2017년) .....              | 274 |
| <표 II -81> 정규시설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육아동조사(2017년) .....     | 275 |
| <표 II -82> 조사대상국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비공식/공식) 제공 혜택 .....   | 278 |
| <표 II -83> ILO 보고기준 국가별 시간당 임금 .....               | 279 |
| <표 II -84> OECD 보고기준 국가별 평균연봉수준 .....              | 280 |
| <표 II -85> 주요국가 복지서비스 특징 비교 .....                  | 281 |
|                                                    |     |
| <표 III -1> 사회서비스 품질 결정요인 .....                     | 287 |
| <표 III -2> 사회서비스원 유사기관 업무내용 비교 .....               | 290 |
| <표 III -3> 민간위탁방식과 공공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 .....            | 291 |
| <표 III -4> 해외국가의 사회서비스 국제비교 .....                  | 299 |
| <표 III -5> 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의 영향 여부 .....              | 302 |
| <표 III -6> 사회서비스원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활동 요약 .....          | 303 |
| <표 III -7> 유사사업 예산변화 추이 .....                      | 306 |
| <표 III -8> 사회서비스원 5년간 재정추계액 .....                  | 306 |
| <표 III -9> 중앙과 지방사회서비스원 5년간 재정추계액 .....            | 307 |
| <표 III -10> 사회서비스원 5년간 인력추계 .....                  | 308 |
| <표 III -11> 사회서비스원 재정추계와 쟁점 .....                  | 309 |
|                                                    |     |
| <표 V -1> 사회서비스원 개소수 현황 및 소요예산 .....                | 335 |
| <표 V -2> '19년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1개소) 비용 산정 항목 및 근거 ..... | 336 |
| <표 V -3> '19년 지방사회서비스원(4개) 비용 산정 항목 및 근거 .....     | 336 |
| <표 V -4> 2019~2023년 지방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종사자 수 추정 .....   | 344 |

|                                                              |     |
|--------------------------------------------------------------|-----|
| <표 V -5> 2019~2023년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복지부 계획안) .....             | 344 |
| <표 V -6> 사회서비스원 인력 규모(2022년 기준 추정) .....                     | 345 |
| <표 V -7> 2019~2023년 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복지부 계획안) .....               | 346 |
| <표 V -8> 유사기관의 직원 평균보수 1인당 연간 인건비 추정(검토안) .....              | 348 |
| <표 V -9> 1인당 인건비 단가(계획안 및 검토안) .....                         | 349 |
| <표 V -10>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1개소 인건비 비교 .....                       | 350 |
| <표 V -11> 지방사회서비스원 1개소당 인건비 비교 .....                         | 350 |
| <표 V -12> 복지부 계획안 인건비 .....                                  | 351 |
| <표 V -13> 복지부 검토안 인건비 추정 .....                               | 352 |
| <표 V -14> 2019~2023년 인건비 추정안 비교(계획안 및 검토안) .....             | 353 |
| <표 V -15>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19년 시설비 및 운영비 산정 항목 및 근거 .....        | 354 |
| <표 V -16>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시설비 및 운영비 예산규모 .....                   | 354 |
| <표 V -17> 2015~17년 충청북도 및 전국 평균 오피스 임대료, 전환률, 전용률 .....      | 355 |
| <표 V -18>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사무실 면적) .....   | 356 |
| <표 V -19> 청사시설 기준표 .....                                     | 357 |
| <표 V -20> 중앙공무원 계급과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직급 비교 .....                  | 358 |
| <표 V -21> 청사시설 기준표 중 기타필요시설 필요면적 .....                       | 358 |
| <표 V -22>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임차료 검토안 .....                          | 358 |
| <표 V -23> 보건복지부 계획안 및 검토안 비교 .....                           | 359 |
| <표 V -24> 유사 공공기관 2015~17년 경상운영비 현황 .....                    | 361 |
| <표 V -25> 광역복지재단 2015~17년 경상경비 현황 .....                      | 362 |
| <표 V -26> '19년 지방사회서비스원(4개) 비용 산정 항목 및 근거 .....              | 363 |
| <표 V -27> 2019년 설립 지방사회서비스원 1개소 예산(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        | 364 |
| <표 V -28> 2015~17년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공공조달 현황 ..... | 366 |
| <표 V -29> 사회서비스원 교육 내용(안) .....                              | 367 |
| <표 V -30>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계획안 및 검토안 주요 내용 비교 .....         | 370 |
| <표 V -31> 보건복지부 계획안 .....                                    | 371 |
| <표 V -32> 검토안 .....                                          | 372 |
| <표 V -33> 총사업비 비교 .....                                      | 373 |

|                                                              |     |
|--------------------------------------------------------------|-----|
| <표 V -34>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교 .....                               | 373 |
| <표 V -35>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대효과 분류 .....                            | 374 |
| <표 V -36>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17년말 시설 개소 기준) .....             | 376 |
| <표 V -37> 설립구분별 어린이집 현황(2018년말 기준) .....                     | 377 |
| <표 V -38>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17년말 시설 정원 기준) .....             | 377 |
| <표 V -39> 사회서비스원 신규 인프라 설치계획(2019~2022년) .....               | 377 |
| <표 V -40>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계획(2018~2022년) .....                   | 378 |
| <표 V -41>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유형별 개소수 .....                       | 379 |
| <표 V -42>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 현황(2017년 기준) .....                     | 379 |
| <표 V -43> 국공립시설의 경영 방식 비교(민간 위탁 vs. 공공 직영) .....             | 380 |
| <표 V -44> 사회서비스원 인력 규모(2022년 기준 추정) .....                    | 382 |
| <표 V -45> 직무별 1인당 인건비 비교(표준모형 vs. 장기요양시설 경영실태조사, 2016) ..... | 384 |
| <표 V -46>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규모 비교 .....                             | 385 |
| <표 V -47> 설립유형별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규모 비교 .....             | 386 |
| <표 V -48> 장기요양시설(시설급여) 규모별 평가 점수 현황 .....                    | 387 |
| <표 V -49>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점수 회귀 분석 .....                          | 388 |
| <표 V -50> 어린이집 품질 대리 변수 선정 내역 .....                          | 390 |
| <표 V -51> 시설 설립유형별 군집 분석 결과 비교 .....                         | 391 |
| <표 V -52>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황 .....                                 | 393 |
| <표 V -53> 3년간 경영패널조사 참여 기관 수 .....                           | 393 |
| <표 V -54>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항목 선별 .....                         | 394 |
| <표 V -55>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 항목 선별 .....                         | 396 |
| <표 V -56> 종합등급 회귀분석 결과 .....                                 | 401 |
| <표 V -57> 품질관련 문항 집계 후 회귀분석 결과(시설급여) .....                   | 402 |
| <표 V -58> 품질관련 문항 집계 후 회귀분석 결과(재가급여) .....                   | 403 |
| <표 V -59> 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 .....                                | 405 |
| <표 V -60> 요양시설 표준모델 인력배치안 .....                              | 405 |
| <표 V -61> 등급별 요양시설 점유율 .....                                 | 406 |
| <표 V -62> 장기요양시설 재산조성비 세부 내역 .....                           | 407 |



|                                                         |     |
|---------------------------------------------------------|-----|
| <표 V -63> 사회서비스원 요양시설 표준모델(안) 경영수지 분석 결과 .....          | 408 |
| <표 V -64> 장기요양시설 표준모형 경영수지 민감도 분석 .....                 | 409 |
| <표 V -65> 종합재가센터 기본형 경영수지 .....                         | 411 |
| <표 V -66> 종합재가센터 확대형 경영수지 .....                         | 412 |
| <표 V -67> 종합재가센터 대상사업별 수요 추정 .....                      | 413 |
| <표 V -68> 종합재가센터 표준모형 경영수지 민감도 분석 .....                 | 414 |
| <표 V -69> 장기요양 등급별 수급자 현황(70인 시설 기준) .....              | 415 |
| <표 V -70> 어린이집 표준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정원 규모 .....                | 415 |
| <표 V -71> 지방재정(전체 및 사회복지분야) 현황 .....                    | 416 |
| <표 VI-1> 종합평가 기본(안) .....                               | 420 |
| <표 VI-2>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 | 424 |
| <표 VI-3> 평가 점수별 평가 등급 .....                             | 425 |
| <표 VI-4>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성과 결과 산정 방식 .....                  | 426 |
| <표 VI-5> 사회서비스원 예비타당성조사 분과위 의견 종합 .....                 | 427 |
| <표 VI-6> 평가자별 종합평가점수 .....                              | 427 |
| <표 VI-7> 평가자별 종합의견 .....                                | 42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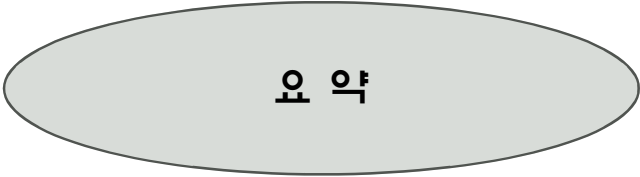
## 그림 목차

|                                                     |     |
|-----------------------------------------------------|-----|
| [그림 I -1] 사회서비스원 개요 .....                           | 85  |
| [그림 I -2]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업무 .....                     | 86  |
| [그림 I -3]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    | 113 |
|                                                     |     |
| [그림 II -1] 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                   | 129 |
| [그림 II -2] 2000~2017년 어린이집 수와 이용아동 수 현황 .....       | 132 |
| [그림 II -3] 2000~2017년 어린이집 설립주체별 비율 .....           | 134 |
| [그림 II -4] 주요국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비율 .....                  | 136 |
| [그림 II -5] 보육교사 자격현황 .....                          | 139 |
| [그림 II -6] 한국보육진흥원 조직도 .....                        | 143 |
| [그림 II -7] 노인복지정책 서비스 제공 체계 .....                   | 150 |
| [그림 II -8] 노후 소득보장 체계도 .....                        | 151 |
| [그림 II -9] 노인경제활동 지원 정책 .....                       | 153 |
| [그림 II -10] 장기요양 이용 체계 .....                        | 155 |
| [그림 II -11] 장기요양보험 관리 및 운영 체계 .....                 | 156 |
| [그림 II -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자 증가율 .....             | 162 |
| [그림 II -1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자 수 변화 .....            | 163 |
| [그림 II -14] 임금 수준별 요양보호사 분포 - 시간당 임금 기준 .....       | 170 |
| [그림 II -15] 임금 수준별 요양보호사 분포 - 월 임금 기준 .....         | 170 |
| [그림 II -16] 지역별 평균시급 분포 - 입소시설, 재가기관 시설 .....       | 173 |
| [그림 II -17]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추진체계 .....                    | 175 |
| [그림 II -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추진체계 .....                    | 177 |
| [그림 II -19]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 | 178 |
| [그림 II -2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                 | 184 |
| [그림 II -2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배경 .....            | 185 |

|                                                                                                    |         |
|----------------------------------------------------------------------------------------------------|---------|
| [그림 II -2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                                                                 | 185     |
| [그림 II -23]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체계 .....                                                                   | 197     |
| [그림 II -24] 2014~18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                                                        | 200     |
| [그림 II -25] 서울시복지재단 조직 .....                                                                       | 206     |
| [그림 II -26] 경기복지재단 조직 .....                                                                        | 208     |
| [그림 II -27] 전남복지재단 조직도 .....                                                                       | 213     |
| [그림 II -28] 광주복지재단 조직도 .....                                                                       | 215     |
| [그림 II -29] 스웨덴의 사회복지행정체계도 .....                                                                   | 239     |
| [그림 II -30] 영국의 사회적 위험별 사회보장급여와 전달체계 .....                                                         | 251     |
| [그림 II -31] 영국 0세~14세 아동의 학기 중 보육형태 .....                                                          | 253     |
| [그림 II -32] 영국 0세~14세 아동의 학기 중 보육형태(2017~18년도) .....                                               | 254     |
| [그림 II -33] 지불방식과 1차적 서비스제공 이유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비율(2016~17년도) .....                                    | 257     |
| [그림 II -34] 영국의 비공식 보호간호자들에 대한 보호간호급여 및 지방정부지원 .....                                               | 258     |
| [그림 II -35] 네덜란드 교육체계 .....                                                                        | 263     |
| [그림 II -36] 네덜란드 장기요양서비스 운영방식 .....                                                                | 265     |
| [그림 II -37] 정부지출(total government expenditure) 대비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금액의<br>비중(국가별 비교) ..... | 268     |
| [그림 II -38] 각국별 GDP 대비 사회적 지출액의 비중 .....                                                           | 269     |
| [그림 II -39] 1인당 GNI 대비 사회적 지출 국가별 비교 .....                                                         | 270     |
| [그림 II -40] GNI 대비 사회적지출 비중 .....                                                                  | 271     |
| [그림 II -41] 국가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의 부문별 분포 .....                                                          | 272     |
| [그림 II -42] 국가별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1000명당 취업자 수 .....                                                     | 272     |
| [그림 II -43]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3세 미만 아동의 비중 .....                                                        | 273     |
| [그림 II -44] OECD 국가 취학 전 아동 보육교사 연령 및 성별 분포(2014년) .....                                           | 275     |
| [그림 II -45] OECD 국가 취학 전 아동 보육교사 연봉(2014년) .....                                                   | 276     |
| [그림 II -46] 취학 전 아동 1년간 교육일 및 교육시간 .....                                                           | 277     |
| [그림 II -47] 보육/유치원교사 및 보조교사 대비 아동 수(2014년) .....                                                   | 278     |
| [그림 II -48] OECD 국가 평균연봉 비교 .....                                                                  | 280     |
| <br>[그림 III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규모 .....                                                                | <br>284 |

|                                                      |     |
|------------------------------------------------------|-----|
| [그림 Ⅲ-2]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 현황 .....                  | 285 |
| [그림 Ⅲ-3] 사회복지사업 근무환경 .....                           | 286 |
| [그림 Ⅲ-4]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서비스원 거버넌스 구조와 업무영역 .....        | 292 |
| [그림 Ⅲ-5] 미래 인구구조 변화 추계 .....                         | 314 |
| [그림 Ⅴ-1] 사회복지서비스 중앙지원단 조직 및 인력(예시) .....             | 338 |
| [그림 Ⅴ-2] 지방사회복지서비스원 조직 및 인력(예시) .....                | 339 |
| [그림 Ⅴ-3] 시범사업 참여지역 사회복지서비스원 조직도 .....                | 340 |
| [그림 Ⅴ-4] 근로자 처우 관련 변수 분포 및 이분화 .....                 | 398 |
| [그림 Ⅵ-1]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계층 구조 ..... | 423 |







## 요 약

---

###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 1. 사업의 목적과 추진 경과

##### 가.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배경

- 보건복지부는 서비스의 공공성 향상 및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동 사업의 추진 배경<sup>1)</sup>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첫째, 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률 증가 등의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간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 증가, 제공기관 및 종사자 확대 등 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를 달성하며 수요를 충족해왔으나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미흡한 상태
  - 둘째, 사회서비스분야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민간 중심으로 제공되어 양적인 확대는 달성하였으나 공공부문의 서비스 직접 제공의 역할은 현저하게 미흡
  - 셋째, 서비스 수요자들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제고하는 데 있음

---

1) 보건복지부 5차 제출자료 (19.7.12)인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이해』 및 『2019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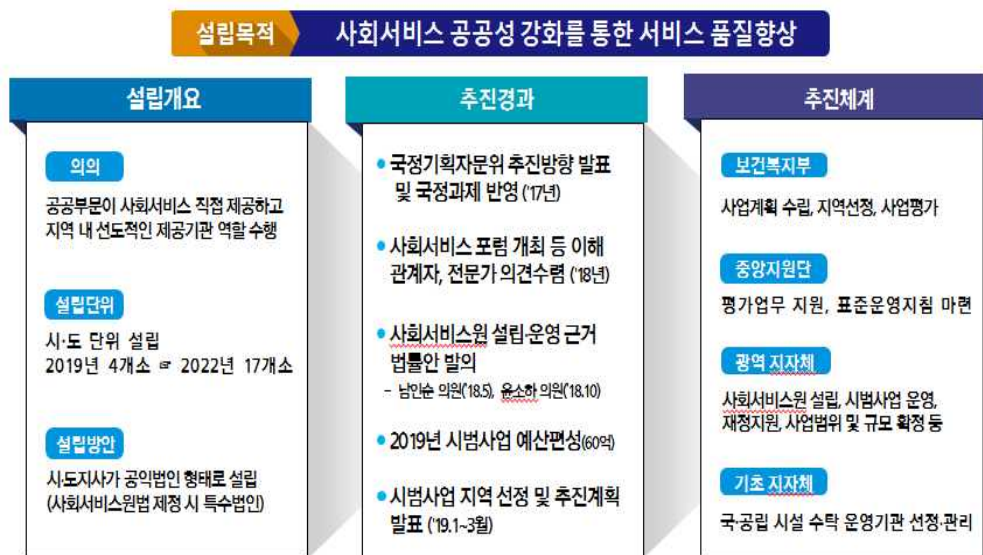
## 2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예비타당성조사

-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급격한 확대 과정에서 공공 인프라의 구축 없이 민간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의존해 온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을 통한 직영 서비스 제공 비중을 일정 정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을 광역지자체에 설립하고, 신규 국·공립시설을 우선적으로 직영함으로써, 서비스 종사자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설립하여, 광역지자체에 설립될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직영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임
  - 광역지자체에 설립될 사회서비스원은, 우선적으로 신설되는 국공립시설과 문제가 발생한 기존의 국공립시설을 직영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에게는 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표준모형(장기요양, 보육, 종합재가)을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기존 제도에서 제공하는 수가와 보조금만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갖출 예정임

### 나. 사업의 개요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제공기관) 시설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성 향상, 체계적인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이용자)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향상,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로 서비스 선택권 확대, 지역 시설 간 격차 해소 등에 따른 서비스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그림 1] 사회서비스원 개요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이해 PPT자료)

#### □ 사회서비스원의 기본 방향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 목적으로 운영
  - 지역 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로 사회서비스 이용 형평성 제고
  - 사업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신뢰도 확보
  -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 및 근무환경 개선
  -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
  - 사회서비스원은 정부정책에 우선 협력하며, 지역사회 내 선도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 □ 사회서비스원 주요 사업내용

- 국공립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 종합재가센터 설립 통해 재가서비스 직접 운영 및 표준운영모델 개발

#### 4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재무·회계·노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안전점검 등 실무지원
-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수급계획 등에 관한 연구 수행과 지원
- 기타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림 2]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업무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추진체계 및 역할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운영 계획 수립,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 설립 및 운영
- 관련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재정지원 등 추진
-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등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범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완요청, 시범사업 관리 및 평가 등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원, 업무지원 및 조정, 표준운영지침 마련
- 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업무 위탁받아 수행
- 기타 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 광역 지방자치단체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시범사업 운영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 지역 상황·여건 등 반영하여 사업범위 및 규모를 확정하고 사업 추진
- 복지부 시범사업 협의체 참여,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설 품질 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 시·도 사회서비스원 홍보 및 안내,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 수렴

○ 기초 지방자치단체

-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등 정책 참여

○ 사회서비스원

-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및 종사자 직접 고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운영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장 및 종사자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
- 민간 제공기관 품질 향상 지원,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등 수행
- 지자체 모니터링, 사업관리, 평가, 지도·점검 등에 협조

#### 다. 사업의 추진경과

- 국정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기본방향이 2017년 7월 발표되고 이후 보건복지부가 설립을 추진함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하였고, 최종적으로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
  - (’17.7 ~ ’18.2)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자, 노동단체, 지자체, 현장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40여회 개최함
  - (’18.3~7)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자, 전문가, 종사자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포럼」을 16회 개최하고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함<sup>2)</sup>
- 일자리위원회 산하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주요 쟁점을 조정함
  - (’17.12~ ’18.11) 11회에 걸쳐 사회서비스원 필수사업 범위, 국공립시설 우선위탁 범위, 기존시설 종사자와의 고용관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 등을 논의함
- 국회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현재(2019년 6월)까지 계류 상태임
  - 2018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 2018년 10월 1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발의
- 당·정·청의 협의를 거쳐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의 시범사업이 신규로 추가, 반영됨
  - (’18.10) 보건복지부 내에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준비를 시작함
  - (’18.12) 제9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함

---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9년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작함

- ('19.1)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위탁 공고를 내고 2월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중앙지원단의 업무를 위탁함
- ('18.10~'19.1)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시범사업협의체'를 설치하고 5차에 걸쳐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함
- ('19.1) 시범사업 대상을 공모, 4개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선정함
- ('19.4) 대구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하였고 다른 3개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 2. 사업계획

### 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계획

- 2019년 4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사업계획은 소요예산을 제외하고는 2018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제출안과 동일함
  -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소요예산의 변경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시행시기가 하반기로 조정됨에 따라 당해 인건비를 50%로 재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힘
    - 인건비는 평균 6개월 인건비를 지원하되, 지역별 개원시기에 따라 조정가능하도록 함
  - 소요예산의 변경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고, 세부 내역은 <표 2>와 같음

8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예비타당성조사

<표 1> 사회서비스원 소요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
| 예비타당<br>성조사<br>제출안<br>(‘18) | 합계  | 105                                           | 184        | 270        | 385                  | 371                  | 1,315 |
|                             | 국비  | 68                                            | 107        | 150        | 210                  | 174                  | 709   |
|                             | 지방비 | 37                                            | 77         | 120        | 175                  | 197                  | 606   |
| 보건<br>복지부<br>자료<br>(‘19.4)  | 합계  | 89                                            | 184        | 270        | 385                  | 371                  | 1,299 |
|                             | 국비  | 59                                            | 107        | 150        | 194                  | 157                  | 668   |
|                             | 지방비 | 30                                            | 77         | 120        | 191                  | 214                  | 631   |
| 변경<br>내역                    |     | 국비<br>지방사회<br>서비스원<br>인건비<br>16억원 →<br>8억원 변경 | 변경내역<br>없음 | 변경내역<br>없음 | 국비 지방비<br>비율이<br>변경됨 | 국비 지방비<br>비율이<br>변경됨 |       |

<표 2> 사회서비스원 2019년 소요 예산 변경 세부 내역

|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제출안<br>(2018년)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br>(2019년 4월 12일)                                                                                                                                                                                                                              |
|-------------|-----------------------------------------------------------------------------------------------------------------------------------------------------------------------------------------------------------------------------------------------------------------------------------------------------------------------------------------------------------------------------------------------------|-----------------------------------------------------------------------------------------------------------------------------------------------------------------------------------------------------------------------------------------------------------|
| 2019년<br>예산 | 68억원                                                                                                                                                                                                                                                                                                                                                                                                | 59억원                                                                                                                                                                                                                                                      |
| 세부 내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설립·운영:<br/>1,008백만원</li> <li>○ 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br/>5,760백만원</li> <li>- 시설비: 500백만원×4개소 = 2,000백만원</li> <li>- 인건비: 40백만원×12명×4개소×50% = 960백만원</li> <li>- 사업비: 605백만원×4개소×50% = 1,210백만원</li> <li>-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br/>전문요원 운영 320백만원(40백만원×8명),<br/>사업비 100백만원</li> <li>- 종사자 교육훈련: 185백만원<br/>운영비 : 795백만원×4개소×50% = 1,590백만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설립·운영:<br/>1,008백만원</li> <li>○ 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li> <li>- 시설비: 500백만원×4개소=2,000백만원</li> <li>- 인건비: 40백만원×20명×6/12개월×4개소<br/>×50%=800백만원</li> <li>- 사업·운영비:1,080백만원×4개소×50%<br/>=2,160백만원</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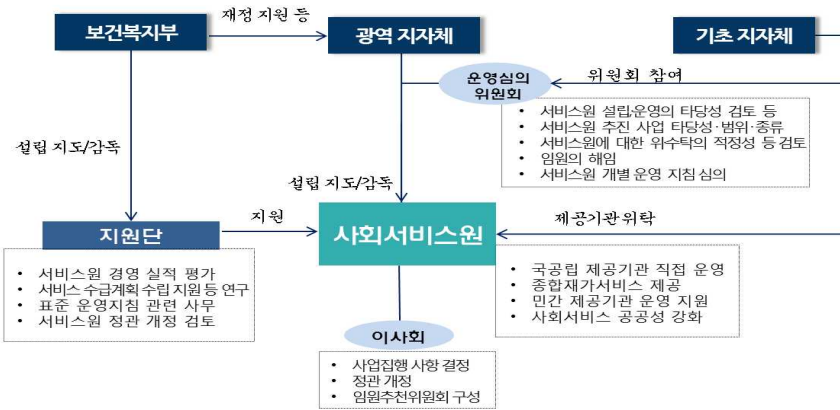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동 사업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 대상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과 17개 광역지자체 소속 사회서비스원으로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운영비와 광역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사회서비스원의 사업범위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 시설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이 해당함
-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하는 계속사업으로 중기재정지출 규모는 국비 668억원, 지방비 631억원으로 총 1,299억원임
  - 재원은 중앙지원단은 국비 100%, 지방사회서비스원은 최초 시설비 1회 국비 100%, 설치 후 3년간 운영비에 대하여 국비 50%, 이후 30%로 조달됨
- 17개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개소, 2021년 4개소, 2022년 5개소를 설치할 예정임
- 광역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은 2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기초 지자체의 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운영, 산하기관 인사 노무관리, 민간기관 지원업무 등을 수행함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1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사회서비스원 직영사업 운영 기준 제시, 경영평가컨설팅 등 사회서비스원의 지원 업무를 수행함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추진단을 설치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법령 제·개정 지원, 국비예산 지원, 서비스원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설립, 지도 감독함
- 광역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감독하고, 지역 총괄업무 수행, 지방비 매칭 등의 재정지원을 담당함



&lt;표 3&gt;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 제출안)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목적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대상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광역지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기간                                                                                                                                                                                                                                  | 2019년~계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17개 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예산                                                                                                                                                                                                                                  | 중기재정지출 1,315억원('19년~'23년)<br>- 105억원('19년)→ 184억원('20년)→270억원('21년)→385억원('22년)→371억원('2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원조달                                                                                                                                                                                                                                  | - (중앙 지원단) 국비 100%<br>- (지방사회서비스원) 국비 50%(시설비 100%)+지방자치단체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br>사업내용                                                                                                                                                                                                                         | (사업내용)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br>○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연도별 단계적으로 설치, '22년까지 17개 시도에 설치, '19년에는 4개소 시범사업으로 설립·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r><tr><td>개소수</td><td>4개소</td><td>4개소</td><td>4개소</td><td>5개소</td></tr><tr><td>(누계)</td><td>(4개소)</td><td>(8개소)</td><td>(12개소)</td><td>(17개소)</td></tr></table>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개소수 | 4개소 | 4개소  | 4개소 | 5개소 | (누계) | (4개소) | (8개소) | (12개소) | (17개소) |    |    |     |     |     |     |   |     |     |     |     |     |       |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소수                                                                                                                                                                                                                                   | 4개소                                                                                                                                                                                                                                                                                                                                                                                                                                                                                      | 4개소   | 4개소    | 5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계)                                                                                                                                                                                                                                  | (4개소)                                                                                                                                                                                                                                                                                                                                                                                                                                                                                    | (8개소) | (12개소) | (17개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지원단 1개소는 19년 설치<br>○ (사업규모) 중앙지원단 1개소 및 지방사회서비스원 17개소*<br>○ (지원조건) (중앙)직접수행(국비100%), (지방)지자체보조(시설비 100%, 운영비 50%)<br>※ 사업비 709억원(국비)은 중앙지원단 및 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비 예산이며, 개별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등은 추가적인 재원 투입없이 기존 수거나 보조금으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용                                                                                                                                                                                                                                    | ○ 소요예산 산출근거: '19년 국고지원총액 68억원(시범사업)<br>-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설립·운영: 1,008백만원<br>* 인건비: 40백만원×10명×1개소 = 400백만원<br>* 시설비: 임대료 45백만원+보증금 35백만원 = 80백만원<br>* 운영비(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및 교육, 평가 등): 528백만원<br>- 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 5,760백만원<br>* 인건비: 40백만원×12명×4개소×50% = 960백만원<br>* 시설비: 500백만원×4개소 = 2,000백만원<br>* 사업비: 605백만원×4개소×50% = 1,210백만원<br>·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 전문요원 운영 320백만원(40백만원×8명), 사업비 100백만원<br>· 종사자 교육훈련 : 185백만원<br>* 운영비: 795백만원×4개소×50% = 1,590백만원<br>○ 예산확보방안<br><소요 예산>(단위: 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h>계</th></tr><tr><td>중앙정부</td><td>68</td><td>107</td><td>150</td><td>210</td><td>174</td><td>709</td></tr><tr><td>지방정부</td><td>37</td><td>77</td><td>120</td><td>175</td><td>197</td><td>606</td></tr><tr><td>계</td><td>105</td><td>184</td><td>270</td><td>385</td><td>371</td><td>1,315</td></tr></table>                                                                                            |       | '19    | '20    | '21  | '22   | '23 | 계   | 중앙정부 | 68  | 107 | 150  | 210   | 174   | 709    | 지방정부   | 37 | 77 | 120 | 175 | 197 | 606 | 계 | 105 | 184 | 270 | 385 | 371 | 1,315 |
|                                                                                                                                                                                                                                       | '19                                                                                                                                                                                                                                                                                                                                                                                                                                                                                      | '20   | '21    | '22    | '23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정부                                                                                                                                                                                                                                  | 68                                                                                                                                                                                                                                                                                                                                                                                                                                                                                       | 107   | 150    | 210    | 174  | 709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정부                                                                                                                                                                                                                                  | 37                                                                                                                                                                                                                                                                                                                                                                                                                                                                                       | 77    | 120    | 175    | 197  | 606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05                                                                                                                                                                                                                                                                                                                                                                                                                                                                                      | 184   | 270    | 385    | 371  | 1,315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소요인력   | <p>○ 지자체 21명 및 복지부 23명, 광역서비스원 총 80명('19년 시범사업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인력 4~9명 소요</li> <li>- (복지부) 관련 법·제도 마련, 운영모델 개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및 지원 등 추진할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구성·운영(23명, '18.10.1)</li> <li>- (광역사회서비스원) 각 20명</li> </ul> <table data-bbox="442 674 1219 1142"> <tr> <th>조직</th><th>주요업무</th><th>인원</th></tr> <tr> <td>경영지원팀</td><td>경영기획,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br/>홍보, 의회, 언론, 법무, 감사 등<br/>이사회 및 운영자문위원회 운영<br/>본부 인사(평가, 승진, 채용, 복무), 예산, 재무(재무, 회계, 계약, 기부금 등), 시스템 운영관리 등 정보화</td><td>5</td></tr> <tr> <td>시설운영팀</td><td>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행정지원<br/>직영시설 재정관리·조정 등<br/>직영시설 운영상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br/>직영시설 관리·재무·회계·경영·프로그램 컨설팅<br/>지역 커뮤니티케어 업무 지원</td><td>7</td></tr> <tr> <td>민간지원팀</td><td>시설 안전점검 지원<br/>각종센터 통합적 관리<br/>신설 시설 설치·인가 등 행정지원<br/>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td><td>8</td></tr> <tr> <td>총계</td><td></td><td>20</td></tr> </table> <p>○ (확보방안) 지자체 및 복지부는 자체인력 활용, 광역서비스원은 광역지자체별 공개채용</p>                                                                                                                                                                                                                                                                                                                                                                                                                                                                                                                                                                                                                                                           | 조직 | 주요업무 | 인원 | 경영지원팀 | 경영기획,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br>홍보, 의회, 언론, 법무, 감사 등<br>이사회 및 운영자문위원회 운영<br>본부 인사(평가, 승진, 채용, 복무), 예산, 재무(재무, 회계, 계약, 기부금 등), 시스템 운영관리 등 정보화 | 5 | 시설운영팀 |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행정지원<br>직영시설 재정관리·조정 등<br>직영시설 운영상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br>직영시설 관리·재무·회계·경영·프로그램 컨설팅<br>지역 커뮤니티케어 업무 지원 | 7 | 민간지원팀 | 시설 안전점검 지원<br>각종센터 통합적 관리<br>신설 시설 설치·인가 등 행정지원<br>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 | 8 | 총계 |  | 20 |
| 조직     | 주요업무                                                                                                                                                                                                                                                                                                                                                                                                                                                                                                                                                                                                                                                                                                                                                                                                                                                                                                                                                                                                                                                                                                                                                                                                                                                                                                                                                                                                                                                                                                                                                                                                 | 인원 |      |    |       |                                                                                                                                   |   |       |                                                                                                                    |   |       |                                                                       |   |    |  |    |
| 경영지원팀  | 경영기획,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br>홍보, 의회, 언론, 법무, 감사 등<br>이사회 및 운영자문위원회 운영<br>본부 인사(평가, 승진, 채용, 복무), 예산, 재무(재무, 회계, 계약, 기부금 등), 시스템 운영관리 등 정보화                                                                                                                                                                                                                                                                                                                                                                                                                                                                                                                                                                                                                                                                                                                                                                                                                                                                                                                                                                                                                                                                                                                                                                                                                                                                                                                                                                                                                                                                    | 5  |      |    |       |                                                                                                                                   |   |       |                                                                                                                    |   |       |                                                                       |   |    |  |    |
| 시설운영팀  |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행정지원<br>직영시설 재정관리·조정 등<br>직영시설 운영상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br>직영시설 관리·재무·회계·경영·프로그램 컨설팅<br>지역 커뮤니티케어 업무 지원                                                                                                                                                                                                                                                                                                                                                                                                                                                                                                                                                                                                                                                                                                                                                                                                                                                                                                                                                                                                                                                                                                                                                                                                                                                                                                                                                                                                                                                                                   | 7  |      |    |       |                                                                                                                                   |   |       |                                                                                                                    |   |       |                                                                       |   |    |  |    |
| 민간지원팀  | 시설 안전점검 지원<br>각종센터 통합적 관리<br>신설 시설 설치·인가 등 행정지원<br>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                                                                                                                                                                                                                                                                                                                                                                                                                                                                                                                                                                                                                                                                                                                                                                                                                                                                                                                                                                                                                                                                                                                                                                                                                                                                                                                                                                                                                                                                                                                                | 8  |      |    |       |                                                                                                                                   |   |       |                                                                                                                    |   |       |                                                                       |   |    |  |    |
| 총계     |                                                                                                                                                                                                                                                                                                                                                                                                                                                                                                                                                                                                                                                                                                                                                                                                                                                                                                                                                                                                                                                                                                                                                                                                                                                                                                                                                                                                                                                                                                                                                                                                      | 20 |      |    |       |                                                                                                                                   |   |       |                                                                                                                    |   |       |                                                                       |   |    |  |    |
| 사업추진방식 | <p>○ 사업수행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추진단)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법령 제·개정 지원, 국비예산 지원, 서비스원 사업모델 개발</li> <li>- (광역 지자체) 광역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감독, 지역 총괄업무 수행과 지방비 매칭 지원</li> <li>-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운영 위탁(기초 → 광역 사회서비스원)</li> <li>-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서비스원 직영사업 운영기준 제시, 경영평가컨설팅 등</li> <li>- (지방 서비스원) 직영시설 운영, 산하기관 인사노무 관리, 민간제공기관 지원업무 수행</li> </ul> <p>○ 사업진행절차 및 전달체계</p>  <pre> graph TD     BO[보건복지부] -- "재정 지원 등" --&gt; GA[광역 지자체]     BO -- "설립 지도/감독" --&gt; ZD[지원단]     ZD -- "지원" --&gt; SS[사회서비스원]     GA -- "설립 지도/감독" --&gt; SS     GA -- "위원회 참여" --&gt; OW[운영심의위원회]     OW --&gt; SS     SS -- "제 공급기관 위탁" --&gt; GC[기초 지자체]     GC -- "제 공급기관 위탁" --&gt; SS     SS -- "이사회" --&gt; IS[이사회]     IS --&gt; SS   </pre> <p><b>보건복지부</b> (재정 지원 등) → <b>광역 지자체</b></p> <p><b>보건복지부</b> (설립 지도/감독) → <b>지원단</b></p> <p><b>지원단</b> (지원) → <b>사회서비스원</b></p> <p><b>광역 지자체</b> (설립 지도/감독) → <b>사회서비스원</b></p> <p><b>광역 지자체</b> (위원회 참여) → <b>운영심의위원회</b> → <b>사회서비스원</b></p> <p><b>사회서비스원</b> (제 공급기관 위탁) → <b>기초 지자체</b></p> <p><b>기초 지자체</b> (제 공급기관 위탁) → <b>사회서비스원</b></p> <p><b>사회서비스원</b> (이사회) → <b>이사회</b></p> <p><b>지원단</b> 업무: 서비스원 경영 실적 평가, 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지원 등 연구, 표준 운영지침 관련 사무, 서비스원 청관 개칭 검토</p> <p><b>이사회</b> 업무: 사업집행 사항 결정, 정관 개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p> <p><b>운영심의위원회</b> 업무: 서비스원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등, 서비스원 추진 사업 타당성·범위·종류, 서비스원에 대한 위수탁의 적정성 등 검토, 임원의 해임, 서비스원 개발·운영 지침 심의</p> <p><b>제 공급기관 위탁</b> 업무: 국공립 제공기관 직접 운영,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p> |    |      |    |       |                                                                                                                                   |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예비타당성조사 제출안)

나.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시범사업 계획<sup>3)</sup>

- ☐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시범사업 대상으로 2019년 1월 25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가 선정됨
  - 동 시범사업은 개소당 평균 12.4억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① 국공립시설 위탁운영, ②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③ 민간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 ④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지원을 실시함
- ☐ 2019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4월 내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중임
  - 다양한 모델의 종합재가센터(재가방문+노인돌봄, 재가방문+노인돌봄+주야간보호, 재가방문+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를 설치·운영함
  -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시설 종사자 임금향상을 위한 추가 재원을 투입함
- ☐ 대구광역시는 2019년 4월 1일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함
  - 대구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노인·노숙·정신 등)을 운영함
  - 기존 문제시설을 수탁하여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함
- ☐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2019년 10월 설립할 예정이며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운영함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재단 법인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독립하는 형태임
  - 다양한 유형의 공공센터를 운영하고, 기초지자체와의 갈등관리 및 협력체계 모델을 구축할 예정임
-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을 2019년 5월 개소할 예정임
  - 기초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국공립시설의 위탁기간 종료 시 수탁기관을 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재위탁 추진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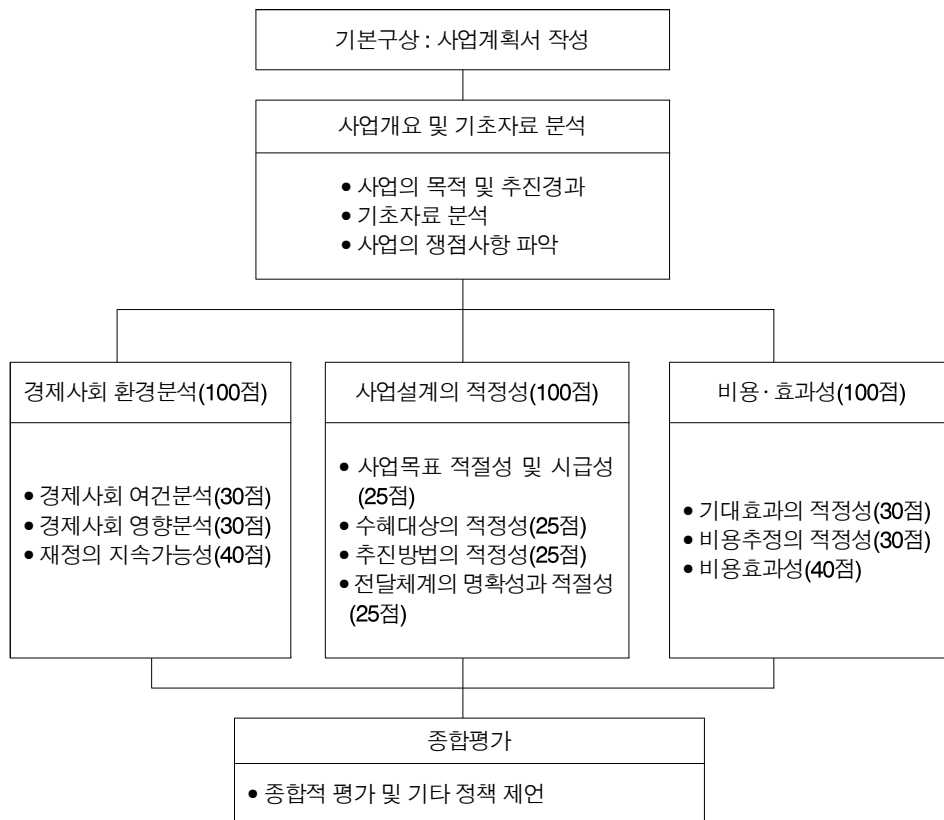
---

3)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9년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2019.3)을 참고하여 작성

### 3.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는 [그림 3]과 같이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분석 및 종합평가로 이루어져 있음

[그림 3]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 1. 기초자료 분석

#### 가. 사회서비스 정의 및 현황

☐ 사회서비스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이 여러 법률에 정의되어 있음

<표 4>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정의

| 구분                             | 내용                                                                                                                                                                |
|--------------------------------|-------------------------------------------------------------------------------------------------------------------------------------------------------------------|
| 사회보장기본법<br>(제3조 제4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br>이용권 관리에 관한<br>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 사회복지사업법<br>(제2조 제6호)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 보건의료기본법<br>(제3조 제2호)           |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노기성 외(2011)는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에 일련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사회서비스정책으로 총칭한 것이 사회서비스라는 용어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나누고 있음

&lt;표 5&gt; 사회서비스의 범위

| 구분               | 내용                                                                                              |
|------------------|-------------------------------------------------------------------------------------------------|
| 광의               | 교육서비스,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
| 협의               |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
| 최협의<br>(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적 돌봄서비스, 노인활동보조, 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아동 돌봄, 보육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 인지·인성 발달지원서비스 등 |

자료: 노기성 외(2011)

- 사회서비스의 유형은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처음 시작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7개 영역, 7가지 유형의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특수 분류 중 대분류 기준 조합에 따라 총 10개 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영역별 주요 사회서비스 유형은 아래 <표 6>과 같음<sup>4)</sup>

&lt;표 6&gt; 2017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 영역별 주요 사회서비스 유형

| 항목           | 사회서비스 유형                                                                                 |
|--------------|------------------------------------------------------------------------------------------|
| ① 상담         | 정신건강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심리지원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사례관리 등                          |
| ② 재활         | 재활서비스: 장애진단 및 판정, 직업재활, 물리치료, 심리재활서비스 등                                                  |
| ③ 성인돌봄       | 성인(장애인, 노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가사도우미, 파출부 등 |
| ④ 아동돌봄       | 아동 보육 및 돌봄서비스: 어린이집, 개인아이돌보미 파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장애아동돌봄, 베이비시터 등                             |
| ⑤ 보건/의료/건강관리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영양보조, 금연 클리닉 등<br>※ 일반 의료건강검진서비스 제외                             |
| ⑥ 교육 및 정보제공  |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서비스: 평생교육, 재무설계, 세무법률지원서비스, 노후설계서비스 등(※ 학원 등 사교육서비스 제외)    |
| ⑦ 고용/취업      |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 구직·일자리 알선,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근로자상담 등                                   |
| ⑧ 주거         | 주거보호 및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시설거주 통한 일상생활 지원, 소규모 그룹홈 등                                        |
| ⑨ 문화         | 문화,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서비스: 문화, 여가, 스포츠 바우처, 문화생활 체험, 캠프 등                                    |
| ⑩ 환경         | 환경서비스: 환경정비, 방역, 환경가꾸기, 냉난방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_정량조사』, p. 42 표 인용

4)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_정성조사』, p. 46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 다양한 종류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간 연계나 조정 없이 산발적으로 확충되었고,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
- 이후 각 부처의 사회서비스 사업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나.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서비스의 유형은 매우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중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한 검토에 앞서 기존에 존재하는 기관들 중 유사하거나 기능이 일부 중복될 수 있는 기관을 검토함
  - 우선, 복지서비스의 확충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인 지역복지재단을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로 구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과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 살펴봄
    - 광역지자체 산하 복지재단은 지자체 사회복지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업무와 사회복지관련 교육사업,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사업, 사회복지 시설 평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복지재단에 따라 지역의 복지욕구와 실정에 따라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복지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은 크게 모금과 배분, 조사·연구·교육, 시설운영 세 가지 역할에 따라 유형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 유형들 중 두 가지 이상을 유사한 비중으로 수행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유형도 있음

## 2.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

-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명시된 상위계획
  - 2019년 2월 19일에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을 검토한 결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이 하나의 과제명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에 제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서비스 관리주체의 설립이 명시되어 있음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 현재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8.5.4,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18.10.16., 윤소하 의원)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임

□ 위에 제시된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민법」,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구체적인 설립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sup>5)</sup>

### 3. 해외 사회서비스 사례 조사

□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지역 분권 중심의 복지체계가 이루어져온 스웨덴의 복지체계 전통에 따라 2016년 기준 290개의 시(Municipalities)와 20개의 광역/자치구(Counties/Regions)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품질관리 방안으로 SALAR(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이라는 협의체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조정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범국가적 단위(National level)의 지방정부 평가 및 모니터링 수단으로서 “Open Comparison”을 도입하여 복지사업의 개선과 보건사회서비스 품질의 증가, 투명성의 개선 효과를 보고 있음
- 교육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는 공공시설 중심으로서 주요재원인 지방세로 운영되고 있음
- 보육교사는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정규직으로 고용 가능하며, 공립보육

5) 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설명자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p. 3 및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안)」, 2019.2.19, p. 19 내용 인용



교사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약 75% 이상이 직접 고용되고 있음

- 장기요양보호사의 80%는 지방정부에서 직접고용하며, 모두 계약직이며 나머지 20%는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짐

#### □ 영국의 사회서비스

- 영국 사회서비스의 핵심 이념은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 ‘welfare to work’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장주의적 복지정책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중앙집권적 독립기구로, 돌봄질위원회(CQC; Care Quality Commission)을 신설하여 서비스 질을 인증하고 평가함
- 또한 사회서비스 훈련조직(TOSS; Training Organization for Personal Social Service)을 두어 사회서비스 인력이 서비스 투입 전후로 지속적으로 훈련받게 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
- 영국의 보육서비스 종사자와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의 급여수준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장기요양서비스의 간호돌봄 등이 보다 전문성을 요한다는 인식과 실제로 성인사회돌봄(Adult Social Care)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임
- 공공부문의 보육 및 장기요양 사회서비스 비중은 조사대상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지방정부는 시장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를 구매하는 역할을 담당함

#### □ 네덜란드의 사회서비스

-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는 홀벌이의 가부장적인 사회문화 분위기를 띠었으나, 최근 들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시간제 근무와 그에 맞는 보육시스템이 확산됨
- 사회서비스는 민간 가격경쟁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근로소득에서 세제혜택으로 환급받는 방식이 주류였으나 최근 들어 복잡한 세금체계를 간소화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
-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보육부문에서는 보육교사의 학위요건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부문에서는 돌봄평가센터(Care Assessment Center; CIZ)라고 불리는 별도 평가기관에서 환자 개개인에 대한 적합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장기요양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민간에서 서비스가 공급되며, 지방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원활한 계약 체결을 위하여 서비스 구매를 대행하는 형태임

□ 조사대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첫째, 조사대상 각 나라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예산적인 규모의 증가가 포착됨
- 둘째, 1995년 이후 모든 조사대상 국가의 정부지출 대비 사회지출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한국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음
- 셋째, 조사대상 국가인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모두 사회서비스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음
- 넷째, 2000년대 이후 모든 조사대상 국가들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가 아동의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각종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 유인정책과 보육정책을 연계한 복지개혁, 세제개혁을 추진함
- 다섯째,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사대상 모든 국가들이 비공식적 돌봄(장기요양)에 대한 수발자 수당(payments for informal care)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여섯째, 각국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기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보육서비스의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자격요건/학력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보임

## 제Ⅲ장 경제사회 환경분석

### 1. 경제사회 여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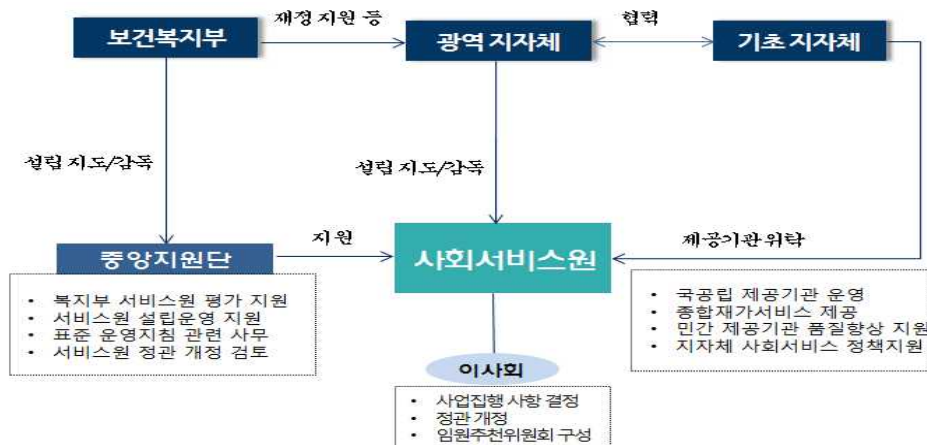
- 동 사업은 급격한 사회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 여건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문제의 개선은 중요한 정책 과제임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필요성으로, 급격하게 확대된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공공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는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노인 요양시설은, 2009년의 1,640개소에서 2017년에는 3,261개소로 증가하여 거의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바우처 서비스 기관은 1,274개에서 11,370개로 거의 10배 증가하였음
  -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영역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장기요양·보육·각종 재가서비스임
  - 이러한 사회서비스가 정부 정책에 의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적절한 인프라의 구축이 미약한 상태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사업을 위탁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확대되었음
  -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국공립시설의 비중이 낮은 수준(8.8% 수준)이며, 국공립 시설도 실제로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 민간뿐 아니라 아닌 공공기관도 일정 부분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요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 민간서비스 중심인 영국의 경우도 공공서비스 비중이 20% 후반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동 사업이 목적으로 설정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의 질 향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임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이 동원되어 왔으나 시설을 공공조직이 직영하는 형태의 정책 수단은 시행된 적이 없음
  - 고용의 질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과 관리 및 평가 강화, 감사 강화, 지원서비스 강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기능 수행을 위해 현재 개별 사회서비스별로 지원 및 평가 기관이 존재하고 있음
    - 장기요양 서비스에 있어서는 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인력개발원, 보육서비스에 있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복지재단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에 대한 연구와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과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직영과 관련된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별 서비스 영역별로 제공되고 있는 연구 지원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 계획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초기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지원기관들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는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중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사회서비스원의 업무가 안정되고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기존 기관들과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수 있음
  - 중앙: 유사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의 경우 한국보건인력개발원, 건강보험공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은 정책연구, 컨설팅, 업무지원에 초점이 있고 사회서비스원은 인사, 재무, 노무, 안전 감독과 지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업무영역이 상이함
  - 지방: 지방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업무지원 및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복지재단과 일부 업무 중복이 존재하지만, 업무 영역 조정과 이전을 통해 중복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 자체는 지자체의 책임하에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지방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재정보조를 일부 제공
  -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시설의 관리는 지자체의 책임하에 있으나, 공공기관의 시설을 통한 공공 직영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인프라 구

측과 관리를 위한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영하게 될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민간서비스 제공자와 다른 재정 여건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동 사업이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정책적 쟁점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음
- 공공기관 직영형태의 서비스 제공 기관 형태 다양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을 건인한다는 목표의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서비스 제공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이 중요함

[그림 4] 중앙과 지방의 사회서비스원 거버넌스 구조와 업무영역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안) 제출자료

-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제공 확대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서비스 제공자 역할 확보 필요성은 있음
-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인구 및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 공공서비스의 비중이 큰 스웨덴, 민간영역의 비중이 큰 영국의 보육과 사회서비스 사례를 비교하였으며 해외 추세는 민간부문의 비율을 확대하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임
- (소결) 동 사업은 급속히 확대된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공공기관 직영체제를 일부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직영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은 적시성이 있음. 기존 사업

과의 유사 중복 문제는 미약하며, 광역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부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2. 경제사회 영향분석

-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 우리나라에서 급속히 확대된 사회서비스는,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일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해당 서비스의 품질 개선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저출산 극복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직영대상에 보육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통해 부모의 출산의지가 높아진다면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저출산 극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강은미·김순규(2011)에 의하면 보육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감에 따라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면 간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고령화 대응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직영 대상 서비스분야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요양 및 재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요양 및 재가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급속한 노령화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음
  - \* 김찬우(2011)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자살률이 8%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직영사업 대상이 국공립 신설 시설과 기존 국공립시설 중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고용의 질 제고와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는 양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시장예의 파급효과는 클 수 있음
  - 동일한 재정 여건하의 직영 시설에서 고용의 질과 서비스 품질 개선효과가 창출된다면, 민간서비스 제공자들을 견인하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음

- 서비스 품질 문제가 제기될 때, 부각되는 쟁점 중의 하나가 낮은 수가 문제  
이므로, 현재의 주어진 수가와 바우처 조건하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이라는  
성과가 창출된다면,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견인하  
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
-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집단과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  
활동을 통해 상당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으나, 국회와는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사회서비스 포럼 개최('18년 3~7월, 16회),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논의(총 60회)  
를 통해 서비스원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 추진
  - 남인순 의원, 윤소하 의원의 발의로 서비스 운영 근거법이 발의되었으나 자유  
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임
    -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중앙정부가 지방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는 있으나, 특별법이 있는 경우보다는 안정성이 약할 수밖에 없음
- (소결) 동 사업의 의도한 성과를 창출하면,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종사자의 근로여  
건을 개선하여, 개별 사회서비스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됨.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국회에서  
의 특별법이 계류된 상태임

### 3. 재정의 지속가능성

- 동 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직접적인 사업비와 파급효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① 재정 소요 추정의 적정성,  
② 안정적 조달 가능성, 그리고 ③ 중장기 재정소요 변동 위험성 고려 여부로 판  
단함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과 광역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과  
관련된 직접 사업비
    - 동 사업계획에 제시된 사업비로서, 기관 설립 및 운영비로서 재정의 지속가  
능성 쟁점은 미약함

-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게 될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지원 비용
  - 동 사업의 직접 비용은 아니지만, 지방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게 될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는 재정소요임
  -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별 수가와 바우처만으로 직영시설을 운영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운용하는 것을 권장함
  - 직영시설이 적자 상황에 처할 경우,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운영 결과가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수가 인상 요구
  - 동 사업이 원래 의도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성과를 창출하지 못할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가 인상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된 직접 사업비는 현재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 소요보다는 증가할 개연성이 높지만,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비용이므로, 조달 가능성 문제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됨
  - \* 2019년에서 2013년까지의 중기 예산 규모는 1,29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직영시설 증가와 연계된 사회서비스원의 인력 증원 없이 개소당 일정액이 지원되는 형태의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복지부는 서비스원별 인력 소요를 매년 고정된 상태에서 50:50으로 지자체와 분담한다고 제시하였음
-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점검회의에서는, 인력 소요가 고정됨으로 인해 매년 동일한 고정금액이 지원되는 예산 구조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일종의 포괄보조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다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 담당자들의 기대는 복지부의 입장과는 달리, 실제 재정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의 재정지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직영시설 수효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될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이기 때문에,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지만, 복지부와 지자체 간의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직영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동 사업의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동 사업의 의도된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므로, 시사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 동 사업 계획에서는 직영시설은 기존 사회서비스 제도하의 수가와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없다고 가정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가정은 복지부가 지자체에 권고하는 사항이며 구속력은 없음
  - 동 사업은 장기요양, 보육, 종합재가서비스에 대한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표준모형의 주요 가정들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직영시설의 유지 가능성을 위해 지자체가 재정을 보조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표준모형의 주요 가정들은, 서비스 종류별 매칭 비율, 종사자 고용 형태 비율, 임금수준, 시설의 규모(서비스 대상 수요) 등임
    - 예를 들어, 서비스 종류별 매칭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장기 근속자 증가에 따른 임금 수준 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표준모형에 근거한 직영시설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발생 위험에 대한 대응책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정적 위험은, 동 사업의 결과가 상존하고 있는 수가 인상 요구의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이므로, 동 사업이 재정 제약조건을 지키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 사업이 수가 인상 요구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이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켰지만, 경성 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 조건이 지켜지지 못하고,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추가 보조를 받았을 경우
    - 동 사업이 경성예산제약(Hard Budget Constraint) 조건은 지켰으나, 근로조건

개선이나 서비스 품질 개선의 성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할 시설의 재정소요와 동 사업의 결과가 야기할 수 있는 수가 인상 요구 가능성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의 중장기적 변동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함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자체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있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변동 위험성이 있음
  -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자체의 인력도 증가하고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움
  - 사업계획서에는 사회서비스원 개소당 설립 및 운영 경비를 고정시켜놓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소요 변동 위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할 시설들이 기존 수가와 보조금만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보조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될 위험도 있음
- 동 사업의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포괄보조금으로 개소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사항을 지자체와 합의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할 시설들에 경성예산제약 조건(hard budget constraint)을 명시적으로 강제할 방안이 필요함
- (소결) 동 사업의 직접 사업비 자체는 기관 설립 및 운영 경비로서, 재정적 위험이 미약하지만, 재정소요 변동 가능성은 높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분담 방안의 명확화가 필요함. 동 사업이 야기할 재정위험은, 직영사업과 직영사업 운영 결과가 초래할 수가 인상 요구 강화 등에 있음. 동 사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영시설이 기존의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예산제약하에서 성과를 창출해야만 하므로, 경성예산제약 조건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제Ⅳ장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 1.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

- 사업 목표는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에 있으며,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직접 서비스 제공시설을 직영하며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사업 수단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 목표나 수단의 구체성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동 사업이 개선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보육, 재가서비스의 품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사업계획서에는 종사자 **일자리의 질** 및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의 질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상에는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된 언급으로는 정규직과 고정월급제 종사자 비율이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에는 정규직을 정년 보장의 의미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자체 시범사업 관계자들과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 근무시간은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종사자의 선호에 따라 풀타임(Full Time)일수도 있고, 파트 타임(Part Time)일 수도 있다고 판단됨
    - \* 통계청의 정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재택/가내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일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등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 성과지표로서 종사자 중 고정월급제 적용 종사자 비율로 설정되어 있는데, 해당 지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 \* 사업계획서에는 동 사업의 목표로서 직영시설 정규직 종사자 중 고정급 월급제로 채용된 종사자 비율을 사업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나, 목표

치는 설정되어 있지 않음

- 고정급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다는 것은, 가능한 최대로 고정급을 적용하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되지만, 위탁사업의 운영 방식을 사전적으로 한정하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됨

○ 서비스 품질의 향상의 성과측정 방법은,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사업계획서에 설정되어 있으나,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사회서비스원이 직영시설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는 장기요양, 보육, 종합재가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서비스별로 서비스 품질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나 지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순 만족도가 아니라 서비스별로 차별화된 성과측정 방법을 활용해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는 단순 만족도 조사보다는, 서비스 수혜자들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 또는 만성 질병의 진전 지연 등의 측면을 시계열로 조사 분석해서 사업의 성과를 보는 것이 필요함
- 보육의 경우는, 이상적으로는 실제 아동들의 발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 사이에서 반론이 존재함
-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부분적인 기능 보조의 역할이 크므로, 만족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서비스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 요약하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는 적절하고 명확하다고 판단되지만, 이 두 가지의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정책 수단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의 개선 여지는 있으며, 위험 요인을 안고 있음

○ 동 사업의 핵심 논리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운영되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는 것이며, 종사자를 월급제 정규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채용하는 것을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음

- 사회서비스는 대인 서비스로서,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 여건이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알려져 있음
  - 서비스 제공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월급제 정규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월급제 정규직이 직업의 안정성 제고 효과는 있지만,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유인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유인 구조를 적절히 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계획서에는 종사자들을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것과 사회서비스원과 직영시설에 대한 성과관리가 있다는 점 이외에는 직영시설 종사자들의 유인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설정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음
- 근로 여건 개선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원의 행정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리 대상 직영시설 수요의 증가에 따라 위험 요소도 존재
- 사업 확대 초기에는 사회서비스원이 비교적 소수의 직영 사업을 관리하면서 유연성 있는 지원을 할 개연성이 높지만, 위탁사업이 급격히 확대되면 사회서비스원은 관리 기능에 집중하게 되면서, 경직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
  - 호주에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서베이 결과(Weaven and Grace, 2010)에 따르면, 독립적인 민간 영리 서비스 제공기관 > 커뮤니티 기반의 비영리 서비스 제공기관 > 프랜차이즈 형태의 민간 영리 서비스 제공기관 순으로 서비스 품질이 높다고 인식됨
  - 이렇게 인식된 이유는, 독립적인 민간 영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소유주이자 경영자가 직접 1~2개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부모들과 친밀하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중앙 관리조직이 다수의 서비스 제공 시설을 관리할 경우, 비인격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의 친밀도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 요약하면,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지자체의 위탁사업이 수행될 경우, 적어도 사업 초기에는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의 질 개선과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적정 규모 확보,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지원 서비스가 추가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일자리위원회에서 설립 및 운영방안이 발표되었고, 사회보장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 입법과정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임
  -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2017년 5월)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과제(17-2)로 채택되었음
  - 제9차 일자리위원회(2018년 12월)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발표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에도 하나의 과제로서 명시적으로 포함됨
  - 2018년 5월부터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회에서는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함
    -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민법」,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진행
    - 전체적인 설립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 동 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의 보조하에 진행 될 수 있으나, 사업의 안정성은 약해질 것임
- (소결) 동 사업의 목표 자체는 적절하며,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부합한다고 판단되지만,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어떻게 정의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2. 수혜 대상의 적정성

- 동 사업의 수혜 대상으로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이므로, 궁극적 수혜대상자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라고 볼 수 있음
  - 사업 수단으로서 직영시설의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활용하므로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종사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동 사업이 의도한 대상은 아니지만, 공공기관 직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이 등장하므로, 기존 사회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도 영향을 받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음
- 동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장기요양, 보육, 재가사업) 수혜대상의 명확성과 적정성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지는 않음
  - 동 사업은 기존 사회서비스의 규정과 전달체계에 변화를 주지 않고,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 기능과 새로운 공공 직영 시설을 추가한다는 것이므로, 수혜 대상 자체에 대한 새로운 쟁점은 발생하지 않음
-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종사자의 경우, 직영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은 사업 목표의 일부이기도 하므로, 수혜대상 관련 쟁점은 없으며, 직영시설 외의 기관 종사자들도 잠재적으로 사업의 파급효과로 인해 긍정적 수혜를 받을 개연성이 있음
  - 직영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수준과 직업의 안정성은 평균적인 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사업 목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함
  -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 종사자들 외의 타 기관, 특히 민간시설 종사자들도, 동 사업의 파급효과 발생으로 인해 수혜를 받을 개연성이 있음
    - 동 사업이 주어진 예산계약조건하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성과를 창출했을 경우, 민간 사업자들에게도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민간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
- 동 사업으로 인해 민간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으며, 사업의 결과에 따라 양면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동 사업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영역을 축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직영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으므로,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이미 계획되어 있는 신설 국공립시설을 주된 직영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직접적으로 민간 시장을 침해하지 않지만, 기존의 국공립시설의 대부분을 민간사업자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민간 사업자의 시장을 축소하는 효과가 발생함
  - 동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민간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것임

-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이 성공적으로 예산제약조건 내에서 운영되고 성과를 창출하게 되면, 민간 사업자들은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 압박하에 놓이게 될 것임
  - 직영시설이 예산제약 조건 내에서 운영되더라도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든지, 성과는 창출하지만 예산제약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은 그동안 주장해온 수가 인상 요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될 것임
- 사회서비스원은 신규 국공립시설과 문제가 발생한 국공립시설을 직영 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므로, 사업 수요 자체의 문제는 없음
- 동 사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가 지방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수요가 있어야 하며, 지자체가 지방서비스원에 사업을 위탁하려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광역지자체 수요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계획에 따라 모든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신설하는 계획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시범사업 4곳(서울, 경기, 대구, 경남)이 이미 진행 또는 준비 중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2022년까지 설립할 계획임
    - 위탁사업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시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는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요양시설을 필수적인 대상으로 할 계획임
    - \* 2019년 3월 현재,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 계획은 어린이집이 510개소, 치매전담 요양시설이 344개소임
  - 동 사업 모형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신규 국공립시설 이외의 기초지자체 사업의 위탁을 받아야 하므로, 동 사업의 초기 성과 창출 정도에 따라 기초지자체 사업으로의 확대 가능성이 결정될 것임
    -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 및 재가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므로, 사업 전체 수요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보육서비스의 수요는 감소할 것이므로, 직영 시설의 직종별 종사자 구성의 변화가 장래에 불가피할 것임
    - 다만, 현재도 국공립시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규 국공립시설에 대한 수요 총량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수요 관련 위험 요소는, 신규 국공립시설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지 못하고, 정책적 이유로 인해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다면, 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 재가서비스의 수요 증가와는 다른 쟁점으로, 종합재가센터의 수익성 유지 가능성에 따라 종합재가센터 모형의 확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
- \*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방문 요양 서비스 이외의 재가서비스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하기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실현이나 서비스 유형 매칭의 효과적 운영 등을 통한 적극적 운영 없이는 수익 창출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소결)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의 핵심은 직영시설을 통한 서비스 질과 직영시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이므로, 새롭게 수혜 대상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사업 수요 문제도, 현 단계에서는 국공립 신규시설 중심이므로,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 3. 추진 방법의 적절성

- 동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공공기관이 사회서비스 제공 기능을 직접 담당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며,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공공 직접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 공공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직접 지자체가 직영할 수도 있으나, 전문성 확보와 인력 운영의 유연성 문제를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을 통한 직영 방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공공기관을 통한 직영 형태에 대해서도 인력 및 조직 운영의 경직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공무원이 직영하는 체제는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 사업은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역할 분담의 큰 원칙은 적절하게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동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통해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운

영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일정 부분 분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광역 지자체는 지방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사회서비스원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자체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함
- 추가적인 쟁점은, 직영 사업 확대에 따른 ①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재원 분담 문제, ② 지방사회서비스원과 직영 시설들에 대한 성과관리 및 환류 방안, ③ 직영시설 내의 구성원에 대한 성과관리 및 환류 방안의 구체성 문제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가 유지될 경우,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원칙 자체는 쟁점이 없으나,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재원분담 계획을 명시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자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서울과 다른 광역지자체의 보조 비율을 상이하게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재정소요 자체가 크지 않고, 기관 설립과 운영지원에 국한될 경우, 동일한 보조율을 지급하고 있는 기존 사례가 있음
- 현재 사업계획서는 개별 사회서비스원당 인건비 및 운영비가 중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50:50으로 운영비 재원(시설비는 100%)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중앙정부는 중앙지원단의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지방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최초에 시설비를 일회성으로 100% 지원하고, 설치 후 3년간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50% 그리고 그 이후에는 30% 수준으로 지원함
  - 설립 운영 3년차 이후에는 보조율이 축소됨으로써,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 정책이 적절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성과관리를 수행하고, 지방사회서비스원이 직영 시설들의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므로, 수행 주체들 사이의 관리체계는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화해야 할 사항들이 있음

- 지방사회서비스원 관리의 궁극적 책임은 광역지자체에 있으므로,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에서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의 목적과 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의 명

시화가 필요하며, 광역지자체의 지도 감독과의 관계 설정의 명시화가 필요함

- 지방사회서비스원이 직영 시설들의 성과관리 업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후에 개발되더라도, 사업계획에서 어느 정도의 구체화는 필요함
- 개별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정책 연구, 평가 인증, 교육훈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가능성은 존재함
  - 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는 수혜 대상자와 정책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측면이 있고, 기존에 두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해온 기관들이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원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사회서비스원의 위탁 사업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접어들면, 두 영역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원과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명시적인 협력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건설적이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실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적 쟁점을 건보공단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유하고, 현장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임
  - 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연구 및 서비스 개발 기능이 중요할 수 있음
    - 기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 영역도 기존의 사회복지재단 등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지만, 현장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방안 도출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소결) 동 사업은 기존 개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상에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은 비교적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기존의 개별 사회서비스 지원기관과의 시너지 발생 가능성은 있음. 다만, ① 재정소요 변동시 재원분담 계획과 ② 지방사회서비스원과 직영 시설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③ 개별 사회서비스 지원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명확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4. 전달체계의 적절성

- 동 사업으로 인해, 기존의 개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일정 부분 전달체계가 개선되는 효과는 있을 것임
  - 동 사업을 통해 개별 사회서비스별로 규정된 서비스 전달체계에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공공조직이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추가되는 변화를 가져옴
    - 동 사업의 경우, 광역 사회서비스원이 다수의 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되는 노하우를 이용하여, 서비스 전달과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함
    -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사회서비스원이 규제의 기능보다는 시설장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 주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 사회서비스원의 위탁사업이 확대될 경우, 일률적 통제 강화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임
      - \* 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기관의 경우, 중앙조직이 관리해야 하는 지방조직이 많다 보니, 사고 방지와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일률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관찰되고 있음
  -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재가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한 기관을 통해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을 것임
-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수요자의 접근 가능성과 관련하여, 동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쟁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기존의 개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자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운영 주체가 등장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수요자 접근 가능성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종합재가센터 모형의 경우는, 오히려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을 것임
- 사업 집행기관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사회서비스원의 현재 인건비와 인력 규모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중기적으로 고정

되어 있어서, 향후 증가할 수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 제도적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직영시설 운영과 지원 기능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통합적 커뮤니티 케어라는 궁극적인 서비스 전달 모형을 전인할 수는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동 사업의 목표에 포함된 사항은 아님
- 사회서비스원 및 위탁 운영 시설 종사자들의 이질성으로 인한, 조직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개연성이 있음
  - 장기요양, 보육 및 기타 재가서비스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의 다양한 직종의 정규직 종사자들을 고용해야 함
  -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직 내부에서의 처우 및 업무 분담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
  - 시범사업 현장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능하면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를 채용하고, 조직 내부에서는 가급적 정기적인 순환배치를 통해 직종 간의 이질성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함
-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인구 감소로 인해 보육서비스 대상 인구가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의 경우 전직이나 직종 변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원 자체의 인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탁시설의 종사자는 수요가 크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운용 계획의 수립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소결) 동 사업은 기존 개별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변화시키는 사업은 아니며, 새로운 공공기관이 위탁사업의 운영 주체로 등장하는 사업으로서, 기존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직영시설들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여, 새로운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질적 인력의 장단기 운용 계획을 적절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제V장 비용·효과성 분석

###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의 비용·효과성 추정 범위

- 통상적인 기관 설립 또는 시설 건립 사업인 경우, 기관 또는 시설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만 추정하고, 기관의 기능을 통해 창출되는 편익을 도출하면 되지만, 동사업의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짐
- 동 사업의 효과성 창출 기제는 사회서비스원의 지원 기능을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 주된 요소가 아니라, 직영사업의 근로조건 및 운영 방식의 개선으로, 직영 시설 종사자들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임
-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차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장기요양서비스, 보육서비스, 그리고 종합재가서비스 표준모형과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사업의 독립채산제 유지 가능성을 검토함
- 사업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동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서비스 품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임
- 시범사업이 추진된 이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기반한 효과성 추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2019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불가능함
- 차선으로, 기존 서비스 제공 기관들의 특성과 기관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제공기관의 근로 여건(정규직 비중)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 결과가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1.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 사업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업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성과지표와 목표치에 대한 정보는 아주 제한적으로 제시되었음

- 양질의 일자리 제공 성과는 직영시설 종사자 중 고정급 종사자 비율로 설정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 성과는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음
- 양질의 일자리가 고정급 정규직으로 정의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너무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문제와 직영사업의 독립채산제 유지 가능성과 충돌되는 지표이므로, 목표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서비스 품질 향상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조사로는 논란과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이미 앞에서 논의한 대로,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만족도 조사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사회서비스별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해당 지표의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여건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직영시설 종사자들이 직면하게 될 걱정 유인체계의 마련과 수가만으로는 운영이라는 예산제약 조건하에서 성과창출이 가능한지가 궁극적인 쟁점이 될 것임
-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음
  - 직영시설 종사자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의 안정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
  -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지원(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컨설팅, 행정부담 경감)을 통해 직영시설 종사자들이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직영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함
- 동 사업은 상기의 경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며, 상기의 여건이 실현될 경우, 서비스 품질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예산제약 조건하에서 직영시설이 운영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직영시설의 표준모형의 주요 가정들은 지켜지기가 용이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임

\*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표준모형이 제시하는 서비스 유형별 매칭 비율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임

\* 서울시의 사업은 생활임금 조례로 인해 인건비 자체가 표준모형보다 2019년의 경우 21.5%나 높기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소결) 동 사업의 기대효과인 종사자의 고용의 질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측정하는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선이 필요함. 동 사업은 개선된 근로조건, 사업 운영의 투명성, 지원기능 강화, 그리고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러한 성과가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예산제약 조건하에서 창출되어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예산제약 조건을 지킬 유인이나 규정이 설정되어야 할 것임

## 2. 비용추정의 적정성

- 연구진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총사업비에 대한 항목별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계획서상의 항목 이외에는 세부사항을 확인하지 못했음
- 따라서 면밀한 비용추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비용과 관련하여 세부항목이 구체적이지 않아 비용추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진 의견에 복지부는 포괄보조금 성격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항목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임
- 비용추정에 대한 복지부 계획과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진의 검토내용은 아래 절에 자세하게 제시하였으며, 검토 결과 요약은 아래와 같음
- 복지부가 제시한 소요 인력과 시설 및 사업비 규모의 가정을 바탕으로 비용을 재추정한 결과, 계획안의 중기('19~'23) 재정 소요 129,945백만원보다 소폭 감소한 114,940백만원으로 추정되었음
    -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시설비·운영비는 감소하였음
  - 현재 복지부의 사업 중기계획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과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인력을 고정하고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직영시설 증가를 고려할 때, 실제 총사업비는 상당한 크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복지부에서 제시한 사업비는 포괄 정액 보조금의 의미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세부 내역에 근거한 사업비 추정은 의미가 미약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이 있기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와의 재원 분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할 것임

#### 가. 사회서비스원 기관 설립·운영 비용

##### □ 사업계획안 개요

- 2019년에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1개와 지방사회서비스원 4개를 설립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후 지방사회서비스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는 8개, 2021년 12개, 2022년 17개가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

<표 7> 사회서비스원 개소수 현황 및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
|---------------|---------------|---------------|------------------|-------------------|-------------------|--------|---------|--------|
| 개소수<br>현황(누적) | 중앙            | 1개            | 1개               | 1개                | 1개                | 1개     |         |        |
|               | 지방<br>(시·도 院) | 4개            | 8개<br>(신규 4개 포함) | 12개<br>(신규 4개 포함) | 17개<br>(신규 5개 포함) | 17개    |         |        |
| 예산            | 국비            | 중앙            | 1,008            | 1,002             | 1,032             | 1,063  | 1,095   | 5,200  |
|               |               | 지방<br>(시·도 院) | 4,960            | 9,744             | 13,964            | 18,316 | 14,600  | 61,584 |
|               |               | 국비<br>합계(A)   | 5,968            | 10,746            | 14,996            | 19,379 | 15,695  | 66,784 |
|               | 지방비<br>(B)    | 지방<br>(시·도 院) | 2,960            | 7,744             | 11,964            | 19,102 | 21,372  | 63,142 |
| 합계(A+B)       |               | 8,928         | 18,490           | 26,960            | 38,481            | 37,067 | 129,926 |        |

자료: 복지부 2차 제출(19.3.29)자료 바탕으로 정리

-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 예정인 지방사회서비스원 및 중앙지원단 (1개)의 설립 및 연간 운영 비용을 인건비, 운영비(시설비 포함)로 나누어 추정함
- 보건복지부에 연차별 세부내역별 비용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2019년 예산 내역만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연차별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음
  - 따라서 지방사회서비스원의 경우 2019년에 개소하는 1개소를 기준으로 첫째 설립 관련 일회성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매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살펴 보고, 이를 기준으로 개소시기가 상이한 나머지 지방사회서비스원들의 비용을 적용하여 17개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비용을 산출하기로 함
  - 제출한 자료의 비용 산정 항목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3개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세부내역을 제시하였음. 중앙지원단은 전액 국비지원이며, 지방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 50%이나, 이 중 시설비는 설립 첫째 1개 소당 정액 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1)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표 8> '19년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1개소) 비용 산정 항목 및 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내 용                                                                                                                                  | 비고         |
|-----|-------|--------------------------------------------------------------------------------------------------------------------------------------|------------|
| 인건비 | 400   | 40백만원×10명×1개소 = 400백만원                                                                                                               | 국비 100% 지원 |
| 시설비 | 80    | 임대료 45백만원+보증금 35백만원 = 80백만원                                                                                                          | 국비 100% 지원 |
| 운영비 | 528   | 운영비(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및 교육, 평가 등) : 528백만원<br>-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 100백만원<br>-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홍보 : 100백만원<br>- 일반 운영비(인쇄비, 여비 등) : 328백만원 | 국비 100% 지원 |
| 합계  | 1,008 |                                                                                                                                      |            |

자료: 복지부 2차 제출(19.3.29)자료 바탕으로 정리

## 2) 지방사회서비스원

&lt;표 9&gt; '19년 지방사회서비스원(4개) 비용 산정 항목 및 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내 용                                                                                                                                                                                                                                                                                                                                                                               | 1개소당<br>금액 | 비고                                                 |
|------------|-------|-----------------------------------------------------------------------------------------------------------------------------------------------------------------------------------------------------------------------------------------------------------------------------------------------------------------------------------------------------------------------------------|------------|----------------------------------------------------|
| 인건비        | 1,600 | 40백만원×20명×4개소× 6/12개월 =16,000백만원                                                                                                                                                                                                                                                                                                                                                  | 400        | 국비 50%<br>지원                                       |
| 시설비        | 2,000 | 500백만원×4개소 = 2,000백만원                                                                                                                                                                                                                                                                                                                                                             | 500        | 국비<br>100%지원<br>(단년도 정액<br>지원)                     |
| 사업·<br>운영비 | 4,320 | 1,080백만원×4개소 = 4,320백만원<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안전점검 등 민간 제공기관 지원사업: 100백만원</li> <li>- 종사자 교육훈련: 185백만원</li> <li>-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 150백만원</li> <li>-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200백만원</li> <li>- 사회서비스원 사업 홍보: 100백만원</li> <li>- 지역 사회서비스자원 등 조사·통계 등 연구: 50백만원</li> <li>- 현장 모니터링(매뉴얼 마련 및 현장 모니터링 등): 50백만원</li> <li>- 일반운영비(여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 245백만원</li> </ul> | 1,080      | 국비 50%<br>지원<br>(3년간<br>국비50%,<br>3년 이후<br>국비 30%) |
| 합계         | 7,920 |                                                                                                                                                                                                                                                                                                                                                                                   | 1,980      |                                                    |

자료: 복지부 2차 제출(19.3.29)자료 바탕으로 정리

## 나. 비용 추정

- ☐ 다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조직별 업무분장안 및 인력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고,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인건비, 사업·운영비의 세부 항목을 검토하기로 함. 이를 바탕으로 비용을 재추정하고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비용추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보기로 함

## 1) 인건비

### 가) 적정 인원수 추정

#### 가-1) 적정 인원수(검토안)

- 보건복지부 계획안 : 중앙지원단(10명), 지방사회서비스원 1개소당(20명)이 '19~'23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함
  - 중앙지원단: 부단장(1명), 정책지원팀(3명), 사업지원팀(3명), 평가연구팀(3명)<sup>6)</sup>
  - 지방사회서비스원: 원장(1명), 경영지원팀(5명), 시설운영팀(7명), 민간지원팀(7명)
- 그러나, 실제 2019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지역의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조직과 인원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sup>7)</sup>
  - 서울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현재 기준으로 기획관리실 아래 종합재가서비스팀과 어린이집 운영팀으로 나누어 설계되어 있으며 총인원은 22명('19.4월 개소)
  - 대구사회서비스원은 현재 1실 3팀(경영기획실, 돌봄서비스지원팀, 시설운영지원팀, 정책연구개발팀)으로 총 23명('19.3월 개소)
  - 경기사회서비스원은 법인 설립 이후 원장 1명, 본부장 1명, 경영기획팀 4명, 시설운영팀 5명, 민간지원팀 8명으로 총 20명을 계획('19년 10월 개소 예정)
  -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원장 1명, 본부장 1명, 경영기획팀 5명, 시설운영팀 6명, 민간지원팀 4명, 복지정책연구팀 3명으로 총 20명을 계획('19년 6월 개소)
- 검토안: 본 연구에서는 17개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지역별 조직구성과 인력에 대한 적절성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 자료에 제시된 지방사회서비스원 최소 본부 인력 20명(원장 1명, 경영지원팀 5명, 시설운영팀 7명, 민간지원팀 7명)과 중앙지원단 10명(부단장 1명 정책지원팀 3명, 사업지원팀 3명, 평가연구팀 3명으로 구성)을

6)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 설치되어 있으며, 단장(1명), 부단장(1명), 정책지원팀(3명), 사업지원팀(3명), 평가연구팀(3명)으로 11명이나 단장은 겸직으로 되어 있어 인건비 산정 시 인원수에 미포함

7)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수준 등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준용하기로 함

-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4개 지역 이외에 대한 지방사회서비스원의 개조시기 및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이며, 시범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직의 구성이 상이함. 예를 들어, 대구와 경남의 경우 지역내 지자체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역복지재단이 없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정책연구팀을 두고 있음

#### 가-2) 추가발생 가능 비용 검토(소요 인원 변동 가능성)

##### ①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 적정성

##### □ 복지부 계획안의 지방院 본부 연차별 소요인원수에 대한 적정성 검토

-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이전 사회서비스원 설계 시 사전에 수행된 연구용역<sup>8)</sup>을 통해 1개소당 70명 인원의 규모로 설계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정인력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축소하여 인원 20명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함. 그러나, 이는 연차별 직영시설 운영개수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동일 인원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됨
- 소속시설 종사자 수 추정: 보건복지부는 '19년 개조하는 4개 지방院의 소속시설 종사자 수('22년 기준, 11,220명)를 제시하고, '20년 이후 개조하는 지방院의 계획은 설치지역이 확정되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20년 이후 소속시설 종사자 수는 매년 공모절차를 거쳐 지역이 확정된 후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와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이 수립가능하다고 답변<sup>9)</sup>함. 그러나, 소속시설 종사자 수를 추정해야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 소요인력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연구진은 아래 <표 10>과 같이 '20년 이후 개조하는 나머지 지방院의 소속시설 종사자 수를 추정하였음

8) 김윤수 외, 『정부주도 사회서비스 관리주체 설립운영 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7

9) '19.4.12 복지부 제출자료, '19.7.8 복지부 검토의견

&lt;표 10&gt; 2019~2023년 지방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종사자수 추정

(단위: 명)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소속<br>시설<br>종사자<br>수 | 19년개소 (4개)   | 1,729 | 4,216 | 7,569  | 11,184 | 13,989 <sup>1)</sup> |
|                      | 20년개소 (4개)   | -     | 1,729 | 4,216  | 7,569  | 11,184               |
|                      | 21년개소 (4개)   | -     | -     | 1,729  | 4,216  | 7,569                |
|                      | 22년개소 (5개)   | -     | -     | -      | 2,161  | 5,270                |
|                      | 소속시설 종사자수(B) | 1,729 | 5,945 | 13,514 | 25,130 | 38,012               |
| 지방院 소속시설 종사자수(A+B)   |              | 1,809 | 6,129 | 13,826 | 25,586 | 38,564               |

주: 1) '19년 개소하는 지방사회서비스원 4개소의 2023년 시설 종사자 수는 2022년 시설 종사자 수 11,220명을 기준으로 4년 연평균 증가인원인 2,805명을 더하여 13,989명으로 추정

1. 소속시설 종사자 수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4개소)에서 제시한 '19~22년의 소속시설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20년 이후에 개소하는 사회서비스원도 유사한 규모로 늘어나는 것을 가정
2. 연도별 인원은 누적인원을 나타냄

- 위의 <표 10>에서 보듯이 2023년의 지방사회서비스원 및 소속시설 종사자수는 사업 첫해에 비해 약 21배까지 늘어날 수 있음
-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은 아래 <표 11>과 같이 80명에서 340명으로 약 4.3배 증가

&lt;표 11&gt; 2019~2023년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 (복지부 계획안)

(단위: 명)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지방院<br>본부<br>인원<br>(복지부<br>계획) | 1개소당 인원       | 20    | 20    | 20     | 20     | 20     |
|                                | 19년개소 (4개)    | 80    | 80    | 80     | 80     | 80     |
|                                | 20년개소 (4개)    | -     | 80    | 80     | 80     | 80     |
|                                | 21년개소 (4개)    | -     | -     | 80     | 80     | 80     |
|                                | 22년개소 (5개)    | -     | -     | -      | 100    | 100    |
|                                | 지방院 본부인원수     | 80    | 160   | 240    | 340    | 340    |
| 연구진<br>추정                      | 지방院 소속시설 종사자수 | 1,809 | 6,129 | 13,826 | 25,586 | 38,564 |

- 한편, 복지부에서 추가로 제출(19.6.11)한 아래 <표 12> 사회서비스원 인력규모 추계(안)에 따르면 연차별계획 인원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22년 기준 사회서비스원 고용인력은 63,315명이며, 연구진이 추정한 25,586명의 2.4배에 해당

&lt;표 12&gt; 사회서비스원 인력 규모('22년 기준 추정)

(단위: 명, %)

| 구분            | 전체<br>종사<br>인력<br>① |             |                 | 서비스원<br>고용<br>② |             |                 | 비율<br>(%)<br>③/① |
|---------------|---------------------|-------------|-----------------|-----------------|-------------|-----------------|------------------|
|               |                     | 기존<br>(‘18) | 신규<br>(‘19~‘22) |                 | 기존<br>(‘18) | 신규<br>(‘19~‘22) |                  |
| < 합 계 >       | 612,627             | 460,093     | 152,534         | 63,315          | 18,802      | 44,513          | 12               |
| ① 시·도 서비스원 본부 | 350                 | -           | 350             | 350             | -           | 350             | 100              |
| ② 국공립 제공기관    | 125,495             | 59,783      | 65,712          | 47,216          | 4,978       | 42,238          | 38               |
| ③ 종합재가센터      | 481,621             | 397,074     | 84,547          | 13,500          | 13,500      | -               | 5                |
| ④ 공공센터        | 4,887               | 3,236       | 1,651           | 1,975           | 324         | 1,651           | 45               |
| ④ 기타 사업       | 274                 | -           | 274             | 274             | -           | 274             | 100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6.11)자료

-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이 소속시설 종사자수와 비례하여 변화할 필요는 없으나, 관리해야 할 지방사회서비스원과 인력(본부 및 시설종사자)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운영지원 및 서비스원 종사자 교육 업무<sup>10)</sup>를 담당하는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본부 인력 20명 고정에 대한 계획이 현실적인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②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 □ 중앙지원단의 인력의 적정성 검토

- 중앙지원단의 설립기('19년) 현재 인력 규모는 10명으로 정책지원팀, 평가·운영팀, 사업지원팀으로 구성되어있음
- 그러나, 향후 중앙지원단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증가와 함께 각 지방사회서비스원별로 업무와 직영시설 개소수가 늘어날 계획임을 감안할 때 인력의 증원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 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안내』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원 종사자의 교육이 계획되어 있음. 교육대상은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직원(80명) 및 소속시설종사자(400명) 등 약 480명으로 교육과정은 기본교육(사회서비스원 비전 및 가치관, 행정실무 기본 등), 직무교육(재무회계규칙, 행정실무 심화, 서비스 대상자 이해 및 상담기법 등), 성과위크숍(우수사례 공유 확산 및 시사점 등 개선사항 도출)로 구성되어 있음

## □ 유사사례 참고

-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중앙(1개소) - 광역(18개소) - 시군구(86개소)(2019년 3월 기준)으로 이어지는 체계와 유사하며, 중앙과 지방(시·도)의 역할 배분(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역할)도 유사하다고 판단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직규모와 구성을 살펴보면 총인원은 17명(2019년 5월 기준)<sup>11)</sup>이며, 센터장 1명, 보육사업지원팀 6명, 양육지원사업팀 4명, 센터운영지원팀 6명으로 구성

## □ 인원수 종합

- 보건복지부에서는 4개 시범지역에서 제시한 국공립시설 운영에 대한 '19~'23년까지의 대략적인 시설 종사자 수를 근거로 지방사회서비스원 본원의 적정인원에 대해 추정하고,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안정기단계의 중앙지원단의 적정인원을 재추정할 필요가 있음. 시설 종사자 수의 인력 증가에 따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본부의 연차별 적정인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lt;표 13&gt; 2019~2023년 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복지부 계획안)

(단위: 명)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지방院<br>본부<br>인원 | 1개소당 인원    | 20    | 20    | 20    | 20    | 20    |
|                 | '19년개소(4개) | 80    | 80    | 80    | 80    | 80    |
|                 | '20년개소(4개) | -     | 80    | 80    | 80    | 80    |
|                 | '21년개소(4개) | -     | -     | 80    | 80    | 80    |
|                 | '22년개소(5개) | -     | -     | -     | 100   | 100   |
|                 | 지방院 본부인원수  | 80    | 160   | 240   | 340   | 340   |
| 중앙지원단 인원        |            | 10    | 10    | 10    | 10    | 10    |

주: 연도별 인원은 누적인원을 나타냄

1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조직도([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10000/d1\\_10009/d1\\_11000.jsp](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10000/d1_10009/d1_11000.jsp)), 검색일자: 2019.5월 기준



나) 1인당 인건비 단가 추정 (검토안)

- 보건복지부 계획안: 사회서비스원 본부 1인당 인건비를 40,000천원으로 제시
  - 보건복지부는 인건비단가 추정시 유사기관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개 기관을 선정하여 2016년 말 기준으로 직원평균보수(42,135천원)를 참고하였으며, 신생조직임을 감안하여 이보다는 낮은 40,000천원으로 제시하였다고 답변함
  - 연구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인건비의 세부 구성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시도 산하 타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시도사회서비스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제시하지 않았음
- 연구진 인건비단가 적정성 검토
  - 지방사회서비스원별로 보수 및 직급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사업초기 단계로 아직 보수규정이 완성되지 않아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면밀히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유사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인건비 추정 시 기준연도는 2017년 말 기준으로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개 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과거 3개년 2015~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각 기관별 직원 평균 보수액을 산정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3개 기관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아래 <표 14>와 같이 직원 평균보수 1인당 연간 인건비는 43,255천원으로 추정함

&lt;표 14&gt; 유사기관의 직원 평균보수 1인당 연간 인건비 추정(검토안)

(단위: 천원)

| 구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한국보육진흥원     |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
|------------------|-------------|-------------|-------------|-------------|-------------|-------------|-------------|-------------|-------------|
|                  | 2015년<br>결산 | 2016년<br>결산 | 2017년<br>결산 | 2015년<br>결산 | 2016년<br>결산 | 2017년<br>결산 | 2015년<br>결산 | 2016년<br>결산 | 2017년<br>결산 |
| 1인당<br>평균<br>보수액 | 49,342      | 49,210      | 50,817      | 34,451      | 32,607      | 35,242      | 42,556      | 44,789      | 44,213      |
| 보정지수             | 102.9       | 101.9       | 100         | 102.9       | 101.9       | 100         | 102.9       | 101.9       | 100         |
| 보정지수<br>적용금액     | 50,773      | 50,145      | 50,817      | 35,450      | 33,227      | 35,242      | 43,790      | 45,640      | 44,213      |
| (15~17년)<br>평균   | 50,578      |             |             | 34,640      |             |             | 44,548      |             |             |
| 3개기관<br>평균       | 43,255      |             |             |             |             |             |             |             |             |

주: 1) 기준연도: 2017년 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managementItem.do>) 직원평균보수 현황자료(2019.5. 검색  
자료 기준)

- 복지부는 연구진의 인건비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방침을 근거로 세부 구성항목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부적인 비용산정 근거를 알 수 없었음
- 복지부가 인건비 세부항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 세부 구성항목은 보건복지부에서 참고하였던 유사기관의 직원평균보수 항목에 제시된 항목과 동일하게 인건비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음
- 기획재정부 알리오 자료에 의하면 직원 평균보수<sup>12)</sup>는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수당, 파견수당, 정액급식비 포함), 실적수당(시간외 근무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음
- 연구진은 보건복지부가 인건비 산정시 간접노동비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sup>13)</sup>이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2019.6.20,

12) 각 연도별 상시종업원 전체에 대해 지급된 보수액을 상시종업원수로 나눈 금액

13) 4대보험(월) = 통상임금×10.4%, 퇴직적립금(월)=통상임금(월)×8.3%,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권찬호 외(2018),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연구』, p. 105내용 참고).

1차 점검회의)하였음. 복지부는 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까지 고려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여 이들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인건비 단가 연구진 검토의견

- 인건비 단가 추정시 세부항목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비용항목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유사기관 사례 및 인건비단가 세부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인건비 단가에 포함된 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다) 인건비 종합

- 복지부는 유사기관들의 인건비를 참고할 때 금액은 직원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 세부항목에 있어서 유사기관들이 포함하지 않은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원들보다 보수액이 높은 원장(1명)의 보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직원들의 평균보수액은 유사기관에 비추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계획에는 인건비 상승률을 연간 3%로 가정하고 있는데, 연구진은 「2019년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대비 1.8% 인상을 적용하여 2019~2023년의 인건비 검토안의 금액을 산정함(<표 18>참고)

## ①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1개소 인건비

&lt;표 15&gt;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1개소) 인건비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 계획안                   | 검토안                     |
|----------------------------|-----------------------|-------------------------|
| ① 1인당 평균 보수액               | 40,000<br>(전년대비 3%상승) | 43,255<br>(전년대비 1.8%상승) |
| ② 소요인력                     | 10명 고정                | 10명 고정                  |
| '19~'23년<br>연간 인건비(①×②) 합계 | 2,123,654             | 2,242,023               |

주: 검토안에서 인건비 상승률은 「2019년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대비 1.8% 인상을 적용

## ② 지방사회서비스원 1개소당 인건비

&lt;표 16&gt; 지방사회서비스원 인건비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                         | 계획안                   | 검토안                     |
|---------------------------|-------------------------|-----------------------|-------------------------|
| 1개소                       | ① 1인당<br>평균 보수액         | 40,000<br>(전년대비 3%상승) | 43,255<br>(전년대비 1.8%상승) |
|                           | ② 소요인력                  | 20명 고정                | 20명 고정                  |
|                           | '19~'23년<br>연간 인건비(①×②) | 개소<br>시기별 상이          | 개소<br>시기별 상이            |
| '19~'23년 인건비 합계<br>(17개소) |                         | 48,544,647            | 50,843,620              |

## ③ '19~'23년 중앙지원단(1개) 및 지방 院(17개) 인건비 추정(계획안)

&lt;표 17&gt; 복지부 계획안 인건비

(단위: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
| 중앙      | 1인당 인건비<br>(3%상승가정)                         | 40,000                 | 41,200                  | 42,436    | 43,709     | 45,020     | -          |            |
|         | 인원<br>(10명 고정 가정)                           | 10                     | 10                      | 10        | 10         | 10         | -          |            |
|         | A. 인건비 합<br>(1인당 인건비×인원)                    | 400,000                | 412,000                 | 424,360   | 437,091    | 450,204    | 2,123,654  |            |
| 지방<br>院 | B                                           | ① 인원<br>(20명 고정 가정)    | 20                      | 20        | 20         | 20         | -          |            |
|         |                                             | ② 1인당 인건비<br>(3%상승 가정) | 40,000                  | 41,200    | 42,436     | 43,709     | 45,020     | -          |
|         |                                             | ③ 1개소 총인건비             | 800,000                 | 824,000   | 848,720    | 874,182    | 900,407    | 4,247,309  |
|         |                                             | ④ 19년 개소(4개)<br>인건비    | 1,600,000 <sup>1)</sup> | 3,296,000 | 3,394,880  | 3,496,726  | 3,601,628  | 15,389,235 |
|         | C                                           | ① 인원<br>(20명 고정 가정)    | -                       | 20        | 20         | 20         | 20         | -          |
|         |                                             | ② 1인당 인건비<br>(3%상승 가정) | -                       | 41,200    | 42,436     | 43,709     | 45,020     | -          |
|         |                                             | ③ 1개소 총인건비             | -                       | 824,000   | 848,720    | 874,182    | 900,407    | 3,447,309  |
|         |                                             | ④ 20년 개소(4개)<br>인건비    | -                       | 3,296,000 | 3,394,880  | 3,496,726  | 3,601,628  | 13,789,235 |
|         | D                                           | ① 인원<br>(20명 고정 가정)    | -                       | -         | 20         | 20         | 20         | -          |
|         |                                             | ② 1인당 인건비<br>(3%상승 가정) | -                       | -         | 42,436     | 43,709     | 45,020     | -          |
|         |                                             | ③ 1개소 총인건비             | -                       | -         | 848,720    | 874,182    | 900,407    | 2,623,309  |
|         |                                             | ④ 21년 개소(4개)<br>인건비    | -                       | -         | 3,394,880  | 3,496,726  | 3,601,628  | 10,493,235 |
|         | E                                           | ① 인원<br>(20명 고정 가정)    | -                       | -         | -          | 20         | 20         | -          |
|         |                                             | ② 1인당 인건비<br>(3%상승 가정) | -                       | -         | -          | 43,709     | 45,020     | -          |
|         |                                             | ③ 1개소 총인건비             | -                       | -         | -          | 874,182    | 900,407    | 1,774,589  |
|         |                                             | ④ 22년 개소(5개)<br>인건비    | -                       | -         | -          | 4,370,908  | 4,502,035  | 8,872,943  |
|         | F. 지방院 인건비 합계 <sup>2)</sup><br>(B④ ~ E④의 합) |                        | 1,600,000               | 6,592,000 | 10,184,640 | 14,861,087 | 15,306,920 | 48,544,647 |
|         | 연도별 인건비<br>(A+F의 합계)                        |                        | 2,000,000               | 7,004,000 | 10,609,000 | 15,298,178 | 15,757,123 | 50,668,301 |
|         | '19~'23년<br>중앙(1개)+지방(17개)<br>인건비 합         |                        | 50,668,301              |           |            |            |            |            |

주: 1) 복지부는 '19년 지방사회서비스원 4개의 개소시기를 하반기로 보고 6/12개월의 인건비로 산정

2) 지방사회서비스원 개소시기별 B~E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인건비를 계산함

## ④ '19~'23년 중앙지원단(1개) 및 지방 院(17개) 인건비 추정(검토안)

&lt;표 18&gt; 복지부 검토안 인건비 추정

(단위: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 중<br>앙                              | 1인당인건비<br>(1.8%상승가정)                        | 43,255     | 44,034    | 44,826     | 45,633     | 46,454     | -          |
|                                     | 인원<br>(10명 고정 가정)                           | 10         | 10        | 10         | 10         | 10         | -          |
|                                     | A. 인건비 합<br>(1인당 인건비×인원)                    | 432,550    | 440,336   | 448,262    | 456,331    | 464,545    | 2,242,023  |
| 지<br>방<br>院                         | ①인원<br>(20명 고정 가정)                          | 20         | 20        | 20         | 20         | 20         | -          |
|                                     | ②1인당 인건비<br>(1.8%상승가정)                      | 43,255     | 44,034    | 44,826     | 45,633     | 46,454     | -          |
|                                     | ③1개소 총인건비                                   | 865,100    | 880,672   | 896,524    | 912,661    | 929,089    | 4,484,046  |
|                                     | ④ 19년 개소(4개)<br>인건비                         | 1,730,200  | 3,522,687 | 3,586,096  | 3,650,645  | 3,716,357  | 16,205,985 |
|                                     | ①인원<br>(20명 고정 가정)                          | -          | 20        | 20         | 20         | 20         | -          |
|                                     | ②1인당 인건비<br>(1.8%상승가정)                      | -          | 44,034    | 44,826     | 45,633     | 46,454     | -          |
|                                     | ③1개소 총인건비                                   | -          | 880,672   | 896,524    | 912,661    | 929,089    | 3,618,946  |
|                                     | ④ 20년 개소(4개)<br>인건비                         | -          | 3,522,687 | 3,586,096  | 3,650,645  | 3,716,357  | 14,475,785 |
|                                     | ①인원<br>(20명 고정 가정)                          | -          | -         | 20         | 20         | 20         | -          |
|                                     | ②1인당 인건비<br>(1.8%상승가정)                      | -          | -         | 44,826     | 45,633     | 46,454     | -          |
|                                     | ③1개소 총인건비                                   | -          | -         | 896,524    | 912,661    | 929,089    | 2,738,274  |
|                                     | ④ 21년 개소(4개)<br>인건비                         | -          | -         | 3,586,096  | 3,650,645  | 3,716,357  | 10,953,098 |
|                                     | ①인원<br>(20명 고정 가정)                          | -          | -         | -          | 20         | 20         | -          |
|                                     | ②1인당 인건비<br>(1.8%상승가정)                      | -          | -         | -          | 45,633     | 46,454     | -          |
|                                     | ③1개소 총인건비                                   | -          | -         | -          | 912,661    | 929,089    | 1,841,751  |
|                                     | ④ 22년 개소(5개)<br>인건비                         | -          | -         | -          | 4,563,307  | 4,645,446  | 9,208,753  |
|                                     | F. 지방院 인건비 합계 <sup>1)</sup><br>(B④ ~ E④의 합) | 1,730,200  | 7,045,374 | 10,758,287 | 15,515,242 | 15,794,517 | 50,843,620 |
| 연도별 인건비<br>(A+F의 합계)                |                                             | 2,162,750  | 7,485,710 | 11,206,549 | 15,971,573 | 16,259,061 | 53,085,644 |
| '19~'23년<br>중앙(1개)+지방(17개)<br>인건비 합 |                                             | 53,085,644 |           |            |            |            |            |

주: 1) 지방사회서비스원 개소시기별 B~E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인건비를 계산함

## ⑤ '19~'23년 중앙지원단(1개) 및 지방 院(17개) 인건비 추정안 비교

&lt;표 19&gt; 2019~2023년 인건비 추정안 비교(계획안 및 검토안)

(단위: 천원)

| 구분         |                  |                     | 계획안                   | 검토안                     |
|------------|------------------|---------------------|-----------------------|-------------------------|
| A. 중앙(1개)  |                  |                     | 2,123,654             | 2,242,023               |
| B. 지방(17개) |                  |                     | 48,544,647            | 50,843,620              |
| 합계 (A+B)   |                  |                     | 50,668,301            | 53,085,644              |
| 비교         | 1인당<br>인건비단가     |                     | 40,000<br>(연 3%상승 가정) | 43,255<br>(연 1.8%상승 가정) |
|            | 소<br>요<br>인<br>력 | 1개소당 인원수<br>(지방院)   | 20명 고정                | 20명 고정                  |
|            |                  | 1개소당 인원수<br>(중앙지원단) | 10명 고정                | 10명 고정                  |

## 2) 운영비

-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세부항목은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되며 설립에 필요한 일회성 비용과 매년 사회서비스원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구분하여 추정함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가 있으며, 지방사회서비스원은 시설비, 사업·운영비가 있음
  - 연구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근거나 세부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사업계획안의 운영비 추정의 근거를 면밀히 파악할 수 없었음

## 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 ① 시설비 (검토안)

-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시설비는 보증금 35,000천원과 임대료 45,000천원임

- 단, 해당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산정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 현재 위치인 충청북도 오송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설치비를 재추정하였음
  - 정확한 임대료 산출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2015~17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 중 충청북도의 오피스 임대항목을 우선 검토함
  -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은 전국적으로 설치될 예정이고 시설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임대료 산출에는 전국평균을 사용함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과 「[부록]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활용함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실제 인력 구성은 10명으로 부단장 1명, 팀장 3명, 팀원 6명(대리 2명, 주임 1명, 사원 3명)임
    - 이는 현재 위탁으로 인한 겸임직 단장 및 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개별 운영 시에 단장실 또는 원장실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필요 면적은 최종 인원수에 단장급 기관장실을 추가로 고려하여 추정함
    - 본 조사에서는 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의 중앙공무원 계급별 사무실 면적을 중앙지원단 원장을 4급으로 하여 비교함<sup>14)</sup>
    - 기타 필요시설의 경우 청사시설 기준표에 근거하여 회의실, 창고, 문서고, 휴게실의 면적을 추가로 산출함
    - 단,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회의실 및 휴게실의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면적을 최소 규모로 추가함.
- 1개년 임차료에 앞서 산출한 2015~17년 오피스 빌딩 임대료 전국평균 상승률 5.46%를 적용, 2023년까지의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재추정한 시설비는 306,328천원과 같음
  - 전국 평균 임차료를 반영할 경우 보건복지부 제시안보다 다소 높은 비용이 발

1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문임기제 채용 공고 제 2019-5호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팀장을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에 재직할 자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매칭하였음



생활 것으로 보임(1년 임차료 48,872천원)

- 단, 충청북도 오송에서 고정 운영될 경우에는 시설비가 과대 계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음(1년 임차료 11,141천원),

## ② 운영비 (검토안)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비는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등 구입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홍보, 일반운영비(여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로 구성됨
  - 시설비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항목별 사업 내용 등의 근거나 세부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최종사업계획안의 운영비 추정의 근거를 면밀히 파악할 수 없었음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비는 기관 최초 설립에 따른 1회성의 자산취득비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구분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음
  - 최초 설치비용을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1억원을 10명으로 나눈 1인당 자산구입비 1천만원으로 설정하여 인력 수에 비례하여 반영하고 1회성의 비용으로 2019년에만 적용함<sup>15)</sup>
- 경상운영비 및 경상경비에 대한 정의는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 I』에서 확인할 수 있음
  -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sup>16)</sup>에 따르면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이 해당함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 I』는 공공기관 경상운영비를 “공공기관의 운영과 영업유지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 일반적으로 기관 운영과 관련된 행사,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나 임직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비,

15) 신규 인원에 대한 자산취득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2018.7.4.)에서 사용된 1인당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므로 과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16) 기획재정부,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p. 12

매식비나 명절선물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정의함

- 경상운영비의 대부분이 인력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성격을 가진 비용이므로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비를 유사기관의 1인당 경상운영비를 산출한 후 인력 수에 비례하여 추정함
- 인건비 추정에서 확인한 3개 유사 공공기관에 추가적으로 광역복지지재단 5개 소의 1인당 경상경비를 산출하여 평균금액(19,241,974원)을 1인당 경상운영비로 추정함

### ③ 추가발생 가능 비용 검토

- 시설비의 경우 정확한 시설비 산정을 위해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현재 설립 지역의 최근 오피스 임대료를 확인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중앙지원단 인력 규모 및 수행 업무에 필요한 임대 면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나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중앙지원단의 인력이 추가될 경우 임대료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시설비를 재추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운영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최초자산취득비와 경상경비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만 운영비의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인력이 증가할 경우 운영비도 인력 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필요 인력 수 및 수행 예정 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설비 및 운영비를 세부항목별로 책정근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방사회서비스원 증가에 따른 관리 인력 증가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추가로 발생 가능한 비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가 요구됨

## 나) 지방사회서비스원

### ① 초기설치비(시설비 검토안)

-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16일 제출자료에서 지방사회서비스원 시설비 5억원은 사회서비스원 본부 1개소와 종합재가센터 2개소 설치비 명목이며, 단년도 국비 100% 정액지원으로 시·도 여건에 따라 신축 또는 기존 공간 리모델링,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밝힘
- 이처럼 초기설치비 5억원은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면밀히 재추정할 수 없었음
- 따라서 해당 비용은 검토안에서도 동일하게 준용함

### ② 운영비(검토안)

-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는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등 구입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회서비스원 사업 홍보, 일반운영비(여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로 구성되어 있음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가 항목별 사업 내용 등의 근거나 세부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최종사업계획안의 운영비 추정의 근거를 면밀히 파악할 수 없었음
- 사회서비스원 최초 설치비용은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1억 5천만원을 인력 수 20명으로 나눈 1인당 7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설정하여 인력 수에 비례하여 최초 개소시에 1회 반영함<sup>17)</sup>
- 경상운영비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비용 추정에서 사용한 유사기관 사례를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를 재추정에 동일하게 사용함
- 단, 전산시스템 구축비의 경우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유지보수비용이 지출되므로 시스템 구축비용만 개별 추정하여 최초 개소 시에만 적용하였음

17) 지방사회서비스원 역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신규 인원에 대한 자산취득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2018.7.4.)에서 사용된 1인당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이므로 과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이를 제외한 경상운영비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에서 운영비에서 추정한 1인당 경상운영비 19,241,974원을 인력 수에 비례하여 산출함
-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음
- 연구진은 2015~17년 동안의 공공조달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용역 계약금액을 산출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을 추정함
- 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앞에서 산출한 경상운영비에 포함되므로 따로 산정하지 않음

### ③ 사업비(검토안)

-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사업비 세부항목은 시설안전점검, 현장점검 모니터링(매뉴얼 마련 및 현장 모니터링 등), 종사자 교육훈련, 조사 등 통계 연구비임
- 사업계획서 및 추가 자료에도 해당 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역시 면밀한 비용 추정이 불가능했음
- 사업비는 검토안에서도 동일하게 준용하기로 함
-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해와 역할 인식, 서비스 제공 등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추진을 위해 본부직원 80명 및 소속시설 종사자 400명 등 약 480명을 대상으로 7개 과정 33회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교육별 인원, 비용, 장소 등 세부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를 재추정할 수 없었음

### ④ 추가발생 가능 비용 검토

- 지방사회서비스원 또한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 항목에 대한 상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었음
- 시설비의 경우 추가로 설립되는 종합재가센터 비용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 5월 29일 면담에서 종합재가센터는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설립·운영할 예정이고, 시범사업 필수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제외한 종합재가센터의 추가 설립 비용은 지자체 자체 예산

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운영비의 경우 직영시설 종사자 수 증가로 인한 사회서비스원 본부 관리 인력 증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향후 인력이 증가할 경우 경상운영비는 인력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요구됨
  - 향후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스템 구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시스템을 본부직원이 아닌 시설 종사자도 사용할 경우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시설 종사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음
- 사업비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본부 인력 및 시설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사회서비스원 실시 예정 교육은 사회서비스원 본부 인력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1년에 1인당 최소 1회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교육훈련비는 시설 종사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예상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사자 수는 63,315명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므로 사업실행 이전에 교육훈련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세부 예산 지출 계획을 알 수 없는 현장점검 모니터링 사업과 시설안전점검 사업 비용은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수가 증가할 경우(현장점검 모니터링 사업), 점검 분야를 확대할 경우(시설안전점검 사업) 사업 규모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지방사회서비스원의 필요 인력 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내용, 사업별 비용, 목표치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비용을 재추정할 필요가 있음

#### 다. 비용검토 종합

- 연구진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총사업비에 대한 항목별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계획서상의 항목 이외에는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따라서 면밀한 비용추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계획에 기반한 검토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음
- 총사업비 검토 결과, 인건비, 중앙지원단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항목에 일부 차이를 보였음(아래 <표 20> ~ <표 24> 참고)
  - 인건비의 경우 1인당 인건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시설비 및 운영비의 경우 일부 감소하였음
  - 단, 중앙지원단 및 지방사회서비스원 인력 수 증가에 따른 총인건비 증가와 소속시설 종사자 수 증가에 따른 교육훈련비 증가를 가정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 제출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사업주무부처로서 직영시설 증가에 따른 인력 추가 고용, 민간 지원 사업 규모 확대, 소속시설 종사자 수 증가 등 예상 가능한 비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면밀한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포괄보조금 개념으로 사회서비스원 지원예산은 최소화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입장임<sup>18)</sup>
- 한편 지자체 현장조사 방문 면담 결과, 지자체에서는 향후 조직 및 인력확대 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을 증액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향후 현재 계획한 것보다 추가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복지부 및 재정당국 간의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8) '19.7.18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lt;표 20&gt;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계획안 및 검토안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       | 계획안                            |                    | 검토안                         |                                |            |
|----------------------|-------|--------------------------------|--------------------|-----------------------------|--------------------------------|------------|
|                      |       | 2019년<br>(n년)                  | 2019년 이후<br>(n+1년) | 2019년<br>(n년)               | 2019년 이후<br>(n+1년)             |            |
| 인건비<br>(중앙,지방 동일 적용) |       | 40백만원                          | 연3% 상승 가정          | 43.255백만원                   | 연1.8% 상승 가정                    |            |
| 중앙<br>지원단            | 소요 인력 | 10명 고정                         |                    | 10명 고정                      |                                |            |
|                      | 시설비   | 보증금<br>3,500만원,<br>임대료 4,500만원 | 매년 3% 상승<br>가정     | 보증금 3,500만원,<br>임대료 4,865만원 | 매년 5.46% 상승<br>가정              |            |
|                      | 운영비   | 경상운영비                          | 528백만원             | 전년대비 3% 상승                  | 1인당 19백만원                      | 전년대비 2% 상승 |
|                      |       | 자산취득비                          |                    |                             | 신규 인력 1인당<br>1천만원<br>(개소시 1회)  | 해당사항없음     |
| 지방<br>사회서비스원         | 소요 인력 | 20명 고정                         |                    | 20명 고정                      |                                |            |
|                      | 시설비   | 500백만원(개소시 1회)                 |                    | 500백만원(개소시 1회)              |                                |            |
|                      | 운영비   | 경상운영비                          | 695백만원             | 전년대비 3% 상승                  | 1인당 19백만원                      | 전년대비 2% 상승 |
|                      |       | 자산취득비                          |                    |                             | 신규 인력 1인당<br>750만원<br>(개소시 1회) |            |
|                      |       | 전산시스템<br>구축                    |                    |                             | 경상운영비에 포함                      |            |
|                      | 사업비   | 시설안전점검                         | 100백만원             | 전년대비 3% 상승                  | 100백만원                         | 전년대비 2% 상승 |
|                      |       | 현장<br>모니터링                     | 50백만원              | 전년대비 3% 상승                  | 50백만원                          | 전년대비 2% 상승 |
|                      |       | 조사통계<br>등 연구                   | 50백만원              | 전년대비 3% 상승                  | 50백만원                          | 전년대비 2% 상승 |
|                      |       | 교육 훈련                          | 185백만원             | 전년대비 3% 상승                  | 185백만원                         | 전년대비 2% 상승 |

주: 1. 경상운영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안에 제시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홍보, 일반 운영비,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비용이 포함됨, 검토안의 경상운영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유사기관의 1인당 경상경비의 평균값임  
 2. 자산취득비: 사회서비스원이 신규 기관임을 감안하여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설정하고 인력 수에 비례하여 반영함(개소 연도에만 반영)  
 3. 전산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중 유지보수 비용은 경상운영비에 포함되므로 개소 첫 해에만 시스템 구축비용인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비용을 적용함

&lt;표 21&gt; 보건복지부 계획안

(단위: 천원)

| 구분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중앙<br>지<br>원<br>단               | 인건비                           |     | 400,000     | 412,000    | 424,360    | 437,091    | 450,204    |
|                                 | 시<br>설<br>비                   | 보증금 | 35,000      | -          | -          | -          | -          |
|                                 |                               | 임대료 | 45,000      | 46,000     | 48,000     | 49,000     | 51,000     |
|                                 | 운영비                           |     | 528,000     | 544,000    | 560,000    | 577,000    | 594,000    |
|                                 | A.중앙합계                        |     | 1,008,000   | 1,002,000  | 1,032,360  | 1,063,091  | 1,095,204  |
| 지<br>방<br>원                     | 인건비                           |     | 1,600,000   | 6,592,000  | 10,184,640 | 14,861,087 | 15,306,920 |
|                                 | 설치비(최초1회)                     |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                                 | 운영비                           |     | 695,000     | 715,500    | 737,400    | 759,370    | 782,500    |
|                                 | 사업비                           |     | 385,000     | 396,500    | 408,600    | 420,630    | 433,500    |
|                                 | B.19년개소(4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6,320,000   | 4,448,000  | 4,584,000  | 4,720,000  | 4,864,000  |
|                                 | C.20년개소(4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           | 6,448,000  | 4,584,000  | 4,720,000  | 4,864,000  |
|                                 | D.21년개소(4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           | -          | 6,584,000  | 4,720,000  | 4,864,000  |
|                                 | E.22년개소(5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           | -          | -          | 8,400,000  | 6,080,000  |
|                                 | F.지방합계                        |     | 7,920,000   | 17,488,000 | 25,936,640 | 37,421,087 | 35,978,920 |
| 연도별 합계<br>(A+F의 합계)             |                               |     | 8,928,000   | 18,490,000 | 26,969,000 | 38,484,178 | 37,074,123 |
| '19~'23년중앙(1개)+<br>지방(17개)운영비의합 |                               |     | 129,945,301 |            |            |            |            |



&lt;표 22&gt; 검토안

(단위: 천원)

| 구분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중앙<br>지원단                       | 인건비                           |                         | 432,550     | 440,336    | 448,262    | 456,331    | 464,545    |
|                                 | 시설비                           | 보증금                     | 35,000      | -          | -          | -          | -          |
|                                 |                               | 임대료                     | 48,654      | 51,311     | 54,113     | 57,067     | 60,183     |
|                                 | 운영비                           | 자산취득비<br>(최초 1회)        | 100,000     | -          | -          | -          | -          |
|                                 |                               | 경상운영비 <sup>1)</sup>     | 143,765     | 144,957    | 146,081    | 147,130    | 148,098    |
|                                 | A.중앙합계                        |                         | 759,970     | 636,604    | 648,455    | 660,528    | 672,826    |
| 지방<br>원                         | 인건비                           |                         | 1,730,200*  | 7,045,374  | 10,758,287 | 15,515,242 | 15,794,517 |
|                                 | 설치비(최초 1회)                    |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                                 | 운영비                           | 시스템구축<br>(최초 1회)        | 145,844     | 148,761    | 151,736    | 154,771    | 157,866    |
|                                 |                               | 1인당<br>자산취득비<br>(최초 1회) | 7,500       | 7,650      | 7,803      | 7,959      | 8,118      |
|                                 |                               | 1인당경상운<br>영비            | 19,242      | 19,627     | 20,019     | 20,420     | 20,828     |
|                                 | 사업비                           |                         | 385,000     | 392,700    | 400,554    | 408,565    | 416,736    |
|                                 | B.19년개소(4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6,262,733   | 3,140,945  | 3,203,764  | 3,267,839  | 3,333,196  |
|                                 | C.20년개소(4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           | 6,347,988  | 3,203,764  | 3,267,839  | 3,333,196  |
|                                 | D.21년개소(4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           | -          | 6,434,948  | 3,267,839  | 3,333,196  |
|                                 | E.22년개소(5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           | -          | -          | 8,154,558  | 4,166,495  |
|                                 | F.지방합계                        |                         | 7,992,933   | 16,534,307 | 23,600,762 | 33,473,318 | 29,960,600 |
| 연도별 합계<br>(A+F의 합계)             |                               | 8,752,903               | 17,170,911  | 24,249,218 | 34,133,846 | 30,633,426 |            |
| '19~'23년중앙(1개)+<br>지방(17개)운영비의합 |                               |                         | 114,940,304 |            |            |            |            |

주: 1) 중앙지원단의 경상운영비는 중앙지원단 10명에 1인당 경상운영비를 적용한 총액에서 경상운영비 항목인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임

&lt;표 23&gt; 총사업비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계              |
|----------|----------------|--------------|---------------|---------------|---------------|---------------|----------------|
| 복지<br>부안 | 중앙인건비          | 400          | 412           | 424           | 437           | 450           | 2,124          |
|          | 중앙운영비          | 608          | 590           | 608           | 626           | 645           | 3,077          |
|          | <b>중앙계(A)</b>  | <b>1,008</b> | <b>1,002</b>  | <b>1,032</b>  | <b>1,063</b>  | <b>1,095</b>  | <b>5,201</b>   |
|          | 지방인건비          | 1,600        | 6,592         | 10,185        | 14,861        | 15,307        | 48,545         |
|          | 지방운영비          | 6,320        | 10,896        | 15,752        | 22,560        | 20,672        | 76,200         |
|          | <b>지방계(B)</b>  | <b>7,920</b> | <b>17,488</b> | <b>25,937</b> | <b>37,421</b> | <b>35,979</b> | <b>124,745</b> |
|          | <b>합계(A+B)</b> | <b>8,928</b> | <b>18,490</b> | <b>26,969</b> | <b>38,484</b> | <b>37,074</b> | <b>129,945</b> |
| 검토<br>안  | 중앙인건비          | 433          | 440           | 448           | 456           | 465           | 2,242          |
|          | 중앙운영비          | 327          | 196           | 200           | 204           | 208           | 1,136          |
|          | <b>중앙계(A)</b>  | <b>760</b>   | <b>637</b>    | <b>648</b>    | <b>661</b>    | <b>673</b>    | <b>3,378</b>   |
|          | 지방인건비          | 1,730        | 7,045         | 10,758        | 15,515        | 15,795        | 50,844         |
|          | 지방운영비          | 6,263        | 9,489         | 12,842        | 17,958        | 14,166        | 60,718         |
|          | <b>지방계(B)</b>  | <b>7,993</b> | <b>16,534</b> | <b>23,601</b> | <b>33,473</b> | <b>29,961</b> | <b>111,562</b> |
|          | <b>합계(A+B)</b> | <b>8,753</b> | <b>17,171</b> | <b>24,249</b> | <b>34,134</b> | <b>30,633</b> | <b>114,940</b> |

&lt;표 24&gt;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교

(단위: 백만원)

| <총사업비>   |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합계                          |
|----------|-----------|--------------|---------------|----------------------------|----------------------------|----------------------------|-----------------------------|
| 복지<br>부안 | <b>합계</b> | <b>8,928</b> | <b>18,490</b> | <b>26,960<sup>1)</sup></b> | <b>38,481<sup>2)</sup></b> | <b>37,067<sup>3)</sup></b> | <b>129,926<sup>4)</sup></b> |
|          | 국비        | 5,968        | 10,746        | 14,996                     | 19,379                     | 15,695                     | 66,784                      |
|          | 지방비       | 2,960        | 7,744         | 11,964                     | 19,102                     | 21,372                     | 63,142                      |
| 검토<br>안  | <b>합계</b> | <b>8,753</b> | <b>17,171</b> | <b>24,249</b>              | <b>34,134</b>              | <b>30,633</b>              | <b>114,940</b>              |
|          | 국비        | 5,324        | 9,904         | 13,449                     | 17,263                     | 12,833                     | 58,773                      |
|          | 지방비       | 3,429        | 7,267         | 10,800                     | 16,870                     | 17,800                     | 56,167                      |

주 1. 복지부안 : 복지부 2차 제출자료 p. 12 인용, 서비스원당 설치비 5억원(단년도 지원, 국비 100%), 운영비 9.4억원 지원(매년 3% 인상, 3년간 국비 50%, 3년 이후 국비 30%)

1)~4) <표 23>과 비교하여 '21년~'23년 합계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안의 인건비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임(<표 23>은 보건복지부 4차 제출자료 5.16 기준으로 3% 인상분을 절사 없이 적용하여 작성함)

### 3. 비용 대비 효과성

#### 가. 사업의 효과성

- (국공립시설 시장 점유율 증대 효과) 민간위탁된 국공립시설의 사회서비스원 직영이 사업의 방향이므로, 국공립시설이 서비스 시장 점유율을 직접적으로 늘리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 기존 지자체 재가시설은 106개소(0.7%), 지자체 장기요양시설은 101개소(1.9%), 국공립 어린이집은 3,602개소(9.2%)이며 2022년까지의 신축 인프라 물량(<표 25> 참조)을 포함(재가시설 약 1.6%, 장기요양시설 6.7%, 어린이집 10.1%)해도 국공립시설의 점유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음

<표 25> 사회서비스원 신규 인프라 설치계획(2019~2022년)

(단위: 개소)

| 구분    |        | 합계  | 2019 | 2020 | 2021 | 2022 |
|-------|--------|-----|------|------|------|------|
| 국공립시설 | 어린이집   | 408 | 102  | 102  | 102  | 105  |
|       | 장기요양기관 | 275 | 69   | 69   | 69   | 68   |
| 재가서비스 | 종합재가센터 | 135 | 8    | 24   | 40   | 63   |
| 계     |        | 818 | 179  | 195  | 211  | 233  |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019

- (민간 위탁 국공립시설이 사회서비스원 직영 관련 효과: 서비스 질 제고 효과 제외) 보건복지부 설명 자료에는 공공직영의 장점으로 시설 운영의 책임성 제고, 투명한 시설 운영, 종사자 고용불안 해소를 언급하고 있음
- 시설 운영의 책임성은 기존 민간위탁의 형태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보육의 경우, 최초 위탁 및 재위탁 과정에서 공개 경쟁 혹은 평가를 통한 위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최초 위탁 시 공개경쟁 80.9%, 재위탁 시 평가 후 재위탁 62.6%, 공개경쟁 20.7% (양미선, 2012)
- 투명한 시설 운영은 사회서비스원 체계가 직접 관리 감독하며 소속 시설의 노무, 회계 및 기타 행정업무를 처리해준다는 사업 방향이 실현되면 투명성 제고 효과 있음

- 종사자 불안 해소의 경우, 정규직 고용 인원의 증가 및 임금 인상 효과 등 고려할 수 있음
- 보육,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에 한해 고려해보면, 2022년 기준으로 보육 시설 8,610명, 공립 장기요양시설 28,798명, 종합재가센터 6,750명<sup>19)</sup>이 정규직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임(보건복지부 인력 규모 추계 기준)
  - 임금 인상의 경우, 개별 법령 혹은 지침을 통해 인건비 지급 기준이 없는 분야인 장기요양 분야에 한해서 근로자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표준모형 제시 임금 기준과 장기요양시설 경영실태조사 직무별 임금 평균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연 약 1,581억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민간 위탁 국공립시설의 사회서비스원 직영 효과: 서비스 질 제고 효과) 과거 미시 자료를 분석하여 민간 위탁 국공립시설이 직영 체계로 변화했을 때 서비스 질 제고 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
- (보육) 2015년 보육 실태 조사의 어린이집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37개 대리 변수<sup>20)</sup>(proxy variables)를 활용하여 두 집단(품질 우수, 품질 저조)로 구분하고 어린이집 직영 vs. 민간위탁의 서비스 품질 비교
    - 국공립 보육시설을 직영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26> 참조)

&lt;표 26&gt;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품질 구분

(단위: 개소, %)

| 품질 구분   | 국공립           |               |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br>단체 등   | 민간            | 직장            | 가정           |
|---------|---------------|---------------|--------------|---------------|---------------|---------------|---------------|--------------|
|         | 계             | 민간위탁          | 직영           |               |               |               |               |              |
| 0(bad)  | 152<br>(33.3) | 149<br>(34.1) | 3<br>(15.0)  | 148<br>(42.4) | 125<br>(46.8) | 431<br>(49.8) | 76<br>(32.3)  | 35<br>(66.0) |
| 1(good) | 305<br>(66.7) | 288<br>(65.9) | 17<br>(85.0) | 201<br>(57.6) | 142<br>(53.2) | 435<br>(50.2) | 160<br>(67.8) | 18<br>(34.0) |
|         | 457           | 437           | 20           | 349           | 267           | 866           | 236           | 53           |

주: 1. 2015년 보육실태 조사 어린이집 설문조사 활용 분석

2. 37개 품질 대리변수를 기반으로 k-means clustering 분석 방법 활용, 두 집단으로 분류

19) 종합재가센터 사회서비스원 고용예산인원 13,500명 중 시급제 고용 50% 제외

20) 수집 정보 중, 보육과정 운영, 보육활동 실시 정도, 교재교구의 충분성, 교재교구의 활용성을 나타내는 37개 변수 선정

- (장기요양) 2015~2017년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와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결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률 개선(고용보험 가입률 증가), 임금형태 개선(월급제 고용 비율 증가), 근속연수 증가 등 고용의 처우 개선을 나타내는 정보들이 시설의 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5단계 시설 등급을 종속변수로 하여 순위 로짓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모두 기관의 설립 유형 및 현원 기준 시설 규모가 시설 등급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관심사인 근로자 처우 관련 변수들은 추정 계수 부호의 방향도 해석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냄(본문 표 <V-56> 참조)
  - 근로자의 처우 관련 변수들이 시설 평가 등급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기관의 설립 유형 및 시설 규모 등 변수를 통제한 후 (설립 유형 × 시설규모) cell 안의 within-variation을 설명함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예상했으나,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음
  - 품질관련 변수만 선별한 종속변수를 활용한 일반 선형 회귀분석 결과 역시 인력 처우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음(본문 표 <V-57>, <V-58> 참조)
  - 특히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법인 설립 및 지자체 설립 기관의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시설 규모 또한 현원 규모가 클수록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재가 급여 시설 또한 시설 규모가 품질관련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 일련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서비스원의 시설 직영을 통해 제공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과정에 있어, 시설의 규모가 적지 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앞 절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시설 직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음
-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과) 시설 규모가 커지면서 근로자 숙련도 증가, 인력 효율적 배치, 투자 증가 등 다양한 채널로 인한 규모의 경제 발현 가능성 있음
  - 표준모형은 보육시설 50인/80인, 장기요양시설은 70인, 종합재가시설 100인/150인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사회서비스원 직영의 주요한 관리 대상이 될 것

- 의료 분야에서 치료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의료기관 규모의 증가가 환자의 치료 결과와 양(+)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 존재(Halm et al. 2002; Ross et al. 2010; Hentschker & Mennicken, 2018)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지만, Li et al.(2010)에서는 미국 요양 시설의 규모와 시설 입소자의 일상생활 활동 제약 정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음(-)의 상관관계를 밝힘
- Chen & Shea(2004)는 시설 규모가 커질수록 서비스 제공 단위당 소요 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 요양시설의 피보호자 증가당 요양시설의 비용 절감 탄력도는 0.15로 추정
- 장기요양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시설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점수(100점 만점: 2·3차 지표, A-B-C: 통합지표)를 시설 규모(시설 현원을 4분위로 분류) 및 설립 유형 변수를 이용해서 회귀분석하면 규모가 커질수록 평가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남

<표 27> 장기요양시설(시설급여) 규모별 평가 점수 현황

(단위: 개소, 점)

| 구분        | 기관수   |       | 평균점수  |       |      | 최고점수  |       | 최저점수  |       | 표준편차  |       |
|-----------|-------|-------|-------|-------|------|-------|-------|-------|-------|-------|-------|
|           | 2018년 | 2015년 | 2018년 | 2015년 | 증감   | 2018년 | 2015년 | 2018년 | 2015년 | 2018년 | 2015년 |
| 계         | 4,287 | 3,623 | 74.9  | 73.8  | ▲1.1 | 100   | 99.2  | 11.0  | 8.3   | 13.9  | 15.4  |
| 30인 이상    | 1,490 | 1,228 | 81.7  | 82.5  | ▼0.8 | 100   | 99.2  | 29.8  | 23.4  | 11.7  | 12.0  |
| 10~30인 미만 | 1,328 | 961   | 73.7  | 73.4  | ▲0.3 | 98.9  | 97.5  | 27.8  | 22.3  | 12.9  | 14.2  |
| 10인 미만    | 1,469 | 1,434 | 69.2  | 66.5  | ▲2.7 | 99.3  | 98.1  | 11.0  | 8.3   | 13.9  | 14.9  |

자료: 「2018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정기평가결과」, 2019.4.,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3-4-2>

&lt;표 28&gt;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점수 회귀 분석

| 구분                  | 2차지표                  | 3차지표                               | 통합지표                 |
|---------------------|-----------------------|------------------------------------|----------------------|
| 현원 4분위 (기준: 현원 1분위) |                       |                                    |                      |
| 2분위                 | 0.373***<br>(0.0385)  | <b>0.321</b><br><b>(0.182)</b>     | 0.521***<br>(0.0914) |
| 3분위                 | 0.584***<br>(0.0778)  | <b>0.539**</b><br><b>(0.178)</b>   | 0.487**<br>(0.160)   |
| 4분위                 | 0.508***<br>(0.0765)  | <b>0.721***</b><br><b>(0.179)</b>  | 0.457**<br>(0.159)   |
| 어린이집 설립 유형 (기준: 가정) |                       |                                    |                      |
| 국공립                 | 1.204***<br>(0.0865)  | <b>1.618***</b><br><b>(0.177)</b>  | 0.666***<br>(0.198)  |
| 민간                  | -0.729***<br>(0.0746) | <b>-0.656***</b><br><b>(0.179)</b> | -0.792***<br>(0.154) |
| 법인·단체 등             | -0.180<br>(0.123)     | <b>0.642**</b><br><b>(0.230)</b>   | -0.691**<br>(0.246)  |
| 사회복지법인              | -0.270**<br>(0.102)   | <b>0.438*</b><br><b>(0.214)</b>    | -0.929***<br>(0.207) |
| 직장                  | 1.261***<br>(0.161)   | <b>1.827***</b><br><b>(0.215)</b>  | 1.731**<br>(0.526)   |
| 협동                  | -0.448<br>(0.289)     | <b>-1.129*</b><br><b>(0.536)</b>   | -0.905<br>(0.571)    |
| N                   | 17,215                | <b>4,181</b>                       | 10,229               |

주: \*:  $p < 0.05$ , \*\*:  $p < 0.01$ , \*\*\*:  $p < 0.001$

## 나. 성과 대비 비용

-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성과를 얻기 위한 비용은 중앙 및 지역 사회서비스원 본부의 인력 및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밝힘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만으로 앞서 밝힌 일부 인력 처우 개선 및 규모의 경제 등에 의한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미임
  - 표준모형을 통한 서비스 제공 시, 시설은 독립채산이 가능하여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사업계획에 명시
- ☐ 표준모형에서 가정한 상황에 변화하는 경우 경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은 존재함
  - 장기요양 및 재가시설 등 사회서비스원 체계하에서 인건비 수준 등이 변화하는 경우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짐

□ (장기요양시설) 표준모형은 일반 장기요양수급자 : 치매 환자비율을 46:24로 가정하고, 관리운영비의 비중을 총급여수익 대비 20%로 예상했으나, 이 가정에서 벗어나는 경우 경영 수지 악화

- 시설에 따라 46:24가 아닌 수요를 대응해야 할 필요 존재
- '19년 70인 기준 장기요양시설 수가의 관리운영비는 23%로 설정, 감가상각비(2.5%)를 제외한 수치이지만, 대규모 자본재 투자 등 시설 투자 및 기타 비용 지출 소요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변동할 가능성 존재
- 장기요양 등급별 요양시설 점유율 변화에서 등급이 낮은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급여 수입이 감소할 가능성 존재

<표 29> 장기요양시설 표준모형 경영수지 민감도 분석

(단위: 명, 원, %)

| 구분      | 관리운영비 비율(총급여비용 대비) |      |            |       |            |       |
|---------|--------------------|------|------------|-------|------------|-------|
| 치매수급자 수 | 20                 |      | 23         |       | 25         |       |
| 0       | 2,425,318          | 1.84 | -1,538,836 | -1.16 | -4,181,605 | -3.16 |
| 2       | 3,250,225          | 2.44 | -740,112   | -0.56 | -3,400,337 | -2.56 |
| 4       | 3,753,035          | 2.81 | -253,262   | -0.19 | -2,924,127 | -2.19 |
| 6       | 2,254,967          | 1.68 | -1,777,514 | -1.32 | -4,465,834 | -3.32 |
| 8       | 3,044,531          | 2.25 | -1,013,012 | -0.75 | -3,718,040 | -2.75 |
| 10      | 3,869,438          | 2.84 | -214,288   | -0.16 | -2,936,772 | -2.16 |
| 12      | 4,372,258          | 3.2  | 272,572    | 0.2   | -2,460,552 | -1.8  |
| 14      | 5,197,165          | 3.78 | 1,071,296  | 0.78  | -1,679,284 | -1.22 |
| 16      | 3,376,990          | 2.45 | -764,840   | -0.55 | -3,526,059 | -2.55 |
| 18      | 4,201,897          | 3.02 | 33,884     | 0.02  | -2,744,791 | -1.98 |
| 20      | 4,991,461          | 3.57 | 798,386    | 0.57  | -1,996,997 | -1.43 |
| 22      | 5,673,285          | 4.04 | 1,458,568  | 1.04  | -1,351,243 | -0.96 |
| 24      | 6,319,188          | 4.48 | 2,083,970  | 1.48  | -739,509   | -0.52 |
| 26      | 4,821,100          | 3.39 | 559,698    | 0.39  | -2,281,237 | -1.61 |
| 28      | 5,323,920          | 3.73 | 1,046,558  | 0.73  | -1,805,017 | -1.27 |
| 30      | 6,292,487          | 4.38 | 1,984,382  | 1.38  | -887,689   | -0.62 |
| 32      | 6,938,391          | 4.81 | 2,609,784  | 1.81  | -275,955   | -0.19 |

자료: 장기요양시설 표준모형 시뮬레이션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저자 재계산



&lt;표 30&gt; 등급별 요양시설 점유율

(단위: 명, %)

| 구분             | 계       | 1등급    | 비중   | 2등급    | 비중   | 3등급 이하 | 비중   |
|----------------|---------|--------|------|--------|------|--------|------|
| 2014           | 90,204  | 12,677 | 14.1 | 26,256 | 29.1 | 51,271 | 56.8 |
| 2015           | 95,398  | 12,536 | 13.1 | 25,610 | 26.8 | 57,252 | 60.0 |
| 2016           | 104,161 | 13,580 | 13.0 | 27,091 | 26.0 | 63,490 | 61.0 |
| 2017           | 109,731 | 13,865 | 12.6 | 27,750 | 25.3 | 68,116 | 62.1 |
| 표준모형(2018년 기준) |         |        | 11.3 |        | 24.3 |        | 64.4 |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사회서비스원 요양시설 시범사업 표준모델(안)」에 근거하여 저자 작성

- (종합재가센터)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 및 장애인 활동 지원의 4개 서비스 분야의 수요 비중을 일정하게 가정하고 있으며, 이 가정에서 벗어나는 서비스수요를 대응해야 하는 경우 경영 수지의 악화 위험성 존재
- 예를 들어 수가가 높은 방문요양(시간당 16,690원)의 수요가 줄고 노인돌봄(시간당 12,960원)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는 동일하지만 수입이 줄어들어 경영수지 악화 가능성이 존재함
- 이와 같은 시설별 독립채산의 위험은 사업이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행정 비용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필요

&lt;표 31&gt; 장기요양 종류별 급여실적 변화(2013~2017년)

(단위: 명, %)

| 구분       | 계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
| 2017     | 578,867 | 317,195 | 68,590 | 11,485 | 74,081 | 5,421 |
| 전년대비 증가율 | 11.3    | 11.6    | 11.0   | 26.5   | 29.6   | (7.6) |
| 2016     | 520,043 | 284,232 | 61,812 | 9,077  | 57,165 | 5,866 |
| 전년대비 증가율 | 9.4     | 9.2     | 2.5    | 5.4    | 27.0   | (8.9) |
| 2015     | 475,382 | 260,252 | 60,285 | 8,613  | 45,006 | 6,436 |
| 전년대비 증가율 | 9.6     | 8.3     | (2.8)  | 12.4   | 28.3   | (8.3) |
| 2014     | 433,779 | 240,392 | 62,017 | 7,660  | 35,089 | 7,021 |
| 전년대비 증가율 | 8.6     | 7.2     | (5.3)  | 0.3    | 25.1   | (3.3) |
| 2013     | 399,591 | 224,233 | 65,509 | 7,634  | 28,051 | 7,264 |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3~2017년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lt;표 32&gt; 종합재가센터 표준모형 경영수지 민감도 분석

(단위: 명, 원, %)

| 배치인원 |      |      | 기본형       |      | 확대형       |       |
|------|------|------|-----------|------|-----------|-------|
|      | 방문요양 | 노인돌봄 | 경영수지      | 수익률  | 경영수지      | 수익률   |
| 상용직  | 18   | 2    | 7,751,145 | 4.34 | 1,547,395 | 0.62  |
|      | 17   | 3    | 7,242,515 | 4.07 | 1,038,765 | 0.42  |
|      | 16   | 4    | 6,733,829 | 3.79 | 530,080   | 0.21  |
|      | 15   | 5    | 6,225,085 | 3.52 | 21,335    | 0.01  |
|      | 14   | 6    | 5,716,278 | 3.24 | -487,471  | -0.2  |
| 단시간  | 26   | 3    | 7,751,145 | 4.34 | 1,547,395 | 0.62  |
|      | 25   | 4    | 7,333,187 | 4.11 | 1,129,438 | 0.45  |
|      | 24   | 5    | 6,915,754 | 3.89 | 712,004   | 0.29  |
|      | 23   | 6    | 6,498,869 | 3.66 | 295,119   | 0.12  |
|      | 22   | 7    | 6,082,560 | 3.44 | -121,190  | -0.05 |
|      | 21   | 8    | 5,666,855 | 3.21 | -536,895  | -0.22 |
| 시급제  | 43   | 5    | 7,751,145 | 4.34 | 1,547,395 | 0.62  |
|      | 42   | 6    | 7,455,445 | 4.18 | 1,251,695 | 0.5   |
|      | 41   | 7    | 7,159,602 | 4.02 | 955,852   | 0.38  |
|      | 40   | 8    | 6,863,612 | 3.86 | 659,863   | 0.26  |
|      | 39   | 9    | 6,567,473 | 3.7  | 363,723   | 0.15  |
|      | 38   | 10   | 6,271,180 | 3.54 | 67,430    | 0.03  |
|      | 37   | 11   | 5,974,729 | 3.38 | -229,020  | -0.09 |
|      | 36   | 12   | 5,678,118 | 3.22 | -525,632  | -0.21 |
|      | 35   | 13   | 5,381,342 | 3.05 | -822,408  | -0.33 |

자료: 종합재가시설 표준모형 시뮬레이션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저자 재계산

## 다. 비용효과적인 대안 검토

- ☐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대안으로는 현재의 민간 주도 전달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비스 제공 수가를 인상하여, 이를 통해 근로자 처우 개선 및 품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 그러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예산 자체로(2022년 기준 370억원) 유의미한 수가 인상에는 한계가 존재

-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센터 중심의 인건비 상승 및 처우 개선 등의 효과는 사회서비스원이 공익을 위해 운영에 직접 개입하여 직접적, 의도적으로 인건비를 인상시키는 효과이므로 민간에서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보육의 경우, 인건비 인상 효과가 없음에 유의
- 2013년 장기요양기관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가의 인상이 일부 종류의 장기요양 서비스 종사자에게 일부만 지급되고, 처우개선비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인건비 인상 의지를 저해하는 구축효과 발생(박노욱 외, 2013)
- 다만 위와 같은 검토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외 다른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는다는 강한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시설 경영수지 보전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입이 현실화되면 이 검토의 결론을 약화시킴

## 제Ⅵ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1. 종합평가표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 판단

- ☐ 본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경제사회 환경 분석은 83.3점,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85.8점, 비용-효과성 81.1점으로 대안 추진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음
- ☐ 평가자 3명은 원안 추진, 평가자 5명은 대안 추진으로 평가함

<표 33> 평가자별 종합평가점수

| 구분              | 평가자 1      | 평가자 2      | 평가자 3      | 평가자 4      | 평가자 5      | 평가자 6      | 평가자 7      | 평가자 8      | 종합점수         |
|-----------------|------------|------------|------------|------------|------------|------------|------------|------------|--------------|
| ■ 경제사회 환경 분석    | 83         | 89         | 79         | 87         | 87         | 80         | 75         | 86         | 83.3         |
| - 경제사회 여건분석     | 26         | 29         | 28         | 26         | 29         | 29         | 25         | 28         | 27.5         |
| - 경제사회 영향분석     | 27         | 25         | 24         | 26         | 28         | 29         | 25         | 26         | 26.3         |
| - 재정의 지속가능성     | 30         | 35         | 27         | 35         | 30         | 22         | 25         | 32         | 29.5         |
| ■ 사업설계의 적정성     | 89         | 88         | 86         | 87         | 87         | 85         | 76         | 88         | 85.8         |
| - 사업목표 적절성·시급성  | 23         | 24         | 24         | 24         | 24         | 17         | 15         | 24         | 21.9         |
| - 수혜대상의 적정성     | 23         | 24         | 19         | 24         | 24         | 24         | 23         | 24         | 23.1         |
| - 추진방법의 적정성     | 23         | 20         | 23         | 21         | 21         | 22         | 15         | 20         | 20.6         |
| - 전달체계의 적절성     | 20         | 20         | 20         | 18         | 18         | 22         | 23         | 20         | 20.1         |
| ■ 비용-효과성        | 79         | 87         | 69         | 86         | 87         | 87         | 74         | 80         | 81.1         |
| - 기대효과(성과)의 적절성 | 28         | 24         | 23         | 26         | 26         | 24         | 19         | 23         | 24.1         |
| - 비용추정의 적정성     | 21         | 26         | 19         | 25         | 26         | 29         | 27         | 23         | 24.5         |
| - 비용-효과성        | 30         | 37         | 27         | 35         | 35         | 34         | 28         | 34         | 32.5         |
| <b>총 점(300)</b> | <b>251</b> | <b>264</b> | <b>234</b> | <b>260</b> | <b>261</b> | <b>252</b> | <b>225</b> | <b>254</b> | <b>250.1</b> |

&lt;표 34&gt; 평가자별 종합의견

| 구분       | 평가자 1 | 평가자 2 | 평가자 3 | 평가자 4 | 평가자 5 | 평가자 6 | 평가자 7 | 평가자 8 | 종합 집계 |
|----------|-------|-------|-------|-------|-------|-------|-------|-------|-------|
| A. 원안 추진 |       | V     |       | V     | V     |       |       |       | 3     |
| B. 대안 추진 | V     |       | V     |       |       | V     | V     | V     | 5     |
| C. 사업재기획 |       |       |       |       |       |       |       |       | 0     |

## 2.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분과위 논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충족시킨다는 조건으로 동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에 도달함
  -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직영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평가결과 피드백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지자체와 부담주체, 분담 비율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
  -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인력(현 20명/개소)은 국비지원 총액의 한도 내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 동 사업에 대한 연구진의 정책 제언은 분과위원회에서 대부분 수용되었지만, 다시 한 번 요약한다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기존 사회서비스의 수가나 보조금 내에서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이 운영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동 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 직영 방식을 통해 기존 수가체제 내에서도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제고를 견인하는 것이므로, 예산 제약 조건을 지킬 유인체계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 둘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인원을 일정 인원으로 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나, 동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지자체 면담 결과, 직영시설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서비스원의 인력 및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기대가 있었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원분담 관련 쟁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원분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직영시설종사자들의 적절한 성과관리 및 유인체계 마련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 근로조건의 개선이 반드시 질 제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장기요양기관의 데이터 분석 결과와 조직의 성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듯이,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함. 종사자의 근로 개별기관의 리더십, 인센티브 구조, 경영관리가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함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제 I 장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제 II 장 기초자료 분석

제 III 장 경제사회 환경분석

제 IV 장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제 V 장 비용 효과성 분석

제 VI 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제 I 장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개요

## 제1절 사업의 목적과 추진 경과

### 1.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제고하는 데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영, 종사자 직접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급격한 확대 과정에서 공공 인프라의 구축 없이 민간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의존해온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을 통한 직영 서비스 제공 비중을 일정 정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동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을 광역지자체에 설립하고, 신규 국공립시설을 우선적으로 직영함으로써, 서비스 종사자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설립하여, 광역지자체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성과관리 및 직영사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원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에 설립될 사회서비스원은, 우선적으로 신설되는 국공립시설과 문제가 발생한 기존의 국공립시설을 직영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에게는 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표준모형(장기요양, 보육,

종합재가)을 기준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기존 제도에서 제공하는 수가와 보조금만으로 운영하는 체제<sup>21)</sup>를 갖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의 공공성 향상 및 일자리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동 사업의 추진 배경<sup>22)</sup>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을 증가 등의 사회구조 변화로 아동·노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 증가, 제공기관 및 종사자 확대 등 서비스 공급의 양적 확대를 달성하며 수요를 충족 해왔으나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분야에서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민간 중심으로 제공되어 양적인 확대는 달성하였으나 공공부문의 서비스 직접제공의 역할은 현저하게 미흡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셋째, 서비스 수요자들의 욕구 다양화 및 돌봄 필요대상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투명성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일자리 질적 수준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2. 사업 개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목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제공기관의 측면에서는 시설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품질을 향상하여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며, 종사자 측면에서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성 향상, 체계적인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향상,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로 서비스 선택권 확대, 지역 시설 간 격차 해소 등에

21) 보건복지부 2차 답변자료 p. 3 (19.3.29)

22) 보건복지부 5차 제출자료 (19.7.12)인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이해’ 및 ‘2019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따른 서비스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1-1] 사회서비스원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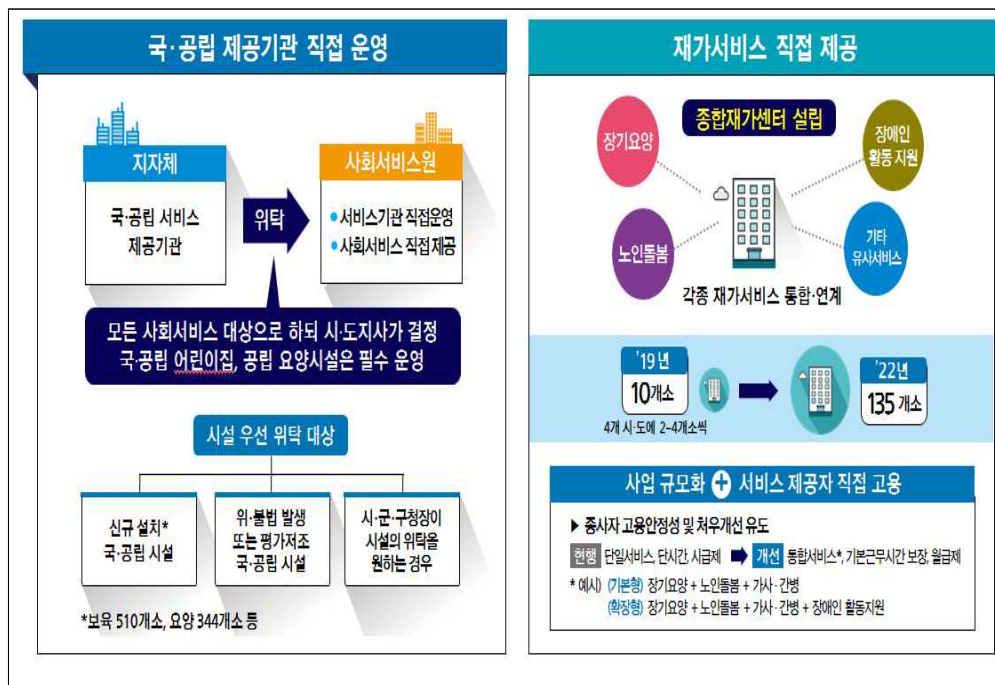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이해 PPT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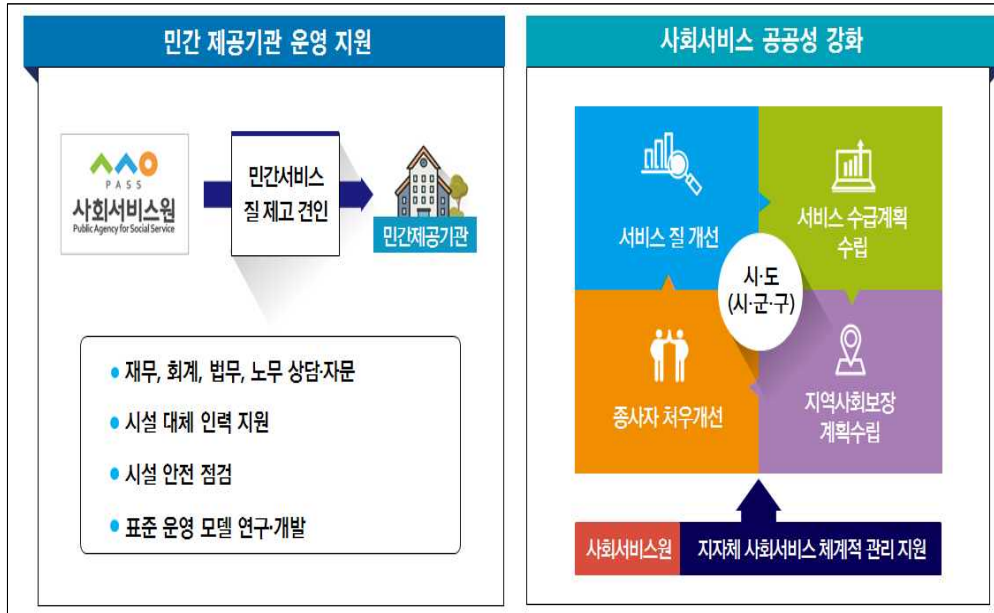
사회서비스의 기본 방향으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시설 간 서비스 격차 해소로 사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사업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자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통해 일자리 안정성 및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며, 민간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서비스원은 정부정책에 우선 협력하며, 지역사회 내 선도적인 서비스 제공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내용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 자료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국공립시설 등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둘째, 종합재가센터 설립 통해 재가서비스 직접 운영 및 표준운영모델을 개발, 셋째,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재무·회계·노무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상담 자문, 대체인력 파견 및 안전점검 등 실무지원, 넷째,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 질 제고, 수급계획 등에 관한 연구 수행과 지원, 다섯째, 기타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아래 [그림 1-2] 참고).

[그림 1-2]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업무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이해 PPT자료)

본 사업의 추진체계와 각 추진주체별 역할을 살펴보겠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관련 주체들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운영 계획 수립,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재정지원 등 추진,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등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완 요청, 시범사업 관리 및 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원, 업무지원 및 조정, 표준운영지침 마련, 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 기타 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등을 수행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역할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시범사업 운영,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지역 상황·여건 등 반영하여 사업범위 및 규모 확정하고 사업 추진, 복지부 시범사업 협의체 참여,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설 품질 향상 및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홍보 및 안내,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수렴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광역지방자치단체

와의 협업 등 정책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및 종사자 직접고용 통한 서비스 제공(운영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장 및 종사자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 민간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등 수행, 지자체 모니터링, 사업관리, 평가, 지도·점검 등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 3. 사업의 추진 경과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논의는 2000년대 말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를 최초로 구체화한 것은 좌혜경(2009)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부문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및 공급 인프라 구축방법으로 고용지원센터 산하에 ‘사회서비스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서비스센터’는 시군구와 연계하여 지역별 사회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사회서비스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을 하도록 설계되었다.

한편, 2010년 4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복지국가와 6·2지방선거 시민의제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사무처장은 ‘복지지방정부를 위한 6·2 지방선거의 바람직한 시민의제’에서 지방정부를 위한 5대 의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인력 공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사회서비스 인력 공단’은 지자체 소속으로 필요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지역 내의 방문보건, 지역주민 건강관리, 보육교사 지원, 보조교사 및 기간제 교사파견, 안전관련 사업, 교육 관련 사업, 사회복지사업,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각종 사회서비스 사업에 현금성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 인력 파견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제시되었다. 관련 기사<sup>23)</sup>는 ‘사회서비스 인력 공단’을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지칭하며 6·2 지방선거 전에 동 제안이 경기도 안산시 등 기초단체 후보자들이 받아들이면서 가시화되었으며, 인천 동구 남동구, 울산 북구 등이 해당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수준의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의 ‘3-1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국가<sup>24)</sup> 사회서비스 확충’, ‘3-18 간병인과 보육교사 등 가사·돌봄노동자 처우개선<sup>25)</sup>’당당하고 즐거운 여성일자리’ 항목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비스의 질과 공

23) 시사인, 2010.9.1. ‘일자리 늘리고 주민 삶도 개선하는 사회서비스공단’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200>, 검색일자: 2019.4.8.

24)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2012.12., p. 132.

25) 민주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2012.12., p. 156.

공성 제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공급구조 개선을 통한 보육교사 등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포함하였으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직접적인 공약은 없었다.

2013년 대통령 비서실의 ‘자활 촉진을 위한 복지-고용-여성가족제도 연계융합 활성화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지방조직인 ‘사회서비스센터’를 전국 고용센터 권역마다 설치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고용센터와 사회서비스센터를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2014년 서울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안정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사회서비스일자리 재단(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다.<sup>26)</sup> 이후 2016년 6월 서울시는 사회서비스 재정투입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및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실시하였다.<sup>27)</sup> 여기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재단’은 노인요양, 아동보육,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직접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 종사자 교육,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외에도 국회 정책토론회 및 정책보고서에서도 사회서비스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김철 2017, 석재은 2017, 오승은 2017, 한국노총 2016, 김태일 외 2018 재인용)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II-1.2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sup>28)</sup>, ‘II-2.7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공단을 통해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을 직영하는 체계 구축)’<sup>29)</sup>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17-2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졌으며 대선 공약과 같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6)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회서비스일자리 고용안정 및 서비스품질 제고방안 모색 회의」, 2014.8.5.

27)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 2016.6.

28)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2017.4., p. 68.

29)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2017.4., p. 17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국정자문위원회 주관으로 ‘사회서비스공단’에 대한 기본방향이 2017년 7월 발표되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자, 노동단체, 지자체, 현장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40여회 개최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이라는 명칭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하여 2018년 3월에서 7월 사이에 서비스 제공자, 전문가, 종사자 등 6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 포럼」을 16회 개최하고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자 했다.<sup>30)</sup> 또한 일자리위원회 산하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회에 걸쳐 사회서비스원 필수사업 범위, 국공립 시설 우선위탁 범위, 기존시설 종사자와의 고용관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임금 지급 기준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방안을 집중논의하고 주요 쟁점을 조정하였다. 관련하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018년 5월 4일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018년 10월 16일 발의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이 모두 2019년 4월 현재까지 계류 상태이다.

당·정·청의 협의를 거쳐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시범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고 최종 예산에 반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 내에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준비를 시작하였고 2018년 12월 제9차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하였다.

2019년 1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위탁기관을 공모하였고 2월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중앙지원단의 업무를 위탁하였다.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2018년 10월부터 ‘시범사업협의체’를 설치하고 2019년 1월 30일까지 5차에 걸쳐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2019년 1월 시범사업 대상을 공모하고 4개 광역지자체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를 선정하였다. 2019년 4월 현재 대구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하였고 다른 3개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2019.3.6.

&lt;표 1-1&gt; 사업의 추진 경위

| 기간             | 내 용                                                                        |
|----------------|----------------------------------------------------------------------------|
| '09            | 사회서비스센터 설치 제안 등 사회서비스원 관련 논의 시작                                            |
| '10.4.         | 6.2 지방선거 관련 시민사회의 '사회서비스 인력 공단' 설립 제안                                      |
| '13.9.         | 대통령 비서실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문기관인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지방조직인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논의          |
| '16.6.         | 서울시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 실시                                           |
| '17.5          |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포함                              |
| '17.7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국정과제(17-2)로 채택됨                                                |
| '17.7          | 국정자문위원회,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기본방향 발표                                                |
| '17.7~'18.2    | 보건복지부 관련 협회·노동단체·지자체 및 전문가 간담회(40회)                                        |
| '17.12.~'18.11 | 일자리위원회 산하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사회서비스 설립방안 집중 논의 및 주요 쟁점 조정 (11회)                    |
| '18.3.~7       | 보건복지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공감대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포럼 구성·운영                               |
| '18.5.         |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
| '18.10.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윤소하 의원 발의)                                      |
| '18.10.        | 보건복지부 내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추진단' 구성                                                 |
| '18.12.        | 제9차 일자리위원회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발표                                            |
| '19.1.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위탁 및 시범사업지역 공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선정) |
| '19.4          |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개소                                                              |

## 제2절 사업계획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과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시설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동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는 계속사업으로 중기재정지출 규모는 국비 668억원, 지방비 631억원으로 총 1,299억원이다. 동 재원은 중앙지원단은 국비 100%, 지방사회서비스원은 최초 시설비 1회 국비 100%, 설치 후 3년간 운영비에 대하여 국비 50%, 이후 국비 30%로 조달된다. 17개 광역지자체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4개소, 2021년 4개소, 2022년 5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은 20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기초지자체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며, 산하기관의 인사 노무관리, 민간기관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한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10명의 인력으로 사회서비스원 직영사업 운영기준 제시, 경영평가컨설팅 등 사회서비스원의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추진단을 설치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법령 제·개정 지원, 국비예산 지원, 서비스원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설립, 지도 감독한다. 광역지자체는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감독하고, 지역 총괄업무 수행, 지방비 매칭 등의 재정지원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쟁점은 제 II장 기초자료분석에서 다루기로 한다

###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계획

2019년 4월 기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사업계획은 소요예산을 제외하고는 2018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요구서 제출안과 동일하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소요예산의 변경사유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 시행시기가 하반기로 조정됨(평균 6개월 인건비를 지원하되, 지역별 개원시기에 따라 조정가능)에 따라 당해 인건비를 50%로 재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변경’ 절차가 요구되었으나 시범사업 기간 단축에 따른 단순 비용

감소임을 감안하여 기재부와 협의하에 총사업비 변경절차를 생략하였다. 소요예산의 변경 내역은 아래 <표 I-2>와 같고, 세부 내역은 <표 I-3>과 같다.

<표 I -2> 사회서비스원 소요 예산 변경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
| 예비<br>타당성<br>조사<br>제출안<br>(‘18) | 합계  | 105                                         | 184        | 270        | 385                     | 371                     | 1,315 |
|                                 | 국비  | 68                                          | 107        | 150        | 210                     | 174                     | 709   |
|                                 | 지방비 | 37                                          | 77         | 120        | 175                     | 197                     | 606   |
| 보건<br>복지부<br>자료<br>(‘19.4)      | 합계  | 89                                          | 184        | 270        | 385                     | 371                     | 1,299 |
|                                 | 국비  | 59                                          | 107        | 150        | 194                     | 157                     | 667   |
|                                 | 지방비 | 30                                          | 77         | 120        | 191                     | 214                     | 632   |
| 변경<br>내역                        |     | 국비<br>지방사회서<br>비스원<br>인건비<br>16억원→<br>8억 변경 | 변경내역<br>없음 | 변경내역<br>없음 | 국비<br>지방비<br>비율이<br>변경됨 | 국비<br>지방비<br>비율이<br>변경됨 |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 -3> 사회서비스원 2019년 소요 예산 변경 세부 내역

| 구분          | 예비타당성조사 제출안<br>(2018년)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br>(2019년 4월 12일)                                                                                                                                                                                                                                |
|-------------|------------------------------------------------------------------------------------------------------------------------------------------------------------------------------------------------------------------------------------------------------------------------------------------------------------------------------------------------------------------------------------------------------------------------|-------------------------------------------------------------------------------------------------------------------------------------------------------------------------------------------------------------------------------------------------------------|
| 2019년<br>예산 | 68억원                                                                                                                                                                                                                                                                                                                                                                                                                   | 59억원                                                                                                                                                                                                                                                        |
| 세부<br>내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설립·운영:<br/>1,008백만원</li> <li>○ 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br/>5,760백만원</li> <li>- 시설비: 500백만원×4개소 = 2,000백만원</li> <li>- 인건비: 40백만원×12명×4개소×50% =<br/>960백만원</li> <li>- 사업비: 605백만원×4개소×50% =<br/>1,210백만원</li> <li>-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 :<br/>전문요원 운영 320백만원(40백만원×8명),<br/>사업비 100백만원</li> <li>- 종사자 교육훈련: 185백만원</li> <li>- 운영비: 795백만원×4개소×50% =<br/>1,590백만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설립·운영 :<br/>1,008백만원</li> <li>○ 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li> <li>- 시설비: 500백만원×4개소=2,000백만원</li> <li>- 인건비: 40백만원×20명×6/12개월×4개소<br/>×50%=800백만원</li> <li>- 사업·운영비: 1,080백만원×4개소×50%=<br/>2,160백만원</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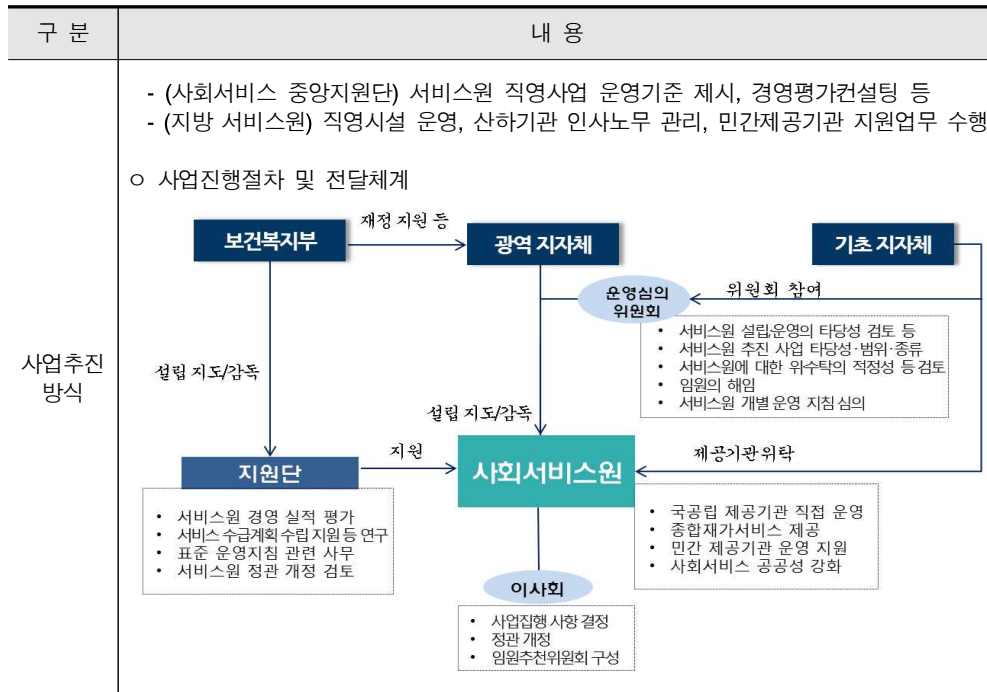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9년 4월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4>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계획서(예비타당성조사 제출안)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사업목적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제고                                                                                                                                                                                                                                                                                                                                                                                                                                                                                                                                                                                              |              |               |               |      |      |             |              |              |               |               |
| 사업대상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광역지자체                                                                                                                                                                                                                                                                                                                                                                                                                                                                                                                                                                                                                                |              |               |               |      |      |             |              |              |               |               |
| 사업기간        | 2019년~계속                                                                                                                                                                                                                                                                                                                                                                                                                                                                                                                                                                                                                                          |              |               |               |      |      |             |              |              |               |               |
| 사업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17개 시·도                                                                                                                                                                                                                                                                                                                                                                                                                                                                                                                                                                                                                           |              |               |               |      |      |             |              |              |               |               |
| 사업예산        | 중기재정지출 1,315억원('19년~'23년)<br>- 105억원('19년)→ 184억원('20년)→270억원('21년)→385억원('22년)→371억원('23년)                                                                                                                                                                                                                                                                                                                                                                                                                                                                                                                                                       |              |               |               |      |      |             |              |              |               |               |
| 재원조달        | - (중앙 지원단) 국비 100%<br>- (지방사회서비스원) 국비 50%(시설비 100%)+지방자치단체 50%                                                                                                                                                                                                                                                                                                                                                                                                                                                                                                                                                                                    |              |               |               |      |      |             |              |              |               |               |
| 사업내용        | <p>(사업내용)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종사자 직접 고용,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p> <p>○ (지원대상) 광역지자체 (연도별 단계적으로 설치, '22년까지 17개 시도에 설치, '19년에는 4개소 시범사업으로 설립·운영)</p> <table><tr><th>구분</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r><tr><td>개소수<br/>(누계)</td><td>4개소<br/>(4개소)</td><td>4개소<br/>(8개소)</td><td>4개소<br/>(12개소)</td><td>5개소<br/>(17개소)</td></tr></table> <p>* 중앙지원단 1개소는 19년 설치</p> <p>○ (사업규모) 중앙지원단 1개소 및 지방사회서비스원 17개소*</p> <p>○ (지원조건) (중앙)직접수행(국비100%), (지방)지자체보조(시설비 100%, 운영비 50%)</p> <p>※ 사업비 709억원(국비)은 중앙지원단 및 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비 예산이며, 개별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등은 추가적인 재원 투입없이 기존 수거나 보조금으로 운영</p>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개소수<br>(누계) | 4개소<br>(4개소) | 4개소<br>(8개소) | 4개소<br>(12개소) | 5개소<br>(17개소) |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      |             |              |              |               |               |
| 개소수<br>(누계) | 4개소<br>(4개소)                                                                                                                                                                                                                                                                                                                                                                                                                                                                                                                                                                                                                                      | 4개소<br>(8개소) | 4개소<br>(12개소) | 5개소<br>(17개소) |      |      |             |              |              |               |               |
| 비용          | <p>소요예산 산출근거: '19년 국고지원총액 68억원(시범사업)</p> <p>-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설립·운영: 1,008백만원</p> <p>* 인건비: 40백만원×10명×1개소 = 400백만원</p> <p>* 시설비: 임대료 45백만원+보증금 35백만원 = 80백만원</p> <p>* 운영비(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및 교육, 평가 등): 528백만원</p> <p>- 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 5,760백만원</p> <p>* 인건비: 40백만원×12명×4개소×50% = 960백만원</p> <p>* 시설비: 500백만원×4개소 = 2,000백만원</p> <p>* 사업비: 605백만원×4개소×50% = 1,210백만원</p>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br/>전문요원 운영 320백만원(40백만원×8명), 사업비 100백만원</li><li>· 종사자 교육훈련: 185백만원</li></ul> <p>* 운영비: 795백만원×4개소×50% = 1,590백만원</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확보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style="text-align: center;">&lt;소요 예산&gt; (단위: 억원)</p> <table><tr><th></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h>계</th></tr><tr><td>중앙정부</td><td>68</td><td>107</td><td>150</td><td>210</td><td>174</td><td>709</td></tr><tr><td>지방정부</td><td>37</td><td>77</td><td>120</td><td>175</td><td>197</td><td>606</td></tr><tr><td>계</td><td>105</td><td>184</td><td>270</td><td>385</td><td>371</td><td>1,315</td></tr></table>                                                                                                             |     | '19  | '20 | '21   | '22                                                                                                                               | '23 | 계     | 중앙정부                                                                                                               | 68 | 107   | 150                                                                   | 210 | 174 | 709 | 지방정부 | 37 | 77 | 120 | 175 | 197 | 606 | 계 | 105 | 184 | 270 | 385 | 371 | 1,315 |
|         |                                                                                                                                                                                                                                                                                                                                                                                                                                                                                                                                                                     | '19 | '20  | '21 | '22   | '23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정부    | 68                                                                                                                                                                                                                                                                                                                                                                                                                                                                                                                                                                  | 107 | 150  | 210 | 174   | 709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정부    | 37                                                                                                                                                                                                                                                                                                                                                                                                                                                                                                                                                                  | 77  | 120  | 175 | 197   | 606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05                                                                                                                                                                                                                                                                                                                                                                                                                                                                                                                                                                 | 184 | 270  | 385 | 371   | 1,3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인력    | ○ 지자체 21명 및 복지부 23명, 광역서비스원 총 80명('19년 시범사업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인력 4~9명 소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복지부) 관련 법·제도 마련, 운영모델 개발,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및 지원 등 추진할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구성·운영(23명, '18.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광역사회서비스원) 각 20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조직</th><th>주요업무</th><th>인원</th></tr><tr><td>경영지원팀</td><td>경영기획,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br/>홍보, 의회, 언론, 법무, 감사 등<br/>이사회 및 운영자문위원회 운영<br/>본부 인사(평가, 승진, 채용, 복무), 예산, 재무(재무, 회계, 계약, 기부금 등), 시스템 운영관리 등 정보화</td><td>5</td></tr><tr><td>시설운영팀</td><td>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행정지원<br/>직영시설 재정관리·조정 등<br/>직영시설 운영상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br/>직영시설 관리·재무·회계·경영·프로그램 컨설팅<br/>지역 커뮤니케이션 업무 지원</td><td>7</td></tr><tr><td>민간지원팀</td><td>시설 안전점검 지원<br/>각종센터 통합적 관리<br/>신설 시설 설치·인가 등 행정지원<br/>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td><td>8</td></tr><tr><td>총계</td><td></td><td>20</td></tr></table> | 조직  | 주요업무 | 인원  | 경영지원팀 | 경영기획,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br>홍보, 의회, 언론, 법무, 감사 등<br>이사회 및 운영자문위원회 운영<br>본부 인사(평가, 승진, 채용, 복무), 예산, 재무(재무, 회계, 계약, 기부금 등), 시스템 운영관리 등 정보화 | 5   | 시설운영팀 |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행정지원<br>직영시설 재정관리·조정 등<br>직영시설 운영상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br>직영시설 관리·재무·회계·경영·프로그램 컨설팅<br>지역 커뮤니케이션 업무 지원 | 7  | 민간지원팀 | 시설 안전점검 지원<br>각종센터 통합적 관리<br>신설 시설 설치·인가 등 행정지원<br>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 | 8   | 총계  |     | 20   |    |    |     |     |     |     |   |     |     |     |     |     |       |
| 조직      | 주요업무                                                                                                                                                                                                                                                                                                                                                                                                                                                                                                                                                                | 인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지원팀   | 경영기획,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br>홍보, 의회, 언론, 법무, 감사 등<br>이사회 및 운영자문위원회 운영<br>본부 인사(평가, 승진, 채용, 복무), 예산, 재무(재무, 회계, 계약, 기부금 등), 시스템 운영관리 등 정보화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운영팀   |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행정지원<br>직영시설 재정관리·조정 등<br>직영시설 운영상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br>직영시설 관리·재무·회계·경영·프로그램 컨설팅<br>지역 커뮤니케이션 업무 지원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지원팀   | 시설 안전점검 지원<br>각종센터 통합적 관리<br>신설 시설 설치·인가 등 행정지원<br>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                                                                                                                                                                                                                                                                                                                                                                                                                                                                                               |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보방안) 지자체 및 복지부는 자체인력 활용, 광역서비스원은 광역지자체별 공개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추진 방식 | ○ 사업수행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추진단)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법령 제·개정 지원, 국비예산 지원, 서비스원 사업모델 개발</li><li>- (광역 지자체) 광역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감독, 지역 총괄업무 수행과 지방비 매칭 지원</li><li>- (기초 지자체) 제공기관 운영 위탁(기초 → 광역 사회서비스원)</li></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서

## 2.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시범사업 계획

2019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시범사업 대상은 2019년 1월 25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로 선정되었다. 동 시범사업은 개소당 평균 12.4억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① 국공립시설 위탁운영, ②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③ 민간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 ④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지원을 실시한다. 아래 지자체별 시범사업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9년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2019.3)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 가. 서울특별시

2019년 4월 현재,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4월 내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타 지자체와 달리 다양한 모델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시설 종사자 임금 향상을 위한 추가재원을 투입한다는 특징이 있다.

&lt;표 1-5&gt;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개요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직구성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내 사회서비스혁신 추진반 3팀 12명<br>사회서비스원 1실 4팀 22명 (민간채용 18명, 공무원 파견 4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부서명</th><th>인원 수</th><th>역할 및 기능</th></tr><tr><td>원장</td><td>1</td><td>■ 사회서비스원 대표, 경영총괄</td></tr><tr><td>기획관리실장</td><td>1</td><td>■ 본부 운영 및 관리 총괄</td></tr><tr><td>기획예산팀</td><td>7</td><td>■ 기획 예산, 시스템 운영, 인사, 감사, 후생복지, 민원처리 등</td></tr><tr><td>운영지원팀</td><td>7</td><td>■ 민간 지원, 서비스품질관리 및 교육훈련</td></tr><tr><td>종합재가 서비스팀</td><td>3</td><td>■ 센터별 사업계획 수립, 품질관리, 회계, 경영컨설팅</td></tr><tr><td>어린이집 운영팀</td><td>3</td><td>■ 어린이집 위수탁,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td></tr></table> | 부서명                                                                                                                                                                                                                                                                                                                                                                              | 인원 수                                  | 역할 및 기능 | 원장                    | 1     | ■ 사회서비스원 대표, 경영총괄 | 기획관리실장 | 1      | ■ 본부 운영 및 관리 총괄 | 기획예산팀 | 7  | ■ 기획 예산, 시스템 운영, 인사, 감사, 후생복지, 민원처리 등 | 운영지원팀                 | 7    | ■ 민간 지원, 서비스품질관리 및 교육훈련           | 종합재가 서비스팀 | 3 | ■ 센터별 사업계획 수립, 품질관리, 회계, 경영컨설팅 | 어린이집 운영팀 | 3 | ■ 어린이집 위수탁,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 |     |      |  |
|                                                                                                                                        | 부서명                                                                                                                                                                                                                                                                                                                                                                                                                                                                                 | 인원 수                                                                                                                                                                                                                                                                                                                                                                             | 역할 및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장                                                                                                                                                                                                                                                                                                                                                                                                                                                                                  | 1                                                                                                                                                                                                                                                                                                                                                                                | ■ 사회서비스원 대표, 경영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관리실장                                                                                                                                                                                                                                                                                                                                                                                                                                                                              | 1                                                                                                                                                                                                                                                                                                                                                                                | ■ 본부 운영 및 관리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예산팀                                                                                                                                                                                                                                                                                                                                                                                                                                                                               | 7                                                                                                                                                                                                                                                                                                                                                                                | ■ 기획 예산, 시스템 운영, 인사, 감사, 후생복지, 민원처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지원팀                                                                                                                                                                                                                                                                                                                                                                                                                                                                               | 7                                                                                                                                                                                                                                                                                                                                                                                | ■ 민간 지원, 서비스품질관리 및 교육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재가 서비스팀                                                                                                                                                                                                                                                                                                                                                                                                                                                                           | 3                                                                                                                                                                                                                                                                                                                                                                                | ■ 센터별 사업계획 수립, 품질관리, 회계, 경영컨설팅        |         |                       |       |                   |        |        |                 |       |    |                                       |                       |      |                                   |           |   |                                |          |   |                         |     |      |  |
| 어린이집 운영팀                                                                                                                               | 3                                                                                                                                                                                                                                                                                                                                                                                                                                                                                   | ■ 어린이집 위수탁,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관리                                                                                                                                   | ○ (재무관리) ①본부 내 감사기능 도입, ②산하기관 계약·회계업무 지원, ③내부 회계규정 제정 및 운영<br>○ (종사자 자질) 사업별 제공인력 직무분석을 통한 직급 교육훈련체계 구축, 경력개발프로그램 도입, 승급제도 운영 등으로 동기부여<br>○ (서비스 질) 서비스 체계분석을 통한 표준운영 모델 구축, 직무매뉴얼 개발, 사각지대 대상자 지원 및 이용자 특화 서비스 개발<br>○ (평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경영평가, 서비스 품질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사업내용                                                                                                                                                                                                                                                                                                                                                                                                                                                                          | ① 총괄<br>○ (사업규모) 국·공립시설 5개소(준비), 종합재가 4개소, 민간지원사업 1개<br>○ (종사자 등) 종사자 수 550명, 이용자 수 약 1,500명<br><br>②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br>○ (내용) 어린이집 5개소(신축), 종사자 수 70명 예상<br>* 요양시설(1개소)은 2020년 신축 및 위탁운영 예정<br>○ (시기) '19년 하반기 운영준비 → '20.3월 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구분</th><th>시설유형</th><th>시설 수</th><th>종사자 수</th><th>이용자 수</th><th>운영시기</th></tr><tr><td rowspan="2">국공립 시설</td><td>어린이집</td><td>5</td><td>70</td><td>350</td><td>'19년 하반기 운영준비→'20년 개원</td></tr><tr><td>요양시설</td><td colspan="4">2019년 확충시설 없음 (2020년 신축 1개소 운영예정)</td></tr><tr><td colspan="2">소계</td><td>5개소</td><td>70명</td><td>350명</td><td></td></tr></table> | 구분                                    | 시설유형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이용자 수             | 운영시기   | 국공립 시설 | 어린이집            | 5     | 70 | 350                                   | '19년 하반기 운영준비→'20년 개원 | 요양시설 | 2019년 확충시설 없음 (2020년 신축 1개소 운영예정) |           |   |                                | 소계       |   | 5개소                     | 70명 | 350명 |  |
|                                                                                                                                        |                                                                                                                                                                                                                                                                                                                                                                                                                                                                                     | 구분                                                                                                                                                                                                                                                                                                                                                                               | 시설유형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이용자 수 | 운영시기              |        |        |                 |       |    |                                       |                       |      |                                   |           |   |                                |          |   |                         |     |      |  |
| 국공립 시설                                                                                                                                 | 어린이집                                                                                                                                                                                                                                                                                                                                                                                                                                                                                | 5                                                                                                                                                                                                                                                                                                                                                                                | 70                                    | 350     | '19년 하반기 운영준비→'20년 개원 |       |                   |        |        |                 |       |    |                                       |                       |      |                                   |           |   |                                |          |   |                         |     |      |  |
|                                                                                                                                        | 요양시설                                                                                                                                                                                                                                                                                                                                                                                                                                                                                | 2019년 확충시설 없음 (2020년 신축 1개소 운영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5개소                                                                                                                                                                                                                                                                                                                                                                              | 70명                                   | 350명    |                       |       |                   |        |        |                 |       |    |                                       |                       |      |                                   |           |   |                                |          |   |                         |     |      |  |
| ③ 종합재가센터<br>○ (내용) 3개 유형의 종합재가센터 4개소 운영(신축), 종사자 480여명<br>* (유형1) 재가방문 + 노인돌봄,<br>(유형2) 재가방문 + 노인돌봄 + 주야간보호<br>(유형3) 재가방문+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내 용

2019년 사업내용

○ (시기) '19.4~6월 설립준비 → '19.7월 개소 예정(지역미정)

| 구분       | 시설유형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이용자 수  | 개소시기      | 지역        |
|----------|------|------|-------|--------|-----------|-----------|
| 종합 재가 센터 | 유형1  | 1    | 66    | 200    | '19.7월 개소 | 자치구 협의 예정 |
|          | 유형2  | 1    | 80    | 240    | '19.7월 개소 |           |
|          | 유형3  | 2    | 334   | 698    | '19.7월 개소 |           |
| 소계       | 3개   | 4개소  | 480명  | 1,138명 | -         | -         |

④ 민간지원사업

○ (내용) 민간기관에 회계, 노무 등 컨설팅 지원(본부인력 3명 활용)

○ (시기) '19. 상반기 운영준비 → '19. 10월 서비스 개시

| 사업유형  | 착수시기    | 종사인원 | 사업내용                     |
|-------|---------|------|--------------------------|
| 경영컨설팅 | '19.10. | 3    | ■ 민간기관 회계, 법무, 노무 컨설팅 지원 |

2019년 소요예산

○ (사업기간) '19.4~12월(총 9개월)

○ (예산규모) 총 83.7억원(국비 12.4억원 + 지방비 71.3억원)

\* 지방비 확보계획: '18.12월 본예산 통해 확보 완료

(단위: 백만원)

| 구분  | 국비  | 지방비   | 계      | 비고           |            |
|-----|-----|-------|--------|--------------|------------|
| 설치비 | 500 | 3,711 | 4,211  | 기본재산 10억원 포함 |            |
| 운영비 | 인건비 | 290   | 2,645* | 2,935        | 예비비 7억원 포함 |
|     | 사업비 | 280   | 581    | 861          |            |
|     | 운영비 | 170   | 194    | 364          |            |
|     | 계   | 1,240 | 7,131  | 8,371        |            |

\* 생활임금 지원금액 포함

확대목표 ('19~'22년)

○ (소속시설) '19년 9개소, 종사자 550명 → '22년 45개소, 3,944명

| 사업유형              | '19~'22년 계 |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
|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 계                 | 45         | 3,944 | 9    | 550 | 10   | 745 | 12   | 1,309 | 14   | 1,340 |
| 종합재가 센터 (요양시설 포함) | 25         | 3,664 | 4    | 480 | 5    | 675 | 7    | 1,239 | 9    | 1,270 |
| 국공립 어린이집          | 20         | 280   | 5    | 70  | 5    | 70  | 5    | 70    | 5    | 70    |

\* 지자체 정책환경 변화 및 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1차 제출자료.(2019.3.25), 『2019년 시도별 시범사업계획서』

## 나.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2019년 4월 1일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을 개소하였다. 대구광역시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노인·노숙·정신 등)을 운영하고 기존 문제 시설을 수탁하여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다.

&lt;표 1-6&gt;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개요

| 구 분           | 내 용                                                                                                                                                                |                |                                                                                                                                                                                         |
|---------------|--------------------------------------------------------------------------------------------------------------------------------------------------------------------|----------------|-----------------------------------------------------------------------------------------------------------------------------------------------------------------------------------------|
| 조직구성          | ○ (지자체) 보건복지국·복지정책관·희망원 혁신대책TF(6명)<br>○ (서비스원) 1실 3팀(24명, 공무원 파견 3명)                                                                                               |                |                                                                                                                                                                                         |
|               | 부서명                                                                                                                                                                | 인력             | 주요 역할 및 기능                                                                                                                                                                              |
|               | 원장                                                                                                                                                                 | 1              | 서비스원 총괄                                                                                                                                                                                 |
|               | 경영<br>기획실                                                                                                                                                          | 5<br>(3<br>파견) | ■ 운영계획 수립, 대구시, 구·군, 의회 협력<br>■ 법인 출범 준비, 이사회, 각종 제규정 관리<br>■ 홍보, 언론, 법무, 감사, 전산시스템<br>■ 정관,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개정 및 재산 관리<br>■ 인사(임면, 승진, 근무평정, 복무), 예산, 결산, 계약 업무                           |
|               | 정책<br>연구개발팀                                                                                                                                                        | 5              | ■ 대구형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 연구<br>■ 지역특화 사회서비스사업·표준 모델 개발<br>■ 시민복지 욕구조사 및 복지동향 관리, 통계 DB 구축<br>■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성 증진 연구                                                      |
|               | 돌봄<br>서비스<br>지원팀                                                                                                                                                   | 6              | ■ 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운영(종사자 채용, 시설 관리)<br>■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br>■ 사회서비스 표준 모델 및 서비스 매뉴얼 전파<br>■ 소규모 시설 대상 경영·재무회계·프로그램 컨설팅 등 지원<br>■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                               |
| 사업관리          | 시설운<br>영<br>지원팀                                                                                                                                                    | 7              | ■ 직영시설 사업별 계획수립·승인 및 행정지원<br>■ 직영시설 인력관리(시설장 및 직원 채용·승진·전보·복리후생, 교육)<br>■ 직영시설 재무·회계·경영·프로그램 컨설팅, 기능보강사업 사전 검토<br>■ 신설 시설 설치·인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행정지원<br>■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반 운영, 대체인력 지원사업단 운영 지원 |
|               | ○ (재무관리) 본부 내 감사기구 지정, 공익제보 신고센터 운영<br>○ (종사자 자질) 업무매뉴얼 제작·교육, 정기적 워크숍, 순환보직<br>○ (서비스 질) 서비스 표준매뉴얼 제작 및 평가연동, 인권·복지 옴부즈만<br>○ (평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경영평가, 이용자 만족도 평가 |                |                                                                                                                                                                                         |
| 2019년<br>사업내용 | <b>① 총괄</b><br>○ (사업규모) 국·공립 시설 9개소, 종합재가 2개소, 민간지원사업 4개<br>○ (종사자 등) 종사자 수 468명, 이용자 수 약 1,932명                                                                   |                |                                                                                                                                                                                         |

2019년  
사업내용

②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

- (내용) 총 9개소(어린이집 2개소, 노숙인 재활 1개, 요양시설(노숙, 정신) 2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개, 공공센터 3개\*), 종사자 205명
-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사업단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1개소)은 2020년 신축 및 위탁운영 예정
- (시기) '19년 4월 개원 (\*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9.3월 신설 후 '19.6 개원)

| 구분    | 시설유형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이용자 수  | 운영시기  | 비고            |
|-------|-------------------|------|-------|--------|-------|---------------|
| 국공립시설 | 어린이집              | 2    | 20    | 127    | '19.4 | 기존시설          |
|       | 요양시설<br>(노숙, 정신)  | 2    | 69    | 430    | '19.4 | 기존시설          |
|       | 노숙인시설<br>(재활시설)   | 1    | 72    | 610    | '19.4 | 기존시설<br>(희망원) |
|       | 장애인시설<br>(주간보호센터) | 1    | 4     | 15     | '19.6 | 신설            |
|       | 공공센터              | 3    | 40    | -      | '19.4 | 기존시설          |
| 소계    |                   | 9개소  | 205명  | 1,182명 | -     | -             |

③ 종합재가센터

- (내용) 2개 유형의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신축), 종사자 263여명
- \* (기본형) 재가방문 + 노인돌봄+가사간병  
(확장형) 재가방문 + 노인돌봄 + 가사간병+장애인활동지원
- (시기) '19.4~5월 설립준비 → '19.6월 개소 예정(남구, 미정)

| 구분     | 시설유형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이용자 수 | 개소시기      | 지역   |
|--------|------|------|-------|-------|-----------|------|
| 종합재가센터 | 기본형  | 1    | 106   | 300   | '19.6월 개소 | 협의 중 |
|        | 확장형  | 1    | 157   | 450   | '19.6월 개소 | 남구   |
| 소계     |      | 2개   | 2개소   | 263명  | 750명      | -    |

④ 민간지원사업

| 사업유형    | 착수시기   | 종사인원           | 사업내용                        |
|---------|--------|----------------|-----------------------------|
| 대체인력 지원 | '19. 4 | 15<br>(본부인력 1)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
| 시설안전 점검 | '19. 4 | -              | ■ 전문관리자 위탁하여 시설 자체 점검지원     |
| 경영컨설팅   | '19. 4 | 1              | ■ 소규모 시설 재무, 회계, 인사 등 컨설팅   |
| 민관협력 지원 | '19. 4 | 1              | ■ 민관협력자문위 운영, 서비스 질 개선 등 지원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br>소요예산                    | ○ (사업기간) '19.3~12월(총 10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산규모) 총 21.4억원(국비 13.2억원 + 지방비 8.2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비 확보계획: '18. 본예산 4.4억원 + '19.7월 추경 3.8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구분</th><th>국비</th><th>지방비</th><th>계</th><th>비고</th></tr><tr><td>설치비</td><td>500</td><td>0</td><td>500</td><td></td></tr><tr><td>운영비</td><td>818</td><td>818</td><td>1,636</td><td></td></tr><tr><td>인건비</td><td>270</td><td>270</td><td>540</td><td></td></tr><tr><td>사업비</td><td>403</td><td>403</td><td>806</td><td></td></tr><tr><td>운영비</td><td>145</td><td>145</td><td>290</td><td></td></tr><tr><td>계</td><td>1,318</td><td>818</td><td>2,136</td><td></td></tr></table>                                                                                                                                                                                                                                                                                                                                                                                                                                                                                                                 |            |       |      |     |      |     |      |     |      | 구분       | 국비         | 지방비 | 계    | 비고 | 설치비  | 500 | 0    | 500 |      | 운영비 | 818 | 818 | 1,636 |   | 인건비 | 270 | 270 | 540 |    | 사업비 | 403 | 403 | 806   |    | 운영비 | 145 | 145 | 290 |     | 계 | 1,318 | 818      | 2,1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국비         | 지방비   | 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비                              | 500                                                                                                                                                                                                                                                                                                                                                                                                                                                                                                                                                                                                                                                                                                                                                                                                                                                                                                                                                                                                           | 0          |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비                              | 818                                                                                                                                                                                                                                                                                                                                                                                                                                                                                                                                                                                                                                                                                                                                                                                                                                                                                                                                                                                                           | 818        | 1,6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건비                              | 270                                                                                                                                                                                                                                                                                                                                                                                                                                                                                                                                                                                                                                                                                                                                                                                                                                                                                                                                                                                                           | 270        | 5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 403                                                                                                                                                                                                                                                                                                                                                                                                                                                                                                                                                                                                                                                                                                                                                                                                                                                                                                                                                                                                           | 403        | 8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비                              | 145                                                                                                                                                                                                                                                                                                                                                                                                                                                                                                                                                                                                                                                                                                                                                                                                                                                                                                                                                                                                           | 145        | 2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318                                                                                                                                                                                                                                                                                                                                                                                                                                                                                                                                                                                                                                                                                                                                                                                                                                                                                                                                                                                                         | 818        | 2,1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대목표<br>( '19~'22년)              | ○ (소속시설) '19년 11개소, 종사자 168명 → '22년 36개소, 1,497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 rowspan="2">사업<br/>유형</th><th colspan="2">'19~'22년 계</th><th colspan="2">2019</th><th colspan="2">2020</th><th colspan="2">2021</th><th colspan="2">2022</th></tr><tr><th>개소</th><th>명</th><th>개소</th><th>명</th><th>개소</th><th>명</th><th>개소</th><th>명</th><th>개소</th><th>명</th></tr><tr><td>계</td><td>36</td><td>1,497</td><td>11</td><td>468</td><td>8</td><td>318</td><td>9</td><td>343</td><td>8</td><td>368</td></tr><tr><td>어린이<br/>집</td><td>8</td><td>80</td><td>2</td><td>20</td><td>2</td><td>20</td><td>2</td><td>20</td><td>2</td><td>20</td></tr><tr><td>노인요<br/>양시설</td><td>6</td><td>140</td><td>-</td><td>-</td><td>1</td><td>20</td><td>2</td><td>40</td><td>3</td><td>80</td></tr><tr><td>기타<br/>시설</td><td>14</td><td>225</td><td>7</td><td>185</td><td>3</td><td>15</td><td>3</td><td>20</td><td>1</td><td>5</td></tr><tr><td>종합재<br/>가센터</td><td>8</td><td>1,052</td><td>2</td><td>263</td><td>2</td><td>263</td><td>2</td><td>263</td><td>2</td><td>263</td></tr></table> |            |       |      |     |      |     |      |     |      | 사업<br>유형 | '19~'22년 계 |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계   | 36  | 1,497 | 11 | 468 | 8   | 318 | 9   | 343 | 8 | 368   | 어린이<br>집 | 8     | 80 | 2 | 20 | 2 | 20 | 2 | 20 | 2 | 20 | 노인요<br>양시설 | 6 | 140 | - | - | 1 | 20 | 2 | 40 | 3 | 80 | 기타<br>시설 | 14 | 225 | 7 | 185 | 3 | 15 | 3 | 20 | 1 | 5 | 종합재<br>가센터 | 8 | 1,052 | 2 | 263 | 2 | 263 | 2 | 263 | 2 | 263 |
|                                  | 사업<br>유형                                                                                                                                                                                                                                                                                                                                                                                                                                                                                                                                                                                                                                                                                                                                                                                                                                                                                                                                                                                                      | '19~'22년 계 |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36         | 1,497 | 11   | 468 | 8    | 318 | 9    | 343 | 8    | 3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린이<br>집                                                                                                                                                                                                                                                                                                                                                                                                                                                                                                                                                                                                                                                                                                                                                                                                                                                                                                                                                                                                      | 8          | 80    | 2    | 20  | 2    | 20  | 2    | 20  | 2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요<br>양시설                                                                                                                                                                                                                                                                                                                                                                                                                                                                                                                                                                                                                                                                                                                                                                                                                                                                                                                                                                                                    | 6          | 140   | -    | -   | 1    | 20  | 2    | 40  | 3    | 8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br>시설                         | 14                                                                                                                                                                                                                                                                                                                                                                                                                                                                                                                                                                                                                                                                                                                                                                                                                                                                                                                                                                                                            | 225        | 7     | 185  | 3   | 15   | 3   | 20   | 1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재<br>가센터                       | 8                                                                                                                                                                                                                                                                                                                                                                                                                                                                                                                                                                                                                                                                                                                                                                                                                                                                                                                                                                                                             | 1,052      | 2     | 263  | 2   | 263  | 2   | 263  | 2   | 26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자체 정책환경 변화 및 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1차 제출자료.(2019.3.25), 『2019년 시도별 시범사업계획서』

## 다. 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2019년 10월에 설립할 예정이다.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의 경기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운영한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재단 법인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독립하는 형태로 다양한 유형의 공공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기초지자체와의 갈등관리 및 협력체계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lt;표 1-7&gt;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개요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조직구성  | ○ (지자체) 보건복지국 -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원 설립 TF(3명)<br>○ (서비스원) 시범사업단: 3팀(11명) → 서비스원 : 1본부 3팀(20명)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부서명</th><th>인원 수</th><th>역할 및 기능</th></tr><tr><td>원 장</td><td>1</td><td>■ 사회서비스원 총괄</td></tr><tr><td>본부장</td><td>1</td><td>■ 본부 운영 및 관리 총괄</td></tr><tr><td>대외협력관</td><td>1</td><td>■ 사회서비스 대외협력 총괄</td></tr><tr><td>경영기획팀</td><td>4</td><td>■ 사회서비스원 본부 인사, 노무, 회계, 세무, 인력관리 운영<br/>■ 이사회 및 운영자문위원회, 각종 회의 진행<br/>■ 홍보, 언론, 법무, 감사 등</td></tr><tr><td>시설운영팀</td><td>5</td><td>■ 경기도형 종합재가센터 운영 지원<br/>■ 사회서비스원 수탁사업 기관 관리 및 연계 사업 진행<br/>■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행정지원<br/>■ 직영시설 재정관리·조정, 운영상황 상시 모니터링</td></tr><tr><td>민간지원팀</td><td>8</td><td>■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 사업 진행<br/>■ 지역시설 관련 노무, 인사, 회계 등 컨설팅 사업 수행<br/>■ 대체인력사업, 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 관리<br/>■ 인력수급 지원 및 지역사회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축<br/>■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td></tr></table> | 부서명                                                                                                                                                                                                                                                                                                                                                                      | 인원 수                                                                                                             | 역할 및 기능 | 원 장 | 1 | ■ 사회서비스원 총괄 | 본부장 | 1 | ■ 본부 운영 및 관리 총괄 | 대외협력관 | 1 | ■ 사회서비스 대외협력 총괄 | 경영기획팀 | 4 | ■ 사회서비스원 본부 인사, 노무, 회계, 세무, 인력관리 운영<br>■ 이사회 및 운영자문위원회, 각종 회의 진행<br>■ 홍보, 언론, 법무, 감사 등 | 시설운영팀 | 5 | ■ 경기도형 종합재가센터 운영 지원<br>■ 사회서비스원 수탁사업 기관 관리 및 연계 사업 진행<br>■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행정지원<br>■ 직영시설 재정관리·조정, 운영상황 상시 모니터링 | 민간지원팀 | 8 |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 사업 진행<br>■ 지역시설 관련 노무, 인사, 회계 등 컨설팅 사업 수행<br>■ 대체인력사업, 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 관리<br>■ 인력수급 지원 및 지역사회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축<br>■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 |
|       | 부서명                                                                                                                                                                                                                                                                                                                                                                                                                                                                                                                                                                                                                                                                                                                             | 인원 수                                                                                                                                                                                                                                                                                                                                                                     | 역할 및 기능                                                                                                          |         |     |   |             |     |   |                 |       |   |                 |       |   |                                                                                        |       |   |                                                                                                                  |       |   |                                                                                                                                                |
|       | 원 장                                                                                                                                                                                                                                                                                                                                                                                                                                                                                                                                                                                                                                                                                                                             | 1                                                                                                                                                                                                                                                                                                                                                                        | ■ 사회서비스원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본부장                                                                                                                                                                                                                                                                                                                                                                                                                                                                                                                                                                                                                                                                                                                             | 1                                                                                                                                                                                                                                                                                                                                                                        | ■ 본부 운영 및 관리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대외협력관                                                                                                                                                                                                                                                                                                                                                                                                                                                                                                                                                                                                                                                                                                                           | 1                                                                                                                                                                                                                                                                                                                                                                        | ■ 사회서비스 대외협력 총괄                                                                                                  |         |     |   |             |     |   |                 |       |   |                 |       |   |                                                                                        |       |   |                                                                                                                  |       |   |                                                                                                                                                |
|       | 경영기획팀                                                                                                                                                                                                                                                                                                                                                                                                                                                                                                                                                                                                                                                                                                                           | 4                                                                                                                                                                                                                                                                                                                                                                        | ■ 사회서비스원 본부 인사, 노무, 회계, 세무, 인력관리 운영<br>■ 이사회 및 운영자문위원회, 각종 회의 진행<br>■ 홍보, 언론, 법무, 감사 등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운영팀                                                                                                                                                                                                                                                                                                                                                                                                                                                                                                                                                                                                                                                                                                                           | 5                                                                                                                                                                                                                                                                                                                                                                        | ■ 경기도형 종합재가센터 운영 지원<br>■ 사회서비스원 수탁사업 기관 관리 및 연계 사업 진행<br>■ 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행정지원<br>■ 직영시설 재정관리·조정, 운영상황 상시 모니터링 |         |     |   |             |     |   |                 |       |   |                 |       |   |                                                                                        |       |   |                                                                                                                  |       |   |                                                                                                                                                |
| 민간지원팀 | 8                                                                                                                                                                                                                                                                                                                                                                                                                                                                                                                                                                                                                                                                                                                               |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 사업 진행<br>■ 지역시설 관련 노무, 인사, 회계 등 컨설팅 사업 수행<br>■ 대체인력사업, 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 관리<br>■ 인력수급 지원 및 지역사회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축<br>■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관리  | ○ (재무관리) 경영공시, 지자체 정기적 회계감사, 예산 실명제 등<br>○ (종사자 자질) 교육육구조사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기관장 및 관리자 교육과정 개설, 직무교육, 기관방문형 교육, 인권교육<br>○ (서비스 질) 서비스 표준매뉴얼, 우수사례집, 안전관리체계 구축<br>○ (평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경영평가, 이용자·종사자 만족도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 사업내용                                                                                                                                                                                                                                                                                                                                                                                                                                                                                                                                                                                                                                                                                                                      | <b>① 총괄</b><br>○ (사업규모) 국·공립 시설 10개소, 종합재가 2개소, 민간지원사업 4개<br>○ (종사자 등) 종사자 수 326명, 이용자 수 616명<br><br><b>②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b><br>○ (내용) 총 10개소(어린이집 2개소, 요양시설 1개, 다함께 돌봄 2개, 공공센터 5개소*), 종사자 136명<br>*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br>**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1개소) 2020년 신축 및 위탁운영 예정<br>○ (시기) 시설별 개소시기 상이 (*19.1*~하반기)<br>* 공공센터는 경기복지재단에서 기 수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2019년<br>사업내용 | 국공<br>립시<br>설                              | 구분       | 시설유형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이용자 수     | 운영시기    | 비고   |  |  |  |  |  |
|               |                                            |          | 어린이집               | 2                          | 19    | 76        | '19.9   | 기존시설 |  |  |  |  |  |
|               |                                            |          | 요양시설 및<br>재가노인복지시설 | 1                          | 19    | 30        | '19.9   | 기존시설 |  |  |  |  |  |
|               |                                            |          | 다함께돌봄              | 2                          | 6     | 60        | '19.7~9 | 신축   |  |  |  |  |  |
|               |                                            |          | 공공센터               | 5                          | 92    | -         | '19.1   | 기존시설 |  |  |  |  |  |
|               | 소계                                         |          |                    | 10개소                       | 136명  | 166명      | -       | -    |  |  |  |  |  |
|               |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20년 신축 예정                    |          |                    |                            |       |           |         |      |  |  |  |  |  |
|               | ③ 종합재가센터                                   |          |                    |                            |       |           |         |      |  |  |  |  |  |
|               | ○ (내용) 1개 유형의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신축), 종사자 190여명 |          |                    |                            |       |           |         |      |  |  |  |  |  |
|               | * (기본형) 재가방문 + 노인돌봄+가사간병                   |          |                    |                            |       |           |         |      |  |  |  |  |  |
|               | ○ (시기) '19.4~5월 설립준비 → '19.6월 개소 예정(지역미정)  |          |                    |                            |       |           |         |      |  |  |  |  |  |
|               | 구분                                         | 시설유형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이용자 수 | 개소시기      | 지역      |      |  |  |  |  |  |
|               | 종합<br>재가 센터                                | 기본형      | 1                  | 95                         | 225   | '19.6월 개소 | 미정      |      |  |  |  |  |  |
|               |                                            |          | 1                  | 95                         | 225   | '19.6월 개소 | 미정      |      |  |  |  |  |  |
|               | 소계                                         | 1개       | 2개소                | 190명                       | 450명  | -         | -       |      |  |  |  |  |  |
|               | ④ 민간지원사업                                   |          |                    |                            |       |           |         |      |  |  |  |  |  |
| 2019년<br>소요예산 | 사업유형                                       | 착수<br>시기 | 종사<br>인원           | 사업내용                       |       |           |         |      |  |  |  |  |  |
|               | 대체인력지원                                     | '19. 7   | 64<br>(본부 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       |           |         |      |  |  |  |  |  |
|               | 시설안전점검                                     | '19. 6   | 2                  | 전문관리자 직접고용, 시설 자체 점검지원     |       |           |         |      |  |  |  |  |  |
|               | 경영컨설팅                                      | '19. 6   | 3                  | 재무, 회계, 경영 컨설팅, 상시 노무상담    |       |           |         |      |  |  |  |  |  |
|               | 인력수급지원                                     | '19. 6   | 1                  | 구인구직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구직자 채용지원 |       |           |         |      |  |  |  |  |  |
|               | ○ (사업기간) '19.4~12월(총 9개월)                  |          |                    |                            |       |           |         |      |  |  |  |  |  |
|               | ○ (예산규모) 총 19.8억원(국비 12.4억원 + 지방비 7.4억원)   |          |                    |                            |       |           |         |      |  |  |  |  |  |
|               | * 지방비 확보계획 : '18. 본예산 7.4억원 확정             |          |                    |                            |       |           |         |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           |         |      |  |  |  |  |  |
|               | 구분                                         | 국비       | 지방비                | 계                          | 비고    |           |         |      |  |  |  |  |  |
|               | 설치비                                        | 500      | 0                  | 500                        | -     |           |         |      |  |  |  |  |  |
|               | 운영비                                        | 740      | 740                | 1,480                      | -     |           |         |      |  |  |  |  |  |
|               | 인건비                                        | 251      | 251                | 502                        | -     |           |         |      |  |  |  |  |  |
|               | 사업비                                        | 250      | 250                | 500                        | -     |           |         |      |  |  |  |  |  |
|               | 운영비                                        | 239      | 239                | 478                        | -     |           |         |      |  |  |  |  |  |
|               | 계                                          | 1,240    | 740                | 1,980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확대목표<br>(‘19~’22년)               | ○ (소속시설) ‘19년 12개소, 종사자 326명 → ’22년 126개소, 4,272명 |            |       |      |     |      |       |      |       |      |       |
|                                  | 사업유형                                              | ‘19~’22년 계 |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                                  |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                                  | 계                                                 | 126        | 4,272 | 12   | 326 | 23   | 1,062 | 37   | 1,339 | 54   | 1,545 |
|                                  | 어린이<br>집                                          | 34         | 469   | 2    | 19  | 7    | 75    | 10   | 150   | 15   | 225   |
|                                  | 노인요<br>양시설                                        | 17         | 449   | 1    | 19  | 2    | 180   | 4    | 100   | 10   | 150   |
|                                  | 다함께<br>돌봄                                         | 27         | 81    | 2    | 6   | 5    | 15    | 10   | 30    | 10   | 30    |
|                                  | 기타<br>시설                                          | 19         | 341   | 5    | 92  | 2    | 50    | 3    | 59    | 9    | 140   |
|                                  | 종합재<br>가센터                                        | 29         | 2,932 | 2    | 190 | 7    | 742   | 10   | 1,000 | 10   | 1,000 |
| * 지자체 정책환경 변화 및 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1차 제출자료(2019.3.25.), 『2019년 시도별 시범사업계획서』

## 라.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을 2019년 5월 개소할 예정이며, 기초지자체와  
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존 국공립시설의 위탁기간 종료 시 수탁기관을 서비스원  
으로 전환하여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표 1-8>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요

| 구 분   | 내 용                                   |                  |           |
|-------|---------------------------------------|------------------|-----------|
| 조직구성  | ○ (지자체) 복지보건국 -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관리담당(3명) |                  |           |
|       | ○ (서비스원) 1본부 4개팀(20명)                 |                  |           |
|       | 부서명                                   | 인원 수             | 역할 및 기능   |
|       | 원장                                    | 1                | ■ 서비스원 총괄 |
|       | 사무처장                                  | 1                | ■ 업무총괄    |
| 경영기획팀 | 5                                     | ■ 경영기획, 중장기계획 수립 |           |
|       |                                       | ■ 이사회 운영, 본부 인사  |           |
|       |                                       | ■ 시스템 운영관리 등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조직구성       | 부서명                                                                                                                                                                                                                                                              | 인원 수   | 역할 및 기능                                                                         |       |       |       |             |
|            | 시설운영팀                                                                                                                                                                                                                                                            | 6      | ■ 사업별 계획수립, 각 종 행정지원<br>■ 지역시설 재정관리·조정, 재무·회계프로그램 컨설팅<br>■ 시설운영 모니터링, 직영시설 품질관리 |       |       |       |             |
|            | 민간지원팀                                                                                                                                                                                                                                                            | 4      | ■ 대체인력 지원, 시설 안전점검<br>■ 표준운영 모델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br>■ 시설 설치 등 행정지원 컨설팅       |       |       |       |             |
|            | 복지정책 연구팀                                                                                                                                                                                                                                                         | 3      | ■ 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지역사회전달체계 연구<br>■ 지역사회 복지동향 관리<br>■ 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 서비스표준화 등        |       |       |       |             |
| 사업관리       | ○ (재무관리) 우수 재무관리 매뉴얼 공유, 주기적인 회계교육, 경영공시,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구축<br>○ (종사자 자질) 대상별 맞춤형 교육, 전문성 계발 시 인센티브 제공, 순환보직 인사, 공정한 채용시스템<br>○ (서비스 질) 표준운영모델, 안전관리 강화, 균등한 서비스 질 확보<br>○ (평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경영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                                                                                 |       |       |       |             |
| 2019년 사업내용 | ❶ 총괄<br>○ (사업규모) 국·공립 시설 7개소, 종합재가 2개소, 민간지원사업 4개<br>○ (종사자 등) 종사자 수 385명, 이용자 수 약 1,545명                                                                                                                                                                        |        |                                                                                 |       |       |       |             |
|            | ❷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br>○ (내용) 총 7개소 (어린이집 5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커뮤니티케어 1개소), 종사자 173명<br>○ (시기) '19년 5~12월 개원(수탁시설 종류에 따라 상이)<br>* 경남은 신축시설 없이 기존시설의 수탁기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19년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설 중 공모절차 통해 서비스원이 수탁받아야 함<br>** 수탁 공모대상: 어린이집 31개(위탁종료 23, 공동주택리모델링 8개), 요양시설 2개 |        |                                                                                 |       |       |       |             |
| 구분         |                                                                                                                                                                                                                                                                  | 시설유형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이용자 수 | 운영시기  | 비고          |
| 국공립 시설     |                                                                                                                                                                                                                                                                  | 어린이집   | 5                                                                               | 100   | 580   | 5~12월 | 기존시설        |
|            |                                                                                                                                                                                                                                                                  | 노인요양시설 | 1                                                                               | 50    | 80    | 5월    | 기존시설        |
|            |                                                                                                                                                                                                                                                                  | 커뮤니티케어 | 1                                                                               | 23    | 285   | 미정    | 신규설치 (공모 중) |
| 소계         |                                                                                                                                                                                                                                                                  |        | 7개소                                                                             | 173명  | 945명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br>사업내용                                                                                                                                                                                                                                                                                                                                                                                                                     | <div>③ 종합재가센터</div> <div>○ (내용) 1개 유형의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신축), 종사자 212여명</div> <div>  * (기본형) 재가방문 + 노인돌봄+가사간병</div> <div>○ (시기) '19.5월 개소 예정(창원, 김해)</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구분</th><th>시설유형</th><th>시설 수</th><th>종사자 수</th><th>이용자 수</th><th>개소시기</th><th>지역</th></tr><tr><td rowspan="2">종합재가<br/>센터</td><td rowspan="2">기본형</td><td>1</td><td>106</td><td>300</td><td>'19.5월 개소</td><td>창원</td></tr><tr><td>1</td><td>106</td><td>300</td><td>'19.5월 개소</td><td>김해</td></tr><tr><td>소계</td><td>1개</td><td>2개소</td><td>212</td><td>600</td><td>-</td><td>-</td></tr></table>                                                                                              | 구분            | 시설유형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이용자 수     | 개소시기          | 지역                     | 종합재가<br>센터 | 기본형    | 1 | 106                   | 300   | '19.5월 개소 | 창원    | 1                         | 106     | 300    | '19.5월 개소 | 김해                         | 소계 | 1개  | 2개소 | 212 | 600 | - | -   |     |     |     |  |   |       |       |       |  |
|                                                                                                                                                                                                                                                                                                                                                                                                                                   | 구분                                                                                                                                                                                                                                                                                                                                                                                                                                                                                                            | 시설유형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이용자 수   | 개소시기      |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재가<br>센터                                                                                                                                                                                                                                                                                                                                                                                                                                                                                                    | 기본형           | 1                          | 106   | 300     | '19.5월 개소 | 창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6   | 300     | '19.5월 개소 | 김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1개                                                                                                                                                                                                                                                                                                                                                                                                                                                                                                            | 2개소           | 212                        | 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④ 민간지원사업</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사업유형</th><th>착수시기</th><th>종사인원</th><th>사업내용</th></tr><tr><td>대체인력 지원</td><td>'19. 12</td><td>21<br/>(본부 2명)</td><td>■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td></tr><tr><td>시설안전점검</td><td>'19. 5</td><td>4</td><td>■ 소규모 취약 시설 자체 안전점검지원</td></tr><tr><td>경영컨설팅</td><td>'19. 5</td><td>4</td><td>■ 평가미흡기관 재무, 회계, 인사 등 컨설팅</td></tr><tr><td>교육훈련 지원</td><td>'19. 5</td><td>4</td><td>■ 분야별,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시</td></tr></table> | 사업유형                                                                                                                                                                                                                                                                                                                                                                                                                                                                                                          | 착수시기          | 종사인원                       | 사업내용  | 대체인력 지원 | '19. 12   | 21<br>(본부 2명)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 시설안전점검     | '19. 5 | 4 | ■ 소규모 취약 시설 자체 안전점검지원 | 경영컨설팅 | '19. 5    | 4     | ■ 평가미흡기관 재무, 회계, 인사 등 컨설팅 | 교육훈련 지원 | '19. 5 | 4         | ■ 분야별,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시 |    |     |     |     |     |   |     |     |     |     |  |   |       |       |       |  |
| 사업유형                                                                                                                                                                                                                                                                                                                                                                                                                              | 착수시기                                                                                                                                                                                                                                                                                                                                                                                                                                                                                                          | 종사인원          |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체인력 지원                                                                                                                                                                                                                                                                                                                                                                                                                           | '19. 12                                                                                                                                                                                                                                                                                                                                                                                                                                                                                                       | 21<br>(본부 2명)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안전점검                                                                                                                                                                                                                                                                                                                                                                                                                            | '19. 5                                                                                                                                                                                                                                                                                                                                                                                                                                                                                                        | 4             | ■ 소규모 취약 시설 자체 안전점검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컨설팅                                                                                                                                                                                                                                                                                                                                                                                                                             | '19. 5                                                                                                                                                                                                                                                                                                                                                                                                                                                                                                        | 4             | ■ 평가미흡기관 재무, 회계, 인사 등 컨설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육훈련 지원                                                                                                                                                                                                                                                                                                                                                                                                                           | '19. 5                                                                                                                                                                                                                                                                                                                                                                                                                                                                                                        | 4             | ■ 분야별,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년<br>소요예산                                                                                                                                                                                                                                                                                                                                                                                                                     | <div>○ (사업기간) '19.5~12월(총 8개월)</div> <div>○ (예산규모) 총 21.6억원(국비 11.6억원 + 지방비 10.0억원)</div> <div>  * 지방비 확보계획: '18. 본예산 10억원 확보</div> <div>(단위: 백만원)</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tr><th>구분</th><th>국비</th><th>지방비</th><th>계</th><th>비고</th></tr><tr><td>설치비</td><td>500</td><td>-</td><td>500</td><td></td></tr><tr><td rowspan="4">운영비</td><td>662</td><td>1,000</td><td>1,662</td><td></td></tr><tr><td>인건비</td><td>265</td><td>400</td><td>665</td><td></td></tr><tr><td>사업비</td><td>198</td><td>300</td><td>498</td><td></td></tr><tr><td>운영비</td><td>199</td><td>300</td><td>499</td><td></td></tr><tr><td>계</td><td>1,162</td><td>1,000</td><td>2,162</td><td></td></tr></table> | 구분            | 국비                         | 지방비   | 계       | 비고        | 설치비           | 500                    | -          | 500    |   | 운영비                   | 662   | 1,000     | 1,662 |                           | 인건비     | 265    | 400       | 665                        |    | 사업비 | 198 | 300 | 498 |   | 운영비 | 199 | 300 | 499 |  | 계 | 1,162 | 1,000 | 2,162 |  |
|                                                                                                                                                                                                                                                                                                                                                                                                                                   | 구분                                                                                                                                                                                                                                                                                                                                                                                                                                                                                                            | 국비            | 지방비                        | 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치비                                                                                                                                                                                                                                                                                                                                                                                                                                                                                                           | 500           | -                          | 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비                                                                                                                                                                                                                                                                                                                                                                                                                                                                                                           | 662           | 1,000                      | 1,6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건비                                                                                                                                                                                                                                                                                                                                                                                                                               |                                                                                                                                                                                                                                                                                                                                                                                                                                                                                                               | 265           | 400                        | 6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                                                                                                                                                                                                                                                                                                                                                                                                                                                                                                               | 198           | 300                        | 49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비                                                                                                                                                                                                                                                                                                                                                                                                                               |                                                                                                                                                                                                                                                                                                                                                                                                                                                                                                               | 199           | 300                        | 4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162                                                                                                                                                                                                                                                                                                                                                                                                                                                                                                         | 1,000         | 2,1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내 용                                             |            |       |      |     |      |     |      |     |      |     |
|----------------------------------|-------------------------------------------------|------------|-------|------|-----|------|-----|------|-----|------|-----|
| 확대목표<br>(‘19~’22년)               | ○ (소속시설) ‘19년 9개소, 종사자 385명 → ‘22년 33개소, 1,471명 |            |       |      |     |      |     |      |     |      |     |
|                                  | 사업유형                                            | ’19~’22년 계 |       | 2019 |     | 2020 |     | 2021 |     | 2022 |     |
|                                  |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개소   | 명   |
|                                  | 계                                               | 33         | 1,471 | 9    | 385 | 8    | 362 | 8    | 362 | 8    | 362 |
|                                  | 어린이집                                            | 20         | 400   | 5    | 100 | 5    | 100 | 5    | 100 | 5    | 100 |
|                                  | 노인요양시설                                          | 4          | 200   | 1    | 50  | 1    | 50  | 1    | 50  | 1    | 50  |
|                                  | 종합재가센터                                          | 8          | 848   | 2    | 212 | 2    | 212 | 2    | 212 | 2    | 212 |
|                                  | 커뮤니티 케어                                         | 1          | 23    | 1    | 23  | -    | -   | -    | -   | -    | -   |
| * 지자체 정책환경 변화 및 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1차 제출자료(2019.3.25), 『2019년 시도별 시범사업계획서』

&lt;표 1-9&gt;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비교

| 구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 대구시사회서비스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
|------------|-------------------------------------------------------------------------------------------------------------------------------------------------|----------------------------------------------------------------------------------------------------------------------------------------------------------------------------------------------------------------------------------------------------------------------------------------------------------------------------------------------------------------|--------------------------------------------------------------------------------------------------------------------------------------------------------------------------------------------------------------------------------------------------------------------------------------------------------------------------------------------------------------|-------------------------------------------------------------------------------------------------------------------------------------------------------------------------------------------------------------------------------------------------------------------------------------------------------------------------------------|
| 조 직<br>구 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 기획관 사회서비스혁신 추진반 3팀 12명</li> <li>■(서비스원) 1실 4팀 22명(민간채용 18명 공무원 파견 4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보건복지국·복지정책관·희망 원 혁신대책TF(6명)</li> <li>■(서비스원) 1실 3팀(24명, 공무원 파견 3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보건복지국 -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원 설립 TF(3명)</li> <li>■(서비스원) 시범사업단: 3팀(11명) → 서비스원: 1본부 3팀(20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자체) 복지보건국 - 복지정책과 - 사회서비스관리담당(3명)</li> <li>■(서비스원) 1본부 4개팀(20명)</li> </ul>                                                                                                                                                                                                                |
| 주 요<br>기 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지원, 서비스품질관리 및 교육훈련</li> <li>■센터별 사업계획 수립, 품질관리, 회계, 경영컨설팅</li> <li>■어린이집 위수탁, 대체인력지원사업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형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지역 사회 복지전달체계 연구</li> <li>■지역특화 사회서비스사업·표준모델 개발</li> <li>■시민복지 욕구조사 및 복지동향 관리, 통계 DB 구축</li> <li>■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고용 안정성 증진 연구</li> <li>■종합재가센터 설립 및 운영(종사자 채용, 시설 관리)</li> <li>■사회서비스 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li> <li>■사회서비스 표준 모델 및 서비스 매뉴얼 전파</li> <li>■소규모 시설 대상 경영·재무회계·프로그램 컨설팅 등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형 종합재가센터 운영 지원</li> <li>■사회서비스원 수탁사업 기관 관리 및 연계 사업 진행</li> <li>■사업별 사업계획 수립·승인 및 행정 지원</li> <li>■직영시설 재정관리·조정, 운영상황 상시 모니터링</li> <li>■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 사업 진행</li> <li>■지역시설 관련 노무, 인사, 회계 등 컨설팅 사업 수행</li> <li>■대체인력사업, 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 관리</li> <li>■인력수급 지원 및 지역사회복지시설 네트워크 구축</li> <li>■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별 계획수립, 각 종 행정지원</li> <li>■지역시설 재정관리·조정, 재무·회계 프로그램 컨설팅</li> <li>■시설운영 모니터링, 직영시설 품질관리</li> <li>■대체인력 지원, 시설 안전점검</li> <li>■표준운영 모델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li> <li>■시설 설치 등 행정지원 컨설팅</li> <li>■사회서비스 정책연구, 지역사회전달 체계 연구</li> <li>■지역사회 복지동향 관리</li> <li>■지역특화 사회서비스 개발, 서비스표준화 등</li> </ul> |

| 구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 대구시사회서비스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li> <li>■ 직영시설 사업별 계획수립·승인 및 행정지원</li> <li>■ 직영시설 인력관리(시설장 및 직원 채용·승진·전보·복리후생, 교육)</li> <li>■ 직영시설 재무·회계·경영·프로그램 컨설팅, 기능보강사업 사전 검토</li> <li>■ 신설 시설 설치·인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행정지원</li> <li>■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반 운영, 대체 인력 지원사업단 운영 지원</li> </ul> |                                                                  |                                                             |
| 재무관리   | ■ ①본부 내 감사기능 도입, ②산하기관 계약·회계업무 지원, ③내부 회계규정 제정 및 운영             | ■ 본부 내 감사기구 지정, 공익제보 신고 센터 운영                                                                                                                                                                                                                                                                  | ■ 경영공시, 지자체 정기적 회계감사, 예산 실명제 등                                   | ■ 우수 재무관리 매뉴얼 공유, 주기적인 회계교육, 경영공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구축           |
| 종사자 자질 | ■ 사업별 제공인력 직무분석 통한 직급 교육훈련체계 구축, 경력개발프로그램 도입, 승급제도 운영 등으로 동기부여  | ■ 업무매뉴얼 제작·교육, 정기적 워크숍, 순환보직                                                                                                                                                                                                                                                                   | ■ 교육육구조사 통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기관장 및 관리자 교육과정 개설, 직무교육, 기관방문형 교육, 인권교육 | ■ (종사자 자질) 대상별 맞춤형 교육, 전문성 계발 시 인센티브 제공, 순환보직 인사, 공정한 채용시스템 |
| 서비스 질  | ■ 서비스 체계분석 통한 표준운영 모델 구축, 직무매뉴얼 개발, 사각지대 대상자 지원 및 이용자 특화 서비스 개발 | ■ 서비스 표준매뉴얼 제작 및 평가연동, 인권·복지 옴부즈만                                                                                                                                                                                                                                                              | ■ 서비스 표준매뉴얼, 우수사례집, 안전관리체계 구축                                    | ■ 표준운영모델, 안전관리 강화, 균등한 서비스 질 확보                             |

| 구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 대구시사회서비스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
|-------------|-----------------------------------------------------------------------------------------------------------------------------------------------------------------------------------------------------------------------------------------------------------------------------------------------------------------------------------------------------------------------------------------------------------|-------------------------------------------------------------------------------------------------------------------------------------------------------------------------------------------------------------------------------------------------------------------------------------------------------------------------------------------------------------------------------------------------------------------------------------------------------------------------------------|-----------------------------------------------------------------------------------------------------------------------------------------------------------------------------------------------------------------------------------------------------------------------------------------------------------------------------------------------------------------------------------------------------------------------------|--------------------------------------------------------------------------------------------------------------------------------------------------------------------------------------------------------------------------------------------------------------------------------------------------------------------------------------------------------------------------------------------------------------------|
| 평가          |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경영평가, 서비스 품질평가                                                                                                                                                                                                                                                                                                                                                                            |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경영평가, 이용자 만족도 평가                                                                                                                                                                                                                                                                                                                                                                                                                                                    |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경영평가, 이용자·종사자 만족도                                                                                                                                                                                                                                                                                                                                                                                           | ■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경영평가, 이용자 만족도 조사                                                                                                                                                                                                                                                                                                                                                                                   |
| 2019년 사업 내용 | <p>① 총괄</p> <p>■ (사업규모) 국·공립시설 5개소(준비), 종합재가 4개소, 민간지원사업 1개</p> <p>■ (종사자 등) 종사자 수 550명, 이용자 수 약 1,500명</p> <p>②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p> <p>■ (내용) 어린이집 5개소(신축), 종사자 수 70명 예상</p> <p>* 요양시설(1개소)은 2020년 신축 및 위탁운영 예정</p> <p>■ (시기) '19년 하반기 운영준비 → '20.3월 개원</p> <p>③ 종합재가센터</p> <p>■ (내용) 3개 유형의 종합재가센터 4개소 운영(신축), 종사자 480여명</p> <p>*(유형1) 재가방문 + 노인돌봄, (유형2) 재가방문 + 노인돌봄 + 주야간보호 (유형3) 재가방문+노인돌봄+장애인 활동지원</p> | <p>① 총괄</p> <p>■ (사업규모) 국·공립 시설 9개소, 종합재가 2개소, 민간지원사업 4개</p> <p>■ (종사자 등) 종사자 수 468명, 이용자 수 약 1,932명</p> <p>②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p> <p>■ (내용) 총 9개소(어린이집 2개소, 노숙인 재활 1개, 요양시설(노숙, 정신) 2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1개, 공공센터 3개*), 종사자 205명</p> <p>*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대체인력지원사업단</p> <p>**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1개소)은 2020년 신축 및 위탁운영 예정</p> <p>■ (시기) '19년 4월 개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9.3월 신설 후 '19.6 개원)</p> <p>③ 종합재가센터</p> <p>■ (내용) 2개 유형의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신축), 종사자 263여명</p> <p>* (기본형) 재가방문 + 노인돌봄+가사간병</p> | <p>① 총괄</p> <p>■ (사업규모) 국·공립 시설 10개소, 종합재가 2개소, 민간지원사업 4개</p> <p>■ (종사자 등) 종사자 수 326명, 이용자 수 616명</p> <p>②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p> <p>■ (내용) 총 10개소(어린이집 2개소, 요양시설 1개, 다함께 돌봄 2개, 공공센터 5개소*), 종사자 136명</p> <p>*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대체인력지원센터</p> <p>**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1개소)은 2020년 신축 및 위탁운영 예정</p> <p>■ (시기) 시설별 개소시기 상이 ('19.1~하반기)</p> <p>* 공공센터는 경기복지재단에서 기수탁받아 운영하는 시설</p> <p>*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20년 신축 예정</p> | <p>① 총괄</p> <p>■ (사업규모) 국·공립 시설 7개소, 종합재가 2개소, 민간지원사업 4개</p> <p>■ (종사자 등) 종사자 수 385명, 이용자 수 약 1,545명</p> <p>②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p> <p>■ (내용) 총 7개소(어린이집 5개소, 노인요양시설 1개소, 커뮤니티케어 1개소), 종사자 173명</p> <p>■ (시기) '19년 5~12월 개원(수탁시설 종류에 따라 상이)</p> <p>* 경남은 신축시설 없이 기존시설의 수탁기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19년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설 중 공모절차 통해 서비스원이 수탁 받아야 함</p> <p>** 수탁 공모대상: 어린이집 31개 (위탁 종료 23, 공동주택리모델링 8개), 요양시설 2개</p> <p>③ 종합재가센터</p> |

| 구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 대구시사회서비스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시기) '19.4~6월 설립준비 → '19.7월 개소 예정(지역미정)</div> <div>④ 민간지원사업</div> <div>■ (내용) 민간기관에 회계, 노무 등 컨설팅 지원(본부인력 3명 활용)</div> <div>■ (시기) '19. 상반기 운영준비 → "19. 10월 서비스 개시</div> <table><tr><th>사업 유형</th><th>착수 시기</th><th>종사 인원</th><th>사업내용</th></tr><tr><td>경영컨설팅</td><td>'19.10.</td><td>3</td><td>■ 민간기관 회계, 법무, 노무 컨설팅 지원</td></tr></table> | 사업 유형        | 착수 시기                      | 종사 인원       | 사업내용 | 경영컨설팅 | '19.10. | 3 | ■ 민간기관 회계, 법무, 노무 컨설팅 지원 | <div>(확장형) 재가방문 + 노인돌봄 + 가사 간병+장애인활동지원</div> <div>■ (시기) '19.4~5월 설립준비 → '19.6월 개소 예정(남구, 미정)</div> <div>④ 민간지원사업</div> <table><tr><th>사업 유형</th><th>착수 시기</th><th>종사 인원</th><th>사업내용</th></tr><tr><td>대체인력 지원</td><td>'19. 4</td><td>15 (본부인력 1)</td><td>■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td></tr><tr><td>시설안전점검</td><td>'19. 4</td><td>-</td><td>■ 전문관리자 위탁하여 시설 자체 점검지원</td></tr><tr><td>경영컨설팅</td><td>'19. 4</td><td>1</td><td>■ 소규모 시설 재무, 회계, 인사 컨설팅</td></tr></table> | 사업 유형 | 착수 시기 | 종사 인원 | 사업내용 | 대체인력 지원 | '19. 4 | 15 (본부인력 1)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 시설안전점검 | '19. 4 | - | ■ 전문관리자 위탁하여 시설 자체 점검지원 | 경영컨설팅 | '19. 4 | 1 | ■ 소규모 시설 재무, 회계, 인사 컨설팅 | <div>③ 종합재가센터</div> <div>■ (내용) 1개 유형의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신축), 종사자 190여명</div> <div>* (기본형) 재가방문 + 노인돌봄+가사 간병</div> <div>■ (시기) '19.4~5월 설립준비 → '19.6월 개소 예정 (지역미정)</div> <div>④ 민간지원사업</div> <table><tr><th>사업 유형</th><th>착수 시기</th><th>종사 인원</th><th>사업내용</th></tr><tr><td>대체인력 지원</td><td>'19. 7</td><td>64 (본부 3)</td><td>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td></tr><tr><td>시설안전점검</td><td>'19. 6</td><td>2</td><td>전문관리자 직접고용, 시설 자체 점검지원</td></tr><tr><td>경영컨설팅</td><td>'19. 6</td><td>3</td><td>재무, 회계, 경영 컨설팅, 상시 노무상담</td></tr></table> | 사업 유형 | 착수 시기 | 종사 인원 | 사업내용 | 대체인력 지원 | '19. 7 | 64 (본부 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 시설안전점검 | '19. 6 | 2 | 전문관리자 직접고용, 시설 자체 점검지원 | 경영컨설팅 | '19. 6 | 3 | 재무, 회계, 경영 컨설팅, 상시 노무상담 | <div>■ (내용) 1개 유형의 종합재가센터 2개소 운영(신축), 종사자 212여명</div> <div>* (기본형) 재가방문 + 노인돌봄+가사 간병</div> <div>■ (시기) '19.5월 개소 예정(창원, 김해)</div> <div>④ 민간지원사업</div> <table><tr><th>사업 유형</th><th>착수 시기</th><th>종사 인원</th><th>사업내용</th></tr><tr><td>대체인력 지원</td><td>'19. 12</td><td>21 (본부인력 2명)</td><td>■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td></tr><tr><td>시설안전점검</td><td>'19. 5</td><td>4</td><td>■ 소규모 취약 시설 자체 안전점검 지원</td></tr><tr><td>경영컨설팅</td><td>'19. 5</td><td>4</td><td>■ 평가미흡 기관 재무, 회계, 인사 등 컨설팅</td></tr></table> | 사업 유형 | 착수 시기 | 종사 인원 | 사업내용 | 대체인력 지원 | '19. 12 | 21 (본부인력 2명)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 시설안전점검 | '19. 5 | 4 | ■ 소규모 취약 시설 자체 안전점검 지원 | 경영컨설팅 | '19. 5 | 4 | ■ 평가미흡 기관 재무, 회계, 인사 등 컨설팅 |
| 사업 유형   | 착수 시기                                                                                                                                                                                                                                                                                                                                            | 종사 인원        |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컨설팅   | '19.10.                                                                                                                                                                                                                                                                                                                                          | 3            | ■ 민간기관 회계, 법무, 노무 컨설팅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유형   | 착수 시기                                                                                                                                                                                                                                                                                                                                            | 종사 인원        |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체인력 지원 | '19. 4                                                                                                                                                                                                                                                                                                                                           | 15 (본부인력 1)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안전점검  | '19. 4                                                                                                                                                                                                                                                                                                                                           | -            | ■ 전문관리자 위탁하여 시설 자체 점검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컨설팅   | '19. 4                                                                                                                                                                                                                                                                                                                                           | 1            | ■ 소규모 시설 재무, 회계, 인사 컨설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유형   | 착수 시기                                                                                                                                                                                                                                                                                                                                            | 종사 인원        |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체인력 지원 | '19. 7                                                                                                                                                                                                                                                                                                                                           | 64 (본부 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안전점검  | '19. 6                                                                                                                                                                                                                                                                                                                                           | 2            | 전문관리자 직접고용, 시설 자체 점검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컨설팅   | '19. 6                                                                                                                                                                                                                                                                                                                                           | 3            | 재무, 회계, 경영 컨설팅, 상시 노무상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유형   | 착수 시기                                                                                                                                                                                                                                                                                                                                            | 종사 인원        |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체인력 지원 | '19. 12                                                                                                                                                                                                                                                                                                                                          | 21 (본부인력 2명) |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파견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안전점검  | '19. 5                                                                                                                                                                                                                                                                                                                                           | 4            | ■ 소규모 취약 시설 자체 안전점검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영컨설팅   | '19. 5                                                                                                                                                                                                                                                                                                                                           | 4            | ■ 평가미흡 기관 재무, 회계, 인사 등 컨설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2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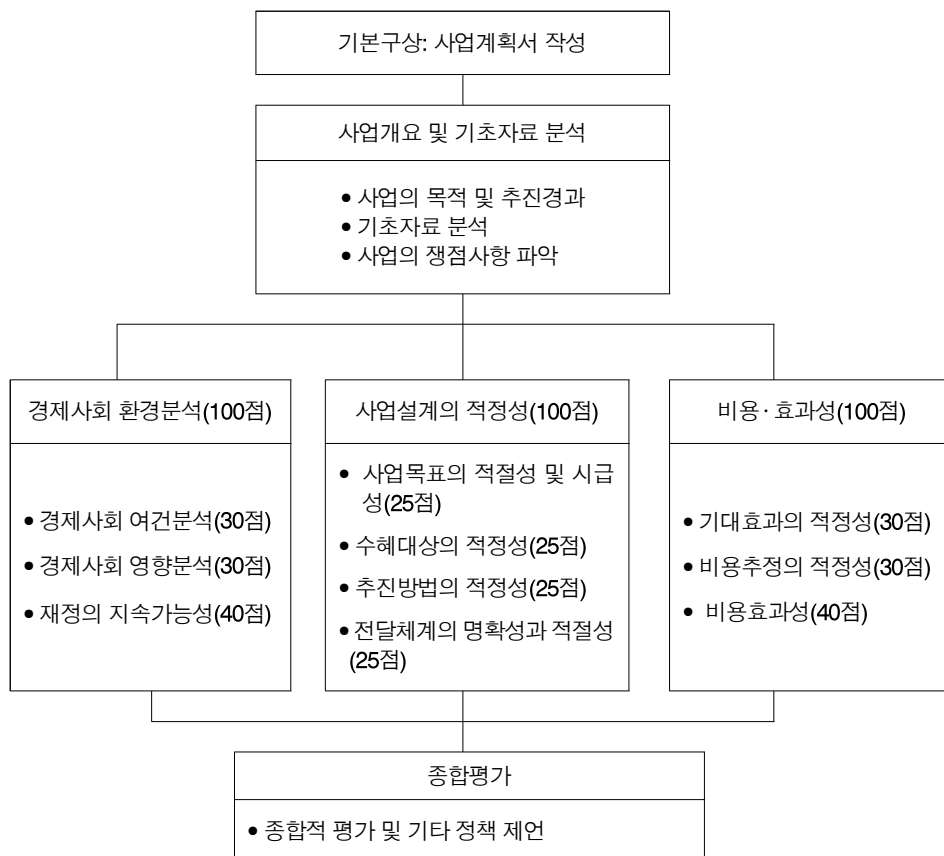
| 구분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 대구시사회서비스원                                                                                                                                                                            |          |          |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          |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          |          |                                       |
|---------------------------|--------------------------------------------------------------------------------------------------------------------------------------------------------------------------|--------------------------------------------------------------------------------------------------------------------------------------------------------------------------------------|----------|----------|----------------------------------------|----------------------------------------------------------------------------------------------------------------------------------------------------------------------|----------|----------|--------------------------------------------|----------------------------------------------------------------------------------------------------------------------------------------------------------------------|----------|----------|---------------------------------------|
|                           |                                                                                                                                                                          | 사업<br>유형                                                                                                                                                                             | 착수<br>시기 | 종사<br>인원 | 사업내용                                   | 사업<br>유형                                                                                                                                                             | 착수<br>시기 | 종사<br>인원 | 사업내용                                       | 사업<br>유형                                                                                                                                                             | 착수<br>시기 | 종사<br>인원 | 사업내용                                  |
|                           |                                                                                                                                                                          | 민관<br>협력<br>지원                                                                                                                                                                       | '19. 4   | 1        | ■ 민관협치<br>자문위 운영,<br>서비스 질 개<br>선 등 지원 | 인력<br>수급<br>지원                                                                                                                                                       | '19. 6   | 1        | 구인구직 정보<br>공 유 시 스 템<br>구 축, 구 직 자<br>채용지원 | 교육<br>훈련<br>지원                                                                                                                                                       | '19. 5   | 4        | ■ 분야별, 대<br>상별 교육프<br>로그램 개발,<br>교육실시 |
| 2019<br>년<br>소<br>요<br>예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19.4~12월(총 9개월)</li> <li>■ (예산규모) 총 83.7억원(국비 12.4억원 + 지방비 71.3억원)</li> <li>* 지방비 확보계획: '18.12월 본예산 통해 확보 완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19.3~12월(총 10개월)</li> <li>■ (예산규모) 총 21.4억원(국비 13.2억원 + 지방비 8.2억원)</li> <li>* 지방비 확보계획: '18. 본예산 4.4억원 + '19.7월 추경 3.8억원</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19.4~12월(총 9개월)</li> <li>■ (예산규모) 총 19.8억원(국비 12.4억원 + 지방비 7.4억원)</li> <li>* 지방비 확보계획: '18. 본예산 7.4억원 확정</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기간) '19.5~12월(총 8개월)</li> <li>■ (예산규모) 총 21.6억원(국비 11.6억원 + 지방비 10.0억원)</li> <li>* 지방비 확보계획: '18. 본예산 10억원 확보</li> </ul> |          |          |                                       |
| 확 대<br>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시설) '19년 9개소, 종사자 550명 → '22년 45개소, 3,944명</li> <li>* 지자체 정책환경 변화 및 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시설) '19년 11개소, 종사자 168명 → '22년 36개소, 1,497명</li> <li>* 지자체 정책환경 변화 및 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시설) '19년 12개소, 종사자 326명 → '22년 126개소, 4,272명</li> <li>* 지자체 정책환경 변화 및 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시설) '19년 9개소, 종사자 385명 → '22년 33개소, 1,471명</li> <li>* 지자체 정책환경 변화 및 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li> </ul>                          |          |          |                                       |

##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 1.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본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는 아래 [그림 I-3]과 같이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분석 및 종합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I-3]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흐름도





## 2.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 가.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쟁점 도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하여 우선 조사 대상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추진경위, 계획된 사업내용 파악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한다. 조사의 쟁점은 사업의 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정치적 여건을 부각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한 준비단계라 할 수 있다. 또한, 제기되는 조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본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설계의 적정성이나 비용·효과성 추정에 대한 분석은 기존 자료 및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사업수행주체로부터 송부되는 자료에 상당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기초자료 생산이 어려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존 자료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며, 사업수행주체의 적극적인 자료 협조 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예비타당성조사 일반지침 및 사업부문별 표준지침, 각종 고시자료와 함께 사업수행주체로부터 송부된 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 나. 경제사회 환경분석

경제사회 환경분석에서는 경제사회 여건분석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문제가 적절하게 파악되었는지, 해당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유사한 내용의 민간·지자체·재정사업이 존재하는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또한,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은 충분한지, 향후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사업의 중장기적 재정소요에 변동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 다. 사업설계의 적정성

사업설계의 적정성은 사업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지와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가 높은지를 살펴봄으로써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시급성을 검토해 본다. 또한, 수혜대상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수혜대상이 명확하고,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는지, 실제 사업대상 외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추진 방법의 적정성과 전달체계의 적절성은 사업주체간(공공/민간, 중앙/지방)의 역할 구분이 명확한지, 전달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수요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달체계가 구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라. 비용·효과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은 기대효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인지, 향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등을 검토한다. 또한, 비용추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성과 대비 비용은 적정수준인지,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해 봄으로써 비용·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종합평가에서는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분과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 II 장

---

# 기초자료 분석

### 제1절 기초자료 분석

#### 1. 사회서비스 정의 및 현황

#####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 1)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정의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법률상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2007년 7월에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약칭: 사회적기업법)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기성 외(2011)에 따르면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03년에 정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한 데에서 기인한다.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제정으로 그동안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은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그 역할이 전환되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이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약칭: 사회적기업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217호, 2007. 1. 3.,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라 함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라 함은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라 함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경영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행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07. 7. 1.] [대통령령 제20141호, 2007. 6. 29., 제정]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2010.12.9. 개정)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2010.12.9. 개정)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2010.12.9. 개정)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는 2011년 8월 제정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권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이용의 활성화, 이용자의 권익 보호,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및 사회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권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  
[시행 2012. 2. 5.] [법률 제10998호, 2011. 8. 4., 제정]

####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3. “사회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여 제공자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이용자가 제시하는 이용권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을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장 제3조 4호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2012년 1월 전면개정을 통해 법률상 가장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도입하였으며 사회보장의 정의에서 출산, 양육을 사회적 위험으로 포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를 사회서비스로 포괄 확대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lt;개정 2009. 6. 9.&gt;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 6. 9.]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 2013. 1. 27.] [법률 제11238호, 2012. 1. 26.,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는 개별 법률에 따라 그 정의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비교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1>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정의

| 구분                       | 내용                                                                                                                                                                 |
|--------------------------|--------------------------------------------------------------------------------------------------------------------------------------------------------------------|
| 사회보장기본법<br>(제3조 제4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교육·보건·사회복지·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
| 사회복지사업법<br>(제2조 제6호)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 보건의료기본법<br>(제3조 제2호)     |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 2) 사회서비스의 학술적 정의

남찬섭(2012)에 따르면 외국에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의 정의 또한 국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는 광의로는 소득보장, 보건, 주택, 교육, 대인사회서비스의 다섯 가지 제도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대인사회서비스만을 가리킨다. 여기서 대인사회서비스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의 발휘를 돕고 사회적 관계를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 서비스로서 이 서비스가 수혜자의 상황에 따라 대단히 개별화되어 있으며 또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일정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직접적 대면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sup>31)</sup>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인사회서비스를 지칭하는 사회서비스는 영국 이외의 유럽국가에서도 사용되며(Munday 1996, 남찬섭 2012 p. 18 재인용), 미국에서는 이를 휴먼서비스(human service)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Siplia 1997, 남찬섭 2012 p. 18 재인용)

31) 남찬섭(2012), p. 18

미국에서의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 교육,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대인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를 (i)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와 간호보호서비스, (ii) 육체,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서비스, (ii)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개인 및 가족보호서비스와 알코올 및 약물 남용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자산조사에 기초한 경제적 보조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노기성 외, 2011 p. 28)

양난주(2018, p. 367)는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사회서비스의 개념정의는 제도적 맥락, 즉 사회서비스를 정의하는 법률과 관련 정책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사회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회구성원에게 사회적으로 조직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개인의 자율적인 삶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노기성 외(2011, p. 17)는 우리나라에서 2006년부터 사회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에 일련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사회서비스정책으로 총칭한 것이 사회서비스라는 용어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소비외부성에 근거한 이론적 분석과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외부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공적제공이 요구되는 대인서비스”로 “광의로는 보건복지분야와 교육분야를 주로 포함하는 사회복지성이 강한 사회정책사업, 협의로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최협의로는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에 대한 학술적인 정의는 국가 및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표 II-2> 사회서비스의 범위

| 구분               | 내용                                                                                              |
|------------------|-------------------------------------------------------------------------------------------------|
| 광의               | 교육서비스,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
| 협의               |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
| 최협의<br>(사회복지서비스) | 사회적 돌봄서비스, 노인활동보조, 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장애아동돌봄, 보육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가사지원 및 간병 서비스, 인자·인성 발달 지원서비스 등 |

자료: 노기성 외(2011), p. 36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정의를 기반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본다.



## 나. 국내 사회서비스의 현황

### 1) 사회서비스의 전개과정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사회서비스가 도입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6년 대통령자문위원회와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5월 출범 2년째를 맞은 참여정부는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한 제조업을 대신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사회서비스에 주목하였다. 2006년 4월에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추진 기본 방향’을 수립(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하였고, 2006년 7월에는 기획예산처의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인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을 구성하여 사회서비스 정책을 총괄하였으나,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sup>32)</sup> 도입과 함께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정책을 주관하기 시작하였다.<sup>33)</sup> 이후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 및 시행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 1월 사회서비스 포괄보조의 제도화를 시작하였다.

### 2) 사회서비스의 유형

사회서비스의 유형은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처음 시작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를 7개 영역, 7가지 유형의 서비스와 사회서비스 특수 분류 중 대분류 기준 조합에 따라 총 10개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영역별 주요 사회서비스 유형은 아래 <표 II-3>과 같다.<sup>34)</sup>

3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사회서비스 구매 증서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공급기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서비스 신청에서 이용과 비용지급, 정산 등 전 과정이 전자시스템으로 처리·기록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제공기관들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3) 유태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9 내용 인용

34)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_정성조사』, p. 46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

&lt;표 II-3&gt; 2017년도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 영역별 주요 사회서비스 유형

| 항목           | 사회서비스 유형                                                                                |
|--------------|-----------------------------------------------------------------------------------------|
| ① 상담         | 정신건강 및 정서적 지원을 위한 상담 또는 심리지원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부부상담, 사례관리 등                         |
| ② 재활         | 재활서비스: 장애인단 및 판정, 직업재활, 물리치료, 심리재활서비스 등                                                 |
| ③ 성인돌봄       | 성인(장애인, 노인)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가사간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 가사도우미, 파출부 등 |
| ④ 아동돌봄       | 아동 보육 및 돌봄서비스: 어린이집, 개인아이돌보미 파견, 방과 후 돌봄서비스, 장애아동돌봄, 베이비시터 등                            |
| ⑤ 보건/의료/건강관리 |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운동처방서비스, 영양보조, 금연 클리닉 등<br>※ 일반 의료·건강검진서비스 제외                           |
| ⑥ 교육 및 정보제공  | 교육, 정보제공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서비스: 평생교육, 재무설계, 세무·법률지원서비스, 노후설계서비스 등(※ 학원 등 사교육서비스 제외)  |
| ⑦ 고용/취업      |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 구직·일자리 알선, 직업기능 교육 및 훈련, 근로자상담 등                                  |
| ⑧ 주거         | 주거보호 및 주거지원을 위한 주거서비스: 시설거주를 통한 일상생활 지원, 소규모 그룹홈 등                                      |
| ⑨ 문화         | 문화,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문화서비스: 문화, 여가, 스포츠 바우처, 문화생활 체험, 캠프 등                                   |
| ⑩ 환경         | 환경서비스: 환경정비, 방역, 환경가꾸기, 냉난방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_정량조사』, p.42 표 인용

2000년 이후부터 정부의 사회서비스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여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간 연계나 조정없이 산발적으로 확충되었고,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후 각 부처의 사회서비스 사업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앙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현황

현재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사업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및 인력, 이용자 현황은 아래 <표 II-4>와 같다.

&lt;표 II-4&gt;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제공기관 및 인력현황

(단위: 개소, 백명)

| 구분            | 제공기관 수 |     |     |     |     | 제공 인력 현황 <sup>1)</sup> |       |       |       |       | 이용자수  |
|---------------|--------|-----|-----|-----|-----|------------------------|-------|-------|-------|-------|-------|
|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 총계            | 68     | 81  | 90  | 102 | 114 | 1,108                  | 1,508 | 1,390 | 1,516 | 1,628 | 5,597 |
| 수계<br>(돌봄분야)  | 29     | 35  | 37  | 42  | 47  | 841                    | 997   | 1,065 | 1,185 | 1,276 | 2,156 |
| 가사<br>간병방문    | 4      | 4   | 4   | 4   | 5   | 53                     | 58    | 58    | 58    | 53    | 93    |
| 노인돌봄<br>종합    | 13     | 15  | 16  | 18  | 20  | 191                    | 236   | 239   | 261   | 293   | 477   |
| 노인단기<br>가사    | -      | 3   | 4   | 6   | 6   | -                      | 6     | 9     | 14    | 14    | 13    |
| 산모<br>신생아     | 3      | 3   | 4   | 5   | 7   | 85                     | 99    | 106   | 123   | 141   | 795   |
| 장애인<br>활동지원   | 8      | 9   | 9   | 9   | 9   | 513                    | 599   | 653   | 729   | 775   | 778   |
| 지역<br>사회서비스   | 24     | 28  | 33  | 39  | 44  | 181                    | 409   | 217   | 210   | 227   | 2,779 |
| 발달재활<br>서비스   | 15     | 15  | 16  | 18  | 19  | 78                     | 97    | 102   | 115   | 119   | 650   |
| 언어<br>발달지원    | 1      | 1   | 2   | 2   | 2   | 8                      | 3     | 4     | 5     | 4     | 5     |
| 발달장애인<br>부모심리 | -      | 2   | 2   | 2   | 2   | -                      | 2     | 2     | 2     | 2     | 7     |

주: 1) 제공인력은 기준 기간내에 1회 이상 바우처서비스를 제공한 자를 의미함  
 자료: 1)유태균(2017. 5. 19), 「사회서비스 10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다」, 2) 『사회서비스 10주년 기념식 및 포럼 자료집』, 보건복지부·한국사회서비스학회, 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검색일자: 2019년 5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 4)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와 전망<sup>35)</sup>

가구의 생애주기를 4단계<sup>36)</sup>로 구분하여 사회서비스 영역별 현재 필요도와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래 <표 II-5>와 같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초등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서 필요도 대비 현재 이용률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미혼가구는 필요도 대비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재활서비스는 노인가구가 필요도 대비 현재 이용률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인돌봄서비스의 필요도 대비 현재 이용률은 노인가

35) 이 절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_정량조사』,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_정성조사』를 일부 발췌하여 제시함

36) 미혼가구 - 초등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양육 가구(첫 자녀 출생전+첫 자녀초등학교 입학전+첫 자녀초등재학기) - 성인자녀 동거가구(경제활동 자녀동거기+비경제활동자녀동거기) - 노인가구 등으로 구분함

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돌봄서비스의 경우, 필요도 대비 이용경험률이 상담 서비스와 같이 초등 이하 자녀 양육가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서비스의 필요도 대비 현재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서비스 유형은 아동돌봄서비스(29.8%)로 성인자녀 동거가구의 15.2%, 초등재학 이하의 자녀양육 가구의 44.8%, 미혼가구 8.1%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의 필요도 대비 현재 이용률은 17.6%로 나타났다.

<표 II-5> 사회서비스 영역별 현재 필요도와 이용률 및 향후 이용의향: 생애주기별 비교

(단위: %, 가구)

| 서비스유형        | 서비스 필요비율 <sup>1)</sup> |      |          |      | 현재 서비스 이용비율 <sup>2)</sup> |      |          |      |
|--------------|------------------------|------|----------|------|---------------------------|------|----------|------|
|              | 미혼<br>자녀               | 양육   | 성인<br>자녀 | 노인   | 미혼<br>자녀                  | 양육   | 성인<br>자녀 | 노인   |
| ① 상담         | 31.6                   | 30.7 | 33.0     | 24.6 | 4.2                       | 6.4  | 4.7      | 3.5  |
| ② 재활         | 21.8                   | 19.7 | 25.1     | 38.6 | 1.1                       | 2.7  | 3.1      | 5.5  |
| ③ 성인돌봄       | 24.6                   | 23.5 | 30.7     | 59.1 | 2.3                       | 3.0  | 4.0      | 12.0 |
| ④ 아동돌봄       | 13.3                   | 61.9 | 16.1     | 6.5  | 1.1                       | 27.7 | 2.4      | 0.0  |
| ⑤ 보건/의료/건강관리 | 49.1                   | 44.3 | 51.1     | 66.5 | 3.3                       | 6.1  | 9.4      | 18.5 |
| ⑥ 교육 및 정보제공  | 40.8                   | 53.3 | 37.8     | 5.6  | 2.9                       | 6.8  | 5.4      | 0.0  |
| ⑦ 고용/취업      | 48.9                   | 39.5 | 43.0     | 19.5 | 4.3                       | 4.4  | 6.7      | 4.9  |
| ⑧ 주거         | 41.0                   | 27.3 | 24.3     | 18.7 | 1.9                       | 4.0  | 2.4      | 3.1  |
| ⑨ 문화         | 47.9                   | 44.3 | 43.0     | 23.6 | 4.8                       | 6.9  | 8.1      | 7.1  |
| ⑩ 환경         | 44.2                   | 31.5 | 30.9     | 21.6 | 2.2                       | 4.3  | 3.4      | 4.1  |
| 가구수          | 2,616                  |      |          |      |                           |      |          |      |

주: 1) 필요가구 비율은 4단계 생애주기별 가구(총 2,616가구) 중 현재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

2) 현재 서비스 이용가구 비율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_정량조사』, p.316 표 인용

향후 2~3년 내 이용의향을 조사한 결과, 사회서비스 전 영역에 걸쳐 현재 이용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담 및 재활서비스의 경우, 성인자녀 동거가구와 노인가구의 비중이 크고, 보건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는 성인자녀 동거가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돌봄서비스와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 초등 이하 자녀 양육가구가 가장 높았으며, 성인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성인자녀 동거가구와 노인이

구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밖의 고용/취업서비스는 성인자녀 동거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와 환경분야의 경우는 노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표 II-6>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현재 이용률과 2~3년 내 이용 의향 비율

(단위: %, 가구)

| 서비스유형        | 향후 2~3년 내 서비스 이용의향 비율 <sup>1)</sup><br>(‘보통+대체로+반드시 이용’응답의 합) |      |          |       | 향후 2~3년 내 이용 확신총 <sup>2)</sup><br>(‘반드시 이용’응답) |      |          |      |
|--------------|---------------------------------------------------------------|------|----------|-------|------------------------------------------------|------|----------|------|
|              | 미혼<br>자녀                                                      | 양육   | 성인<br>자녀 | 노인    | 미혼<br>자녀                                       | 양육   | 성인<br>자녀 | 노인   |
| ① 상담         | 89.9                                                          | 88.5 | 90.4     | 85.6  | 2.9                                            | 3.1  | 5.6      | 9.4  |
| ② 재활         | 76.0                                                          | 85.0 | 89.0     | 86.8  | 12.1                                           | 6.0  | 7.2      | 3.7  |
| ③ 성인돌봄       | 84.3                                                          | 86.9 | 87.2     | 93.9  | 9.8                                            | 6.5  | 9.6      | 13.9 |
| ④ 아동돌봄       | 76.5                                                          | 91.6 | 82.1     | 82.9  | 5.0                                            | 14.4 | 5.7      | 0.0  |
| ⑤ 보건/의료/건강관리 | 90.4                                                          | 88.7 | 92.7     | 90.6  | 6.5                                            | 6.7  | 5.9      | 9.2  |
| ⑥ 교육 및 정보제공  | 85.0                                                          | 92.3 | 90.0     | 78.7  | 7.7                                            | 3.2  | 6.4      | 29.6 |
| ⑦ 고용/취업      | 90.2                                                          | 91.4 | 93.2     | 89.8  | 15.0                                           | 3.2  | 11.2     | 13.2 |
| ⑧ 주거         | 89.5                                                          | 85.9 | 84.1     | 94.8  | 8.2                                            | 6.8  | 5.2      | 11.1 |
| ⑨ 문화         | 91.1                                                          | 89.7 | 93.7     | 100.0 | 10.5                                           | 6.6  | 8.0      | 8.9  |
| ⑩ 환경         | 88.3                                                          | 87.6 | 90.9     | 96.8  | 6.4                                            | 7.2  | 8.4      | 8.8  |

주: 1) ‘서비스 이용의향 비율’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대상으로 향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을 질문한 결과, ‘전혀 이용의향 없음’, ‘별로 이용의향 없음’을 제외한 ‘보통’과 ‘대체로 이용의향 있음’, ‘반드시 이용’의 응답값을 합산한 결과임.

2) 서비스 이용 확신총은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 응답률 중 ‘반드시 이용’ 응답률로서 예를 들어, 상담서비스의 경우 미혼가구의 향후 이용의향 응답은 89.9%이며, 이중 2.9%가 반드시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결과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_정량조사』, p. 316 표 인용

한편, 『2017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연구』 p. 44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품질을 판단할 때 가장 주요한 기준이 ‘제공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내용’이 대부분의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세 번째가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기준으로 특히, 보건/의료, 문화분야에서 응답비율이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다. 품질판단 기준으로 대부분 영역에서 ‘제공인력의 경력 및 전

문성'과 '서비스 내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가운데, '제공기관의 공공성'에 응답한 비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난 분야는 성인돌봄, 주거, 환경 분야로 나타났다.

<표 II-7> 영역별 서비스 이용시 서비스품질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

(단위: %, 가구)

| 서비스유형            | 제공<br>인력<br>경력<br>및<br>전문<br>성 | 서비<br>스<br>내용 | 서비<br>스<br>이용<br>료 | 제공<br>기관<br>규모 | 제공<br>기관<br>공공<br>성 | 서비<br>스<br>이용<br>편의<br>성<br>/접근<br>성 | 이용<br>료<br>정부<br>지원 | 중앙<br>정부<br>/지자<br>체의<br>제공<br>기관<br>관리<br>감독<br>여부 | 기타  | 계                |
|------------------|--------------------------------|---------------|--------------------|----------------|---------------------|--------------------------------------|---------------------|-----------------------------------------------------|-----|------------------|
| ① 상담             | 36.5                           | 20.0          | 12.9               | 11.0           | 7.4                 | 5.1                                  | 5.0                 | 2.2                                                 | -   | 100.0<br>(815)   |
| ② 재활             | 31.3                           | 14.9          | 17.9               | 14.7           | 7.7                 | 5.1                                  | 6.0                 | 2.4                                                 | -   | 100.0<br>(679)   |
| ③ 성인돌봄           | 27.9                           | 18.3          | 15.5               | 13.0           | 13.3                | 4.7                                  | 3.4                 | 3.9                                                 | -   | 100.0<br>(899)   |
| ④ 아동돌봄           | 33.7                           | 15.7          | 13.0               | 11.6           | 9.8                 | 5.6                                  | 4.2                 | 6.3                                                 | -   | 100.0<br>(587)   |
| ⑤ 보건/의료<br>/건강관리 | 26.3                           | 20.3          | 20.5               | 11.4           | 8.2                 | 6.5                                  | 3.4                 | 3.4                                                 | -   | 100.0<br>(1,437) |
| ⑥ 교육 및<br>정보제공   | 32.6                           | 22.0          | 13.7               | 10.6           | 7.1                 | 6.3                                  | 3.2                 | 4.5                                                 | -   | 100.0<br>(941)   |
| ⑦ 고용/취업          | 28.4                           | 20.7          | 11.4               | 10.0           | 9.4                 | 7.9                                  | 4.2                 | 7.8                                                 | 0.2 | 100.0<br>(1,040) |
| ⑧ 주거             | 19.4                           | 19.6          | 13.7               | 16.0           | 12.9                | 6.6                                  | 5.0                 | 6.6                                                 | -   | 100.0<br>(670)   |
| ⑨ 문화             | 17.2                           | 26.0          | 23.8               | 12.4           | 7.1                 | 6.6                                  | 3.6                 | 3.4                                                 | 0.2 | 100.0<br>(1,135) |
| ⑩ 환경             | 22.0                           | 21.7          | 11.8               | 13.8           | 13.3                | 7.3                                  | 4.6                 | 5.5                                                 | 0.1 | 100.0<br>(867)   |

주: 1. 해당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 중 해당서비스 이용의향 가구(③보통 +④대체로+⑤반드시 이용의향 있음)를 대상으로 한 질문임.

2. ( ) 안은 가구수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_정량조사』, p. 144

## 2. 주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서비스의 유형은 매우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본 연구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에서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국공립시설 중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분석하기로 한다.

### 가. 보육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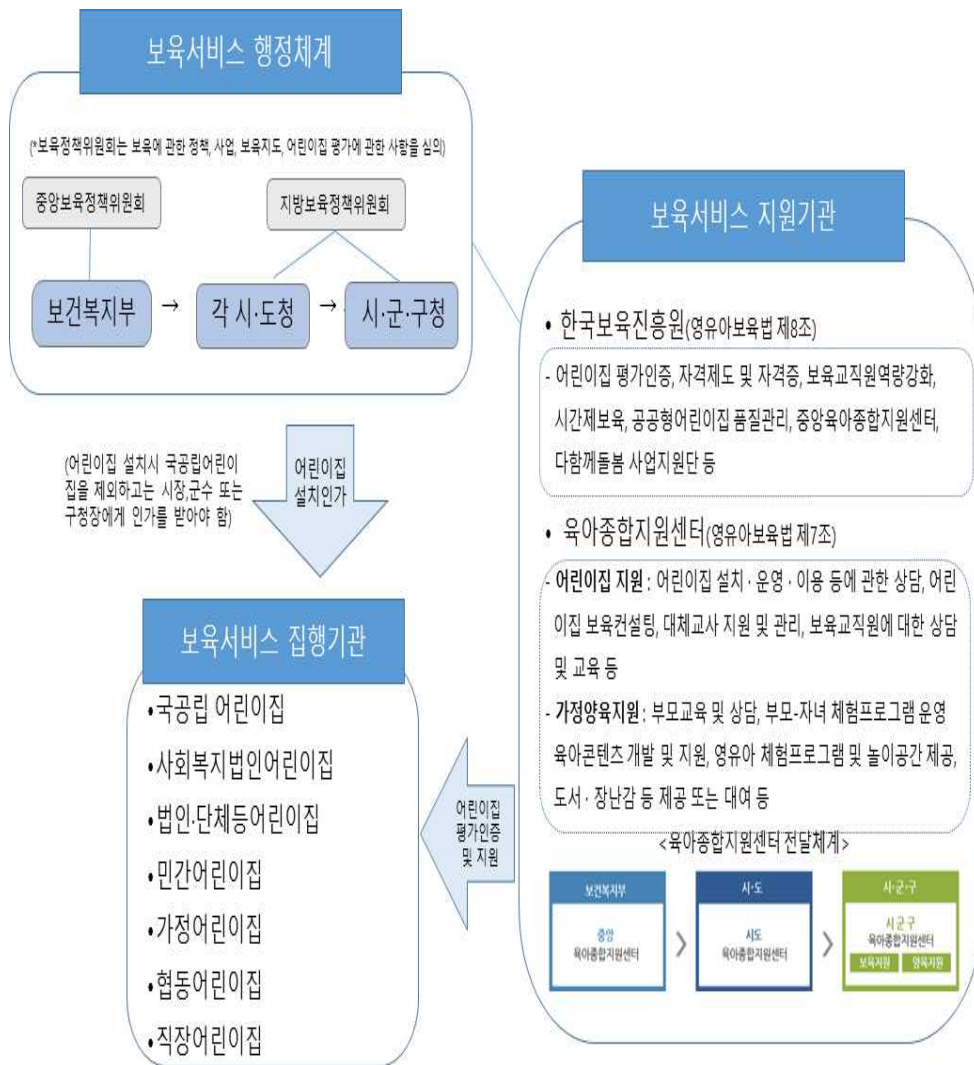
국내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및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보육서비스는 포괄적으로 양육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 유형의 지원정책을 의미한다. 서비스 유형은 기관보육서비스와 가정보육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기관보육서비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의미하며 가정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의 보육을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양육수당 수급을 전제로 제공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내 보육서비스 주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이며 부처에 따라서 각기 다른 특성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정보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을 통해서 유아교육과 함께 기관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별 거점센터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로 범위를 한정하여 살펴보겠다.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는 아래 [그림 II-1] 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지원체계와 같이 크게 보육서비스 행정체계, 보육서비스 집행기관, 보육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행정체계는 중앙의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하여, 각 광역 시, 도의 여성가족 관련실 산하 보육지원 관련팀(예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下 6개팀,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 출산보육과 下 2개팀 등)와 각 기초 시, 군, 구의 여성보육과(예시, 송파구 여성보육과)그리고 읍, 면, 동의 수직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보육위

원회가 각 단계별로 중앙 보육위원회, 광역단체 보육위원회, 기초단체 보육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림 II-1] 보건복지부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둘째, 보육서비스 집행기관은 보육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가 만나는 전달 체계의 최일선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을 설립주체에 따라 나누면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셋째, 보육서비스 지원기관에는 크게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교육원, 보육시설 관련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목적은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르면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자격제도 및 자격증,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시간제보육,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 사업지원단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영유아보육법 제7조)으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나뉘어 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한다.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 1) 보육서비스 집행기관(어린이집) 현황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와 출산 육아로 인한 부담 등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는 영역이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6년 기준 58.4%로 OECD 35개국 평균 63.6%에 비해 낮은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lt;표 II-8&gt; OECD 주요 국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단위 : %)

| 구 분   | 한국   | 일본   | 미국   | OECD 평균 |
|-------|------|------|------|---------|
| 2009년 | 53.9 | 62.9 | 69.0 | 61.5    |
| 2010년 | 54.5 | 63.2 | 68.4 | 61.8    |
| 2011년 | 54.9 | 63.0 | 67.8 | 61.8    |
| 2012년 | 55.2 | 63.4 | 67.6 | 62.3    |
| 2013년 | 55.6 | 65.0 | 67.2 | 62.6    |
| 2014년 | 57.0 | 66.0 | 67.1 | 62.8    |
| 2015년 | 57.9 | 66.7 | 66.9 | 63.0    |
| 2016년 | 58.4 | 68.1 | 67.3 | 63.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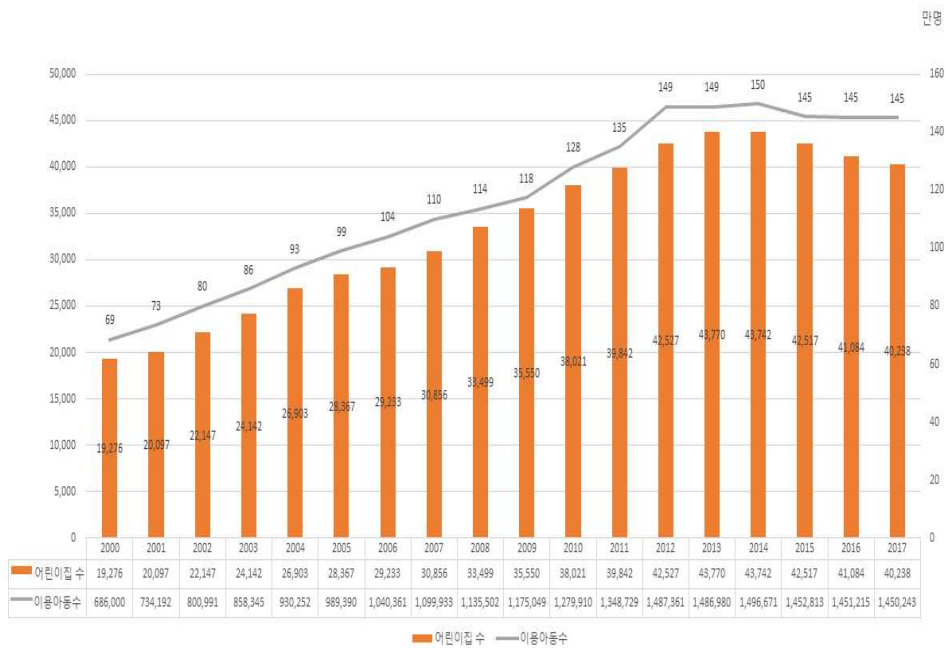
주: OECD기준은 15~64세 기준(OECD, Employment Outlook 2017)

자료: e-나라지표 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 검색일자: 2019.3.7.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추진으로 보육료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육시설도 점차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핵심적인 추진과제로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2년까지 40%까지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은 11.9%로 양적인 면에서도 부족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도 대부분 위탁의 형태로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자세한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에 기술하기로 한다.

아래의 [그림 II-2] 2000~2017년 어린이집 수와 이용아동 수 현황을 보면 2000년 19,276개에서 2005년 28,367개 2010년 38,021개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2013년 43,770개를 정점으로 하락추세로 전환하여 2015년 42,517개, 2017년 40,238개로 집계되고 있다.

[그림 11-2] 2000~2017년 어린이집 수와 이용아동 수 현황



주: 아동수는 원원(종일, 맞춤, 야간, 24시간, 방과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어린이집의 감소 이유는 영유아 수 감소 및 규모별 어린이집 간 구조조정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49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은 감소<sup>37)</sup>하는 등 어린이집 간 구조조정 양상이 발생하고 있다.<sup>38)</sup>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은 2000년 45%에서 2005년 11.3% 2010년 10.8%로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5년 11.4% 2017년 12.9%로 조금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중은 크지 않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은 2000년 49.1%에서 2006년 56%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50.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이용아동 비중이 높은 유형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이용아동 비율이 2000년 9.9%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7년 현재는 22.2%의 비율을 나타내어 가정

37) 49인 이하 '13년 34천개소 → '17년 30천개소(△4천)하였으나, 50~99인 규모의 중형어린이집은 증가 '13년 6.8천개소 → '17년 7.4천개소(+0.5천)함

38) 보건복지부, 「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p. 3 내용 인용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이 높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은 2000년 23%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2017년 기준 6.7%로 줄어들었고, 직장어린이집은 2017년 기준 4%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보다 비중이 매우 작지만 그 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표 II-9> 어린이집 연도별 보육아동 현황

(단위: 명, %)

| 구분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단체<br>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2017 | 1,450,243 | 186,916 | 96,794     | 43,404     | 738,559 | 321,608 | 4,508 | 58,454 |
|      | 100.0     | 12.9    | 6.7        | 3.0        | 50.9    | 22.2    | 0.3   | 4.0    |
| 2016 | 1,451,215 | 175,929 | 99,113     | 45,374     | 745,663 | 328,594 | 4,240 | 52,302 |
|      | 100.0     | 12.1    | 6.8        | 3.1        | 51.4    | 22.6    | 0.3   | 3.6    |
| 2015 | 1,452,813 | 165,743 | 99,715     | 46,858     | 747,598 | 344,007 | 4,127 | 44,765 |
|      | 100.0     | 11.4    | 6.9        | 3.2        | 51.5    | 23.7    | 0.3   | 3.1    |
| 2014 | 1,496,671 | 159,241 | 104,552    | 49,175     | 775,414 | 365,250 | 3,774 | 39,265 |
|      | 100.0     | 10.6    | 7.0        | 3.3        | 51.8    | 24.4    | 0.3   | 2.6    |
| 2013 | 1,486,980 | 154,465 | 108,834    | 51,684     | 770,179 | 364,113 | 3,226 | 34,479 |
|      | 100.0     | 10.4    | 7.3        | 3.5        | 51.8    | 24.5    | 0.2   | 2.3    |
| 2012 | 1,487,361 | 149,677 | 113,049    | 51,914     | 768,256 | 371,671 | 2,913 | 29,881 |
|      | 100.0     | 10.1    | 7.6        | 3.5        | 51.7    | 25.0    | 0.2   | 2.0    |
| 2011 | 1,348,729 | 143,035 | 112,688    | 50,676     | 706,647 | 308,410 | 2,286 | 24,987 |
|      | 100.0     | 10.6    | 8.4        | 3.8        | 52.4    | 22.9    | 0.2   | 1.9    |
| 2010 | 1,279,910 | 137,604 | 114,054    | 51,126     | 671,891 | 281,436 | 1,898 | 21,901 |
|      | 100.0     | 10.8    | 8.9        | 4.0        | 52.5    | 22.0    | 0.1   | 1.7    |
| 2009 | 1,175,049 | 129,656 | 112,338    | 52,718     | 623,045 | 236,843 | 1,655 | 18,794 |
|      | 100.0     | 11.0    | 9.6        | 4.5        | 53.0    | 20.2    | 0.1   | 1.6    |
| 2008 | 1,135,502 | 123,405 | 113,894    | 53,818     | 615,647 | 210,438 | 1,491 | 16,809 |
|      | 100.0     | 10.9    | 10.0       | 4.7        | 54.2    | 18.5    | 0.1   | 1.5    |
| 2007 | 1,099,933 | 119,141 | 118,211    | 55,906     | 612,484 | 177,623 | 1,444 | 15,124 |
|      | 100.0     | 10.8    | 10.7       | 5.1        | 55.7    | 16.1    | 0.1   | 1.4    |
| 2006 | 1,040,361 | 114,657 | 120,551    | 58,808     | 582,329 | 148,240 | 1,238 | 14,538 |
|      | 100.0     | 11.0    | 11.6       | 5.7        | 56.0    | 14.2    | 0.1   | 1.4    |
| 2005 | 989,390   | 111,911 | 125,820    | 56,374     | 552,360 | 129,007 | 933   | 12,985 |
|      | 100.0     | 11.3    | 12.7       | 5.7        | 55.8    | 13.0    | 0.1   | 1.3    |
| 2004 | 930,252   | 107,335 | 135,531    | 48,414     | 507,398 | 119,787 | 미분류   | 11,787 |
|      | 100.0     | 11.5    | 14.6       | 5.2        | 54.5    | 12.9    | -     | 1.3    |
| 2003 | 858,345   | 103,474 | 140,994    | 37,911     | 461,640 | 103,935 | 미분류   | 10,391 |
|      | 100.0     | 12.1    | 16.4       | 4.4        | 53.8    | 12.1    | -     | 1.2    |
| 2002 | 800,991   | 103,351 | 142,035    | 30,289     | 425,647 | 90,939  | 미분류   | 8,730  |
|      | 100.0     | 12.9    | 17.7       | 3.8        | 53.1    | 11.4    | -     | 1.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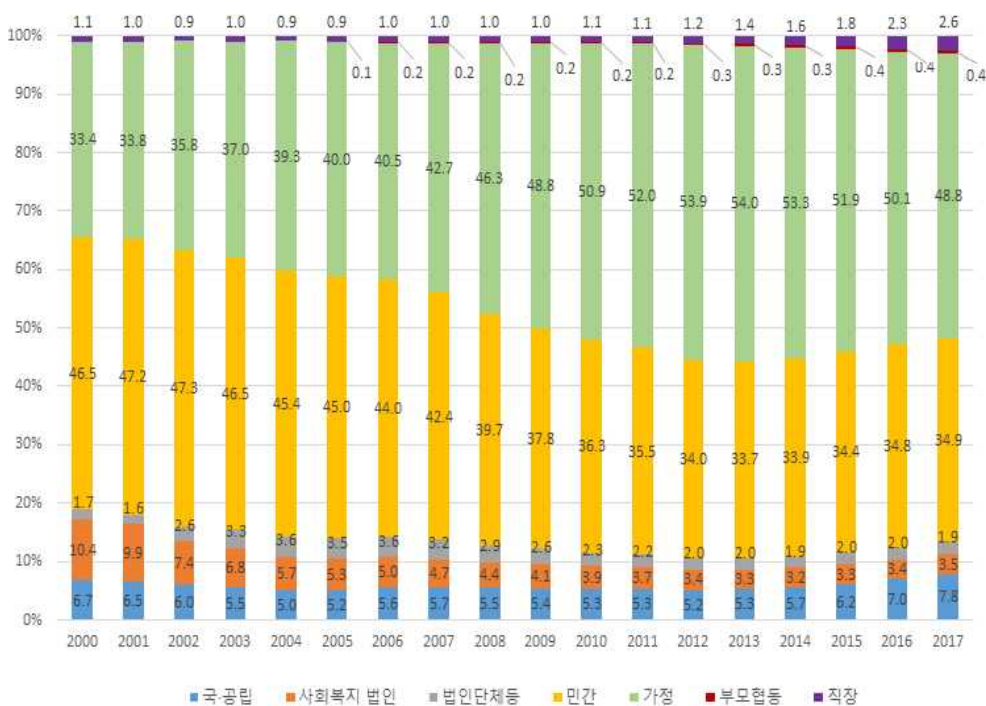
134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예비타당성조사

| 구분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단체<br>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2001 | 734,192 | 102,118 | 161,419    | 16,483     | 369,044 | 77,247 | 미분류 | 7,881 |
|      | 100.0   | 13.9    | 22.0       | 2.2        | 50.3    | 10.5   | -   | 1.1   |
| 2000 | 686,000 | 99,666  | 157,993    | 15,949     | 336,625 | 67,960 | 미분류 | 7,807 |
|      | 100.0   | 14.5    | 23.0       | 2.3        | 49.1    | 9.9    | -   | 1.1   |

주: 아동수는 현원(중일, 맞춤, 야간, 24시간, 방과후) 기준(2017.12.31.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2000~2017년 어린이집을 설립주체별로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II-3]과 같이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이 약 80% 내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5~8% 내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유형들이 15~20%를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00년 6.7%에서 2010년 5.3%로 줄어들다가 2013년부터 미미하게나마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7.8%까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II-3] 2000~2017년 어린이집 설립주체별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아래의 <표 II-10> 2017년 어린이집 일반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수는 40,238개이며,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3,157개로 전체 어린이집 수의 7.8%에 불과하며, 가정어린이집 19,956개, 민간어린이집 14,045개로 각각 48.8%와 34.9%로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보면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11.9%에 불과하다.

<표 II-10> 2017년 어린이집 일반 현황

(단위: 개소, 명, %)

| 구분                 |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어린이집수              | 개소(A) | 40,238    | 3,157   | 1,392   | 771     | 14,045  | 19,656  | 164   | 1,053  |
|                    | (비중)  | 100.0     | 7.8     | 3.5     | 1.9     | 34.9    | 48.8    | 0.4   | 2.6    |
| 아동수                | 정원(B) | 1,756,603 | 209,727 | 131,820 | 56,514  | 915,855 | 360,397 | 5,506 | 76,784 |
|                    | (비중)  | 100.0     | 11.9    | 7.5     | 3.2     | 52.1    | 20.5    | 0.3   | 4.4    |
|                    | 현원(C) | 1,450,243 | 186,916 | 96,794  | 43,404  | 738,559 | 321,608 | 4,508 | 58,454 |
|                    | (비중)  | 100.0     | 12.9    | 6.7     | 3.0     | 50.9    | 22.2    | 0.3   | 4.0    |
|                    | 이용률   | 82.6      | 89.1    | 73.4    | 76.8    | 80.6    | 89.2    | 81.9  | 76.1   |
| 보육교직원수             | 인원(D) | 330,217   | 36,098  | 18,845  | 8,254   | 146,920 | 104,176 | 1,066 | 14,858 |
|                    | (비중)  | 100.0     | 10.9    | 5.7     | 2.5     | 44.5    | 31.5    | 0.3   | 4.5    |
| 어린이집1개당 아동수(C/A)   |       | 36.0      | 59.2    | 69.5    | 56.3    | 52.6    | 16.4    | 27.5  | 55.5   |
|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C/D) |       | 4.4       | 5.2     | 5.1     | 5.3     | 5.0     | 3.1     | 4.2   | 3.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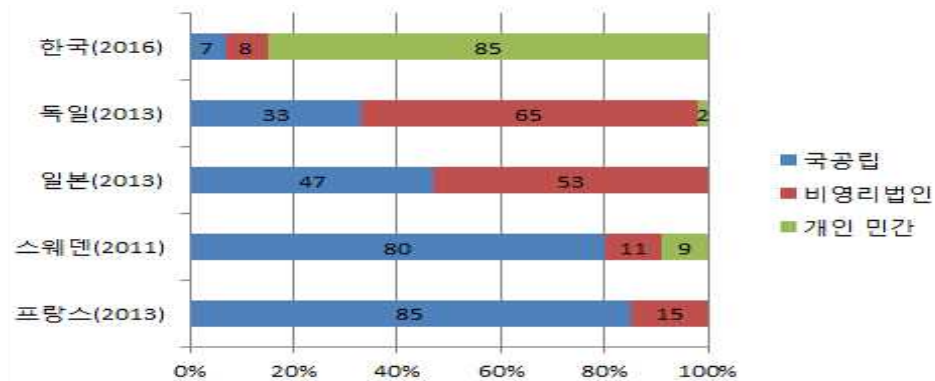
주: 아동수는 현원(종일, 맞춤, 야간, 24시간, 방과후) 기준(2017.12.31.기준)

자료: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통계(<https://central.childcare.go.kr/cccf/community/data/DataSl.jsp?BBSGB=40&flag=SI&BID=65925>)

양적인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부족한 상황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국공립 비율은 OECD 국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하단 의 [그림 II-4] 주요국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비율 참고).

아래의 <표 II-1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2009~2017)을 보면, 2017년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중 약 66.9%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39.9%는 개인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9년에는 88.4%가 직영으로 운영되었으나 2010년 들어서 급격하게 위탁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이 신설됨에 따라 민간 위탁운영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보육서비스 구조는 관리책임과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만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II-4] 주요국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7년 12월, p.9 표 재인용

&lt;표 II-11&gt;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2009~2017년)

(단위: 개수, %)

| 구분   | 전체    | 직영    | 위탁    |       |        |      |     |      |      |           |     |
|------|-------|-------|-------|-------|--------|------|-----|------|------|-----------|-----|
|      |       |       | 소계    | 개인    | 사회복지법인 | 기타법인 | 단체  | 학교법인 | 종교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 2017 | 3,157 | 1,046 | 2,111 | 1,261 | 327    | 172  | 155 | 87   | 96   | 9         | 4   |
|      | 100   | 33.1  | 66.9  | 39.9  | 10.4   | 5.4  | 4.9 | 2.8  | 3.0  | 0.3       | 0.1 |
| 2016 | 2,859 | 1,102 | 1,787 | 1,072 | 279    | 137  | 111 | 64   | 77   | 6         | 11  |
|      | 100   | 38.5  | 62.5  | 37.5  | 9.8    | 4.8  | 3.9 | 2.2  | 2.7  | 0.2       | 0.4 |
| 2015 | 2,629 | 1,064 | 1,565 | 965   | 235    | 121  | 92  | 60   | 75   | 3         | 14  |
|      | 100   | 40.5  | 59.5  | 36.7  | 8.9    | 4.6  | 3.5 | 2.3  | 2.9  | 0.1       | 0.5 |
| 2014 | 2,489 | 641   | 1,848 | 900   | 400    | 359  | 144 | -    | -    | -         | 45  |
|      | 100   | 25.8  | 74.2  | 36.2  | 16.1   | 14.4 | 5.8 | -    | -    | -         | 1.8 |
| 2013 | 2,332 | 578   | 1,754 | 845   | 395    | 343  | 130 | -    | -    | -         | 41  |
|      | 100   | 24.8  | 75.2  | 36.2  | 16.9   | 14.7 | 5.6 | -    | -    | -         | 1.8 |
| 2012 | 2,204 | 638   | 1,566 | 742   | 359    | 315  | 108 | -    | -    | -         | 42  |
|      | 100   | 28.9  | 71.1  | 33.7  | 16.3   | 14.3 | 4.9 | -    | -    | -         | 1.9 |
| 2011 | 2,116 | 474   | 1,642 | 777   | 368    | 334  | 119 | -    | -    | -         | 44  |
|      | 100   | 22.4  | 77.6  | 36.7  | 17.4   | 15.8 | 5.6 | -    | -    | -         | 2.1 |
| 2010 | 2,034 | 594   | 1,440 | 645   | 326    | 313  | 110 | -    | -    | -         | 46  |
|      | 100   | 29.2  | 70.8  | 31.7  | 16.0   | 15.4 | 5.4 | -    | -    | -         | 2.3 |
| 2009 | 1,914 | 1,692 | 222   | 108   | 40     | 45   | 22  | -    | -    | -         | 7   |
|      | 100   | 88.4  | 11.6  | 5.6   | 2.1    | 2.4  | 1.1 | -    | -    | -         | 0.4 |

주: 각 연도 12월 기준

자료: 한국보건인력개발원, 「(가칭)사회서비스원 사업운용모델 마련 연구」, 2018년 12월, p.90 인용

## 2)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자 현황

어린이집 종류별 보육교직원 현황은 아래 <표 II-12>와 같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조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t;표 II-12&gt;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 계       | 원장     | 보육교사    | 특수교사  | 치료사 | 영양사 | 간호사   | 사무원   | 조리원    | 기타     |
|--------|---------|--------|---------|-------|-----|-----|-------|-------|--------|--------|
| 소계     | 330,217 | 40,085 | 235,704 | 2,106 | 600 | 944 | 1,249 | 1,135 | 30,180 | 18,214 |
| 국공립    | 36,098  | 3,125  | 25,610  | 976   | 164 | 128 | 190   | 174   | 4,017  | 1,714  |
| 사회복지법인 | 18,845  | 1,389  | 12,452  | 839   | 350 | 93  | 119   | 142   | 1,848  | 1,613  |
| 법인·단체등 | 8,254   | 773    | 5,456   | 82    | 16  | 40  | 57    | 88    | 904    | 838    |
| 민간     | 146,920 | 13,977 | 107,832 | 199   | 68  | 502 | 707   | 484   | 13,448 | 9,703  |
| 가정     | 104,176 | 19,601 | 72,728  | 2     | 1   | 0   | 0     | 46    | 8,091  | 3,707  |
| 협동     | 1,066   | 166    | 704     | 3     | 1   | 1   | 1     | 0     | 127    | 63     |
| 직장     | 14,858  | 1,054  | 10,922  | 5     | 0   | 180 | 175   | 201   | 1,745  | 576    |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통계」, 36면 시트 참고

가) 보육교직원 자격 및 채용 절차<sup>39)</sup>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한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정하며, 세부사항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검정 업무편람에 따른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영유아보육법 제21조) 어린이집원장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39) 아래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사업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표 II-1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                                                                                                                                                                                                                                                                                                                                                                                                                                                                                                                                                                                                                                                                                                                                                                                                                                                                                                                                                                                                                                                                                                                                                                                                                                                                                                                                                                                                                                                                                                                                                                                                                                                                    |
|--------------------------------------------------------------------------------------------------------------------------------------------------------------------------------------------------------------------------------------------------------------------------------------------------------------------------------------------------------------------------------------------------------------------------------------------------------------------------------------------------------------------------------------------------------------------------------------------------------------------------------------------------------------------------------------------------------------------------------------------------------------------------------------------------------------------------------------------------------------------------------------------------------------------------------------------------------------------------------------------------------------------------------------------------------------------------------------------------------------------------------------------------------------------------------------------------------------------------------------------------------------------------------------------------------------------------------------------------------------------------------------------------------------------------------------------------------------------------------------------------------------------------------------------------------------------------------------------------------------------------------------------------------------------|
| <p>1) 일반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li> <li>○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2) 가정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li> <li>○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3) 영아전담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li> <li>○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4) 장애아전문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li> <li>-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li> </ul> </li> </ul> <p>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동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li> <li>○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li> <li>※ 조건부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겸임제한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을 겸임할 수 없음</li> </ul> <p>6) 1)~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함</p> <p>※ '14.3.1.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사전직무교육 이수가 원칙(단, 「영유아보육법」 부칙&lt;법률 제7153호, 2004.1.29&gt;에 따라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예외)</p> <p>※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직무교육 중복이수 불필요</p> |
|--------------------------------------------------------------------------------------------------------------------------------------------------------------------------------------------------------------------------------------------------------------------------------------------------------------------------------------------------------------------------------------------------------------------------------------------------------------------------------------------------------------------------------------------------------------------------------------------------------------------------------------------------------------------------------------------------------------------------------------------------------------------------------------------------------------------------------------------------------------------------------------------------------------------------------------------------------------------------------------------------------------------------------------------------------------------------------------------------------------------------------------------------------------------------------------------------------------------------------------------------------------------------------------------------------------------------------------------------------------------------------------------------------------------------------------------------------------------------------------------------------------------------------------------------------------------------------------------------------------------------------------------------------------------|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pp. 155~157내용을 정리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영유아법 제21조)

<표 II-14> 보육교사 자격 기준

| 등 급     | 자격 기준                                                                                                           |
|---------|-----------------------------------------------------------------------------------------------------------------|
| 보육교사 1급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 <sup>1)</sup> 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2급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보육교사 3급 |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주: 보육관련 대학원이라 함은 ①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② ①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사업안내』, p. 158 표 인용

[그림 II-5] 보육교사 자격현황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통계」, 39, 41, 43번째 시트를 참고하여 작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는 어린이집에서 시·군·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임면보고를 하면,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중 조리사)의 적격성, 결격사유, 범죄경력 등에 대해 검토한 후 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보육교직원 배치기준<sup>40)</sup>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인건비 책정은 호봉<sup>41)</sup>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고보조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미지원 어린이집)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봉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인건비 책정 시 호봉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호봉은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 등이 적용을 받으며,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이외의 자(사무원, 운전원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이 정부 인건비 지원어린이집이 대상이 된다.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은 원장 인건비 80%, 보육교사는 소요 현원(정원 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하며 영아반(0세반~2세반)의 경우는 인건비의 80%, 유아반(3세 이상반)의 경우는 인건비의 30%를 지원한다. 또한, 시간제 보육교사와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등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읍·면지역), 폐광지역, 도서벽지지역의 국공립·법인 등 어린이집 지원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교사 1명 인건비 추가지원 및 조리원 1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2017년 보육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 현황은 아래 <표 II-15>와 같다. 국공립 어린이집 2,791개 사회복지법인 1,376개 법인단체 등 어

40) 만 1세 미만(영아 3인당 1인),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영아 5인당 1인),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영아 7인당 1인),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유아 15인당 1인),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유아 20인당 1인) 등

41) “호봉”이란 근무경력의 기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인건비 책정을 달리하는 기준을 말하며, “호봉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호봉인정 근무경력”이란 호봉 산정 시 인정되는 어린이집 등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원장 자격 취득 및 보육교사의 자격 승급을 위해 필요한 경력(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보육업무 경력)과는 다른 개념임)

린이집 631개, 민간어린이집 265개 가정어린이집 48개로 나타났다.

<표 II-15>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단체등<br>어린이집 | 민간<br>어린이집 | 가정<br>어린이집 | 협동<br>어린이집 | 직장<br>어린이집 |
|-------|-------|------------|----------------|------------|------------|------------|------------|
| 5,350 | 2,791 | 1,376      | 631            | 265        | 48         | 0          | 239        |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보육통계」

#### 다) 어린이집 유형별 정부보조지원

어린이집은 정부지원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등)과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직장, 협동 등)으로 구분하여 정부보조가 수행되며 연령별 보육료를 기반으로 운영하되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되는 구조이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가정·직장·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에 따라 기본보육료를 지원받는다. 또한, 각 항목별 지원대상 세부기준을 만족할 시 보조교사지원비, 대체교사지원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의 처우개선비가 지원되며, 국공립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으로 전환 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II-16> 어린이집 유형별 정부보조지원

| 어린이집<br>유형<br>보조금<br>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br>단체등 | 직장                                                                      | 가정 | 협동 | 민간 |
|-------------------------|-----------------------------------------------------------------------------------------------------------------------------------------------------------------------|------------|-----------|-------------------------------------------------------------------------|----|----|----|
| 부모보육료                   | 만 0세 아동: (종일반) 45만4,000원 / (맞춤반) 35만4,000원<br>만 1세 아동: (종일반) 40만원 / (맞춤반) 31만1,000원<br>만 2세 아동: (종일반) 33만1,000원 / (맞춤반) 25만8,000원<br>만 3~5세 아동: 22만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지원) |            |           |                                                                         |    |    |    |
| 기본보육료                   | -                                                                                                                                                                     |            |           | ○ 「만 0~2세 아동」<br>- 월 지원단가: (종일반=맞춤반) 0세반 485천원,<br>1세반 264천원, 2세반 179천원 |    |    |    |
| 인건비                     | ○ 원장: 월 인건비의 80%<br>○ 보육교사<br>- 영아반교사: 월 80%, - 유아반교사: 월 30%<br>○ 조리원, 농어촌 교사 1인: 월 100%                                                                              |            |           | ○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은 월 120만원)                                             |    |    |    |

| 어린이집<br>보조금<br>유형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br>단체 등 | 직장                                                                                                                             | 가정 | 협동 | 민간 |
|-------------------|---------------------------------------------------------------------------------------------------------------------------------------------------------------------------------------------------------------------------------------------------------------------------------------------------------------------------------------------------|------------|------------|--------------------------------------------------------------------------------------------------------------------------------|----|----|----|
| 교재<br>교구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원시설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li> <li>○ (지원액) 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교재교구비 지원</li> </ul>                                                                                                                                                                                                                        |            |            |                                                                                                                                |    |    |    |
| 처우<br>개선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교사 지원 97.3만원/월</li> <li>○ 대체교사 지원 217.8만원 /월</li> <li>○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2만원/월</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7.5만원/월</li> <li>○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만원/월</li> </ul>                         |    |    |    |
| 환경개선비<br>(기능보강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신축: 461백만원/국비최대지원액</li> <li>○ (기존시설 국공립 전환 등) 리모델링: 461백만원/국비최대지원액</li> <li>○ 장기임차방식의 국공립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장기임차: 110 백만원/개소</li> <li>-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210백만원/개소</li> </ul> </li> <li>○ 개원예정인 국공립시설 기자재 구입비 지원: 10백만원/개소</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지원: 시설비 3억원(공동 8억원), 산업단지형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비(15억원)</li> <li>○ 용자 7억원 (고용보험기금)</li> </ul> |    |    |    |

자료: 보건복지부 (3차) 제출자료 및 보건복지부, 『19년 보육사업안내』, pp. 395~442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3) 보육서비스 지원기관 현황

#### 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르면 효과적인 보육관련 사업 수행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조직은 아래 [그림 II-6]과 같이 경영기획국, 평가사업국, 보육사업지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지원단,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2018년 기준 총 371명(정규직 114명, 무기계약직 256명)이다.

[그림 Ⅱ-6] 한국보육진흥원 조직도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를 참고하여 작성, 검색일자: 2019.3.8.

한국보육진흥원의 주요업무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교육 및 지원사업, 시간제 보육사업지원,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다함께돌봄 사업지원단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 등이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lt;표 Ⅱ-17&gt; 한국보육진흥원 주요업무 내용

| 주요업무       | 내용                                                                                                                                                                                                               |
|------------|------------------------------------------------------------------------------------------------------------------------------------------------------------------------------------------------------------------|
| 평가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평가인증사업을 실시<br>평가인증제도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질적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한 후, 공정한 평가과정을 수행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 자격검정 및 자격증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2조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자격확인서) 교부사업을 진행                                                                                                                |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 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와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맞춤형 교육 및 지원사업을 실시<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사업, 보수교육기관 평가사업, 취약보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 취약보육(장애아, 다문화)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li> </ul> |

| 주요업무                          | 내용                                                                                                                                                                                                                                                                                                                                                                                                                                                                             |
|-------------------------------|--------------------------------------------------------------------------------------------------------------------------------------------------------------------------------------------------------------------------------------------------------------------------------------------------------------------------------------------------------------------------------------------------------------------------------------------------------------------------------|
| 시간제 보육<br>사업지원 <sup>1)</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자교육: 자체 담당 공무원, 관리자, 원장 및 센터장, 담당교사 교육 실시</li> <li>- 모니터링: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대상으로 신규기관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별 간담회, 자율점검, 현장점검, 수시점검 등 컨설팅 실시</li> <li>- 운영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제작·보급,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현판 배부, 민원 지원, 운영관련 현장 지원, 시스템 기능개선 등 실시</li> <li>- 성과보고회: 시간제보육 사업 추진 경과 및 결과보고, 유공자 표창 등</li> <li>- 관리시스템 운영: 공기관 조회 및 관리, 예약관리, 이용현황, 보조금, 반/보육교직원, 휴일관리, 통계, 사용자관리, 민원처리</li> <li>- 홍보: 언론보도, 기획기사, 온·오프라인 홍보, 지역별 맞춤형 홍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li> </ul> |
| 공공형어린이집<br>품질관리 <sup>2)</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장 및 교사연수: 원장 및 교사연수를 통해 보육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및 인식 함양</li> <li>- 우수운영사례 공모전: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함으로써 수요자의 신뢰도 및 만족도 고취</li> <li>- 재무회계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 개별 컨설팅 및 소그룹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체계적인 재무회계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 제고</li> <li>- 운영지원 및 관리: 어린이집에서 보육수요자에게 보육서비스 제공 시 활용 가능한 보육 관련 전문정보 제공, 고품질의 품질관리 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 교육 및 간담회 실시</li> </ul>                                        |
| 중앙육아종합<br>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지원사업 표준보육과정 교육,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지원, 보육교직원 상담, 보육정보지 발간 및 보육콘텐츠 운영, 원격교육 시스템 및 보육과정 홈페이지 운영 관리</li> <li>- 가정양육지원사업: 맞춤형 부모교육(클로버 부모교육,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맞춤형 양육서비스(자녀양육 콘텐츠 개발, 자녀양육상담), 열린 부모참여 지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지원,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li> <li>- 센터운영지원사업: 직원역량강화 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대체교사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및 컨설팅, 통합홈페이지 및 실적관리시스템 운영</li> </ul>                                                                             |
| 다함께돌봄<br>사업지원단 <sup>3)</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센터지원: 돌봄센터 설치 확대 및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내 돌봄체계 안착, 센터 신규 컨설팅 지원, 종사자 직무교육 운영사업 홍보,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보고회 개최 등</li> <li>- 정책연구: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운영 점검, 만족도조사, 연구사업 및 통계관리, 사업지침 개정, 홈페이지 구축 등</li> </ul>                                                                                                                                                                                                                               |
| 드림스타트<br>사업지원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계층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을 위탁·운영</li> <li>-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은 전국 시군구 드림스타트사업 중앙 지원기관으로, 실무자 교육 및 컨설팅, 연구 및 평가, 후원기관 발굴·연계, 사업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li> </ul>                                                                                                                                                                                                                                                                      |

주: 1) 시간제보육사업은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2) 우수한 민간·가정,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해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공공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하는 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료 수납,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으로 지급)

3) 다함께돌봄은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 아동돌봄을 위한 공공/민간 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체계 운영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 검색일자: 2019.3.8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영유아보육법 제7조<sup>42)</sup> 및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조례)이다.

사업목적은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서비스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의지역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어 있는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하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은 아래 <표 II-18>과 같다.

42)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 8. 4.>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3. 6. 4., 2015. 5. 18.>



&lt;표 II-18&gt;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 구분                                         | 내용                                                                                                                                                                                                                                                                                                                                                                                                                                                                                                                                                          |
|--------------------------------------------|-------------------------------------------------------------------------------------------------------------------------------------------------------------------------------------------------------------------------------------------------------------------------------------------------------------------------------------------------------------------------------------------------------------------------------------------------------------------------------------------------------------------------------------------------------------|
| 중앙<br>육아종합<br>지원센터<br>(1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평가를 수행하고 그 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단위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DB구축 및 제공</li> <li>-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강사 인력 풀 관리</li> <li>- 전국공통사업 매뉴얼·자료 제작 등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li> <li>- 통합홈페이지의 운영, 원격교육 등 온라인 서비스 수행 및 지원</li> <li>-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상담·관리)을 위한 정보 구축, 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li> </ul> </li> </ul>                                                                                                                            |
| 지방<br>육아종합<br>지원센터<br>(102개) <sup>1)</su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li> <li>-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보급</li> <li>-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li> <li>-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육아정보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li> <li>-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li> </ul> </li> <li>-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함</li> <li>-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현황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구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li> </ul> |

주: 1) 2019년 기준(시도 18개, 시군구 84개로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102개임)

자료: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10000/d1\\_10002.jsp](https://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10000/d1_10002.jsp)), 검색일자: 2019.3.8., 2019.3.1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하며,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현황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lt;표 II-19&gt;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예시)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센터 대상 교육, 실적관리 및 지원</li> <li>• 시도 센터와 시군구센터 간 정기적인 회의 구성 및 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센터 교육, 회의 등 참여 및 지원, 협력</li> <li>•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 제공</li> </ul> |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사업 매뉴얼 개발, 자료제작 등 지자체 특수사업 총괄·지원</li> <li>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보급</li> <li>전문가 인력풀 구축 등 시·군·구 센터 지원</li> <li>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시군구센터 미설치 사각지대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보호자와의 연계 등 가정양육 지원서비스 제공</li> <li>다른 육아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li> <li>이용자의 욕구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수집</li> </ul> |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p. 452 표 인용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고보조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센터의 경우 1,347백만원(전액 국비지원), 시·도센터는 평균 317백만원(국비(서울 20, 지방 50%) : 지방(서울 80, 지방 50%))을 지원받고 있으며<sup>43)</sup>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II-20>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내용

| 구분       | 지원내역                                                                                                                                                                                                                                                                                                                                                                                                                                                                                                                                                                                                                                                                                                                                      |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건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등), 운영비(여비, 수송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운영비 등),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등</li> </ul>                                                                                                                                                                                                                                                                                                                                                                                                                                                                                                                                                                  |
| 인건비 지원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센터장 인건비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기준을 준용</li> <li>(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공무원이 아닐 경우, 사업 규모, 종사자 수, 센터장의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 '나급~라급'기준을 준용,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li> </ul> </li> <li>※ 연봉(봉급연액)은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며, 그 외 월정직책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자금 지원을 추가 지급함.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준용</li> <li>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 및 수당에 상당하도록 함</li> <li>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근로관계법령을 준수</li> <li>각 센터의 운영규정 등에 따른 직책수당, 특수시책 수행 등에 따른 특별수당, 성과급 등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li> </ul> </li> </ul> |
| 지급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장(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li> <li>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시에도 별도 승인 후 집행</li> <li>※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승인 신청 : 변경 승인 1월전까지</li> </ul>                                                                                                                                                                                                                                                                                                                                                                                                                                                                                                            |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p. 456 내용 정리

43)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14년부터 운영비 국고보조는 정부(보건복지부)의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기준을 살펴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근이 원칙(시행령 제14조)이며, 비상근(겸직)인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근무경력은 근무기간의 5할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상근 직원 수를 준수해야 한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10인 이상,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5인 이상,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4인 이상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직원의 센터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기준 및 관련업무 경력에 따른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국고보조어린이집 원장에, 보육전문요원은 국고보조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준하여 호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경력을 인정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산원, 행정원 등의 관련업무 경력은 공무원 8급 호봉산정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종별 직원 자격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21>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

| 구 분                        |               | 자격요건                                                                                                                                                                                           |                                                                                                                                                 |
|----------------------------|---------------|------------------------------------------------------------------------------------------------------------------------------------------------------------------------------------------------|-------------------------------------------------------------------------------------------------------------------------------------------------|
| 센터장                        |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br>* '17.6.20월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신청을 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변경을 위해 위탁사항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17.6.20. 현재 재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
| 사<br>업<br>전<br>담<br>인<br>력 | 보육전문<br>요원    | 보육교사<br>1급 자격<br>을 가진<br>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br><br>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상담전문<br>요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상담, 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                            | 전산원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전산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
|                            | 영양사           | 영양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영양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간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 특수교사<br>(치료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구 분                        |               | 자격요건                                                                               |
|----------------------------|---------------|------------------------------------------------------------------------------------|
| 사<br>업<br>전<br>담<br>인<br>력 | 특수교사<br>(치료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컨설턴트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                            | 행정원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                            | 운영요원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br><br>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p. 449

## 나. 노인 지원 정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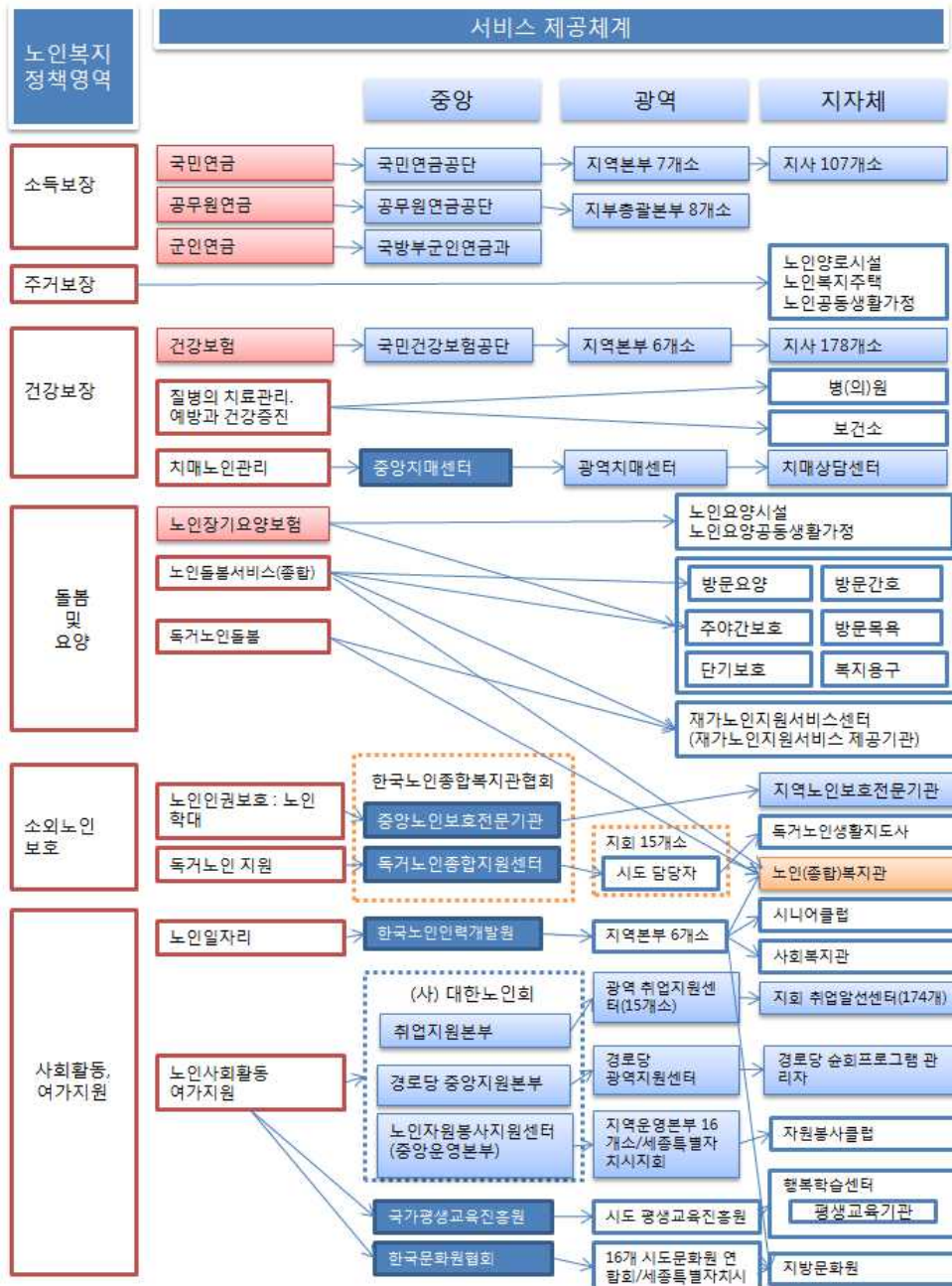
### 1) 노인지원정책 현황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지원정책의 대상 또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치매검진사업 등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을 그 대상으로 한다. 노인 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취약분야 인권개선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연금,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 등의 정책도 실시되고 있다.

정경희 외(2016)<sup>44)</sup>는 노인복지정책을 노년기의 4고(苦)로 언급되는 빈곤, 질병, 소외, 무위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크게 노후소득보장정책, 노인건강정책, 노인돌봄정책, 경제활동지원정책, 여가활동지원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아래의 노인복지정책은 정경희 외(2016)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4) 정경희 외,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그림 11-7] 노인복지정책 서비스 제공 체계



자료: 정경희 외(2016) p. 271

## 가) 노후 소득보장 정책

노후 소득보장 정책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의 공적연금, 기초연금제도인 기초연금,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다.

[그림 Ⅱ-8] 노후 소득보장 체계도



주: 비경제활동인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 가능.

자료: 정경희 외(2016) p. 45

## 나) 노인건강정책

노인건강정책에는 노인건강검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일부, 기타 취약노인 대상 보건의료사업이 있다. 노인건강검진은 국가 건강검진 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지역 보건소에 신청을 통해 2년에 1회 일반 검진, 암종별 대상 연령에 따라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13개 영역 중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치매 관리, 만성질환 관리(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방문 건강, 신체활동, 영양 등이다. 기타 취약 노인 대상 보건의료사업에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실명예방사업, 재가암관리사업, 노인자살예방 체계 구축 등이 있다.

## 다) 노인돌봄정책

정경희 외(2016)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노인돌봄정책의 하나로 분류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주거복지시설이 노인돌봄 정책에 해당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시설급여, 재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노인돌봄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sup>45)</sup>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 등 재가서비스 제공으로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sup>46)</sup>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이 해당된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lt;표 II-22&gt; 노인 돌봄 정책별 서비스 종류

| 구분        | 방문형 서비스                                                                                  | 지역사회 서비스                                                                        | 기타 서비스                                                                                  | 시설 서비스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요양</li> <li>■ 방문목욕</li> <li>■ 방문간호</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야간보호서비스</li> <li>■ 단기보호서비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옹구서비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요양시설</li> <li>■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li> </ul>               |
| 노인돌봄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돌봄기본서비스</li> <li>■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요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돌봄종합서비스(주야간보호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돌봄기본서비스</li> </ul>                           |                                                                                                |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노인지원서비스</li> <li>■ 재가노인서비스(노인복지관)</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노인지원서비스</li> <li>■ 재가노인서비스(노인복지관)</li> </ul> |                                                                                                |
| 노인주거정책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로시설</li> <li>■ 노인공동생활가정</li> <li>■ 노인복지주택</li> </ul> |

자료: 정경희 외(2016) p. 142

45)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5&PAGE=5&topTitle=검색일자](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90105&PAGE=5&topTitle=검색일자): 2019.4.19.

46)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5494> 검색일자: 2019.4.19.

## 라) 노인경제활동지원정책

노인경제활동 지원정책에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다.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노인 취업 상담, 취업 알선, 사후 관리 등을 제공하고 노인인력 수요업체 발굴 및 관리 등을 수행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과 시장형으로 나뉘며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참여가 가능하다. 시장형에는 시장형사업단, 인력과견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기업 연계형의 모델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Ⅱ-9] 노인경제활동 지원 정책

| 구분                                     |                | 유 형          | 주요내용                                                                                   | 예산 지원        | 활동 성격 |
|----------------------------------------|----------------|--------------|----------------------------------------------------------------------------------------|--------------|-------|
| 노인<br>일자리<br>및<br>사회<br>활동<br>지원<br>사업 | 노인<br>사회<br>활동 | 공익활동         |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활동                                    | 자치단체<br>경상보조 | 봉사    |
|                                        |                | 재능나눔활동       | •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성격의 각종 활동                      | 민간<br>경상보조   |       |
|                                        | 노인<br>일자리      | 시장형<br>사업단   |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자치단체<br>경상보조 | 근로    |
|                                        |                |              | •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자치단체<br>경상보조 |       |
|                                        |                | 시장형<br>(취창업) | •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                                | 민간<br>경상보조   |       |
|                                        |                |              |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 민간<br>경상보조   |       |
|                                        |                |              | • 기업이 적합한 노인일자리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및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비용을 지원                  | 민간<br>경상보조   |       |
|                                        |                | 기업<br>연계형    |                                                                                        |              |       |

주: 재능나눔활동, 시니어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기업연계형 사업은 별도 지침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권』, p. 4



#### 마) 노인여가활동지원정책

노인여가활동 지원정책에 해당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노인복지관이 있다.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여가활동지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 노인복지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고령 친화형 콘텐츠 개발, 문화 여가 인프라 개선,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통합문화이용권), 교육부의 학습활동지원(노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학습도시, 행복학습센터 사업에서 실버세대특화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지향), 은퇴인력활용 교육기부 활성화등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술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사업을 진행하며,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사회 공헌 연계를 위하여 퇴직공무원 종합포털(G-시니어)을 오픈하여 퇴직 공무원의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서비스원이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중 일부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실시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이 향후 제공할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관련 사회 서비스에 대한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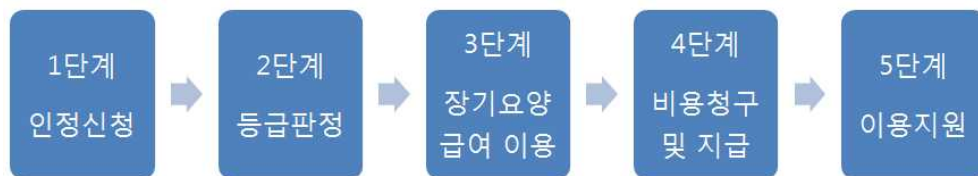
##### 가) 제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는 전 국민이며, 보험료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하기 위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적용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로 한정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급된다.

장기요양 이용체계는 [그림 II-10]과 같이 1단계 인정신청, 2단계 등급판정, 3단계 장기요양급여 이용, 4단계 비용 청구 및 지급, 5단계 이용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Ⅱ-10] 장기요양 이용 체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에 적합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진단서), 본인이나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인터넷, 우편,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수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당업무 직원을 파견하여 신청인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를 토대로 신청인의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인정조사결과서를 작성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시군구단위로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결과 신청서류 및 기타 자료를 토대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하고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한다.

&lt;표 Ⅱ-23&gt;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

| 장기요양<br>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br>인정<br>유효기간 |
|------------|--------------------------------------------------------------------------|--------------------|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4년                 |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년                 |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3년                 |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3년                 |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2년                 |
| 인지지원<br>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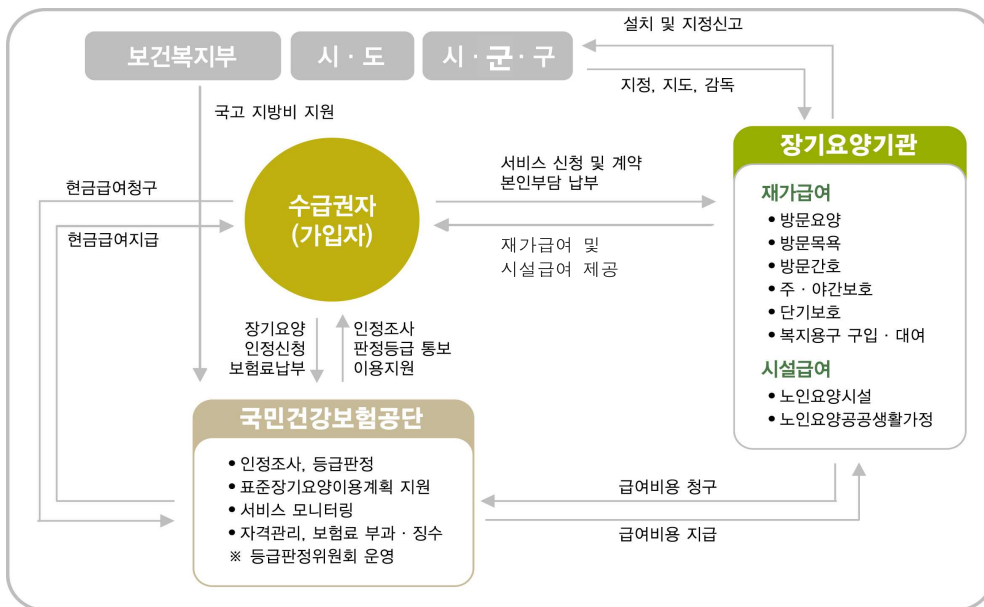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0080&zoomSize=>, 검색일자: 2019.3.1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크게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 부담분 그리고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의 7.38%(장기요양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자체 부담분은 당해연도 장기요양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sup>47)</sup>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를 받는 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으로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한다.

#### 나) 관리 및 운영 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및 운영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11] 장기요양보험 관리 및 운영 체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8., p. xxxviii

47) 제40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며, 동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사업을 관장하고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수립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는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실시한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① 장기요양 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②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와 재정 운영, ③ 신청인에 대한 조사, ④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⑤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⑥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⑦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⑧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⑨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확인, ⑩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⑪ 노인성질환예방사업, ⑫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 ⑭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담당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실제 장기요양급여 즉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설치 및 지정되며,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 다) 급여의 종류 및 이용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이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시설이 아닌 자택에 거주하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가 있다.

<표 II-24> 재가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종 류  | 내 용                                                                                                  |
|------|------------------------------------------------------------------------------------------------------|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종 류              | 내 용                                                                                           |
|------------------|-----------------------------------------------------------------------------------------------|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 기타재가급여<br>(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p. xxxii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해당된다. 현재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가족요양비의 경우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이다.

급여의 이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입소시설의 경우 장기요양 1~2등급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3~4등급자로 판정받았으나 동일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 입소 대상으로 본다. 장기요양 5등급자 중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이며 의사소견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의 영역이 일정 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시설 입소 대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시설 입소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지불한다.

재가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즉 1~5등급자와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를 이용 대상으로 한다. 재가시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시설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지불한다.

#### 라)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입소시설과 재가시설로 구분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소재지의 시군구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을 충족해야 한다.

입소시설은 입소정원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과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한다. 입소시설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에 따르며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25> 입소시설 기준

| 구분        |                    | 노인요양시설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시설면적      |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상의 공간 확보                                                             |                                  | 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 공간 확보 |
| 거실(침실)면적  |                    | 전 시설 공히 1인당 침실면적 6.6㎡ 확보<br>※ 화장실이 개별 침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면적까지 포함<br>합숙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                                  |                             |
| 시설정원      |                    | 10인 이상                                                                                   |                                  | 5명 이상 9명 이하                 |
| 직원의 배치 기준 | 입소자수               |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                                                                        | 입소자 30명 이상                       | -                           |
|           | 시설의 장              | 1명                                                                                       | 1명                               | 1명                          |
|           | 사무국장               | 1명                                                                                       | 1명<br>(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           | 사회복지사              |                                                                                          | 1명<br>(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           |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축탁의사 | 1명                                                                                       | 1명 이상                            | -                           |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 1명                          |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                                                                                        | 1명<br>(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br>(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           | 사무원                | -                                                                                        | 1명<br>(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
|           | 영양사                | -                                                                                        | 1명<br>(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
|           | 조리원                | 1명                                                                                       | 입소자 25명당 1명                      | -                           |
|           | 위생원                | -                                                                                        | 1명<br>(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
|           | 관리인                | -                                                                                        | 1명<br>(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4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재가시설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주·야간 보호, 단기보호)과 이외의 재가서비스(노인생활 상담, 가족 등 보호자 교육, 각종 편의 제공)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시설로 구분한다. 각 재가시설의 및 설비에 대한 주요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에 따르며 아래의 표와 같다.

&lt;표 II-26&gt; 재가시설 주요 기준

| 구분                              | 방문<br>요양                       | 방문<br>목욕 | 방문<br>간호 | 주·야간 보호                                                                        |           | 단기 보호     |           | 재가<br>노인<br>지원<br>서비스                      |
|---------------------------------|--------------------------------|----------|----------|--------------------------------------------------------------------------------|-----------|-----------|-----------|--------------------------------------------|
|                                 |                                |          |          | 10명<br>이상                                                                      | 10명<br>미만 | 10명<br>이상 | 10명<br>미만 |                                            |
| 시설면적                            | 시설전용면적 16.5㎡<br>이상<br>(연면적 기준) |          |          | 연면적 90㎡ 이상<br>(이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br>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br>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           |           | 시설<br>전용<br>면적<br>33㎡<br>이상<br>(연면적<br>기준) |
| 통신설비, 집기 등<br>사업에 필요한 설비및<br>비품 | ○                              | ○        | ○        |                                                                                |           |           |           |                                            |
| 이동용 욕조 또는<br>이동목욕차량             |                                | ○        |          |                                                                                |           |           |           |                                            |
|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br>간호에 필요한 비품     |                                |          | ○        |                                                                                |           |           |           |                                            |
| 사무실                             | ○                              | ○        | ○        | ○                                                                              | ○         | ○         | ○         |                                            |
| 의료 및 간호사실                       |                                |          |          |                                                                                |           |           |           |                                            |
| 프로그램실                           |                                |          |          | ○                                                                              | ○         | ○         | ○         |                                            |
| 물리(작업치료실)                       |                                |          |          |                                                                                |           |           |           |                                            |
| 생활실                             |                                |          |          | ○                                                                              | ○         |           |           |                                            |
| 침실                              |                                |          |          |                                                                                |           | ○         | ○         |                                            |
| 식당 및 조리실                        |                                |          |          | ○                                                                              | ○         | ○         | ○         |                                            |
| 화장실                             |                                |          |          | ○                                                                              | ○         | ○         | ○         |                                            |
| 세면장 및 목욕실                       |                                |          |          | ○                                                                              |           | ○         |           |                                            |
| 세탁장 및 건조장                       |                                |          |          |                                                                                |           |           |           |                                            |
| 시설장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1명                                         |

| 구분                | 방문<br>요양                | 방문<br>목욕 | 방문<br>간호               | 주·야간 보호                        |           | 단기 보호              |           | 재가<br>노인<br>지원<br>서비스 |
|-------------------|-------------------------|----------|------------------------|--------------------------------|-----------|--------------------|-----------|-----------------------|
|                   |                         |          |                        | 10명<br>이상                      | 10명<br>미만 | 10명<br>이상          | 10명<br>미만 |                       |
| 사회복지사             | 1명 <sup>1)</sup>        |          |                        | 1명<br>이상                       |           | 1명<br>이상           |           | 1명                    |
| 간호사 또는<br>간호조무사   |                         |          | 1명<br>이상               | 1명<br>이상                       | 1명<br>이상  | 이용자<br>25명<br>당 1명 | 1명        |                       |
| 물리치료사 또는<br>작업치료사 |                         |          |                        |                                |           | 1명 <sup>2)</sup>   |           |                       |
| 치과위생사             |                         |          | 1명<br>이상 <sup>3)</sup> |                                |           |                    |           |                       |
| 요양보호사             | 15명<br>이상 <sup>4)</sup> | 2명<br>이상 |                        | 이용자 7명당 1명<br>이상 <sup>5)</sup> |           | 이용자 4명당<br>1명 이상   |           |                       |
| 사무원               |                         |          |                        | 1명 <sup>6)</sup>               |           |                    |           | 1명                    |
| 조리원               |                         |          |                        | 1명                             | 1명        | 1명                 | 1명        |                       |
| 보조원(운전사)          |                         |          |                        | 1명                             |           |                    |           |                       |

주: 1) 수급자 15명 이상, 2) 이용자 30명 이상, 3)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함, 4)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5) 치매전담실의 경우에는 4명당 1명 이상, 6) 이용자 25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3)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sup>48)</sup>

2019년 3월 현재 가장 최신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통계는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로 2018년 8월에 발간되었다.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2017년 12월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585,287명으로 총노인인구 7,310,835중 8.0%이며, 2016년 인정자 519,850명 대비 12.6% 증가했다.

48)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참고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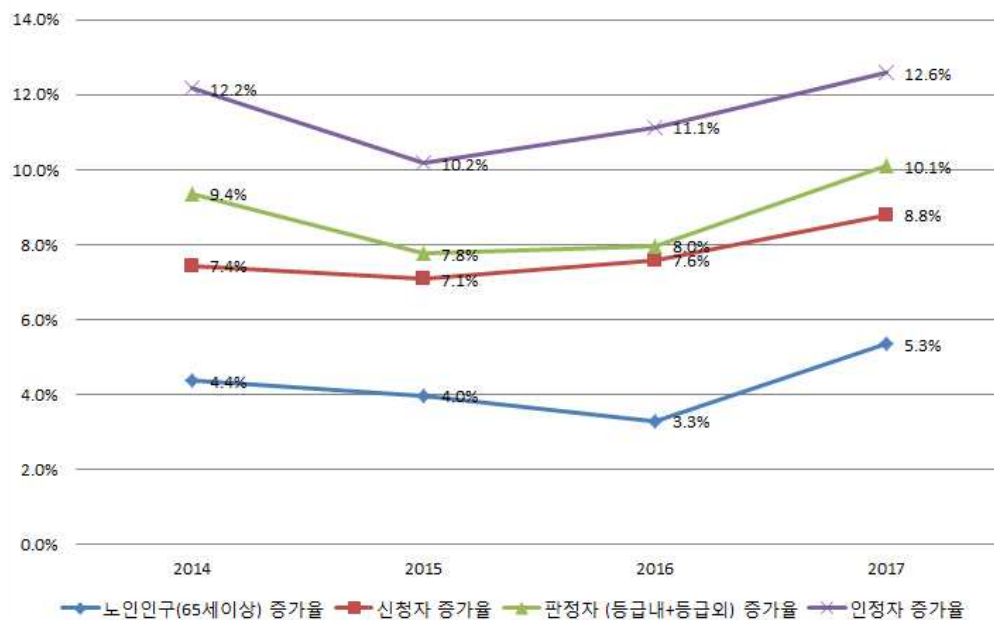
&lt;표 II-27&gt;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 현황

(단위: 명,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노인인구<br>(65세이상)  | 6,192,762<br>(100.0) | 6,462,740<br>(100.0) | 6,719,244<br>(100.0) | 6,940,396<br>(100.0) | 7,310,835<br>{100.0} |
| 신청자              | 685,852<br>(11.1)    | 736,879<br>(11.4)    | 789,024<br>(11.7)    | 848,829<br>(12.2)    | 923,543<br>{12.6}    |
| 판정자<br>(등급내+등급외) | 535,328<br>(8.6)     | 585,386<br>(9.1)     | 630,757<br>(9.4)     | 681,006<br>(9.8)     | 749,809<br>{10.3}    |
| 인정자              | 378,493<br>(6.1)     | 424,572<br>(6.6)     | 467,752<br>(7.0)     | 519,850<br>(7.5)     | 585,287<br>{8.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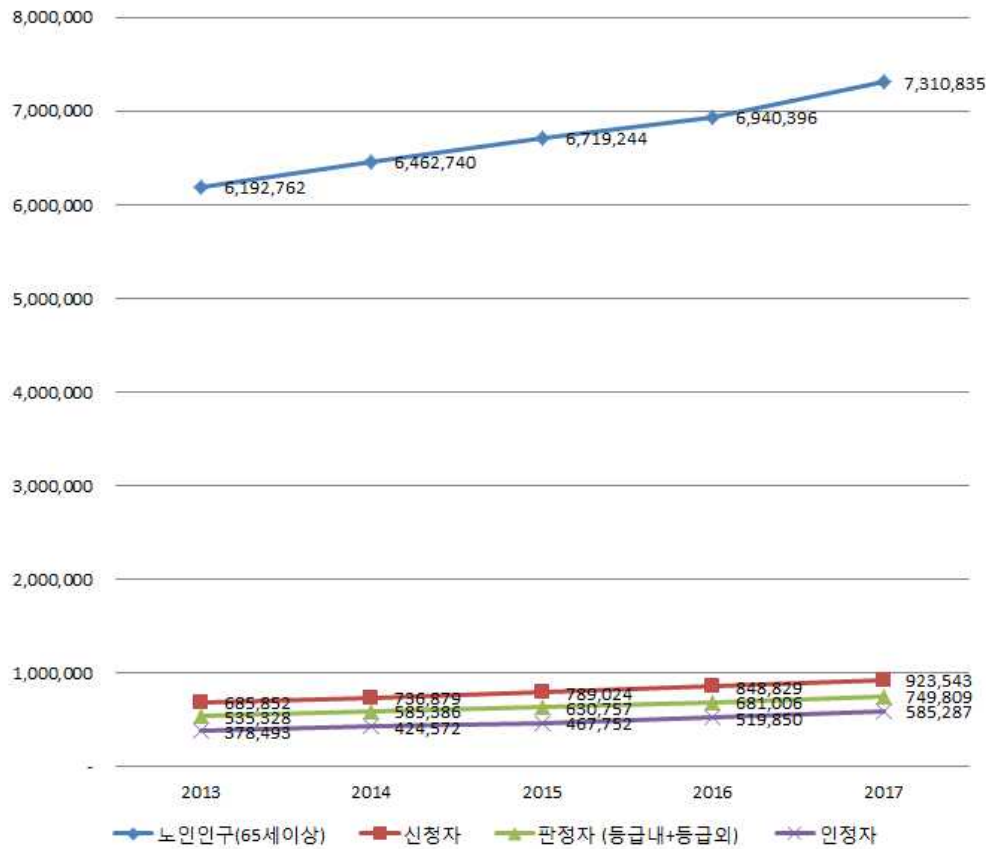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8, p. xlv

[그림 II-1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자 증가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8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I-1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인정자 수 변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8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7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585,287명은 남자가 158,187명으로 전체의 27.0%, 여자 427,100명 73.0%이며, 등급별로는 1등급 43,382명, 2등급 79,853명, 3등급 196,167명, 4등급 223,884명, 5등급 42,001명이다.

&lt;표 II-28&gt;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 2017    |        |        |         |         |        | 2014    | 2015    | 2016    |
|-------|---------|--------|--------|---------|---------|--------|---------|---------|---------|
|       |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
| 인정자 계 | 585,287 | 43,382 | 79,853 | 196,167 | 223,884 | 42,001 | 424,572 | 467,752 | 519,850 |
| 일반    | 377,499 | 28,362 | 51,158 | 126,957 | 142,031 | 28,991 | 278,938 | 303,355 | 336,070 |
| 경감    | 109,385 | 7,916  | 16,041 | 38,199  | 40,411  | 6,818  | 74,207  | 84,446  | 94,630  |
| 의료급여  | 7,107   | 488    | 964    | 2,385   | 2,754   | 516    | 5,190   | 5,675   | 6,266   |
| 기초수급  | 91,296  | 6,616  | 11,690 | 28,626  | 38,688  | 5,676  | 66,237  | 74,276  | 82,884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8, p. xlvii

## 나) 노인장기요양 급여실적

2017년에 지급된 노인장기요양급여 총액은 5조 7,600억원이며, 공단 부담금은 5조 937억원으로 총액 대비 88.4%이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월간급여비를 월간 급여이용 수급자 수로 나눈 값의 평균으로 2017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103,129원이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2016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공단 부담금은 2016년 대비 15.3% 증가하였다.

&lt;표 II-29&gt; 노인장기요양 급여 실적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급여이용수급자(명)               | 399,591 | 433,779   | 475,382   | 520,043   | 578,867   |
| 급여제공일수(만일)               | 8,585   | 9,223     | 10,084    | 10,997    | 12,292    |
| 급여비(억원)                  | 35,234  | 39,849    | 45,226    | 50,052    | 57,600    |
| 공단부담금(억원)                | 30,830  | 34,981    | 39,816    | 44,177    | 50,937    |
| 공단부담률(%)                 | 87.5    | 87.8      | 88.0      | 88.3      | 88.4      |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 996,714 | 1,024,520 | 1,057,425 | 1,067,761 | 1,103,129 |
|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 872,106 | 899,361   | 930,917   | 942,415   | 975,496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8, p. xlviii

2017년 공단부담금 5조 937억원은 급여유형별로 재가급여 2조 6417억원(51.9%), 시설급여 2조 4520억원(48.1%)이며, 2016년 대비 각각 재가급여 21.2%, 시설급여 9.6% 증가하였다.

<표 II-30> 급여유형별 실적

(단위: 억원, %)

| 구 분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장기요양 공단부담금 계     | 30,830 | -     | 34,981 | -     | 39,816 | -     | 44,177 | -     | 50,937 | -     |
| 재가급여             | 14,864 | 100.0 | 16,748 | 100.0 | 19,376 | 100.0 | 21,795 | 100.0 | 26,417 | 100.0 |
| - 방문요양           | 11,736 | 79.0  | 13,119 | 78.3  | 14,809 | 76.4  | 16,076 | 73.8  | 18,916 | 71.6  |
| - 방문목욕           | 736    | 4.9   | 711    | 4.2   | 723    | 3.7   | 754    | 3.5   | 892    | 3.4   |
| - 방문간호           | 73     | 0.5   | 75     | 0.5   | 89     | 0.5   | 96     | 0.4   | 132    | 0.5   |
| - 주야간보호          | 1,279  | 8.6   | 1,745  | 10.4  | 2,563  | 13.2  | 3,608  | 16.6  | 5,119  | 19.4  |
| - 단기보호           | 150    | 1.0   | 163    | 1.0   | 154    | 0.8   | 136    | 0.6   | 134    | 0.5   |
| - 복지용구           | 891    | 6.0   | 934    | 5.6   | 1037   | 5.4   | 1,125  | 5.2   | 1,223  | 4.6   |
| 시설급여             | 15,966 | 100.0 | 18,234 | 100.0 | 20,441 | 100.0 | 22,382 | 100.0 | 24,520 | 100.0 |
|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12,626 | 79.1  | 15,839 | 86.9  | 17,892 | 87.5  | 19,844 | 88.7  | 21,971 | 89.6  |
| - 노인요양시설(구법)     | 225    | 1.4   | -      | -     | -      | -     | -      | -     | -      | -     |
|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811    | 5.1   | -      | -     | -      | -     | -      | -     | -      | -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057  | 12.9  | 2,394  | 13.1  | 2,548  | 12.5  | 2,538  | 11.3  | 2,549  | 10.4  |
|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 | 246    | 1.5   | -      | -     | -      | -     | -      | -     | -      |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8, p.1

#### 다)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노인장기요양시설은 2017년 연도말 기준 총 20,377개로 재가 요양기관 15,073개소, 시설 요양기관 5,304개소이며 2016년 대비 각각 재가요양기관 6.1% 증가, 시설요양기관 2.3%가 증가하였다.

&lt;표 II-31&gt; 노인장기요양시설 현황

(단위: 개, 명)

| 구 분                    | 2013   |         | 2014   |         | 2015   |         | 2016   |         | 2017   |         |
|------------------------|--------|---------|--------|---------|--------|---------|--------|---------|--------|---------|
|                        | 기관     | 정원      | 기관     | 정원      | 기관     | 정원      | 기관     | 정원      | 기관     | 정원      |
| 계                      | 15,704 | 167,915 | 16,543 | 184,050 | 18,002 | 201,443 | 19,398 | 223,573 | 20,377 | 243,235 |
| 방문요양                   | 8,620  | -       | 9,073  | -       | 10,077 | -       | 11,072 | -       | 11,662 | -       |
| 방문목욕                   | 7,146  | -       | 7,479  | -       | 8,253  | -       | 8,957  | -       | 9,357  | -       |
| 방문간호                   | 597    | -       | 586    | -       | 574    | -       | 598    | -       | 650    | -       |
| 주야간보호                  | 1,427  | 24,286  | 1,688  | 30,512  | 2,018  | 39,270  | 2,410  | 52,666  | 2,795  | 66,607  |
| 단기보호                   | 368    | 3,610   | 322    | 2,922   | 299    | 2,805   | 267    | 2,551   | 218    | 2,085   |
| 복지용구                   | 1,574  | -       | 1,599  | -       | 1,700  | -       | 1,823  | -       | 1,892  | -       |
| 노인요양<br>시설             | 2,494  | 121,286 | 2,714  | 131,958 | 2,935  | 140,788 | 3,137  | 150,395 | 3,289  | 156,862 |
| 노인전문<br>요양시설           | 2      | 38      | -      | -       | -      | -       | -      | -       | -      | -       |
| 노인요양<br>시설(구법)         | 1      | 25      | -      | -       | -      | -       | -      | -       | -      | -       |
| 노인요양<br>공동생활<br>가정     | 2,150  | 18,670  | 2,157  | 18,658  | 2,150  | 18,580  | 2,050  | 17,961  | 2,015  | 17,681  |
| 노인요양<br>시설(단기<br>보호전환) | 1      | -       | -      | -       | -      | -       | -      | -       | -      | -       |

주: 1. 각 연도말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이며, 해당 연도말 지정운영되고 있는 기관 대상

2. 재가기관의 '정원'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만 해당(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 제외)

3. '계'는 재가기관의 급여종류별 중복 서비스 기관 수 제외

4.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구법)은 2013.4.3.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개정법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5.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은 2013.2.28.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개정법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8, p. 564

노인장기요양시설 설립유형은 크게 지자체, 법인, 개인, 기타로 나눌 수 있으며 전체 노인장기요양시설 20,377개 중 설립주체가 개인인 경우가 80.4%(16,375개), 법인인 경우가 18.2%(3,713개), 지자체인 경우가 1.0%(207개)이다. 시설별로는 재가시설의 83.4%, 입소시설의 71.8%를 개인이 설립하였다. 지자체가 직접 설립한 재가시설은 총 106개로 0.7%이며, 입소시설은 101개로 1.9%에 해당한다.

&lt;표 II-32&gt; 설립구분별 노인장기요양시설 유형

(단위: 개, 명)

| 구 분 |                    | 지자체 | 법인    | 개인     | 기타      | 계   |         |
|-----|--------------------|-----|-------|--------|---------|-----|---------|
| 계   |                    | 기관  | 207   | 3,713  | 16,375  | 82  | 20,377  |
|     |                    | 정원  | 9,442 | 98,827 | 134,176 | 790 | 243,235 |
| 재가  | 소계                 | 기관  | 106   | 2,335  | 12,565  | 67  | 15,073  |
|     |                    | 정원  | 2,266 | 20,817 | 45,325  | 284 | 68,692  |
|     | 방문요양               | 기관  | 31    | 1,521  | 10,058  | 52  | 11,662  |
|     | 방문목욕               | 기관  | 16    | 1,104  | 8,197   | 40  | 9,357   |
|     | 방문간호               | 기관  | 3     | 105    | 538     | 4   | 650     |
|     | 주야간보호              | 기관  | 94    | 890    | 1,798   | 13  | 2,795   |
|     |                    | 정원  | 2,156 | 20,529 | 43,638  | 284 | 66,607  |
|     | 단기보호               | 기관  | 4     | 42     | 172     | -   | 218     |
|     |                    | 정원  | 110   | 288    | 1,687   | -   | 2,085   |
|     | 복지용구               | 기관  | -     | 253    | 1,632   | 7   | 1,892   |
| 시설  | 소계                 | 기관  | 101   | 1,378  | 3,810   | 15  | 5,304   |
|     |                    | 정원  | 7,176 | 78,010 | 88,851  | 506 | 174,543 |
|     | 노인요양<br>시설         | 기관  | 90    | 1,186  | 2,003   | 10  | 3,289   |
|     |                    | 정원  | 7,082 | 76,340 | 72,979  | 461 | 156,862 |
|     | 노인요양<br>공동생활<br>가정 | 기관  | 11    | 192    | 1,807   | 5   | 2,015   |
|     |                    | 정원  | 94    | 1,670  | 15,872  | 45  | 17,681  |

주: 1. 각 연도말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이며, 해당 연도말 지정운영되고 있는 기관 대상  
 2. 재가기관의 '정원'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만 해당(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복지용구 제외)  
 3. '계'는 재가기관의 급여종류별 중복 서비스 기관 수 제외  
 4.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구법)은 2013.4.3.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개정법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5.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은 2013.2.28.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개정법 노인요양시설로 전환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8, p. 570

#### 4)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2017년 연도말 기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340,624명, 사회복지사 18,535명, 간호사 2,791명, 간호조무사 9,845명 등이다. 2017년 종사자 수는 2016년 대비 요양보호사 8.8%, 사회복지사 26.2%, 간호사 4.3%, 간호조무사 8.4% 증가하였다.

&lt;표 II-33&gt; 장기요양기관 인력 현황

(단위: 명)

| 구 분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계   | 사회복지사     | 7,506   | 11,298  | 13,923  | 14,682  | 18,535  |
|     | 의사(촉탁포함)  | 1,233   | 1,324   | 1,415   | 1,683   | 2,198   |
|     | 간호사       | 2,627   | 2,683   | 2,719   | 2,675   | 2,791   |
|     | 간호조무사     | 7,552   | 8,241   | 9,099   | 9,080   | 9,845   |
|     | 치과위생사     | 4       | 5       | 4       | 5       | 7       |
|     | 물리(작업)치료사 | 1,740   | 1,813   | 1,952   | 1,974   | 2,024   |
|     | 요양보호사     | 252,663 | 266,538 | 294,788 | 313,013 | 340,624 |
|     | 영양사       | 918     | 987     | 1,046   | 1,130   | 1,160   |
| 재가  | 사회복지사     | 3,828   | 6,623   | 8,440   | 9,747   | 13,188  |
|     | 의사(촉탁포함)  | 83      | 94      | 103     | 129     | 134     |
|     | 간호사       | 1,262   | 1,213   | 1,218   | 1,249   | 1,371   |
|     | 간호조무사     | 1,838   | 2,073   | 2,476   | 2,730   | 3,120   |
|     | 치과위생사     | 4       | 5       | 4       | 5       | 7       |
|     | 물리(작업)치료사 | 213     | 225     | 246     | 243     | 266     |
|     | 요양보호사     | 206,971 | 216,358 | 241,323 | 259,595 | 284,144 |
|     | 영양사       | 48      | 45      | 51      | 50      | 55      |
| 시설  | 사회복지사     | 3,809   | 4,817   | 5,634   | 5,001   | 5,402   |
|     | 의사(촉탁포함)  | 1,194   | 1,288   | 1,378   | 1,649   | 2,161   |
|     | 간호사       | 1,498   | 1,575   | 1,595   | 1,506   | 1,485   |
|     | 간호조무사     | 6,190   | 6,752   | 7,303   | 7,036   | 7,460   |
|     | 치과위생사     | -       | -       | -       | -       | -       |
|     | 물리(작업)치료사 | 1,593   | 1,668   | 1,806   | 1,835   | 1,861   |
|     | 요양보호사     | 51,449  | 56,072  | 60,386  | 60,549  | 64,179  |
|     | 영양사       | 875     | 944     | 1,001   | 1,088   | 1,111   |

주: 1. 각 직종 내 중복 인원 제거(의사+촉탁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1급+2급)

2. 계는 급여종류별 중복 제거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8, p. iii

장기요양기관 2017년 전체 종사자 377,184명 중 요양보호사는 90.3%에 해당한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 및 처우에 대한 정기적인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용갑 외(2015)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보고서가 현재 가장 최신의 요양보호사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12월 기준,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형태는 정규직 13.6%, 비정규직 86.2%이고, 입소시설의 경우 정규직 74.8%, 비정규직 25.0%이다.

<표 II-34 > 재가기관 근로자 근로계약 형태

(단위: 명, %)

| 구분    | 합계      | 정규직    |      | 비정규직    |      | 기타  |      |
|-------|---------|--------|------|---------|------|-----|------|
|       |         | 규모     | 비율   | 규모      | 비율   | 규모  | 비율   |
| 전체    | 427,206 | 58,079 | 13.6 | 368,182 | 86.2 | 945 | 0.2  |
| 주야간보호 | 5,825   | 3,836  | 6.6  | 1,968   | 0.5  | 21  | 2.2  |
| 방문목욕  | 173,014 | 25,800 | 44.4 | 146,930 | 39.9 | 284 | 30.1 |
| 방문요양  | 247,642 | 28,053 | 48.3 | 218,951 | 59.5 | 638 | 67.5 |
| 단기보호  | 725     | 390    | 0.7  | 333     | 0.1  | 2   | 0.2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전국 요양시설 및 시설별 요양보호사 현황」, 2015.12(내부자료) 이용갑 외(2015) p. 44 재인용

<표 II-35> 입소시설 근로자 고용형태 비율

(단위: 명, %)

| 전체      | 정규직    |      | 비정규직   |     | 기타 |      |
|---------|--------|------|--------|-----|----|------|
|         | 규모     | 비율   | 규모     | 비율  | 규모 | 비율   |
| 56,703명 | 42,413 | 74.8 | 14,212 | 25. | 78 | 0.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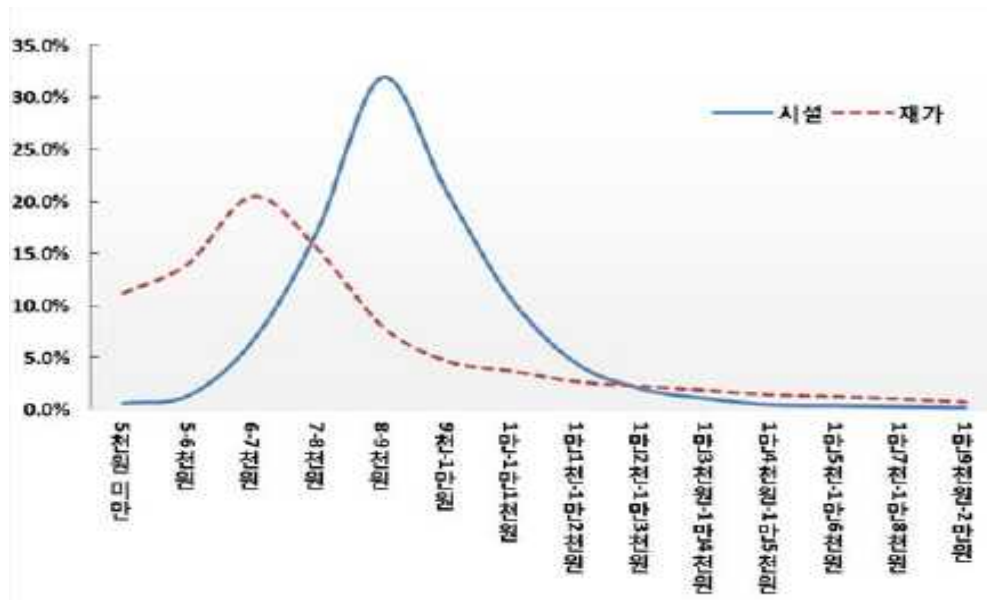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2015),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고용형태」, 2015.10(내부자료) 이용갑 외(2015) p. 45 재인용

이용갑 외(2015)<sup>49)</sup>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입소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시급과 월급이 재가기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 기준 입소시설 요양보호사의 약 70%는 시급 7천원에서 1만원을 받았으며,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61.2%가 5천원 미만과 7~8천원의 시급을 받았다. 월급으로 보면 입소시설 요양보호사는 82.6%가 110만원 이상 170만원미만을 받았고, 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40만원부터 140만원 미만이 75.2%이다.

49) 이용갑 외(2015) p. 99를 참고하여 작성함. 동 보고서의 임금수준은 2014년 12월 현재 요양기관이 자신이 고용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총액(세전) 및 처우개선비와 근무시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DB에 입력한 자료를 분석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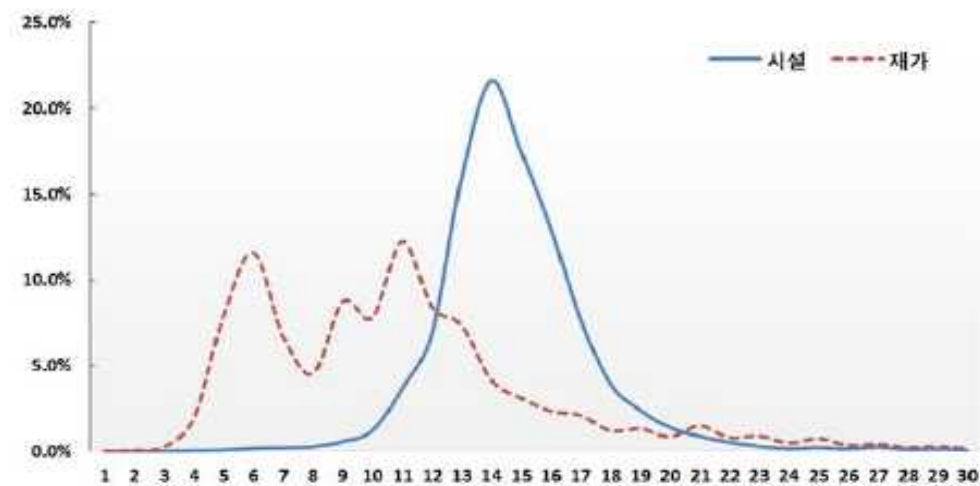
[그림 II-14] 임금 수준별 요양보호사 분포 - 시간당 임금 기준



자료: 이용갑 외(2015) p. 100 재인용

[그림 II-15] 임금 수준별 요양보호사 분포 - 월 임금 기준

(단위 : 십만원)



자료: 이용갑 외(2015) p. 101 재인용

입소시설 요양보호사의 월평균임금은 140.4만원이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임금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임금이 감소하며, 해당 직장의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은 소폭 상승했다. 재가기관의 경우 월평균 임금은 94.9만원이고 입소시설과 같이 남성의 평균임금이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임금이 감소하며,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은 상승했다.

<표 II -36> 입소시설부문 요양보호사 평균임금

| 구성     |        | 월급(원)     |           | 시급(원) |       |
|--------|--------|-----------|-----------|-------|-------|
|        |        | 평균        | 중위        | 평균    | 중위    |
| 전체     |        | 1,403,817 | 1,386,870 | 8,830 | 8,736 |
| 성      | 남      | 1,449,156 | 1,471,906 | 9,254 | 9,080 |
|        | 여      | 1,339,708 | 1,383,333 | 8,804 | 8,696 |
| 연령     | 20-29세 | 1,497,869 | 1,499,845 | 9,440 | 9,375 |
|        | 30-39세 | 1,495,333 | 1,478,592 | 9,442 | 9,375 |
|        | 40-49세 | 1,461,806 | 1,446,705 | 9,188 | 9,063 |
|        | 50-59세 | 1,412,174 | 1,400,000 | 8,882 | 8,750 |
|        | 60세 이상 | 1,314,676 | 1,300,000 | 8,273 | 8,125 |
| 직장근무연수 | 1년 이내  | 1,331,886 | 1,300,000 | 8,427 | 8,211 |
|        | 1-2년   | 1,336,137 | 1,326,489 | 8,373 | 8,313 |
|        | 2-3년   | 1,437,257 | 1,434,250 | 9,015 | 8,990 |
|        | 3-4년   | 1,486,902 | 1,488,000 | 9,317 | 9,313 |
|        | 4-5년   | 1,520,779 | 1,520,000 | 9,523 | 9,513 |
|        | 5년 이상  | 1,573,299 | 1,577,095 | 9,873 | 9,880 |

자료: 이용갑 외(2015) p. 102 재인용

<표 II -37> 재가기관부문 근무 요양보호사 평균임금

| 구성     |        | 월급(원)     |           | 시급(원) |       |
|--------|--------|-----------|-----------|-------|-------|
|        |        | 평균        | 중위        | 평균    | 중위    |
| 전체     |        | 949,474   | 936,000   | 7,284 | 6,867 |
| 성      | 남      | 1,109,471 | 1,100,000 | 8,251 | 7,721 |
|        | 여      | 945,378   | 929,045   | 7,260 | 6,842 |
| 연령     | 20-29세 | 1,161,126 | 1,200,000 | 8,129 | 7,954 |
|        | 30-39세 | 1,003,816 | 1,000,000 | 7,691 | 7,137 |
|        | 40-49세 | 974,722   | 970,000   | 7,484 | 7,000 |
|        | 50-59세 | 954,087   | 940,000   | 7,289 | 6,875 |
|        | 60세 이상 | 924,279   | 900,000   | 7,144 | 6,731 |
| 직장근무연수 | 1년 이내  | 864,780   | 832,000   | 6,929 | 6,625 |
|        | 1-2년   | 955,729   | 940,718   | 7,230 | 6,811 |
|        | 2-3년   | 1,030,657 | 1,000,000 | 7,611 | 7,091 |
|        | 3-4년   | 1,093,708 | 1,050,183 | 7,892 | 7,288 |
|        | 4-5년   | 1,127,995 | 1,067,750 | 8,066 | 7,418 |
|        | 5년 이상  | 1,119,877 | 1,067,458 | 8,189 | 7,607 |

자료: 이용갑 외(2015) p. 103 재인용

이용갑 외(2015)는 광역지자체별 요양보호사의 월평균임금수준을 비교한 결과 입소시설과 재가시설 모두 수도권과 광역시의 임금수준이 도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편임을 확인하고 이는 요양보호사의 공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아래 그림과 같이 인정자 100명당 요양보호사 수가 많을수록 요양보호사의 평균임금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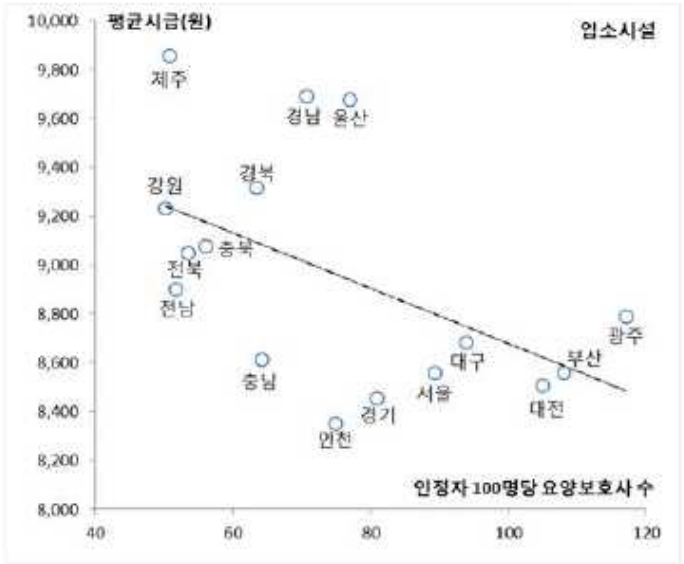
<표 II-38> 지역간 요양보호사 임금수준의 차이

| 구분 | 요양보호사(명)    |             | 입소시설      |       | 재가기관      |       | 인정자<br>100명당<br>요양보호<br>자 수(명) |
|----|-------------|-------------|-----------|-------|-----------|-------|--------------------------------|
|    | 입소시설<br>(명) | 재가기관<br>(명) | 월급(원)     | 시급(원) | 월급(원)     | 시급(원) |                                |
| 서울 | 5,317       | 26,774      | 1,356,173 | 8,558 | 927,483   | 6,942 | 89.3                           |
| 부산 | 1,819       | 9,011       | 1,463,864 | 8,558 | 903,800   | 6,942 | 108.0                          |
| 대구 | 2,212       | 6,355       | 1,383,519 | 8,681 | 908,610   | 7,199 | 93.9                           |
| 인천 | 3,347       | 7,902       | 1,328,825 | 8,351 | 946,369   | 7,110 | 74.9                           |
| 광주 | 1,143       | 4,529       | 1,389,876 | 8,786 | 824,580   | 7,224 | 117.0                          |
| 대전 | 1,485       | 5,563       | 1,355,376 | 8,507 | 1,036,327 | 7,415 | 104.9                          |
| 울산 | 485         | 1,644       | 1,532,870 | 9,677 | 862,477   | 7,087 | 76.9                           |
| 경기 | 14,582      | 25,425      | 1,342,894 | 8,453 | 986,476   | 7,253 | 80.9                           |
| 강원 | 2,748       | 4,389       | 1,464,883 | 9,232 | 979,060   | 7,790 | 50.2                           |
| 충북 | 2,407       | 3,320       | 1,443,226 | 9,076 | 931,888   | 7,403 | 56.0                           |
| 충남 | 2,780       | 6,034       | 1,364,968 | 8,612 | 987,439   | 7,535 | 64.2                           |
| 전북 | 2,397       | 5,478       | 1,439,195 | 9,048 | 913,452   | 7,389 | 53.4                           |
| 전남 | 2,695       | 5,797       | 1,421,204 | 8,899 | 949,749   | 7,641 | 51.7                           |
| 경북 | 3,845       | 8,265       | 1,485,389 | 9,316 | 975,419   | 7,526 | 63.4                           |
| 경남 | 3,204       | 7,610       | 1,542,057 | 9,688 | 977,750   | 7,578 | 70.6                           |
| 제주 | 1,241       | 1,112       | 1,567,753 | 9,856 | 1,141,622 | 8,245 | 5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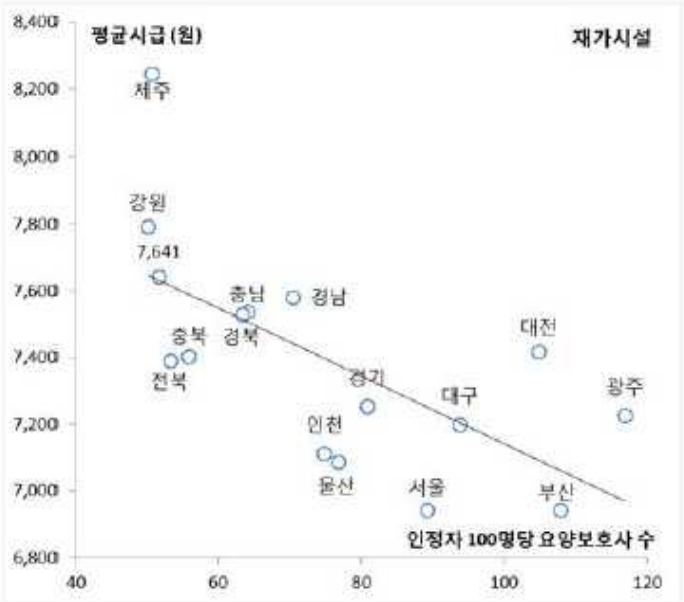
자료: 이용갑 외(2015) p. 104 재인용

[그림 II-16] 지역별 평균시급 분포 - 입소시설, 재가기관 시설

지역별 평균시급 분포 - 입소시설



지역별 평균시급 분포 - 재가기관 시설



자료: 이용갑 외(2015) p. 105 재인용

## 다. 기타 재가서비스 현황

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의 재가급여와 함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타 재가서비스를 통합하여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장기요양의 재가급여를 제외한 정부제공 재가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으며 해당 서비스별 개요 및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표 II-39> 기타 재가서비스 현황

| 사업명             | 사업내용                                       | 담당부처  |
|-----------------|--------------------------------------------|-------|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 보건복지부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방문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 보건복지부 |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 보건복지부 |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 신체수발 지원, 신변활동 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 보건복지부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 보건복지부 |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영아종일제 돌봄, 시간제 (일반형,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돌봄 | 여성가족부 |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 국가보훈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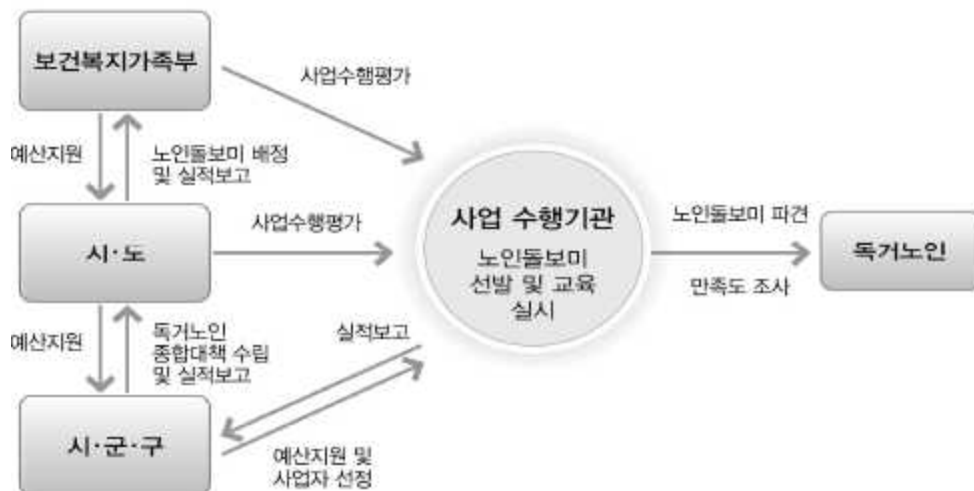
### 1)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소득·건강·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정서 지원을 위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동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 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수혜 대상으로 한다. 단,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노인돌보미가 주 1회 수혜대상 방문, 주 2~3회 전화(폭염, 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일일 안전 확인)를 실시하며 도시락 배달 등 지역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제공한다. 또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예비대상자 또는 탈락한 대상자는 독거노인사랑잇기서비스로 연계하여 민간의 자원봉사자가 주2회 전화를 통한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받도록 한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는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II-17]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추진체계



자료: 김운수 외(2017), p. 31 재인용

사업수행기관은 시·군·구로부터 최대 3년까지 위탁을 받을 수 있고 위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또한 시·군·구는 자체예산으로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교통비, 통신비, 자격수당, 복리후생수당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의 시설은 서비스관리자(행정도우미 포함)의 사무공간 및 전용전화 확보, 사무용품 등의 집기 비치, 생활관리사의 1/5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 및 전용전화 확보, 수행인력 전체가 주 1회 1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수행 인력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서비스관리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며 2019년 기준 주 5일, 일 8시간 근무에 월 174만 5,200원의 급여를 받는다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자격요건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서 활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 시·군·구 및 사업수행기관이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주 5일, 1일 5시간 근무를 통해 월 108만 8,900원의 보수(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를 제공받는다.

<표 II-4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수행 인력 기준

| 2019년 서비스관리자 최소 배치 기준(예시) |           |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명            | 서비스관리자 1인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0~39명          | 서비스관리자 1인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40~59명          | 서비스관리자 2인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0명~80명         | 서비스관리자 3인 |

자료: 보건복지부,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 p. 158

##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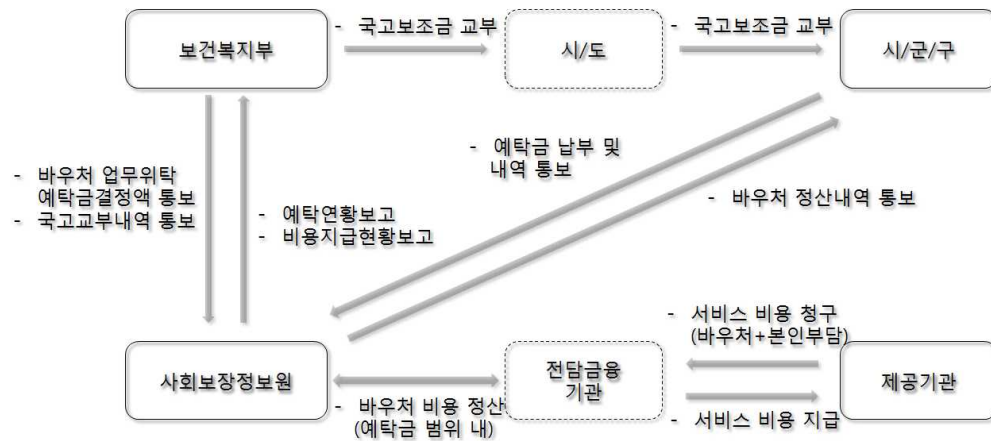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 신체·인지 기능 약화를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수혜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단기가사서비스의 경우 독거노인 또는 만75세 이상의 고령 부부 노인가구가 해당된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의 A, B 및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이거나, 시군구청장 인정자로 장애1~3등급 또는 중증질환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이다.

제공 서비스항목은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이다. 방문서비스는 식사·세면도움(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 옷 갈아입히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간보호서비스는 심신기능 회복서비스(여가,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 등의 기능훈련), 급식 및 목욕,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주간보호서비스이다. 단기가사서비스는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정부가 지급한 바우처를 등록된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비스가 전달된다.

[그림 II-18]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추진체계



자료: 김윤수 외(2017), p. 35 재인용

동서비스의 2019년 기준 서비스단가는 12,960~58,320원으로 서비스별, 근무일 유형별로는 아래 <표 II-41>과 같다.

<표 II-4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서비스별 단가

| 서비스내용                  | 근무일 유형                                             | 금액(원)  | 기준               |
|------------------------|----------------------------------------------------|--------|------------------|
| 방문서비스<br>· 단기가사<br>서비스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2,960 | 시간당<br>단가        |
|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9,440 |                  |
|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단, 근로자의 날 포함) | 19,440 |                  |
| 주간보호<br>서비스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38,880 | 일당,<br>9시간<br>기준 |
|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58,320 |                  |
|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단, 근로자의 날 포함) | 58,320 |                  |

자료: 보건복지부,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 p. 178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 및 월 서비스 시간량이나 이용일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정부지원금은 월 기준 246,040원~458,280원이며 선납 본인부담금은 월 기준 무료~97,000원으로 서비스 및 소득별 세부내역은 아래 [그림 II-19]와 같다.

[그림 II-19]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포함)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수준】

|                             |                       | 총 구매력      | 정부지원금      | 선납본인부담금   |
|-----------------------------|-----------------------|------------|------------|-----------|
| 단기가사<br>월<br>24시간           | 중위소득<br>140%이상~160%이하 | 월 311,040원 | 월 246,040원 | 월 65,000원 |
|                             | 중위소득<br>120%이상~140%미만 | 월 311,040원 | 월 260,040원 | 월 51,000원 |
|                             |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 월 311,040원 | 월 275,040원 | 월 36,000원 |
|                             | 차상위 계층                | 월 311,040원 | 월 295,040원 | 월 16,000원 |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311,040원 | 월 311,040원 | 무료        |
| 방문·주간<br>월<br>27시간<br>(9일)  | 중위소득<br>140%이상~160%이하 | 월 349,920원 | 월 276,920원 | 월 73,000원 |
|                             | 중위소득<br>120%이상~140%미만 | 월 349,920원 | 월 292,920원 | 월 57,000원 |
|                             |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 월 349,920원 | 월 308,920원 | 월 41,000원 |
|                             | 차상위 계층                | 월 349,920원 | 월 331,920원 | 월 18,000원 |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349,920원 | 월 349,920원 | 무료        |
| 방문·주간<br>월<br>36시간<br>(12일) | 중위소득<br>140%이상~160%이하 | 월 466,560원 | 월 369,560원 | 월 97,000원 |
|                             | 중위소득<br>120%이상~140%미만 | 월 466,560원 | 월 389,560원 | 월 77,000원 |
|                             |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 월 466,560원 | 월 412,560원 | 월 54,000원 |
|                             | 차상위 계층                | 월 466,560원 | 월 442,560원 | 월 24,000원 |
|                             | 기초생활수급자               | 월 466,560원 | 월 458,280원 | 월 8,280원  |

주: 등급간 변경을 위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에 변경신청서 제출  
 자료: 보건복지부,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2권)』, p. 20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행기관, 제공인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II-4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인력 현황

(단위: 명)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등급 외 A·B자 | 39,874 | 87,925 | 130,475 | 138,148 | 138,176 | 142,121 | 146,472 | 148,502 | 146,763 | 150,057 |
| 이용자       | 21,199 | 15,223 | 34,490  | 37,728  | 37,271  | 42,283  | 46,759  | 43,428  | 44,293  | 47,686  |
| 종사자       | 2,771  | 4,495  | 8,246   | 9,499   | 10,111  | 12,970  | 23,562  | 23,933  | 26,141  | 29,331  |

주: 당해 12월 말까지 누적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운영모델(안)』, p. 21

<표 II-4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행기관 수 및 제공인력

| 시도 | 수행기관 수(개소) | 제공인력 수(명) |
|----|------------|-----------|
| 합계 | 2,497      | 19,727    |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운영모델(안)』, p. 21

### 3)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혜대상은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인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1급~3급 장애인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220점 이상인 자이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과거 활동지원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탈락한 1급~3급 장애인도 서비스의 수혜대상이 된다. 급여는 인정점수에 기반한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본급여를 제공하고 생활환경 및 자립활동 등에 따라 추가급여를 제공한다. 2019년 기준 기본급여금액은 610,000원(약 47시간)~1,530,000원(약 118시간)이며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lt;표 II-44&gt;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별 기본급여

| 활동지원등급 | 인정점수      | 기본급여               |
|--------|-----------|--------------------|
| 1등급    | 380점~470점 | 1,530,000원(약118시간) |
| 2등급    | 320점~379점 | 1,219,000원(약94시간)  |
| 3등급    | 260점~319점 | 921,000원(약71시간)    |
| 4등급    | 220점~259점 | 610,000원(약47시간)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6&PAGE=6&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6&PAGE=6&topTitle=) 검색일자: 2019.5.13.

&lt;표 II-45&gt;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 내용                                                                             |               | 금액         | 시간    |
|--------------------------------------------------------------------------------|---------------|------------|-------|
| 수급자가 혼자 사는 경우                                                                  | 인정점수 400점 이상  | 3,539,000원 | 273시간 |
|                                                                                | 인정점수 380~399점 | 1,037,000원 | 80시간  |
|                                                                                | 인정점수 380점 미만  | 260,000원   | 20시간  |
| 수급자의 가족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만 있는 경우                                     | 인정점수 400점 이상  | 3,539,000원 | 273시간 |
|                                                                                | 인정점수 380~399점 | 1,037,000원 | 80시간  |
|                                                                                | 인정점수 380점 미만  | 260,000원   | 20시간  |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경우                                                         |               | 1,037,000원 | 80시간  |
| 수급자가 법에 정해진 정규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br>(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특수학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 130,000원   | 10시간  |
| 직장에 다니는 경우(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포함)                                                       |               | 519,000원   | 40시간  |
| 생활시설 등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               | 260,000원   | 20시간  |
|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 260,000원   | 20시간  |
| 가족의 직장·학교생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 947,000원   | 73시간  |

주: 출산가구, 자립준비에 따른 추가급여는 사유발생일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 동안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6&PAGE=6&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6&PAGE=6&topTitle=) 검색일자: 2019.5.13.

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그리고 긴급활동지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사용된다. 활동보조에는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과 같은 신체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가사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동행 등 사회활동지원이 있다. 방문목욕은 가정방문 목욕을 제공하며,

방문간호의 경우 간호, 진료,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의 서비스가 해당된다. 서비스별 수가 및 세부 내역은 아래 <표 Ⅱ-46>과 같다.

<표 Ⅱ-46> 활동지원급여 내용 및 수가

| 급여의 종류 | 내용                                                                             | 수가                                         |                                              | 제공 인력  |
|--------|--------------------------------------------------------------------------------|--------------------------------------------|----------------------------------------------|--------|
| 활동 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서비스 제공                                                   |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2019년1월 1일~)                   |                                              | 활동 보조사 |
|        |                                                                                | 분류                                         | 시간당 금액(원)                                    |        |
|        |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2,960                                       |        |
|        |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19,440                                       |        |
| 방문 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 요양 보호사 |
|        |                                                                                |                                            | 19,440                                       |        |
|        |                                                                                | 차량 이용                                      | 72,540원/1회(60분 이상)                           |        |
|        |                                                                                | 차량 미이용                                     | 65,410원/1회(60분이상)<br>※40분 이상 60분 미만시 80%만 산정 |        |
| 방문 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                                              | 방문 간호사 |
|        |                                                                                | 분류                                         | 금액                                           |        |
|        |                                                                                | 30분 미만                                     | 35,230원                                      |        |
|        |                                                                                | 30분 이상 ~ 60분 미만                            | 44,190원                                      |        |
|        |                                                                                | 60분 이상                                     | 53,170원                                      |        |

자료: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www.ableservice.or.kr/PageControl.action> 검색일자: 19.5.13.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본인지원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기초수급자의 경우 면제, 차상위 계층 등은 2만원, 차상위 초과인 경우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상한선 2019년 1월기준 113,500원), 추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5%를 적용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을 15만 8,900원으로 감액하고, 소득기준을 ‘전국가구평균소득’에서 ‘기준중위 소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2019년 5월 현재 본인부담금 규모 및 부과 기준은 아래 <표 Ⅱ-47> 및 <표 Ⅱ-48>과 같다.

&lt;표 II-47&gt;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구분                   |                         | 본인<br>부담률 | 4등급<br>(610천원) | 3등급<br>(921천원) | 2등급<br>(1,219천원) | 1등급<br>(1,530천원) |
|----------------------|-------------------------|-----------|----------------|----------------|------------------|------------------|
| 기초수급자                |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 정액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 전국<br>가구<br>평균<br>소득 | 50% 이하<br>(2,822천원 이하)  | 6%        | 36,600         | 55,200         | 73,100           | 91,800           |
|                      | 100% 이하<br>(5,882천원 이하) | 9%        | 54,900         | 82,800         | 109,700          | 113,500          |
|                      | 150% 이하<br>(8,467천원 이하) | 12%       | 73,200         | 110,500        | 113,500          | 113,500          |
|                      | 150% 초과<br>(8,467천원 초과) | 15%       | 91,500         | 113,500        | 113,500          | 113,500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6&PAGE=6&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6&PAGE=6&topTitle=) 검색일자: 2019.5.13.

&lt;표 II-48&gt;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구분                   |                         | 본인<br>부담률 | 130천원 | 260천원  | 519천원  | 947천원  | 1,037천<br>원 | 3,539천<br>원 |
|----------------------|-------------------------|-----------|-------|--------|--------|--------|-------------|-------------|
| 기초수급자                |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차상위계층                |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면제          |
| 전국<br>가구<br>평균<br>소득 | 50% 이하<br>(2,822천원 이하)  | 2%        | 2,600 | 5,200  | 10,300 | 18,900 | 20,700      | 70,700      |
|                      | 100% 이하<br>(5,882천원 이하) | 3%        | 3,900 | 7,800  | 15,500 | 28,400 | 31,100      | 106,100     |
|                      | 150% 이하<br>(8,467천원 이하) | 4%        | 5,200 | 10,400 | 20,700 | 37,800 | 41,400      | 141,500     |
|                      | 150% 초과<br>(8,467천원 초과) | 5%        | 6,500 | 13,000 | 25,900 | 47,300 | 51,800      | 176,900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6&PAGE=6&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6&PAGE=6&topTitle=) 검색일자: 2019.5.13.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총괄하며 광역지자체인 시·도가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을 관리 감독, 활동보조사의 교육기관을 지정 및 관리한다. 시·군·구는 읍·면·동의 사업을 관리, 감독하며 활동지원기관을 지정 및 관리한다. 또한 시·군·구는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 선정 및 인정등급을 결정하며, 부당지급 급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혜대상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접수하고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는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공단 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방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심의하고 조사결과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을 평가하고 수급자 모니터링 등 수급자 관리를 실시한다. 동 서비스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발급되는 바우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바우처 발급·관리 및 본인부담금 수납 등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담당한다. 이러한 사업 추진체계를 [그림 II-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안)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2018년 8월 31일 기준 수급자수는 92,535명으로 1일 평균 서비스이용시간은 4.5시간 미만이 57.3%, 4.5시간 이상이 42.7%이다. 월 1회 이상 결제한 활동지원사 중 활동지원기관에서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급여등록을 한 활동지원사의 수는 2018년 8월 31일 기준 54,061명으로 활동지원기관별 평균 종사자 수는 74명이다. 활동지원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06.3시간으로 1일 4.8시간에 해당한다. 월평균 보수는 1,178,000원이다.

[그림 11-2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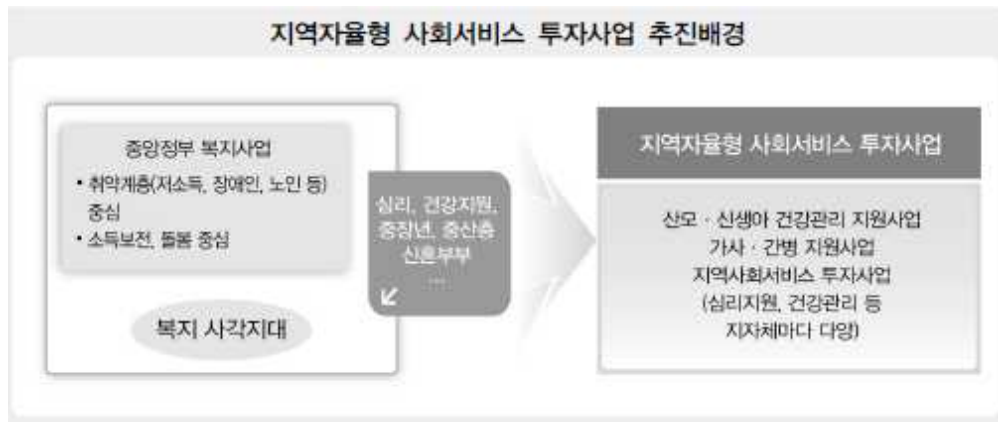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 xiii

#### 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체계에서 지자체별 특성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청년,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사 간병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II-2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배경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 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선정된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용자는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공급받은 후 공급자에게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전달된다.

[그림 II-2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 5



동 사업의 추진체계는 아래 표와 같으며 크게 보건복지부의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사회보장정보원의 바우처 관리 및 비용 정산, 시·도의 시·군·구 서비스 심사 및 승인, 감독, 평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의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총괄 및 지원, 시·군·구의 지역사회서비스 관리 및 실행, 서비스 이용자 선정 등의 역할로 나누어진다.

<표 II -4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체계 및 기능

| 추진주체                           | 기능                                                                                                                                                                                                                                                                                                                                         |
|--------------------------------|--------------------------------------------------------------------------------------------------------------------------------------------------------------------------------------------------------------------------------------------------------------------------------------------------------------------------------------------|
| 보건복지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침 작성 총괄</li> <li>• 시·도 성과평가 추진 총괄</li> <li>• 시·도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li> <li>• 전자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관리</li> </ul>                                                                                                                                                                            |
| 사회보장정보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예약금 관리</li> <li>• 바우처 비용지급 및 정산</li> <li>• 사업 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li> <l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관리(평가 등)</li> </ul>                                                                                                                                                                                  |
| 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총괄 관리</li> <l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별 예산조정 및 집행관리</li> <li>• 시·도 서비스 기획 및 발굴</li> <li>• 시·도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 수립</li> <li>• 시·군·구 서비스 심사 및 승인·감독·평가</li> <li>• 시·도 사회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li> <li>• 시·도 성과관리</li> <li>• 시·군·구 자체평가체계 구축 및 실시</li> <li>• 시·도 내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 총괄</li> </ul> |
| 지역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br>(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총괄·지원</li> <li>•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및 전문인재 양성</li> <li>• 사회서비스 컨설팅 지원</li> <li>• 사회서비스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개발</li> <li>• 지역 간 사회서비스사업 연계·협력체계 구축</li> <li>• 사회서비스 인식개선 홍보</li> </ul>                                                                                                                  |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관리</li> <li>•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컨설팅</li> <li>• 지역사회서비스 발굴·기획 지원</li> <li>• 민·관 네트워크 구축</li> <li>• 제공기관 현장점검 지원</li> <li>•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원</li> </ul>                                                                                                                             |
| 시·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 관리 및 시행</li> <li>• 지역사회서비스 예산집행 분석 및 예약금 집행</li> <li>•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관리(중도포기자, 미이용자, 대기자 관리, 본인부담금 장기미납자 관리 등)</li> <li>•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관리</li> <li>• 지역개발 서비스 홍보</li> <li>• 서비스 이용자 선정</li> <li>•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감독</li> </ul>                                                       |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p. 12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재가서비스에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표준모델 등에서도 필요한 경우 재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연도별,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한다.

#### 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동 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기타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지원 신청 대상자와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앞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인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이용자의 경우에는 동 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면, 식사 등을 보조하는 신체수발 지원,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의 신변활동 지원, 청소, 식사준비 등 가사 지원,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의 일상생활 지원이 있으며 서비스 표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lt;표 II -50&gt;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표준

| 대분류                  | 중분류                             | 내용                                                                                                                                                                   |
|----------------------|---------------------------------|----------------------------------------------------------------------------------------------------------------------------------------------------------------------|
| A.<br>신체<br>수발<br>지원 | A-1 목욕 등<br>신체청결                | - 이용자 건강상태에 따라 목욕방법을 선택하여 제공한다.<br>- 이용자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가 반영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A-2<br>배설관리                     | - 이용자의 대·소변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한다.<br>- 배설 후 신체청결이 유지되도록 뒷처리를 한다.                                                                                                     |
|                      | A-3 옷<br>갈아입히기<br>등 몸단장<br>지원하기 | - 이용자의 질환 및 잠재능력을 고려하여 그에 따라 옷 입히기를 지원한다.<br>- 서비스 제공시 피부의 반점 등 상처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br>- 갈아입은 의복을 정리정돈 한다.<br>-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면도, 손·발톱 다듬기, 머리단장 등 몸단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A-4<br>식사도움<br>(장애시)            | - 이용자의 식사수행능력에 따라 식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 B.<br>건강<br>지원       | B-1<br>체위변경                     | - 이용자와 제공인력간 교차감염 위험에 대비하여 관련 물품 및 신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
|                      | B-2 간단한<br>재활운동<br>보조           |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애유형에 따라 실내이동이 불편한 사항을 확인한다.<br>- 이용자가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                      | B-3<br>감염예방                     | - 제공자는 욕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욕창 예방을 위한 자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한다.<br>-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한 신체이상이나 욕창 발생 시 가족원에게 알린다.                                                                          |
|                      | B-4<br>복약돕기                     | - 약포장 겉면의 이용자 이름, 약복용 정보(용량, 투약방법 등)를 정확히 파악한 뒤 투약한다.<br>- 약을 취급하기 전 반드시 손을 씻고, 복용 후에는 확실히 복용했는지 확인한다.                                                               |
|                      | B-5<br>안전관리                     | - 이용자 집안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위험요소와 위험방지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가족원 등에게 알린다.<br>- 이용자 집안의 가스누출관리 및 화재관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한다.                                                    |
| C.<br>가사<br>지원       | C-1 청소                          | - 이용자의 직접적인 사용 공간을 파악한 후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어 청소를 수행한다.<br>- 청소 후 사용물품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                                                                                    |
|                      | C-2 세탁                          | - 이용자의 세탁서비스로만 한정하며, 이용자의 욕구에 맞추어 세탁한다.<br>- 세탁물의 상태로 하혈 등 건강 이상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자 등에게 알려준다.                                                                  |
|                      | C-3 취사 및<br>장보기                 | - 이용자의 건강 및 치아 상태를 고려하여 조리한다.<br>- 설거지 등 청결하게 뒷정리를 수행하며, 취사 후 남은 음식을 위생적으로 처리한다.<br>-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원하는 식료품을 구매한다.<br>- 구입물품 내역을 알려주고, 영수증을 정리한다.                    |
|                      | C-4 양육<br>보조                    | -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가구 내에서 양육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동일 가구 내에서 아동이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양육보조를 제외<br>-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가구 내에서 양육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

| 대분류                  | 중분류              | 내용                                                                                                                                                                                   |
|----------------------|------------------|--------------------------------------------------------------------------------------------------------------------------------------------------------------------------------------|
| D.<br>일상<br>생활<br>지원 | D-1<br>외출 동행     | -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는 외출계획을 함께 세우고, 목적지에 대한 교통편, 소요시간, 안전 및 편의시설 등 사전정보를 충분히 습득한다.<br>-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영향요인을 충분히 고려한다.                                                                        |
|                      | D-2<br>정서지원 서비스  | - 이용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뒤 서비스를 제공한다.<br>- 이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도록 한다.<br>-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 삶의 양식 등에 대해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br>- 이용자에게 반어 또는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                      | D-3<br>응급 상황 대응  | -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가까운 병원, 응급센터(119) 등의 연락처 및 위치를 파악해 둔다.<br>-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센터나 가까운 병원 등에 연락하며, 보호자와 소속 제공기관에 알린다.                                                                        |
|                      | D-4<br>업무대행      | - 업무대행의 목적과 이용자를 대신해 업무대행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br>- 업무대행 전 준비해야 할 정보나 자료 등을 준비하고, 진행과정과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린다.                                                                                     |
| E.<br>기타             | E-1<br>제공기록 및 보고 | - 이용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또는 변화 등을 꼼꼼히 관찰한다.<br>- 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br>-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을 제공기관에 보고한다.                                                                                |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pp. 140~142

동서비스의 비용은 시간당 10,200원으로 24시간 기준 월 244,800원, 27시간 기준 월 275,400원이다. 이 중 정부 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 해당된다. 서비스 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II-51>과 같다.

<표 II-51>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서비스 비용

| 제공시간              | 소득수준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월<br>24시간<br>(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244,800원 | 월 244,800원 | 면 제       |
|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 월 226,400원 | 월 18,400원 |
| 월<br>27시간<br>(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형)             | 월 275,400원 | 월 265,360원 | 월 10,040원 |
|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 월 254,700원 | 월 20,700원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3&PAGE=3&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3&PAGE=3&topTitle=) 검색일자: 2019.5.14.

동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제공기관의 등록기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재가방문서비스를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제공기관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 이상(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은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제공인력은 만 18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제공인력은 채용 시와 채용 후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정보원 자료<sup>50)</sup>에 따르면 2017년도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이용자 수는 93,000명으로 정부지원 예탁금은 24,511백만원, 지급액은 22,811백만원이었다. 또한 동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 수는 451개소이고 제공인력 수는 53,000명으로 집계되었다.

#### 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의 기본지원 대상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추가적으로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 취약지 산모,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최대) 출산 가정(또는 산모)은 예외지원 대상이 된다. 단,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자,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5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통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검색일자: 2019.05.15.

을 받은 자들은 동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 제공,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등이며 서비스 표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5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표준

| 대분류                   | 중분류                       | 내용                                                                                                                                                                                                                                                 |
|-----------------------|---------------------------|----------------------------------------------------------------------------------------------------------------------------------------------------------------------------------------------------------------------------------------------------|
| A.<br>산모<br>건강<br>관리  | A-1<br>산모 신체<br>상태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모의 출산 후 신체상태(산후통, 제왕절개 부위, 유방·유두, 체중변화 등)를 관찰한다.</li> <li>산모의 출산 후 신체상태의 변화를 기록하고 산모에게 알린다.</li> </ul>                                                                                                     |
|                       | A-2<br>유방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방 및 유두상태를 확인하고, 젖몸살이 발생되면 젖을 빨리거나 짜내어 신속히 비워준다.</li> <li>통증이 지속될 경우 물수건 습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li> <li>유두 균열 등이 발생할 경우 젖 먹는 자세를 교정하도록 지원한다.</li> </ul>                                                         |
|                       | A-3<br>산후 부종<br>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모의 신체 회복을 돕기 위해 부종관리 효과와 방법을 학습한다.</li> <li>필요한 경우, 산모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신체 부위의 부종을 관리한다.</li> </ul>                                                                                                   |
|                       | A-4<br>산모<br>영양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모와의 면담을 통하여 1일 영양요구량을 파악한다.</li> <li>산모와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주간 식단표를 계획한다.</li> <li>산모의 음식 섭취 여부를 확인한다.</li> <li>산모의 음식섭취 여부, 기호 등을 확인하여 영양관리 계획을 재구성한다.</li> </ul>                                                |
|                       | A-5<br>좌욕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좌욕에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적합한 환경을 준비한다.</li> <li>좌욕 실시 방법을 안내하고 좌욕을 지원한다.</li> <li>좌욕 후 건조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적절한 건조방법을 지원한다.</li> <li>좌욕 종료 후 사용물품을 정리한다.</li> </ul>                                                      |
|                       | A-6<br>산모<br>위생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모의 신체부위의 청결과 위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음부 패드를 준비한다.</li> <li>산모의 회음부 절개부위와 열상 부위에 대한 소독을 보조한다.</li> <li>산모 오로의 색과 양을 관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li> <li>위생관리 완료 후 사용물품을 정리 및 보관한다.</li> </ul>                                     |
|                       | A-7<br>산후 체조<br>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만 방법에 따라 산후체조 여부 및 시행일정을 협의한다.</li> <li>체조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가볍게 체조를 실시한다.</li> <li>산모의 체력과 컨디션에 유의하여 체조를 지원한다.</li> <li>힘이 들어가는 체조는 삼가고, 어지럼증이 유발되면 휴식을 실시하도록 한다.</li> <li>체조 완료 후 간단히 뒹정리를 실시한다.</li> </ul> |
| B.<br>신생아<br>건강<br>관리 | B-1<br>신생아<br>건강 상태<br>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온계 사용 방법에 따라, 1일 1회 이상 체온을 확인 후 산모에게 알려준다.</li> <li>기저귀 교환 시 소변 양을 확인하고, 기저귀 사용량을 산모에게 알려준다.</li> <li>황달 여부를 관찰하고, 황달 발생 시 즉시 산모에게 알린다.</li> <li>대소변의 양상을 관찰하고 이상 시 산모에게 알린다.</li> </ul>                   |
|                       | B-2<br>신생아<br>청결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의 신체청결을 위하여 산모에게 신생아 목욕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려준다.</li> <li>신생아의 목욕을 위하여 실내 및 목욕물 온도를 점검하고 목욕물품을 준비한다.</li> <li>신생아를 안전하게 안고, 씻기고, 물기를 닦고 수분을 섭취시킨다.</li> <li>신생아 목욕 완료 후 사용물품을 정리 및 보관한다.</li> </ul>               |

| 대분류                   | 중분류                 | 내용                                                                                                                                                                                                                                                                                                                                                                |
|-----------------------|---------------------|-------------------------------------------------------------------------------------------------------------------------------------------------------------------------------------------------------------------------------------------------------------------------------------------------------------------------------------------------------------------|
| B.<br>신생아<br>건강<br>관리 | B-3<br>신생아<br>수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유간격을 확인하고 수유물품과 인공수유(분유)를 준비한다.</li> <li>• 수유를 준비하고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유를 실시한다.</li> <li>• 수유과정과 종료 후에 소화를 돕고 수유 양을 점검한다.</li> <li>• 산모가 직접 인공수유를 실시할 경우 이를 보조하고, 산모에게 수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li> </ul>                                                                                                                          |
|                       | B-4<br>신생아<br>위생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생적인 상태에서 신생아의 배꼽을 소독하고 물기를 제거한다.</li> <li>• 신생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기저귀를 주기적으로 교체한다.</li> <li>• 신생아 위생관리 완료 후 사용물품을 정리 및 보관한다.</li> </ul>                                                                                                                                                                                        |
|                       | B-5<br>예방접종<br>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기별, 개월별 권장 접종 항목과 접종 간격을 알려준다.</li> <li>• 예방접종 전·후의 유의사항을 산모에게 알려준다.</li> <li>• 산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까운 곳에서의 예방접종은 동행한다(단, 차량을 대신 운전하여 접종장소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음).</li> <li>• 예방접종 후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한다</li> </ul>                                                                                                              |
| C.<br>산모<br>정보<br>제공  | C-1<br>응급상황<br>대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응급의료기관 등의 연락처를 파악한다.</li> <li>• 신생아에게 흔한 건강문제(예: 기도폐쇄, 황달, 경련, 발진, 설사, 구토 및 역류 등) 이상 여부를 관찰하고 이상 시 산모에게 알린다.</li> <li>• 응급상황 발생 시 119나 가까운 병원 등에 연락한다.</li> <li>• 가족에게 응급상황을 알리고 이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관련 사항을 연락한다.</li> </ul>                                                       |
|                       | C-2<br>감염 예방·<br>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를 만지기 전 반드시 손을 씻는다.</li> <li>•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장갑, 마스크 등을 활용하고 청결을 유지한다.</li> <li>• 신생아 용품을 소독한다.</li> <li>• 소독 후 사용 물품을 정리한다.</li> </ul>                                                                                                                                                                             |
|                       | C-3<br>산모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유수유의 기본 지식 및 이점, 최적의 자세 등을 산모에게 알려준다.</li> <li>• 인공수유를 하게 될 경우 인공수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산모에게 제공한다.</li> <li>•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산모가 혼자 실행할 수 있도록 좌욕, 회음부 관리, 유방 관리 방법 등을 산모에게 충분히 설명한다.</li> <li>•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산모가 신생아를 적절히 돌볼 수 있도록 신생아 목욕법, 산후 용품 사용방법, 신생아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등을 산모에게 충분히 알려준다.</li> </ul>                             |
| D.<br>일상<br>생활<br>지원  | D-1<br>산모 식사<br>준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의 신체 및 정신적 만족 상태를 고려한 식단관리 계획을 수립한다(단, 다른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또는 비일상적인 음식준비 예: 김장, 장담그기, 손님 접대음식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li> <li>•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식욕을 높일 수 있는 식사와 간식을 조리한다.</li> <li>• 산모가 충분한 수준의 음식물을 섭취하였는지 확인한다.</li> <li>• 조리 후 남은 음식은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설거지 등 뒷정리 수행한다.</li> <li>• 식기, 행주, 도마, 조리기구 등은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리한다.</li> </ul>     |
|                       | D-2<br>청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모와 신생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확인하고 산모와 청소 범위를 협의한다. (단, 산모와 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이외의 공간 예: 다른 가족 방, 현관, 베란다, 서재, 드레스룸, 창문, 각종 수납공간, 마당 등 - 에 대한 청소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li> <li>•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되도록 환기, 온습도, 채광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절히 조절한다.</li> <li>• 신생아의 침구 상태를 확인하고 청결히 관리한다.</li> <li>• 청소 후 사용물품을 정리한다.</li> <li>• 적절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li> </ul> |

| 대분류                  | 중분류                 | 내용                                                                                                                                                                                                                                                                                                                                                                                                                                   |
|----------------------|---------------------|--------------------------------------------------------------------------------------------------------------------------------------------------------------------------------------------------------------------------------------------------------------------------------------------------------------------------------------------------------------------------------------------------------------------------------------|
| D.<br>일상<br>생활<br>지원 | D-3<br>세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탁범위와 수준을 안내하고 필요물품을 구비에 합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준비한다(단, 다른 가족의 세탁물, 비밀상적인 세탁물 - 예: 이불, 커튼, 침구, 대형의류, 목은 빨래, 철 지난 의류, 신발·가방류, 고가의류 등 - 에 대한 세탁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음).</li> <li>세탁방법은 산모의 습관과 결정을 존중하여 선택하되 세탁관련 지식을 습득하여 적합한 세탁방법을 선정하여 세탁한다(단, 손빨래는 사전 협의 하에 제공할 수 있음).</li> <li>산모, 신생아 세탁물은 반드시 분리하여 세탁한다.</li> <li>세탁물을 건조한 후 건조된 세탁물을 반드시 정리하여 보관한다.</li> <li>세탁 후 세탁 물품과 도구 등의 사용물품을 정리 및 정돈한다.</li> </ul> |
| E.<br>정서<br>지원       | E-1<br>정서적<br>지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비스 욕구를 파악한 뒤 서비스를 제공한다.</li> <li>산모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도록 한다.</li> <li>산모의 개인적 특성, 삶의 양식 등에 대해 이해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li> <li>산모에게 반어 또는 명령조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li> <li>산후 우울감 정도를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상태를 보호자에게 알린다.</li> </ul>                                                                                                                                          |
| F.<br>기타             | F-1<br>제공기록<br>및 보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모와 신생아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또는 변화 등을 꼼꼼히 관찰한다.</li> <li>서비스 제공 기록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다.</li> <li>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을 제공기관에 보고한다.</li> </ul>                                                                                                                                                                                                                                                                    |

자료: 보건복지부, 『20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pp. 140~142

동서비스의 비용은 태아 유형별로 1일 기준 단태아 112,000원, 쌍태아 145,000원, 삼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167,000원이며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을 자율 책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서비스 금액과 정부지원금의 차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지원금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 -53>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 구분          |             |         |                   | 서비스 기간 |        |        | 서비스 가격 |       |       | 정부지원금 |     |       |
|-------------|-------------|---------|-------------------|--------|--------|--------|--------|-------|-------|-------|-----|-------|
|             |             |         |                   | 단<br>축 | 표<br>준 | 연<br>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br>태<br>아 | 첫<br>째<br>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560    | 1,120 | 1,680 | 491   | 840 | 1,134 |
|             |             | A-통합-①형 | 100% 이하           |        |        |        |        |       |       | 432   | 739 | 998   |
|             |             | A-라-①형  | 100% 초과<br>(예외지원) |        |        |        |        |       |       | 344   | 588 | 794   |



| 구분                            |                       |         |                   | 서비스 기간 |        |        | 서비스 가격 |       |       | 정부지원금 |       |       |
|-------------------------------|-----------------------|---------|-------------------|--------|--------|--------|--------|-------|-------|-------|-------|-------|
|                               |                       |         |                   | 단<br>축 | 표<br>준 | 연<br>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br>태<br>아                   | 둘<br>째<br>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20  | 1,680 | 2,240 | 1,009 | 1,294 | 1,552 |
|                               |                       | A-통합-②형 | 100% 이하           |        |        |        |        |       |       | 888   | 1,138 | 1,366 |
|                               |                       | A-라-②형  | 100% 초과<br>(예외지원) |        |        |        |        |       |       | 706   | 906   | 1,087 |
|                               | 셋<br>째<br>아<br>이<br>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120  | 1,680 | 2,240 | 1,048 | 1,344 | 1,613 |
|                               |                       | A-통합-③형 | 100% 이하           |        |        |        |        |       |       | 923   | 1,183 | 1,419 |
|                               |                       | A-라-③형  | 100% 초과<br>(예외지원) |        |        |        |        |       |       | 734   | 941   | 1,129 |
| 쌍<br>생<br>아                   | 둘<br>째<br>아           | B-가-①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50  | 2,175 | 2,900 | 1,408 | 1,805 | 2,166 |
|                               |                       | B-통합-①형 | 100% 이하           |        |        |        |        |       |       | 1,239 | 1,589 | 1,906 |
|                               |                       | B-라-①형  | 100% 초과<br>(예외지원) |        |        |        |        |       |       | 986   | 1,264 | 1,516 |
|                               | 셋<br>째<br>아<br>이<br>상 | B-가-②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2,175  | 2,900 | 3,625 | 2,112 | 2,407 | 2,708 |
|                               |                       | B-통합-②형 | 100% 이하           |        |        |        |        |       |       | 1,859 | 2,118 | 2,383 |
|                               |                       | B-라-②형  | 100% 초과<br>(예외지원) |        |        |        |        |       |       | 1,478 | 1,685 | 1,896 |
| 삼태아<br>이상,<br>중증장<br>애포<br>산모 |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2,505  | 3,340 | 4,175 | 2,433 | 2,772 | 3,119 |
|                               |                       | C-통합형   | 100% 이하           |        |        |        |        |       |       | 2,141 | 2,440 | 2,744 |
|                               |                       | C-라형    | 100% 초과<br>(예외지원) |        |        |        |        |       |       | 1,703 | 1,941 | 2,183 |

주: 1.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예시) ①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에 해당,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에 해당

2.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100%”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표로 지원대상 판정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PAGE=1&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1&PAGE=1&topTitle=) 검색일자: 19.5.16.

동 사업을 제공하기 위한 제공기관의 등록기준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재가방문서비스를 따르며 이에 대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시설기준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기준으로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인력기준으로 제공기관장 1명, 관리책임자 1명(50명 이상인 경우, 50명당 1명씩 추가), 제공인력 10명 이상(단, 농어촌 지역은

3명 이상)이다. 인력의 자격기준은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제공인력은 만 18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감염예방을 위해 모든 제공인력은 채용 시, 채용 후 매 1년마다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을 필수로 검진한 건강진단서를 새로 제출해야 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제공인력은 동 질환(증상)의 치료 전까지 서비스에 투입할 수 없다.

서비스에 투입할 수 없는 질환(증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 설사 등의 증세가 있는 위장 관계 질환
- 감기 등 호흡 관계 질환
- 유행성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안과 질환
- 화농성(化膿性) 질환 등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

사회보장정보원 자료<sup>51)</sup>에 따르면 2017년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자 수는 79만 500명으로 정부지원 예산금은 60,644백만원, 지급액은 53,890백만원이었다. 또한 동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 수는 683개소이고 제공인력 수는 141,000명으로 집계되었다.

#### 5) 아이돌봄 지원사업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한다. 동 사업은 만 12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3급으로 등록된 장애아동은 제외한다.

5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주요통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검색일자: 2019.05.16.

동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4개 유형으로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영아 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서비스(일반형, 종합형),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을 위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연계서비스가 있으며 유형별 세부 서비스 제공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54>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 제공 범위

| 서비스 종류      |         | 서비스 제공 범위                                                                                                                                                                                                                                                                                                   |
|-------------|---------|-------------------------------------------------------------------------------------------------------------------------------------------------------------------------------------------------------------------------------------------------------------------------------------------------------------|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li> <li>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li> </ul>                                                                                              |
| 시간제         | 일반형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li> <li>*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li> <li>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li> </ul> |
|             | 종합형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제 일반형 서비스 돌봄활동 범위 및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추가 제공</li> <li>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li> <li>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 하기</li> <li>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예외적으로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에서만 화기를 사용한 조리 가능)와 그에 따른 설거지</li> </ul>                                                                  |
| 질병감염아동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li> <li>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li> <li>*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li> <li>*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li> </ul>                                                    |
| 기관연계돌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li> <li>※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li> </ul>                                                                                                                                      |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use/part1.go>, 검색일자: 19.5.16.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가 관장하며 사업계획 및 지침 마련, 예산 확보 및 지원, 사업 평가 및 홍보 등을 실시한다. 각 시·도는 사업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 지역 선정, 예산지원을 한다. 시·군·구는 예산 집행, 지자체 사업추진계획 마련, 교육·서비스기관 관리·감독의 역할을 한다. 읍·면·동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별 시간당 요금은 영아종일제 9,650원, 시간제 일반형 9,650원, 시간제 종합형 12,550원, 질병감염아동 11,580원, 기관연계 16,500원이며 동일 시간대에 형제나 자매 등 아동을 추가할 경우 아동별로 요금 총액의 25%(2명), 33.3%(3명)을 감액하도록 한다. 또한 야간 또는 토·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에서 50%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 서비스 시작시간 24시간 이내 취소 시 건당 9,650원을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해야 하며 영아종일제 및 기관연계서비스는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정부지원금은 아동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 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출생기준과 소득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하여 적용한다. 출생기준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A형),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B형)이고,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형(75% 이하), 나형(120% 이하), 다형(150%), 라형(150% 초과)이며 2019년 기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다. 서비스 사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비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차액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 사용 시간은 연 720시간 이하이며, 1회 최소 2시간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표 II -55>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유형<br>(중위소득)                   |      | 가형<br>(75% 이하) | 나형<br>(120% 이하) | 다형<br>(150% 이하) | 라형<br>(150% 이하) |
|--------------------------------|------|----------------|-----------------|-----------------|-----------------|
| 영아 종일제<br>(9,650원/시간)          | 정부지원 | 7,720원(80%)    | 5,790원(60%)     | 1,448원(15%)     | -               |
|                                | 본인부담 | 1,930원(20%)    | 3,860원(40%)     | 8,202원(85%)     | 9,650원(100%)    |
| 시간제<br>일반형<br>(9,650원/<br>시간)  | A    | 정부지원           | 8,203원(85%)     | 5,308원(55%)     | 1,448원(15%)     |
|                                |      | 본인부담           | 1,447원(15%)     | 4,342원(45%)     | 8,202원(85%)     |
|                                | B    | 정부지원           | 7,238원(75%)     | 1,930원(20%)     | 1,448원(15%)     |
|                                |      | 본인부담           | 2,412원(25%)     | 7,720원(80%)     | 8,202원(85%)     |
| 시간제<br>종합형<br>(12,550<br>원/시간) | A    | 정부지원           | 8,203원          | 5,308원          | 1,448원          |
|                                |      | 본인부담           | 4,347원          | 7,242원          | 11,102원         |
|                                | B    | 정부지원           | 7,238원          | 1,930원          | 1,448원          |
|                                |      | 본인부담           | 5,312원          | 10,620원         | 11,102원         |

| 유형<br>(중위소득)                             |   |      | 가형<br>(75% 이하) | 나형<br>(120% 이하) | 다형<br>(150% 이하) | 라형<br>(150% 이하) |
|------------------------------------------|---|------|----------------|-----------------|-----------------|-----------------|
| 질병<br>감염<br>아동<br>지원<br>(11,580<br>원/시간) | A | 정부지원 | 9,843원(85%)    | 5,790원(50%)     | 5,790원(50%)     | 5,790원(50%)     |
|                                          |   | 본인부담 | 1,737원(15%)    | 5,790원(50%)     | 5,790원(50%)     | 5,790원(50%)     |
|                                          | B | 정부지원 | 8,685원(75%)    | 5,790원(50%)     | 5,790원(50%)     | 5,790원(50%)     |
|                                          |   | 본인부담 | 2,895원(25%)    | 5,790원(50%)     | 5,790원(50%)     | 5,790원(50%)     |

주: (A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자료: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 내용으로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19.5.17.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의 자격기준은 전담 인력의 경우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보육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아동양육 지원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또는 2년 이상 실무 경험자이며, 지원인력은 전담 인력 자격요건에 준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며,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을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서비스대상 아동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인 ‘아이돌보미’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활동희망자 중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관련 전문가 2인 이상 및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면접심사를 실시하며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또한, 2019년 「직접일자리 사업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45% 우선 선발한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2019년 아동 1인 돌봄을 기준으로 할 때 시간당 8,400원~13,500원이며 서비스별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 -56> 2019년 아이돌보미시간당 활동수당(1인 돌봄시 기준)

| 서비스유형 | 시간제일반형<br>/ 영아종일제 | 시간제 종합형 | 질병감염아동  | 기관연계    | 면접비     |
|-------|-------------------|---------|---------|---------|---------|
| 활동수당  | 8,400원            | 10,900원 | 10,100원 | 13,500원 | 12,000원 |

주: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활동 시, 시간당 기본시급(8,400원)의 50% 가산하여 지급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dolbomi/index1.go>, 검색일자: 2019.5.17.

2018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가구는 총 64,591가구이며, 시간제 60,053가구, 종일제 4,538가구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현황은 [그림 II-24]와 같다.

[그림 II-24] 2014~18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현황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 검색일자: 2019.5.17.

2018년 12월 기준 서비스 제공기관은 222개소, 아이돌보미는 23,675명이다.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이돌보미의 수는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통합센터가 135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 25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3개소로 전체 제공기관의 77.9%를 차지한다.

<표 II-57> 2014~18년 아이돌보미 현황

(단위: 명)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 17,208 | 17,553 | 19,377 | 20,878 | 23,675 |

자료: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 검색일자: 2019.5.17.

#### 6)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은 고령, 퇴행성 또는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의 가정을 보훈섬김이 등 복지인력이 방문하여 개인별 필요에 맞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과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으로 나뉘어진다. 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독립·국가·5·18민주·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배우자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자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고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독거·복합질환 참전유공자 복지지원사업은 65세 이상의 경합자를 포함한 참전유공자로 3개 이상의 복합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C 포함)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이고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노인돌봄서비스(복지부) 등 사회복지 차원의 유사서비스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동 사업은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신체 청결, 식사수발, 말벗(정서 지원),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 병원 동행, 산책, 심부름 등 편의 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1일 2시간 기준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복합지원한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보훈복지사와 보훈섬김이가 있으며 각 인력별 역할과 자격요건은 아래 표와 같다. 또한 해당 인력 채용시 취업지원 대상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우대하고 있다.

<표 II-58>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의 종류와 역할

| 구분            | 역할                                                                                       | 자격요건                                                                                                                                               |
|---------------|------------------------------------------------------------------------------------------|----------------------------------------------------------------------------------------------------------------------------------------------------|
| 보훈<br>복지<br>사 |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을 작성하고, 동계획에 따른 보훈섬김이의 배치,관리 및 지원 업무 수행                                 |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br>「사회복지사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br>「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br>국가보훈처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보훈<br>섬김<br>이 | 독거 상태에 있거나 치매·중풍 기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간병 등 보훈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 요양보호사<br>※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채용할 수 없음                                                                                 |

자료: 국가보훈처, 『2019년 보훈업무시행지침 II 권』, pp. 269~270



2018년기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대상자는 15,892명이며, 보훈복지사는 72명, 보훈섬김이는 1,349명이다.

<표 II-59>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실적

(단위: 명, 점)

| 연도   | 지원대상자  | 보훈복지사 | 보훈섬김이 | 고객만족도 |
|------|--------|-------|-------|-------|
| 2014 | 13,978 | 50    | 1,100 | 94.4  |
| 2015 | 15,767 | 67    | 1,326 | 92.0  |
| 2016 | 15,801 | 67    | 1,326 | 92.4  |
| 2017 | 15,869 | 70    | 1,326 | 89.6  |
| 2018 | 15,892 | 72    | 1,349 | 90.1  |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4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46) 검색일자: 2019.5.18.

## 라.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기존 기관 현황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한 검토에 앞서 기존에 존재하는 기관들 중 유사하거나 기능이 일부 중복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복지서비스의 확충에 따라 지역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인 지역복지재단을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로 구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과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설립 운영할 예정인 지방사회서비스원과 기능과 역할이 유사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기관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복지재단이다. 광역지자체 산하 지역복지재단의 경우 재단법인 성격으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역 시도단위에는 2003년 서울시복지재단을 시작으로 2006년 부산복지개발원, 2007년 경기복지재단, 2010년 경북행복재단, 2011년 대전복지재단, 2013년 전남복지재단, 2015년 광주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lt;표 II-60&gt; 광역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 주요내용                                                                                                                                                                                  |                                                                                                                                                                                                                                                                                                                      |                                                                                              |                             |                       |                     |                                                                                                     |
|-------------------------------|---------------------------------------------------------------------------------------------------------------------------------------------------------------------------------------|----------------------------------------------------------------------------------------------------------------------------------------------------------------------------------------------------------------------------------------------------------------------------------------------------------------------|----------------------------------------------------------------------------------------------|-----------------------------|-----------------------|---------------------|-----------------------------------------------------------------------------------------------------|
| 지자체                           | 서울                                                                                                                                                                                    | 부산                                                                                                                                                                                                                                                                                                                   | 경기                                                                                           | 경북                          | 대전                    | 전남                  | 광주                                                                                                  |
| 설립(년)                         | '03                                                                                                                                                                                   | '06                                                                                                                                                                                                                                                                                                                  | '07                                                                                          | '10                         | '11                   | '13                 | '15                                                                                                 |
| 출연금<br>('19년 예산<br>기준)        | 231                                                                                                                                                                                   | 20                                                                                                                                                                                                                                                                                                                   | 99                                                                                           | 31                          | 64                    | 13                  | 16<br>( <sup>'18년 기준</sup> )                                                                        |
| 조직                            | 2실 2본부,<br>4센터                                                                                                                                                                        | 2실 3부<br>1지원단                                                                                                                                                                                                                                                                                                        | 4실 8팀,<br>3센터,<br>1지원단                                                                       | 4팀<br>1지원단,<br>1센터,<br>1복지관 | 2본부 5부<br>1지원단<br>2센터 | 4팀,<br>1지원단,<br>1센터 | 1실, 3팀,<br>1지원단,<br>2타운,<br>1복지관,<br>1작업장                                                           |
| 인력                            | 160여명                                                                                                                                                                                 | 25명                                                                                                                                                                                                                                                                                                                  | 35명<br>※ 별도 인원<br>(무기계약직 5,<br>기간제 32, 장<br>애폐인복지종합지<br>원센터 28)<br>( <sup>'18년 1월 기준</sup> ) | 80명<br>(계약직<br>27명 포함)      | 31명                   | 38명                 | 150여명<br>(1실 3팀 1지원<br>단 22명, 노인권<br>강타운 42명, 노<br>인복지타운 22명,<br>장애인종합복지<br>관 55명, 장애인<br>보호작업장 9명) |
| 법인격                           | 민법상 재단법인                                                                                                                                                                              |                                                                                                                                                                                                                                                                                                                      |                                                                                              |                             |                       |                     |                                                                                                     |
| 설립근거                          |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〇〇시 복지재단 설립<br>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                     |                                                                                                     |
| 주요<br>공동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사회복지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li> <li>-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사업</li> <li>-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사업</li> <li>-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li> <li>-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사업</li> </ul> |                                                                                                                                                                                                                                                                                                                      |                                                                                              |                             |                       |                     |                                                                                                     |
| 지역<br>별<br><br>재단<br>특화<br>사업 | 서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희망플러스통장</li> <li>-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li> <li>-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li> <li>-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li> <li>-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li> </ul>                                                                                                                                             |                                                                                              |                             |                       |                     |                                                                                                     |
|                               | 경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파견을 지원(우선지원: 국고지원 거주시설,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시설)</li> <li>-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휴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등의 단기간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파견(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모든 직군 종사자)</li> </ul> |                                                                                              |                             |                       |                     |                                                                                                     |

| 구분                        |    | 주요내용                                                                                                                                                                                                                                                                                                                                                   |
|---------------------------|----|--------------------------------------------------------------------------------------------------------------------------------------------------------------------------------------------------------------------------------------------------------------------------------------------------------------------------------------------------------|
| 지역<br>별<br>재단<br>특화<br>사업 | 경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li> <li>-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li> <li>-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li> <li>-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li> </ul> <p>※ 경기복지재단의 경우 '19.4~9월까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임</p>                                                                                                                                                    |
|                           | 대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li> <li>-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li> </ul>                                                                                                                                                                                                                                                                |
|                           | 전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보장(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광역콜서비스 제공)</li> </ul>                                                                                                                                                                                 |
|                           | 광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광주복지재단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노인복지 지구 조성사업, 빛고을CC골프장 건립, 광주고령친화체험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빛고을전남대 병원으로 조성</li> <li>- (재)광주복지재단 효령노인복지타운: 상담사업, 평생교육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복리후생사업(빛고을노인건강타운 및 효령노인복지타운 회원을 대상으로 식당, 목욕 이미용실은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게 함), 기능회복(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지역공동체사업 등 운영</li> </ul> <p>* 시설현황: 일자리지원동, 평생학습시설동, 야외시설</p> |
|                           | 경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 대체인력지원사업: 경북 (국고지원 383개 시설대상, 종사자수 2,632명, 2018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병가 등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li> </ul>                                                                                                                                                                                              |
|                           | 부산 | 특별히 추가로 하는 운영하는 사업은 없음(조사·연구를 중심으로 운영)                                                                                                                                                                                                                                                                                                                 |

주: 조직 및 인력은 각 복지재단 홈페이지 조직 및 직원현황('19년 4월 기준)을 기준으로 정리  
 자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부주도 사회서비스 관리주체 설립방안 마련 연구」, 2017. p. 158 표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 산하 복지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

광역지자체 산하 복지재단의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자체 사회복지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조사와 연구업무와 사회복지 관련 교육사업,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사업, 사회복지시설 평가,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 따라 지역의 복지욕구와 실정에 따라 특색있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복지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시에서 운용해야 하는 기금운용이나 사회서비스지원을 위한 사업단, 또는 지역에 따른 특화사업을 광역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복지재단의 업무 중 공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 이외 특화된 업무를 살펴보면 서울시복지재단의 경우는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희망플러스통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sup>52)</sup> 등 다양한 분야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업무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복지재단과 대전복지재단의 경우는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복지재단의 경우는 빚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운영하여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특화되어 있다.

7개의 광역복지재단 중에 부산복지재단만이 다른 지역의 복지재단과는 달리 산하에 센터나 직영시설 없이 연구·조사 업무를 중심으로 인증·평가 및 지역사회서비스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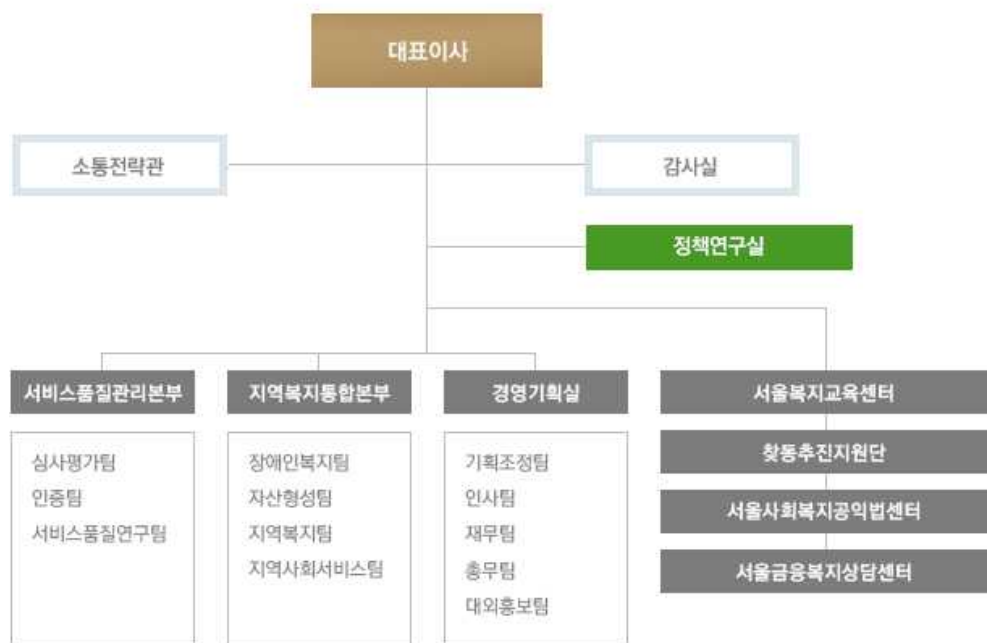
아래 [그림 II-25]~[그림 II-28]과 <표 II-61>~<표 II-64>는 각각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전라남도 복지재단, 광주복지재단의 조직도와 주요 업무 현황을 보여 준다.

#### 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의 경우 최초로 설치된 복지재단으로 '19년 기준으로 231억원(일반회계)의 출연금이 지원되었으며, 조직의 규모도 160여명으로 가장 많은 재단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 기구(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희망플러스통장,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2) 서울시는 가계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하여 이러한 문제 해결을 돕고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하였다. 가정경제 악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며,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거, 일자리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복지적 해법으로 풀고자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산하에 중앙센터 포함 6개 센터로 개설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높은 시민 만족도와 상담수요 증가로 인해 14개 센터로까지 확장되었다. 9개 구청청사와 고용복지+센터, LH마이홈센터 등 여러 공공기관에 위치한 각 지역센터에는 2명의 금융복지상담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fwc.welfare.seoul.kr/sfwc/introCenterForm.do>) 내용을 참고로 정리).

[그림 II-25] 서울시복지재단 조직



자료: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about/organization>)

서울시복지재단의 주요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복지정책 및 모델연구개발,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 지원, 맞춤형 복지지원체계 구축으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II-61>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 주요업무            | 내용                                                                                                                                                                                                 |
|-----------------|----------------------------------------------------------------------------------------------------------------------------------------------------------------------------------------------------|
| 복지정책 및 모델 연구 개발 | 연구보고서(연간 20건 내외)<br>국내외교류사업: (국외)국제사회복지관련기구 협회 활동,국제<br>학술포럼 등, (국내)한국복지분권협의회                                                                                                                      |
| 사회복지시설 역량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지원 사업</li> <li>-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li> <li>- 서울형 어르신 돌봄시설 인증</li> <li>-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카데미</li> <li>-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li> <li>-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li> </ul> |

| 주요업무           | 내용                                                                                                                                                                                 |
|----------------|------------------------------------------------------------------------------------------------------------------------------------------------------------------------------------|
|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공동체 지향 복지관 변화지원사업</li> <li>- 나눔이웃, 위기긴급지원사업</li> <li>- 아름다운이웃, 우리동네 나눔가게</li> <li>- 민간자원개발 및 나눔네트워크 구축</li> <li>- 공유복지플랫폼 구축</li> </ul> |
| 맞춤형 복지 지원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희망플러스통장</li> <li>-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li> <li>-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li> <li>-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li> <li>-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li> </ul>           |

자료: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about/organization>)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 업무현황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위탁을 받아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 모델 구축 및 교육컨텐츠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1.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표준운영모델 구축

○ 기간 : 2019년 3월~6월

○ 종합재가센터 유형별 서비스 및 유형결합 서비스 등 표준운영모델 개발

- 종합재가 內 전 직종의 업무 표준화(일, 월, 년), 유형결합형 운영모델, 맞춤형 특화서비스 운영모델, 서비스 관리체계 개발(서비스운영과정, 계절, 장소관리, 등)

○ 종합재가센터 서비스 관리체계(도구) 개발

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본부·종합재가센터·이용자] 교육컨텐츠개발 용역

○ 기간 : 2019. 3~2019. 6(4개월)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본부 및 종합재가센터 종사자의 직무분석을 기반으로, 직원 역량을 높이고,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화된 직무교육내용 개발

- 사회서비스원 본부, 종합재가센터, 이용자에 대한 교육내용 설계

- 인력구분(현장, 관리, 총괄책임)에 따른 교육내용 설계

- 서비스 제공대상 및 유형별 교육내용 설계(노인, 장애인 등)

- 직무 특성에 따른 교육 내용 구분 제시(이론, 실습 등)

- 서비스 종사자 직급에(팀장 및 실무자) 따른 교육내용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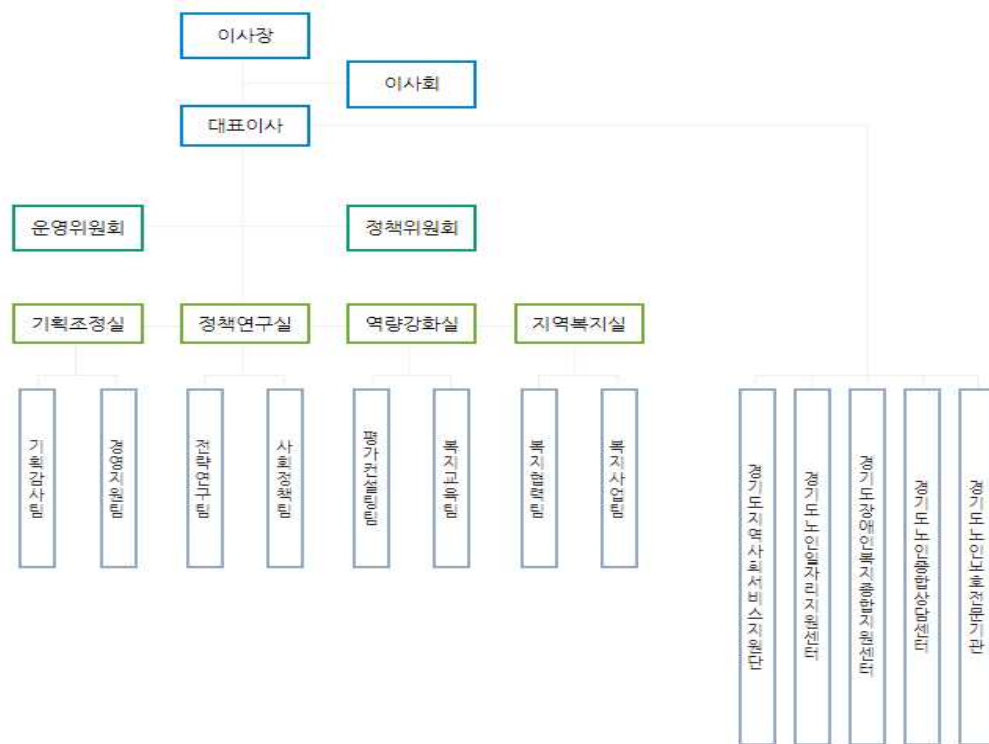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교육내용 설계

자료: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내용 참고

## 나)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은 2007년 설립되었으며, '19년 출연금은 99억원 수준으로 광역시 출연 복지재단 중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은 4실, 8개팀으로 35명의 직원(상근임원 1명, 사무직 17명, 연구직 18명)<sup>53)</sup>이 있으며, 그 외 조직으로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II-26] 경기복지재단 조직



자료: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ggwf.gg.go.kr/gfinfo/groorganization>), 검색일자: 2019.4.18.

경기복지재단은 복지관련 연구사업,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컨설팅, 도의회, 복지단체·시설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 현안을 논의·합의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등 타지역 복지재단과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53) 경기복지재단의 수탁운영 사업(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노인종합상담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대한 인력현황은 미포함

있다. 그 외 특화된 사업으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경기도 사회복지시설과 실무자들을 위한 노무상담서비스,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사업, 경기도대체인력지원사업,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표 II-62> 경기복지재단 주요업무

| 주요업무         | 내용                                                                                                                                                                                                                                                                                                                                                                                                                                                                                                                                                                                                                       |
|--------------|--------------------------------------------------------------------------------------------------------------------------------------------------------------------------------------------------------------------------------------------------------------------------------------------------------------------------------------------------------------------------------------------------------------------------------------------------------------------------------------------------------------------------------------------------------------------------------------------------------------------------|
| 복지발전정책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과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 전달체계 개선 연구</li> <li>-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li> <li>- 경기도 복지정책 평가 체계 도입방안 연구</li> <li>- 저소득층지원 정책연구</li> <li>- 노인복지 정책연구</li> <li>- 장애인복지 정책연구</li> <li>- 사회서비스 정책연구</li> <li>- 사회복지현장지원 정책연구</li> <li>-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개발 및 처우개선 정책연구</li> <li>- 경기도 청년통장 모델 개발 연구</li> <li>-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모델 발굴 연구</li> </ul> </li> <li>◇ 복지경기 포럼 운영</li> <li>◇ 「G-Welfare Brief」 발간</li> <li>◇ 경기도 주간복지동향 「G-Welfare Weekly Report」 발간</li> <li>◇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발전소 운영</li> <li>◇ 사회성과 보상사업(SIB) 실무단 운영</li> <li>◇ 경기도 복지통계</li> </ul> |
|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사업</li> <li>◇ 사회복지시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내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평가</li> <li>- 평가 사후관리</li> </ul> </li> <li>◇ 사회복지시설 인증시스템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li> <li>- 인증심사원 양성</li> <li>- 인증시설 사후관리</li> </ul> </li> <li>◇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시설 경영컨설팅 매뉴얼 개발</li> <li>- 사회복지시설 경영효율화 및 조직역량강화 지원</li> </ul> </li> </ul>                                                                                                                       |



| 주요업무              | 내용                                                                                                                                                                                                                                                                                                                                                                                                                                                                                                                                                                              |
|-------------------|---------------------------------------------------------------------------------------------------------------------------------------------------------------------------------------------------------------------------------------------------------------------------------------------------------------------------------------------------------------------------------------------------------------------------------------------------------------------------------------------------------------------------------------------------------------------------------|
| 복지협력 강화           | <p>◇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상시 소통하는 쌍방향 협의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 도 및 도의회, 복지단체·시설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여 복지 현안을 논의·합의하는 「경기복지거버넌스」 구축</p> <p>◇ 전담기구 지정·운영<br/>「경기복지거버넌스」 효율적 운영 및 사무의 처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경기복지재단 복지협력팀으로 지정·운영<br/>※ 지정근거: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p>                                                                                                                                                                                                                                                                                                                          |
|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 <p>◇ 경기도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교육비, 주거자금,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마련 등 역량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p>                                                                                                                                                                                                                                                                                                                                                                                                                                             |
| 노무상담서비스           | <p>◇ 경기도 사회복지시설과 실무자들을 위한 노무상담서비스를 실시</p>                                                                                                                                                                                                                                                                                                                                                                                                                                                                                                                                       |
| 보건복지부<br>대체인력지원사업 | <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파견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p>                                                                                                                                                                                                                                                                                                                                                                                                                        |
| 경기도대체인력지원사업       | <p>◇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특별휴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등의 단기간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돕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돕고자하는 사업(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가족부 소관 시설 모든 직군 종사자)</p>                                                                                                                                                                                                                                                                                                                                                                                                          |
| 경기도<br>노인일자리지원센터  | <p>◇ 수행기관 등 역량 제고 교육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노인 직무·소양 교육 강화</li> <li>- 시·군 일자리사업 운영현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li> <li>- '13년 경기도 초기투자사업 선정 사업단 교육</li> </ul> <p>◇ 수행기관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진입형 사업단 컨설팅</li> <li>- 수행기관 사업단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선</li> <li>- 동일상품 통합브랜드 개발</li> <li>- 수행기관 애로사항 전수조사</li> </ul> <p>◇ 일자리 발굴 활성화 및 취업 알선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군의 공공분야에서 일자리 찾기 운동 전개</li> <li>- 수행기관 성공사례 모음집 발간</li> <li>- 취업알선 행사 참여 및 구인·구직 정보 공유체계 지원</li> <li>- 신규일자리발굴 공모전</li> </ul> |

| 주요업무               | 내용                                                                                                                                                                                                                                                                                                                                                                                                                                                                                                                                                                                                                                                                                                                                                                                                                                                                                                                                                                                                                                                                                               |
|--------------------|--------------------------------------------------------------------------------------------------------------------------------------------------------------------------------------------------------------------------------------------------------------------------------------------------------------------------------------------------------------------------------------------------------------------------------------------------------------------------------------------------------------------------------------------------------------------------------------------------------------------------------------------------------------------------------------------------------------------------------------------------------------------------------------------------------------------------------------------------------------------------------------------------------------------------------------------------------------------------------------------------------------------------------------------------------------------------------------------------|
| 경기도<br>노인일자리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위원회 및 사업위원회 설치·운영</li> <li>- 센터와 수행기관간 교류협력 강화</li> <li>- 민·관 합동 연찬회</li> <li>- 사업협력 MOU 추진</li> </ul> </li> <li>◇ 복지재단을 통한 정책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안과제 단기정책 연구</li> <li>- 도 특화사업 참여노인 교육과정 개발</li> </ul> </li> <li>◇ 일자리사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로셔 제작</li> <li>- 보도자료 제공</li> <li>- 일자리사업단 생산제품 카다로그 제작</li> <li>-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활용</li> <li>- 경기도노인일자리소식 월간 뉴스레터 발송</li> </ul> </li> </ul>                                                                                                                                                                                                                                                                                                                                                                                                                                                                                        |
| 경기도<br>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종합민원상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분야(4개): 생활·공공, 건강·의료, 직업·일자리, 안전·권익보장</li> <li>-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주1회~월1회 직원파견으로 법률·금융·주거 등 전문상담</li> <li>- 공공 및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원 및 종합정보 제공(One-stop지원 시스템)</li> </ul> </li> <li>◇ 보조공학 전시·체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실생활 공간 중심의 전시·체험관 조성</li> <li>- 장애인 당사자 맞춤형 보조공학기구 전문 상담, 보조기구 사용교육</li> <li>-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연계(보조기구 수리, 개조·제작 서비스)</li> </ul> </li> <li>◇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li> <li>- 장애인복지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li> <li>- 장애인활동보조인 양성교육 및 경기도 수탁사업 운영</li> </ul> </li> <li>◇ 장애인 문화·체육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 내 장애인 문화·체육 참여기회 제공 및 활동의 장 마련<br/>(장애인 문예·미술·사진 공모전, 타악경연대회, 풋살대회, 난타공연단)</li> </ul> </li> <li>◇ 도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단체) 공용공간 조성 및 네트워크 (7개소 입주)</li> <li>◇ 장애인복지시설 현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인턴제), 현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연구)</li> </ul> </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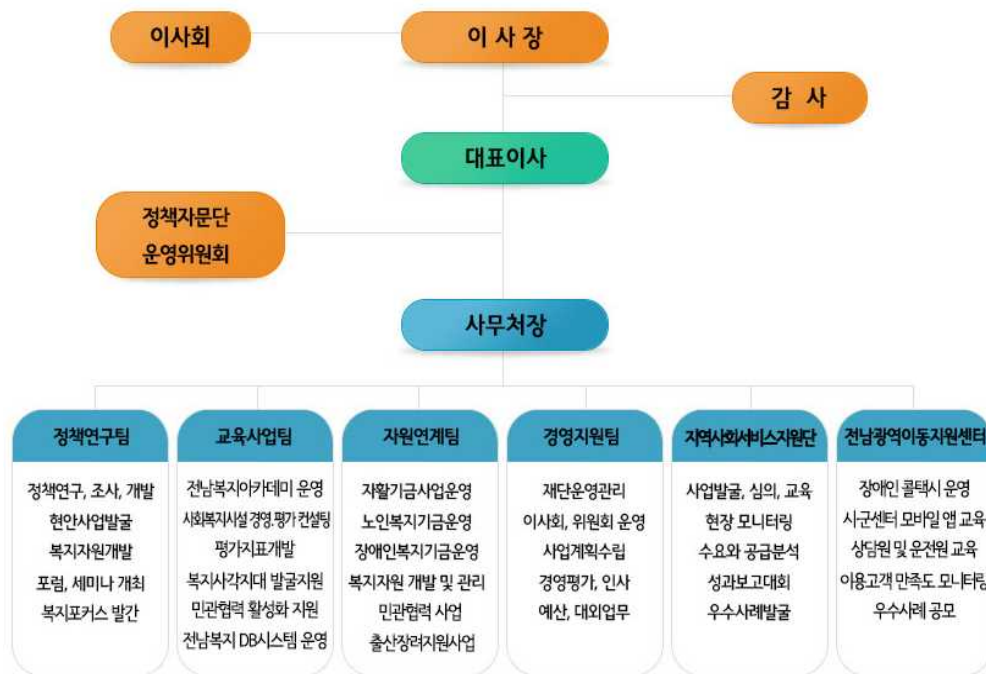
| 주요업무                              | 내용                                                                                                                                                                                                                                                                                                                                                                                                                                                                                                                                                                                                                                                                                                                                                                                                                                                                            |
|-----------------------------------|-------------------------------------------------------------------------------------------------------------------------------------------------------------------------------------------------------------------------------------------------------------------------------------------------------------------------------------------------------------------------------------------------------------------------------------------------------------------------------------------------------------------------------------------------------------------------------------------------------------------------------------------------------------------------------------------------------------------------------------------------------------------------------------------------------------------------------------------------------------------------------|
| 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발굴 및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li> <li>- 신규 사업 매뉴얼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li> </ul> </li> <li>◇ 제공기관 관리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평가 및 모니터링</li> <li>-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통한 품질관리 및 의견수렴</li> <l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품질경진대회 추진</li> <li>- 도내 부정기관 신고 접수창구 “불만제로” 운영</li> </ul> </li> <li>◇ 사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1개 시·군 간 사회서비스 협력 사업</li> <li>- 전국 사회서비스지원단 간 공동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li> <li>- 사업개발 및 내실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축</li> </ul> </li> <l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기관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공무원 대상 교육</li> <li>- 인큐베이팅 컨설팅 및 창업 아카데미 진행</li> </ul> </li> <li>◇ 브랜드 활성화 및 전략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털사이트 내 지역사회서비스 정보 제공</li> <li>- 페이스북, App, 리플렛 제작 등 온, 오프라인 홍보</li> </ul> </li> </ul> |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 <p>상담지원사업(경기도내 거주 노인 및 노인가족 등), 상담사교육, 시·군 노인상담센터의 지역 내 다양한 홍보를 위한 홍보활동, 연계협력사업(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유관기관 리스트 배포)</p>                                                                                                                                                                                                                                                                                                                                                                                                                                                                                                                                                                                                                                                                                                                                            |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br>(2019년 1월 24일 설립) | <p>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관련자 상담을 통한 전문적인 사례개입을 진행하여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p>                                                                                                                                                                                                                                                                                                                                                                                                                                                                                                                                                                                                                                                                                                                                                                                             |

자료: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ggwf.gg.go.kr>)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다) 전남복지재단

전남복지재단의 경우 정책연구팀 5명, 교육사업팀 4명, 자활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운영 관련 업무를 하는 자원연계팀에 3명, 재단운영관리와 사업계획 수립등 업무를 하는 경영지원팀 6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3명 등 21명과 상근임원 1명,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인력 17명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Ⅱ-27] 전남복지재단 조직도



자료: 전남복지재단 홈페이지([http://jnwf.kr/page\\_QALe84](http://jnwf.kr/page_QALe84))

전남복지재단의 주요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지역사회 복지정책 연구,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을 이용한 자원연계사업, 지역사회서비스지원사업,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나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lt;표 Ⅱ-63&gt; 전남복지재단 주요업무

| 주요업무 | 내용                                                                                                                                                                                                                          |
|------|-----------------------------------------------------------------------------------------------------------------------------------------------------------------------------------------------------------------------------|
| 정책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발전비전 제시: 중장기 사회복지정책 연구</li> <li>- 복지욕구 수요조사</li> <li>- 사회통합적 복지정책연구(다문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등)</li> <li>- 전남형 정책대안연구(저출산 고령화 신 사회적 위험 대응)</li> <li>-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연구</li> </ul> |

| 주요업무       | 내용                                                                                                                                                                                                                                         |
|------------|--------------------------------------------------------------------------------------------------------------------------------------------------------------------------------------------------------------------------------------------|
| 교육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민간의 종사자 역량강화(전남복지아카데미, 읍면동 사례관리교육, 사회복지종사자 맞춤형 정서 지원)</li> <li>- 복지현장 경영지원(사회복지시설 평가지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지원)</li> <li>- 도민접근성지원(전남복지정보 발간,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복지리더과정, 권역별 찾아가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교육과정)</li> </ul> |
| 자원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기금: 자활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및 융자금 지원</li> <li>- 노인복지기금: 전남 시 군 노인회 지원사업,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li> <li>-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분야 공모사업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li> </ul>                                          |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38개사업), 가사간병방문관리지원사업(1개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1개사업)</li> </ul>                                                                                                         |
| 광역이동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보장(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광역콜서비스 제공)</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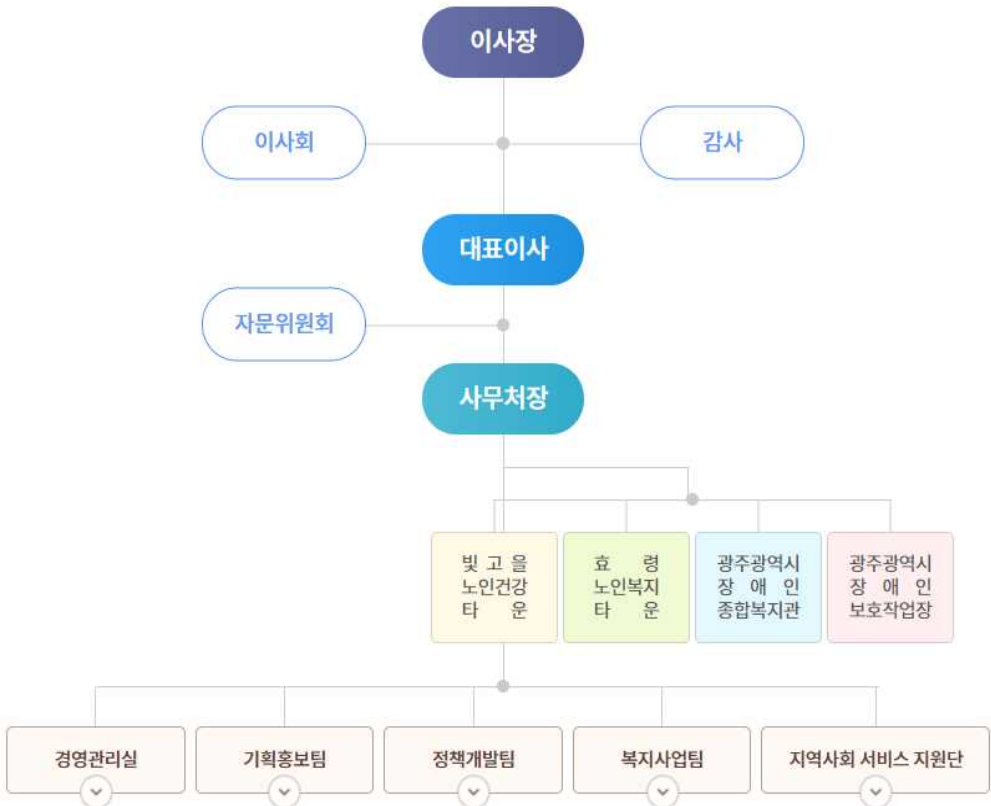
자료: 전남복지재단 홈페이지([http://jnwf.kr/page\\_CzwO42](http://jnwf.kr/page_CzwO42))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라) 광주복지재단

광주복지재단의 경우는 빚고을노인복지재단으로 2009년 법인 설립등기 이후, 빚고을노인건강타운으로 개원하여 운영하다가 2015년 조례개정으로 인해 광주복지재단으로 출범하였다. 이는 과거 노인복지서비스 및 시설 중심운영 형태에서 보다 보편적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확대 운영한 계기가 되었다. 현재 정책개발팀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복지사업 등을 운영하며, 핵심적으로 복지공간을 운영하여 지식공유 및 인력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sup>54)</sup> 조직구성은 사무처 아래 1실 3개팀(경영관리실 5명, 기획홍보팀 4명, 정책개발팀, 4명, 복지사업팀 4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빚고을노인건강타운 42명, 효령노인복지타운 22명,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55명, 광주광역시 장애인보호작업장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sup>55)</sup>

54) 김은숙 외,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발전 방안 연구』, 평택복지재단, 2016.12. p. 33 내용 인용  
 55) 전남복지재단 홈페이지 조직도 및 직원소개(<http://www.gjwf.kr/index.php/site/menu?m=75>), 검색일자: 2019. 4.10을 참고하여 정리

[그림 II-28] 광주복지재단 조직도



자료: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jwf.kr/web/intro/organization.do>)

<표 II-64> 광주복지재단 주요업무

| 주요업무      | 내용                                                                                                                                                                                                                                                                    |
|-----------|-----------------------------------------------------------------------------------------------------------------------------------------------------------------------------------------------------------------------------------------------------------------------|
| 정책개발 및 연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광주복지통계</li><li>- 광주시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처우실태조사</li><li>- 광주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모형 개발연구</li><li>- 광주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li><li>- 재가복지시설 활성화 방안</li><li>- 광주광역시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운영현황 및 서비스 파악</li><li>-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강화 방안연구</li></ul> |
| 시민참여형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찾아가는 시민복지교육</li><li>- 복지실천사례 공모로 따뜻한 복지공동체의 다양한 복지사례 발굴</li></ul>                                                                                                                                                             |

| 주요업무       | 내용                                                                                                                                                                                                                                                                                                                      |
|------------|-------------------------------------------------------------------------------------------------------------------------------------------------------------------------------------------------------------------------------------------------------------------------------------------------------------------------|
| 복지현장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 컨설팅지원사업</li> <li>- 복지네트워크사업: 광주광역시 복지협치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li> <li>- 사회복지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사회복지종사자로 구성된 학습·소진예방 동아리</li> <li>- 전문상담서비스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무, 정신건강분야 전문상담 및 소규모교육 지원</li> <li>- 사회복지인력 전문성 향상 지원사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 강화</li> </ul> |
| 복지네트워크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과의 복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및 민간 현장과의 연대회의, 복지 직능단체 정기 네트워크 추진 등</li> <li>- 온라인 공유방 “복지공간” 운영: 사람과 지식분야의 각종 복지자료 공유</li> </ul>                                                                                                                                   |
| 지역사회서비스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고, 지자체 사업관리·제공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우수제공기관 육성,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전문체계 구축(시(광역시)개발사업 17개(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등), 구군개발: 2개 사업(광주형 영 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자서전 쓰기 어르신 인생재발견 프로젝트 등)</li> </ul>                        |

자료: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jwf.kr/index.php/site/menu?m=231>)을 바탕으로 정리

## 2)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sup>56)</sup>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한 복지재단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갖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재단은 2004년 동작복지재단 설립이후 가속화되어 2017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은 28여개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56) 손선옥·김소영·노현희,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유형별 역할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70(2), 2018.5, pp. 35~59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lt;표 II-65&gt; 기초자치단체별 복지재단 설립현황

(단위: 개, %)

|              | 광역<br>단체 | 기초자치<br>단체 (A) | 설립수<br>(B) | 기초자치단체                               | 설립률 (A/B) |
|--------------|----------|----------------|------------|--------------------------------------|-----------|
| 1            | 서울       | 25             | 7          | 강남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동작구, 양천구,<br>용산구 | 28.0      |
| 2            | 부산       | 16             | -          | -                                    | -         |
| 3            | 대구       | 8              | 1          | 달성군                                  | 12.5      |
| 4            | 인천       | 10             | -          | -                                    | -         |
| 5            | 광주       | 5              | -          | -                                    | -         |
| 6            | 대전       | 5              | 1          | 유성구                                  | 40.0      |
| 7            | 울산       | 5              | -          | -                                    | -         |
| 8            | 세종       | -              | -          | 추진                                   | -         |
| 9            | 경기       | 31             | 4          | 가평군, 김포시, 시흥시, 평택시, 용인시(추진)          | 12.9      |
| 10           | 강원       | 18             | 1          | 태백시                                  | 5.6       |
| 11           | 충북       | 11             | 2          | 증평군, 청주시                             | 18.2      |
| 12           | 충남       | 16             | 3          | 당진시, 서산시, 천안시                        | 18.8      |
| 13           | 전북       | 14             | -          | -                                    | -         |
| 14           | 전남       | 22             | 5          | 광양군, 담양군, 완도군, 목포시, 신안군              | 22.7      |
| 15           | 경북       | 23             | -          | -                                    | -         |
| 16           | 경남       | 18             | 4          | 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 22.2      |
| 17           | 제주       | -              | -          | -                                    | -         |
| 전체<br>기초자치단체 |          | 227            | 28         | -                                    | 12.3      |

자료: 김은숙 외,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발전 방안 연구』, 평택복지재단, 2016.12. p. 35 표 인용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역할은 크게 모금과 배분, 조사·연구·교육, 시설운영 세 가지 역할에 따라 유형을 나누기도 하는데 이 유형들 중 두 가지 이상을 유사한 비중으로 수행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유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일반 현황은 아래의 <표 II-66>과 같으며, 앞에서 말한 모금과 배분, 조사·연구·교육, 시설운영 기능 세 가지와 이들 기능을 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지역복지재단은 지역사회육구 해결을 주된 역할로 인식하고 지역의 복지육구에 대응



하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 가용자원이 부족하고 복지 예산 증액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복지재단은 민간으로부터 모금과 기부를 받고 이를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8개 복지재단 중 23개가 모금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지역복지재단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조사·연구·교육 기능을 하게 된 이유는 지방분권이 점차 강화되고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복지자원의 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주체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복지시설과 기관들의 실무자 및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수요와 이를 매개로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수요로 이러한 활동들 역시 지역복지재단에 맡겨지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복지재단의 주요기능은 시설운영기능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 중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재단은 서울 2곳, 경기 3곳, 그 외 11곳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운영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서울에 존재하는 지역복지재단의 경우는 구립어린이집, 구립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들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건가·다가 통합센터, 문화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6>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일반 현황

(단위: 개)

| 특성      |            | 기초자치체 산하 지역 복지재단 수 |       |            |
|---------|------------|--------------------|-------|------------|
|         |            | 서울(7)              | 경기(4) | 그 외 지역(17) |
| 설립 연도   | 2003~2011년 | 4                  | 3     | 7          |
|         | 2012~2016년 | 3                  | 1     | 10         |
| 출연 금 규모 | 10억 미만     | 1                  | 1     | 7          |
|         | 10억~30억 미만 | 5                  | 0     | 8          |
|         | 30억~50억 미만 | 1                  | 2     | 2          |
|         | 50억 이상     | 0                  | 1     | 0          |
| 인력 규모   | 1~3명       | 1                  | 0     | 5          |
|         | 4~6명       | 2                  | 2     | 8          |
|         | 7명 이상      | 3                  | 2     | 4          |
|         | 알 수 없음     | 1                  | -     | -          |

| 특성       |            | 기초지자체 산하 지역 복지재단 수                                                                                                                                                                                           |                                                                                                                                                                                               |                                                                                                                                            |
|----------|------------|--------------------------------------------------------------------------------------------------------------------------------------------------------------------------------------------------------------|-----------------------------------------------------------------------------------------------------------------------------------------------------------------------------------------------|--------------------------------------------------------------------------------------------------------------------------------------------|
|          |            | 서울(7)                                                                                                                                                                                                        | 경기(4)                                                                                                                                                                                         | 그 외 지역(17)                                                                                                                                 |
| 시설<br>운영 | 운영함        | 5                                                                                                                                                                                                            | 3                                                                                                                                                                                             | 11                                                                                                                                         |
|          | 운영시설<br>종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립어린이집</li> <li>- 푸드마켓</li> <li>- 구립도서관</li> <li>- 00구 육아종합지원센터</li> <li>- 00구 자원봉사센터</li> <li>- 청소년독서실</li> <li>- 00구 건강가정지원센터</li> <li>- 00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복지관</li> <li>- 장애인복지관</li> <li>- 노인전문요양</li> <li>- 자원봉사센터</li> <li>- 재가복지센터</li> <li>- 노인종합복지관</li> <li>- 종합사회복지관</li> <li>- 00군 노인복지타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가·다가 통합센터</li> <li>- 문화복지센터</li> <li>- 청소년수련관</li>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li> <li>- 청소년문화의집</li> </ul> |
|          | 운영안함       | 2                                                                                                                                                                                                            | 1                                                                                                                                                                                             | 5                                                                                                                                          |
|          | 알 수 없음     | -                                                                                                                                                                                                            | -                                                                                                                                                                                             | 1                                                                                                                                          |
|          |            |                                                                                                                                                                                                              |                                                                                                                                                                                               |                                                                                                                                            |
| 모금<br>활동 | 모금함        | 7                                                                                                                                                                                                            | 3                                                                                                                                                                                             | 13                                                                                                                                         |
|          | 모금안함       | 0                                                                                                                                                                                                            | 1                                                                                                                                                                                             | 2                                                                                                                                          |
|          | 알 수 없음     | -                                                                                                                                                                                                            | -                                                                                                                                                                                             | 2                                                                                                                                          |

주: 1. 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주요 현황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함. 단, 출연금 정보 일부는 한국가이드스타와 신문 기사 그리고 모금 활동 여부는 평택복지재단(2017)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2. “알 수 없음” 항목은 자료 부족으로 확인되지 못한 정보를 의미함.  
 자료: 손선옥·김소영·노현희,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유형별 역할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70(2), 2018.5, p. 40 표를 바탕으로 재정리

이렇게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들의 시설운동을 하게 된 배경은 기초자치단체의 필요성에 기인한다. 지역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산재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 소속 복지시설들을 책임있게 관리·운영할 주체로 민과 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이러한 역할을 맡기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 복지타운이나 규모가 큰 복지관 등의 복지시설 운영 역량을 갖춘 운영주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민간 복지운영주체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57)</sup>

57) 이지숙, 「지역복지재단의 실태 및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70(2), 2016.8, pp. 3~17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 법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명시된 상위계획이나 법률 등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사회서비스 관련 상위 계획으로 2019년 2월 19일에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을 검토한 결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이 하나의 과제명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 제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사회서비스 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서비스 관리 주체의 설립이 명시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법률은 현재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8.5.4,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18.10.16., 윤소하 의원)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위에 제시된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민법」,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설립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sup>58)</sup>

<표 II -67>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상위계획 및 관련법

| 관련법                         | 내 용                                                                                                                                                                                                                                                                                                                                                         |
|-----------------------------|-------------------------------------------------------------------------------------------------------------------------------------------------------------------------------------------------------------------------------------------------------------------------------------------------------------------------------------------------------------|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br>(2019-2023) | <p>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각 부처의 사회보장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통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p> <p>사회보장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임</p> <p>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목표(삶의 질 향상) 및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 90개가 설정되어 있음</p> |

58) 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설명자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p. 3 및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안)」, 2019.2.19, p. 19 내용 인용

| 관련법                                  | 내 용                                                                                                                                                                                                                              |
|--------------------------------------|----------------------------------------------------------------------------------------------------------------------------------------------------------------------------------------------------------------------------------|
| 문재인 정부<br>국정운영 5개년 계획<br>(국정과제 17-2) | 2017년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함.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함<br>-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 민법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br><br>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             |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출자출연법)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출자출연법」 §2, 3, 4, 5, 7, 8, 9 등이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조항에 해당함)                                                       |

## 1.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관련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 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로드맵으로 2014년에 제1차 계획(2014~2018), 2019년에 제2차 계획(2019~2023)이 수립되었다.

1차 기본계획은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었지만 사회보장을 통한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평가에 따라 2차 계획에서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사회보장의 포괄성·보편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1차 기본계획은 정책영역별 목표 제시 없이 200여개의 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기본계획과 타 계획 간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평가를 반영하여 2차 계획에서는 중장기 정책목표(삶의 질 향상) 및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였다.

&lt;표 II-68&gt;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 간 비교

| 구 분                 | 제1차 기본계획('14-'18)         | 제2차 기본계획('19-'23)                                                                                                                                                                |
|---------------------|---------------------------|----------------------------------------------------------------------------------------------------------------------------------------------------------------------------------|
| 비 전                 | 더 나은 내일,<br>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
| 추진<br>원칙<br>및<br>전략 | -                         | ①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br>*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서비스 확대<br>②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br>* 지역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경제 육성<br>③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조정 강화<br>* 사업간 연계·조정을 위한 정책조정 거버넌스 강화<br>④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
| 중장기<br>목표           | -                         | 국민 삶의 질 향상<br>OECD 20위('23) → 10위('40)                                                                                                                                           |
| 정책<br>지표            | -<br>▶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제시  | ▶ 4대 정책영역별 성과 목표 제시<br>(고용,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4대 분야, OECD 비교가능 지표)<br>▶ 분야별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제시                                                                                        |
| 과제수                 | ▶ 약 200여개 과제              | ▶ 90개 핵심과제                                                                                                                                                                       |
| 실행력<br>강화<br>방안     |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br>-   |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br>▶ 4대 정책영역 제도평가 실시<br>▶ 기본계획 보완·환류(2~3년 주기)                                                                                                                 |

자료: 보건복지부, 「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2019.2.12., p. 2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4대 핵심분야(12대 중점 추진과제, 90개 핵심과제)로 선정되어있으며, 그 중 사회서비스 분야는 아래와 같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내용은 IV.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아래의 (과제 번호 4-18) 과제명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으로 명시되어 있다.

&lt;표 II-69&gt;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과제명

| 과 제 명                                             | 소관부처        | 과제<br>번호 |
|---------------------------------------------------|-------------|----------|
| <b>1.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b>                      |             |          |
| <b>1-1. (노인)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b>        |             |          |
| 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통합적 재가서비스 강화                      | 복지부         | 4-1      |
| ②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 복지부         | 4-2      |
| <b>1-2.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b>                      |             |          |
| ① 발달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                            | 복지부         | 4-3      |
| <b>1-3. (아동) 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 중심의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b> |             |          |
| ① 보호대상 자립지원 강화                                    | 복지부         | 4-4      |
| 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강화                             | 여가부         | 4-5      |
| ③ 공적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 복지부         | 4-6      |
| <b>1-4.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 완화 및 문화예술 스포츠 등 접근성 제고</b>  |             |          |
| ① 에너지 복지체계 확대                                     | 산자부         | 4-7      |
| ② 저소득층 문화향유기회 확대                                  | 문체부         | 4-8      |
| <b>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b>                     |             |          |
| <b>2-1.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b>             |             |          |
| 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및 모델개발                           | 복지부,<br>행안부 | 4-9      |
| ②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등 인프라 확충                  | 복지부,<br>국토부 | 4-10     |
| <b>2-2.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b>          |             |          |
| ① 병원과 지역 간 협력으로 퇴원·지역연계 강화                        | 복지부         | 4-11     |
| ② 방문의료 제공 및 재가 의료급여 도입                            | 복지부         | 4-12     |
| <b>2-3.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도입</b>                  |             |          |
| ① 장애인 종합판정도구 도입 및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 복지부         | 4-13     |
| ②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 복지부         | 4-14     |
| <b>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b>             |             |          |
| <b>3-1. 국공립 돌봄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b>               |             |          |
| ①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 복지부         | 4-15     |
| ② 공립 임대주택 확대                                      | 국토부         | 4-16     |
| ③ 주거급여 강화                                         | 국토부         | 4-17     |
| <b>3-2. 사회서비스 제공거점, 인력양성 3및 품질관리 강화</b>           |             |          |
|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복지부         | 4-18     |
| ②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 복지부         | 4-19     |
| ③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 복지부         | 4-20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이 국공립 사회복지 시설 위탁 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민간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에 대한 상담·자문 기능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 ③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실시('19년),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22년)
- 민간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에 대한 상담·자문 기능 강화

자료: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2019.2.12., p. 32

## 나.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

문재인 정부는 2017.5.10.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국정목표·전략, 100대 국정과제, 복합·혁신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 이행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라는 5대 국정목표하의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에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으로 표현되어 있다.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 ☐ 과제목표

-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이하 중략)

- 기대효과
  -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 2.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 법률

사회서비스원은 새로 설립되는 기관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립·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은 기존 법률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민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설립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설립·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관련 법률안 2건이 발의되어 2019년 8월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익법인법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범위), 제3조(정관의 준칙 등), 제4조(설립허가 기준), 제5조(임원 등), 제6조(이사회), 제7조(이사의 기능), 제8조(이사의 소집), 제9조(의결정족수 등), 제10조(감사의 직무), 제11조(재산),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감독), 제15조(조세 감면 등),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제16조의 2(청문), 제17조(감사 등),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9조(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 2개이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익법인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출자출연법)

현재 시범사업으로 설립된 지방사회서비스원(서울시)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의 형태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 제3장 출자·출연의 운영,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 등, 제5장 보칙까지의 37개 조항 및 부칙 2개로 구성되어 있다.

###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 등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將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관련법 발의 현황

고령화·저출산·양극화로 돌봄의 필요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제공하는 주체는 대부분 민간기관이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급여수준도 매우 열악하고 이들 중 대다수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전체산업의 평균임금이 345만원인 데 비해 사회서비스업은 175만원으로 전체 산업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또한 보건·복지 사회서비스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38.9%로, 전체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 32.9%를 훌쩍 상회한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의 열악한 조건으로 서비스 질 또한 좋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공단의 명칭을 민간시설 지원 역할 중심의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하였다가 ‘사회서비스원’으로 다시 바꾸는 등 사업 진행 과정 중에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관련하여 발의된 두 개의 법률안에서도 또한, ‘사회서비스원’과 ‘사회서비스공단’ 등 각각 명칭을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원’으로 표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여 정부의 정책과 함께 입법활동도 진행되었다. 별도의 법률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17년 후반부터 별도 설치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여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보건복지위원회 11인의 명의로 2018년 5월 4일 발의하였다.

이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인프라 확충 의무규정도 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며 '18.10.16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sup>59)</sup>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59) 공감신문 2018.10.16.일자 보도자료(<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3431>) 내용 인용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마련을 위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8.5.4,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18.10.16., 윤소하 의원)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1인, (2018.5.4.))

##### 가)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 및 맞벌이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 및 가족해체 등의 신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음.

민간 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을 확충하고 바우처 방식 도입을 통한 수요자 중심주의·선택권 강화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의 양적 성장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사회서비스공급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조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질 관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복지시설도 대부분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 시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할 수 있는 국공립시설 확충에 따라 해당 국공립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및 민간시설에 대한 선도적 운영모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공립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민간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함(안 제2조).

- 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의 제고와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여함(안 제3조).
- 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를 두고, 설립 시 그 타당성 검토와 협의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정관, 사업, 임직원 및 성과계약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 마.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그 사무나 운영 및 수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 바. 사회서비스원의 사무나 경영에 대해서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각종 경영사항에 대해서 공시토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 사.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기부금품 접수의 특례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및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지침 제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아. 시·도지사가 법률안 시행 전에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포괄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 자. 법률 시행 전 준비행위로서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설립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부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진행현황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13464호)」은 2018년 5월 4일에 발의되어, 5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8월 28일에 소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2019. 8.7.일 기준으로 계류 중인 상태이다.

#### 라)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2018.8) 내용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lt;총괄 검토의견&gt;

-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질 수준의 향상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할 것임.
- 다만,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 수요가 공공부문으로 편중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민간 서비스 부문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 범위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lt;관계부처 및 단체의견&gt;

- (보건복지부): 수용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필요함.
- (기획재정부): 수용
  -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서비스의 설립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보조금의 지급 주체에서 국가는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 수용
  -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규정은 현행 공유재산법 시행령 등을 고려할 때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여성가족부): 수용
  -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과정 등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복지시설 단체 협의회): 불수용
  - 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에 직영할 경우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사회서비스원의 설치·운영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공공기관의 비율확대가 아닌 공공성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므로 전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함.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불수용
  - 제정안은 사회복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불수용
  - 사회서비스원은 보육의 자율성, 전문성 강화 및 보육서비스와 보육교직원의 일자리 질 제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서 보육을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 마)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향<sup>60)</sup>

법안은 공식적으로 발의되기 이전부터 여러 단위와의 논의를 통해 쟁점이 도출되고 내용상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양대 노총, 시민사회, 학계, 기타 관련 이익단체 등과의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업의 범위, 우선위탁, 기부금품 및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우선 적용, 광역으로의 설립단위 규정, 독립채산제가 아닌 사업분야별 회계처리, 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업무 범위,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평가의 내용, 법률 제정 이전 유사 기능 법인에 대한 인정 등의 사항이 쟁점으로 많이 부각되어 왔다.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크게 대립하였는데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동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에 대해 조속한 설립과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히려 법안이 소극적인 몇몇 영역에 대해 지적하였다. 법안에 대한 반대는 보육시설 운영자,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 공급조직의 운영자나 기존 민간 위탁업체 등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공공성의 증진보다는 민간 혹은 시장의 서비스 공급을 강조하고 있다. 법안뿐 아니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에 대한 찬반양론은 기존에 진행된 사회서비스포럼이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준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논의 과정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60) 권찬호 외,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연구용역』, 2018.10,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pp. 28~29 내용 인용

## 2)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윤소하 의원 등 10인, (2018.10.16.)

## 가) 제안이유

한국 사회는 핵가족화, 고령화라는 사회적·인구학적 변화로 인하여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적·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수요자가 취약한 상태에서 필요로 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려우며, 모든 인간의 존엄한 삶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편적이고 감당 가능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과도한 민간 경쟁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서비스의 질 또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보장되지 못하였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공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

## 나) 주요내용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직접 설립 또는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을 개선하여,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질을 향상시키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공공성 제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안정된 고용 보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공개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사회서비스공단의 정관, 임원의 임면,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시·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관할 지역에 사회서비스공단의 지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3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설치 논의를 민관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바. 사회서비스공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민관협의회를 둠(안 제21조).
- 사. 사회서비스공단의 사무를 지원하고 공공성 강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서비스 지원단을 둠(안 제22조).
-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공단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질 개선,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25조).

#### 다) 진행현황

윤소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015984호)」은 2018년 10월 16일에 발의되어, 10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11월 22일에 소관위원회에서 상정되어 현재(2019.3.27.일 기준) 계류 중인 상태이다.

#### 라)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2018.11) 내용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총괄 검토의견>

-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질 수준의 향상과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며,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음
-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기존 민간 서비스 부문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것과는 별개로 공공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재 제정안과 같은 취지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관계부처 및 단체의견>

- (보건복지부): 수정수용
  -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함.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의 관한 법률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 일부수용
  -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과정 등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제3절 해외 사회서비스 사례 조사

### 1. 스웨덴

#### 가.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개관

##### 1) 역사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태동한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는 그 이전 시기에는 주로 전국의 지방이 교회의 소켄(Socken)이라는 지역교구로 분리되어 각 교회의 목사가 사회복지사업을 주관하는 사회복지 담당관의 역할을 맡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1847년 구제법이 제정되면서 빈곤구제위원회가 설립되어 교회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의 교회 역할을 맡게 된다.

이후 산업혁명이 확산되면서 길드마다 자체적으로 기초 부조를 제공하는 제한적 사회보장제도가 유지되었으며, 185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와 더불어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보장과 관련한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아동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 확대, 출산보조금 지급, 의료보험제도 등의 각종 사회서비스 제도가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부담과 높은 소득세율로 할당되었기 때문에 경제와 재정 측면의 위기가 예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하여 1980년대에는 국가주도의 복지서비스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인양되었고, 1993년부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코뮌(Kommun)을 통하여 1세 이상, 6세 이하의 어린이와 7세에서 12세 초·중등 학생에게 공공탁아소와 방과후 취미 여가교실(Fritidshem; Youth Recreation Center)을 운영하여 해당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취학 전 및 취학 아동을 돌 볼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1994년부터는 육아수당제도를 도입하여 공공탁아소에 아이를 위탁하지 않고 부모가 집에서 직접 돌볼 수 있는 자율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1~6세 아동 등의 공공탁아소 이용률은 65%, 사립 5~11%, 30~35%

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양태를 보였다.

199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는 재정위기로 인하여 각종 수당 및 보조금이 축소되었으며, 건정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료소 통폐합을 통한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등의 해고와 학교 구조조정을 통한 교사 해임 등 공공분야 축소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10년 세계적 재정위기의 영향을 받아 복지제도를 참여의 복지, 기여의 복지로 전환한다. 그리고 현재는 장기실업이나 장기 병가에 있는 사람을 빨리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및 재취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적극적 시민의식(Active Citizenship)을 바탕으로 한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와 같은 기조는 우익정권뿐만 아니라 사민당의 경우에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 주도의 사회보장체계가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여론에 따라 비효율적 운영이나 방만한 운영,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곳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영화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선택의 자유와 국가서비스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가족의 문제는 가족 스스로 선택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의 책임과 가치를 중시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정책이다.

## 2) 최근 동향 및 서비스 질 관리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지역 분권 중심의 복지체계가 이루어져 온 스웨덴의 복지체계 전통에 따라 2016년 기준 290개의 시(Municipalities)와 20개의 광역/자치구(Counties/Regions)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SALAR(Swedish Association of Local Authorities and Regions)이라는 협의체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조정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ALAR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영자들,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으로서 스웨덴의 EU 가입 이후 EU의 정책이 스웨덴의 사회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 따라 스톡홀름과 브뤼셀에 있는 지사에서는 국제적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총구성원은 100만명 이상으로 스웨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영자 조직이다. 재정은 매년 인구수에 비례하여 세금으로 충당되며, 강연, 회의, 컨설팅 등으로 기타 재정수입을 충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정책부(Ministry of Social Affairs)하의 보건복지청(Socialstyrelsen)이 국가적으로 담당하는 중앙정책과 조율하면서 최근에는 범국가적 단위(National level)

의 지방정부 평가 및 모니터링 수단으로서 “Open Comparison”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각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비교 평가하고, 각 서비스분야에서 순위를 매겨 강력한 규제식에서 부드러운 권력으로서의 관리감독이 추진되고 있다. 스웨덴 보건복지 당국은 Open Comparison의 효과로 수많은 복지사업의 개선과 보건사회 서비스 품질의 증가, 투명성의 개선에 기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sup>61)</sup>

### 3) 복지행정 전달체계

스웨덴의 사회복지 행정은 크게 소득보장 급여와 수당을 제공하는 체계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분류된다. 출산, 질병, 장애 등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소득보장의 어려움은 보건사회정책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의 사회보험청(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에서 수행하고, 서비스 전달은 보건복지청(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보건과 관련된 업무는 광역지자체에 해당하는 21개의 랜(Country)에서, 복지서비스는 기초자치단체인 290개의 코뮌(Municipality)에서 관장함으로써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사회부조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기능은 보건복지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운영은 지자체가 일임하여 책임지고 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290개의 코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혜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4) 사회서비스 자원조달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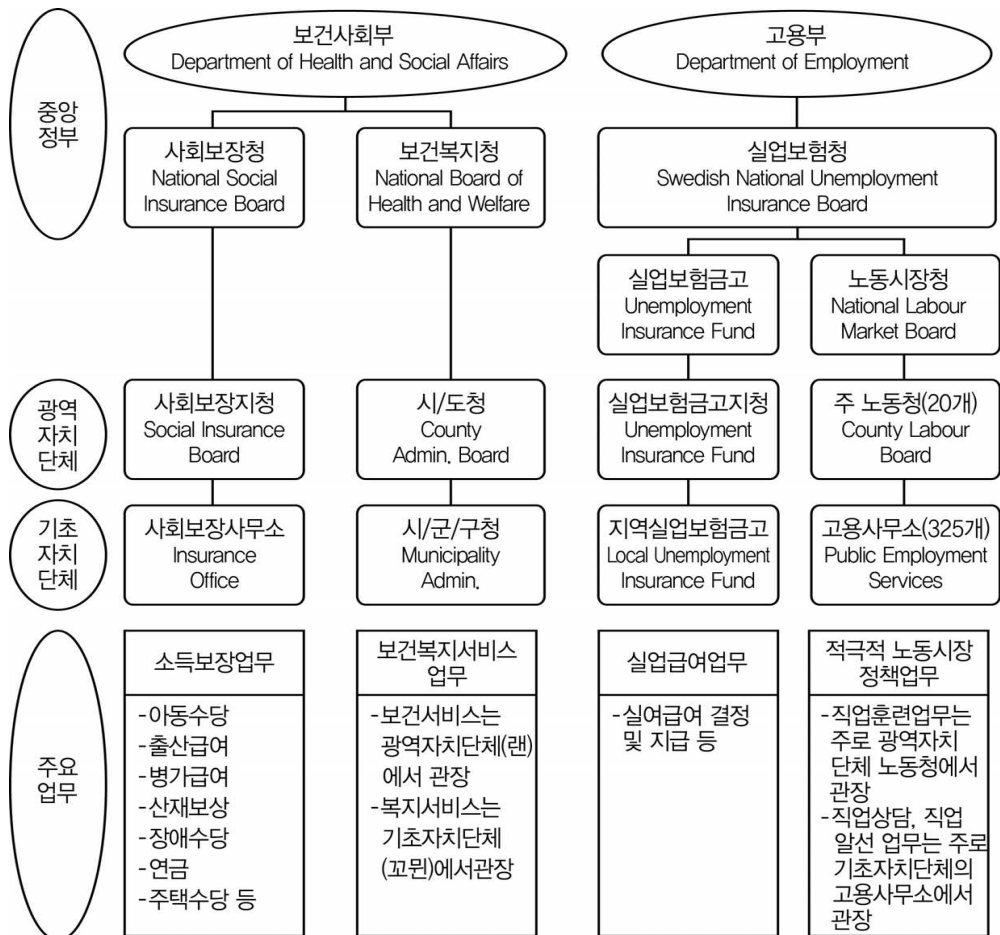
1974년 복지서비스 개혁을 단행한 이후로 개인소득세는 지방세와 교회세로 구분되어, 지방세는 지자체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즉 실질적인 세제운영이 지방분권화되었으며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기관을 지방의 권한과 책임으로 직접 운영한다.

기초지방세는 어린이집, 초중고 교육, 양로원 및 요양원, 장애인 복지기금, 상하수도관리, 쓰레기 수거, 교통도로관리 등에 사용되고, 장기실직자 등의 기초생활 지원비 등으로도 지출된다. 따라서 실직자가 많고, 가난한 지자체일수록 사회복지관련 지출이 많아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 과표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상존하고

61) Socialstyrelsen, “The Rold of the Swedish 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2017, p. 9

있다. 광역지방제도 마찬가지로이다. 기초의료시설과 종합병원 운영에 광역지방제가 사용되기 때문에 부자 지자체일수록 과표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 II-29] 스웨덴의 사회복지행정체계도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스웨덴 편』, 2012, p. 187

## 나. 스웨덴의 보육서비스

### 1) 보육서비스 정책 현황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제공 중심보다는 수당지급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모든 국민이 18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받으며 390일간 통상임금 손실의 80%가 보전되며, 사실상 고용주가 추가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국 100%의 임금보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우리나라는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연봉 4천만원 기준 30% 보장). 또한 매년 12세 미만 아동병가로 6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역시 80%의 임금이 보전된다. 임신한 여성, 아동을 가진 부모, 입양을 한 부모에게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아동수당을 포함한 가족수당은 임신현금급여, 출산휴가 및 급여, 아동간병 휴가 및 급여, 아동수당, 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비, 입양수당 등 여섯 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보육원 같은 경우 비용이 개인요금제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요금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전적으로 국가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다. 스웨덴에서는 아동들의 자립적 사고와 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여성들이 장기실업상태에서 자녀들을 돌볼 때 아동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꼽는다. 때문에 보육정책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동시에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스웨덴 사회는 개인 및 가족의 선택권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스웨덴의 국가주도 사회보장체계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자유가 침해되었었고, 그 결과 비효율적 운영, 방만한 운영, 그리고 예산 낭비의 문제가 대두되었으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영화를 진행하여, 다양한 선택의 자유와 국가서비스의 슬림화와 효율화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문제는 가족 스스로 선택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가족의 책임과 가치를 중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Regeringsförklaringen 2006).

## 2) 보육시설 유형과 특징

스웨덴의 보육시설 유형과 특징은 다음 표와 같으며, 스웨덴의 보육은 절대적인 비중을 공공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아동보육시설의 약 80%가 공공보육시설이며(2003년 기준 83%), 등록 아동수의 약 90%가 이러한 공공보육시설에 등록되어 있다. 민간부문의 보육시설 역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민간시설은 운영 등에 관해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lt;표 II-70&gt; 스웨덴 보육시설 유형과 특징

| 학령기 | 유형                                                           | 대상                                     | 특징                                                                                                                                                                  |
|-----|--------------------------------------------------------------|----------------------------------------|---------------------------------------------------------------------------------------------------------------------------------------------------------------------|
| 이전  | 어린이집<br>(Preschool,<br>Forskola)                             | 출산휴가(480일)후<br>이용(특별한 경우<br>0.5세부터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시설</li> <li>- 연중 상시 개설</li> <li>- 이용시간은 부모 직업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li> <li>- 이용비는 부모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부과</li> </ul> |
|     | 자유유치원<br>(Open<br>Preschool,<br>oppna forskolan)             | 상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자리 확보가 어려운 부모</li> <li>- 돌봄 이외의 교육적 양육 고려하는 부모</li> </ul>                                                             |
|     | 가정탁아<br>(Family daycare<br>home,<br>Fmiljedaghem)            | 어린이집을<br>보완한 우리나라<br>가정어린이집 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운영</li> <li>- 대부분 농촌/교외 지역</li> </ul>                                                                                  |
|     | 열린유치원                                                        | 홀벌이 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li> <li>- 부모가 유치원 제공 교육프로그램 참여가능</li> <li>- 무료 이용</li> </ul>                                              |
| 중첩  | 파트타임유치원<br>(놀이학교)<br>(Leisure-time<br>center,<br>firtidshem) | 5~6세 아동                                | 3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음                                                                                                                                                     |
| 이전  | 유아교실<br>(Preschool<br>class,<br>Forskoleklass)               | 6세 아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병설유치원과 비슷한 개념</li> <li>- 초등학교 내에서 반일+방과 후 교육으로 운영되며, 준의무교육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이용률(99%)을 보임</li> </ul>                        |



| 학령기                | 유형                                                                          | 대상                                                               | 특징                                                                                                                                                                                                                                                                            |
|--------------------|-----------------------------------------------------------------------------|------------------------------------------------------------------|-------------------------------------------------------------------------------------------------------------------------------------------------------------------------------------------------------------------------------------------------------------------------------|
| 이후<br>~12세<br>(초3) | 방과 후 학교<br>(Open<br>Leisure-time<br>activities, Oppen<br>fritidsverksamhet) | 맞벌이가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중 무휴(방학기간에도 이용 가능)</li> <li>- 아이가 학교 수업이 없는 오전 또는 오후에 가는 곳</li> <li>- 비용 및 이용시간은 어린이집과 비슷함</li> <li>- 학교 가까운 곳에 위치</li> <li>- 수업 보완 프로그램, 연령별 프로그램 운영</li> <li>-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됨</li> <li>-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해당 지역 학교와 긴밀한 협조</li> </ul> |
|                    | 패밀리 홈 제도                                                                    | 보호자의 사망으로<br>부재 시<br>보호자가 양육을<br>할 수 없거나<br>해서는 안 된다고<br>판단 될 경우 | 과거 위탁가정에서 발전 됨                                                                                                                                                                                                                                                                |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스웨덴 편』, 2012, pp. 249~250 및 Skolverket, "Child Care in Sweden," 2000. 종합하여 저자 정리.

### 3) 보육시설 운영현황

스웨덴은 시군구의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1~5세 아동들은 Pre-schooling 과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1999년도에는 1세에서 5세까지 전체 어린이의 64%인 319,000명이 다녔으며, 점차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여 2005년의 경우 취학 전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는 385,412명이었고(한국보건사회연구원·황덕순, 2007), 2011년 10월 통계에 따르면 약 472,000명 정도의 어린이가 등록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스웨덴 전역에 1만 개소 이상의 Pre-school이 설치되어있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Skolverket, 2013).

아이들은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된 반으로 나뉘며, 규정에 따라 3명의 교사가 각 그룹에 배정된다. 3명의 교사는 2명의 정교사와 1명의 보조교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교사 중 1명은 반드시 유아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그룹 3개로 어린이집이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집 보육비용은 연간 525시간까지, 하루 평균 약 3시간 가량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여부는 자유이다. 이러한 어린이집 시설과 유치원 등은 각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보육유형별 서비스 공급주체는 다음과 같다.

&lt;표 II-71&gt; 스웨덴의 보육유형별 보육서비스 공급주체(2005년 기준)

(단위: 개, 명)

| 보육유형                  | 공급주체  | 시설 수  | 아동 수    |
|-----------------------|-------|-------|---------|
| 유치원                   | 공립    | 6,769 | 315,48  |
|                       | 사립    | 2,252 | 63,473  |
|                       | 계     | 9,021 | 378,954 |
| 가정보육시설                | 공립    | -     | 25,850  |
|                       | 사립    | -     | 3,749   |
|                       | 계     | -     | 29,599  |
| 개방형 유치원 <sup>1)</sup> | 공립    | 397   | -       |
|                       | 사립    | 51    | -       |
|                       | 계     | 448   | -       |
| 유치학급                  | 공립    | 3,483 | 81,894  |
|                       | 독립/사립 | 417   | 6,374   |
|                       | 국제    | 5     | 139     |
|                       | 계     | 3,905 | 88,407  |

주: 1) 개방형 유치원은 아동을 등록할 필요가 없어, 개방형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에 관한 통계자료가 없음  
 자료: 김송이,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7.12., p. 64 재인용.  
 Sveriges officiella statistik, 2006, pp. 22~23

#### 4) Pre-school 교사 현황

2011년 가을 기준 88,900명(전체 보육교사 수의 95%)의 교사가 전일제 근무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비중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수치이다. 평균 5.3명의 어린이 당 한 명의 전일제 교사가 배치되었으며 이 수치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일정하였다. 스웨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각 pre-school 교장이 교육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성별 균형은 매우 불균등하여서 2011년 전일제 교사의 약 3.5%만이 남자 교사로 이루어져 있다.

스웨덴의 보육교사 자격체계는 원장과 교사로만 구분되어 있으며, 별도 직급체계는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교사는 대학교 3년 반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아동 교육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훈련받은 자로서 보조교사에 비하여 아동발달, 가족사회학, 교수방법 등의 이론 비중의 학습 비중이 높다. 12주의 현장실습 기간을 거쳐 Pre-school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유치원에서도 근무 가능하다.

2012년부터 스웨덴은 보육/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등록시스템을 의무화하였다. 교사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적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정규직으로 고용될 자격이 주어지며, 보육교사들은 지자체에서 고용하여 지자체와 교사노조가 협상 후 봉급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교사연수를 강화하여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 연수를 받고, 이수 정도가 봉급 책정이나 향후 승진에 반영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연수는 보통 저녁시간이나 휴교/휴원일에 이루어지며 급여의 일정 부분이 보조된다.

스웨덴 보육교사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통 보육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시간 이상 운영되지만 교대근무 등을 통하여 8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오전과 오후 각각 15분의 휴식시간과 30분의 점심시간이 보장된다.

급여는 대졸교사의 급여가 일반 보육시설 종사자 급여에 비하여 10% 정도 높고, 파트타임 강사의 급여는 초중등교사보다 16% 정도 낮은 수준이다.<sup>62)</sup>

##### 5) Pre-school 비용

Pre school과 Leisure-time center, 기타 pedagogical care 중 비용적으로 가장 많은 크기를 차지하는 것은 pre-school로서 2011년 기준 565억SEK(78%, 한화로 약 7조 원)가 사용되었다(Leisure-time center은 133억SEK(18%), pedagogical care은 20억SEK(3%)). 또한 전체 Pre-school에 사용된 비용 중 약 73%는 인건비에 해당하였다.

2011년 회계연도 기준 municipality에서 제공하는 재원의 40%는 교육에 사용되었는데, 전체 재원의 14%는 Pre-schools, Leisure-time centers, other pedagogical care에 사용되었다(Skolverket, 2013).

##### 6) Pre-school Class

Pre-school Class는 공립학교 체제 내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로서 모든 6세 어린이들에게 최소 525시간을 무료로 보장한다. 모든 municipality 단위의 지자체에서 제공되며, 2011, 2012년 기준 96%가 6세 아동이다.

62) 2012년 기준 스웨덴 공립학교 자격증 소지 교사의 연봉 평균 한화 약 4,000만원가량, 원장은 한화 약 5,900만원 가량, 가정어린이집 보육사는 약 2,500만원, 보조교사는 2,800만원임. 이는 프랑스의 가정보육사나 보육교사에 비하여 40%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함

&lt;표 II-72&gt; 스웨덴 보육교사 자격기준, 양성과정 및 근무지

| 교사 유형                                    | 자격기준                                                       | 양 성 과 정                                                                                                                                       | 근 무 지                                                                                                                                  |
|------------------------------------------|------------------------------------------------------------|-----------------------------------------------------------------------------------------------------------------------------------------------|----------------------------------------------------------------------------------------------------------------------------------------|
| 유아교사<br>(Preschool teacher)              | 학사학위                                                       | - 3년 6개월(140주) 대학교육 이수(실습 12주 포함)                                                                                                             | - 어린이집 / 자유유치원 / 열린유치원 / 유아교실 / 파트타임유치원                                                                                                |
| 보조교사<br>(Nursery nurses)                 | 1) 고등학교 졸업 (집나지움)<br>2) Komvux(우리나라 보육 교사 교육원과 유사한 성인교육기관) | 1) 고등학교 3년 교육과정 + 아동과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이수(실습 15주 포함)<br>2) 실질적으로는 대학교육 받은 유아교사들에게 교사선발 우선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교사들이 유아교사 자격을 갖추도록 압력을 받고 있음 (교사의 질 향상 요인) | - 어린이집 / 열린유치원 / 유아교실 / 가정돌봄<br>- 취학 전 영유아 대상 육아지원기관<br>- 주교사를 돕는 보조 역할 수행                                                             |
| 가정보육모<br>(Family day carers)             | 형식적 교육 자격요건 없음                                             |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에서 90~100시간 훈련과정 이수                                                                                                          | - 가정돌봄 / 유아교실<br>- 공립 가정보육사: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급여 수령.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음<br>- 사립 가정보육사: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음<br>- 관리·감독을 받는 등의 공적 규제를 받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운영 |
| 레크레이션 /여가활동 교사<br>(Free-time pedagogues) | 학사학위                                                       | - 3년 6개월(140주) 대학교육 이수(실습 12주 포함)                                                                                                             | - 파트타임유치원<br>- 어린이집(유아교사와 함께)                                                                                                          |

자료: 한유미 외(2005); Skolverket(2015); 최윤경 외(2015) 재인용.

## 다. 스웨덴의 장기요양서비스

### 1) 장기요양서비스 정책현황

스웨덴의 노인들은 대체로 재가 공공서비스를 받는다. 환자 개인 부담은 약 4%로서 본 서비스에는 식사배달과 청소, 이동 의료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요구에 따라 서비스 범위와 월 비용이 달라진다(최소 한화 15만원에서 최대 약 220만원가량). 또한 스웨덴은 전체 인구 대비 약 16.5%의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 등급에 따라 지원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고용된 돌봄사정관(Care manager)이 개별 가정의 요양서비스 수요를 판단하고, 서비스 이외에 시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Special needs Housing이라는 지자체 프로그램상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주택을 단일화하여 공급하고 있다. 전체 노인인구의 약 12%가 재택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5~6%는 이러한 특수시설을 이용한다(최근 증가하여 2013년 기준 24% 노인이 재택 및 특수시설 이용).

### 2) 장기요양서비스 자원조달

스웨덴의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을 통하여 거의 모든 재정을 충당한다. 이는 2013년 OECD 발표기준 GDP의 3.6%에 해당하며,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돌봄 종사자의 수 또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에는 재정의 90%까지 충당하며, 나머지는 중앙정부로부터 최저한의 보조금을 받는다. 대부분의 스웨덴 사람들은 지방세만 납부하며 1950년대에는 소득의 6%만을 지방세로 납부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소득의 20% 현재는 소득의 31%를 지방세로 납부한다(고소득자의 경우에만 누진세의 성격으로 국세를 납부).

### 3) 요양서비스 인력

스웨덴의 노인복지사는 모두 계약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지자체에 고용된 노인복지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2년 176,600명이 290개의 지자체에서 월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활동하였으나, 2009년 2만 1,000명이 감소하여 155,400명이 활동하고 있고, 외주업체 직원은 2002년 월별 계약직 직원 수가 22,400명, 2009년에는 26,4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연구원, 2018). 그러나 이와 같은 수치도 2012년 OECD 보고기준 65세 인구 1,000명당

약 130명의 장기요양 종사자가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기요양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 2. 영국

### 가. 영국의 사회서비스 개관

#### 1) 역사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사회 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를 겪는다. 범정부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베버리지의 주도하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에 자유시장경제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복지 제도와 높은 사회보장 성격을 지닌 북유럽의 중간적 형태로서 안정된 고용상태와 아동보호, 의료서비스 보장이 결합된 영국만의 사회보장제도가 탄생한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경제 위기로 인하여 실업이 급증하고 복지국가 지출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면서 대처리즘이 등장한다. 복지 급여는 근로유인을 감소시킨다는 경제학계의 비판을 근본으로 삼은 대처정부는 복지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하며 유인체계를 통한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한다.

노동당은 1979년 이후 지속된 총선의 실패로 내부적인 정책개혁을 단행하고, 1997년 18년 만에 신노동당 정부가 총선에 성공하면서 시장주의와 사회주의의 중도를 표방한 새로운 복지국가 형태를 주창한다. 핵심 표어는 ‘Welfare to Work’로서 근로와 연계된 복지를 표방하였으며, 이전 보수당 정부와 유사한 복지 정책을 펼친다. 그리고 2010년 이후에 보수당 정권이 재집권할 때까지도 이와 같은 시장주의적 복지정책은 지속된다.

#### 2) 최근동향 및 서비스 질 관리

##### 가)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한 노력

영국정부는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하여 2003년 보건복지 표준법(Health and social care · community health and standards act 2003)을 제정함과 동시에 이를 감독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인 사회적돌봄감찰위원회(CSCI; Commission Social Care Inspection)를 설치하였다. 본 위원회에서는 아동돌봄뿐만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

민간의료기관 전반의 사회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인증평가시스템을 운영하며, 등급을 부여하며 우수기관을 선발한다. 그리고 ‘국가표준인증수준(National Minimum Standard)’<sup>63)</sup>을 정하여 최고등급기관에 해당할 경우 국민들에게 공시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유지 관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CSCI는 지방정부 중심이 아닌 중앙집권적인 독립기구로서, 최근에는 돌봄질위원회(CQC; Care Quality Commission)를 신설하여 CSCI의 본래의 기능을 대체하였다. CQC에서는 런던에 본사, 지방에 지사를 두고 보건 복지 돌봄 분야에서 강력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기준을 마련·신규 기관의 시장진입 허용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감사보고서와 함께 해당 기관에 대한 등급을 매기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돌봄서비스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영국은 독립적인 기구가 사회서비스 질을 인증하고 평가하는 책임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훈련조직(Training Organization for Personal social Service; TOSS)을 두어 사회서비스 인력이 서비스 투입 전후로 지속적으로 훈련받게 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앙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의 지방정부는 서비스 구매의 직접구매자가 되어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제공방식에 대한 고민을 함으로써 지역민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있다.

#### 나) 민간활용

영국은 1천만명 이상의 인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영국 인구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최근에 영국정부는 복잡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기

63) 국가표준인증수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설환경(정보, 계약, 욕구사장, 욕구충족)
  - 건강 및 돌봄 수준(서비스이용계획, 건강 돌봄, 약물관리, 사생활보호 및 인격유지, 임종과 사망)
  -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사회활동참여, 지역사회참여, 자율성, 식사)
  - 민원보호(민원, 권리보호, 안전)
  - 시설환경(시설, 화장실과 세탁시설, 개인 방, 가구와 비품, 난방과 조명, 위생과 감염)
  - 직원관리(충원, 자격, 채용방법, 교육)
  - 관리와 운영(일상근무, 윤리, 서비스의 질 확보, 재정, 직원감독, 기록유지, 안전한 업무)
- (DoH, 2003. 재인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영국』)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오히려 국민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다(incoherent and dissatisfying). 2014년 표본설문조사 결과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중 약 25%에 해당하는 32만명이 정부의 사회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주요한 문제점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이 낮음, 서비스제공 관리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꼽았다. 그리고 보육서비스 이용자의 약 10%가량이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1980년대 이후 영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점차 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한 선별적인 장기요양 시스템으로 변모하였다. 요양시스템의 이용자 또한 관료제로 인한 공공의 경직적인 운영보다는 민간의 대응성 높은 서비스 제공을 더욱 선호하기 시작하여 사회전반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돌봄의 시장화’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방정부 산하의 공공재가/요양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과 준시장 구축을 마련하였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민간중심의 시장형성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의 역할, 서비스 구매 역할을 수행하도록 역할 변화를 꾀하였다. 또한 사회전반에 돌봄서비스(보육, 장애인, 노인 등) 현금급여의 비율을 증가시켜 시민들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택과 통제권을 갖게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기대효과가 창출되었다.

### 1) 복지행정 전달체계

영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은 법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공급역할 모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다.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을 제시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주축이 되는 기관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이며, 관련기관으로 국가보건시스템(National Health System), 국가보건의료진흥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이 존재한다.

[그림 II-30]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국의 사회보장 급여와 그 전달체계는 매우 복잡한데, 고용센터플러스는 빈곤과 실업과 관련한 고용서비스와 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제도는 보건부를 정점으로 1차 의료는 NHS에서 관할하고, 2차는 중앙보건기구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돌봄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가 합동전략수요조사(Joint Strategic Needs Assessment)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전략을 구축하는 접근을 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국은 보건의 경우는 중앙정부 중심의 보편무상 제공을 목표로 발전한 것에 비하여, 사회적 돌봄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발달하였기 때문에 양자간의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영국은 복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종류의 복지사업과 급여제도가 복잡한 조세제도와 맞물리면서 수혜자의 선정오류와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캐머런 정부는 복지개혁을 단행하였다.

본 개혁의 핵심은 산재해 있는 급여와 고용프로그램,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단일하여 근로 인센티브를 증진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데, 이는 취업을 하면 더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본래의 개혁 취지에서 벗어나는 정책 때문이었다. 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실업상태에서 받게 되는 각종 무료 서비스에 비하여 높고, 특히 근로로 인하여 증가하는 소득이 아동보육비용의 8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손해 본다고 생각한 근로자들의 근로유인이 감소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즉 복잡한 사회서비스 구조로 인한 전달체계의 문제와 잘못된 인센티브 설계가 영국 복지서비스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Ⅱ-30] 영국의 사회적 위험별 사회보장급여와 전달체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p. 74 인용

## 나. 영국의 보육서비스

### 1) 보육서비스 현황

영국의 보육서비스는 1990년대 이후 보육과 노동이 연계된 복지를 표방하며 발전하였다. 1998년 신노동당정부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저소득가구 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보육이 주요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웃돌봄서비스가 여전히 보육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정부는 2004년에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아동돌봄정책 10개년전략(10 Year Childcare Strategy)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취업증진과 미취학 아동의 돌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동센터(Children's Center)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보육정책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센터가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게 되면서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못한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급여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현금급여와 세제혜택 중심의 보육정책을 추진하는데,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보육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아동 세액공제(Baby tax credit)명목으로 연간 약 500만원, 근로세액공제로서 300만원, 보육세액공제로서 한 자녀 20만원, 둘 이상일 경우 약 35만원가량을 지원한다.

현물로써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은 3~4세 아동 대상 30시간 무상보육이 제공되며, 기존에 비싼 보육비용이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한다는 입장에서 근로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방책으로 제시되었다.

영국의 교육부가 2018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육대상인 0세에서 14세까지의 아동 중 약 75%가 학기 중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이는 약 420만 가구, 600만 아동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그림 II-31], [그림 II-32] 참고). 또한 이중 62%가 공식적인 보육서비스(nursery schools, nursery classes, reception classes, special day schools, day nurseries, playgroups, childminders, nannies or au-pairs, baby-sitters, breakfast clubs, after-school clubs and holiday clubs) 35%는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제공되는 비공식적 보육서비스(grandparents, ex-husband/wife/partners, older brother/sisters, other relatives, friends or neighbours)를 이용하였으며, 25%가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않았다. 특히 휴가 기간에는 2012년 31%가 조부모로부터 비공식 보육을 받았던 것에 비하여 2017년도에는 24%, 2018년도에는 20%만이 휴가기간 조력을 받아 점차 조부모로부터의 도움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I-73&gt; 영국의 보육유형별 보육서비스 공급주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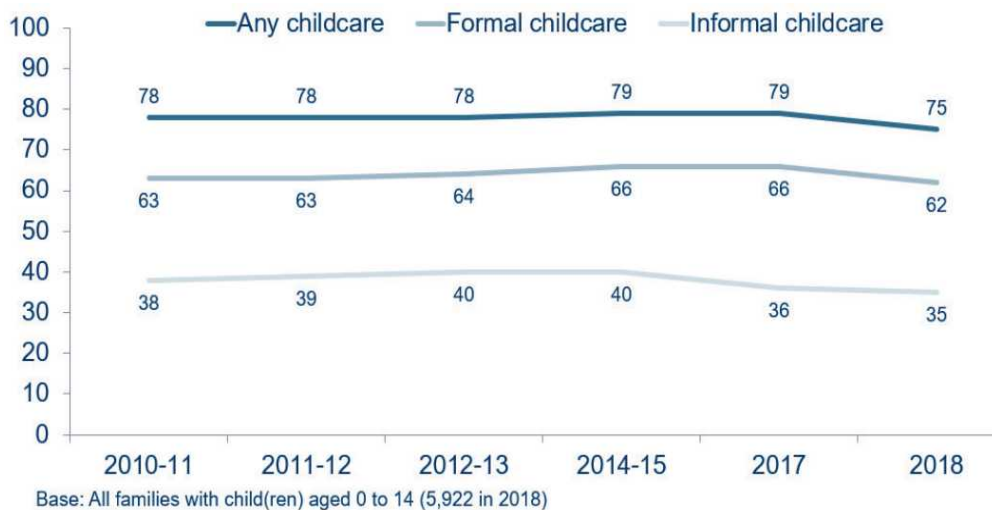
| 구분    | 전일제 보육 <sup>1)</sup> |      |      | 시간제 보육 <sup>2)</sup> |      |      | 방과후 보육 |      |      |
|-------|----------------------|------|------|----------------------|------|------|--------|------|------|
|       | 2005                 | 2003 | 2001 | 2005                 | 2003 | 2001 | 2005   | 2003 | 2001 |
| 민간부문  | 60                   | 78   | 81   | 30                   | 26   | 28   | 36     | 36   | 37   |
| 자발적부문 | 20                   | 9    | 5    | 60                   | 68   | 55   | 39     | 40   | 32   |
| 지방정부  | 9                    | 6    | 6    | 7                    | 4    | 4    | 13     | 10   | 13   |
| 학교    | 4                    | 7    | 1    | 2                    | 2    | 4    | 11     | 14   | 19   |
| 기타    | 6                    | 4    | 9    | 3                    | 4    | 14   | 4      | 4    | 7    |

주: 1) 8세 이하 아동을 위한 하루 4시간 이상 이용가능한 보육시설. 보육사(childminder)는 포함 안됨. 보육사는 전부 민간부문에서 공급.

2) 8세 이하 아동을 위해 최대 하루 4시간까지만 이용가능한 보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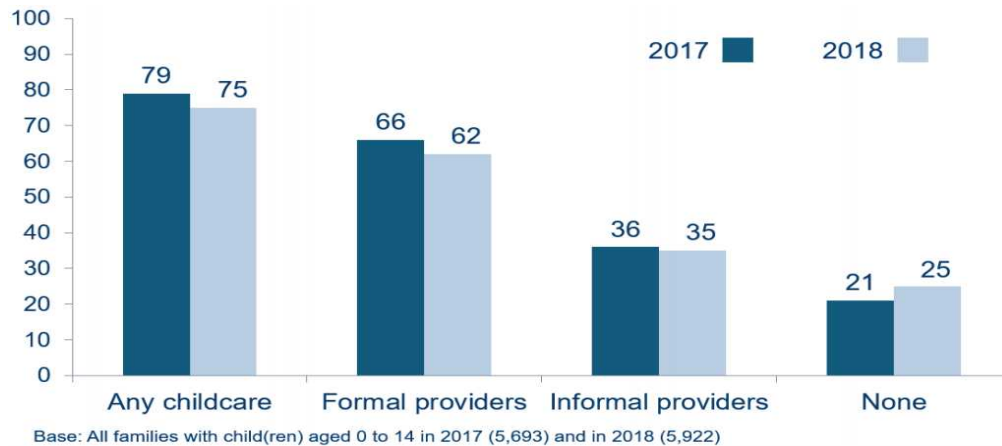
자료: 김송이,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비교」, p. 69 재인용, Clemens & Ullman & Kinnaird(2006: 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동향」 2권 4호, 2007.12.

[그림 II-31] 영국 0세~14세 아동의 학기 중 보육형태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of Parents in England, 2018, p. 4

[그림 II-32] 영국 0세~14세 아동의 학기 중 보육형태(2017~18년도)



자료: Department of Education,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of Parents in England, 2018, p. 5

## 2) 보육교사의 구성 및 급여수준

영국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기준 41%의 보육인력이 평균 7파운드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육교사 평균연령이 36세로 다른 직종의 평균연령이 41세인 것에 비하여 젊은 편이며 27% 이상이 25세 미만의 젊은 여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연구원, 2018).

보육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직업자격증(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2014년 기준 75%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보육교사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6.6파운드로 집계되었으며, 사립시설 교사는 공립시설보다 2.2파운드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데, 이 이유는 사립시설 종사 인력이 대부분 21세 이하의 젊은 보육교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임이 발표되었다(보건사회연구원, 2018).

## 다. 영국의 노인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

### 1) 노인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 현황

1993년 제정된 지역돌봄법(Community Care Act)에 따라 영국은 지방정부에서 국가 보조와 지방세로 운영되는 장기요양서비스 관리체계를 갖게 되었다. 중앙에서는 보

건부가 영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정책 전반과 재정조달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때 재정은 일반조세로 조달된다. 국가보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기타 치료요법서비스 및 장기요양 서비스가 급여방식을 통하여 제공된다.

영국의 장기요양서비스는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재가서비스는 다시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로 분류된다. 전자에는 간호, 방문보건, 치료, 치과 약제 및 보건서비스가 포함되고, 후자에는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 급식배달, 세탁서비스가 포함된다(임완섭, 2012).

시설서비스의 입소기준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개별 소득과 자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고려되며, 지방정부의 주민세(Council tax)가 주요재원이다. 추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제공되는 NHS와 노동연금부의 조세가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세를 바탕으로 한 재원이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형태로 지급이 된다. 영국의 장기요양 제도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시장관리방식으로서 NHS의 예산을 중앙에서 배분한다.

<표 II-74> 영국 장기요양 제도의 주요 특징

| 구분          | 제도의 내용                                                                  |
|-------------|-------------------------------------------------------------------------|
| 재정          | 조세방식<br>주요재원은 NHS, 지방정부, 노동연금부 등                                        |
| 대상          | 노인과 장애인 등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성인                                                |
| 선정기준        | 노인(65세 이상), 장애인(16세 이상)<br>이용자의 자산 기준에 의한 선별주의<br>사례관리자를 비롯한 전문가의 욕구 사정 |
| 본인부담금       | 재산과 소득 상태에 따라서 차등 부담<br>지자체에 따라 그 액수의 차이가 발생함                           |
| 사례관리        | 지자체 소속 공공 사례관리자가 활동<br>서비스의 조정과 연결 및 욕구 맞춤형 서비스 자원의 연결                  |
| 급여          | 현물급여(재가, 시설급여)<br>현금급여<br>연간 급여상한(7만 2천 파운드) 설정 및 시행시기 연장               |
| 서비스 질과 시장관리 | 중앙집권적 형태의 COQ(Care Quality Commission)에서 단일기준 제시                        |

자료: 전용호, 「영국과 독일의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와 그 결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평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권 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pp. 143~169,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p. 440에서 재인용.

## 2) 노인보호 및 장기요양서비스 종류와 재정지출비중

노인보호와 장애인, 성인, 장기요양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의 영국의 성인 사회서비스(Adult social care)는 지방정부의 권한에 놓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6~2017년도에 영국지방정부가 지출한 내역을 주요 서비스분야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43%의 지출이 성인사회서비스 분야(Adult social care)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보육분야(Children's social care)에서 21%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서비스(housing service)에 사용되는 지출의 각각 10배와 5배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 3) 재가 요양서비스 재원조달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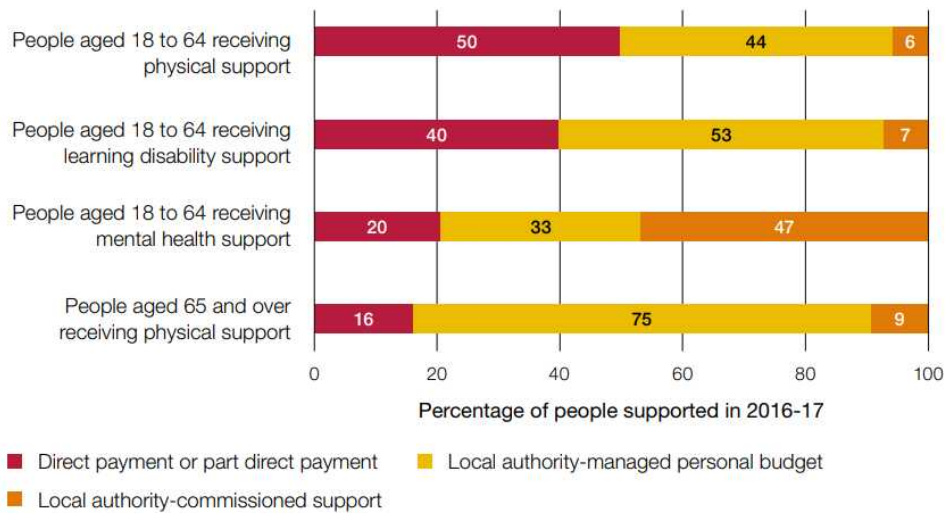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성인의 재원조달 방식은 경우 크게 ‘직접 지불/부분 직접 지불(Direct payment or part direct payment)’, ‘지방정부 관리 개인계정(Local authority-managed personal budget)’, ‘지방정부 연계 지원(Local authority-commissioned support)’으로 나뉜다.

영국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self-directed support’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개인 스스로가 본인의 수요와 서비스를 통해 바라는 점을 자신에게 적합하게 계획하고 자신의 삶에서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개인계정(personal budget)을 두고 각 수혜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을 안분하고, 2014년 반포된 Care Act에 따라 2015년 4월부터는 개인별로 부여된 계정에서 사회서비스 비용이 지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정부 관리계정을 통하여 비노인 성인(18세에서 64세까지)의 물리적 지원에는 44%가, 비노인 장애지원에는 53%, 비노인 정신치료지원은 33%, 노인대상 물리적 지원에는 약 75%가 사용되고 있다([그림 II-33] 참고).

영국 국민 중 (65세 이상 및 치매환자 대상) 약 44%가 자비로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별로는 21.9%에서 61.9%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재가서비스를 받는 영국민들은 2015년 기준 14만 5천명에서 24만 9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림 II-33] 지불방식과 1차적 서비스제공 이유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비율(2016~17년도)



자료: NAO, "Adult social care at a glance", 2018, 재인용 NHS Digital, Audit Social Care Activity and finance Report, England 2016-17

#### 4) 비공식 서비스가 주류인 영국의 보호간호서비스

영국의 대부분의 보호간호서비스는 비공식적인 제공(informal support)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비공식적인 서비스는 전문적인 간호보호 서비스 제공 직군의 사람이나 봉사기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로 무급으로 가족, 친구 또는 이웃주민을 통하여 개인적인 보호간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비공식적인 보호간호는 매년 586억파운드에서 1,000억파운드까지의 가치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무급 보호간호 인력은 2011년 조사결과 540만명으로 2001년 이후 약 1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무급 보호간호자들의 대다수인 345만 명가량은 매주 1시간에서 최대 19시간까지 무급으로 일하였으며, 백만명 이상은 주 50시간 이상을 무급으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영국의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의 비공식 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에 기인한다. 영국노인의 절반 이상이 비공식 요양만을 받고 있으며, 약 3분의 1이 비공식과 공식 돌봄을 중첩하고, 약 10%만이 공식서비스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장애와 거동이 제약되는 사람들에게 한해서만 각각 3분의 1씩 비공식 요양을 받는 경우, 가정 기반의 공식/비공식요양, 기관요양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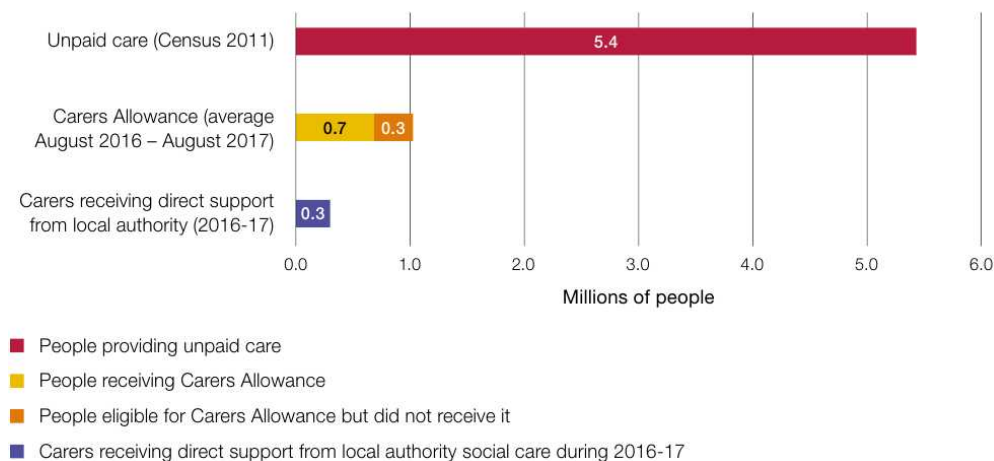
되며, 극히 일부만이 요양원이나 병원 등의 시설요양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보호간호급여는 이들 중 ① 주당 35시간 이상 보호간호 ② 주당 120파운드 미만 소득 ③ 16세 이상 ④ 전일제 교육을 받지 않음 ⑤ 돌봄 대상이 장애급여 조건을 충족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수에게만 지급된다. 이러한 보호간호자들은 2016-2017년 약 68.5만명에 달하였으며, 2017년 가을예산 지출로 전망된 이들에게 지급될 급여는 27억파운드로 추산되었다.

##### 5) 노인 간호비용(인건비)

2016~2017년도 기준으로 영국의 노인간호비용은 자비가 포함될 경우 주당 평균 868파운드가량, 지자체 지원일 경우 606파운드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간호비용은 전자의 경우 주당 611파운드, 후자의 경우는 565파운드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가구당 가처분소득 중간값이 27,310파운드이며, 49주 기준 주당 영국의 현금급여와 소득세, 지방세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홀별이 가구 중간 정도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I-34] 영국의 비공식 보호간호자들에 대한 보호간호급여 및 지방정부지원



Source: National Audit Office analysis of 2011 Census data;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Benefits statistics, Number of Carers Allowance (Cases) in 2016 and 2017*; NHS Digital, *Adult Social Care Activity and Finance Report, England 2016-17*

자료: NAO, "Adult social care at a glance", 2018, 재인용 NHS Digital, *Audit Social Care Activity and finance Report, England 2016~17*

### 6) 성인 사회적돌봄·장기요양 서비스 부문별 추정인력

영국에서 성인 사회적돌봄·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인력은 영리 및 비영리 부문에 고용되어 종사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분 종사자의 인력은 9%에 불과하다.

<표 II-75> 성인 사회적돌봄 분야 종사자의 부문별 추정인력

(단위: 명, %)

| 구분          | 일자리 수     | 비율  |
|-------------|-----------|-----|
| 공공부분        | 141,000   | 9   |
| 영리 및 비영리 부문 | 1,160,000 | 76  |
| 현금급여 관련 일자리 | 145,000   | 9   |
| NHS         | 80,000    | 5   |
| 합계          | 1,526,000 | 100 |

자료: Skills for care,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영국』, p. 450에서 재인용.

## 3. 네덜란드

### 가. 네덜란드의 사회서비스 개관

#### 1) 역사

네덜란드는 강력한 합의주의 전통을 지님과 동시에 개방경제 정도가 높은 국가로서, 이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사회는 사회조합주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복지체제 역시 국민적 합의에 따라 변동이 많아, 경제 호황기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적극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경기 침체기(1982년)에는 바세나르(Wassenaar)라고 불리는 협약을 통하여 노사 간의 원만한 협의와 복지확대 증가속도의 조절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재정건전성의 위협을 받아 각종 수당 지급수준을 낮추고, 수급 조건을 강화하는 등 선별적 성격의 복지가 확대되었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이전까지 유럽국가들 중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수준이어서 근로전체의 복지급여 수급권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주 32시간 기준의 맞벌이 모델이 확산되면서 오히려 시간제 근무의 증가로 급여

수준이 감소하고, 급여와 연동되었던 실업급여, 장애급여 등의 각종 수급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GDP 대비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 2) 최근 동향 및 서비스 질 관리

네덜란드의 보육, 장기요양 서비스 질은 법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 「질 관리법(Kwaliteits wet)」에서는 네덜란드 국민의 건강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이 감독, 조정할 역할을 부여하였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2016년, 본 법은 「질 관리 및 건강돌봄 분쟁에 관한 법률(Wet kwaliteit, klachten en geschillen zorg)」로 대체되었으며 그에 따라 품질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마련되어 그에 따라 연차 보고서를 발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분명한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서비스가 품질개선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며, 서비스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수집되고 점검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사기관에 역할을 부여하였다. 이때 ‘quality mark’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감사결과가 성적에 반영되고, 서비스 수요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여 결국 서비스 공급자가 스스로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 3) 복지행정 전달체계

보육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하여 보육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중앙에서는 법령을 제정하고, 정책의 큰 틀을 개발하는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 수요와 추세를 파악하여 지자체가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1년 이전에는 보건복지체육부(Ministerie van Volksgezondheid)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이후, 고용과 양육의 양립정책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회고용부(Ministe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로 해당 업무가 이관되었다.

## 가. 네덜란드의 보육서비스

## 1) 보육서비스 현황

전통적인 가부장 중심의 네덜란드 역사는 최근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1년 기준 20세부터 64세까지의 여성 고용률이 71.4%(남성 82.6%)이며, 6세 미만 아동을 둔 여성은 고용률은 그보다 높은 76.1%(남성 94.1%)로 사회 전반적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네덜란드의 육아정책은 휴가와 세제혜택, 급여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여성의 산전후 휴가는 16주이며 100%소득이 보전, 주당 근로시간 26배 기간 육아휴직 이용, 세금감면) 2000년대까지는 주로 가족이나 친척이 돌봐주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러나 2010년 기준 이러한 비중은 30%대로 감소되었으며,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비영리시설을 중심으로 점차 시설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은 정부로부터 70%의 지원금을 받는다.

주당 평균 보육시간은 스웨덴의 절반 수준으로(2014년 Eurostat 보고기준 스웨덴 34시간, 네덜란드 18시간, EU평균 25.2시간), 네덜란드 부모들은 대체로 부분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II-76&gt; 네덜란드 보육서비스 유형

| 유형1             | 대상1      | 대상2    | 유형2                                                    | 보육인력                              | 비고                                                                                    |
|-----------------|----------|--------|--------------------------------------------------------|-----------------------------------|---------------------------------------------------------------------------------------|
| 일반<br>지원<br>서비스 | 모든<br>아동 | 6주~4세  | 보육시설<br>(kinderopvang-<br>Kinderdagverblijf)           | 보육교사                              | - 민간시설<br>- 일하는 부모가 세제혜택을 받거나<br>고용주가 지불<br>- 국가규정을 따라 GGD의 감사를<br>받음<br>- 비용은 시간당 지불 |
|                 |          | 2.5~3세 | 놀이방<br>(Voor- en<br>Vroegschoolse<br>educatie:<br>vve) | 보육교사                              | - 조기교육 강조<br>- 주로 독립적 사립재단<br>- 약 5만명가량의 4년제 대학 학사<br>출신 교사와 전문대출신 보조교<br>사로 구성       |
|                 |          | 2~4세   | 놀이시설<br>(Peuterspeel-<br>zaal)                         | 지역복지기관<br>자원봉사자,<br>놀이교사,<br>부모활용 | 취약계층 대상                                                                               |

| 유형1             | 대상1      | 대상2    | 유형2                                     | 보육인력   | 비고                                                                                  |
|-----------------|----------|--------|-----------------------------------------|--------|-------------------------------------------------------------------------------------|
| 일반<br>지원<br>서비스 | 모든<br>아동 | 4~12세  | 방과후돌봄<br>(Buitenscho<br>olseopvang)     | 교사     | - 의무교육 5세부터<br>- 4~5세 100% 무료지원 유치원교육<br>- 모든 학교에 재정 2/3 공적지원                       |
|                 |          | 6주~12세 | 가정보육<br>(gastoudero<br>pvang)           | 가정보육교사 | - 비용은 시간당 6유로<br>- 적합한 학위와 행동연구인증을 취득한 자로 국립어린이 놀이그룹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에이전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가족<br>개입<br>서비스 | 저소득층아동   |        | 일반지원서비스에 더하여 아동발달 프로그램, 부모지원 프로그램 추가 제공 |        |                                                                                     |
| 특별<br>지원<br>서비스 | 장애아동     |        | 특수교육, 심리치료, 법적 보호조치 서비스 등               |        |                                                                                     |

자료: [www.rijksoverheid.nl](http://www.rijksoverheid.nl), 강은진,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연구소, 2015; 보건사회연구원,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018. 종합 참조, 저자 정리

## 2) 보육서비스 비용

정부와 고용주, 부모가 3분의 1씩 비용을 부담한다. 이때 부모는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을 세금환급을 통해 지원받는다(2018년 이후 세금환급 부문이 축소되고 보조금 지급 식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서비스 제공자들은 임의로 가격을 정할 수 있지만 정부의 상한기준을 수용해야 한다(2012년 기준 시간당 6~7유로).

초등학교에 포함된 유치원은 100% 무상교육으로 GDP의 0.4%가 투입되었으며, 4세 미만 보육에는 0.5%가 투입되었다(2011년 기준). 네덜란드의 초등학교의 3분의 2가 사립이지만 모두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병설로 포함되어 있는 유치원 또한 100% 무상교육이 공적지원에 해당한다.

## 3) 보육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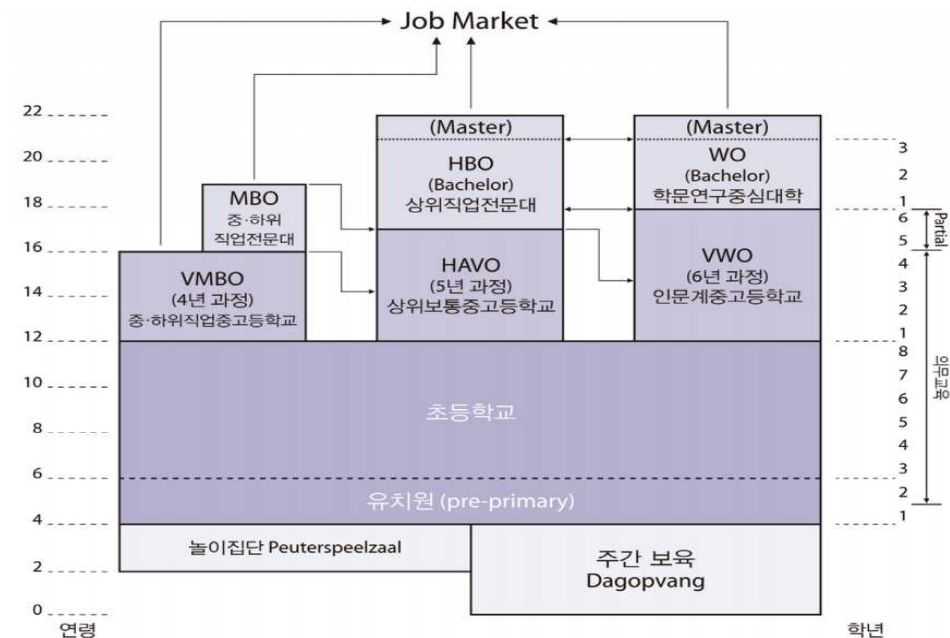
네덜란드 보육교사는 크게 돌봄만을 담당하는 돌봄교사(Child Carer)와 초등학교에 소속된 유치원교사(ECEC teaching staff)로 구분된다. 돌봄교사의 최소 자격은 상위중등교육자로서 우리나라 전문대 졸업자에 해당한다([그림 II-35]의 MBO). 그러나 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 있는 4~5세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들은 학사 졸업장이 부여되는 HBO 졸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lt;표 II-77&gt; 네덜란드 보육교사 최소자격 및 양성과정

| 분류    | 최소자격  | 양성과정                                                                                                                  | 국가공인 조직                       |
|-------|-------|-----------------------------------------------------------------------------------------------------------------------|-------------------------------|
| 돌봄교사  | 전문대졸업 | VMBO(일반교육, 건강, 돌봄 교육) 4년<br>↓<br>MBO(중하위 직업전문대)인턴십포함 3~4년<br>*최근 보육교사 양성 직업학교에서 대체                                    | 없음<br>(모두 시간제 계약직)            |
| 유치원교사 | 학사졸업  | 1) 일반코스 HAVO(일반교육) 5년<br>↓<br>HBO진학(상위직업전문대)<br>2) VWO(인문계고등학교) 6년<br>↓<br>HBO진학<br>3) VMBO<br>↓<br>MBO<br>↓<br>HBO진학 | 있음<br>(소속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조건 상이) |

자료: OECD(2012), *Starting strong*, p. 149, 강은진,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연구소, 2015. 재인용한 것을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함.

[그림 II-35] 네덜란드 교육체계



주: 초등학교 과정은 월반이 가능

자료: ECD Diagram of education system, Education GPS. Unesco IBE(2012). *World Data on Education: Netherlands*. 7th edition, 2010/2011. 강은진,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연구소, 2015. 재인용.

돌봄교사는 국가가 공인한 조직이 없기 때문에 모두 시간제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반면에, 유치원교사는 해당 소속 학교가 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계약조건과 고용 형태가 다르다.

#### 나.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서비스

##### 1) 장기요양서비스 현황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서비스의 구조는 크게 특별의료비보장법(Algemene Wet Bijzondere Ziektekosten: AWBZ)과 사회복지법(Wet Maatschappelijke Wmo)으로 양분되며, 전자의 경우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네덜란드 국민을 대상으로 ‘간호, 신체수발, 재산관리, 일상지원, 재활,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후자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사도움과 이동지원으로서 대부분의 네덜란드 가정은 가정 내에서 비공식 돌봄을 스스로 책임지는 형태이지만 그 부담이 과도하여 도움이 요구될 경우에는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장기요양제도의 전반적인 관리행정 역할은 중앙정부인 보건복지체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이 직접 자신의 복지계정을 통하여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지자체에서 대신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때 서비스 수요자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현금 또는 현물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급여 수혜금은 현물의 25% 삭감된 금액으로 받게 된다.

<표 II-78> 네덜란드 유형 및 부담자별 건강비용지출(201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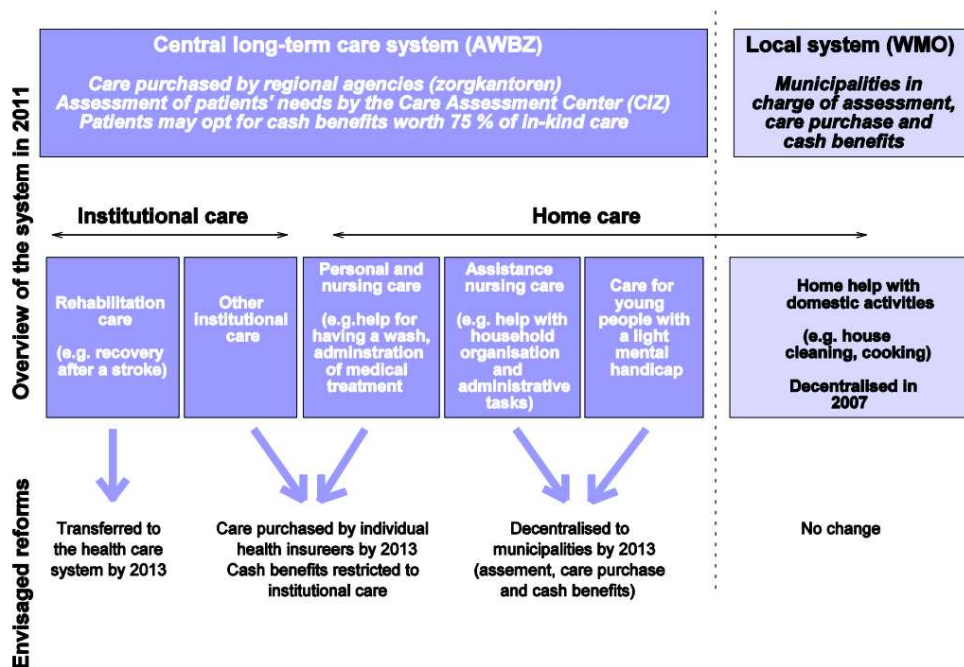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 1998 | 2006 | 2014 |
|-------|------|------|------|
| 지출유형  |      |      |      |
| 장기요양  | 33.0 | 33.4 | 34.2 |
| 병원돌봄  | 29.8 | 29.9 | 32.5 |
| 약물치료  | 10.1 | 9.2  | 6.5  |
| 전문서비스 | 17.8 | 18.3 | 17.8 |
| 기타    | 9.3  | 9.1  | 9.0  |
| 부담자   |      |      |      |
| 사회보험  | 69.1 | 80.1 | 81.6 |
| 민간보험  | 14.5 | 4.5  | 4.3  |

| 구분        | 1998 | 2006 | 2014  |
|-----------|------|------|-------|
| 정부        | 6.3  | 7.2  | 7.8   |
| 자부담       | 7.5  | 5.6  | 4.6   |
| 기타        | 2.5  | 2.3  | 1.7   |
| 전체 건강비용   |      |      |       |
| 단위: 십억 달러 | 62.1 | 90.0 | 106.2 |

자료: Pieterbakk, Oweno'Donnell, Eddy Vandoorslaer, "Spending on Health Care in the Netherlands: Not Going So Dutch", FISCAL STUDIES, vol. 37, no. 3-4, p. 602. 참고

[그림 II-36] 네덜란드 장기요양서비스 운영방식



자료: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재인용.

네덜란드 정부는 2013년 이후 장기요양서비스 운영방식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기관에서 운영하던 재활치료는 경미한 환자의 경우는 현금급여 지급을 감축하고 기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던 돌봄사업, 재가형태로 이루어지던 간호돌봄 등의 서비스는 개인이 가입한 건강보험사로부터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가사 및 행정관련 재가 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분권적으로 구매와 평가, 현금급여지급을 통한 수혜자 직접



구매로 전환되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지원액은 2011년 기준 시간당 12.6유로와 한 달에 1,800유로까지로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다. 이때 네덜란드에서는 환자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수입 기준으로 지원액을 책정하여 지급한다.

네덜란드의 장기요양서비스는 특별의료비보장법(AWBZ)에 의거하여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2007년 이후 재가서비스만이 유일하게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업무로 위임되었다. 지역별로 있는 32개의 돌봄구매기관(zorgkantoren)이 공공자금으로 돌봄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이 기관들은 각 지역의 지배적인 건강보험사업자의 자회사 격으로 행정비용만 발생할 뿐 자체 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 공공자금(AFBZ)에서 돌봄 제공 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비용이 지급되고 구매기관은 계약만 진행해주는 형태이다. 따라서 구매기관은 돌봄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재정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관돌봄은 비영리기관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가서비스 시장은 대부분이 사기업으로 모든 시장에 개방되어 있다.

환자 개개인이 어떠한 서비스를 받아야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돌봄평가센터(Care Assessment Centre; CIZ)라고 불리는 본 기관은 환자가 기관돌봄을 받아야 하는지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그 수준은 얼마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번 평가가 되면 환자는 서비스 제공을 받을지와 개인 계정으로 현금급여(현물서비스의 75%)를 받을지를 결정한다.

## 4. 국가별 비교

### 가. 외국사례를 통한 시사점 종합

외국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각 나라에서 20세기 후반부터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전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예산적인 규모의 증가가 포착되었다. 특히 영국은 20대 연령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35~39세의 출산율이 매우 큰 상승폭을 보였다.

둘째, 1995년 이후 모든 조사대상 국가의 정부지출 대비 사회지출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한국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한국은 공공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기준 네덜란드 > 영국 ≒ 한국 > 스웨덴 순으로 민간지출 비중이

높았다. 네덜란드는 시장중심의 사회적 지출이, 스웨덴의 공공중심의 사회적 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그림 Ⅱ-4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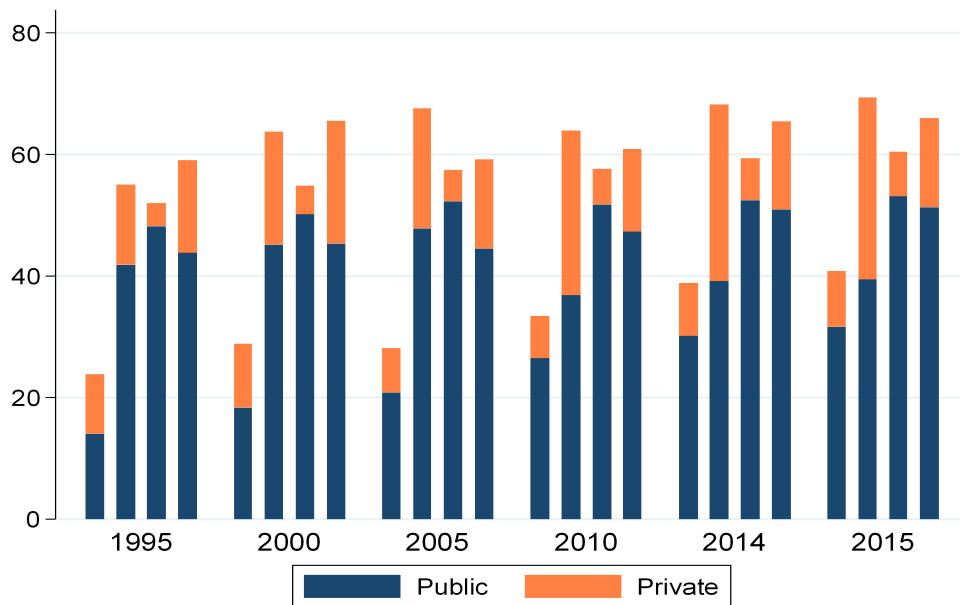
셋째, 조사대상 국가인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모두 사회서비스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관리운영의 권한을 가지며 상당히 독자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는 지방정부가 민간시장의 구매자로서 허가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저소득층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받는 비공식적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용지불의 경우는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서비스 수혜자 개인 계정으로부터 충당되고 있다.

넷째, 2000년대 이후 모든 조사대상 국가들이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가 아동의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각종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유인정책과 보육정책을 연계한 복지개혁, 세제개혁을 추진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사대상 모든 국가들이 비공식적 돌봄(장기요양)에 대한 수발자 수당(payments for informal care)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스웨덴은 Care Leave(치명적 질병을 가진 친척을 돌보기 위해 최대 60일까지 휴가를 낼 수 있는 법적권리를 부여하고, 이때 정상 소득의 80%를 지불한다. 영국은 주 35시간 간호하는 저소득자를 위하여 Carer's Allowance를 제공한다. 또한 네덜란드는 가족, 친척이나 친구를 지방정부의 동의하에 개인계정으로 비공식 수발자를 공식적으로 고용하여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본 보고서 조사대상국 이외의 국가의 호주와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 및 장애인 요양에서 가족의 희생과 역할이 크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림 II-37] 정부지출(total government expenditure) 대비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 금액의 비중  
(국가별 비교)

(단위: %)



주: 왼쪽 그래프부터 순서대로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자료: OECD자료,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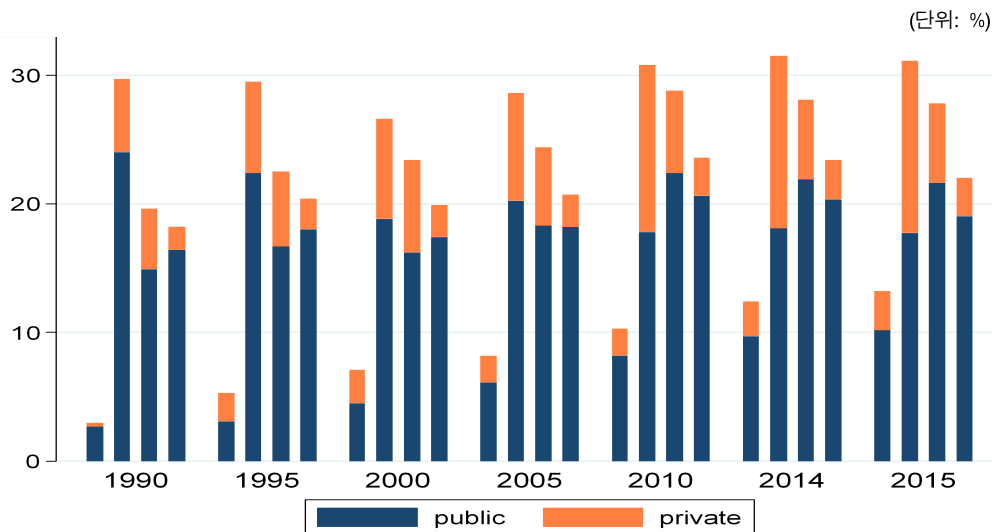
(단위: %)

| 국가   | sector  | 1995 | 2000 | 2005 | 2010 | 2014 | 2015 |
|------|---------|------|------|------|------|------|------|
| 한국   | public  | 14.0 | 18.3 | 20.8 | 26.5 | 30.2 | 31.6 |
|      | private | 9.8  | 10.5 | 7.3  | 6.9  | 8.6  | 9.2  |
| 네덜란드 | public  | 41.8 | 45.1 | 47.8 | 36.9 | 39.2 | 39.5 |
|      | private | 13.2 | 18.6 | 19.8 | 27.0 | 29.0 | 29.9 |
| 스웨덴  | public  | 48.1 | 50.2 | 52.2 | 51.7 | 52.4 | 53.1 |
|      | private | 3.9  | 4.6  | 5.2  | 5.9  | 7.0  | 7.3  |
| 영국   | public  | 43.8 | 45.3 | 44.5 | 47.3 | 50.9 | 51.2 |
|      | private | 15.2 | 20.2 | 14.7 | 13.6 | 14.5 | 14.8 |

### 나. 국가별 사회지출 비용 및 거시변수 대비 비중

한국의 GDP는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7년 기준 1조 5,730만달러로 조사대상국 중 두 번째로 GDP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영국 > 한국 > 네덜란드 > 스웨덴 순으로 GDP가 높으며, 이러한 GDP를 고려하여 사회적 지출액의 비중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II-38] 각국별 GDP 대비 사회적 지출액의 비중



주: 왼쪽 그래프부터 순서대로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자료: OECD자료, 저자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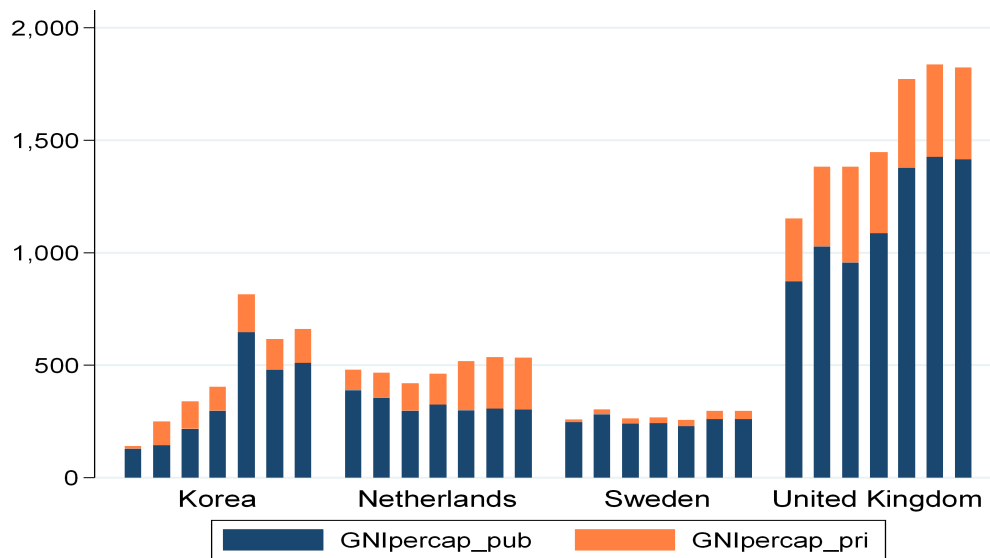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 연도   | 한국        | 네덜란드    | 스웨덴     | 영국        |
|------|-----------|---------|---------|-----------|
| 1980 | 35,883    | 194,677 | 65,177  | 326,968   |
| 1985 | 79,309    | 239,722 | 106,487 | 508,956   |
| 1990 | 179,738   | 290,841 | 168,076 | 817,108   |
| 1995 | 389,934   | 364,382 | 207,192 | 1,127,063 |
| 2000 | 577,441   | 501,828 | 261,839 | 1,438,988 |
| 2005 | 836,179   | 611,082 | 319,809 | 1,841,399 |
| 2010 | 1,150,280 | 707,293 | 387,199 | 2,087,712 |
| 2014 | 1,350,981 | 742,569 | 433,052 | 2,423,475 |
| 2015 | 1,421,931 | 765,472 | 461,985 | 2,498,668 |
| 2016 | 1,492,533 | 786,958 | 484,528 | 2,596,280 |
| 2017 | 1,573,090 | 821,148 | 506,463 |           |

한국의 사회적 지출액은 공공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높은 GDP 증가 속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는 더디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5년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30%에서, 영국 또한 20% 근방에서 GDP 대비 사회적 지출액의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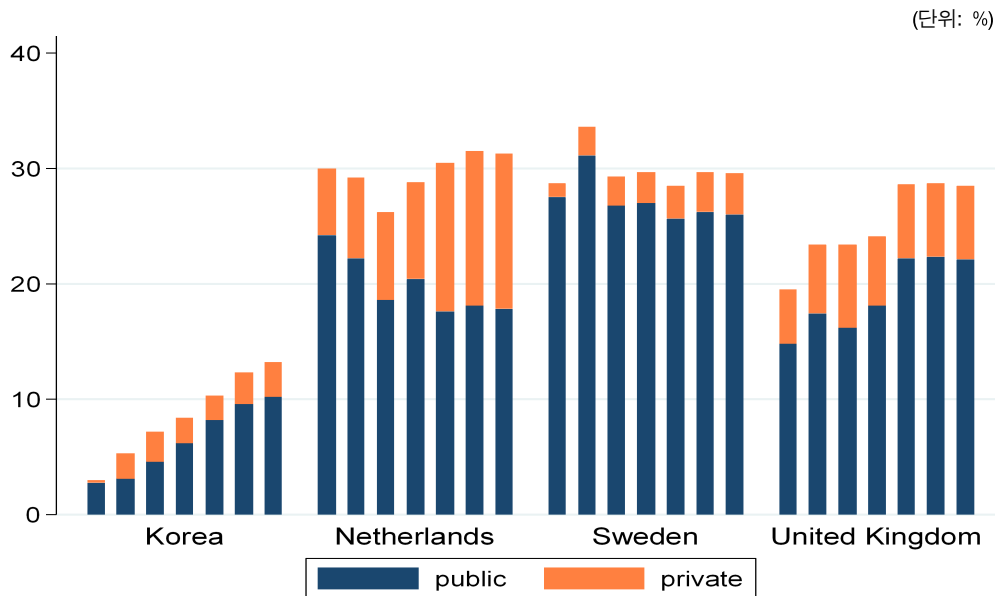
GNI를 기준으로 한 사회적지출 비중 자료는 최근 자료일수록 유의미하며, 영국의 경우 2015년 기준 GDP 대비로 계산하였을 경우 20% 근방이었던 수치가 30%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보장 정도가 더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네덜란드는 2000년대에 들어 민간에서 기여하는 사회보장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지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스웨덴 영국과 공공 : 민간의 지출비중은 유사하나 절대적인 액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림 II-39] 1인당 GNI 대비 사회적 지출 국가별 비교



주: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2015년도 순이며, 각 수치는 각 국가별 사회적 지출액을 1인당 GNI(단위 조정을 위하여 GNI를 1백만명으로 나눔) 로 나눈 값  
자료: OECD 자료, 저자 가공.

[그림 II-40] GNI 대비 사회적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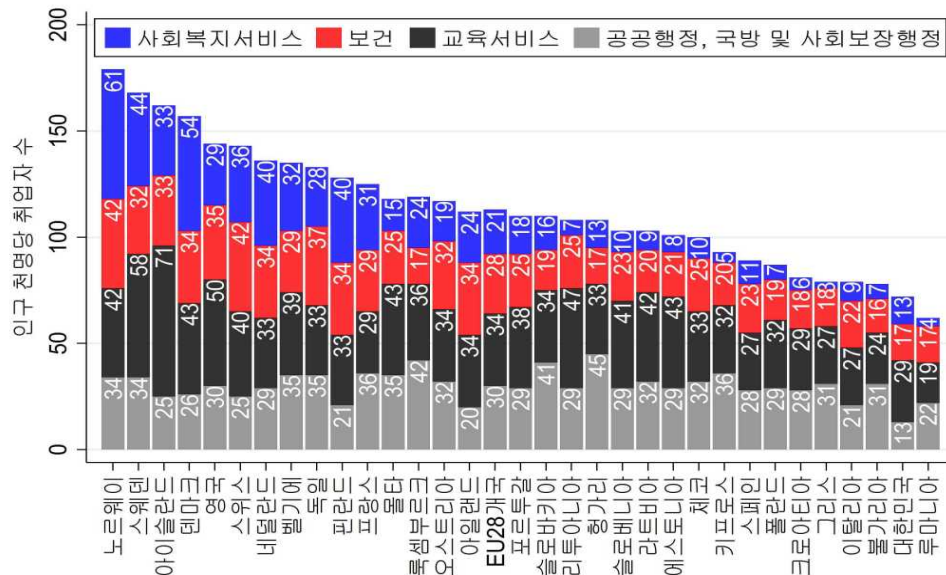
자료: OECD자료, 저자 가공.

한 국가의 사회적지출이 인구 밀집도, 즉 규모의 경제를 따른다고 가정할 때에는 1인당 GNI 대비 사회적지출이 얼마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국민 1인의 경제수준 대비 국가에서 총지출되는 사회비용을 [그림 II-39]와 같이 나타나며, 인구 밀집 정도가 낮은 스웨덴의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4개국 중 가장 낮은 지출비중을 보였다. 한국과 영국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네덜란드는 1990년대부터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해오고 있어, 2010년대에 들어서 최근에는 한국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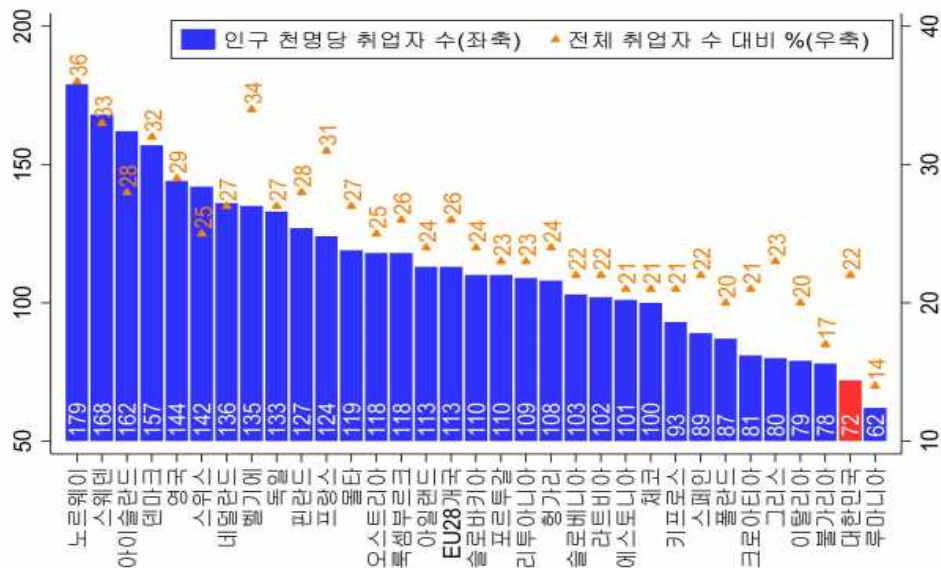
#### 다. 국가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분포

국가별 공공 및 사회서비스 고용의 부문별 분포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노르딕 국가들의 인구 천 명당 공공 및 사회서비스 취업자 수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르웨이 179명, 스웨덴 168명, 덴마크 157명, 핀란드 128명).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만 한정하여 보아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국민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모두 상대적으로 EU 28개국 평균 취업자 수인 21명을 상회하였다.

[그림 II-41] 국가별 공공·사회서비스 고용의 부문별 분포



[그림 II-42] 국가별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1000명당 취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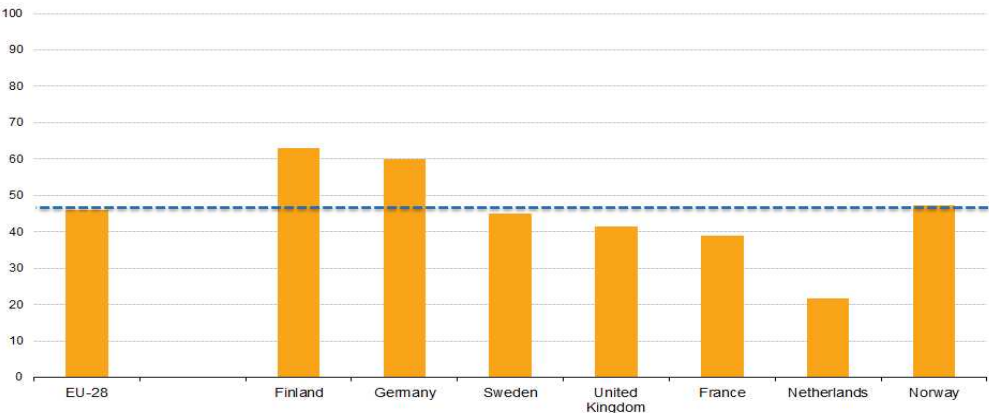
자료: 조영희, 『유럽의 공공·사회서비스 고용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p. 5~6.

라. 국가별 아동보육 주요특징

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와 아동급여 수준이 높은 핀란드나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구유럽에서 부모들이 양육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네덜란드는 아이를 기관에 맡길 경우 정부와 기업, 부모가 3분의 1씩 분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아동 육아 전담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II-43]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3세 미만 아동의 비중

(단위: %)



자료: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79>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는 3세 미만 아동의 비중

(단위: %)

| 국가             | 아동비중 |
|----------------|------|
| EU-28          | 46.1 |
| Finland        | 63.0 |
| Germany        | 59.9 |
| Sweden         | 45.1 |
| United Kingdom | 41.4 |
| France         | 38.9 |
| Netherlands    | 21.6 |
| Norway         | 47.3 |

자료: EU 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80>과 <표II-81>은 정규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다른 형태의 보육을 하는 가정에 대한 각국의 자료이다. <표 II-79>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여 네덜란드는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짧은 시간 정규보육시설 및 다른 형태 보육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패턴은 취학 전 아동과 취학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또한 네덜란드는 조기교육이 특징적인 사회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3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스웨덴은 국가에서 공교육을 지원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 30시간 이상 정규보육시설에 맡겨지는 아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정규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중이 비정규보육시설 이용 아동 비중에 비하여 현격하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국은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가정보육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정규보육시설이나 다른 형태의 시설에 주30시간 미만의 짧은 시간 맡기는 가정이 3세 미만 아동과 3세 이상~취학 전 아동 비중에서 주30시간 이상 맡기는 비중에 비하여 현격히 높게 나타나지만 취학 이후에는 정규보육시설에 주30시간 이상 맡기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국의 사회문화, 역사적 특성과 정책적 방향에 따라 정규보육시설과 비정규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보육관련 인력구조가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표 II-80> 정규보육시설이용 아동조사(2017년)

(단위: 각 나이별 인구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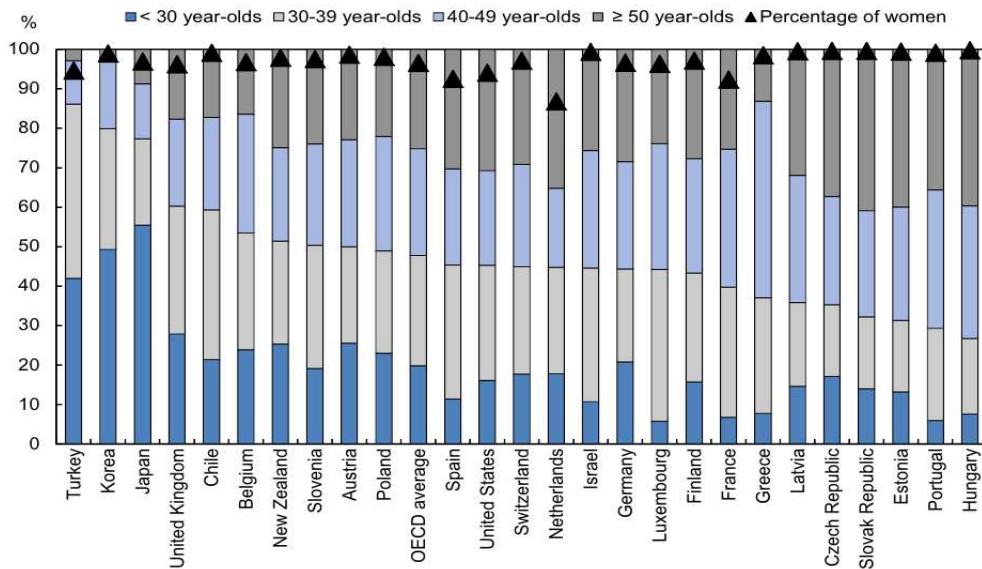
|                | 3세 미만 아동      |             |                   | 3세 이상~취학 전 아동 |             |                   | 취학아동~12세 이하   |             |                   |
|----------------|---------------|-------------|-------------------|---------------|-------------|-------------------|---------------|-------------|-------------------|
|                | 주1시간<br>~29시간 | 주30시간<br>이상 | 합계<br>(1시간<br>이상) | 주1시간<br>~29시간 | 주30시간<br>이상 | 합계<br>(1시간<br>이상) | 주1시간<br>~29시간 | 주30시간<br>이상 | 합계<br>(1시간<br>이상) |
| EU-28          | 17.0          | 17.2        | 34.2              | 34.9          | 49.9        | 84.8              | 33.2          | 62.7        | 95.9              |
| Denmark        | 5.7           | 66.0        | 71.7              | 17.5          | 76.9        | 94.4              | 0.7           | 98.7        | 99.4              |
| Netherlands    | 56.1          | 5.5         | 61.6              | 74.8          | 20.4        | 95.2              | 70.0          | 29.6        | 99.6              |
| Sweden         | 15.6          | 37.1        | 52.7              | 19.9          | 77.6        | 97.5              | 50.6          | 49.4        | 100.0             |
| France         | 19.8          | 30.7        | 50.5              | 38.8          | 56.3        | 95.1              | 33.1          | 66.7        | 99.8              |
| Finland        | 10.1          | 23.2        | 33.3              | 24.9          | 61.0        | 85.9              | 83.2          | 16.8        | 100.0             |
| United Kingdom | 28.0          | 5.2         | 33.2              | 44.5          | 22.5        | 67.0              | 7.7           | 84.6        | 92.3              |
| Germany        | 8.3           | 22.0        | 30.3              | 31.2          | 56.4        | 87.6              | 38.5          | 50.5        | 89.0              |

&lt;표 II-81&gt; 정규시설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육아동조사(2017년)

(단위: 각 나이별 인구 대비 %)

|                | 3세 미만 아동      |             |                   | 3세 이상~취학전 아동  |             |                   | 취학아동~12세 이하   |             |                   |
|----------------|---------------|-------------|-------------------|---------------|-------------|-------------------|---------------|-------------|-------------------|
|                | 주1시간<br>~29시간 | 주30시간<br>이상 | 합계<br>(1시간<br>이상) | 주1시간<br>~29시간 | 주30시간<br>이상 | 합계<br>(1시간<br>이상) | 주1시간<br>~29시간 | 주30시간<br>이상 | 합계<br>(1시간<br>이상) |
| EU-28          | 21.9          | 7.8         | 29.7              | 23.7          | 4.0         | 27.7              | 23.6          | 1.5         | 25.1              |
| Denmark        | 2.1           | 0.9         | 3.0               | 1.4           | 0.0         | 1.4               | 2.2           | 0.0         | 2.2               |
| Netherlands    | 58.3          | 0.5         | 58.8              | 53.3          | 0.8         | 54.1              | 38.9          | 0.2         | 39.1              |
| Sweden         | 0.6           | 1.6         | 2.2               | 0.5           | 0.3         | 0.8               | 2.2           | 0.0         | 2.2               |
| France         | 19.2          | 6.7         | 25.9              | 19.1          | 2.0         | 21.1              | 17.7          | 1.1         | 18.8              |
| Finland        | 1.0           | 2.8         | 3.8               | 0.9           | 1.2         | 2.1               | 0.0           | 0.0         | 0.0               |
| United Kingdom | 32.5          | 7.4         | 39.9              | 37.8          | 5.9         | 43.7              | 39.5          | 2.6         | 42.1              |
| Germany        | 9.1           | 3.8         | 12.9              | 12.5          | 1.9         | 14.4              | 11.1          | 0.1         | 1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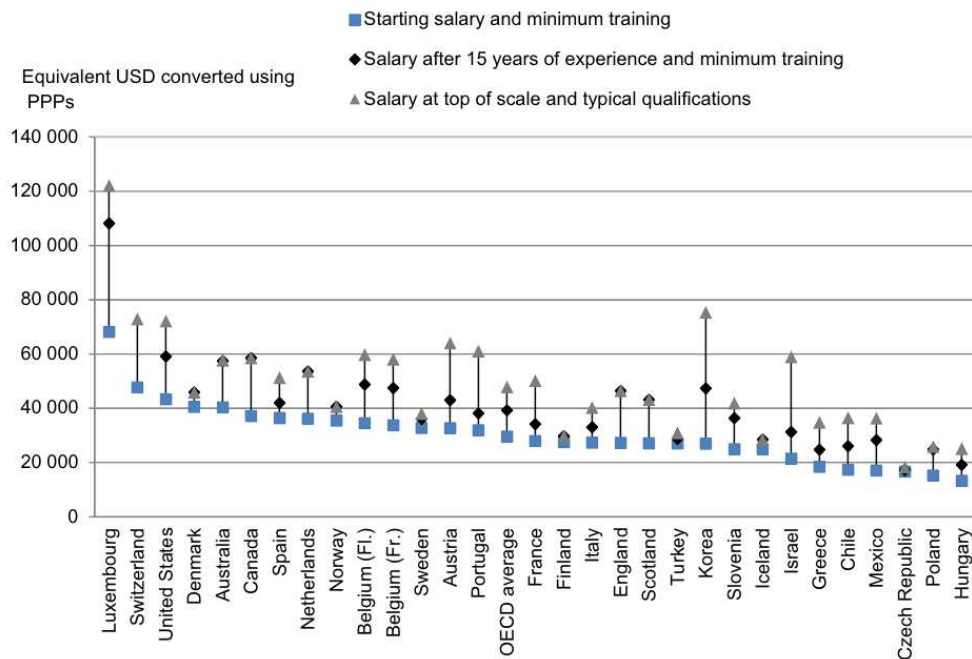
[그림 II-44] OECD 국가 취학 전 아동 보육교사 연령 및 성별 분포(2014년)



자료: OECD education data base(2017), OECD(2017), "Starting Strong 2017: Key OECD Indicato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왼쪽에서 두 번째 막대그래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보육교사의 여성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30세 미만의 교사 비중도 높다. 유일하게 한국과 일본 터키만이 30세 미만 교사의 비중이 40%를 넘었으며, 20-30대를 합친 비중은 우리나라가 80% 가까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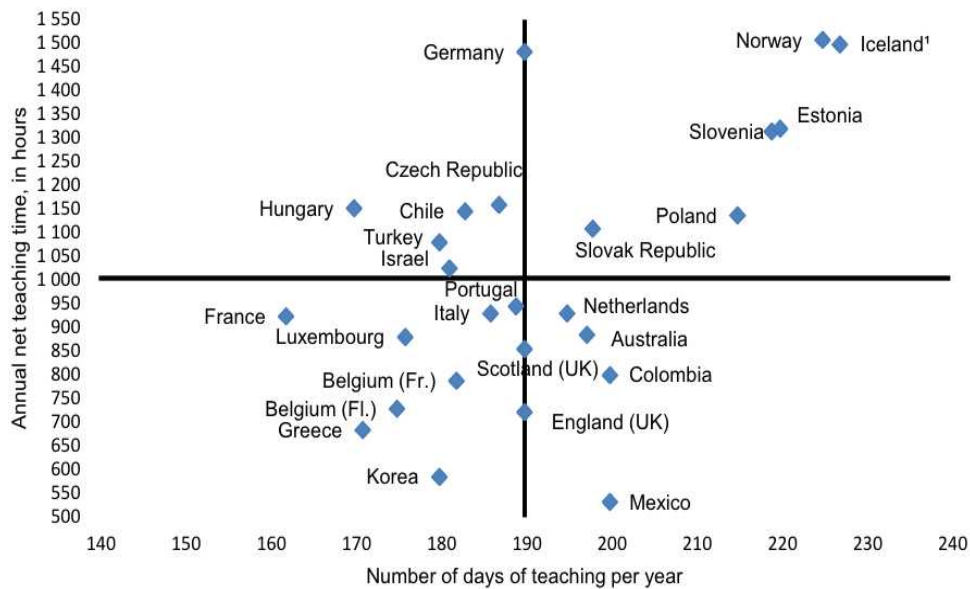
[그림 II-45] OECD 국가 취학 전 아동 보육교사 연봉(2014년)



자료: OECD(2016) Education at a Glance, OECD(2017), "Starting Strong 2017: Key OECD Indicato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다. 초봉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육교사의 연령분포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20~30대 교사들은 은퇴를 하고, 경쟁력 있는 소수의 경력자들이 시장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같은 직업군 내에서 고액연봉자와의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그림 II-46] 취학 전 아동 1년간 교육일 및 교육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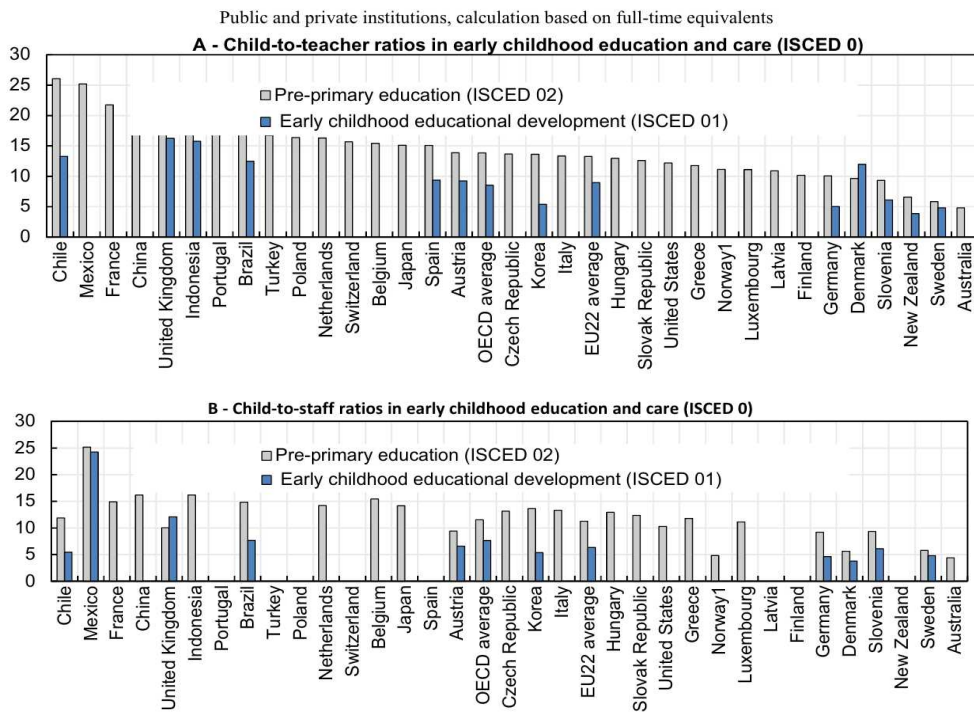


자료: OECD(2016) Education at a Glance, OECD(2017), "Starting Strong 2017: Key OECD Indicato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서 재인용.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하루 6.5시간 교육을 하는 반면(평균 1년당 1,005시간, 약 40주 혹은 190일의 교육일) 우리나라는 연간 교육시간과 교육일이 모두 적은 것으로(멕시코, 영국과 함께 하루 4시간 미만인 국가에 포함됨) 나타났다.

교육시간과 교육일수가 기타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업무강도가 높다는 여론과 보도가 많은 것은 아래의 그림에서 설명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 교사의 경우에는 OECD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조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수가 약 12~13명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많다. 이는 짧은 돌봄 시간과 많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높은 시간제 근무로 이어지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림 II-47] 보육/유치원교사 및 보조교사 대비 아동 수(2014년)



자료: OECD(2016) Education at a Glance, OECD(2017), "Starting Strong 2017: Key OECD Indicator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서 재인용.

## 마. 국가별 장기요양 주요 특징

&lt;표 II-82&gt; 조사대상국 장기요양서비스 종사자(비공식/공식) 제공 혜택

|      | 가족<br>돌봄<br>급여 | 돌봄<br>환자<br>급여 | 세제<br>혜택 | 추가<br>급여 | 유급<br>휴가 | 무급<br>휴가 | 시간<br>유동적<br>돌봄 | 훈련/<br>교육 | 임시<br>돌봄<br>위탁 | 상담 |
|------|----------------|----------------|----------|----------|----------|----------|-----------------|-----------|----------------|----|
| 한국   | N              | N              | N        | N        | N        | N        | N**             | Y         | N              | N  |
| 네덜란드 | Y              | Y              | N        | Y        | Y        | Y        | Y               | Y         | Y              | Y  |
| 스웨덴  | Y              | Y              | N        | Y        | Y        | N        | N               | Y         | Y              | Y  |
| 영국   | Y              | Y              | N        | Y        | N        | N*       | Y               | Y         | Y              | Y  |

주: N\* 급한 사유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가능

N\*\* 국가 전체적인 정책이 아니나, 사회전반적인 동의는 있음

자료: OECD,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2011.

우리나라는 장기요양돌봄에 대한 가족적 책임의식, 효사상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급여와 세제혜택이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조사대상 유럽국가들의 경우에는 가족돌봄이라는 비공식적 형태(비기관, 비시설)의 돌봄을 정책사업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가족급여나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하고 있었다.

#### 바. 국가별 임금수준 및 시간제근무인력 비중

사회서비스원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위하여 비교 국가들의 시간당 임금과 근무인력의 평균임금수준 등을 조사하였다.

<표 II-83> ILO 보고기준 국가별 시간당 임금

(단위: 달러)

|      | 년도   | 1시간당 임금 |
|------|------|---------|
| 한국   | 2015 | 12.03   |
|      | 2016 | 12.04   |
| 네덜란드 | 2015 | 38.42   |
|      | 2016 | 38.42   |
| 스웨덴  | 2015 | 38.5    |
|      | 2016 | 39.6    |
| 영국   | 2015 | 27.94   |
|      | 2016 | 27.94   |

주: 1. 1달러당 = 1.3유로, 0.11크로나, 1.27파운드, 2017년 한국은 12.20

2. 한국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의 민간영역만을 보고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은 이에 더하여 공공, 농업, 자영업자를 제외한 10인 이상 사업장을 보고하였음.

자료: ILO stat에서 받은 meta data 저자 가공

&lt;표 II-84&gt; OECD 보고기준 국가별 평균연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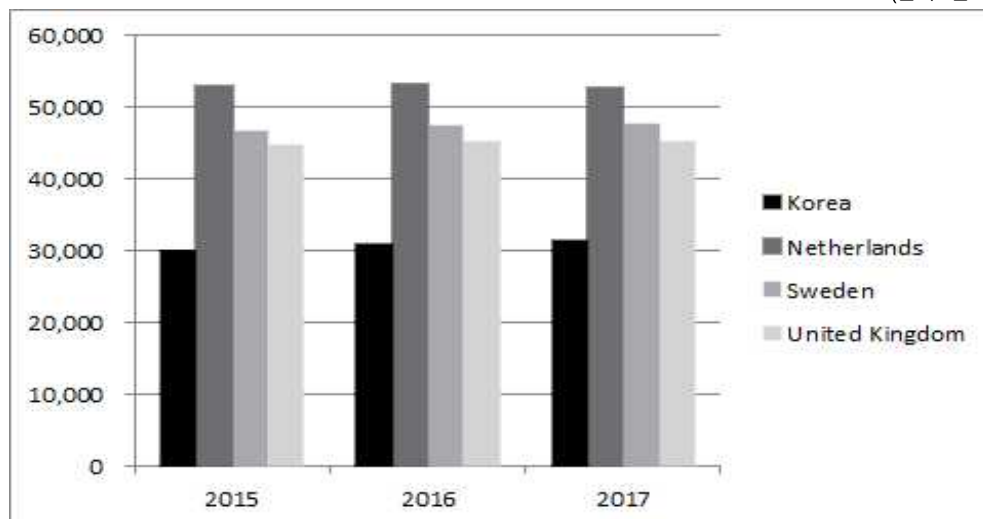
(단위: 달러)

| 국가   | 년도   | 평균연봉       |        |
|------|------|------------|--------|
|      |      | 현지통화       | 달러화    |
| 한국   | 2015 | 32,862,515 | 29,814 |
|      | 2016 | 34,318,204 | 30,822 |
|      | 2017 | 35,490,433 | 31,390 |
| 네덜란드 | 2015 | 45,879     | 52,999 |
|      | 2016 | 46,364     | 53,122 |
|      | 2017 | 46,755     | 52,705 |
| 스웨덴  | 2015 | 388,845    | 46,739 |
|      | 2016 | 399,262    | 47,514 |
|      | 2017 | 408,400    | 47,783 |
| 영국   | 2015 | 33,569     | 44,680 |
|      | 2016 | 34,469     | 45,261 |
|      | 2017 | 35,163     | 45,280 |

자료: OECD stat. 저자 가공.

[그림 II-48] OECD 국가 평균연봉 비교

(단위: 달러)



자료: OECD stat. 저자 가공.

조사대상 국가의 시간당 임금 및 평균연봉을 비교해보면 네덜란드 > 스웨덴 > 영국 > 한국 순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각국의 사회서비스 제공 종사자 간의 단순한 비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육관련 종사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 종사자의 비율이 약 90%에 가깝고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시간제 근무 여부는 나라와 직업별로 도출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OECD의 성별, 연령별 시간제 근무인력 비중을 통해 몇 가지 특징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첫째, 국가별로 성별, 나이 관계없이 시간제 근무인력의 비중이 1990년대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2015년 이후 감소하거나 체감하는 국면에 있다. 둘째, 모든 나라에서 여성의 시간제 근무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더 크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15~24세에서 남성과 여성의 시간제 근무 비중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근무 비중은 네덜란드 > 영국 > 스웨덴 > 한국 순이지만, 15~24세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네덜란드 > 스웨덴 > 영국 > 한국 순이었으며, 우리나라 시간제 근무 비중이 제일 낮은 층 대상의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시간제 근무비중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 사. 국가별 사회서비스 주요특징 비교정리

<표 II-85> 주요국가 복지서비스 특징 비교

| 구분                 | 스웨덴                                           | 영국                 | 네덜란드                                                                                                                                                                    |
|--------------------|-----------------------------------------------|--------------------|-------------------------------------------------------------------------------------------------------------------------------------------------------------------------|
| 특징                 | 지방자치적 복지                                      | 잔여적복지              | 혼합복지                                                                                                                                                                    |
| 2000년대 이후 서비스 제공방식 | 공공시설 중심<br>현금급여 중심<br>(아동보육시설의 약 80%가 공공보육시설) | 민간시설 중심<br>현금급여 중심 | <p>* 보육(~4세) *</p> <p>민간가격경쟁 중심<br/>자율계약<br/>(세금환급방식 → 보조금 지급방식)</p> <p>* 유치원(4~5세) *</p> <p>학교에 흡수되어 운영</p> <p>* 장기요양 *</p> <p>민간가격경쟁 중심<br/>현물제공 중심<br/>(현금 약11%)</p> |



| 구분                                | 스웨덴                                                                                                                           | 영국                                                                 | 네덜란드                                                                                                                               |
|-----------------------------------|-------------------------------------------------------------------------------------------------------------------------------|--------------------------------------------------------------------|------------------------------------------------------------------------------------------------------------------------------------|
| 지방정부 역할                           | 자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br>어린이집 유치원 관리 운영                                                                                               | 시장구축, 구매자 역할                                                       | * 보육/유치원 *<br>수요파악<br><br>* 장기요양 *<br>평가, 서비스구매                                                                                    |
| 주요재원                              | 지방주민세<br>(소득의31%,<br>장기요양서비스 90%를<br>충당)                                                                                      | 중앙정부교부금+주민세                                                        | * 보육*<br>1/3씩 정부, 기업,<br>부모 부담<br><br>* 유치원 *<br>전액 국가지원<br>(교육부 예산)<br><br>* 장기요양*<br>민간보험의무가입 보험료<br>+ 지방정부 비목적세                 |
| 평가                                | 지방정부간 서비스 비교                                                                                                                  | 중앙독립기구 CQC                                                         | * 장기요양*<br>보건체육부 보건의료<br>감독관                                                                                                       |
| 품질유지                              | *보육교사 자격요건강화<br>학급당 교사 수 3인 유지<br>*지방정부간 비교시스템                                                                                | * 사회적돌봄감찰위원회<br>(CSCI) 설치<br><br>* 국가표준인증수준 도입<br>* 돌봄질위원회(CQC) 신설 | * 보육교사 학사학위<br>(HBO)요건 확대<br><br>* 일하는 부모에게 보조금<br>지급<br>* CIZ라는 평가기관에서<br>개관적인 서비스<br>등급판정을 수행<br>* 돌봄감독기관(IGZ)을 두고<br>품질평가보고서 제출 |
| 보육교사<br>고용형태<br>및<br>급여수준         | 지방정부에서 급여지급<br>(약 20% 부모부담)<br>준공무원 대우<br>교사자격증소지자만이<br>정규직 가능하며 연봉<br>약 3,000만원 수준<br>보조교사는 2,800만원 수준<br>스웨덴 평균임금의<br>60%수준 | 시간제<br>최저임금수준                                                      | * 보육 *<br>민간자율계약<br><br>* 유치원 *<br>교사자격에 상응하는 대우                                                                                   |
| 요양보호/<br>간호사<br>고용형태<br>및<br>급여수준 | 월별 계약직 고용                                                                                                                     | 시간제<br>평균임금수준                                                      | 자율의사 계약방식                                                                                                                          |

| 구분            | 스웨덴                                                                                           | 영국                                                                                                      | 네덜란드                                                                                                                                                 |
|---------------|-----------------------------------------------------------------------------------------------|---------------------------------------------------------------------------------------------------------|------------------------------------------------------------------------------------------------------------------------------------------------------|
| 공공부문<br>/인력비중 | <p>* 공립보육교사는 지방정부에서 직접고용 (75% 이상)</p> <p>* 장기요양돌봄 공식활동인력기준 80%가량 지자체 직접 고용(계약직), 20% 민간위탁</p> | <p>* 공공보육: 7~8% (시설기준, 공식보육서비스 이용가족은 전체 약 40%이므로, 공공부문의 크기는 더 작다고 판단됨)</p> <p>* 장기요양: 약 9% (2018기준)</p> | <p>* 보육 *</p> <p>대부분이 사립형태</p> <p>* 유치원 *</p> <p>2/3가 사립, 1/3이 공립소속 유치원</p> <p>* 장기요양 *</p> <p>대부분 민간공급 (재가서비스를 권장하는 Wmo의 기본 철학은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p> |

## 제Ⅲ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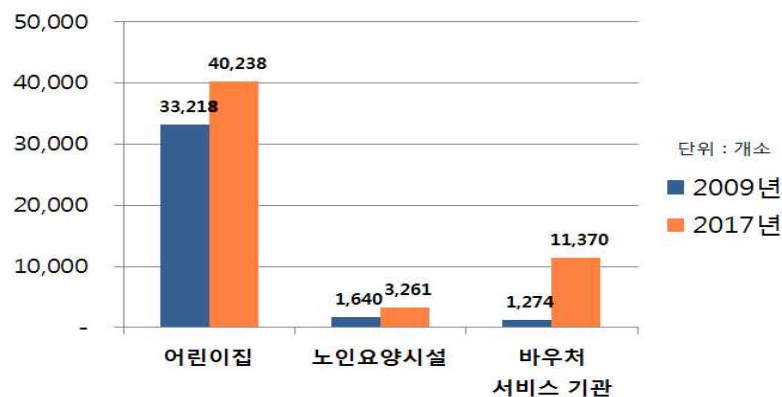
# 경제사회 환경분석

## 제1절 경제사회 여건분석

### 1. 사업추진의 경제사회적 여건

사회서비스원의 추진배경으로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아동 및 노인의 돌봄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그림 Ⅲ-1]에 의하면 2017년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9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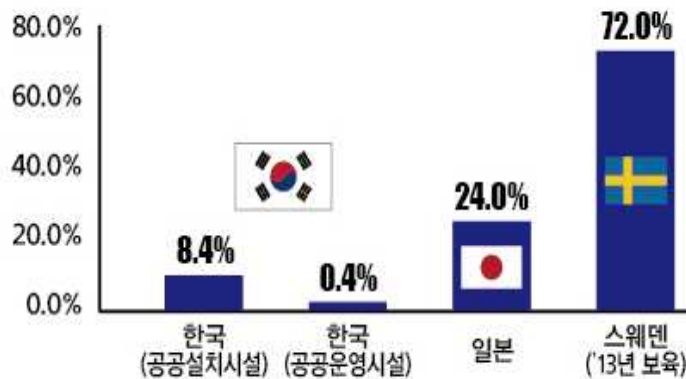
[그림 Ⅲ-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규모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p. 1

한편 이렇게 증가하는 사회서비스가 주로 민간위탁에 의해 제공되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의 바우처 기관은 2009년 1,274개에서 2017년 11,370개로 증가<sup>64)</sup>했으며 그에 따라 [그림 III-2]와 같이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설의 공공비율은 8.8%에 불과하여 일본 24% 및 스웨덴 72%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림 III-2]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공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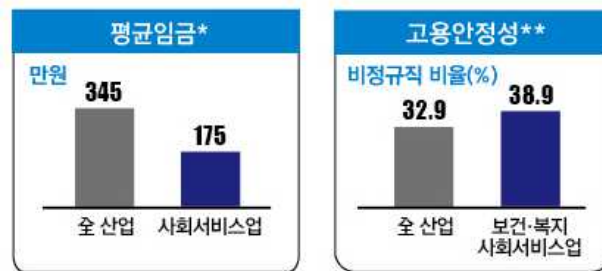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p.1

특히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설치가 용이한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및 고용 안정성이 낮아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등 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림 III-3]와 같이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에 관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175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345만원의 5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38.9%로 전 산업의 비정규직 비율 3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위탁은 위탁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임금수준이 높지 않고 고용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종사자를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64)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진 설명자료 p. 1

[그림 III-3] 사회서비스업 근무환경



자료: 2017년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p.2 재인용

사업추진의 경제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는 2017년 전체인구의 17%, 876만명을 차지하고 있는 노령인구가 2026년 22.9% 1,167만명에 이르러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만 노령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저출산의 여파로 보육관련 수요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분야 간 상쇄효과를 감안하면 전체 수요 증가는 예측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증가한 사회복지수요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제공 비율이 해외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나 주요 해외국가의 경우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공급방식을 확대하는 추세와 상반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거시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중앙대 산학협력단, 2016).

다만, 공공의 비중이 낮은 영국 (20% 후반)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공공비중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은 제기된다.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 민간뿐 아니라 아닌 공공기관도 일정 부분 존재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 수요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부문의 고용 여건, 근무환경, 경영투명성이 낮기 때문에 공공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우수 서비스 제공모델을 전파함으로써 민간을 포함한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수준을 높이는 간접적인 기대효과도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의 모니터링 및 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나, 인력 및 역량의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장기요양·보육·각종 재가서비스의 품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동 사업이 목적으로 설정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의 질 향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은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라 판단된다. 다만, 고용의 질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동 사업은 현재 주어진 수가 체제하에서 공공기관이 직영함으로써 해당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직접적인 설립배경인 사회서비스 근무환경을 높여 서비스의 질 제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의 결정요인으로 ① 이용자의 서비스의 선택권 ② 서비스 제공인력 ③ 서비스 기관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조건을 높임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을 제고할 수 있으나 동시에 공공부문 운영을 통해 이용자 서비스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서비스 질 개선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 측면에서 서비스 종사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지라도 개별 사회서비스원의 거버넌스 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관리체계가 비효과적일 경우 사업이 의도한 대로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표 III-1> 사회서비스 품질 결정요인

| 품질결정요인       | 세부내용                                                                                                                                                                                               |
|--------------|----------------------------------------------------------------------------------------------------------------------------------------------------------------------------------------------------|
|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욕구해결</li> <li>- 이용자 존중 및 서비스 차별 금지</li> <li>-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li> <li>- 이용자의 사적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li> </ul>                                           |
| 서비스 제공인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li> <li>-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임금조건</li> <li>-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li> <li>-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li> <li>-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인력관리 및 평가보상체계</li> </ul> |
| 서비스 제공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기관 운영규정</li> <li>- 위험예방 및 사고대응절차의 체계화</li> <li>- 품질모니터링 체계의 구축</li> </ul>                                                                             |

자료: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저자가 재구성

요약하면, 본 사업의 거시적 설립배경은 확대된 사회서비스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여 고용의 질과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러한 설립배경은 외국에 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작고 전체 사회서비스 품질이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용의 질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사업의 유사성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유사성 검토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측면은 기존 개별 서비스 제공영역에서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과의 중복성 및 지자체가 설립한 지역의 복지재단과의 중복성 여부이다. 기존 개별 서비스 제공영역 중 보육과 관련하여 중복가능성이 있는 기관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있으며, 이 기관들은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와 비슷한 서비스 종사자의 표준교육과정, 역량강화, 교육훈련,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표준지침 작성, 서비스 요원에 대한 교육 및 경영컨설팅 기능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용 측면에서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업무 범위와 비용산정의 적정성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의 가능성이 적어 보이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요양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 예정인 사회서비스원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인 보건복지부는 기존 유사 지원기관들에서 수행하고 있지 않는 대상기관 및 업무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분야별 지원기관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회계, 노무, 법률 등에 대한 컨설팅과 시설안전점검을 위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서 전달체계별 기능 재조정을 거쳐 사회서비스원을 지역 내 개별적·분절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총괄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할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중앙지원단과 사업영역별 지원 공공기관과는 업무의 분담을 통하여 업무 중복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업무가 안정화되면서 사업계획서상에 교육, 역량개발, 컨설팅 기능이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영역에서 지원기관과의 업무 중복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존 지원기관의 역할분담과 업무의 조정체계가 필요하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원이 강점을 가진 인사 및 조직관리, 회계 등 경영관리에 관한 지원기능도 인사노무 및 회계법인이 더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경영관리 전문 컨설팅기관과 차별

화될 수 있는 지원기능의 개발이 필요하다.

사업영역에서 지원기관과의 중복과 더불어 지역의 사회복지재단과의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차이는 있더라도 공통적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사회복지시설 직접운영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업무 중복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기존 복지재단을 서비스원으로 전환하거나 복지재단의 연구기능 및 시설운영기능을 분리하여 시설운영기능을 서비스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이들 지역 사회복지재단과의 업무 중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지역복지재단과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중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복지재단의 기능이 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복업무가 많은 지역복지재단의 경우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거나 중복 기능을 분리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능에 대한 업무조정 시 ① 연구기능 ② 교육 및 컨설팅 기능 ③ 사업운영 기능을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답변자료(3차)는 복지재단을 서비스원으로 전환하거나 연구기능과 시설 운영기능을 분리하여 연구기능은 복지재단이 시설운영기능은 서비스원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기능은 양 기관이 모두 수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또는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별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것이고 사회서비스원은 이러한 개별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과 기능에 차이가 있다. 다만, 향후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의 위탁직영시설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하면, 사회서비스원은 현 시점에서 중앙의 사회서비스 지원 공공기관과 지방의 사회복지재단, 노동부의 거점형 어린이집과 업무중복이 가능성이 높지 않으나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의 사회복지 컨트를 타워기능을 수행할 경우 지역복지재단의 정책연구 및 컨설팅 기능과의 업무 및 역할 범위 설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lt;표 III-2&gt; 사회서비스원 유사기관 업무내용 비교

| 기관           | 업무내용                                                                                                                                                                                                                  |
|--------------|-----------------------------------------------------------------------------------------------------------------------------------------------------------------------------------------------------------------------|
| 사회서비스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표준운영지침 마련</li> <li>-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정책연구 개발</li> <li>- 사회서비스원 경영실적 평가</li> <li>- 소속 위탁기관에 대한 시설, 인사, 교육, 회계 등 경영관리 지원</li> <li>- 사회서비스 사업 직영운영(보육, 요양, 재가서비스)</li> </ul> |
| 육아종합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li> <li>- 보육컨설팅, 자체교사 지원 및 관리</li> <li>- 보육교직원 상담, 육아콘텐츠 개발</li> </ul>                                                                                       |
| 한국보육진흥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 개발</li> <li>- 어린이집 평가인증</li> <li>-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지원</li> <li>- 보육교직원 역량강화</li> </ul>                                                                                |
| 국민건강보험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요양 급여 관리 및 평가</li> <li>-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비용 적정성 검토</li> <li>- 장기요양 기관의 설치 운영</li> </ul>                                                                                      |
|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양시설 및 요양 보호사 역량개발</li> <li>- 요양관련 전문인력 직무교육 실시</li> </ul>                                                                                                                   |
| 지자체 출연 복지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사회복지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li> <li>-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사업</li> <li>-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 사업</li> <li>- 사회복지시설 평가, 인증, 컨설팅</li> <li>-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수탁운영</li> </ul>                              |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 운영</li> <li>- 육아 및 보육교육</li> </ul>                                                                                                                                      |

### 3. 정부개입의 적절성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민간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여부와 중앙정부가 지방의 사회서비스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의 여부이다. 전술한 대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배경은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이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를 일정 부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영하게 될 공공서비

스 제공자가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 다른 재정 여건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동 사업이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정책적 쟁점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기관 직영형태의 서비스 제공 기관 형태 다양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을 전인한다는 목표의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조건 충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공급의 공공부문 비중 확대를 통해 사업이 의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느냐 있다. <표 III-3>과 같이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민간(위탁)방식과 공공운영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운영방식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정부개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추가적인 비용 투입 없이 공공운영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하여 민간 사회서비스 기관은 정부의 재정 지원확대 및 수가인상을 통해 정부 직영 시설의 수준까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수가인상 등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서비스 표준운영 모델개발을 개발하여 이를 민간시설에 보급·확산시킴으로써 전체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 사회서비스 제공확대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가인상 등 서비스 직접비용의 증가 없이 서비스 제공 거버넌스나 종사자 고용구조의 변화로 의도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느냐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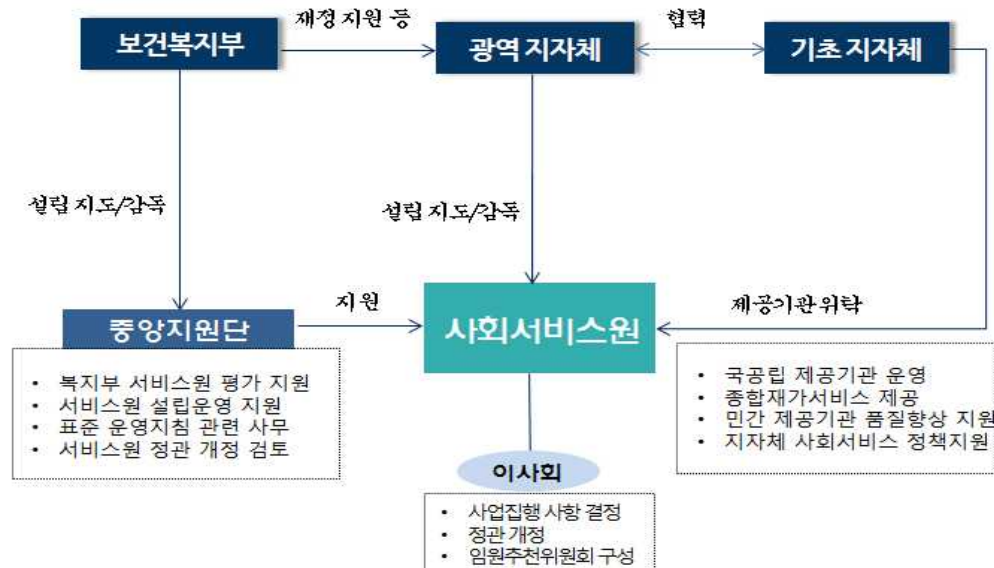
<표 III-3> 민간위탁방식과 공공운영방식의 장단점 비교

|    | 민간(위탁)운영 방식                                                                                                                                                        | 공공운영방식                                                                                                                                                   |
|----|--------------------------------------------------------------------------------------------------------------------------------------------------------------------|----------------------------------------------------------------------------------------------------------------------------------------------------------|
| 장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li> <li>-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li> <li>- 고용 및 회계의 독립성을 통한 신속하고 유연한 의사결정</li> <li>- 혁신관리기법을 통한 효율성 제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및 사업관리의 일관성</li> <li>- 인력과 재정운영의 안정성</li> <li>-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li> <li>- 고용의 안정성과 높은 직무몰입</li> </ul>      |
| 단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금과 처우에 편차존재</li> <li>- 수익성 추구로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미흡</li> <li>- 낮은 고용의 안정성 및 역량과 사기저하</li> <li>- 담합 및 독과점 시 가격상승</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료제화로 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미흡</li> <li>- 운영의 자율성 약화로 품질개선 유인 약함</li> <li>- 인력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li> <li>- 행정비용의 증가</li> </ul> |

자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p. 193을 저자 재구성

정부개입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다른 이슈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에 관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 자체는 지자체의 책임하에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지방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재정보조를 일부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그림 III-4]와 같이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광역지자체, 지역 사회서비스원, 기초지자체까지 다양한 수준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서비스 전달체계에 참여할 예정이다.

[그림 III-4] 중앙과 지방의 사회서비스원 거버넌스 구조와 업무영역



-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대상지역 선정, 관련 법·제도 개선, 재정지원, 관리 및 평가 등
- (중앙지원단) 서비스원 설립 지원, 운영지침 마련, 평가업무 지원 등
- (광역지자체) 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 운영 및 재원확보, 사업범위 및 규모 확정 등
-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경영관리, 서비스 역량관리, 서비스 직영시설 운영 등
- (기초지자체)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등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조사 요청 답변자료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시설의 관리는 지자체의 책임하에 있으나, 공공기관의 신설을 통한 공공 직영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광역지자체에 설립될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지방사

회서비스원의 운영에 대한 지원과 관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적 물적 조건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기초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새로운 공공 직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광역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중앙정부가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기능은 새로운 사업방식이 작동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의 성격이 강하며,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내용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구체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다양한 모델의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구시는 기존 문제 요양시설의 직영을 통한 정상화를 급선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다양한 재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추진 중이다.

다만, 중앙과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에서 발생하는 조정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지원단을 지도/감독하고 중앙지원단은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을 지원 및 평가하며 광역지자체는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을 지도/감독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의 지원단과 광역지자체의 지도와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된다. 양 기관 사이의 지시 및 지원내용이 다를 경우 갈등 및 조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시된 업무 추진도에 의하면 중앙지원단은 지역사회서비스원을 평가하게 되지만, 지역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평가를 받게 되어 중복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앙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및 관리기준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운영지침과 다를 경우 이를 조정하는 데도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정부, 중앙지원단과 지역사회서비스원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관련 중복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또한 지원 및 관리업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정부의 재정투입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 체제를 일정 부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다만, 직영 형태의 서비스 제공 기관 형태 다양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 개선을 견인한다는 목표의 정부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시설의 관리는 지자체의 책임하에 있으나, 공공기관의 신설을 통한 공공 직영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다양한 주체로 인한 조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중앙지원단과 지역사회서비스원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4. 해외비교를 통한 사업추진의 적절성

사회경제 변화 및 복지제도의 발전단계에 맞추어 사업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해외비교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비슷하게 겪고 있는 일본, 공공의 사회서비스 비중이 높은 스웨덴과 민간비중이 높은 영국을 선택함으로써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가. 일본

먼저, 일본의 경우 사회 및 인구구조에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저출산 및 노령화로 인하여 요양 및 케어 관련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에 이유가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시정촌’이라 불리는 기초자치단체와 민간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영리기관에서 나누어 담당하는 형태를 띠어 왔다. 다만, 민간의 사회복지기관도 소유권은 민간의 법인에 있으나 운영비는 상당부분 정부의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어 공공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 분담비율은 약 4:6 정도이다.

일본의 사회서비스 근로조건을 보면 보육과 요양서비스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쉽게 채용할 수 있는 비정규직 위주로 인력을 충원해 왔기 때문이다. 보육서비스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급여수준의 차이를 보면 신입교사는 차이가 거의 없으나 선임교사는 경우 호봉 상승분이 반영되어 공공부문이 높은 편이다. 요양서비스의 경우 공공과 민간의 차이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규직은 215,830엔이지만 비정규직은 그 절반인 118,830엔에 불과하다.

일본은 급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들은 행정감사, 정보공개, 복지서비스 평가, 인증제도 등을 포

관한다. 먼저, 사회서비스를 관리 감독하는 시정촌은 관계법령에 따라 년 1회 의무적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은 제3의 평가기관에 의해 의무적으로 3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본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공표제도를 두어 개호보험법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기관은 관련 정보를 관련 홈페이지(<http://www.kaigokensaku.jp/>)에 등록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인증이 실시되는데 아동복지법에 의해 인가를 받은 보육소의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국적인 인가 보육소와 달리 동경도는 지자체 주민들의 고유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인증 제도를 만들고 이를 보육시설의 인증에 활용하고 있다. 동경도의 인증보육소의 기준은 국가전체 적용되는 인가보육소의 규정보다 인증을 위한 요건과 기준이 까다롭다.

일본의 사회서비스의 공급은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최근의 변화는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는 전술한 대로 사회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서비스 시설의 설립과 종사자의 채용이 신속하여 증가한 수요량에 맞추어 빠르게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은 증가하고 있는 민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에 우선하여 어느 정도 공공성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술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스웨덴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보육과 요양서비스 모두 공공시설의 비율이 75%가 넘어 공공 주도의 사회서비스 모델을 따르고 있다. 공공부문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품질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공공과 민간시설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는 차이가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평균임금 수준은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 낮아 이직률이 높은 편이어서 정부는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대한 교육과 훈련에 투자를 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경우 중앙 차원의 교육훈련 체계는 없으나 개별 기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양의 경우 지방정부는 품질제고를 위해 돌봄 서비스 직원들에게 단기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품질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서비스 만족도조사에서 만족 이상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다. 공공공급자와 민간공급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동석 외, 2013). 이와 같이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스웨덴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는 기초지방단체에 맡겨져 있었으나 북유럽국가들의 복지예산의 삭감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보육서비스의 경우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국립교육원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분석, 연간 보고, 교사들의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요양서비스의 경우 ‘국가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를 통해 전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기초지방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의 정부의 공공형 사회서비스 공급체제도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영화를 통해 민간시설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소비자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민간화의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다. 이러한 민간화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며 지방의 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서 사회서비스의 민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 다. 영국

전통적으로 영국은 신자유주의적 전통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민간주도 방식의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민간시설 등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경쟁을 추구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스웨덴과 반대로 75% 이상의 요양서비스가 민간에 의해 제공되고 있어 민간주도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특징을 갖고 있다.

시장의 기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다. 보육서비스의 경우 교사의 이직은 활발하지 않으나 공공의 보육교사에 비해 민간의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다. 요양서비스의 경우 시설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서비스 종사자의 이직이 활발한 편이다. 이러한 이직은

고용안정성이 약한 비정규직 서비스 종사자에게 주로 발생하며 이들의 임금 수준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결국 영국의 사회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었지만 서비스 제공기관 간 편차는 크며 경쟁의 심화로 인해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환경이 안정적이지 않다.

영국정부는 민간기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급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정부 규제기관을 설립하였다. 보육서비스의 경우 ‘Ofsted’가 설립되었다. 모든 시설운영자들은 Ofsted에 등록을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Ofsted’는 3~4년에 서비스 시설 운영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 요양서비스의 경우 CQC(Care Quality Commission)을 설치하고 서비스 기관들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CQC는 세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데,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등록 업무,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한 처벌기능을 갖고 있다. 요양시설에 대한 감독과 평가결과는 등급별로 공개된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민간주도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확대하고 민간공급자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유지를 위해 정부차원의 감독과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라. 소결

이상의 해외사례를 비교했을 때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절차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해외사례를 비교했을 때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와는 다르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외국가들은 민간영역의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관리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주요기능으로 서비스 표준 모델 개발, 서비스 요원 교육 및 역량강화, 시설 및 경영 컨설팅 및 평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사회 서비스 품질 관리절차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와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복지발전 단계에 비추어 참고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영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같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



의 경우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해 민간부문을 확대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공공공급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차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경제적 여건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를지라도 복지 전달체계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영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영국은 민간공급체계의 공공 전환보다는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관리절차를 강화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비스 공급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공공부문의 공급을 높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결국,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민간과 공공부문 중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을 누가 그리고 어느 정도 담당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적인 추세에 비추어 중요한 문제는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초점이 민간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효과적인 사회서비스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초기 사업계획과는 달리 현재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전환 물량이 높지 않고 서비스 표준모델 제정을 통해 민간시설에까지 서비스 관리모형을 확산하여 전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와는 일치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표준모델 제정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라는 점에서 민간부문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약하자면,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인구 및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 공공서비스의 비중이 큰 스웨덴, 민간영역의 비중이 큰 영국의 보육과 사회서비스 사례를 비교하였으며 해외추세는 민간부문의 비율을 확대하되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정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추세와는 다른 측면이 있으나 공공부문의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민간위주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한 표준모델을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정부의 품질제고 관리체계 강화라는 국제추세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lt;표 III-4&gt; 해외국가의 사회서비스 국제비교

|           |    | 일본                                                                                                                 | 스웨덴                                                                                                                          | 영국                                                                                                   |
|-----------|----|--------------------------------------------------------------------------------------------------------------------|------------------------------------------------------------------------------------------------------------------------------|------------------------------------------------------------------------------------------------------|
| 주요특징      |    | 재정은 정부가 지급하고 공급은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한 민간주체가 담당하는 혼합형                                                                     |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의 소유와 운영을 주도하는 정부주도형 공급체계                                                                                         | 민간주도로 소비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시장형 공급                                                     |
| 서비스 공급 주체 | 보육 | 공공 40%, 민간 60%                                                                                                     | 공공 75.7%, 민간 24.3%                                                                                                           | 공공 3개유형, 민간: 영리형 5, 비영리형 2                                                                           |
|           | 요양 | 정부직영 1% 미만,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29.7%, 영리법인 57.9%                                                                           | 시설서비스의 경우 공공 79%, 민간 21%<br>재가서비스의 경우 공공 76%, 민간 24%                                                                         | 시설보호의 경우 민간 74%, 자선단체 18%, 공공 7%<br>재가보호의 경우 민간 75%, 자선단체 8%, 공공 15%                                 |
| 종사자 근로 조건 | 보육 | 비정규직 비율은 공공 53.5%, 민간 39.9%로 공공부문이 높음. 공공과 민간 급여는 신입은 차이가 없으나 선임교사의 경우가 공공이 높음                                     | 공공과 민간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은 차이가 없으나 초 등교사에 비하여 낮음, 개별 기관별 연수 실시                                                                       | 민간의 보육교사가 공공의 보육교사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으며 이직이 활발하지 않음                                                         |
|           | 요양 | 비정규직 비율은 공공 10~15%, 민간 10% 미만<br>급여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약 2배 높음                                                         | 공공과 민간의 요양 서비스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차이가 없으며 지방정부는 서비스 요원에게 단기 교육 제공                                                                    | 개별 기관과 개별 서비스 종사자간 사인간 계약으로 이직이 활발하며 20% 이상의 종사자들이 비정규직이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 수령                             |
| 서비스 품질관리  |    |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감사, 정보공표제도, 서비스 인증, 복지서비스에 3자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감독책임은 지자체에 있으며 지자체를 중앙정부기관인 국립교육원 (보육), 국가보건복지위원회 (요양)에서 감독<br>'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절차, 모니터링, 품질조사 의무화 | 민간기관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규제기관 설립 (요양: CQC, 보육: Ofsted), 이들 관리기관은 품질관리를 위해 시설등록, 서비스 감시평가,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등을 실시 |
| 공급체계 개선방향 |    | 2000년대 이후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사회서비스 기관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공공성 유지를 위해 감사, 평가, 인증, 공개 등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구비 | 정부주도의 공공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중, 다만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으며 대도시 위주로 민영화가 진행                    | 소비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확대하고 민간공급자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정부는 품질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 유지                        |

자료: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6),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 제2절 경제사회 영향분석

### 1. 사업효과의 경제사회 문제 해결 여부

본 사업 효과발생 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 여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이런 거시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본 사업은 보육과 요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공공영역으로 흡수하여 고용의 양과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사업목적이 달성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거시적인 효과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해소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보육과 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각각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사업에서는 사회서비스 요원을 공공 직영시설에 정규직으로 고용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의 목적달성이 거시적 측면에서 경제·사회적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① 사업의 내용이 경제·사회적 효과와 관련이 있고 ② 사업의 효과가 경제·사회적 효과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먼저 저출산 극복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직영대상에 보육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통해 부모의 출산의지가 높아진다면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저출산 극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효과의 인과성 측면에서도 강은미·김순규(2011)에 의하면 보육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감에 따라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면 간접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령화 대응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직영 대상 서비스분야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요양 및 재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요양 및 재가서비스의 품질 제고는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급속한 고령화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사업효과의 인과관계 측면에서도 김찬우(2011)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장기 요양제도 도입 이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8% 감소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Nursing Home 도입으로 ADL 등 알츠하이머병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서는 통합적 요양서비스의 성과지표로 대상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sup>65)</sup>을 사용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통하여 요양 및 재가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된다면 간접적으로 노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 신규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효과의 인과적인 측면에서 신규 공공기관 설립이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증가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신규 공공기관 설립을 통해 순증하는 일자리는 인사, 회계, 노무, 경영관리를 지원하는 소수의 본부 행정인력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원 일자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서비스의 종사자의 경우 기존 시설 종사자가 사회서비스원의 직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체 일자리 수는 증가하지 않으며 신규 사회서비스 요원의 경우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인해 추가로 생기는 일자리가 아니라 전체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일자리 증가이다.

고용의 질과 관련해서는 직영사업 대상이 국공립 신설 시설과 기존 국공립시설 중 문제가 발생한 시설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고용의 질 제고와 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는 양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시장에 파급효과는 클 수 있다. 동일한 재정 여건하의 직영 시설에서 고용의 질과 서비스 품질 개선효과가 창출된다면,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을 견인하는 파급효과가 창출될 개연성이 있다. 서비스 품질 문제가 제기될 때, 부각되는 쟁점 중의 하나가 낮은 수가 문제이므로, 현재의 주어진 수가와 바우처 조건하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이라는 성과가 창출된다면,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65) 구체적인 삶의 질 관련 지표로 사회적 만남의 회수와 만족도, 스트레스의 감소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김찬우, 2011, p. 25)

&lt;표 III-5&gt; 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의 영향 여부

| 경제·사회적 효과 | 사업의 내용과 관련성                                                           | 사업효과의 인과성                                                                                                                           |
|-----------|-----------------------------------------------------------------------|-------------------------------------------------------------------------------------------------------------------------------------|
| 저출산 극복    |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과 관련 있음                       | 선행연구는 보육서비스 품질과 자녀출산 의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임을 제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전체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경우 저출산 극복에 기여                                            |
| 고령화 대응    | 요양 및 돌봄 서비스의 품질제고를 통해 고령층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령화와 관련 있음 | 선행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제고를 통해 노인자살률이 감소하고 ADL지표 개선, 대상자 및 가족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고 분석,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전체 요양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한다면 고령화에 따른 사회부담 해소에 기여     |
| 일자리 증가    | 신규 공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일자리 증가와 관련 있음                     | 사회서비스원 설립시 순증하는 일자리는 소수의 행정인원에 불과하며 사회서비스 요원 증가분은 민간시설에서의 이동이나 사회서비스 수요증가로 인한 자연 증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일자리의 질    | 사회서비스원의 정규직으로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자리의 질 증가와 관련성이 있음             | 사회서비스원 설립시 민간 서비스 종사자가 공공의 정규직으로 임용됨으로써 고용의 질이 제고 될 수 있으며 동일한 재정 여건하의 직영 시설에서 고용의 질과 서비스 품질 개선효과가 창출된다면,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을 견인하는 파급효과가 창출 |

요약하면, 선행연구 결과 보육과 요양서비스의 품질이 제고될 경우 우리 사회의 거시적 문제인 저출산 및 고령화 해소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일자리의 양과 질과 관련해서는 소수 행정인력 증가 외엔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일자리의 양적 증가에는 기여도가 낮으나 동일한 재정여건하에서 사회서비스 요원을 공공의 정규직으로 고용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 효과가 나타난다면 민간서비스 제공자들의 고용 및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2. 사회적 의견수렴 여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018년부터 사회서비스 포럼 개최 및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논의(총 60여회)를 통해 서비스원에 대한 의견수렴활동을 추진하였다. 의견수렴 활동은 서비스원 설립 시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보육 및 요양관련 서비스 직능단체, 노동조합 및 NGO,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을 대상

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의견수렴 과정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서비스 직능단체는 초기에는 공공의 직영시설 확대가 민간시장을 잠식하는 민간구축 효과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다. 그러나 소통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표준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민간에 전파함으로써 서비스 전반의 처우개선 및 품질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어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지역 등 일부 직능단체는 여전히 반대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III-6> 사회서비스원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활동 요약

| 수렴 대상기관         |    | 회수  | 의견수렴 내용                                                                                                                                                                                                                                                                                                                          |
|-----------------|----|-----|----------------------------------------------------------------------------------------------------------------------------------------------------------------------------------------------------------------------------------------------------------------------------------------------------------------------------------|
| 서비스<br>직능<br>단체 | 전반 | 21회 | 초기에는 민간 구축효과 발생으로 반대하였으나 소통과정에서 표준운영모델 전파 등으로 서비스 전반의 처우개선 향상 가능성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지켜보자는 입장. 단 서울지역 등 일부 직능단체는 반대 의견이 존재함                                                                                                                                                                                                             |
|                 | 보육 | 11회 | 초기 국공립시설 확충으로 민간위탁 및 유보통합 저해 등으로 반대하였으나 후기에는 국공립시설 중 신규시설 및 유보통합과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하며 수용성 제고                                                                                                                                                                                                                                       |
|                 | 요양 | 5회  | 초기에는 서비스원 설립 자체보다는 현 장기요양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통을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 등을 확인해 보자는 쪽으로 선회                                                                                                                                                                                                                                                 |
| 노동조합 및<br>NGO   |    | 10회 | 서비스원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추적으로 역할토록 기대, 정책 논의과정 참여 보장 요구                                                                                                                                                                                                                                                                         |
| 전문가             |    | 3회  | 공약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 제기, 추가재정 확보 및 인프라 확충 등 반영 요구                                                                                                                                                                                                                                                                               |
| 지방자치단체          |    | 17회 | 대부분 설립취지에는 동감했으며 신속한 법률제정과 국고지원, 시도의 운영인력지원 등을 요청                                                                                                                                                                                                                                                                                |
| 국회              |    | 1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도입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나 정당별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며, 현재 사회서비스원 도입을 위한 2개의 법안이 계류 중임<br>찬성(민주당, 정의당):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 사회서비스 요원의 처우개선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br>반대(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서비스 질 개선은 수요자 만족이 중요하며 처우개선, 투명성 제고는 별도기관 설립 없이 개별 공급기관의 노력으로 가능,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제고 가능,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존 지원기관의 중복 우려 |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답변 자료

보건복지부는 제3자인 노동조합, 시민단체, 전문가 등에도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들을 대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에 찬성하였으며 열악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 등은 제도 도입의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도입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추가 재정의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제도정착을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대상인 지방자치단체와 법률 제정 당사자인 국회 등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도 진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운영취지에는 공감했으며 서비스원의 순조로운 설립을 위해 신속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인력 및 인프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경우 전문가, 여당 및 야당 위원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여당과 야당 간 찬반의견이 나누어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민주당 등 여당에서는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서비스 요원의 처우개선으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공공기관 설립보다는 개별 기관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이며, 공공 역할 강화 시 민간구축효과, 기존 기관과의 중복 등의 문제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은 활동은 복수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의견수렴의 다양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전문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활동이 각각 3회와 1회로 적은 편이다. 국회의 경우 법안심사 및 예산심사과정에서 비공식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공개토론회를 통한 여론 환기가 국회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법안도입 과정에서 국회와 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그룹에 대한 의견수렴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자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향후 재정적 수용 가능성 및 중복 등에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경제 관련 전문가 그룹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야당위원의 반대가 있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제도 설명노력이 더 필요하다. 특히 남인순 의원 및 윤소하 의원의 발의로 서비스 운영 근거법이 발의되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야당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확실하지 않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회서비스원은 민간법인 설립에 대

한 일반법과 예산배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출범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회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설득 노력 및 의견수렴 활동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018년부터 사회서비스 포럼 개최 및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논의(총 60여회)를 통해 서비스원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의견수렴 활동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문가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자 위주로, 국회의 경우 비공식적인 의견수렴 활동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문가와 국회에 대한 더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사회서비스원 설립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에 의해 서비스원 설립이 가능하더라도 특별법이 있는 경우보다는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정당성이 약할 수 있다.

### 제3절 재정의 지속가능성

#### 1. 재정추계의 적정성

본 사업에 대한 재정추계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본 사업과 유사한 과거 및 미래의 예산변화 추이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재정추계의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III-7>과 같이 신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기관을 설립한 재정사업의 예산추이를 보면 모든 사업에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규모가 크고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된 노인인력개발원의 경우 2014년 예산 102억원이 2023년 204억원까지 증가하여 재정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취업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에 의한 결과이다. 유사하게 노령인구에 대한 요양 및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예산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유사사업의 예산변화 추이를 통해서만 대략적인 재정추계의 방향만을 알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재정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의 세부비용 추정에 대한 적정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lt;표 III-7&gt; 유사사업 예산변화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중앙자활센터     | 21.9  | 24.3 | 24.3  | 24.6 | 24.9 | 37.5  | 72.8  | 75    | 77.2 | 79.6  |
| 노인인력개발원    | 102.3 | 115  | 126.8 | 140  | 147  | 154.3 | 186.6 | 192.2 | 198  | 203.9 |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6.4   | 10.2 | 9.2   | 10.4 | 10.5 | 11.7  | 13.9  | 14.4  | 14.8 | 15.2  |

주: 1 2020년 후의 재정추계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하여 산출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답변자료

먼저, 향후 5년간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소요액 변화 추이를 보면 2019년 89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37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예산 증가액의 대부분은 2019년 4개의 지방사회서비스원에서 2022년 17개까지 지방사회서비스원을 확대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과 광역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과 관련된 직접 사업비로서 직접 사업비는 현재 복지부가 제출한 예산 소요 보다는 증가할 개연성이 높지만,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비용이므로, 조달 가능성 문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총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이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관리되는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비와 소속 서비스 요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다. 직영되는 위탁기관의 비용은 추가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의 보조금과 인건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비는 중앙지원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된다.

&lt;표 III-8&gt; 사회서비스원 5년간 재정추계액

(단위: 백만원)

| <총사업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 합계     |     | 8,928 | 18,490 | 26,960 | 38,481 | 37,067 | 129,926 |
| 국비     | 총계  | 5,968 | 10,746 | 14,996 | 19,379 | 15,695 | 66,784  |
|        | 중앙  | 1,008 | 1,002  | 1,032  | 1,063  | 1,095  | 5,200   |
|        | 지방  | 4,960 | 9,744  | 13,964 | 18,316 | 14,600 | 61,584  |
|        | 지방비 | 2,960 | 7,744  | 11,964 | 19,102 | 21,372 | 63,142  |

자료: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lt;표 III-9&gt; 중앙과 지방사회서비스원 5년간 재정추계액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중앙인건비   | 400   | 412    | 424    | 437    | 450    |
| 중앙운영비   | 608   | 590    | 608    | 626    | 645    |
| 중앙계(A)  | 1,008 | 1,002  | 1,032  | 1,063  | 1,095  |
| 지방인건비   | 1,600 | 6,592  | 10,185 | 14,861 | 15,307 |
| 지방운영비   | 6,320 | 10,896 | 15,752 | 22,560 | 20,672 |
| 지방계(B)  | 7,920 | 17,488 | 25,937 | 37,421 | 35,979 |
| 합계(A+B) | 8,928 | 18,490 | 26,969 | 38,484 | 37,074 |

자료: 본 보고서 &lt;표 V-33&gt; 재인용

다만, 2019년에서 2013년까지의 중기 예산 규모는 1,29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지만 직영시설 증가와 연계된 사회서비스원의 인력 증원 없이 개소당 일정액이 지원되는 형태의 예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복지부는 서비스원별 인력 소요를 매년 고정된 상태에서 50:50으로 지자체와 분담한다고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력 증가에 대한 예산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세부 분석을 위해 <표 III-10>과 같이 서비스원 5년간 인력추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중앙지원단의 예산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위탁 및 직영 물량의 증가와 관계없이 중앙지원단의 인력을 10명으로 고정시킨 것에 기인한다. <표 III-10>과 같이 보건복지부는 지방서비스원의 개소수 증가나 위탁 및 직영물량 증가분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지원단의 인원을 10명으로 고정하였다. 또한 지방사회서비스원 시설 종사자가 2019년 1,729명에서 2023년 13,989명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방 서비스원의 본부인원을 20명(80명/4개소=20명)으로 고정시키고 신규 사회서비스원 개소로 발생하는 예산 증가분만을 재정소요액으로 반영하여 재정변화를 추계하였다.

&lt;표 III-10&gt; 사회서비스원 5년간 인력추계

(단위: 명)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중앙지원단 (A)                |              | 10    | 10    | 10     | 10     | 10     |
| 지방院<br>본부<br>인원          | 1개소당 인원      | 20    | 20    | 20     | 20     | 20     |
|                          | 19년개소 (4개)   | 80    | 80    | 80     | 80     | 80     |
|                          | 20년개소 (4개)   | -     | 80    | 80     | 80     | 80     |
|                          | 21년개소 (4개)   | -     | -     | 80     | 80     | 80     |
|                          | 22년개소 (5개)   | -     | -     |        | 100    | 100    |
|                          | 지방院 본부인원수(B) | 80    | 160   | 240    | 340    | 340    |
| 소속<br>시설<br>종사자<br>수     | 19년개소 (4개)   | 1,729 | 4,216 | 7,569  | 11,184 | 13,989 |
|                          | 20년개소 (4개)   | -     | 1,729 | 4,216  | 7,569  | 11,184 |
|                          | 21년개소 (4개)   | -     | -     | 1,729  | 4,216  | 7,569  |
|                          | 22년개소 (5개)   | -     | -     |        | 1,729  | 4,216  |
|                          | 소속시설 종사자수(C) | 1,729 | 5,945 | 13,514 | 24,698 | 36,958 |
| 전체 사회서비스원<br>종사자수(A+B+C) |              | 1,819 | 6,115 | 13,764 | 25,048 | 37,308 |

주: 1 소속시설 종사자 수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4개소)에서 제시한 '19~22년의 소속시설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20년 이후에 개소하는 사회서비스원도 유사한 규모로 늘어나는 것을 가정하였다.

2 연도별 인원은 누적인원을 나타냄

자료: 본 보고서 <표 V-4>, <표 V-5> 재인용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중앙지원단과 지방서비스원 세부비용에 대한 재정추계의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지원단의 경우 전술한대로 지원단 행정인원이 10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지방서비스원이 추가로 개소하고 위탁물량이 증가할 경우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앙지원단의 주요임무가 지방사회서비스원의 평가인데 2019년 4개에서 2022년 17개로 증가하면 평가대상 기관이 4배 들어 업무의 증가가 불가피하고 이는 추가 인원 채용으로 이어져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업무 증가에 따라 인원이 증가한다면 당연히 중앙지원단의 임대료나 경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료의 경우 10명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나 인원이 증가할수록 더 큰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어 임대료가 증가할 것이며 1인당 사무비 및 복리후생비도 인원수에 맞추어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lt;표 III-11&gt; 사회서비스원 재정추계와 쟁점

| 항목               | 세부비용 | 재정추계의 쟁점                                                                                                                                                                                                                                                                                 |
|------------------|------|------------------------------------------------------------------------------------------------------------------------------------------------------------------------------------------------------------------------------------------------------------------------------------------|
| 중앙<br>지원단        | 인건비  | 중앙지원단의 인원은 10명으로 고정되어 향후 지방사회서비스원 추가 설치 및 위탁물량 증가로 인한 추가 인원의 비용이 미반영되어 있음<br>- 17개 서비스원이 전부 설치될 경우 평가업무 증가 예상<br>- 유사 공공기관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여 인건비를 추정했으나 일부 과소계상                                                                                                                                |
|                  | 경상경비 | 인원 증가에 따라 임대료와 경비가 증가할 예정이나 인원을 고정시켜 추계했기 때문에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음                                                                                                                                                                                                                              |
|                  | 직영시설 | 직영시설 운영안함                                                                                                                                                                                                                                                                                |
| 지방<br>사회<br>서비스원 | 인건비  | 지방서비스원은 본부인원은 20명 고정인원으로 향후 위탁 및 직영 재가서비스 물량 증가로 인한 업무증가에 필요한 추가인력 소요 비용추계가 미반영되어 있으며 광역지자체의 인구수에 따른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br>- 위탁 및 직영 서비스 종사자 증가에 따라 급여, 회계, 평가, 교육훈련 담당 직원 증가 불가피<br>- 위탁 및 직영시설 증가에 따라 시설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요원 증가<br>- 경기도와 강원도의 인구수는 10배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본부 행정 요원을 20명으로 동일하게 추계 |
|                  | 경상경비 | 인원 증가에 따라 임대료와 경비가 증가할 예정이나 인원을 고정시켜 추계했기 때문에 과소추정의 가능성이 있음                                                                                                                                                                                                                              |
|                  | 사업비  | 사업비의 경우 물가상승률만 반영되어 고정되어 있으나 위탁 및 직영 물량의 증가에 따라 상승 예정<br>- 직영 서비스 종사자 증가에 따라 시설안전, 인사, 교육훈련, 평가 관련 사업비 증가 가능성 높음                                                                                                                                                                         |
|                  | 직영시설 | 별도의 재원 투입 없이 기존 수가 및 보조금 등 독립채산제로 운영 예정                                                                                                                                                                                                                                                  |

다음으로 지방사회서비스원의 경우 복건복지부 재정추계에 의하면 지방사회서비스원 1개소당 본부 행정요원이 20명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는 <표 III-10>과 같이 지방서비스원의 위탁 및 직영 물량과 관련된 서비스원 소속시설 종사자 수의 증가를 고려했을 때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기본적으로 지방사회서비스 본부요원은 인사, 회계, 교육훈련, 소속시설 평가, 시설안전 점검, 경영관리 컨설팅 기능을 가진다. 인사와 회계 등은 외주와 전산화를 통해 인원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라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소속시설 평가, 시설안전 점검 등은 관리 대상 서비스 수 종사자의 수와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업무량 증가가 수반되는 업무이다. 서비스 종사자가 늘어날수록 강사 및 장소 섭외, 훈련생 연락 등의 업무가 늘어 날 것이다. 또한 관리 대상 시설이 늘어나면 평가대상 기관과 시설안전 점검 업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본부 행정요원의 수와 동시에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와 직접적인 사업비가 늘어날 것이다. 운영비의 경우 인원 증가에 따른 임대료 및 경비 증가로 늘어날 것이며 사업비의 경우 전술한대로 인사, 회계, 교육훈련, 평가, 시설안전점검, 경영컨설팅 등에서 업무대상 인원 및 시설의 증가로 사업비의 총량이 증가할 것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할 부분은 본부 인력을 시도의 인구와 관계없이 지방사회서비스원의 본부 행정요원을 20명으로 동일하게 했는데, 대규모 시·도와 소규모 시·도의 위탁 및 직영물량을 비교했을 때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다. 인구가 작은 시도의 경우 어린이 및 고령층 인구가 많지 않아 사회서비스의 수요도 작을 것이며 그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위탁 물량도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인구규모에 따라 본부행정요원의 수를 차등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이러한, 고정된 인력수요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력 소요가 고정됨으로 인해 매년 동일한 고정금액이 지원되는 예산 구조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일종의 포괄보조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다시 말해, 사업계획서에서는 인력 소요와 운영경비 소요 등에 기반하여 50:50의 재원분담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재정소요와 관계없이 고정된 일정 금액을 매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 담당자들의 기대는 복지부의 입장과는 달리, 실제 재정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부의 재정지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재정추계를 위해서는 직영시설 수요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될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이기 때문에,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지만, 복지부와 지자체 간의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과 광역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과 관련된 직접 사업비는 동 사업계획에 제시된 직접사업비로서 중앙과 지방이 50:50대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재정추계되었다. 다만, 직접비용에는 서비스 위탁물량 증가에 대한 인력소요의 증가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 간의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안정적인 자원 조달 가능성

재정추계에 이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사업비 외에 자원소요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자원조달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이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원조달의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재정과 관련하여 재정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은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 및 직영시설의 재정의 변화 가능성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계획안에 의하면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분야는 중앙지원단과 지방사회서비스원의 본부지원인력과 사업비에 한정된다. 직영 및 위탁시설의 서비스 운영 및 인건비 지급은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기존의 수거나 보조금에 기초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문제는 ‘경성예산제약조건’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직영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비용의 가능성이다. 이는 동 사업의 직접비용은 아니지만, 지방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게 될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여지가 있는 재정소요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별 수가와 바우처만으로 직영시설을 운영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직영시설이 적자 상황에 처할 경우,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 사업 계획에서는 직영시설은 기존 사회서비스 제도하의 수가와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가정은 복지부가 지자체에 권고하는 사항이며 구속력은 없다. 동 사업은 장기요양, 보육, 종합재가서비스에 대한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표준모형의 주요 가정들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직영시설의 유지 가능성을 위해 지자체가 재정 보조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표준모형의 주요 가정들은, 서비스 종류별 매칭 비율, 종사자 고용 형태 비율, 임금수준, 시설의 규모(서비스 대상 수효) 등이다. 예를 들어, 서비스 종류별 매칭 비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장기 근속자 증가에 따른 임금 수준 상승 등이 발생할 경우, 표준모형에 근거한 직영시설 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재정지원 발생 위험에 대한 대응책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기존의 사회서비스 소속시설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기고용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하고, 노조가 결성될 경우 지속적으로 임금 상승 및 복리후생 확대에 대한 재정적 압박이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신분보장은 고용의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도 있지만 고용구조가 경직화되

면 이와 같은 숨겨진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의 장기 근무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임금 상승 및 복리후생 강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숨겨진 비용이며 이는 사회서비스 전반의 복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장기적인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용의 경직화와 더불어 지방사회서비스원 간의 근로조건의 편차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종사인력의 급여는 개별 사업 지침 등에 근거하여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편차가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받는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들은 동등한 임금 및 근로수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처우가 낮은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들이 지방사회서비스원 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를 통하여 추가 임금 인상 등의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지부의 표준모델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은 월 1,826,660원이지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고시를 통하여 직종 및 직급에 관계없이 최소월급 1,925,099원(시급의 경우 9,211원, 최저임금의 122%)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요양보호사는 최소월급으로 위 금액을 받을 예정이다. 이 경우 타 지역 서비스원의 서비스 종사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의거하여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 서비스원이 직영시설이 ‘경성예산조건’하에서 운영되더라도 경성예산조건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재정투입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재정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현재 중앙과 지방 서비스원의 행정인력 및 시설운영비에 한정되어 지급했던 지방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up>66)</sup>에 근거하여 국고보조율은 50~100%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시설비는 100% 지원이고 사

6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 사업                                                  | 기준보조율(%)                                                            | 비고                                                            |
|-----------------------------------------------------|---------------------------------------------------------------------|---------------------------------------------------------------|
| 122.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업비 및 본부요원 인건비는 50%이다. 그러나 지방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게 될 시설에서 재정소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누리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중앙과 지방간 재정 부담 책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러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현 서비스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조달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변화는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기존의 수가나 보조금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직영 및 위탁시설의 서비스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직영시설에서 표준모델의 주요 가정이 지켜지지 못하거나 고용 경직성, 근로조건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가 인상 등 추가적인 재정지원 비용의 가능성이 발생할 경우 안정적인 재정조달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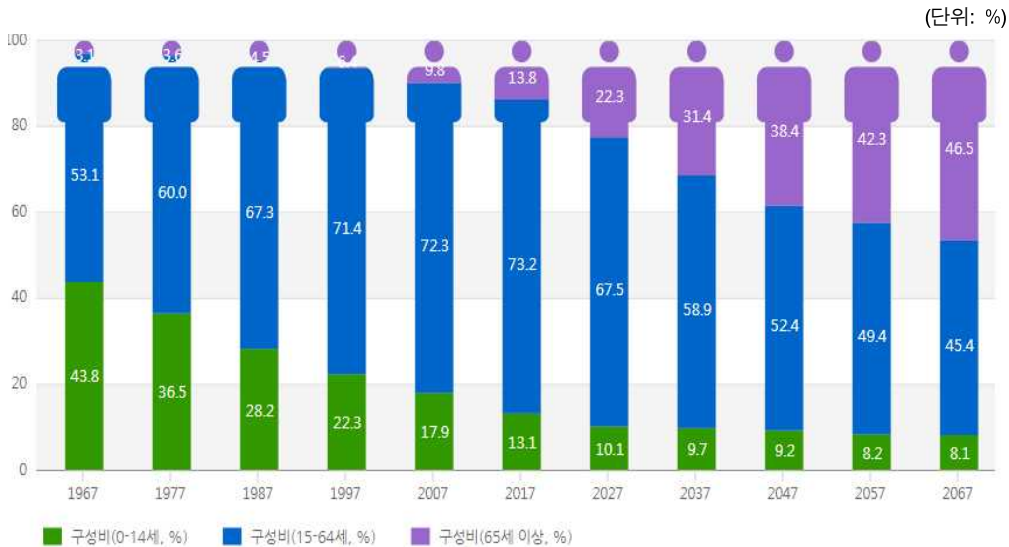
### 3. 중장기적 재정소요 변동 위험성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정적 위험은, 먼저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의 적정성에서 언급했듯이 동 사업의 결과가 기존 수가 인상 요구의 근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 사업이 재정 제약조건을 지키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가 인상요구는 경성예산조건이 지켜지지 못하고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이 이뤄진 경우 또는 경상예산조건이 지켜졌으나 근로조건이나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할 시설들이 기존 수가와 보조금만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추가적인 보조가 불가피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요구될 위험성이 있다.

동 사업의 추가적인 재정변동 위험성은 현 사업계획서가 사회서비스원 운영비의 중장기적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종사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 증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 사업계획서에는 사회서비스원 개소당 설립 및 운영 경비를 고정시켜 놓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정소요 변동 위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림 III-5] 미래 인구구조 변화 추계



자료: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http://kosis.kr/visual/populationKorea/index/index.do?mb=N>, 검색일자: 2019.7.4.

마지막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재정소요 변동의 위험성 중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 분야별로 위탁물량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신규 및 기존 위탁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서비스원 내에서 수요 변화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원 내 위탁 보육시설의 수요가 줄어들 경우 서비스 인력 고용의 경직화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의 그래프와 같이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수요가 감소하면 위탁 보육시설 내에서도 전체 보육대상자가 감소할 수 있고, 고령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기관 등 요양 및 돌봄 관련 서비스는 증가할 수 있다.

이처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내에서 보육 및 요양 서비스 인력운영에 숨겨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종사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에 수요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의 구조조정이 어렵다. 경직된 인력운영 환경에서 결국 수요가 줄어드는 보육관련 서비스 종사자들이 수요가 증가하는 요양 및 재가서비스에서 근무해야 하나 업무의 성격과 근무환경이 현저히 달라 전직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서비스 종사자 간 전직을 위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상해 볼 수 있는 직접비용은 보육종사자들의 전

직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 이직지원을 위한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추가 재정소요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여 서비스 분야별로 위탁 물량 추계를 면밀하게 세우고 이와 연동하여 소요 재정추계를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요약하면,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정적 위험은 사업수행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위탁기관들의 수가 인상 등 추가 비용 요구와 그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추가재정 부담 가능성이다. 또한 인력소요를 고정시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증가 가능성이다. 그 밖에 단기적으로는 위험성이 작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보육과 요양서비스 수요 변화로 인해 보육 및 요양 서비스 제공인력간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가능성을 들 수 있다.

## 제Ⅳ장

#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 제1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시급성

#### 1. 사업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보건복지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목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제고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업의 목표는 크게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동 사업의 대상인 장기요양, 보육, 재가서비스의 품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문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적정 인프라를 마련하면서 순차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서비스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품질 문제를 숙제로 안고 있다.

다만, 이러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업계획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 목표인, 양질의 일자리 확충은 사회서비스원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종사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된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한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정규직의 정의는 분명하지 않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정의에 따르면 정규직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재택/가내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일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 등이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이다.<sup>67)</sup>

실질적 근무시간은 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종사자의 선호에 따라 풀타임(Full Time)일 수도 있고, 파트 타임(Part Time) 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보육과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종사자는 대부분이 풀타임 근무일 것이며,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파트 타임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성과지표는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전체 종사자 중 고정월급제 적용 종사자 비율로 설정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그러므로 본 지표는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중에서도 고정월급제 적용 종사자 비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해당 지표의 정의에 대한 상세 설명이 없어서 엄밀한 판단이 불가능하지만, 고정월급제는 통상적으로 개인의 업무량이나 조직의 재무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지표가 사업의 목표로 적절한지에 대해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왜 고정월급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통상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란, 일자리의 안정성과 임금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급은 일자리의 안정성이나 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가 아니다. 물론,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위탁사업의 종사자는 정규직이라는 측면에서, 일자리의 안정성 자체는 확보되고, 복지부가 권고하는 위탁사업의 표준모형에 따르면, 기존의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의 평균 임금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임금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금 수준의 향상이 예상된다. 굳이 고정급 종사자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

둘째, 고정급제를 성과지표로 설정한다는 것은, 가능한 최대로 고정급을 적용하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탁사업의 운영 방식을 사전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정규직이라는 개념과 고정급은 별도의 개념이고, 위탁사업의 성과제고와 재무적 유지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임금 구조 자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위탁하는 사업 중 종합재가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 자체와 서비스 제공자의 선호가 파트타임이 더욱 적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임금 형태도 유연한 형태를 띠는 것이 더욱 적합할 수 있다. 그리고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고정급이 아니라, 실제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 따라 차등화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67) e-나라지표의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실태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89](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89) 에서 인용, 검색일자: 2019.6.14.

동 사업의 재정구조상, 위탁사업이 수가만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가 유지된다는 조건하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임금 수준이 시장 평균임금 수준보다 높다면,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복지부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성과 지표는 근로조건 자체보다는 평균임금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작동할 수 있는 기제 중,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 개선도 중요한 측면이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고용 조건을 개선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는 목표 자체는 적절하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의 고용조건 개선이 물적 자원의 추가적인 투자로 이루어진다면, 동 사업이 고용조건 개선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축소된다.

동 사업이 추구하는 정규직 확대라는 목표는 재가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클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2015)에 따르면, 입소시설에서 일하는 요양 보호사 중 정규직 비중은 74.8%에 달하고 있다. 반면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정규직 비율이 13.6%에 불과하다. 이는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재가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이므로, 기관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제공된 서비스 시간대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상시적인 필수 기능은 존재하므로, 필수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다. 정규직의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조직 운영의 경직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수가만으로 운영한다는 독립채산제의 유지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동 사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목표인 서비스 품질의 향상의 성과측정 방법은,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사업계획서에 설정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존재하며, 계속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추진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장기요양, 보육, 그리고 다양한 재가서비스이다. 각 서비스마다 성과측정에 있어서 쟁점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서비스는 단순 만족도 조사보다는, 서비스 수혜자들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 또는 만성 질병의 진전 지연 등의 측면을 시계열로 조사 분석해서 사업의 성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의 경우는, 이상적으로는 실제 아동들의 발달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육의 경우, 만족도 조사 대상

은 부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부모의 관점과 보육 전문가나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은 다를 여지가 있다. 보육과 유아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모의 만족도는 왜곡된 관점에서의 평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도 하다.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부분적인 기능 보조의 역할이 크므로, 만족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서비스의 질을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품질 측정 지표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만족도 지표가 구체적이지 않고, 가장 초보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한계는 분명하지만, 서비스 품질 개선 자체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 있어서도 사회서비스의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은 지속적인 정책 과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서 장기요양, 보육 그리고 다양한 재가서비스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 확보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어 왔다. 급격한 서비스의 팽창은 불가피하게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의존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재원의 문제도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함에 따라, 저수가 논란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동 사업의 목표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는 적절하고 명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두 가지의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부분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개선의 여지가 크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중요한 것인지, 임금 수준의 향상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고정급이라는 임금 형태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계획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정규직과 고정급이라는 내용이다. 정규직이나 고정급의 정의도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기존에 입소 요양서비스나 보육에 있어서는 정규직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재가서비스에 있어서의 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의 확대가 가장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가서비스는 서비스의 수요의 특성과 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에 따라, 시간제 임금이 가장 효율적일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종합재가서비스의 표준모형에서는 월급제와 시급제를 각각 50% 수준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월급제 중에서도 상용직 월급제를 20%, 단시간 월급

제를 30%로 상정하고 있다. 현재 방문요양기관의 월급제 요양보호사 비중이 1.9% (2016년 장기요양 경영패널조사)이므로, 표준모형을 기준으로 볼 때, 독립채산제가 유지된다면, 동일한 수가하에서 월급제가 적용되는 정규직 비중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근로 형태로 개선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2. 사업 목표의 달성 가능성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는 적절하고 명확하지만, 두 가지의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논의했다. 여기서는 동 사업으로 사업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실제 기대 효과성 분석은 비용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지는 절에서 논의되겠지만, 여기서는 사업 계획의 논리상 사업 목표가 달성 가능할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먼저 양질의 일자리 제공 목표의 달성 여부는 재정 문제와 연관이 있다. 현재 사업 계획서상에는 위탁사업은 개별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가만으로 운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 ① 서비스 수가만으로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② 서비스의 품질은 현상 유지 또는 개선되고 ③ 서비스 제공자들을 최저 임금 이상의 월급제 형태의 정규직으로 고용 가능하다면, 동 사업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는 수가만으로 운영되는 독립채산제가 유지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 만약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최저 임금 이상의 월급제 형태의 정규직 고용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부 보조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조사의 비용의 적정성 검토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겠지만, 독립채산제라는 조건의 충족 가능성은 취약한 측면이 있다.

첫째,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은 지자체가 제공하게 되어 있다. 사업의 시작부터 지자체의 보조가 이루어지므로, 기존 민간 사업자와는 상이한 재정여건에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진다. 민간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므로, 서비스 제공으로 수령하는 수가를 통해, 인건비와 경상경비뿐 아니라, 시설투자비용까지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동 사업이 계획한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재정투자의 확대를 통한 성과라는 비판을 일정 부분 피할 수는 없다.

둘째, 시설 보조 이외에는, 지자체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권고사항을 지침의 형태로 지자체에 전달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동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필요시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서는 복지부가 권고한 표준 사업 모형대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범사업을 수행 중인 서울시의 경우, 생활임금 조례로 인해 종합재가서비스센터의 표준모형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수준보다 높은 임금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표준모형대로 운영하더라도, 서울시의 추가적인 재정지원 없이는 위탁사업이 재정적으로 유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합재가서비스센터의 경우를 분석해 보자. 보건복지부가 종합재가서비스센터 표준모형의 서비스 직접 종사자 1인당 월매출손익을 계산한 바에 따르면, 상용직 월급제 종사자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해서만 서비스 직접 종사자 1인당 월 303,383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머지 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모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표준모형은 최저임금 지급을 가정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방문요양서비스도 서비스 직접 종사자 1인당 매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월 1,745,150원이다. 반면에,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0,148원, 월 2,120,932원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 375,782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최저임금 종사자가 방문요양을 통해 발생시키는 월 303,383원의 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차이이며, 매월 72,399원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서울시 생활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상용직 월급제 종사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 수익을 발생시킬 수는 없게 된다. 단시간 월급제 종사자의 경우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건 수익을 창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다. 오직 시급제 종사자의 경우만, 방문요양서비스에 한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는, 가장 서비스 수요가 많은 서울시에서 이미 독립채산제 모형이 유지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장기요양과 종합재가서비스의 재정적 유지 가능성은, 서비스 유형별 비율을 표준모형에서 제시하는 바를 준수할 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본형 종합재가서비스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의 비중을 83.7% 이상으로 유지하고, 바우처 기반의 나머지 서비스를 12.7%로 이하로 유지할 경우 기관의 경영수지가 흑자가 된다. 그러나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비스 매칭 비율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시점에서의 서비스 수요가 표준모형이 제시하는 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공공기



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서비스 매칭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서비스 수요자를 선별적으로 받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불가피하게 서비스 매칭 비율이 표준모형에서 상정한 비율과 달라져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손실 보전을 해주지 않을 수 없게 될 개연성이 높다.

동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원 직영 사업의 일자리의 질은 기존의 민간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일자리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는 결국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의 결과로 가능할 개연성이 높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불만과 비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며 더불어 수가 인상의 근거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비스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서는, 서비스 질 개선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종사자의 근무조건이나 여건도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동 사업을 통해, 종사자의 근무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임금 수준이 높아질 경우,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개연성이 높다. 사회 서비스의 품질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공감있는 상호작용이다. 행복한 서비스 제공자가 수혜자에게도 보다 양질의 상호작용을 제공할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근로 여건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의 행정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별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위탁사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에 사회서비스원의 직영 사업이 과다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지원효과가 현저히 감소할 개연성은 존재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는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에서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서베이 결과(Weaven and Grace, 2010)에 따르면, ‘독립적인 민간 영리서비스 제공기관 > 커뮤니티 기반의 비영리서비스 제공기관 > 프랜차이즈 형태의 민간 영리서비스 제공기관’ 순으로 서비스 품질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국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인식된 이유는, 독립적인 민간 영리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소유주이자 경영자가 직접 1~2개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부모들과 친밀하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데에 있다. 반면에 중앙 관리조직이 다수의 서비스 제공 시설을 관리할 경우, 비인격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서비스의 친밀도와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의 경우도, 유사한 기제가 작동할 개연성이 높다. 사업 확대 초기에는 사회서비스원이 비교적 소수의 직영 사업을 관리하면서 유연성 있는 지원을 할 개연성이 높지만, 위탁사업이 급격히 확대되면 사회서비스원은 관리 기능에 집중하게 되면서, 경직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요약하면,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지자체의 위탁사업이 수행될 경우,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의 질 개선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적정 규모 확보,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지원 서비스가 추가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서도 마지막 쟁점은 위탁사업의 독립채산제 유지 가능성이다. 위에서 검토한 대로,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보조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된다면, 이로 인한 파급효과를 고려하고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의 수가 인상 요구로 이어질 경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3. 정부 정책 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

동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일자리위원회에서 설립 및 운영방안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2017년 5월)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과제(17-2)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동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제9차 일자리 위원회(2018년 12월)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이 발표되었다. 2019년 2월 19일에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이 하나의 과제명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8년 5월 4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2018년 10월 16일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상으로 볼 때, 동 사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 어젠더로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동시에 특별법을 통한 추진 근거 마련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국회에서는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민법」,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체적인 설립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사업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의 보조하에 진행될 수 있으나, 사업의 안정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 제2절 수혜대상의 적절성

동 사업의 수혜대상 자체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의 종사자와 궁극적으로는 직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이다. 사업 수혜 대상자가 기존 장기요양, 보육, 방문 요양 및 기타 재가 사업의 수혜 대상자이므로, 동 사업이 대상자의 명확성 및 적절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사업 대상 이외의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개연성도 거의 없다. 기존 사회 서비스 대상자들이 잠재적 수혜 대상자 이므로, 동 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수혜 대상자 관련 쟁점이 발생할 개연성은 미약하다.

다만, 동 사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가 지방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려는 수요가 있어야 하며, 지자체가 지방서비스원에 사업을 위탁하려는 수요가 있어야 한다. 현재 시범사업 4곳(서울, 경기, 대구, 경남)이 이미 진행 또는 준비 중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광역지자체에 현재의 사회서비스원을 2022년까지 설립하고, 위탁사업은 새로 설치되는 국공립시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특히 서비스 수요가 많다고 판단되는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요양시설을 필수적인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2019년 3월 현재, 신규 국공립시설 설치 계획은 어린이집이 510개소, 치매 전담 요양시설이 344개소이다. 이러한 신규 시설 이외에 위법이나 불법이 발생하거나 평가 결과가 저조한 국공립시설, 그리고 시군구청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국공립시설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 국공립시설을 필수적인 위탁사업 운영 대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사업 수요 자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미약하다. 동 사업 추진 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목표가 있었으나,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민간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존재하는 영역은 사업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어린이집과 장기요양시설에 추가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각종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시범사업 4개 시도에서 10개소로 출발하여, 2022년에는 17개 시도에서 135개소까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은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시간 및 시급제 형태의 고용이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재가센터에서는 통합서비스, 기본근무시간 보장 및 월급제를 지향한다. 종합재가센터의 수요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종합재가센터의 재정적 유지 가능성과 지자체의 재정지원 가능성 여부에 따라 향후 확대 계획이 실현 가능할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네 곳의 시범사업지역의 경우, 서울시와 경남에 서만 종합재가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대구와 경기도는 지역의 현안에 따라 종합재가센터 설치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종합재가센터의 수요는, 선도적으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 지역의 성과에도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특히 종합재가센터가 재정적으로 독립가능성이 확인되지 않고, 지자체의 보조가 불가피하다면,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정책적 의지에 따라, 종합재가센터의 확산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장기적인 사업 수요는 인구 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구 감소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수요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도 국공립시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신규 국공립시설에 대한 수요 총량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신규 국공립시설이 수요가 많은 지역에 설치되지 못하고, 정책적 이유로 인해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 설치된다면, 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설의 직접 운영과 위탁사업의 운영 측면 이외에,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업무 수행과 기타 지원 업무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컨설팅 업무는 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 수요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3절 추진방법의 적절성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과 광역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시설 종사자의 직접 고용과 민간 제공기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는 중앙지원단의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지방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최초에 시설비를 일회성으로 100% 지원하고, 설치 후 3년간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50% 그리고 그 이후에는 30%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방서비스원의 설립 초기에 시설비 전액 지원과 운영비 50% 수준의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판단된다. 설립 운영 3년차 이후에는 보조율이 축소됨으로써,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 정책이 적절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정여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보조율이 일정하게 설정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에 존재하는 지방정부 복지사업에 대한 보조율은 서울과 그 이외 지방정부의 보조율이 상이하게 설정된 경우가 많다.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서울 30%, 그 이외 지방 50% 또는 서울 50%, 그 이외 지방 70%로 보조율이 설정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존 사업 중에서도 기관 설립 운영 지원 사업인 경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조율을 산정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동 사업도 이러한 경우를 참조하여 동일한 보조율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직접적인 서비스 사업보다는 규모가 작고,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개연성도 낮기 때문에, 굳이 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보조율을 산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구조 자체는 존재한다. 문제는 실효성 있는 성과관리 방안의 마련일 것이다. 사업계획서에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기존에 유사한 구조를 가진 자활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활사업에서의 중앙자활센터의 사례의 성공 및 도전 요인을 파악하여, 성과관리 방식의 구

체화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 어떤 기준으로 성과관리를 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강도를 성과관리제도에 심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지자체가 실제 사업 내용과 추진 방식의 결정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경우, 네 광역시의 사업 내용이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다. 개별 지자체 정책 수요와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의 현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초기에 초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신규 국공립시설을 운영하는 것과 기존 공립 시설 중 문제가 발생한 시설의 운영이므로, 광역지자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동 사업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영역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지자체 사업의 경우는 경쟁을 통해 참여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사회서비스원의 성과관리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기초지자체는 자체 시설공단이 관내 보육시설을 운영하기도 한다. 기초지자체 사업의 계약 구조를 현재와 같이 일정 주기마다 입찰하는 형태로 유지한다면, 사회서비스원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되는 유인구조가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은 민간 요양서비스 및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이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갈등은, 일단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위탁사업 운영이 신설 국공립시설에 국한됨으로써, 중단기적으로는 봉합된 상태이다. 향후 사회서비스원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사이의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수행하는 위탁사업 운영과정에서 개발한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파함으로써,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적인 혜택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전달체계상에서는 개별 서비스별로 정책 연구·평가·인증·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건보공단 내의 연구소, 보육진흥원 내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방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개별 지자체의 사회복지재단과의 기능중복 가능성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범사업에서는, 지방사회서비스원이 다른 곳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제외하고, 위탁사업 자체의 운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의 사회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기능은 제외하고 있으며, 모든 지방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요양서비스와 보육서비스 자체에 대한 연구 기

능은 제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주 실무적으로 위탁받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업무가 집중되어 있다. 사업 시행 초기이므로,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요양과 보육서비스는 수혜 대상자와 정책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측면이 있고, 기존에 두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원을 해온 기관들이 있으므로, 사회서비스원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회서비스원의 위탁사업이 안정화되는 시기에 접어들면, 두 영역에 대해서도 사회서비스원과 건보공단 그리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명시적인 협력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건설적이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실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적 쟁점을 건보공단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유하고, 현장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종합재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연구 및 서비스 개발 기능이 중요할 수 있다. 기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가능하도록 하는 체제의 개발을 목표로 연구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 영역도 기존의 사회복지재단 등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지만, 현장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합 또는 연계하는 방안 도출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장기적인 정책적 쟁점은, 사회서비스원 모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초기에 기획될 때에는, 궁극적으로 통합적인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창출해내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모형이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 계획은 이러한 거대한 목표를 지향하는 내용은 아니므로, 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간략히 이 문제에 대한 언급만 하고자 한다. 현재의 사업 모형은, 위탁사업 수행 책임과 지원 기능만 있는 모형이므로, 실제 요양서비스, 보육서비스,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지는 않다.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서비스 제공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만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설치 단위도 광역이므로, 지역과 밀착된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향후 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4절 전달체계의 적절성

동 사업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비교적 명확하다.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통해 지방사회서비스원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며, 광역지자체는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지방사회서비스원은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시설을 운영하는 체제이다. 위탁사업 대상은 신설 국공립 요양 및 보육시설이며, 추가적으로 기존 국공립시설 중 문제가 발생한 시설도 위탁 운영한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위탁을 의뢰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직접 수혜 대상자에게로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개별 서비스별로 이미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동 사업의 경우, 광역사회서비스원이 다수의 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되는 노하우를 이용하여, 서비스 전달과정이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사회서비스원이 규제의 기능보다는 시설장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 주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프랜차이즈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기관의 경우, 중앙조직이 관리해야 하는 지방조직이 많다 보니, 사고 방지와 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일률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관찰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위탁사업이 확대될 경우, 이러한 위험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업무 명확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사회서비스원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시설에서는 행정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업무를 맡는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시범사업 현장 조사 결과에서도, 실무자들의 인식은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방사회서비스원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개별 위탁사업장의 구체적인 행정업무 자체를 담당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사회서비스원과 위탁시설과의 업무 분장 구체화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수요자의 접근 가능성과 관련하여, 동 사업으로 인한 추



가적인 쟁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개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자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운영 주체가 등장하는 것이므로,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수요자 접근 가능성과 관련한 새로운 쟁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종합재가센터 모형의 경우는, 오히려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수요자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재가서비스 수요가 발생하면, 수요자가 개별 서비스별로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이, 종합재가센터에 연락하면,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업 수행기구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 충분성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과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인력이 향후 5년간 고정된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 소요 예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판단되지만, 현실성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 보고서의 제V장에서 보다 현실성 있는 인력 및 예산 소요안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제도적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사업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성과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및 서비스 품질 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주어진 개별 사회서비스의 수가와 수혜자의 적격성 판단 기준하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방식 자체를 통합적으로 또는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다.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에도 종사자를 월급제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 기능 강화를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공간은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및 위탁 운영시설 종사자들의 이질성으로 인한, 조직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장기요양, 보육 및 기타 재가서비스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의 다양한 직종의 정규직 종사자들을 고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직 내부에서의 처우 및 업무 분담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시범사업 현장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능하면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를 채용하고, 조직 내부에서는 가급적 정기적인 순환배치를 통해 직종 간의 이질성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

로 인해 보육서비스 대상 인구가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의 경우 전직이나 직종 변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자체의 인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위탁시설의 종사자는 수요가 크기 때문에 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운용 계획의 수립이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제 V 장

---

### 비용 효과성 분석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사업」의 비용 및 효과성 추정에 있어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통상적인 기관 설립 또는 시설 건립 사업인 경우 기관 또는 시설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만 추정하고, 기관의 기능을 통해 창출되는 편익을 도출하면 된다. 동 사업의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은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동 사업의 효과성 창출 기제는 사회서비스원의 지원 기능을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 주된 요소가 아니라, 위탁사업 종사자들을 월급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에 있다. 정부가 직접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종사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므로 동 사업의 비용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 단순히 사회서비스원 자체의 비용과 사회서비스원의 지원 기능을 통한 효과성 창출만 분석하게 되면 동 사업의 핵심을 제외하고 분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일차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장기요양서비스, 보육서비스, 그리고 종합재가서비스 표준모형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사업의 독립채산제 유지 가능성을 검토한다. 동 사업의 사업 계획서에서는, 위탁사업이 수가와 개별 서비스에 포함된 보조금만으로 독립채산제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독립채산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표준모형으로 운영할 경우에 유지 가능하다고 보여주고 있다. 독립채산제의 유지가 중요한 이유는, 위탁사업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정부의 재정보조에 근거한 것이라면, 동 사업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민간 서비스 제공보다 더욱 많은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면, 현재 수가체계의 문제점만 노정시킬 뿐이며, 수가 인상 요구의 근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동 사업의 비용 분석에 있어서, 위탁 운영사업의 독립채산제 유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업의 효과성에 있어서는, 동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서비스 품질 개선이 가장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된 이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 기반한 효과성 추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2019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차선으로,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특성과 기관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제공기관의 근로 여건(정규직 비중)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 결과가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인증 데이터와 기관 특성 데이터의 연계가 이루어진 데이터의 가용성도 제한적이어서, 현재로서는 아주 단순한 경향성만 보여주는 수준에 머무른다.

## 제1절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사업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성과지표와 목표치에 대한 정보는 아주 제한적으로 제시되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 성과는 직영시설 종사자 중 고정급 종사자 비율로 설정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 성과는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로 설정되어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고정급 정규직으로 정의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너무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문제와 직영사업의 독립채산제 유지 가능성과 충돌되는 지표이므로, 목표치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비스 품질 향상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조사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대로, 사회서비스 유형별로 만족도 조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사회서비스별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해당 지표의 개선 정도를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여건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직영시설 종사자들이 직면하게 될 적정 유인체계의 마련과 수가만으로는 운영이라는 예산제약 조건하에서 성과창출이 가능한지가 궁극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직영시설 종사자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의 안정성 제고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지원(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컨설팅, 행정부담 경감)을 통해 직영시설 종사자들이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직영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상기의 서비스 여건 개선은 자연스럽게 재정소요의 증가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으므로, 직영시설이 수가와 개별 서비스에 수반되는 보조금 내에서의 독립 채산제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동 사업의 효과성 자체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개연성이 높다.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수가 인상 요구의 근거를 제공할 개연성이 높다. 문제는, 현재 복지부가 권고하는 표준모형대로 운영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 유형별 매칭 비율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사업은 생활임금 조례로 인해 인건비 자체가 2019년의 경우 표준모형보다 21.5%나 높기 때문에, 수익성 맞추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제2절 비용 추정의 적정성

연구진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총사업비에 대한 항목별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계획서상의 항목 이외에는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면밀한 비용추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예산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비용추정에 대한 복지부 계획과 세부항목에 대한 연구진의 검토내용은 아래 절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 1.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비용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에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1개와 지방사회서비스원 4개를 설립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후 지방사회서비스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에는 8개, 2021년 12개, 2022년 17개가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상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기간의 비용을 산정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lt;표 V-1&gt; 사회서비스원 개소수 현황 및 소요예산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
|-----------|---------------|---------------|---------------|---------------|---------------|--------|--------|---------|
| 개소수<br>현황 | 중앙            | 1개            | 1개            | 1개            | 1개            | 1개     |        |         |
|           | 지방<br>(시·도 院) | 4개            | 8개            | 12개           | 17개           | 17개    |        |         |
|           |               |               | (신규 4개<br>포함) | (신규 4개<br>포함) | (신규 5개<br>포함) |        |        |         |
| 예산        | 국비            | 중앙            | 1,008         | 1,002         | 1,032         | 1,063  | 1,095  | 5,200   |
|           |               | 지방<br>(시·도 院) | 4,960         | 9,744         | 13,964        | 18,316 | 14,600 | 61,584  |
|           |               | 국비<br>합계(A)   | 5,968         | 10,746        | 14,996        | 19,379 | 15,695 | 66,784  |
|           | 지방비<br>(B)    | 지방<br>(시·도 院) | 2,960         | 7,744         | 11,964        | 19,102 | 21,372 | 63,142  |
|           | 합계(A+B)       |               | 8,928         | 18,490        | 26,960        | 38,481 | 37,067 | 129,926 |

자료: 복지부 2차 제출(19.3.29)자료 바탕으로 정리

## 가. 사업계획안 비용 분석 개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관련 비용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업계획안에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설립 및 운영과 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 사업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1개소 외에 17개의 지방사회서비스원이 개소하는 시기가 연차별로 상이하여 이를 고려하여 초기 설립비용과 그 이후 운영기간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정하기로 한다.

보건복지부에 연차별 세부내역별 비용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아래 <표 V-2> '19년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1개소) 비용 및 <표 V-3> '19년 지방사회서비스원(4개소) 비용과 같이 2019년에 대한 내역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연차별 구체적인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사회서비스원의 경우 2019년에 개소하는 1개소를 기준으로 첫째 설립 관련 일회성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매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개소시기가 상이한 나머지 지방사회서비스원들의 비용을 적용하여 17개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비용을 산출

하기로 한다. 제출한 자료의 비용 산정 항목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3개 항목으로 아래와 같이 세부내역을 제시하였다. 중앙지원단은 전액 국비지원이며, 지방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 50%이나, 이 중 시설비는 설립 첫째 1개소당 정액 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 1)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표 V-2> '19년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1개소) 비용 산정 항목 및 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내 용                                                                                                                              | 비고            |
|-----|-------|----------------------------------------------------------------------------------------------------------------------------------|---------------|
| 인건비 | 400   | 40백만원×10명×1개소 = 400백만원                                                                                                           | 국비<br>100% 지원 |
| 시설비 | 80    | 임대료 45백만원+보증금 35백만원 = 80백만원                                                                                                      | 국비<br>100% 지원 |
| 운영비 | 528   | 운영비(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및 교육, 평가 등): 528백만원<br>-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100백만원<br>-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홍보: 100백만원<br>- 일반 운영비(인쇄비, 여비 등): 328백만원 | 국비<br>100% 지원 |
| 합계  | 1,008 |                                                                                                                                  |               |

자료: 복지부 2차 제출(19.3.29)자료 바탕으로 정리

### 2) 지방사회서비스원

<표 V-3> '19년 지방사회서비스원(4개) 비용 산정 항목 및 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내 용                              | 1개소당<br>금액 | 비고                             |
|-----|-------|----------------------------------|------------|--------------------------------|
| 인건비 | 1,600 | 40백만원×20명×4개소× 6/12개월 =16,000백만원 | 400        | 국비 50%<br>지원                   |
| 시설비 | 2,000 | 500백만원×4개소 = 2,000백만원            | 500        | 국비<br>100%지원<br>(단년도<br>정액 지원) |

| 구분         | 금액    | 내 용                                                                                                                                                                                                                                                                                       | 1개소당<br>금액 | 비고                               |
|------------|-------|-------------------------------------------------------------------------------------------------------------------------------------------------------------------------------------------------------------------------------------------------------------------------------------------|------------|----------------------------------|
| 사업·<br>운영비 | 4,320 | 1,080백만원×4개소 = 4,320백만원<br><br>- 시설안전점검 등 민간 제공기관 지원사업: 100백만원<br>- 종사자 교육훈련: 185백만원<br>-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 150백만원<br>-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200백만원<br>- 사회서비스원 사업 홍보: 100백만원<br>- 지역 사회서비스자원 등 조사·통계 등 연구: 50백만원<br>- 현장 모니터링(매뉴얼 마련 및 현장 모니터링 등): 50백만원<br>- 일반운영비(여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 245백만원 | 1,080      | 국비 50%<br>지원<br>(3년이후<br>국비 30%) |
| 합계         | 7,920 |                                                                                                                                                                                                                                                                                           | 1,980      |                                  |

자료: 복지부 2차 제출(19.3.29)자료 바탕으로 정리

## 2. 비용 추정

이번 절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조직별 업무분장안 및 인력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고,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인건비, 사업·운영비의 세부 항목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용을 재추정하고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비용 추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사업수행주체 인력계획 검토

#### 1)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보건복지부의 예산내역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10명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설정되어 있으나, 조직도상에는 총 11명의 인원으로 제시되어 있다.<sup>68)</sup>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현재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설치되어 있으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직속의 별도 기구로 구성되어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조직은 향후 법 개정 이후 독립된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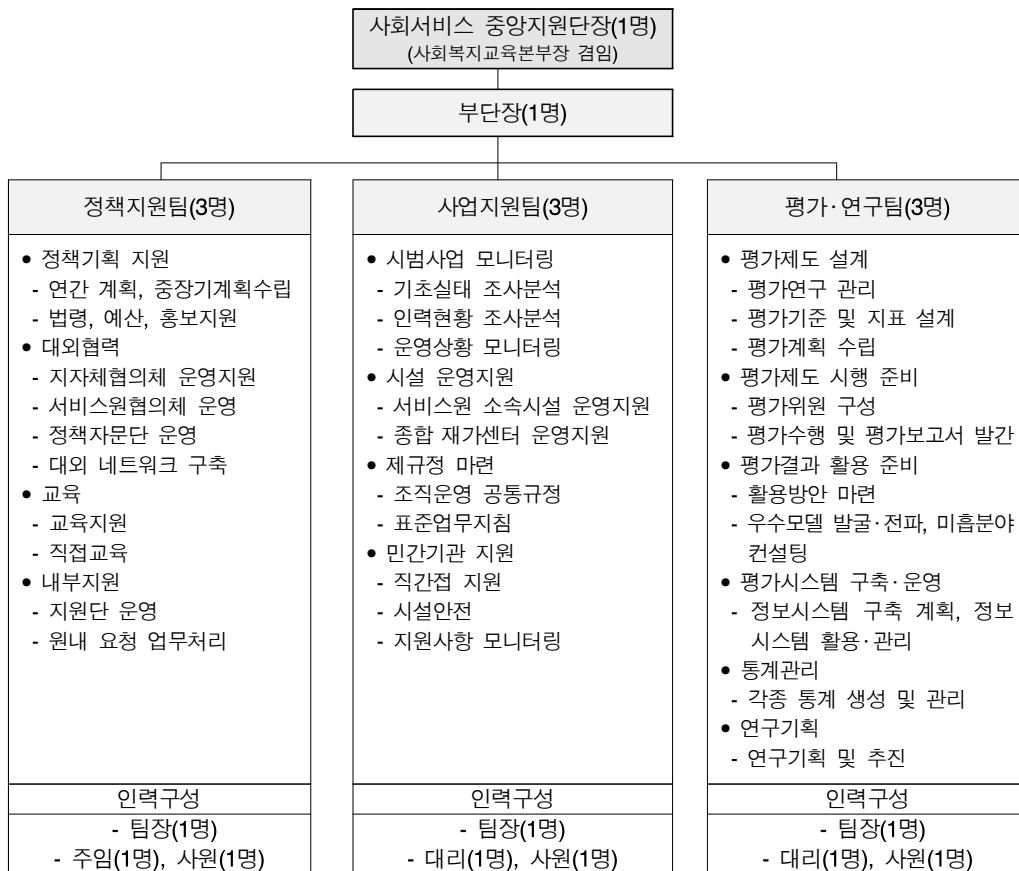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책기획 및 집행 등을 지원하는 기구로, 서비스원 설립 지원(조례, 정관, 기타 제규정 제정지원), 사회서비스원

68) 이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장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사회복지교육본부장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준운영지침 마련, 서비스원 종사자 교육 지원, 사회서비스원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조직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장 1명, 부단장 1명 아래에 정책지원팀, 사업지원팀, 평가연구팀으로 나뉘며 각 팀별 3명(팀장 1명, 주임 1명, 사원 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림 V-1]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조직 및 인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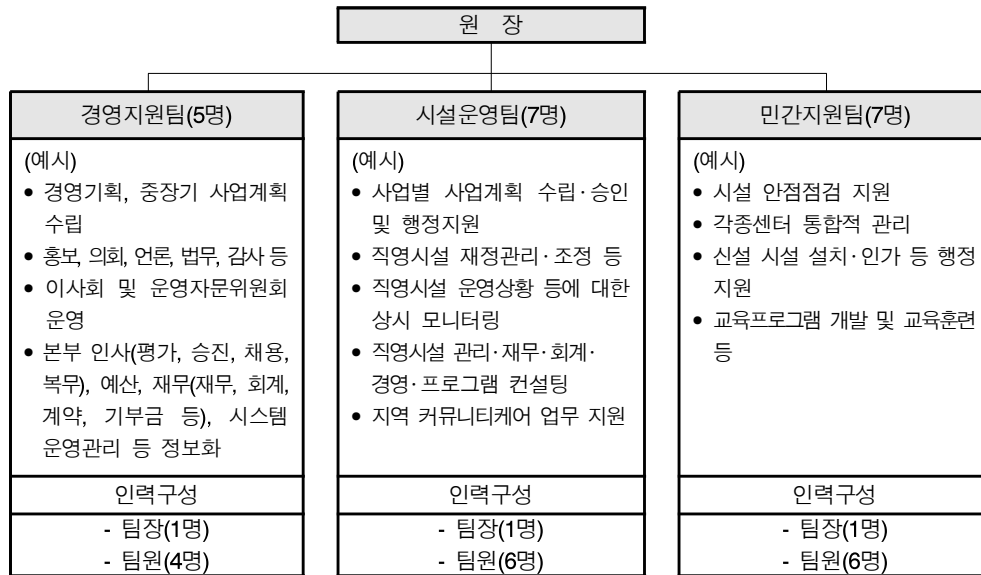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4차 제출(19.5.13)자료

## 2) 지방사회서비스원

아래 [그림 V-2]는 보건복지부의 지방사회서비스원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예시이며, 지방사회서비스원별 직영시설의 규모 및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 자료에 따르면 인력규모는 본부

인력은 20명 이상, 서비스 제공인력은 320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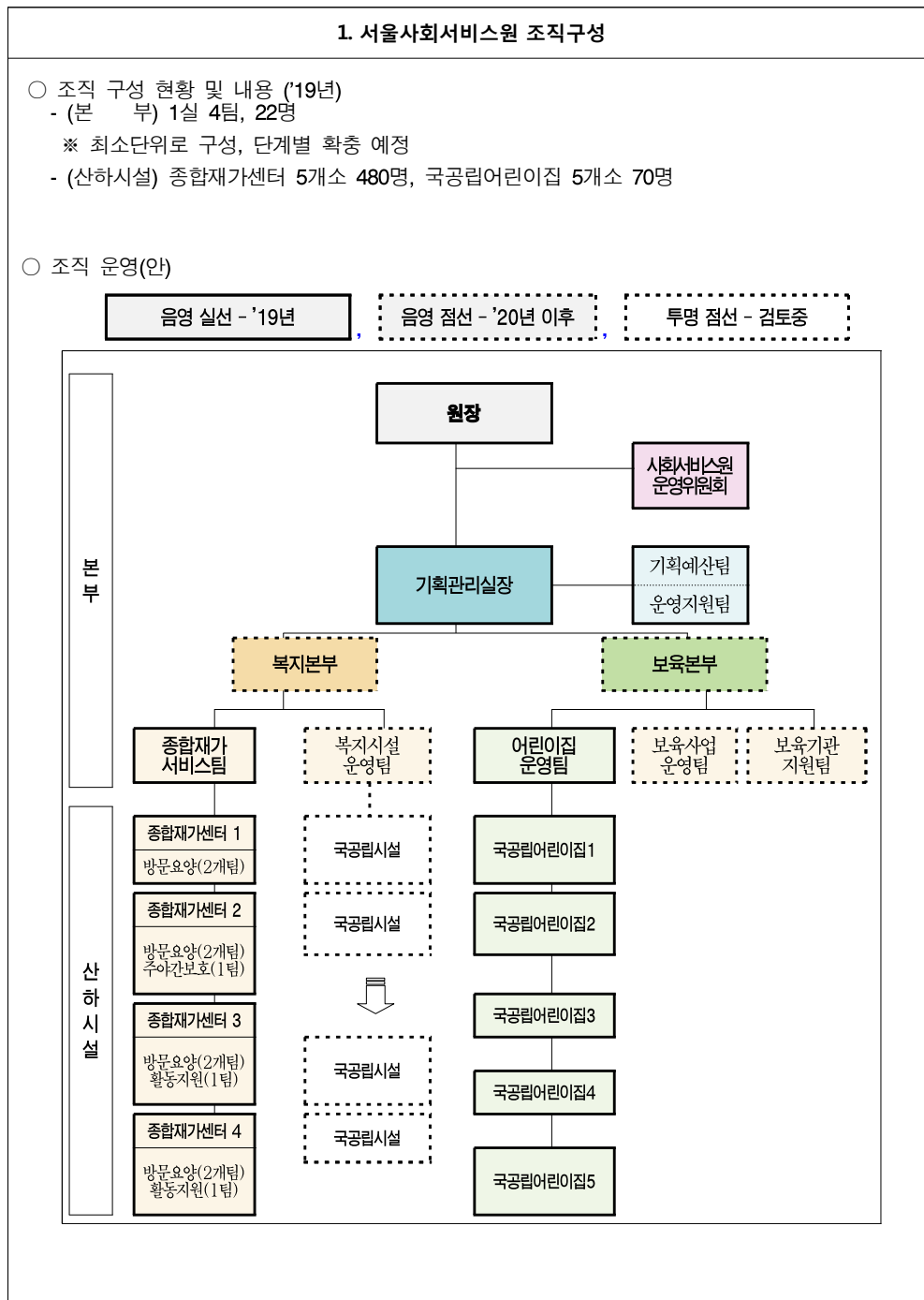
[그림 V-2] 지방사회서비스원 조직 및 인력(예시)



자료: 보건복지부 4차 제출(19.5.13)자료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2019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 지역의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조직은 아래 [그림 V-3] 시범사업 참여지역 사회서비스원 조직도와 같이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의 경우는 2019년 현재 기준으로 기획관리실 아래 종합재가서비스팀과 어린이집 운영팀으로 나누어 설계되어 있으며 총인원은 22명으로 제시되어 있다. 2020년 이후에는 복지 본부와 보육본부로 나누어 관련 팀들을 배치할 계획에 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현재 1실 3팀(경영기획실, 돌봄서비스지원팀, 시설운영지원팀, 정책연구개발팀)으로 총 23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사회서비스원은 법인 설립 이후 원장 1명, 본부장 1명, 경영기획팀 4명, 시설운영팀 5명, 민간지원팀 8명으로 총 20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원장 1명, 본부장 1명, 경영기획팀 5명, 시설운영팀 6명, 민간지원팀 4명, 복지정책연구팀 3명으로 총 20명을 계획하고 있다. 지방사회서비스원별 조직은 아래와 같이 지역수요와 여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제시한 조직과 규모도 지방사회서비스원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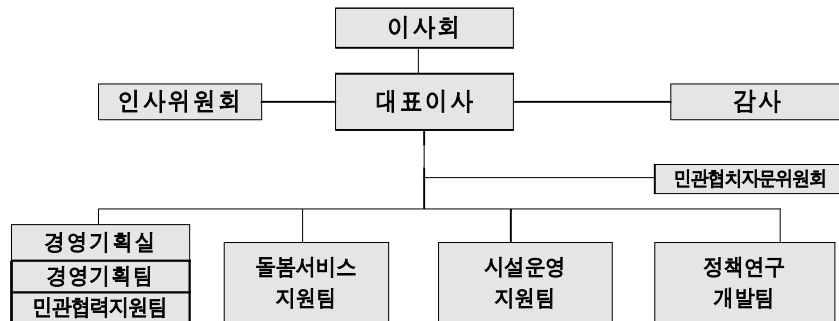
[그림 V-3] 시범사업 참여지역 사회서비스원 조직도



## 2. 대구사회서비스원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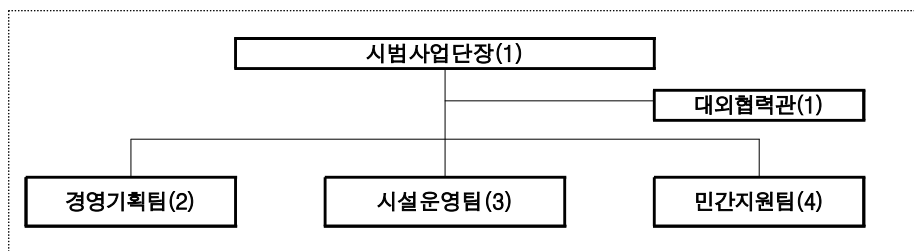
## ○ 조직구성 현황 및 내용

- (명 칭) 재단법인 대구사회서비스원
- (본 부) 1실 3팀 23명  
현원 7명(대표이사, 경영기획실장, 팀장 4, 팀원1)  
6월초 16명 총원예정(채용절차 진행중)
- (직영시설) 4개 분야 12종, 16개 시설 및 사업 47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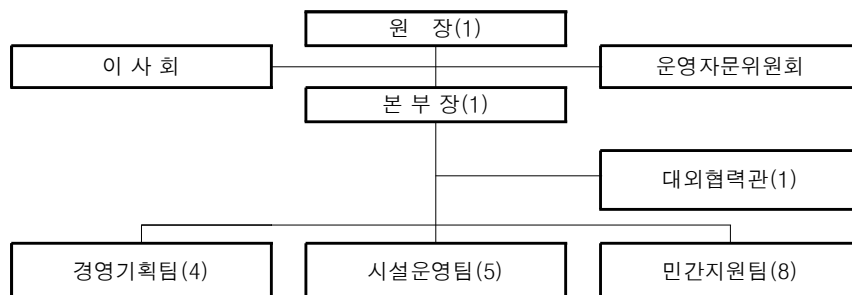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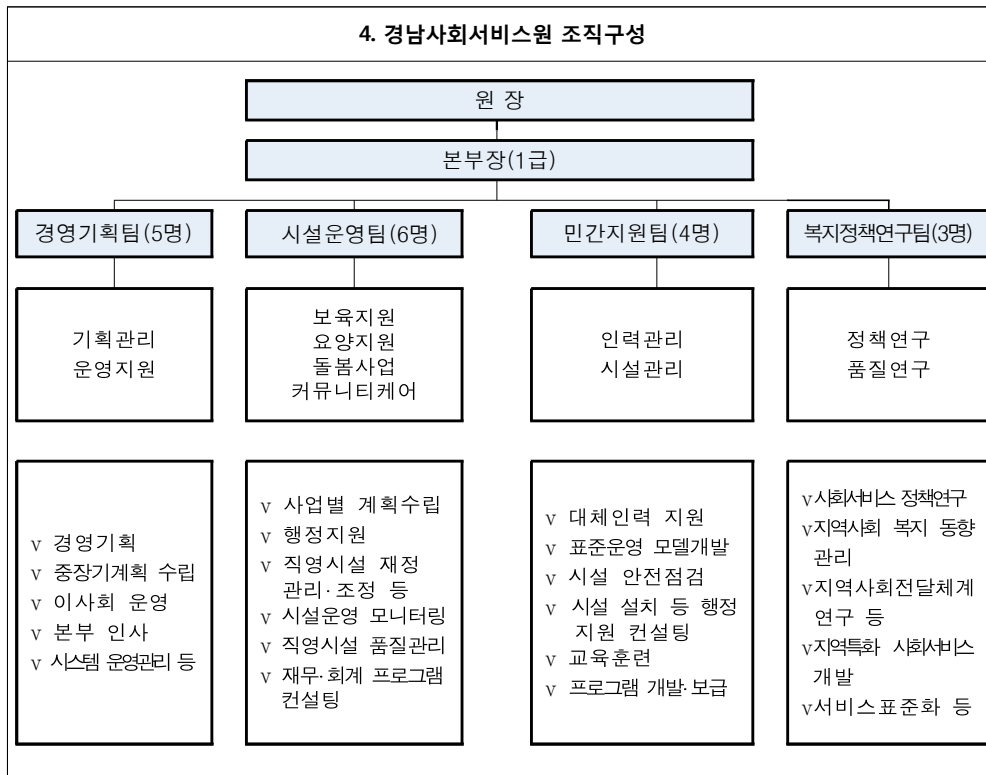
## 3. 경기사회서비스원 조직구성

## ○ 경기복지재단내 시범사업단 조직 구성 현황 및 내용



## ○ 경기 사회서비스원 법인 설립 이후 조직 확대예정 ('19.10월)





자료: 보건복지부 4차 제출(19.5.13)자료

## 나. 인건비

인건비를 추정하기 위해 연차별 소요인력과 인건비의 적정 단가를 추정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적정 인원수와 인건비 단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 1) 적정 인원수 추정

#### 가) 적정 인원수(검토안)

지자체별로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조직구성과 인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7개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소요인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구체적인 사업범위 및 수준 등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4개 지역 이외에 대한 지방사회서비

스원의 개소시기 및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또한, 시범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직의 구성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대구와 경남의 경우 지역내 지자체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역복지재단이 없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정책연구팀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7개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지역별 조직구성과 인력에 대한 적절성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에 제시된 지방사회서비스원 최소 본부 인력 20명(원장1명, 경영지원팀 5명, 시설운영팀 7명, 민간지원팀 7명)과 중앙지원단 10명(부단장 1명 정책지원팀 3명, 사업지원팀 3명, 평가연구팀 3명으로 구성)을 준용하기로 한다.

#### 나) 추가발생가능 비용 검토(소요 인원 변동 가능성)

##### ①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 적정성

보건복지부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 사회서비스원 설계 시 사전에 수행된 연구구용역(김윤수 외, 『정부주도 사회서비스 관리주체 설립운영 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7)을 통해 1개소당 70명 인원의 규모로 설계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정인력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원을 축소하여 20명으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연차별 직영시설 운영개수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하게 동일 인원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가정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보건복지부는 19년 개소하는 4개 지방院의 소속시설 종사자 수(2022년 기준, 11,220명)을 제시하고, 20년 이후 개소하는 지방院의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2020년 이후 소속시설 종사자 수는 매년 공모절차를 거쳐 지역이 확정된 후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와 정책환경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업운영계획이 수립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sup>69)</sup> 그러나, 소속시설 종사자 수를 추정해야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 소요인력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은 아래 <표 V-4>와 같이 2020년 이후 개소하는 나머지 지방院의 소속시설 종사자 수를 추정하였다.

69) 19.4.12 복지부 제출자료

&lt;표 V-4&gt; 2019~2023년 지방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종사자 수 추정

(단위: 명)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소속<br>시설<br>종사자<br>수 | 19년개소 (4개)   | 1,729 | 4,216 | 7,569  | 11,184 | 13,989 <sup>1)</sup> |
|                      | 20년개소 (4개)   | -     | 1,729 | 4,216  | 7,569  | 11,184               |
|                      | 21년개소 (4개)   | -     | -     | 1,729  | 4,216  | 7,569                |
|                      | 22년개소 (5개)   | -     | -     | -      | 2,161  | 5,270                |
|                      | 소속시설 종사자수(B) | 1,729 | 5,945 | 13,514 | 25,130 | 38,012               |
| 지방院 소속시설 종사자 수(A+B)  |              | 1,809 | 6,129 | 13,826 | 25,586 | 38,564               |

주: 1) 19년 개소하는 지방사회서비스원 4개소의 2023년 시설 종사자 수는 2022년 시설 종사자 수 11,220명을 기준으로 4년 연평균 증가인원인 2,805명을 더하여 13,989명으로 추정

1. 소속시설 종사자 수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4개소)에서 제시한 '19~22년의 소속시설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20년 이후에 개소하는 사회서비스원도 유사한 규모로 늘어나는 것을 가정
2. 연도별 인원은 누적인원을 나타냄

위의 <표 V-4> 지방사회서비스 본부인력 및 시설 종사자 수 추정에서 볼 수 있듯이 2023년의 지방사회서비스원 및 소속시설 종사자 수는 사업 첫해에 비해 약 21배 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아래 <표 V-5>와 같이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은 80명에서 340명으로 약 4.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lt;표 V-5&gt; 2019~2023년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복지부 계획안)

(단위: 명)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지방院<br>본부<br>인원<br>(복지부<br>계획) | 1개소당 인원        | 20    | 20    | 20     | 20     | 20     |
|                                | 19년개소 (4개)     | 80    | 80    | 80     | 80     | 80     |
|                                | 20년개소 (4개)     | -     | 80    | 80     | 80     | 80     |
|                                | 21년개소 (4개)     | -     | -     | 80     | 80     | 80     |
|                                | 22년개소 (5개)     | -     | -     | -      | 100    | 100    |
|                                | 지방院 본부인원수      | 80    | 160   | 240    | 340    | 340    |
| 연구진<br>추정                      | 지방院 소속시설 종사자 수 | 1,809 | 6,129 | 13,826 | 25,586 | 38,564 |

한편, 복지부에서 추가로 제출(19.6.11)한 아래 <표 V-6> 사회서비스원 인력규모 추계(안)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회서비스원 고용인력은 6.3만명(연차별 계획은 없음)으로 연구진이 추정한 25,586명의 2.4배에 해당한다.

&lt;표 V-6&gt; 사회서비스원 인력 규모(2022년 기준 추정)

(단위: 명, %)

| 구분            | 전체<br>종사<br>인력<br>① |           |                  | 서비스원<br>고용<br>② |              |                  | 비율<br>(%)<br>②/<br>① |
|---------------|---------------------|-----------|------------------|-----------------|--------------|------------------|----------------------|
|               |                     | 기존<br>'18 | 신규<br>( '19~'22) |                 | 기존<br>( '18) | 신규<br>( '19~'22) |                      |
| < 합 계 >       | 612,627             | 460,093   | 152,534          | 63,315          | 18,802       | 44,513           | 12                   |
| ① 시·도 서비스원 본부 | 350                 | -         | 350              | 350             | -            | 350              | 100                  |
| ① 국공립 제공기관    | 125,495             | 59,783    | 65,712           | 47,216          | 4,978        | 42,238           | 38                   |
| ② 종합재가센터      | 481,621             | 397,074   | 84,547           | 13,500          | 13,500       | -                | 5                    |
| ③ 공공센터        | 4,887               | 3,236     | 1,651            | 1,975           | 324          | 1,651            | 45                   |
| ④ 기타 사업       | 274                 | -         | 274              | 274             | -            | 274              | 100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6.11)자료

중앙지원단 인력이 지방사회서비스원 및 소속시설 종사자 수와 비례하여 변화할 필요는 없으나, 관리해야 할 지방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 시설운영지원 및 서비스원 종사자 교육 업무<sup>70)</sup>를 담당하는 인력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본부 인력 20명 고정에 대한 계획이 현실적인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②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중앙지원단의 설립기(2019년) 현재 인력 규모는 10명으로 정책지원팀, 평가·운영팀, 사업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중앙지원단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증가와 함께 각 지방사회서비스원별로 업무와 직영시설 개소수가 늘어날 계획임을 감안할 때 인력의 증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앙지원단 인력의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원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유사기관의 사례를 통해 중앙지원단 인력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0) 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안내』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원 종사자의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지방사회서비스원 본부직원(80명) 및 소속시설 종사자(400명) 등 약 480명으로 교육과정은 기본교육(사회서비스원 비전 및 가치관, 행정실무 기본 등), 직무교육(재무회계규칙, 행정실무 심화, 서비스 대상자 이해 및 상담기법 등), 성과위크숍(우수사례 공유 확산 및 시사점 등 개선사항 도출)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중앙(1개소) - 광역(18개소) - 시군구(86개소) (2019년 3월 기준)으로 이어지는 체계와 유사하며, 중앙과 지방(시·도)의 역할 배분도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 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직 규모와 구성을 살펴보면 총인원은 17명(2019년 5월 기준)<sup>71)</sup>이며, 센터장 1명, 보육사업지원팀 6명, 양육지원사업팀 4명, 센터운영지원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이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안정기 단계의 중앙지원단의 규모에 대해 추정해볼 필요가 있다.

### ③ 적정 소요인원에 대한 검토의견 종합

보건복지부에서는 4개 시범지역에서 제시한 국공립시설 운영에 대한 '19~'23년까지의 대략적인 시설 종사자 수를 근거로 지방사회서비스원 본원의 적정인원에 대해 추정하고, 유사사례 등을 참고하여 안정기 단계에서의 중앙지원단의 적정인원을 재추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 종사자 수의 인력증가에 따라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본부의 연차별 적정인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표 V-7> 2019~2023년 사회서비스원 본부인력(복지부 계획안)

(단위 : 명)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지방院<br>본부<br>인원 | 1개소당 인원   | 20    | 20    | 20    | 20    | 20    |
|                 | 19년개소(4개) | 80    | 80    | 80    | 80    | 80    |
|                 | 20년개소(4개) | -     | 80    | 80    | 80    | 80    |
|                 | 21년개소(4개) | -     | -     | 80    | 80    | 80    |
|                 | 22년개소(5개) | -     | -     | -     | 100   | 100   |
|                 | 지방院 본부인원수 | 80    | 160   | 240   | 340   | 340   |
| 중앙지원단 인원        |           | 10    | 10    | 10    | 10    | 10    |

주: 연도별 인원은 누적인원을 나타냄

7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조직도([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10000/d1\\_10009/d1\\_11000.jsp](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10000/d1_10009/d1_11000.jsp)), 검색일자: 2019.5월 기준

## 2) 1인당 인건비 단가 추정(검토안)

보건복지부의 계획안에서는 사회서비스원 본부 1인당 인건비를 40,000천원으로 제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인건비단가 추정 시 유사기관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개 기관을 선정하여 2016년 말 기준으로 직원평균 보수(42,135천원)를 참고하였으며, 신생조직임을 감안하여 이보다는 낮은 40,000천원으로 제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연구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인건비의 세부 구성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시도 산하 타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시도사회서비스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사회서비스원별로 보수 및 직급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도 사업초기 단계로 아직 보수규정이 완성되지 않아 인건비에 대한 비용을 면밀히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유사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원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직영시설 운영(국공립어린이집, 요양시설, 종합재가서비스센터 등), 민간기관 지원사업(시설안전점검, 대체인력지원사업, 경영컨설팅사업, 인력수급지원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실시하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기능 모두 복합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을 참고하여 비용을 추정하기로 한다. 인건비 단가는 지방사회서비스원과 중앙지원단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산정 시 유사기관으로 제시한 3개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노인들의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교육사업(노인 직무교육 강화 및 취업능력 제고, 노인일자리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등 실시), 정책연구사업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발급, 보육교직원 교육, 공공형 어린이집 품질관리 등 보육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보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원봉사사업인증, 전국푸드뱅크사업, 사회공헌센터운영, 디딤씨앗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건비 추정시 기준연도는 2017년 말 기준으로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과거 3개년 2015~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각 기관별 직원 평균 보수액을 산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3개 기관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직원 평균보수 1인당 연간 인건비는 43,255천원으로 추정되었다. 인건비 상승률은 「2019년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대비 1.8% 인상을 적용하기로 한다.

<표 V-8> 유사기관의 직원 평균보수 1인당 연간 인건비 추정(검토안)

(단위: 천원)

| 구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 한국보육진흥원     |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
|------------------|-------------|-------------|-------------|-------------|-------------|-------------|-------------|-------------|-------------|
|                  | 2015년<br>결산 | 2016년<br>결산 | 2017년<br>결산 | 2015년<br>결산 | 2016년<br>결산 | 2017년<br>결산 | 2015년<br>결산 | 2016년<br>결산 | 2017년<br>결산 |
| 1인당<br>평균<br>보수액 | 49,342      | 49,210      | 50,817      | 34,451      | 32,607      | 35,242      | 42,556      | 44,789      | 44,213      |
| 보정지수             | 102.9       | 101.9       | 100         | 102.9       | 101.9       | 100         | 102.9       | 101.9       | 100         |
| 보정지수<br>적용금액     | 50,773      | 50,145      | 50,817      | 35,450      | 33,227      | 35,242      | 43,790      | 45,640      | 44,213      |
| (15~17년)<br>평균   | 50,578      |             |             | 34,640      |             |             | 44,548      |             |             |
| 3개기관<br>평균       | 43,255      |             |             |             |             |             |             |             |             |

주: 1) 기준연도: 2017년 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managementItem.do>) 직원평균보수 현황자료(2019.5. 검색  
자료 기준)

복지부는 연구진의 인건비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방침을 근거로 세부 구성항목에 대한 자료를 미제출하여 세부적인 비용산정 근거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인건비 세부 구성항목은 보건복지부에서 참고하였던 유사기관의 직원평균보수 항목에 제시된 항목과 동일하게 인건비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기획재정부 알리오 자료에 의하면 직원 평균보수<sup>72)</sup>는 기본급, 고정수당(직책

72) 각 연도별 상시종업원 전체에 대해 지급된 보수액을 상시종업원 수로 나눈 금액

수당, 파견수당, 정액급식비 포함), 실적수당(시간외 근무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경영평가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연구진은 간접노동비인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sup>73)</sup>이 인건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2019.6.20, 1차 점검회의)하였다. 복지부는 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까지 고려한 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라는 답변을 하여 이들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V-9> 1인당 인건비 단가(계획안 및 검토안)

(단위: 천원)

| 구분         | 사업계획   | 검토안    |
|------------|--------|--------|
| 1인당 평균 보수액 | 40,000 | 43,255 |

### 3) 인건비 종합

복지부는 유사기관들의 인건비를 참고할 때 금액은 직원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나, 세부항목에 있어서 유사기관들이 포함하지 않은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원들보다 보수액이 높은 원장(1명)의 보수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직원들의 평균보수액은 유사기관에 비추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에는 인건비 상승률을 연간 3%로 가정하고 있는데, 연구진은 「2019년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대비 1.8% 인상을 적용하여 검토안의 금액을 산정하였다. 아래 <표 V-10>에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및 지방사회서비스원 1개소당 인건비와 '19~23년 중앙지원단(1개) 및 지방 院(17개)의 인건비에 대한 복지부 계획안과 검토안에 대한 비용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이 검토안에서 제시한 인건비는 복지부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인건비 단가 적용기준을 최근 연도(2017년 말)로 적용하여 유사기관들의 직원 평균보수액을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73) 4대보험(월) = 통상임금×10.4%, 퇴직적립금(월)=통상임금(월)×8.3%, 여기서 통상임금은 기본급+직책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된다(권찬호 외(2018),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연구』, p. 105 내용 참고).

## ①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1개소 인건비

&lt;표 V-10&gt;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1개소 인건비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 계획안                    | 검토안                      |
|----------------------------|------------------------|--------------------------|
| ① 1인당 평균 보수액               | 40,000<br>(전년대비 3% 상승) | 43,255<br>(전년대비 1.8% 상승) |
| ② 소요인력                     | 10명 고정                 | 10명 고정                   |
| '19~'23년<br>연간 인건비(①×②) 합계 | 2,123,654              | 2,242,023                |

주: 검토안에서 인건비 상승률은 「2019년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대비 1.8% 인상을 적용

## ② 지방사회서비스원 1개소당 인건비

&lt;표 V-11&gt; 지방사회서비스원 1개소당 인건비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                         | 계획안                    | 검토안                      |
|---------------------------|-------------------------|------------------------|--------------------------|
| 1개소                       | ① 1인당<br>평균 보수액         | 40,000<br>(전년대비 3% 상승) | 43,255<br>(전년대비 1.8% 상승) |
|                           | ② 소요인력                  | 20명 고정                 | 20명 고정                   |
|                           | '19~'23년<br>연간 인건비(①×②) | 개소<br>시기별 상이           | 개소<br>시기별 상이             |
| '19~'23년 인건비 합계<br>(17개소) |                         | 48,544,647             | 50,843,620               |

## ③ 2019~2023년 중앙지원단(1개) 및 지방 院(17개) 인건비 추정(계획안)

&lt;표 V-12&gt; 복지부 계획안 인건비

(단위: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
| 중앙      | 1인당인건비<br>(3% 상승 가정)                        | 40,000                 | 41,200                  | 42,436    | 43,709     | 45,020     |            |            |
|         | 인원<br>(10명 고정 가정)                           | 10                     | 10                      | 10        | 10         | 10         |            |            |
|         | A. 인건비 합<br>(1인당 인건비×인원)                    | 400,000                | 412,000                 | 424,360   | 437,091    | 450,204    | 2,123,654  |            |
| 지방<br>院 | B                                           | ①인원<br>(20명 고정 가정)     | 20                      | 20        | 20         | 20         |            |            |
|         |                                             | ②1인당 인건비<br>(3% 상승 가정) | 40,000                  | 41,200    | 42,436     | 43,709     | 45,020     |            |
|         |                                             | ③1개소 총인건비              | 800,000                 | 824,000   | 848,720    | 874,182    | 900,407    | 4,247,309  |
|         |                                             | ④ 19년 개소(4개)<br>인건비    | 1,600,000 <sup>1)</sup> | 3,296,000 | 3,394,880  | 3,496,726  | 3,601,628  | 15,389,235 |
|         | C                                           | ①인원<br>(20명 고정 가정)     | -                       | 20        | 20         | 20         | 20         |            |
|         |                                             | ②1인당 인건비<br>(3% 상승 가정) | -                       | 41,200    | 42,436     | 43,709     | 45,020     |            |
|         |                                             | ③1개소 총인건비              | -                       | 824,000   | 848,720    | 874,182    | 900,407    | 3,447,309  |
|         |                                             | ④ 20년 개소(4개)<br>인건비    | -                       | 3,296,000 | 3,394,880  | 3,496,726  | 3,601,628  | 13,789,235 |
|         | D                                           | ①인원<br>(20명 고정 가정)     | -                       | -         | 20         | 20         | 20         |            |
|         |                                             | ②1인당 인건비<br>(3% 상승 가정) | -                       | -         | 42,436     | 43,709     | 45,020     |            |
|         |                                             | ③1개소 총인건비              | -                       | -         | 848,720    | 874,182    | 900,407    | 2,623,309  |
|         |                                             | ④ 21년 개소(4개)<br>인건비    | -                       | -         | 3,394,880  | 3,496,726  | 3,601,628  | 10,493,235 |
|         | E                                           | ①인원<br>(20명 고정 가정)     | -                       | -         | -          | 20         | 20         |            |
|         |                                             | ②1인당 인건비<br>(3% 상승 가정) | -                       | -         | -          | 43,709     | 45,020     |            |
|         |                                             | ③1개소 총인건비              | -                       | -         | -          | 874,182    | 900,407    | 1,774,589  |
|         |                                             | ④ 22년 개소(5개)<br>인건비    | -                       | -         | -          | 4,370,908  | 4,502,035  | 8,872,943  |
|         | F. 지방院 인건비 합계<br>(B④ ~ E④의 합) <sup>2)</sup> |                        | 1,600,000               | 6,592,000 | 10,184,640 | 14,861,087 | 15,306,920 | 48,544,647 |
|         | 연도별 인건비<br>(A+F의합계)                         |                        | 2,000,000               | 7,004,000 | 10,609,000 | 15,298,178 | 15,757,123 | 50,668,301 |
|         | '19~'23년<br>중앙(1개)+지방(17개)<br>인건비 합         |                        | 50,668,301              |           |            |            |            |            |

주: 1) 복지부는 '19년 지방사회서비스원 4개의 개소시기를 하반기로 보고 6/12개월의 인건비로 산정

2) 지방사회서비스원 개소시기별 B~E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인건비를 계산함

## ④ 2019~2023년 중앙지원단(1개) 및 지방 院(17개) 인건비 추정(검토안)

&lt;표 V-13&gt; 복지부 검토안 인건비 추정

(단위: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 중앙                                  | 1인당인건비<br>(1.8% 상승 가정)                       | 43,255     | 44,034    | 44,826     | 45,633     | 46,454     |            |
|                                     | 인원<br>(10명 고정 가정)                            | 10         | 10        | 10         | 10         | 10         |            |
|                                     | A. 인건비 합<br>(1인당 인건비×인원)                     | 432,550    | 440,336   | 448,262    | 456,331    | 464,545    | 2,242,023  |
| 지방 院                                | ①인원<br>(20명 고정 가정)                           | 20         | 20        | 20         | 20         | 20         |            |
|                                     | ②1인당 인건비<br>(1.8% 상승 가정)                     | 43,255     | 44,034    | 44,826     | 45,633     | 46,454     |            |
|                                     | ③1개소 총인건비                                    | 865,100    | 880,672   | 896,524    | 912,661    | 929,089    | 4,484,046  |
|                                     | ④ 19년 개소(4개)<br>인건비                          | 1,730,200  | 3,522,687 | 3,586,096  | 3,650,645  | 3,716,357  | 16,205,985 |
|                                     | ①인원<br>(20명 고정 가정)                           | -          | 20        | 20         | 20         | 20         |            |
|                                     | ②1인당 인건비<br>(1.8% 상승 가정)                     | -          | 44,034    | 44,826     | 45,633     | 46,454     |            |
|                                     | ③1개소 총인건비                                    | -          | 880,672   | 896,524    | 912,661    | 929,089    | 3,618,946  |
|                                     | ④ 20년 개소(4개)<br>인건비                          | -          | 3,522,687 | 3,586,096  | 3,650,645  | 3,716,357  | 14,475,785 |
|                                     | ①인원<br>(20명 고정 가정)                           | -          | -         | 20         | 20         | 20         |            |
|                                     | ②1인당 인건비<br>(1.8% 상승 가정)                     | -          | -         | 44,826     | 45,633     | 46,454     |            |
|                                     | ③1개소 총인건비                                    | -          | -         | 896,524    | 912,661    | 929,089    | 2,738,274  |
|                                     | ④ 21년 개소(4개)<br>인건비                          | -          | -         | 3,586,096  | 3,650,645  | 3,716,357  | 10,953,098 |
|                                     | ①인원<br>(20명 고정 가정)                           | -          | -         | -          | 20         | 20         |            |
|                                     | ②1인당 인건비<br>(1.8% 상승 가정)                     | -          | -         | -          | 45,633     | 46,454     |            |
|                                     | ③1개소 총인건비                                    | -          | -         | -          | 912,661    | 929,089    | 1,841,751  |
|                                     | ④ 22년 개소(5개)<br>인건비                          | -          | -         | -          | 4,563,307  | 4,645,446  | 9,208,753  |
|                                     | F. 지방 院 인건비 합계 <sup>1)</sup><br>(B④ ~ E④의 합) | 1,730,200  | 7,045,374 | 10,758,287 | 15,515,242 | 15,794,517 | 50,843,620 |
| 연도별 인건비<br>(A+F의 합계)                |                                              | 2,162,750  | 7,485,710 | 11,206,549 | 15,971,573 | 16,259,061 | 53,085,644 |
| '19~'23년<br>중앙(1개)+지방(17개)<br>인건비 합 |                                              | 53,085,644 |           |            |            |            |            |

주: 1) 지방사회서비스원 개소시기별 B~E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인건비를 계산함

## ⑤ 2019~2023년 중앙지원단(1개) 및 지방 院(17개) 인건비 추정안 비교

&lt;표 V-14&gt; 2019~2023년 인건비 추정안 비교(계획안 및 검토안)

(단위: 천원)

| 구분         |                  |                     | 계획안                    | 검토안                      |
|------------|------------------|---------------------|------------------------|--------------------------|
| A. 중앙(1개)  |                  |                     | 2,123,654              | 2,242,023                |
| B. 지방(17개) |                  |                     | 48,544,647             | 50,843,620               |
| 합계 (A+B)   |                  |                     | 50,668,301             | 53,085,644               |
| 비교         | 1인당<br>인건비단가     |                     | 40,000<br>(연 3% 상승 가정) | 43,255<br>(연 1.8% 상승 가정) |
|            | 소<br>요<br>인<br>력 | 1개소당 인원수<br>(지방 院)  | 20명 고정                 | 20명 고정                   |
|            |                  | 1개소당 인원수<br>(중앙지원단) | 10명 고정                 | 10명 고정                   |

## 나. 운영비

본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인 운영비를 검토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세부항목은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된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경우 시설비와 운영비가 있으며, 지방사회서비스원은 시설비, 사업·운영비가 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하여 2019년 5월 8일 비용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16일에 관련 내용을 회신하였다. 그러나 회신내용은 사업계획서 및 복지부 2차 제출자료(19.3.29)에 제시된 항목과 동일하였으며 항목별 근거나 세부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사업계획안의 운영비 추정의 근거를 면밀히 파악할 수 없었다.

## 1)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보건복지부의 2차(19.3.29) 및 4차 제출자료(19.5.16)에 제시된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2019년~23년 시설비와 운영비는 아래 표와 같다.



&lt;표 V-15&gt;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19년 시설비 및 운영비 산정 항목 및 근거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내 용                                                                                                                              | 비고         |
|-----|-----|----------------------------------------------------------------------------------------------------------------------------------|------------|
| 시설비 | 80  | 임대료 45백만원+보증금 35백만원 = 80백만원                                                                                                      | 국비 100% 지원 |
| 운영비 | 528 | 운영비(지방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및 교육, 평가 등): 528백만원<br>-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100백만원<br>-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홍보: 100백만원<br>- 일반 운영비(인쇄비, 여비 등): 328백만원 | 국비 100% 지원 |

자료: 복지부 2차 제출(19.3.29)자료 바탕으로 정리

&lt;표 V-16&gt;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시설비 및 운영비 예산규모

(단위: 천원)

| 구분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계         |
|-----|-------------------------|---------|---------|---------|---------|---------|-----------|
| 시설비 | 보증금                     | 35,000  | -       | -       | -       | -       | 35,000    |
|     | 임대료                     | 45,000  | 46,000  | 48,000  | 49,000  | 51,000  | 239,000   |
| 운영비 |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 100,000 | 103,000 | 106,000 | 109,300 | 112,500 | 530,800   |
|     |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홍보          | 100,000 | 103,000 | 106,000 | 109,300 | 112,500 | 530,800   |
|     | 일반운영비 (여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 | 328,000 | 338,000 | 348,000 | 358,400 | 369,000 | 1,741,400 |
| 계   |                         | 608,000 | 590,000 | 608,000 | 626,000 | 645,000 | 3,077,000 |

자료: 보건복지부 4차 제출자료(19.5.16)

## 가) 시설비 (검토안)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시설비는 보증금 35,000천원과 임대료 45,000천원이나 해당 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산정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2019년 5월 현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충청북도 오송의 '충청북도 C&V센터'에 위치하고 있다. 연구진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현재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설치비를 재추정

했다. 보다 정확한 임대료 산출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2015~17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자료 중 충청북도의 오피스 임대항목을 우선 검토하였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원은 전국적으로 설치될 예정이고 시설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임대료 산출에는 전국평가를 사용했다.

<표 V-17> 2015~17년 충청북도 및 전국 평균 오피스 임대료, 전환율, 전용률

| 구분                   | 충청북도     |          |          | 전국평균      |           |           |
|----------------------|----------|----------|----------|-----------|-----------|-----------|
|                      | 2015     | 2016     | 2017     | 2015      | 2016      | 2017      |
| 오피스 1㎡당 평균 임대료(원)    | 4,518.37 | 4,482.26 | 4,256.18 | 14,787.37 | 14,755.26 | 17,234.33 |
| 임대료 상승률(%)           | -2.20%   | -0.80%   | -5.04%   | -0.19%    | -0.22%    | 16.80%    |
| 15~17년 평균 임대료 상승률(%) | -2.68    |          |          | 5.46      |           |           |
| 전환율(%)               | 12.06    | 11.98    | 9.00     | 11.43     | 11.27     | 9.90      |
| 15~17년 평균 전환율(%)     | 11.01    |          |          | 10.87     |           |           |
| 전용률(%)               | 61.5     | 61.5     | 63.2     | 58.1      | 58.0      | 56.8      |
| 15~17년 평균 전용률(%)     | 62.1     |          |          | 57.6      |           |           |
| 보정지수                 | 102.9    | 101.9    | 100      | 102.9     | 101.9     | 100       |
| 보정지수 적용금액(원)         | 4,649.40 | 4,567.42 | 4,256.18 | 15,216.20 | 15,035.61 | 17,234.33 |
| 15~17년 평균 임대료(원)     | 4,491.00 |          |          | 15,828.71 |           |           |

주: 전환율은 임대인의 요구수익률로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보증금 또는 전세로 전환하기 위해 사용 전환율 = (월세×12) / (전세-보증금) (ex) 현재 전세기준 임대료가 1억원인 건물이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90만원으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 (90만원×12) / (1억원-1천만원) = 0.12 (12%)

자료: 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15, 2016, 2017

임대료 계산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면적을 파악해야 하므로 본 조사에서는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과 「[부록]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활용하였다.

&lt;표 V-18&gt;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사무실 면적)

| 계급별        | 구분                                       | 일반사무실<br>(제곱미터) | 단독사무실<br>(제곱미터)            | 비고                                       |
|------------|------------------------------------------|-----------------|----------------------------|------------------------------------------|
| 장관급        |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br>위원실                      |                 | 165<br>99                  | 집무실·접견실·비서실<br>집무실·비서실                   |
| 차관급        | 차관실·처의 차장실<br>청장실<br>차관급 기관장실<br>위원실     |                 | 99<br>99<br>99<br>66       | 집무실·비서실<br>집무실·비서실<br>집무실·비서실<br>집무실·비서실 |
| 차관보급<br>1급 | 차관보실<br>기획관리실장실<br>청의 차장실<br>기관장실<br>위원실 |                 | 50<br>50<br>66<br>66<br>33 | 집무실<br>집무실<br>집무실·비서실<br>집무실·부속실<br>집무실  |
| 2·3급       | 국장실·담당관실<br>기관장실<br>위원<br>3급과장           | 17<br>17        | 33<br>50                   | 집무실<br>집무실·부속실<br>집무면적<br>집무면적           |
| 4급         | 국장·과장<br>서기관<br>기관장실                     | 17<br>7         | 33                         | 집무면적<br>집무면적<br>집무실·부속실                  |
| 5급         | 과장<br>사무관<br>기관장실                        | 17<br>7         | 17                         | 집무면적<br>집무면적<br>집무실                      |
| 6급 이하      | 과장<br>일반직원<br>기관장                        | 10<br>7<br>17   |                            | 집무면적<br>집무면적<br>집무면적                     |

주: 1. 각 기준면적은 실·과의 업무 형태 및 특성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2.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청사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법령/정부청사관리규정\\_시행규칙](http://www.law.go.kr/법령/정부청사관리규정_시행규칙) 검색일자: 2019.5.27.

&lt;표 V-19&gt; 청사시설 기준표

| 용도별  | 시 설 명      | 기 준                                                        | 비 고                            |
|------|------------|------------------------------------------------------------|--------------------------------|
| 업무시설 | 1. 상황실     |                                                            |                                |
|      | 장관급 기관     | 165㎡                                                       |                                |
|      | 차관급 기관     | 132㎡                                                       |                                |
|      | 2. 회의실     | 50㎡ + 0.7㎡ x (정원-20인)                                      | 20인 이하는 미설치                    |
| 보조시설 | 1. 식 당     | 정 원 × 1.5㎡ × 1/3                                           | 주방포함                           |
| 저장시설 | 1. 창 고     | 순사무실면적 × 7%                                                | 특수용도의 창고는 기관별<br>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 2. 문서고     | 순사무실면적 × 7%                                                |                                |
| 관리시설 | 1. 수위실     | 근무자수 × 3㎡                                                  | 출입면적 별도산정                      |
|      | 2. 당직실     | 당직자수 × 10㎡                                                 |                                |
|      | 3. 차 고     | 대형차 20㎡ × 관용차량 수<br>중형차 15㎡ × 관용차량 수<br>소형차 13.2㎡ × 관용차량 수 |                                |
|      | 4. 지하주차장 등 | 45㎡                                                        |                                |
|      | 5. 운전원대기실  | 운전원수 × 1.65㎡                                               |                                |
| 편의시설 | 1. 휴게실     | 9.9㎡+(정원-24인)×0.22㎡                                        | 정원 24인 미만 제외                   |
|      | 2. 이발실     | 6.6㎡+(정원-60인)×0.1㎡                                         | 정원 60인 미만 제외                   |
|      | 3. 의무실     | 22㎡+(정원-100인)×0.048㎡                                       | 정원 100인 미만 제외                  |
|      | 4. 체육실     | 75㎡+(정원-100인)×0.16㎡                                        | 정원 100인 미만 제외                  |

인건비 추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실제 인력 구성은 10명으로 부단장 1명, 팀장 3명, 팀원 6명(대리 2명, 주임 1명, 사원 3명)이다. 이는 현재 위탁으로 인한 겸임직 단장 및 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개별 운영 시에 단장실 또는 원장실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기관장실을 단장급으로 고려하여 추정한다. 본 조사에서는 청사관리 규정시행 규칙의 중앙공무원 계급별 사무실 면적을 중앙지원단 원장을 4급으로 하여 <표 V-20>과 같이 비교하였다.<sup>74)</sup> 기타필요시설의 경우 청사시설 기준표에 근거하여 회의실, 창고, 문서고, 휴게실의 면적을 추가로 산출하였다. 단,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회의실 및 휴게실의 인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면적을 최소 규모로 산출하여 추가하였다.

7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문임기제 채용 공고 제 2019-5호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팀장을 국가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에 재직한 자를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매칭하였음

&lt;표 V-20&gt; 중앙공무원 계급과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직급 비교

| 중앙공무원 계급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직급 | 직급별 필요면적(㎡) |
|----------|----------------|-------------|
| 4급       | 원장             | 33(기관장실)    |
| 5급       | 단장             | 17(기관장실)    |
|          | 부단장            | 7(사무관)      |
| 6급 이하    | 팀장             | 7(일반직원)     |
|          | 대리             |             |
|          | 주임, 사원         |             |

자료: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 114

&lt;표 V-21&gt; 청사시설 기준표 중 기타필요시설 필요면적

| 기타 필요 시설 | 필요면적(㎡)                                                    | 비고                          |
|----------|------------------------------------------------------------|-----------------------------|
| 회의실      | $50\text{㎡} + 0.7\text{㎡} \times (\text{정원}-20\text{인})$   | 20인 이하는 미설치                 |
| 창고       | 순사무실면적 $\times 7\%$                                        | 특수용도의 창고는 기관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 문서고      | 순사무실면적 $\times 7\%$                                        |                             |
| 휴게실      | $9.9\text{㎡} + (\text{정원}-24\text{인}) \times 0.22\text{㎡}$ | 정원 24인 미만 제외                |

자료: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lt;표 V-22&gt;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임차료 검토안

(단위 : 명, 원)

| 구분                   |                | 검토안(총인원 10명) |         |
|----------------------|----------------|--------------|---------|
|                      |                | 인원 및 개수      | 필요면적(㎡) |
| 사무실                  | 단장             | 1            | 17.00   |
|                      | 부단장            | 1            | 7.00    |
|                      | 팀장, 대리, 주임, 사원 | 9            | 63.00   |
| 사무실소계(A)             |                | 11           | 87.00   |
| 기타<br>필요시<br>설       | 회의실            | 1            | 50.00   |
|                      | 창고             | 1            | 6.09    |
|                      | 문서고            | 1            | 6.09    |
|                      | 휴게실            | 1            | 9.9     |
| 기타필요시설소계(B)          |                | -            | 72.74   |
| 총사무실 면적(C=A+B)       |                |              | 159.74  |
| 오피스 평균 전용률(D, %)     |                | 57.60        |         |
| 실임대 요구면적 (E=C/D*100) |                | 276.18       |         |
| 지역구분                 |                | 충청북도         | 전국평균    |

| 구분                        | 검토안(총인원 10명) |                       |
|---------------------------|--------------|-----------------------|
|                           | 인원 및 개수      | 필요면적(m <sup>2</sup> ) |
| (15~17년) 평균 임대료(F)        | 4491.00      | 15,828.71             |
| 완전 월세액 (G=E*F*12)         | 14,883,823   | 52,458,983            |
| 평균 전환율(%H)                | 10.87        |                       |
| 보증금(I)                    | 35,000,000   |                       |
| 보증금 후 1년 임차료(J=G-I*H/100) | 11,079,423   | 48,654,483            |

주: \*완전월세액=보증금×전환율\*+월세, 월세=완전월세액-보증금\*전환율

위의 표에서 산출한 1개년 임차료에 앞의 <표 V-17>에서 산출한 2015~17년 오피스 빌딩 임대료 전국평균 상승률 5.46%를 적용하여 2023년까지의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재추정한 시설비는 아래 표와 같다.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인력이 10명으로 충청북도 오송에서 고정 운영될 경우에는 <표 V-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설비가 과대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의 가정에서 사용하기로 한 전국 평균 임차료를 반영할 경우 보건복지부 제시안보다 다소 높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표 V-23> 보건복지부 계획안 및 검토안 비교

(단위: 천원)

| 구분    | 계획안     |        | 검토안     |        |
|-------|---------|--------|---------|--------|
|       | 보증금     |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료    |
| 2019  | 35,000  | 45,000 | 35,000  | 48,654 |
| 2020  | -       | 46,000 | -       | 51,311 |
| 2021  | -       | 48,000 | -       | 54,113 |
| 2022  | -       | 49,000 | -       | 57,067 |
| 2023  | -       | 51,000 | -       | 60,183 |
| 시설비 계 | 274,000 |        | 306,328 |        |

#### 나) 운영비(검토안)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비는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홍보, 일반운영비(여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항목별 사업 내용 등의 근거나 세부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의 운영비 추정 근거를 면밀히 파악할 수 없었다. 연구진은 세부항목별 검토를 위하여 비용 세부항목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내용을 2019년 6월 현재까지 제공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비는 기관 최초 설립에 따른 1회성의 자산취득비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구분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신규기관인 만큼 집기, 비품 등 최초 설치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개소시기의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1억원을 10명으로 나눈 1인당 자산구입비 1천만원으로 설정하여 인력 수에 비례하여 반영하였다. 이는 1회성의 비용이므로 개소년도인 2019년에만 적용하였다. 신규 인원에 대한 자산취득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불충분하지만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2018.7.4.)에서 사용된 1인당 자산취득비<sup>75)</sup>가 500만원이므로 과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경상운영비에 대한 정의는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sup>76)</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경상경비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 I」은 공공기관 경상운영비를 ‘공공기관의 운영과 영업유지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 일반적으로 기관 운영과 관련된 행사,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나 임직원이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비, 매식비나 명절선물비 등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경상운영비의 대부분이 인력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성격을 가진 비용이므로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비를 유사기관의 1인당 경상운영비를 산출한 후 인력 수에 비례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2019년 6월 현재, 사회서비스원의 유사기관 중 한국보육진흥원만이 유일하게 경상

75) 동 비용추계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내부자료(2017년 기준)를 활용하여 500만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다.

76) p. 12

운영비의 세부 항목별 비용을 공시하고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경상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임차료,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등 구입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홍보, 일반운영비(여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는 경상운영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사기관의 1인당 경상운영비 검토를 위해 알리오 및 클린아이에 공시된 기관별 수입 및 지출 현황자료와 임직원 수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인건비 추정에서 확인한 3개 유사 공공기관에 추가적으로 광역복지재단 5개소의 1인당 경상경비를 산출하여 평균금액(19,241,974 원)을 1인당 경상운영비로 추정하였다. 총경상운영비는 1인당 경상운영비를 인력 수에 비례하여 재추정하였다

<표 V-24> 유사 공공기관 2015~17년 경상운영비 현황

(단위: 원, 명)

| 구분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
| 2015       | 경상운영비     | 3,125,174,852 | 1,258,000,000 | 1,003,000,000 |
|            | 임직원총계     | 108           | 87            | 86            |
|            | 1인당 경상운영비 | 28,936,804    | 14,459,770    | 11,662,791    |
| 2016       | 경상운영비     | 3,058,235,500 | 1,125,000,000 | 1,035,000,000 |
|            | 임직원총계     | 111           | 109           | 87            |
|            | 1인당 경상운영비 | 27,551,671    | 10,321,101    | 11,896,552    |
| 2017       | 경상운영비     | 3,051,929,580 | 1,256,000,000 | 1,071,000,000 |
|            | 임직원총계     | 135           | 109           | 89            |
|            | 1인당 경상운영비 | 22,606,886    | 11,522,936    | 12,033,708    |
| 보정지수 적용금액  |           |               |               |               |
| 2015       | 102.9     | 29,775,972    | 14,879,103    | 12,001,012    |
| 2016       | 101.9     | 28,075,153    | 10,517,202    | 12,122,586    |
| 2017       | 100       | 22,606,886    | 11,522,936    | 12,033,708    |
| 3개년평균      |           | 26,819,337    | 12,306,414    | 12,052,435    |
| 3개 유사기관 평균 |           | 17,059,395    |               |               |

주: 1) 기준연도: 2017년 말  
 자료: 기획재정부 알리오 홈페이지(<http://www.alio.go.kr/managementItem.do>) 현황자료(2019.5. 검색자료 기준)



&lt;표 V-25&gt; 광역복지재단 2015~17년 경상경비 현황

(단위: 원, 명)

| 구분           |             | 대전복지재단        | 부산복지개발원     | 서울시복지재단       | 경북행복재단        | 경기복지재단        |
|--------------|-------------|---------------|-------------|---------------|---------------|---------------|
| 2015         | 경상경비        | 1,310,558,891 | 731,400,302 | 2,501,251,298 | 794,510,000   | 813,435,390   |
|              | 총인원         | 45            | 28          | 152           | 20            | 66            |
|              | 1인당<br>경상경비 | 29,123,531    | 26,121,439  | 16,455,601    | 39,725,500    | 12,324,779    |
| 2016         | 경상경비        | 1,415,130,000 | 612,300,184 | 2,844,637,632 | 628,167,000   | 1,011,254,000 |
|              | 총인원         | 78            | 28          | 165           | 34            | 69            |
|              | 1인당<br>경상경비 | 18,142,692    | 21,867,864  | 17,240,228    | 18,475,500    | 14,655,855    |
| 2017         | 경상경비        | 1,304,519,000 | 441,726,000 | 2,748,527,594 | 1,248,792,646 | 1,318,654,000 |
|              | 총인원         | 56            | 28          | 149           | 35            | 79            |
|              | 1인당<br>경상경비 | 23,294,982    | 15,775,929  | 18,446,494    | 35,679,790    | 16,691,823    |
| 보정지수적용금액     |             |               |             |               |               |               |
| 2015         | 102.9       | 29,968,113    | 26,878,961  | 16,932,813    | 40,877,540    | 12,682,197    |
| 2016         | 101.9       | 18,487,403    | 22,283,353  | 17,567,792    | 18,826,535    | 14,934,316    |
| 2017         | 100         | 23,294,982    | 15,775,929  | 18,446,494    | 35,679,790    | 16,691,823    |
| 3개년평균        |             | 23,916,833    | 21,646,081  | 17,649,033    | 31,794,621    | 14,769,445    |
| 5개복지재단<br>평균 |             | 21,955,203    |             |               |               |               |

주: 1) 기준연도: 2017년 말

자료: 클린아이 홈페이지(<http://www.cleaneeye.go.kr/>) 자료(2019.5. 검색자료 기준)

## 다) 추가발생 가능 비용 검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시설비 및 운영비 항목에 대한 상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 시설비의 경우 정확한 시설비 산정을 위해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현재 설립 지역의 최근 오피스 임대료를 확인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는 중앙지원단 인력 규모 및 수행 업무에 필요한 임대 면적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나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중앙지원단의 인력이 추가될 경우 임대료도 증가할 수 있

다는 점도 고려하여 시설비를 재추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운영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최초자산취득비와 경상경비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만 운영비의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인력이 증가할 경우 운영비도 인력 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필요 인력 수 및 수행 예정 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시설비 및 운영비를 세부항목별로 책정근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사회서비스원 증가에 따른 관리 인력 증가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 후 추가로 발생 가능한 비용에 대해서도 자세한 검토가 요구된다.

## 2) 지방사회서비스원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는 초기설치비와 운영비, 사업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019년 지방사회서비스원 예산은 아래 표와 같다. 지방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4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하므로 개소시기에 따라 소요 비용에 차이가 있다.

<표 V-26> '19년 지방사회서비스원(4개) 비용 산정 항목 및 근거

| (단위 : 백만원) |       |                                                                                                                                                                                                                                                                                                                                                                                                      |                          |
|------------|-------|------------------------------------------------------------------------------------------------------------------------------------------------------------------------------------------------------------------------------------------------------------------------------------------------------------------------------------------------------------------------------------------------------|--------------------------|
| 구분         | 금액    | 내 용                                                                                                                                                                                                                                                                                                                                                                                                  | 비고                       |
| 시설비        | 2,000 | 500백만원×4개소 = 2,000백만원(1개소당 500백만원)                                                                                                                                                                                                                                                                                                                                                                   | 국비 100%<br>(단년도 정액 지원)   |
| 사업·운영비     | 4,320 | 1,080백만원×4개소 = 4,320백만원(1개소당 1,080백만원)<br><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안전점검 등 민간 제공기관 지원사업: 100백만원</li> <li>- 종사자 교육훈련: 185백만원</li> <li>-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 150백만원</li> <li>-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200백만원</li> <li>- 사회서비스원 사업 홍보: 100백만원</li> <li>- 지역 사회서비스자원 등 조사·통계 등 연구: 50백만원</li> <li>- 현장 모니터링(매뉴얼 마련 및 현장 모니터링 등): 50백만원</li> <li>- 일반운영비(여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 245백만원</li> </ul> | 3년간 국비 50%, 3년 이후 국비 30% |

자료: 복지부 2차 제출(19.3.29)자료 바탕으로 정리

&lt;표 V-27&gt; 2019년 설립 지방사회서비스원 1개소 예산(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단위: 천원)

| 항목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시설비 | 사회서비스원 본부 1개소,<br>종합재가센터 2개소 | 500,000 |         |         |         |         |
| 사업비 | 시설안전점검<br>(민간제공기관 지원사업)      | 100,000 | 103,000 | 106,100 | 109,270 | 112,600 |
|     | 종사자 교육훈련                     | 185,000 | 190,500 | 196,300 | 202,100 | 208,300 |
|     | 조사 통계 등 연구                   | 50,000  | 51,500  | 53,100  | 54,630  | 56,300  |
|     | 현장 모니터링                      | 50,000  | 51,500  | 53,100  | 54,630  | 56,300  |
|     | 사업비 계                        | 385,000 | 396,500 | 408,600 | 420,630 | 433,500 |
| 운영비 |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 150,000 | 154,500 | 159,200 | 163,900 | 168,900 |
|     |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200,000 | 206,000 | 212,200 | 218,500 | 225,200 |
|     | 사회서비스원 사업 홍보                 | 100,000 | 103,000 | 106,100 | 109,270 | 112,600 |
|     | 일반운영비<br>(여비, 인쇄비, 공공요금등)    | 245,000 | 252,000 | 259,900 | 267,700 | 275,800 |
|     | 운영비 계                        | 695,000 | 715,500 | 737,400 | 759,370 | 782,500 |

자료: 보건복지부 4차 제출자료(19.5.16)를 바탕으로 정리

## 가) 초기설치비(시설비 검토안)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16일 제출자료에서 지방사회서비스원 시설비 5억원은 사회서비스원 본부 1개소와 종합재가센터 2개소 설치비 명목이며, 단년도 국비 100%정액지원으로 시·도 여건에 따라 신축 또는 기존 공간 리모델링, 임대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초기설치비 5억원은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도별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면밀히 재추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검토안에서도 동일하게 준용하기로 한다.

## 나) 운영비(검토안)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는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회서비스원 사업 홍보, 일반운영비(여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

단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는 항목별 사업 내용 등의 근거나 세부 비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 또한 기관 최초 설립에 따른 1회성의 자산취득비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구분하여 추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자산취득비와 경상경비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를 제시해야만 운영비의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다.

사회서비스원이 신규기관인 만큼 집기, 비품 등 최초 설치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방사회서비스원 개소시기의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1억 5천만원을 인력 수 20명으로 나눈 1인당 7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설정하여 인력 수에 비례하여 최초 개소 시에 1회 반영하였다. 지방사회서비스원 역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신규 인원에 대한 자산취득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2018.7.4.)에서 사용된 1인당 자산취득비<sup>77)</sup>가 500만원이므로 과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경상운영비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비용 추정에서 사용한 유사기관 사례를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를 재추정에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의 운영비 추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경상운영비(또는 경상경비)는 기관의 운영과 영업유지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뜻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방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세부항목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사회서비스원 사업 홍보, 일반운영비(여비, 인쇄비, 공공요금 등) 중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경상운영비에 해당한다. 전산시스템 구축비의 경우 시스템 구축 이후에는 유지보수비용이 경상운영비로 지출되므로 시스템 구축비용만 개별 추정하여 최초 개소 시에만 적용하였다. 이를 제외한 경상운영비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에서 운영비에서 추정한 1인당 경상운영비 19,241,974원을 인력 수에 비례하여 산출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는 개별 사회서비스원의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연구진은 2019년 5월 8일 비용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19년 5월 16일에 회신 자료에 세부항목을 제시하지 않았다.

77) 동 비용추계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내부자료(2017년 기준)를 활용하여 500만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연구진은 2015~17년 동안의 공공조달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용역 계약금액을 산출하여 사회서비스원의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을 추정하였다. 유지보수 비용의 경우 앞에서 산출한 정상운영비에 포함되므로 따로 산정하지 않았다.

<표 V-28> 2015~17년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공공조달 현황  
(단위: 건, 원)

| 항목             | 수요기관 구분     | 연도   | 조달 건수 | 계약금액        | 보정 지수 | 보정지수 적용금액   | 2015~17년 평균 |
|----------------|-------------|------|-------|-------------|-------|-------------|-------------|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 지자체         | 2015 | 495   | 251,965,362 | 102.9 | 259,272,358 | 207,425,610 |
|                |             | 2016 | 604   | 235,783,142 | 101.9 | 240,263,022 |             |
|                |             | 2017 | 304   | 122,741,452 | 100.0 | 122,741,452 |             |
|                | 지방 공기업      | 2015 | 34    | 396,572,045 | 102.9 | 408,072,634 | 298,126,542 |
|                |             | 2016 | 53    | 214,778,245 | 101.9 | 218,859,032 |             |
|                |             | 2017 | 40    | 267,447,959 | 100.0 | 267,447,959 |             |
|                |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 2015 | 9     | 135,648,889 | 102.9 | 139,582,707 | 145,843,805 |
|                |             | 2016 | 11    | 163,993,273 | 101.9 | 167,109,145 |             |
|                |             | 2017 | 16    | 130,839,563 | 100.0 | 130,839,563 |             |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 지자체         | 2015 | 3,722 | 79,638,302  | 102.9 | 81,947,813  | 67,528,139  |
|                |             | 2016 | 3,618 | 79,618,637  | 101.9 | 81,131,392  |             |
|                |             | 2017 | 2,363 | 39,505,213  | 100.0 | 39,505,213  |             |
|                | 지방 공기업      | 2015 | 84    | 113,624,019 | 102.9 | 116,919,116 | 99,648,807  |
|                |             | 2016 | 176   | 73,317,505  | 101.9 | 74,710,538  |             |
|                |             | 2017 | 139   | 107,316,767 | 100.0 | 107,316,767 |             |
|                |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 2015 | 14    | 166,583,190 | 102.9 | 171,414,103 | 149,300,103 |
|                |             | 2016 | 14    | 196,352,617 | 101.9 | 200,083,317 |             |
|                |             | 2017 | 15    | 76,402,889  | 100.0 | 76,402,889  |             |

자료: 조달정보포털, <http://data.g2b.go.kr:8275/pt/main/index.do>

#### 다) 사업비(검토안)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사업비 세부항목은 시설안전점검, 현장점검 모니터링(매뉴얼 마련 및 현장 모니터링 등), 종사자 교육훈련, 조사 등 통계 연구비이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 자료에도 해당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역시 면밀한 비용 추정이 불가능했다. 보건복지부가 3차로 제출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

영방안 중심-」에서 시설안전점검과 종사자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 자료 또한 지침 수준으로 세부적인 계획 및 비용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사업비는 검토안에서도 동일하게 준용하기로 한다.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중심-」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해와 역할 인식, 서비스 제공 등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 추진을 위해 본부직원 80명 및 소속시설 종사자 400명 등 약 480명을 대상으로 아래 <표 V-29>와 같이 7개 과정, 33회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별 인원, 비용, 장소 등 세부 사항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훈련비를 재추정할 수 없었다.

<표 V-29> 사회서비스원 교육 내용(안)

| 구분    |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 기본교육  | 본부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원 이해(관련규정, 비전·가치관)</li> <li>- 행정업무 운영 실무(인사, 노무)</li> <li>- 예산·회계의 이해(정부예산 및 재무회계)</li> <li>- 공문서 및 보고서 작성</li> <li>- 공직윤리와 청렴</li> <li>- 조직화합과 소통</li> </ul> |
|       | 소속시설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원 이해(관련규정, 비전·가치관)</li> <li>- 시설운영 실무(인사·노무, 행정기본)</li> <li>-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역할 및 책임</li> <li>- 조직화합과 소통</li> </ul>                                               |
| 직무교육  | 본부직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급별(관리자/직원) 리더십 교육</li> <li>- 행정업무 운영실무 심화(인사·노무/재무·회계/평가)</li> </ul>                                                                                              |
|       | 소속시설 직원<br>(분야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자(시설장, 팀장등) 리더십 교육</li> <li>- 시설운영 실무심화(인사·노무/평가)</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회계 규칙 이해 및 시스템 활용(보육/요양/재가/공공센터)</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대상자 이해 및 상담 기법</li> <li>- 서비스 질 제고방안(고객만족 제고)</li> <li>- 인권기반 현장실천방안(인권감수성/존중케어/침해예방)</li> </ul>                                                               |
| 성과워크숍 | 본부직원 소속시설 종사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사례 발표</li> <li>- 개선점 및 시사점 도출</li> </ul>                                                                                                                         |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중심-」, p. 58

## 라) 추가발생 가능 비용 검토

지방사회서비스원 또한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 항목에 대한 상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

시설비의 경우 추가로 설립되는 종합재가센터 비용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개 시·도 시범사업 실시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시·도는 2022년까지 종합재가센터를 최소 8개에서 29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신규로 설치될 종합재가센터 설립비용 및 임차료 등이 향후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9년 5월 29일 면담에서 종합재가센터는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설립·운영할 예정이고, 신규로 추가되는 종합재가센터의 설립 비용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 이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운영비의 경우 인건비 추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동 사업 계획 시 직영시설 종사자 수 증가로 인한 사회서비스원 본부 관리인력 증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력이 증가할 경우 경상운영비는 인력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 - 지자체 의견수렴용」(2019.2.19.)<sup>78)</sup>에 따르면 2022년 차세대 시설정보시스템과 ‘(가칭)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설정하고, 중앙지원단 업무지원 시스템, 사회서비스원 업무지원 시스템, 개별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향후 해당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축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여 총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만약 해당 시스템을 본부직원이 아닌 시설 종사자도 사용할 경우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은 시설 종사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본부 인력 및 시설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서비스원 실시 예정 교육은 사회서비스원 본부 인력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표 V-29> 참조). 따라서 1년에 1인당 최소 1회 이상의 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교육훈련비는 시설 종사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

78) pp. 75~78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예상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사자 수는 약 6만 3,000명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실행 이전에 교육훈련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세부 예산 지출 계획을 알 수 없는 현장점검 모니터링 사업과 시설 안전점검 사업 비용은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수가 증가할 경우(현장점검 모니터링 사업), 점점 분야를 확대할 경우(시설안전점검 사업) 사업 규모가 확장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사회서비스원의 필요 인력 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내용, 사업별 비용, 목표치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비용을 재추정할 필요가 있다.

### 3. 비용검토 종합

연구진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총사업비에 대한 항목별 근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계획서 상의 항목 이외에는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면밀한 비용추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계획에 기반한 검토안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였다.

총사업비 검토 결과, 인건비, 중앙지원단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운영비항목에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인건비는 1인당 인건비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시설비 및 운영비의 경우 일부 감소하였다(하단 <표 V-30> ~ <표 V-34> 참고). 단, 중앙지원단 및 지방사회서비스원 인력 수 증가에 따른 총인건비 증가와 소속시설 종사자 수 증가에 따른 교육훈련비 증가를 가정하였을 경우 보건복지부 제출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포괄보조금 개념으로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은 최소화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추가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업 주무부처로서 직영시설 증가에 따른 인력 추가 고용, 민간 지원 사업 규모 확대, 소속시설 종사자 수 증가 등 예상 가능한 비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면밀한 계획에 따른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자체 현장조사 방문 면담 결과 지자체에서는 향후 조직 및 인력 확대 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원 관련 예산을 증액을 해줄 것



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향후 현재 계획한 것보다 추가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복지부 및 재정당국 간의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V-30>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계획안 및 검토안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       | 계획안          |                              | 검토안            |                                |                   |
|----------------------|-------|--------------|------------------------------|----------------|--------------------------------|-------------------|
|                      |       | 2019년(n년)    | 2019년(n+1년) 이후               | 2019년(n년)      | 2019년(n+1년) 이후                 |                   |
| 인건비<br>(중앙,지방 동일 적용) |       | 40백만원        | 연 3% 상승 가정                   | 43.255백만원      | 연 1.8% 상승 가정                   |                   |
| 중앙<br>지원단            | 소요 인력 |              | 10명 고정                       |                | 10명 고정                         |                   |
|                      | 시설비   |              | 보증금 3,500만원,<br>임대료, 4,500만원 | 매년 3% 상승<br>가정 | 보증금 3,500만원,<br>임대료 4,865만원    | 매년 5.46% 상승<br>가정 |
|                      | 운영비   | 경상운영비        | 528백만원                       | 전년대비 3% 상승     | 1인당 19백만원                      | 전년대비 2% 상승        |
|                      |       | 자산취득비        |                              |                | 신규 인력 1인당<br>1천만원<br>(개소시 1회)  | 해당사항없음            |
| 지방<br>사회서비스원         | 소요 인력 |              | 20명 고정                       |                | 20명 고정                         |                   |
|                      | 시설비   |              | 500백만원(개소시 1회)               |                | 500백만원(개소시 1회)                 |                   |
|                      | 운영비   | 경상운영비        | 695백만원                       | 전년대비 3% 상승     | 1인당 19백만원                      | 전년대비 2% 상승        |
|                      |       | 자산취득비        |                              |                | 신규 인력 1인당<br>750만원<br>(개소시 1회) |                   |
|                      |       | 전산시스템<br>구축  | 경상운영비에 포함                    |                | 146백만원<br>(개소시 1회)             | 전년대비 2% 상승        |
|                      | 사업비   | 시설안전점검       | 100백만원                       | 전년대비 3% 상승     | 100백만원                         | 전년대비 2% 상승        |
|                      |       | 현장<br>모니터링   | 50백만원                        | 전년대비 3% 상승     | 50백만원                          | 전년대비 2% 상승        |
|                      |       | 조사통계 등<br>연구 | 50백만원                        | 전년대비 3% 상승     | 50백만원                          | 전년대비 2% 상승        |
|                      |       | 교육 훈련        | 185백만원                       | 전년대비 3% 상승     | 185백만원                         | 전년대비 2% 상승        |

- 주: 1. 경상운영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안에 제시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홍보, 일반 운영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됨, 검토안의 경상운영비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유사기관의 1인당 경상경비의 평균값임  
 2. 자산취득비: 사회서비스원이 신규 기관임을 감안하여 '전산장비 및 사무용품 등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설정하고 인력 수에 비례하여 반영함(개소 년도에만 반영)  
 3. 전산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중 유지보수 비용은 경상운영비에 포함되므로 개소 첫 해에만 시스템 구축비용인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비용을 적용함

&lt;표 V-31&gt; 보건복지부 계획안

(단위: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중앙<br>지원<br>단                           | 인건비                            | 400,000            | 412,000           | 424,360           | 437,091           | 450,204           |
|                                         | 시설<br>비                        | 보증금                | 35,000            | -                 | -                 | -                 |
|                                         |                                | 임대료                | 45,000            | 46,000            | 49,000            | 51,000            |
|                                         | 운영비                            | 528,000            | 544,000           | 560,000           | 577,000           | 594,000           |
|                                         | <b>A. 중앙합계</b>                 | <b>1,008,000</b>   | <b>1,002,000</b>  | <b>1,032,360</b>  | <b>1,063,091</b>  | <b>1,095,204</b>  |
| 지방<br>院                                 | 인건비                            | 1,600,000          | 6,592,000         | 10,184,640        | 14,861,087        | 15,306,920        |
|                                         | 설치비(최초1회)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                                         | 운영비                            | 695,000            | 715,500           | 737,400           | 759,370           | 782,500           |
|                                         | 사업비                            | 385,000            | 396,500           | 408,600           | 420,630           | 433,500           |
|                                         | B. 19년개소(4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6,320,000          | 4,448,000         | 4,584,000         | 4,720,000         | 4,864,000         |
|                                         | C. 20년개소(4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 6,448,000         | 4,584,000         | 4,720,000         | 4,864,000         |
|                                         | D. 21년개소(4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 -                 | 6,584,000         | 4,720,000         | 4,864,000         |
|                                         | E. 22년개소(5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 -                 | -                 | 8,400,000         | 6,080,000         |
|                                         | <b>F. 지방합계</b>                 | <b>7,920,000</b>   | <b>17,488,000</b> | <b>25,936,640</b> | <b>37,421,087</b> | <b>35,978,920</b> |
| <b>연도별합계<br/>(A+F의합계)</b>               |                                | <b>8,928,000</b>   | <b>18,490,000</b> | <b>26,969,000</b> | <b>38,484,178</b> | <b>37,074,123</b> |
| <b>'19~'23년중앙(1개)+<br/>지방(17개)운영비의합</b> |                                | <b>129,945,301</b> |                   |                   |                   |                   |

&lt;표 V-32&gt; 검토안

(단위: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 중앙<br>지원단                       | 인건비                            | 432,550                 | 440,336    | 448,262    | 456,331    | 464,545    |            |
|                                 | 시설비                            | 보증금                     | 35,000     | -          | -          | -          | -          |
|                                 |                                | 임대료                     | 48,654     | 51,311     | 54,113     | 57,067     | 60,183     |
|                                 | 운영비                            | 자산취득비<br>(최초 1회)        | 100,000    | -          | -          | -          | -          |
|                                 |                                | 경상운영비 <sup>1)</sup>     | 143,765    | 144,957    | 146,081    | 147,130    | 148,098    |
|                                 | A. 중앙합계                        |                         | 759,970    | 636,604    | 648,455    | 660,528    | 672,826    |
| 지방<br>법원                        | 인건비                            | 1,730,200               | 7,045,374  | 10,758,287 | 15,515,242 | 15,794,517 |            |
|                                 | 설치비(최초 1회)                     |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
|                                 | 운영비                            | 시스템구축<br>(최초 1회)        | 145,844    | 148,761    | 151,736    | 154,771    | 157,866    |
|                                 |                                | 1인당<br>자산취득비<br>(최초 1회) | 7,500      | 7,650      | 7,803      | 7,959      | 8,118      |
|                                 |                                | 1인당경상<br>운영비            | 19,242     | 19,627     | 20,019     | 20,420     | 20,828     |
|                                 | 사업비                            |                         | 385,000    | 392,700    | 400,554    | 408,565    | 416,736    |
|                                 | B. 19년개소(4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6,262,733  | 3,140,945  | 3,203,764  | 3,267,839  | 3,333,196  |
|                                 | C. 20년개소(4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          | 6,347,988  | 3,203,764  | 3,267,839  | 3,333,196  |
|                                 | D. 21년개소(4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          | -          | 6,434,948  | 3,267,839  | 3,333,196  |
|                                 | E. 22년개소(5개)<br>설치·운영·사업비<br>계 |                         | -          | -          | -          | 8,154,558  | 4,166,495  |
|                                 | F. 지방합계                        |                         | 7,992,933  | 16,534,307 | 23,600,762 | 33,473,318 | 29,960,600 |
| 연도별합계<br>(A+F의합계)               |                                | 8,752,903               | 17,170,911 | 24,249,218 | 34,133,846 | 30,633,426 |            |
| '19~'23년중앙(1개)+<br>지방(17개)운영비의합 |                                | 114,940,304             |            |            |            |            |            |

주: 1) 중앙지원단의 경상운영비는 중앙지원단 10명에 1인당 경상운영비를 적용한 총액에서 경상운영비 항목인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임

&lt;표 V-33&gt; 총사업비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계              |
|----------|----------------|--------------|---------------|---------------|---------------|---------------|----------------|
| 복지<br>부안 | 중앙인건비          | 400          | 412           | 424           | 437           | 450           | 2,124          |
|          | 중앙운영비          | 608          | 590           | 608           | 626           | 645           | 3,077          |
|          | <b>중앙계(A)</b>  | <b>1,008</b> | <b>1,002</b>  | <b>1,032</b>  | <b>1,063</b>  | <b>1,095</b>  | <b>5,201</b>   |
|          | 지방인건비          | 1,600        | 6,592         | 10,185        | 14,861        | 15,307        | 48,545         |
|          | 지방운영비          | 6,320        | 10,896        | 15,752        | 22,560        | 20,672        | 76,200         |
|          | <b>지방계(B)</b>  | <b>7,920</b> | <b>17,488</b> | <b>25,937</b> | <b>37,421</b> | <b>35,979</b> | <b>124,745</b> |
|          | <b>합계(A+B)</b> | <b>8,928</b> | <b>18,490</b> | <b>26,969</b> | <b>38,484</b> | <b>37,074</b> | <b>129,945</b> |
| 검토<br>안  | 중앙인건비          | 433          | 440           | 448           | 456           | 465           | 2,242          |
|          | 중앙운영비          | 327          | 196           | 200           | 204           | 208           | 1,136          |
|          | <b>중앙계(A)</b>  | <b>760</b>   | <b>637</b>    | <b>648</b>    | <b>661</b>    | <b>673</b>    | <b>3,378</b>   |
|          | 지방인건비          | 1,730        | 7,045         | 10,758        | 15,515        | 15,795        | 50,844         |
|          | 지방운영비          | 6,263        | 9,489         | 12,842        | 17,958        | 14,166        | 60,718         |
|          | <b>지방계(B)</b>  | <b>7,993</b> | <b>16,534</b> | <b>23,601</b> | <b>33,473</b> | <b>29,961</b> | <b>111,562</b> |
|          | <b>합계(A+B)</b> | <b>8,753</b> | <b>17,171</b> | <b>24,249</b> | <b>34,134</b> | <b>30,633</b> | <b>114,940</b> |

&lt;표 V-34&gt;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교

(단위: 백만원)

| <총사업비>       |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합계                          |
|--------------|-----------|--------------|---------------|----------------------------|----------------------------|----------------------------|-----------------------------|
| 복지<br>부<br>안 | <b>합계</b> | <b>8,928</b> | <b>18,490</b> | <b>26,960<sup>1)</sup></b> | <b>38,481<sup>2)</sup></b> | <b>37,067<sup>3)</sup></b> | <b>129,926<sup>4)</sup></b> |
|              | 국비        | 5,968        | 10,746        | 14,996                     | 19,379                     | 15,695                     | 66,784                      |
|              | 지방비       | 2,960        | 7,744         | 11,964                     | 19,102                     | 21,372                     | 63,142                      |
| 검<br>토<br>안  | <b>합계</b> | <b>8,753</b> | <b>17,171</b> | <b>24,249</b>              | <b>34,134</b>              | <b>30,633</b>              | <b>114,940</b>              |
|              | 국비        | 5,324        | 9,904         | 13,449                     | 17,263                     | 12,833                     | 58,773                      |
|              | 지방비       | 3,429        | 7,267         | 10,800                     | 16,870                     | 17,800                     | 56,167                      |

주: 1. 복지부안: 복지부 2차 제출자료 p. 12 인용

- 서비스원당 설치비 5억원(단년도 지원, 국비 100%), 운영비 9.4억원 지원(매년 3% 인상, 3년간 국비 50%, 3년 이후 국비 30%)

1~4) &lt;표 V-33&gt;과 비교하여 21년~23년 합계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안의 인건비가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계산되었기 때문임(&lt;표 V-30&gt;은 보건복지부 4차 제출자료 5.16 기준으로 3% 인상분을 절사 없이 적용하여 작성함)

## 제3절 비용 대비 효과성

### 1.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기대효과를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사업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대 효과들을 정리하고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미래 시점의 정책 환경의 변화,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 정책 입안자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계획대로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 시점에서는 ① 미시 자료를 통해 과거 유사한 정책 변화나 상황에서의 정책 수혜 집단과 비교 집단의 차이를 통해 미래 효과를 유추하거나 ② 국내외 선행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미래 해당 상황에서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측하는 방법 정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을 통해 1차적으로 국공립시설의 사회서비스원 직영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던 국공립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영함으로써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표 V-35>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대효과 분류

| 사회서비스 시설 기능   | 주요 내용                                          | 편익 요소               |
|---------------|------------------------------------------------|---------------------|
| 국공립시설 위탁 관리   | 국공립시설 신축 위탁 관리                                 | 민간 위탁보다 직영 시 장점     |
|               | 기존 시설 중 위·불법 발생, 평가저조, 시군구청장 시설 위탁 국공립시설 위탁 관리 | 민간 위탁보다 직영 시 장점     |
| 종합재가센터 설립     |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등 각종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 분절된 재가서비스 연계 효과     |
| 민간 시설 지원      | 재무·회계·노무 등 상담·자문, 대체인력·시설 안전점검 지원              | 민간 시설의 행정 서비스 수요 충족 |
| 지자체 사회 서비스 지원 |                                                |                     |

자료: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19 자료 바탕으로 저자 정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은 <표 V-35>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기존에 주로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어 오던 국·공립 시설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사회서비스원 직영 체계로 운영한다. 둘째, 종합재가센터 설립 후 사회서비스원의 관리를 받게 하며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각종 재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한다. 셋째, 여전히 사회서비스 시장의 주요 공급자인 민간의 시설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민간 시설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지자체의 수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지원의 역할을 부여한다.

제시된 효과들을 검토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현재의 정책은 신축되는 국공립 서비스 시설 및 향후 민간 위탁의 계약 종료가 도래하는 국공립시설 중 일부를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2년까지의 국공립시설의 확충 계획과 연동하여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시장 진입이 민간 주도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점검한다. 둘째, 민간위탁형 국공립 시설이 공공기관 직영 국공립 시설로 변화하며 예상되는 효과를 검토한다. 검토 과정에서 주요 효과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자 처우 개선 효과를 함께 검토한다. 셋째, 종합재가센터에서 주로 발현될 것으로 보이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과에 대해 선행연구 등을 근거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공공 사회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이 절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보육’과 ‘장기요양’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의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 가. 국공립시설의 시장 점유율 증대 효과

장기요양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시설은 아래 <표 V-36> 및 <표 V-37>와 같다. 기존 약 106개소의 지자체 재가시설 및 101개소의 지자체 장기요양시설, 약 3,60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더해, 2022년까지 정부가 신축하겠다고 밝힌 국공립 어린이집 408개소, 장기요양시설 275개소, 종합재가센터 135개소 등(<표 V-39>)이 잠재적인 사회서비스원의 위탁 대상이다. 신축되는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준공 즉시 위탁되며, 기존 시설 중에도 위·불법이 발생, 평가 결과 저조, 기초 지자체장 요청에 의해서 사회서비스원의 위탁 관리를 받는다.

&lt;표 V-36&gt;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17년말 시설 개소 기준)

(단위: 개소, %)

| 구분  | 계      | 재가     |          |          |          |           |          |          | 시설     |            |                    |
|-----|--------|--------|----------|----------|----------|-----------|----------|----------|--------|------------|--------------------|
|     |        | 계      | 방문<br>요양 | 방문<br>목욕 | 방문<br>간호 | 주야간<br>보호 | 단기<br>보호 | 복지<br>옹구 | 계      | 노인요<br>양시설 | 노인요양<br>공동생활<br>가정 |
| 지자체 | 207    | 106    | 31       | 16       | 3        | 94        | 4        | -        | 101    | 90         | 11                 |
| 비중  | (1.0)  | (0.7)  | (0.3)    | (0.2)    | (0.5)    | (3.4)     | (1.8)    |          | (1.9)  | (2.7)      | (0.5)              |
| 법인  | 3,713  | 2,335  | 1,521    | 1,104    | 105      | 890       | 42       | 253      | 1,378  | 1,186      | 192                |
| 비중  | (18.2) | (15.5) | (13.0)   | (11.8)   | (16.2)   | (31.8)    | (19.3)   | (13.4)   | (26.0) | (36.1)     | (9.5)              |
| 개인  | 16,375 | 12,565 | 10,058   | 8,197    | 538      | 1,798     | 172      | 1,632    | 3,810  | 2,003      | 1,807              |
| 비중  | (80.4) | (83.4) | (86.2)   | (87.6)   | (82.8)   | (64.3)    | (78.9)   | (86.3)   | (71.8) | (60.9)     | (89.7)             |
| 기타  | 82     | 67     | 52       | 40       | 4        | 13        | -        | 7        | 15     | 10         | 5                  |
| 비중  | (0.4)  | (0.4)  | (0.4)    | (0.4)    | (0.6)    | (0.5)     |          | (0.4)    | (0.3)  | (0.3)      | (0.2)              |
| 계   | 20,377 | 15,073 | 11,662   | 9,357    | 650      | 2,795     | 218      | 1,892    | 5,304  | 3,289      | 2,015              |

자료: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표 IV-2를 기반으로 편집

기존 시설의 경우 전체 시장에서 국공립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장기요양시설은 약 1.9%, 재가시설은 약 0.7%, 어린이집은 약 9.2%이며, 신축 시설까지 포함하면 장기요양시설은 6.7%, 재가시설은 약 1.6%, 어린이집은 약 10.1%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sup>79)</sup>. 다만, 장기요양시설의 정원 기준, 보육시설의 보육아동현황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공립시설의 점유율은 다소 높아진다(<표 V- 37>, <표 V-38> 참조).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개소 수는 전체 1.9%를 차지하고 있지만, 서비스 공급 여력을 나타내는 시설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1% 정도의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보육의 경우에는 이 격차가 더욱 벌어져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수는 전체 시장의 약 9.2%를 차지하지만,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현황으로 살펴보면 전체 시장의 14.2%를 담당한다. 이는 국공립시설이 다른 민간 시설에 비해 시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격차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이 전체 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신축 시설을 포함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다소간의 공공성 제고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도 민간이 서비스의 주요 공급자인 현재의 시장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어려울 것이다.

79) 해당 신축 시설을 장기요양 기준년도(2017년), 어린이집 기준년도(2018년)을 기준으로 단순 합하여 계산된 수치임

&lt;표 V-37&gt; 설립구분별 어린이집 현황(2018년말 기준)

(단위: 개소, %, 명)

| 구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계         |
|--------|---------|--------|--------|---------|---------|-------|--------|-----------|
| 어린이집 수 | 3,602   | 1,377  | 748    | 13,518  | 18,651  | 164   | 1,111  | 39,171    |
| 비중     | (9.2)   | (3.5)  | (1.9)  | (34.5)  | (47.6)  | (0.4) | (2.8)  | (100.0)   |
| 보육아동현황 | 200,783 | 92,787 | 41,298 | 711,209 | 302,674 | 4,360 | 62,631 | 1,414,742 |
| 비중     | (14.2)  | (6.6)  | (2.9)  | (50.2)  | (21.4)  | (0.3) | (4.4)  | (100.0)   |

자료: 2018년 보육통계,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기반으로 편집

&lt;표 V-38&gt; 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2017년말 시설 정원 기준)

(단위: 명, %)

| 구분  | 계       | 재가     |      |      |      |        |        | 시설   |         |                      |
|-----|---------|--------|------|------|------|--------|--------|------|---------|----------------------|
|     |         | 계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계       | 노인요양시설<br>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지자체 | 9,442   | 2,266  |      |      |      | 2,156  | 110    |      | 7,176   | 7,082                |
| 비중  | (3.9)   | (3.3)  |      |      |      | (3.2)  | (5.3)  |      | (4.1)   | (4.5)                |
| 법인  | 98,827  | 20,817 |      |      |      | 20,529 | 288    |      | 78,010  | 76,340               |
| 비중  | (40.6)  | (30.3) |      |      |      | (30.8) | (13.8) |      | (44.7)  | (48.7)               |
| 개인  | 134,176 | 45,325 |      |      |      | 43,638 | 1,687  |      | 88,851  | 72,979               |
| 비중  | (55.2)  | (66.0) |      |      |      | (65.5) | (80.8) |      | (50.9)  | (46.5)               |
| 기타  | 790     | 284    |      |      |      | 284    | -      |      | 506     | 461                  |
| 비중  | (0.3)   | (0.4)  |      |      |      | (0.4)  |        |      | (0.3)   | (0.3)                |
| 계   | 243,235 | 68,692 |      |      |      | 66,607 | 2,087  |      | 174,543 | 156,862              |

자료: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표 IV-2를 기반으로 편집

&lt;표 V-39&gt; 사회서비스원 신규 인프라 설치계획(2019~2022년)

(단위: 개소)

| 구분    |        | 합계  | 2019 | 2020 | 2021 | 2022 |
|-------|--------|-----|------|------|------|------|
| 국공립시설 | 어린이집   | 408 | 102  | 102  | 102  | 105  |
|       | 장기요양기관 | 275 | 69   | 69   | 69   | 68   |
| 재가서비스 | 종합재가센터 | 135 | 8    | 24   | 40   | 63   |
| 계     |        | 818 | 179  | 195  | 211  | 233  |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019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효과는 사회서비스원 직영 체계를 통해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외연적 확장의 형태가 아니라, 국공립시설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 긍정적인 효과가 간접적으로 민간 시설에 전파되는 방식으로 발현될 것이다.<sup>80)</sup> 이와 같은 성격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쉽지 않으나, 다음 절에서 기대될 수 있는 효과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선행 연구, 사례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효과의 규모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 나. 민간 위탁 국공립시설의 사회서비스원 직영 효과:서비스 질 제고 효과 제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인프라의 확충은 현 정부의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육과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계획된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규모는 <표 V-40>과 같다. 사회서비스원 사업 담당 주체인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의하면, 이 중 신축되는 국공립시설 및 종합재가센터를 1차적인 사회서비스원 직영 대상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표 V-40>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계획(2018~2022년)

(단위: 개소)

| 구분    |        |        | 합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계     |        |        | 2,729 | 519  | 527  | 543  | 559  | 581  |
| 국공립시설 | 어린이집   | 신축     | 550   | 102  | 112  | 112  | 112  | 112  |
|       |        | 관리동전환  | 1,125 | 225  | 225  | 225  | 225  | 225  |
|       |        | 장기임대 등 | 575   | 123  | 113  | 113  | 113  | 113  |
|       | 장기요양기관 |        | 344   | 69   | 69   | 69   | 69   | 68   |
| 재가서비스 | 종합재가센터 |        | 135   | -    | 8    | 24   | 40   | 63   |

자료: 「사회서비스원 예비타당성 조사 5차 설명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2019.6.3.

우선 2022년까지 신규로 설치되는 국공립 보육시설 및 장기요양시설과 종합재가센터의 운영을 담당한다. <표 V-40>에 나타난 신규 설치 및 사회서비스원 위탁 예정 시설의 규모는 대략 보육 408개소, 장기요양기관 275개소 및 종합재가센터 135개소

80) 물론 2022년 이후 사회 서비스원 운영이 안정화되어 국공립시설 뿐 아니라 민간 공급 시설의 일부가 사회 서비스원의 관리 체제로 편입될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향후 3년 내 이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등 총 818개소이다. 또한 민간에 위탁되었던 국공립시설 중 일부도 위·불법이 발생하거나 시설 평가가 저조한 경우 사회서비스원에 위탁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운영을 맡길 수 있다. 국공립시설 민간 위탁은 국공립시설 운영에 전형적인 방식으로 2014년 기준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2,140개소 중 국가 직영의 시설은 83개인 3.8%에 불과하다(<표 V- 41> 참조). 또한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지자체 설치 시설 941개소 중 직영은 66개소(약 7%)에 불과하다(2017년 기준, <표 V-42> 참조). 따라서, 국공립 민간 위탁 시설 중 산술적으로는 보육시설 약 2천여개, 장기요양시설 약 870여개가 사회서비스원 위탁 대상 시설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중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업 설계 단계인 현 시점에서 가늠하기 어렵다.

<표 V-41>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유형별 개소수

(단위: 개소)

| 지역   | 직영 |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인 | 종교법인 | 재단법인 | 단체  | 개인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계     |
|------|----|--------|------|------|------|-----|-------|---------|----|-------|
| 전체   | 83 | 340    | 100  | 259  | 123  | 139 | 1,046 | 9       | 41 | 2,140 |
| 대도시  | 1  | 264    | 55   | 193  | 105  | 80  | 315   | 8       | 23 | 1,044 |
| 중소도시 | 53 | 56     | 43   | 51   | 17   | 59  | 606   | 1       | 15 | 901   |
| 읍면지역 | 29 | 20     | 2    | 15   | 1    | -   | 125   | -       | 3  | 195   |

자료: 권미경 외 (2014) <부록 표 2-1>의 일부 내용 저자 재편집

<표 V-42>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 현황(2017년 기준)

(단위: 개소)

| 구분   | 총<br>시설수 | 지자체 설치/운영 시설 |       |       | 민간 설치/운영 시설 |        |          |              |        |
|------|----------|--------------|-------|-------|-------------|--------|----------|--------------|--------|
|      |          | 소계           | 직영    | 위탁    | 소계          | 사회복지법인 | 기타<br>법인 | 단체<br>(법인 외) | 개인     |
| 노인   | 9,428    | 941          | 66    | 875   | 8,487       | 2,351  | 1,006    | 67           | 5,063  |
| 어린이집 | 40,238   | 3,157        | 1,046 | 2,111 | 37,081      | 1,392  | 1,824    | 164          | 33,701 |

주: 노인사회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교실 등 제외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2018), 표 5-1-7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 - 시설종류별: 2017년' 참조하여 저자 재편집

보건복지부의 사업 설명 자료에 따르면 민간 위탁 및 공공의 직영 방식은 아래와 같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표 V-43> 참조). 사회서비스원 부재할 경우, 국정 계획

에 따른 신축 시설의 운영은 기존의 방식과 같이 공개 입찰을 통해 법인 혹은 개인에 위탁하는 형태로 시행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인한 주요 긍정적인 효과는 민간 위탁의 단점으로부터 공공 직영의 장점으로 이동하는 효과이며, 더불어 민간 위탁의 장점이 사라지고 공공 직영의 단점이 부각되는 부(-)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표 V-43> 국공립시설의 경영 방식 비교(민간 위탁 vs. 공공 직영)

| 구분    | 장점                                       | 단점                       |
|-------|------------------------------------------|--------------------------|
| 민간 위탁 | 민간의 전문성<br>재정 효율화                        | 고용관계 불안<br>개별 시설의 분절적 운영 |
| 공공 직영 | 시설 운영 책임성 제고<br>투명한 시설 운영<br>종사자 고용불안 해소 | 전문성 부족<br>효율적 관리운영 한계    |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019

‘시설 운영의 책임성 제고’ 효과가 기존의 민간위탁 형태에 비해 더 좋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우선 보육시설의 민간 위탁의 경우, 3년 혹은 5년 단위<sup>81)</sup>로 계약을 갱신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최초 위탁 시 다수인 80.9% 이상이 공개 경쟁을 통해, 재위탁의 경우도 단독으로 기존 위탁 주체를 평가한 후 재위탁하는 사례가 62.6%, 다시 완전한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20.7%에 이르고 있다. 별도의 평가 없이 기존 위탁업체에 재위탁하는 경우는 약 2.3%에 불과하며, 평가 없이 재위탁하는 경우는 중소도시에서 약 3.6%, 읍면 단위의 지역에서 3.3%에 이르고 대도시에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양미선, 2012). 즉, 지역별 특성에 따른 부득이한 소수의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평가·혹은 경쟁을 통해 재위탁이 이뤄지는 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개경쟁과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국공립시설의 민간 위탁 결정 체계는 시설 설립 주체이자, 평가 주체인 지자체의 목적에 맞게 시설을 운영할 유인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설 운영의 책임성이 민간 위탁 제도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민간 위탁 및 재위탁 과정의 평가를 보다 엄격하게 시행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보건복지부의 설명대로 사회서비스원 직영 체계 내에서 시설장 등 대

81) 위탁기간은 신규의 경우 3년이 70.5%, 5년이 23.1%, 재위탁의 경우 3년이 68.8%, 5년이 21.4%(양미선, 2012).

상으로 한 전문적인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 실적이 인사고과와 시설 및 서비스원의 평가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인이 민간을 대상으로 한 신규 위탁 및 재위탁 과정의 경쟁과 평가보다 강력하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설 운영의 책임성 제고 효과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직영 체계가 민간 위탁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투명한 시설 운영’ 효과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시설 운영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서비스원 본부 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시설의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자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의 운영성과 평가 체계까지 마련됨으로써 다층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춘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주목할 점은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이 소속 시설의 노무, 회계 및 기타 행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상당 부분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형태로 정책이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시설장 등 시설 운영 인력들이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임과 동시에, 행정의 상당 부분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종사자 불안 해소’ 효과의 경우,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인 만큼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은 해소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 규모는 약 63,315명이며, 전체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예상되는 규모인 612,627명의 약 12%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표 V-44> 참조). 종합재가센터의 표준모형은 근로인력의 절반 정도가 4시간 시급제로 고용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단순한 계산으로 종합재가센터 고용 예정 인원 13,500명의 절반인 6,750명이 상용직·단시간 월급제 형태로 상대적 고용 안정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시도 서비스원 본부, 국공립 제공기관, 공공센터, 기타 사업의 인력을 더해 총 56,565명 ( $6,750 + 350 + 47,216 + 1,975 + 274$ )이 공공기관의 직접 고용을 통해 고용 안정을 보장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과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에 한해서 고려해보면, 2022년 기준으로 보육시설 8,610명, 공립 장기요양시설 28,798명, 종합재가센터 6,750명이 정규직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lt;표 V-44&gt; 사회서비스원 인력 규모(2022년 기준 추정)

(단위: 명)

| 구분            | 전체종사<br>인력 <sup>㉠</sup> | 기존('18) | 신규<br>( '19~'22) | 서비스원<br>고용 <sup>㉢</sup> | 기존('18) | 신규<br>( '19~'22) | 비율(%)<br><sup>㉡</sup> / <sup>㉠</sup> |
|---------------|-------------------------|---------|------------------|-------------------------|---------|------------------|--------------------------------------|
| <합계>          | 612,627                 | 460,093 | 152,534          | 63,315                  | 18,802  | 44,513           | 12                                   |
| ① 시·도 서비스원 본부 | 350                     | -       | 350              | 350                     | -       | 350              | 100                                  |
| ① 국공립제공기관     | 125,495                 | 59,783  | 65,712           | 47,216                  | 4,978   | 42,238           | 38                                   |
| ② 종합재가센터      | 481,621                 | 397,074 | 84,547           | 13,500                  | 13,500  | -                | 5                                    |
| ③ 공공센터        | 4,887                   | 3,236   | 1,651            | 1,975                   | 324     | 1,651            | 45                                   |
| ④ 기타 사업       | 274                     | -       | 274              | 274                     | -       | 274              | 100                                  |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019

다만, 몇 년 내의 국공립시설의 급격한 정규직 비율 상승이 사회서비스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민간 시설과의 정규직 비율의 급격한 차이로 인한 고용 형태의 양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종사자의 불안 해소에는 종사자 임금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다. 2018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산업의 월임금 총액은 평균 359.3만원인 데 반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187.4만원에 불과하며, 이러한 현실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주요 도입 배경으로 이해되고 있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속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른 형태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보육시설의 경우, 「2019년 보육사업안내」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지원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공립 보육시설은 민간위탁 혹은 사회서비스 직영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인건비를 지급하여, 사회서비스 직영 이후 임금 차이가 없을 것이다. 종합재가센터 역시 표준모형에서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정하였으므로, 기존 국공립 재가요양시설 대비 급여 수준의 큰 개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급여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시설 표준모형에 따르면 직무에 따른 급여 수준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직영 시설인 서울요양원의 임금 수준 및 최저임금,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했다고 되어 있다. 현재 장기요양시설의 직무별 급여 수준과 표준모형에서 제시하는 급여 수준을 비교하면, 대부분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시설에 비해 ‘관리인’ 직군을 제외한 전 직군에서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45> 참조). 따라서, 장기요양시설 근로자의 연 급여 수준은 직무에 따라 대략 335만원~1,362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표 V-44>의 세부 내역 산출 내부자료를 검토하면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용하는 공립 요양시설의 총인원은 2022년 기준 28,798명이다. 세부적인 직무별 고용인원에 대한 자료는 입수하지 못했지만 <표 V-45>를 직무별 인력 분포에 기반한 요양시설 전체 근로 인원 수 중 해당 직무인원 수를 가중치(weight)으로 하여 총고용인원인 28,798명을 직무별로 분류하고 <표 V-45>의 표준모형과 장기요양시설 경영실태조사의 직무별 임금 격차를 곱하여 총임금 상승 효과를 계산하면, 장기요양시설 고용인원인 연간 약 1,581억원 규모의 임금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V-45&gt; 직무별 1인당 인건비 비교(표준모형 vs. 장기요양시설 경영실태조사, 2016)

(단위: 원, 명)

|       | 표준모형      | 장기요양시설<br>경영실태조사(total) |       | 장기요양시설<br>경영실태조사(지자체) |     | 장기요양시설<br>경영실태조사(법인) |       | 장기요양시설<br>경영실태조사(개인) |     |
|-------|-----------|-------------------------|-------|-----------------------|-----|----------------------|-------|----------------------|-----|
|       | 급여계       | 1개월 총임금<br>(세전)         | N     | 1개월 총임금<br>(세전)       | N   | 1개월 총임금<br>(세전)      | N     | 1개월 총임금<br>(세전)      | N   |
| 시설장   | 3,605,250 | 3,112,333               | 101   | 3,217,312             | 20  | 3,130,798            | 52    | 3,006,822            | 29  |
| 사무국장  | 3,786,250 | 2,651,270               | 70    | 2,970,907             | 19  | 2,686,025            | 40    | 1,972,791            | 11  |
| 사무원   | 2,632,900 | 1,805,018               | 82    | 1,929,844             | 23  | 1,769,094            | 50    | 1,685,594            | 9   |
| 사회복지사 | 2,679,500 | 1,841,808               | 261   | 2,149,188             | 67  | 1,851,029            | 117   | 1,560,334            | 77  |
| 간호사   | 2,717,000 | 2,267,976               | 133   | 2,324,017             | 50  | 2,308,085            | 66    | 1,947,432            | 17  |
| 물리치료사 | 2,714,450 | 2,050,217               | 88    | 2,277,804             | 21  | 2,045,665            | 54    | 1,701,484            | 13  |
| 작업치료사 | 2,714,450 | 1,730,811               | 16    | 1,894,410             | 6   | 1,795,779            | 4     | 1,523,900            | 6   |
| 영양사   | 2,632,900 | 1,842,717               | 77    | 2,040,478             | 20  | 1,792,489            | 48    | 1,671,136            | 9   |
| 요양보호사 | 2,012,385 | 1,596,538               | 3,054 | 1,676,316             | 892 | 1,626,531            | 1,481 | 1,426,815            | 681 |
| 조리원   | 1,835,046 | 1,556,286               | 346   | 1,615,063             | 99  | 1,610,987            | 160   | 1,388,802            | 87  |
| 관리인   | 1,750,000 | 1,752,030               | 73    | 2,038,688             | 19  | 1,757,822            | 39    | 1,373,873            | 15  |
| 위생원   | 1,750,000 | 1,366,761               | 122   | 1,399,571             | 35  | 1,440,838            | 54    | 1,210,746            | 33  |

자료: 사회서비스원 요양시설 시범사업 표준모델(안) <참고 9> 직원 1인당 노무비내역  
장기요양시설 경영실태조사(2016년 자료)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계산

#### 다.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한 효과 중 하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공급이 제공 서비스 품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인한다.

첫째, 사회서비스원 체계 내 대상이 되는 보육시설 및 장기요양시설은 국공립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국공립시설의 시설당 평균 정원 수가 민간 설립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시설 요양의 경우, 지자체 설립 시설당 평균 정원 수가 약 71명으로 법인 56.6명, 개인 23.3명에 비해 큰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다(<표 V-47> 참조). 보육시설의 경우 평균값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국공립시설과 일부 가정 및 협동 어린이집 시설을 제외한 민간 설립의 어린이집 규모가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V-46> 참조). 그러나, 평균값이 아닌 시설 규모의 분포를 설립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국공립시설의 규모에 대한 분포가 평균으로부터의 편차가 낮고, 왜도(skewness)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양(+)의 왜도가 높으며 중간값(median)이 ‘국공립’시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아 소규모 시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국공립에 비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게 될 시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 설계를 위한 표준모형의 경우에도 각각 보육시설 50인/80인 미만, 장기요양시설 70인, 종합재가시설 100인/150인을 가정하고 설계되어 향후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이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관리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표 V-46> 설립유형별 보육시설 규모 비교

(단위: 개소, 명)

|        | 국공립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단체 등 | 민간      | 가정      | 협동    | 직장     |
|--------|---------|------------|--------|---------|---------|-------|--------|
| 기관 수   | 3,602   | 1,377      | 748    | 13,518  | 18,651  | 164   | 1,111  |
| 정원     | 230,508 | 128,810    | 54,900 | 886,818 | 344,412 | 5,451 | 81,425 |
| 현원     | 200,783 | 92,787     | 41,298 | 711,209 | 302,674 | 4,360 | 62,631 |
| 시설당 정원 | 64.0    | 93.5       | 73.4   | 65.6    | 18.5    | 33.2  | 73.3   |
| 시설당 현원 | 55.7    | 67.4       | 55.2   | 52.6    | 16.2    | 26.6  | 56.4   |

자료: 『2018년 보육통계』,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lt;표 V-47&gt; 설립유형별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규모 비교

(단위: 개소, 명)

|     | 장기요양 (재가) |        |        | 장기요양(시설) |        |        |
|-----|-----------|--------|--------|----------|--------|--------|
|     | 기관 수      | 정원     | 시설당 정원 | 기관 수     | 정원     | 시설당 정원 |
| 지자체 | 106       | 2,266  | 21.4   | 101      | 7,176  | 71.0   |
| 법인  | 2,335     | 20,817 | 8.9    | 1,378    | 78,010 | 56.6   |
| 개인  | 12,565    | 45,325 | 3.6    | 3,810    | 88,851 | 23.3   |
| 기타  | 67        | 284    | 4.2    | 15       | 506    | 33.7   |

자료: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표 IV-2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둘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시설이 여러 채널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우선 대규모 시설하에서 많은 사회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운영 체계와 시설 내 근로자들은 서비스 제공 경험을 쌓고 이는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등 의료 시설이 시술 건수 혹은 진료 대상 환자가 많아질수록 치료·건강 결과가 좋다(volume effect)는 연구 결과는 Halm et al.(2002)의 검토 이후로도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Ross et al. 2010, Hentschker & Mennicken, 2018). 상대적으로 요양시설(nursing home)에서의 규모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적지만 Li et al.(2010)은 미국 요양시설의 미시 자료를 분석하여 시설의 규모와 시설 입소자의 일상생활의 활동 제약 정도가 음(-)의 상관관계, 즉 대규모의 시설 입소자의 일상생활 활동 제약의 정도가 낮음을 밝혔다. 이처럼 시설 및 서비스 제공 규모와 서비스 품질 및 치료 결과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관계의 주요한 동인으로 반복적인 형태의 서비스 제공 규모가 많아질수록 일하는 근로자 및 근로 체계의 숙련도가 지적되고 있다(practice-makes-perfect hypothesis). 사회서비스원 내 관리 대상 시설들의 상대적인 규모의 크기와 더불어 정책 기획단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체계적인 인력 관리의 효과가 결합된다면 근로자들의 숙련도 증가를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의 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서비스 제공 단위당 소요 비용은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미국 요양시설(nursing home)의 비용 함수를 추정한 Chen & Shea(2004)는 피보호자 증가당 요양 시설의 비용 절감 탄력도를 0.15로 추정했으며 최적의 시설 수용 규모를 추정하기도 했다. 서비스 제공을 위

한 시설 확충 및 소요 자재 조달 과정에서의 대규모 조달의 이점, 시설 내 인력의 효율적 배치<sup>82)</sup>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윤자영(2012)도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의 확충이 규모의 경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취할 수 있는 방법임을 지적했다.

장기요양기관 및 보육시설의 평가 결과를 통해 시설 규모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제고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시행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 결과, 30인 이상 시설의 평가 점수의 평균이 81.7점으로 10~30인 미만 시설 평균 73.7점, 10인 미만 시설 평균 69.2점에 비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V-48> 참조). 직전 평가인 2015년에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V-48> 장기요양시설(시설급여) 규모별 평가 점수 현황

(단위: 개소, 점)

| 구분        | 기관수   |       | 평균점수  |       |      | 최고점수  |       | 최저점수  |       | 표준편차  |       |
|-----------|-------|-------|-------|-------|------|-------|-------|-------|-------|-------|-------|
|           | 2018년 | 2015년 | 2018년 | 2015년 | 증감   | 2018년 | 2015년 | 2018년 | 2015년 | 2018년 | 2015년 |
| 계         | 4,287 | 3,623 | 74.9  | 73.8  | ▲1.1 | 100   | 99.2  | 11.0  | 8.3   | 13.9  | 15.4  |
| 30인 이상    | 1,490 | 1,228 | 81.7  | 82.5  | ▼0.8 | 100   | 99.2  | 29.8  | 23.4  | 11.7  | 12.0  |
| 10~30인 미만 | 1,328 | 961   | 73.7  | 73.4  | ▲0.3 | 98.9  | 97.5  | 27.8  | 22.3  | 12.9  | 14.2  |
| 10인 미만    | 1,469 | 1,434 | 69.2  | 66.5  | ▲2.7 | 99.3  | 98.1  | 11.0  | 8.3   | 13.9  | 14.9  |

자료: 「2018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정기평가결과」, 2019.4., 국민건강보험공단, <표 3-4-2>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내부 자료를 협조받아 간단한 회귀분석을 통해 보육시설에도 규모가 클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지 검증했다. 어린이집은 2006년 1차 평가인증을 시작했으며, 2010년부터 제2차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로 인증이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2차 지표(6영역, 70지표), 3차 지표(5영역 50지표)가 활용되었으며 두 지표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5점 이상을 인증 통과 기준점으로 설정했다. 이후 2017년 11월부터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로 변화하면서 4영역, 21지표에 기반한 4단계(A-B-C-D) 통합 지표가 활용되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7).

82) 특히, 사회서비스원 체계 내에서 지역 내 관리 시설의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등이 가능한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이러한 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받은 자료에는 2014년도 8차(인증 통과일자 2015.1.14.)부터 2018년도 7차(인증 통과일자 2018.12.14.)까지 어린이집 인증 결과인 2차 지표, 3차 지표, 통합 지표 정보와 기초적인 어린이집 소재지, 어린이집 유형(가정, 국공립, 민간, 법인단체등, 사회복지법인, 직장, 협동), 정원 및 현원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 100점 만점 기준의 2차 지표 및 3차 지표는 75~85점, 85~90점, 91~95점, 95점~97.5점, 97.5점 이상의 5단계<sup>83)</sup>로, 통합 지표는 지표 설정 그대로 A-B-C 3단계<sup>84)</sup>로 하여, 순위 로지스틱 회귀 모형(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분석했다. 활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기초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어린이집 규모를 알 수 있는 어린이집 현원 정보를 4분위로 구분해 설명변수로 활용했으며, 어린이집 유형 더미 변수를 포함했다.

회귀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현원의 규모가 클수록,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점수가 높아지는지 상관관계를 추정하고자 했다. <표 V-49>에 결과처럼 어린이집의 현원 규모가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평가인증 점수 증가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육시설의 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간접적으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이 시설 투자 및 근로자 처우 개선 투자 등 제공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이 보장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민간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이 시설 소유자의 수익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사회서비스원 내 국공립시설 운영의 경우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및 지역사회서비스원의 규정 및 관리·평가에 의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이 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V-49> 어린이집 평가 인증 점수 회귀 분석

| 현원 4분위(기준: 현원 1분위) |                       |                      |                       |
|--------------------|-----------------------|----------------------|-----------------------|
| 2분위                | 0.373 ***<br>(0.0385) | 0.321<br>(0.182)     | 0.521 ***<br>(0.0914) |
| 3분위                | 0.584 ***<br>(0.0778) | 0.539 **<br>(0.178)  | 0.487 **<br>(0.160)   |
| 4분위                | 0.508 ***<br>(0.0765) | 0.721 ***<br>(0.179) | 0.457 **<br>(0.159)   |

83) 히스토그램 검토 결과, 95~100점 사이에 분포가 밀집되어 있으며, 중간값인 97.5점을 중심으로 분포의 극대값이 형성되어 있어, 95~97.5점과 97.5~100점을 별도 구분했다.

84) D등급은 평가 불인증으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 어린이집 설립 유형(기준: 가정) |                        |                       |                       |
|--------------------|------------------------|-----------------------|-----------------------|
| 국공립                | 1.204 ***<br>(0.0865)  | 1.618 ***<br>(0.177)  | 0.666 ***<br>(0.198)  |
| 민간                 | -0.729 ***<br>(0.0746) | -0.656 ***<br>(0.179) | -0.792 ***<br>(0.154) |
| 법인·단체 등            | -0.180<br>(0.123)      | 0.642 **<br>(0.230)   | -0.691 **<br>(0.246)  |
| 사회복지법인             | -0.270 **<br>(0.102)   | 0.438 *<br>(0.214)    | -0.929 ***<br>(0.207) |
| 직장                 | 1.261 ***<br>(0.161)   | 1.827 ***<br>(0.215)  | 1.731 **<br>(0.526)   |
| 협동                 | -0.448<br>(0.289)      | -1.129 *<br>(0.536)   | -0.905<br>(0.571)     |
| N                  | 17,215                 | 4,181                 | 10,229                |

주: \*:  $p < 0.05$ , \*\*:  $p < 0.01$ , \*\*\*:  $p < 0.001$

#### 라. 민간 위탁 국공립시설의 사회서비스원 직영 효과: 서비스 질 제고 효과

앞에서 검토한 민간 위탁 국공립시설 인력 채우 개선 및 투명한 시설 운영, 규모의 경제 효과 등 여러 기대 효과의 경로들이 결합하여 실제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운영 시 유의미한 서비스 질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지 평가해보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주요한 변화는 민간에 위탁되었던 국공립시설이 공공기관의 직영 체계로 바뀐다는 사실이다. 국공립시설의 민간 위탁 vs 직영 체계 여부 식별이 가능하며, 시설 품질과 관련된 정보들이 관찰될 수 있는 자료 분석을 통해 과거 민간위탁 국공립시설과 직영 시설을 비교할 수 있다. 비교를 통해 국공립시설 중 지자체 직영하에 있었던 시설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 1)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경우,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를 통해 입수할 수 있는 2015년 보육실태조사의 원자료 중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설문한 어린이집-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보육 국공립시설의 직영 및 민간 위탁 여부가 식별 가능하다. 분석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어린이집의 품질을 식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보(예: 어린

이집 평가 인증 정보 등)가 이 자료에 부재하다는 사실이다. 차선택으로 어린이집-보육실태조사 자료에서 어린이집 서비스 품질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아래의 자료(<표 V-50> 참조)를 품질 대리(proxy) 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① ‘보육과정의 운영’은 보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체계적인 계획 및 실행, 평가 및 환류를 거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응답 ② ‘영아반/유아반 보육활동 실시 정도’는 5~6 과정의 보육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③ ‘영아반/유아반 교재교구의 충분성·활용성’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는 교재와 교구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며,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 응답하는 정보이다. 이러한 제한적이지만 서비스 품질과 관련이 있는 정보들이 시설의 품질을 유의하게 대리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분석을 진행했다.

<표 V-50> 어린이집 품질 대리 변수 선정 내역

| 구분             | 변수 내용                                                         | 변수 값 정보                                                                |
|----------------|---------------------------------------------------------------|------------------------------------------------------------------------|
| 보육과정 운영        | 영유아를 고려한 보육계획안의 수립, 통합적 일과 운영, 다양한 활동 균형있게 계획, 정기적 평가 및 결과 반영 | 매우 그러함(1), 그런 편임(2), 별로 그렇지 않음(3), 전혀 그렇지 않음(4), 모름/무응답(9)             |
| 영아반 보육활동 실시 정도 |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활발히 이루어짐(1),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2), 별로 이뤄지지 않는 편(3), 별로 이뤄지지 않음(4), 모름/무응답(9) |
| 영아반 교재교구 충분성   |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충분함(1), 충분한 편(2), 부족한 편(3), 부족함(4), 모름/무응답(9)                          |
| 영아반 교재교구 활용성   |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충분함(1), 충분한 편(2), 부족한 편(3), 부족함(4), 모름/무응답(9)                          |
| 유아반 보육활동 실시 정도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활발히 이루어짐(1),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2), 별로 이뤄지지 않는 편(3), 별로 이뤄지지 않음(4), 모름/무응답(9) |
| 유아반 교재교구 충분성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충분함(1), 충분한 편(2), 부족한 편(3), 부족함(4), 모름/무응답(9)                          |
| 유아반 교재교구 활용성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 충분함(1), 충분한 편(2), 부족한 편(3), 부족함(4), 모름/무응답(9)                          |

자료: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어린이집·보육실태조사」, 2015년

해당 변수들은 총 37개이며, 각 변수는 변수값이 낮을수록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V-50> 참조). 37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고려해야 하므로 많은 변수들의 정보를 축약해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차원축소(dimension reduction)전략이 필요하다. 본 분석에서는 k-평균 알고리즘(k-means algorithm)을 활용( $k=2$ )하여 변수의 정보를 2개의 군집(cluster)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k-평균 알고리즘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비슷한 특성을 가진 군집으로 묶을 때 유용하게 활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이 분석에서는 <표 V-50>의 정보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2개의 군집으로 분류하였으며, 2개의 군집은 <표 V-50>의 정보에 기반하여 서로 이질적인 군집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 응답한 총 2,228개소의 어린이집 중, 군집 1로 구분된 어린이집은 967개소(43.4%)이며, 군집 2로 구분된 어린이집은 1,261개소(56.6%)이다. <표 V-50>의 모든 변수와 군집 구분(1, 2)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0.7660, -0.4172]$ 의 값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집 2가 군집 1에 비해 <표 V-50>의 변수값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군집 2가 군집 1에 비해 서비스의 품질이 높은 시설로 묶여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설 설립유형으로 군집 1과 군집 2의 비중을 검토한 결과, 국공립시설과 직장 시설의 군집 2의 비중이 다른 민간 시설에 비해 높음을 통해 두 시설이 서비스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표 V-49>에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 결과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양(+)의 추정 계수를 나타냈던 국공립시설 및 직장 시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표 V-51> 시설 설립유형별 군집 분석 결과 비교

(단위: 개소, %)

|                      |      | 국공립    |        |        | 사회복지<br>법인 | 법인,<br>단체 등 | 민간     | 직장     | 가정     |
|----------------------|------|--------|--------|--------|------------|-------------|--------|--------|--------|
|                      |      | 계      | 민간위탁   | 직영     |            |             |        |        |        |
| 군집1<br>(서비스<br>질 낮음) | 시설 수 | 152    | 149    | 3      | 148        | 125         | 431    | 76     | 35     |
|                      | 비중   | (33.3) | (34.1) | (15.0) | (42.4)     | (46.8)      | (49.8) | (32.3) | (66.0) |
| 군집2<br>(서비스<br>질 높음) | 시설 수 | 305    | 288    | 17     | 201        | 142         | 435    | 160    | 18     |
|                      | 비중   | (66.7) | (65.9) | (85.0) | (57.6)     | (53.2)      | (50.2) | (67.8) | (34.0) |
| 계                    |      | 457    | 437    | 20     | 349        | 267         | 866    | 236    | 53     |

사회서비스원 관련 시사점이 있는 결과는 국공립시설 중 민간 위탁과 직영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다. 비록 직영시설의 표본 크기가 작지만(20개소), 민간 위탁의 군집2 비중(65.9%)에 비해 직영 시설의 군집 2의 비중(85.0%)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직영 국공립시설의 서비스 질의 상대적 우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추진되는 국공립시설의 직영화가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실증적인 결과로 생각된다.

## 2)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을 중심으로 ① 제공 서비스의 질을 대리하는 정보와 ② 근로 인력의 처우에 관련한 정보를 확보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 인력의 처우의 개선이 품질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본 분석의 목적이지만, 무작위 실험을 통한 실험 분석 혹은 근로 인력 처우 개선의 외생적 변이(exogenous variation) 없이는 강건하게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 현재 본 연구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정보는 단기간의 장기요양시설/재가시설의 평가 정보와 근로 인력 처우 관련 정보 등 설문 조사 자료/행정 자료로 이를 통해 강건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탐색적 자료 분석의 일환으로 인력 처우 정보와 서비스 품질 정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만약 상관관계가 존재하다면 시설의 다양한 특성 정보를 통제한 후에도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여전히 유의하게 추정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활용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협조받은 ① 시설급여/재가급여 평가 결과 및 ②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이다. 첫째로, 장기요양시설(시설급여/재가급여)의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홀수년도에 입소시설, 짝수년도에 재가기관을 평가해왔으며, 2011년부터 평가 대상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기관의 평가하고 있다(2017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보고서). 본 분석에는 2015~2017년 3개년도의 평가 결과(2015년 시설급여, 2016 및 2017년 재가급여 평가)가 활용되었다(<표 V-52> 참조).

&lt;표 V-52&gt; 장기요양기관 평가 현황

(단위: 개소, 점)

| 평가연도 | 급여구분 | 대상기관  | 실시기관  | 평가불가기관 | 평균점수 |
|------|------|-------|-------|--------|------|
| 2015 | 시설   | 3,988 | 3,623 | 365    | 73.8 |
| 2016 | 재가   | 5,856 | 4,916 | 940    | 80.1 |
| 2017 | 재가   | 5,331 | 4,512 | 819    | 79.7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결과보고서』, &lt;표 1-1-1&gt;의 일부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요양 서비스 제공 비용 분석을 위한 기관 경영 자료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의 2015~2017년 자료를 통해 종사하고 있는 개별 근로자의 고용 조건 및 급여 수준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했다. 3개년도의 표본 크기는 <표 V-53>과 같다.

&lt;표 V-53&gt; 3년간 경영패널조사 참여 기관 수

(단위: 개소)

| 급여유형   | '15년 참여 기관수 | '16년 참여 기관 수 | '17년 참여 기관 수 | 3개년 참여기관 수 |
|--------|-------------|--------------|--------------|------------|
| 전체     | 453         | 465          | 499          | 357        |
| 노인요양시설 | 109         | 119          | 116          | 96         |
| 공동생활가정 | 51          | 61           | 63           | 33         |
| 방문요양   | 128         | 122          | 136          | 97         |
| 방문목욕   | 73          | 69           | 75           | 57         |
| 방문간호   | 13          | 18           | 19           | 11         |
| 주야간보호  | 76          | 74           | 88           | 63         |
| 단기보호   | 3           | 2            | 2            | -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장기요양기관 패널 경영실태조사」, &lt;표 8&gt;

자료를 통해 확보한 근로자 처우 관련 정보는 ① 고용보험 가입 여부 ② 고용 형태(장기고용/일용) ③ 급여형태(월급제/시급제) ④ 근로시간(1개월 총 근로시간) ⑤ 1개월 총 임금 ⑥ 근속연수 등의 정보이다. 두 자료는 공유하는 가상의 시설 ID를 통해 연결되었으며, 해당연도에 두 가지 자료원에 해당 시설의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연결되었다. 이를 통해 2015~2017년 동안 연결이 이뤄진 ‘시설—연도’ 표본 수는 모두 713개이다.

회귀분석의 종속변수(y)는 ① 시설의 종합 평가 등급(A-B-C-D-E)과 ② 서비스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부 평가 항목의 점수를 기준으로 형성되었다. 우선 2015년 시설급여 평가는 88개 문항, 2016~2017년 재가급여 평가는 방문요양 44문항, 방문목욕 45문항, 방문간호 42문항, 주야간보호 59문항, 단기보호 54문항, 복지용구 32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종합 등급이 5단계(A~E)로 집계되었다. 한편 시설의 5단계 종합 등급은 서비스 품질 외 다양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검토된 결과일 수 있어 시설의 평가등급이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시설 급여/재가 급여 제공 기관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문항 중,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문항만을 선별하여, ① 기관의 위생 및 환경 ② 안전 ③ 수급자의 권리 보장 ④ 급여 제공 과정 ⑤ 급여 제공 결과의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로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별도로 집계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에 보다 밀접한 정보를 취합하여 추가적인 회귀분석을 시행했다(<표 V-54>, <표 V-55> 참조). 이러한 선별의 과정에 완벽하게 서비스 품질을 측정해낸다고 보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평가등급에 대한 앞서 지적된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V-54>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 항목 선별

| 영역      | 연번 | 평가 요소          |
|---------|----|----------------|
| 위생 및 환경 | 23 | 식당 및 조리실       |
|         | 24 | 식품위생관리         |
|         | 25 | 감염 관리          |
|         | 26 | 감염병 관리         |
|         | 27 | 정기 소독          |
|         | 29 | 특별 침실          |
|         | 30 | 상담 장소 및 공간개방   |
|         | 31 | 산책 공간          |
|         | 32 | 실내 환경          |
| 안전      | 33 | 안전 장치 및 안내 표지판 |
|         | 34 | 야간점검           |
|         | 35 | 낙상예방 환경조성      |
|         | 36 | 응급상황대응         |
|         | 37 | 응급의료기기         |

| 영역        | 연번 | 평가 요소          |
|-----------|----|----------------|
| 안전        | 38 | 비상구, 유도등       |
|           | 39 | 소화용 기구         |
|           | 40 | 전기가스 안전점검      |
|           | 41 | 재난상황대응         |
| 수급자 권리 보장 | 43 | 수급자 상담         |
|           | 44 | 보호자 회의         |
|           | 45 | 존엄성 배려         |
|           | 46 | 수급자 성명 및 개인물건  |
|           | 49 | 급여 이용 정보 제공    |
| 급여제공과정    | 52 | 수급자상태 욕구사정     |
|           | 53 | 낙상예방           |
|           | 54 | 욕창예방           |
|           | 55 | 인지기능검사         |
|           | 56 | 급여계획수립         |
|           | 57 | 급여계획 준수 및 변경사유 |
|           | 58 | 체계적 급여 제공기록    |
|           | 59 | 목욕급여 제공        |
|           | 60 | 식사 및 식수제공      |
|           | 61 |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
|           | 62 | 침대이외 장소 식사     |
|           | 63 | 배설관리           |
|           | 64 | 배설보조용구         |
|           | 65 | 유치도뇨관관리        |
|           | 66 | 욕창예방 및 조치      |
|           | 67 | 욕창관리           |
|           | 68 | 여가프로그램         |
|           | 69 | 외출 및 외박        |
|           | 70 | 지역사회행사         |
|           | 71 | 특화프로그램         |
|           | 72 | 수급자제재 동의       |
|           | 73 | 노인학대예방         |
|           | 74 | 기능회복훈련         |
|           | 75 | 물리치료           |
|           | 76 | 의사진찰           |

| 영역     | 연번 | 평가 요소      |
|--------|----|------------|
| 급여제공과정 | 77 | 치매예방프로그램   |
|        | 78 | 치매수급자 환경조성 |
|        | 79 | 투약 및 약품관리  |
|        | 80 | 급여제공 결과평가  |
|        | 82 | 연계기록지      |
| 급여제공결과 | 85 | 등급현황       |
|        | 86 | 욕창발생현황     |
|        | 87 | 유치도뇨관현황    |
|        | 88 | 배설기능현황     |

주: 평가항목의 자세한 항목설명은 해당 보고서 참조  
 자료: 『2015년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평가결과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선별

&lt;표 V-55&gt;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 항목 선별

| 영역        | 평가항목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
| 위생 및 환경   | 생활환경     | ○    |      |      |        |      |
|           | 복장위생     | ○    | ○    | ○    | ○      | ○    |
|           | 위생적급여제공  |      | ○    |      |        |      |
|           | 기구(소독)관리 |      |      | ○    |        |      |
|           | 식당 및 조리실 |      |      |      | ○      | ○    |
|           | 감염관리     |      |      |      | ○      | ○    |
|           | 정기소독     |      |      |      | ○      | ○    |
|           | 실내환경     |      |      |      | ○      | ○    |
| 안전        | 위험도평가    | ○    | ○    | ○    | ○      | ○    |
|           | 낙상예방환경조성 |      |      |      | ○      | ○    |
|           | 응급체계     |      |      |      | ○      | ○    |
|           | 소방시설     |      |      |      | ○      | ○    |
|           | 재난상황대응훈련 |      |      |      | ○      | ○    |
| 수급자 권리 보장 | 방문상담관리   | ○    | ○    | ○    |        |      |
|           | 자료제공     | ○    | ○    | ○    |        |      |
|           | 수급자상담관리  |      |      |      | ○      | ○    |
|           | 가족과의 소통  |      |      |      | ○      |      |
|           | 존엄성 배려   |      |      |      |        | ○    |

| 영역         | 평가항목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
| 급여제공<br>과정 | 욕구사정       | ○    | ○    | ○    | ○      | ○    |
|            | 급여계획       | ○    | ○    | ○    | ○      | ○    |
|            | 급여제공 적절성   | ○    | ○    | ○    | ○      | ○    |
|            | 욕구반영       | ○    | ○    | ○    | ○      | ○    |
|            | 안전상황       | ○    | ○    | ○    | ○      | ○    |
|            | 기능회복훈련     | ○    |      |      |        |      |
|            | 노인학대방지     | ○    | ○    |      | ○      | ○    |
|            | 신체청결상태     | ○    |      |      |        | ○    |
|            | 목욕전후 상태관찰  |      | ○    |      |        |      |
|            | 적정목욕급여     |      | ○    |      |        |      |
|            | 목욕전후도움     |      | ○    |      |        |      |
|            | 간호관리       |      |      | ○    |        | ○    |
|            | 급식 및 투약관리  |      |      |      | ○      | ○    |
|            | 식단표 및 음식상태 |      |      |      | ○      | ○    |
|            | 구강관리       |      |      |      | ○      |      |
|            | 수급자 안전관리   |      |      |      | ○      |      |
|            | 프로그램       |      |      |      | ○      |      |
|            | 특화프로그램     |      |      |      | ○      |      |
|            | 연계기록지      |      |      |      | ○      | ○    |
|            | 이동서비스수칙    |      |      |      | ○      |      |
|            | 이동서비스      |      |      |      | ○      |      |
|            | 기능향상프로그램   |      |      |      |        | ○    |
| 급여제공<br>결과 | 만족도(현장)    | ○    | ○    | ○    | ○      | ○    |
|            | 만족도(유선)    | ○    | ○    | ○    | ○      | ○    |
|            | 등급현황       | ○    |      |      | ○      |      |
| N          |            | 121  | 47   | 1    | 76     | 1    |

주: 평가항목의 자세한 항목설명은 해당 보고서 참조  
 자료: 『2017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평가결과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여 저자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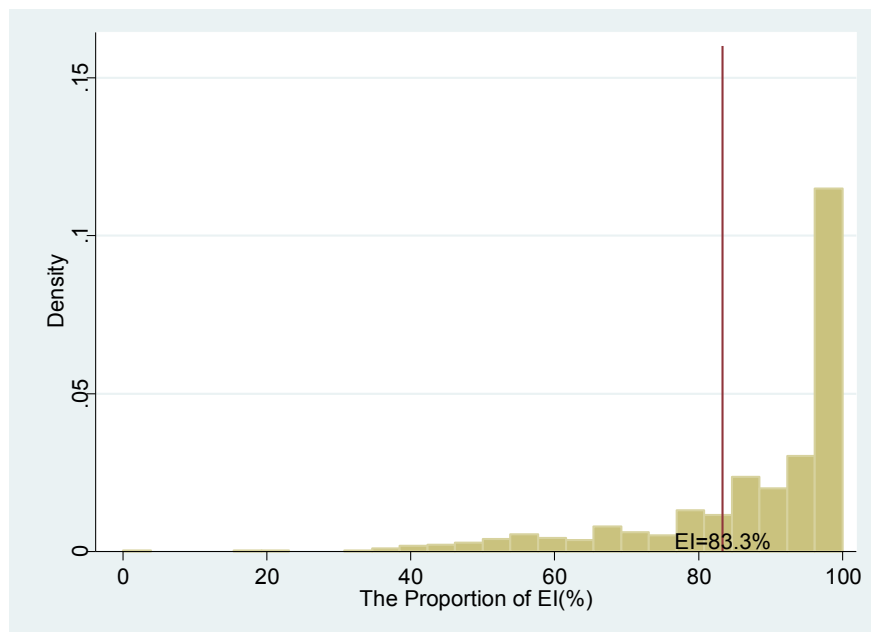
회귀분석의 주요 설명변수(x)는 시설별로 ① 고용보험 가입률 ② 장기고용자의 비중(고용형태) ③ 월급제의 비중(급여형태) ④ 1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 ⑤ 시간당 급여수준이며, 그 외 시설의 현원을 기준으로 시설급여/재가급여별로 시설 규모 4분위

및 설립유형(개인/법인/지자체)가 활용되었다. 고용보험 가입률, 고용형태, 급여형태, 장기근속자 비율 변수는 각각 분포의 형태를 검토하여 적당한 기준<sup>85)</sup>으로 이분화(dichotomization)했으며, 0-1의 더미변수 형태로 회귀분석에 포함되었다([그림 V-4] 참조). 시간당 임금분포는 평균 9,416원, 중위값 9,098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편의상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인 8,350원을 중심으로 이분화하여 역시 0-1 더미변수로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그림 V-4] 참조).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5단계(A-B-C-D-E) 종합 등급변수인 경우, 순위 로짓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품질 관련 각 영역의 평균점수는 일반 선형 회귀모형을 활용했으며,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추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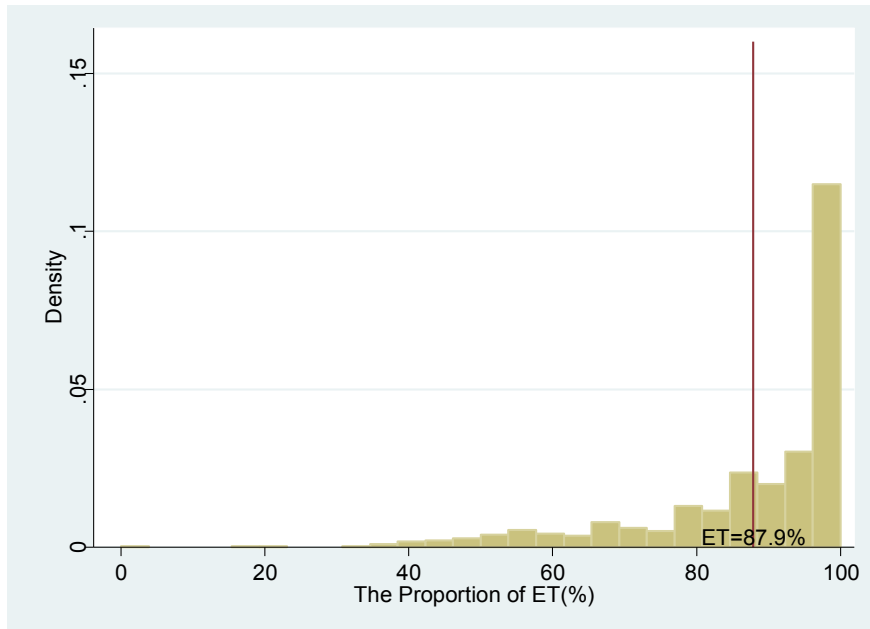
[그림 V-4] 근로자 처우 관련 변수 분포 및 이분화

고용보험 가입률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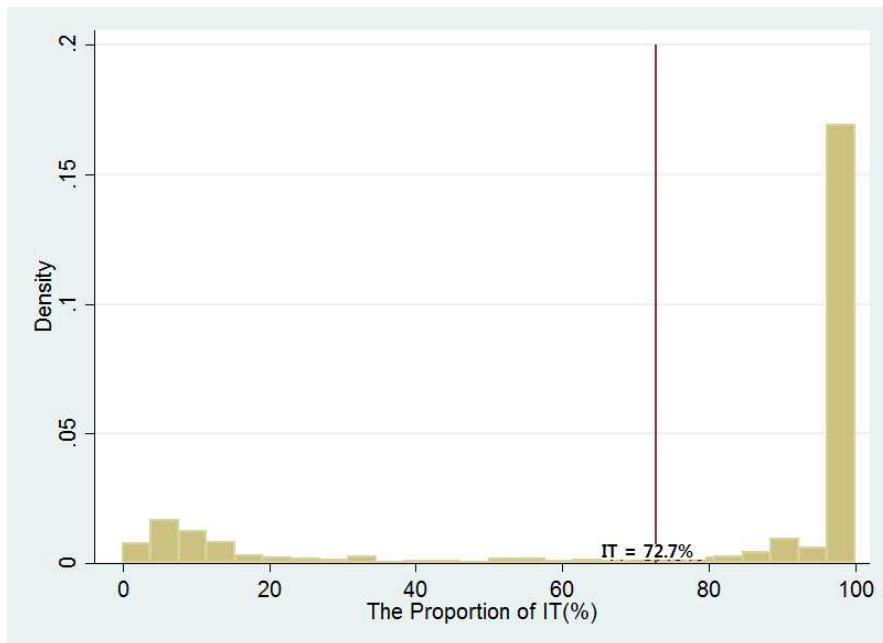


85) 고용보험 가입률은 25percentile(83.3%), 장기고용자 비중은 10percentile(87.9%), 월급제 비중은 25percentile (72.7%), 1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은 75percentile(51.3%)을 기준으로 구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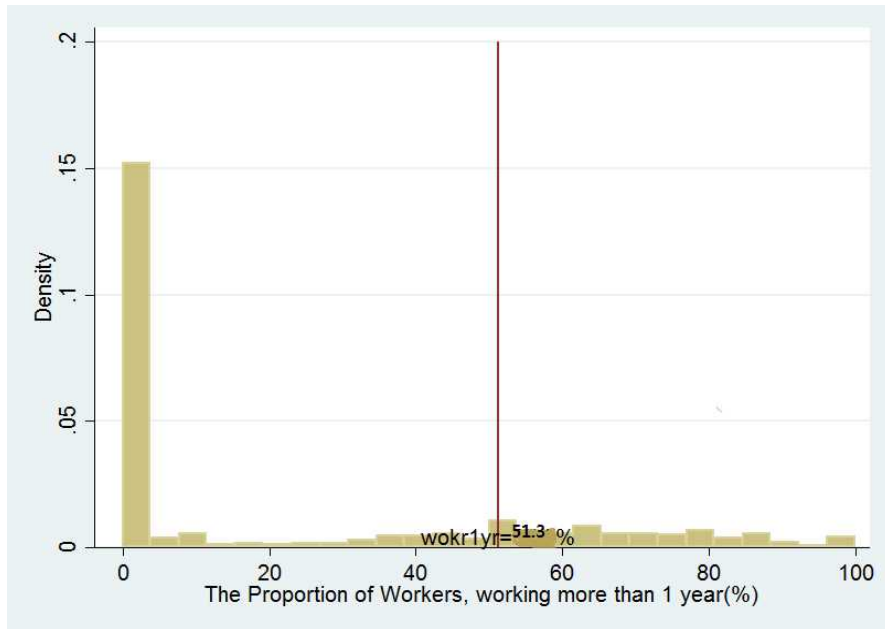
장기고용근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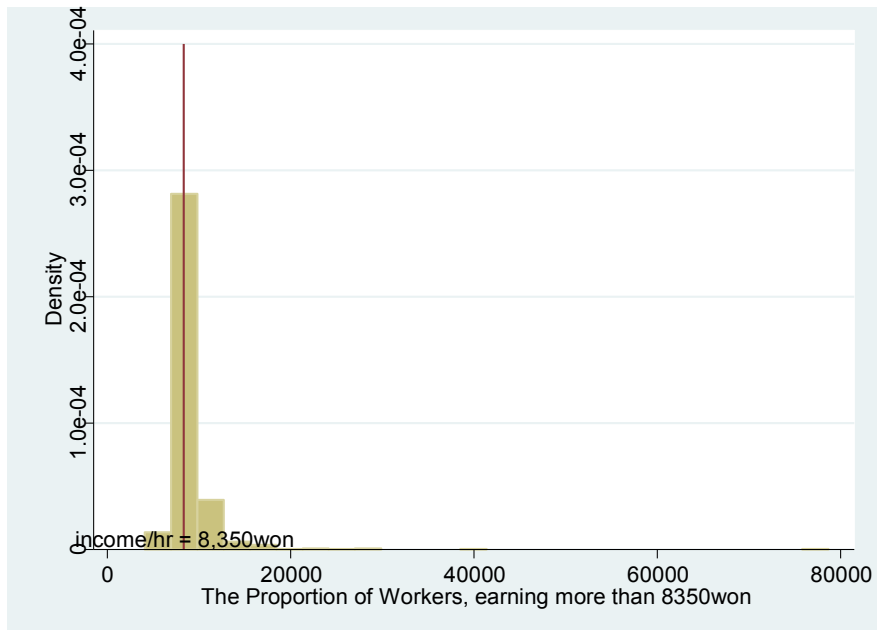
월급제 근로자 비율



1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



시간당 임금 분포



자료: 저자 작성

우선 5단계 시설 등급을 종속변수로 하여 순위 로짓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장기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 제공 기관 모두 기관의 설립 유형 및 현원 기준 시설 규모가 시설 등급과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표 V-56> 참조). 관련 변수들은 추정 계수 부호의 방향도 해석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근로자의 처우 관련 변수들이 시설 평가 등급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기관의 설립 유형 및 시설 규모 등 변수를 통제한 후 (설립 유형 × 시설규모) cell 안의 within-variation을 설명하는 데도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예상했으나,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품질 관련 변수만 선별한 종속변수를 활용한 일반 선형 회귀분석 결과 역시 인력 처우 관련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려웠다(<표 V-57>, <표 V-58> 참조). 특히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법인 설립 및 지자체 설립 기관의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으며, 시설 규모 또한 현원 규모가 클수록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가급여 시설 또한 시설 규모가 품질관련 점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V-56> 종합등급 회귀분석 결과

|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 고용보험가입률                 | -0.322<br>(0.293)   | -0.059<br>(0.311)   |
| 장기고용자비율                 | -0.856**<br>(0.343) | -0.184<br>(0.326)   |
| 월급제고용비율                 | -1.229**<br>(0.554) | -0.543<br>(0.352)   |
| 1년이상장기근속자 비율            | 0.093<br>(0.192)    | 0.000               |
| 8,350원 이상 시간당 임금 근로자 비율 | -0.009<br>(0.214)   | 0.393<br>(3.607)    |
| 설립유형(기준: 개인)            |                     |                     |
| 법인                      | 0.863***<br>(0.217) | 0.865***<br>(0.270) |
| 지자체                     | 1.034***<br>(0.295) | 1.200<br>(0.913)    |



|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
| 시설 규모(현원 기준) 기준: 1분위 |                     |                     |
| 2분위                  | 1.039***<br>(0.273) | 0.828**<br>(0.380)  |
| 3분위                  | 1.981***<br>(0.269) | 0.974**<br>(0.379)  |
| 4분위                  | 2.430***<br>(0.316) | 1.212***<br>(0.443) |

주: \*:  $p < 0.1$ , \*\*:  $p < 0.05$ , \*\*\*:  $p < 0.01$

<표 V-57> 품질관련 문항 집계 후 회귀분석 결과(시설급여)

| 구분                         | 급여제공<br>과정           | 위생·환경                | 안전                   | 수급자<br>권리보장          | 급여제공<br>결과           |
|----------------------------|----------------------|----------------------|----------------------|----------------------|----------------------|
| 고용보험가입률                    | -0.493<br>(4.640)    | -2.490<br>(1.701)    | -2.286<br>(1.389)    | 1.752<br>-2.438      | -0.423<br>(2.583)    |
| 장기고용자비율                    | -11.466**<br>(5.605) | 1.617<br>(1.623)     | -6.636***<br>(0.964) | -6.933***<br>(2.309) | -8.497**<br>(3.531)  |
| 월급제고용비율                    | 12.348***<br>(2.125) | -6.866***<br>(1.693) | -2.585**<br>(1.267)  | 5.613<br>(3.905)     | -1.246<br>(4.022)    |
| 1년이상 장기근속자 비율              | 0.778<br>(1.072)     | -0.055<br>(0.779)    | 0.702<br>(0.694)     | 0.060<br>(1.066)     | 1.574<br>(1.438)     |
| 8,350원 이상 시간당 임금<br>근로자 비율 | 2.436<br>(1.768)     | -1.068<br>(1.036)    | -1.033<br>(0.942)    | -0.894<br>(1.485)    | 1.716<br>(1.718)     |
| 설립유형(기준: 개인)               |                      |                      |                      |                      |                      |
| 법인                         | 2.069<br>(1.709)     | 3.352***<br>(0.936)  | 2.536***<br>(0.832)  | 5.167***<br>(1.517)  | -1.794<br>(1.769)    |
| 지자체                        | 1.655<br>(2.048)     | 5.843***<br>(0.955)  | 3.416***<br>(1.027)  | 8.620***<br>(1.369)  | -3.327<br>(2.367)    |
| 시설 규모(현원 기준)<br>기준: 1분위    |                      |                      |                      |                      |                      |
| 2분위                        | 0.473<br>(1.940)     | 7.382***<br>(1.533)  | 8.430***<br>(1.341)  | -3.593<br>(2.422)    | -2.994<br>(2.585)    |
| 3분위                        | -2.906<br>(2.221)    | 10.768***<br>(1.147) | 9.374***<br>(1.231)  | 2.319<br>(1.929)     | 3.600*<br>(2.174)    |
| 4분위                        | -1.420<br>(1.242)    | 11.024***<br>(1.212) | 10.557***<br>(1.165) | 4.414**<br>(1.779)   | 1.481<br>(2.344)     |
| 상수                         | 90.860***<br>(2.737) | 91.273***<br>(1.863) | 95.968***<br>(1.669) | 87.746***<br>(3.541) | 84.447***<br>(3.863) |

주: \*:  $p < 0.1$ , \*\*:  $p < 0.05$ , \*\*\*:  $p < 0.01$

&lt;표 V-58&gt; 품질관련 문항 집계 후 회귀분석 결과(재가급여)

| 구분                         | 급여제공<br>과정            | 위생·환경                | 안전                    | 수급자<br>권리보장           | 급여제공<br>결과           |
|----------------------------|-----------------------|----------------------|-----------------------|-----------------------|----------------------|
| 고용보험가입률                    | 0.702<br>(1.081)      | -0.057<br>(0.924)    | -4.030<br>(2.611)     | 2.381<br>(2.499)      | -0.738<br>(1.502)    |
| 장기고용자비율                    | 0.205<br>(1.293)      | -0.182<br>(1.258)    | -0.862<br>(3.061)     | 0.007<br>(2.648)      | -0.295<br>(1.668)    |
| 월급제고용비율                    | -0.858<br>(1.225)     | -1.036<br>(1.249)    | 3.744<br>(3.036)      | 1.392<br>(3.154)      | -1.780<br>(1.816)    |
| 8,350원 이상 시간당<br>임금 근로자 비율 | 5.994<br>(12.447)     | 3.104<br>(5.820)     | -1.405<br>(10.682)    | 6.768<br>(20.808)     | -8.453***<br>(2.011) |
| 설립유형(기준: 개인)               |                       |                      |                       |                       |                      |
| 법인                         | 2.764***<br>(1.053)   | 1.435<br>(0.899)     | -1.310<br>(2.345)     | 2.766<br>(2.542)      | -1.830<br>(1.286)    |
| 지자체                        | 3.751<br>(3.251)      | 1.784<br>(1.748)     | 2.473<br>(4.080)      | -7.193<br>(10.186)    | -1.713<br>(2.651)    |
| 시설 규모(현원 기준)<br>기준: 1분위    |                       |                      |                       |                       |                      |
| 2분위                        | 3.204*<br>(1.841)     | 1.154<br>(1.678)     | 3.387<br>(3.443)      | 8.704*<br>(5.180)     | 1.526<br>(2.823)     |
| 3분위                        | 3.604*<br>(1.840)     | 1.903<br>(1.716)     | 5.017<br>(3.321)      | 11.437**<br>(4.812)   | 4.171<br>(2.853)     |
| 4분위                        | 4.496**<br>(1.939)    | 1.878<br>(1.734)     | 3.087<br>(4.443)      | 14.616***<br>(4.922)  | 5.337*<br>(3.171)    |
| 상수                         | 81.908***<br>(12.524) | 92.320***<br>(6.103) | 90.538***<br>(11.014) | 69.082***<br>(21.036) | 99.863***<br>(2.717) |

주: 1. 1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 변수는 다중공선성으로 누락

2. \*:  $p < 0.1$ , \*\*:  $p < 0.05$ , \*\*\*:  $p < 0.01$

일련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서비스원의 시설 직영을 통해 제공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과정에 있어, 시설의 규모가 적지 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 절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시설 직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learning-by-doing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존재하므로 실증 분석의 결과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내 직영 시설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86)</sup>

본 절의 실증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시설의 평가 등급 등 평가 정보가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품질을 강건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설 종합 평가 등급에 다른 정보 및 측정 오차 등이 포함되어 서비스의 품질 측정에 오류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 직접 관련 문항들을 선별하여 별도로 분석에 활용했으나 본질적인 오류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힌다. 또한, 인과관계를 식별한 것이 아니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절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을 통해 고용 안정 및 급여 인상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급자의 입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직영 시설 근로자의 처우 개선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규모 확충 및 인력 및 시설의 효율적·체계적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2. 성과 대비 비용

### 가. 장기요양시설 표준모형 검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해 요양시설의 인력배치가 규제되고 있다(<표 V-59> 참조). 보건복지부에서 2019.1월에 발표한 「사회서비스원 요양시설 시범사업 표준모델(안)」에서의 종사자 규모와 비교하여 법정인력을 정확하게 배치했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인력은 모형 내에서 임의로 추가배치했다(<표 V-60> 참조). 한편, 인력 배치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촉탁의사의 경우, 2016년 이전에는 월 196만원 촉탁의사 활동비가 요양 수가에 반영되어 시설에 지급되었지만, 2016년 9월부터 장기요양 수가에 인건비가 배정되지 않고 의사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인건비도 수가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요양시설 표준모형에 의사 및 촉탁의사의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86) 실제로 사회서비스원 내 장기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 등의 표준모형의 구축 시, 각각 수급자 70인 이상(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종사자 100인(기본형)/150인(확대형) (종합재가센터) 등 일정 수준 이상을 가졌었다.

&lt;표 V-59&gt; 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

| 직종             | 입소자 30명 이상                    |
|----------------|-------------------------------|
| 시설의 장          | 1명                            |
| 사무국장           |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사회복지사          |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의사 또는 촉탁의사     | 1명 이상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명(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
| 사무원            |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영양사            | 1명(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 조리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 위생원            | 1명(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
| 관리인            | 1명(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중 6. 직원의 배치기준

&lt;표 V-60&gt; 요양시설 표준모델 인력배치안

(단위: 명)

| 구분     | 직종        | 법정인력 | 배치인력   |
|--------|-----------|------|--------|
| 장기요양요원 | 사회복지사     | 1    | 2(+1)  |
|        | 요양보호사     | 30   | 32(+2) |
|        | 간호(조무)사   | 3    | 4(+1)  |
|        | 물리(작업)치료사 | 1    | 2(+1)  |
| 간접인력   | 시설장       | 1    | 1      |
|        | 사무국장      | 1    | 1      |
|        | 영양사       | 1    | 1      |
|        | 조리원       | 3    | 4(+1)  |
|        | 위생원       | 1    | 1      |
|        | 관리인       | 1    | 1      |
|        | 사무원       | 1    | 1      |

주: 70인 기준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수급자 46명, 치매수급자 24명으로 정원을 설정했으므로, <표 V-59>에 따른 요양보호사 법정인력은 30명이 아닌 31명임. 그러나, 모형상에서 배치인력을 32인으로 계획했으므로 문제되지 않음

자료: 「사회서비스원 요양시설 시범사업 표준모델(안)」, 보건복지부, 2019.1.10.

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나타내는 등급별 점유율은 2018년 기준 시설수급자 등급별 연평균 점유율을 이용했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수가에 차이가 있어, 만약 등급별 수요가 불안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요양시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14~2017년의 시설수급자의 등급별 분포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 5개년간 시설급여의 주 대상자인 1~2등급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3등급 이하의 수급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61> 참조). 표준모형에 따르면, 등급별 1일 수가는 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감소하고 있지만(일반 수급자 1등급 69,150원, 2등급 64,170원, 3등급 59,170원), 시설 입소자 등급 분포의 변화에 따른 소요 인력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설급여의 주대상자인 1~2등급이 아닌 3등급 이하의 수급자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시설의 경영 수지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등급별 시설요양 수요는 시설 수입의 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사회서비스원별로 전체 수급자 수와 장기요양등급별 분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lt;표 V-61&gt; 등급별 요양시설 점유율

(단위: 명, %)

| 구분                 | 계       | 1등급    | 비중   | 2등급    | 비중   | 3등급<br>이하 | 비중   |
|--------------------|---------|--------|------|--------|------|-----------|------|
| 2014               | 90,204  | 12,677 | 14.1 | 26,256 | 29.1 | 51,271    | 56.8 |
| 2015               | 95,398  | 12,536 | 13.1 | 25,610 | 26.8 | 57,252    | 60.0 |
| 2016               | 104,161 | 13,580 | 13.0 | 27,091 | 26.0 | 63,490    | 61.0 |
| 2017               | 109,731 | 13,865 | 12.6 | 27,750 | 25.3 | 68,116    | 62.1 |
| 표준모형<br>(2018년 기준) |         |        | 11.3 |        | 24.3 |           | 64.4 |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사회서비스원 요양시설 시범사업 표준모델(안)」 근거하여 저자 작성

관리운영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영하는 시설투자 및 자본 투자 성격의 비용을 어떤 회계기준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표준모형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립한 시설을 위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토지, 건물 등과 같은 대규모 자산 취득에 따른 비용은 시설 경영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점에 대해서 신규 설치되는 인프라 초기 투자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요양시설의 운영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대규모 인프라 초기 투자비 중의 일부가 <표 V-62>의 재산조성비 항목의 세부항목인 자산취득비 항목을 통해 감가상각의 형태로 매년 계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는 장기요양시설의 운영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예를 들어, 국공립 시설을 일부 토지·건물의 신축이 아닌 임차 형태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면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를 매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국비 보조가 있는지, 시설에서 일부 부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어 보인다.

<표 V-62> 장기요양시설 재산조성비 세부 내역

| 구분      | 세부내역                                                                 |
|---------|----------------------------------------------------------------------|
| 시설비     |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시설비                                            |
| 자산취득비   |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                                 |
|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소규모수선비는 '수선비'에 계상) |
| 수선비     | 건물, 장비, 비품 등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                                             |

자료: 오동일 외 (2012)

또한, 대규모 시설 보수 상황, 혹은 비교적 큰 규모의 장비·기계 투자 등 자본재 투자가 필요한 경우 이와 같은 비용이 재산조성비를 통해 비용으로 계상될 수 있다. 분석 자료의 부족으로 장기요양시설의 현재 이와 같은 자본재 투자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반영하는지, 당해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이와 같은 항목이 관리운영비 규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은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본재 투자비용의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 계상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비를 책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형상 관리운영비 규모인 장기요양 총급여비용의 20%는 2019년 장기요양수가 계산 시 70인 시설 기준으로 반영된 23%에 2017년 장기요양 경영패널조사의 요양시설 감가상각비 평균 2.5%를 반영하여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앞선 지적과 같은 초기 설치의 비용 전가, 자본재 투자 등 관리운영비 증가의 위험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인다.

<표 V-63>은 표준모형을 통한 경영수지의 결과이며, 수입 대비 5.31%의 흑자, 약 월 872만원, 총수입 대비 5.31%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째로, 3년이라는 제한적인 기간의 치매수급자 대상 한시적 지원금은 경영수지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한시적 치매수급자 대상 지원금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총수입 대비 수익률은 4.48%이다. 둘째로, 법정 인력 규모는 치매수급자에 따른 일부 요양보호사 인력규모의 소폭 변화는 나타날 수 있으나 그 변화가 크지 않아 직·간접인건비의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실에서 관리운영비 계상의 문제 등에 따라 다소간 간접비의 추가적인 지출이 소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수가가 높은 치매수급자의 비율을 약 35%(24명/70명)로 가정했는데 이와 같은 수요조건이 충족되는 않는 현실의 다양한 경우에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할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표 V-63> 사회서비스원 요양시설 표준모델(안) 경영수지 분석 결과

(단위: 원)

| 구분        |                 |        | 사회서비스원 표준모델<br>(추가인력 배치시) | 장기요양수가 표준모형<br>(법정인력 배치시) |
|-----------|-----------------|--------|---------------------------|---------------------------|
| 수급자 수     |                 |        | 70명(일반 46, 치매 24)         | 70명(일반 46, 치매 24)         |
| 종사자 수     |                 |        | 50명                       | 44명                       |
| 수입        | 급여비용            | 일반수급자  | 86,842,464                | 86,842,464                |
|           |                 | 치매수급자  | 54,331,488                | 54,331,488                |
|           |                 | 소계     | 141,173,952               | 141,173,952               |
|           | 가산금             | 인력추가배치 | 8,712,440                 | -                         |
|           |                 | 간호사가산  | 3,872,190                 | 2,904,140                 |
|           |                 | 야간인력가산 | 7,260,370                 | 5,808,290                 |
|           |                 | 프로그램가산 | 645,360                   | -                         |
|           |                 | 소계     | 20,490,390                | 8,712,430                 |
|           | 한시적 지원금         |        | 2,400,000                 | 2,400,000                 |
|           | 계(A)            |        | 164,064,342               | 152,286,392               |
| 지출        | 인건비 (B)         | 직접종사자  | 99,443,565                | 85,718,526                |
|           |                 | 간접종사자  | 27,666,798                | 25,489.22                 |
|           |                 | 소계     | 127,110,363               | 111,207,747               |
|           | 관리운영비 (20%) (C) |        | 28,234,790                | 28,234,790                |
|           | 지출액(D)=B+C      |        | 155,345,154               | 139,442,538               |
| 경영수지(A-D) |                 |        | 8,719,188                 | 12,843,854                |

자료: 「사회서비스원 요양시설 시범사업 표준모델(안)」, 보건복지부, 2019.1.10.

<표 V-64>에서는 ① 24명으로 가정된 치매수급자의 수가 0명에서 32명<sup>87)</sup>까지 2명 단위로 변화했을 경우와 ② 관리운영비가 총장기요양 급여 대비 가정된 20%가 아닌 각각 23%, 25%인 경우, 총 수입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치매수급자 변화의 경우, 치매 수급자의 수가가 일반 수급자 대비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법정 요양보호사 필요 인원(2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일반 수급자(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에 비해 높아 수입 증가요인과 비용 증가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분석 결과, 치매수급자가 표준모형 설정 인원보다 줄어드는 경우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치매수급자의 수요 변화에 따라 수익률이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64> 장기요양시설 표준모형 경영수지 민감도 분석

(단위: 명, 원, %)

| 치매수급자 수 | 관리운영비 비율(총급여비용 대비) |      |            |       |            |       |
|---------|--------------------|------|------------|-------|------------|-------|
|         | 20                 |      | 23         |       | 25         |       |
| 0       | 2,425,318          | 1.84 | -1,538,836 | -1.16 | -4,181,605 | -3.16 |
| 2       | 3,250,225          | 2.44 | -740,112   | -0.56 | -3,400,337 | -2.56 |
| 4       | 3,753,035          | 2.81 | -253,262   | -0.19 | -2,924,127 | -2.19 |
| 6       | 2,254,967          | 1.68 | -1,777,514 | -1.32 | -4,465,834 | -3.32 |
| 8       | 3,044,531          | 2.25 | -1,013,012 | -0.75 | -3,718,040 | -2.75 |
| 10      | 3,869,438          | 2.84 | -214,288   | -0.16 | -2,936,772 | -2.16 |
| 12      | 4,372,258          | 3.2  | 272,572    | 0.2   | -2,460,552 | -1.8  |
| 14      | 5,197,165          | 3.78 | 1,071,296  | 0.78  | -1,679,284 | -1.22 |
| 16      | 3,376,990          | 2.45 | -764,840   | -0.55 | -3,526,059 | -2.55 |
| 18      | 4,201,897          | 3.02 | 33,884     | 0.02  | -2,744,791 | -1.98 |
| 20      | 4,991,461          | 3.57 | 798,386    | 0.57  | -1,996,997 | -1.43 |
| 22      | 5,673,285          | 4.04 | 1,458,568  | 1.04  | -1,351,243 | -0.96 |
| 24      | 6,319,188          | 4.48 | 2,083,970  | 1.48  | -739,509   | -0.52 |
| 26      | 4,821,100          | 3.39 | 559,698    | 0.39  | -2,281,237 | -1.61 |
| 28      | 5,323,920          | 3.73 | 1,046,558  | 0.73  | -1,805,017 | -1.27 |
| 30      | 6,292,487          | 4.38 | 1,984,382  | 1.38  | -887,689   | -0.62 |
| 32      | 6,938,391          | 4.81 | 2,609,784  | 1.81  | -275,955   | -0.19 |

자료: 장기요양시설 표준모형 시뮬레이션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저자 재계산

87)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치매전담실이 2개실이며, 개소당 최대 16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므로 치매수급자의 최대 수용인원을 32명으로 설정했다.



수익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관리운영비 비율이며 관리운영비가 23% 혹은 25%로 상승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수익률은 적자 형태로 나타난다. 관리운영비 규모의 변화에 따라 장기요양시설의 경영수지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 시설의 독립채산의 주요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 나. 종합재가시설 표준모형 검토

종합재가센터는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를 한데 묶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한의 간접인력을 제외한 직접 서비스 종사자가 비교적 고용되어 있는 형태이다. 표준모형 내 고용인력은 방문요양, 노인돌봄, 가사간병을 제공하는 ‘기본형’의 경우, 직접 서비스 종사자를 100명, 세 종류의 서비스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가한 ‘확대형’의 경우 직접 서비스 종사자 150명 고용을 가정하고 있다. 직접 서비스 종사자의 고용형태는 상용직 월급제 (20%), 단시간 월급제 (30%), 시급제 (50%)로 나뉘며, 각각 1일 평균 7시간 40분, 6시간 20분, 4시간 근로를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기본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sup>88)</sup>하며, 서비스 간 이동 시간 및 계획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를 손실률 7%로 반영하여 모형을 구성했다.

<표 V-65> 및 <표 V-66>에 나타난 종합재가센터의 경영수지 계산 결과에 따르면 기본형모형은 월 775만원(수익률 4.34%), 확대형 모형은 월 155만원(수익률 0.62%)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수가가 높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서비스 제공 시, 수익이 나지 않으며 방문요양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타 서비스의 적자 구조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모형이 구성되어 있다.

88)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법정최저임금보다 20~30%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서울시의 설치·운영되는 센터는 인건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lt;표 V-65&gt; 종합재가센터 기본형 경영수지

(단위: 원)

| 구분                                      | 기준<br>(합계)  | 방문요양        | 노인돌봄        | 가사간병      |
|-----------------------------------------|-------------|-------------|-------------|-----------|
| · 서비스 제공시간(매출시간)                        | 10,472      | 9,143       | 1,047       | 281       |
| · 서비스 단가(1시간)                           |             | 16,690      | 12,960      | 14,000    |
| · 서비스 총매출      ①+②                      | 178,667,661 | 161,157,007 | 13,571,544  | 3,939,110 |
| ① 서비스 매출                                | 170,112,631 | 152,601,977 | 13,571,544  | 3,939,110 |
| ② 가산 매출<br>(방문요양 4명, 4.8점)              | 8,555,030   | 8,555,030   | -           | -         |
| A. 상용 인력 노무비(원)<br>(월 166.5H, 일 7.66H)  | 41,180,397  | 37,062,357  | 4,118,040   | -         |
| - 사업별 인원 적용(안)                          | 20명         | 18명         | 2명          | 0명        |
| B. 단시간 인력 노무비(원)<br>(월 137.6H, 일 6.33H) | 51,013,503  | 44,211,702  | 5,101,350   | 1,700,450 |
| - 사업별 인원 적용(안)                          | 30명         | 26명         | 3명          | 1명        |
| C. 시급제 인력 노무비(원)<br>(월 80H)             | 52,483,840  | 45,136,102  | 5,248,384   | 2,099,354 |
| - 사업별 인원 적용(안)                          | 50명         | 43명         | 5명          | 2명        |
| D. 전담 관리자 노무비                           | 14,115,350  | 11,292,280  | 2,258,456   | 564,614   |
| - 사업별 인원적용(안)                           | 5명          | 4명          | 0.8명        | 0.2명      |
| E. 센터장(관리책임자) 노무비                       | 4,976,720   | 4,976,720   |             |           |
| - 사업별 인원적용(안)                           | 1명          | 1명          |             |           |
| F. 인건비 계      (A+~E)                    | 163,769,810 | 142,679,162 | 16,726,230  | 4,364,418 |
| G. 관리운영비      총매출(D)×4%                 | 7,146,706   | 6,446,280   | 542,862     | 157,564   |
| H. 지출비 계      F+G                       | 170,916,516 | 149,125,442 | 17,269,092  | 4,521,982 |
| J. 경영수지      서비스총매출-H                   | 7,751,145   | 12,031,565  | - 3,697,548 | - 582,872 |

자료: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운영모델(안)」, 보건복지부, &lt;참고 8-1&gt;

&lt;표 V-66&gt; 종합재가센터 확대형 경영수지

(단위: 원)

| 구분                                      | 기준<br>(합계)  | 방문<br>요양    | 노인<br>돌봄   | 가사<br>간병  | 장애인<br>활동지원 |
|-----------------------------------------|-------------|-------------|------------|-----------|-------------|
| · 서비스 제공시간<br>(매출시간)                    | 16,014      | 9,143       | 1,047      | 281       | 5,543       |
| · 서비스 단가(1시간)                           |             | 16,690      | 12,960     | 14,000    | 12,960      |
| · 서비스 총매출 ①+②                           | 250,499,109 | 161,157,007 | 13,571,544 | 3,939,110 | 71,831,448  |
| ① 서비스 매출                                | 241,944,079 | 152,601,977 | 13,571,544 | 3,939,110 | 71,831,448  |
| ② 가산 매출<br>(방문요양 4명(4.8점))              | 8,555,030   | 8,555,030   | -          | -         | -           |
| A. 상용 인력 노무비(원)<br>(월 166.5H, 일 7.66H)  | 61,770,595  | 37,062,357  | 4,118,040  | -         | 20,590,198  |
| - 사업별 인원 적용(안)                          | 30명         | 18명         | 2명         | 0명        | 10명         |
| B. 단시간 인력 노무비(원)<br>(월 137.6H, 일 6.33H) | 76,520,254  | 44,211,702  | 5,101,350  | 1,700,450 | 25,506,751  |
| - 사업별 인원 적용(안)                          | 45명         | 26명         | 3명         | 1명        | 15명         |
| C. 시급제 인력 노무비(원)<br>(월 80H)             | 78,725,760  | 45,136,102  | 5,248,384  | 2,099,354 | 26,241,920  |
| - 사업별 인원 적용(안)                          | 75명         | 43명         | 5명         | 2명        | 25명         |
| D. 전담 관리자 노무비                           | 16,938,420  | 11,292,280  | 2,258,456  | 564,614   | 2,823,070   |
| - 사업별 인원적용(안)                           | 6명          | 4명          | 0.8명       | 0.2명      | 1명          |
| E. 센터장(관리책임자)<br>노무비                    | 4,976,720   | 4,976,720   |            |           |             |
| - 사업별 인원적용(안)                           | 1명          | 1명          |            |           |             |
| F. 인건비 계 (A+~E)                         | 238,931,750 | 142,679,162 | 16,726,230 | 4,364,418 | 75,161,940  |
| G. 관리운영비 총매출<br>(D)×4%                  | 100,199,646 | 6,446,280   | 542,862    | 157,564   | 2,873,258   |
| H. 지출비 계 F+G                            | 248,951,714 | 149,125,442 | 17,269,092 | 4,521,982 | 78,035,198  |
| J. 경영수지 서비스<br>총매출-H                    | 1,547,395   | 12,031,565  | -3,697,548 | - 582,872 | -6,203,750  |

자료: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운영모델(안)」, 보건복지부, &lt;참고 8-2&gt;

2019년 기준으로 방문요양은 시간당 16,690원, 노인돌봄 서비스는 12,960원, 가사간병은 1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은 12,960원의 수가가 책정되어 있다. 표준모형 내에서 고용된 인력을 어느 서비스 제공에 배치하는가에 따라 시설의 수입은 변화한다.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 제공 비중, 혹은 서비스 수요를 가정하는 것이 모형에서 중요한데, 사업 설명에 따르면 각 서비스의 대상 인원 혹은 장기요양 인정 인원을 고려하여 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표 V-67> 참조).

<표 V-67> 종합재가센터 대상사업별 수요 추정

(단위: %)

| 구분  | 계   | 방문요양 | 노인돌봄 | 가사간병 | 장애인 활동지원 |
|-----|-----|------|------|------|----------|
| 기본형 | 100 | 87   | 10   | 3    |          |
| 확대형 | 100 | 58   | 7    | 2    | 33       |

자료: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운영모델(안)」, 보건복지부, <참고 4>를 기반으로 재편집

실제 센터의 운영 과정에서 각 서비스별 수요가 이와 정책 대상 전체 규모를 기반으로 <표 V-67>과 같이 식별된 모형의 비중대로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지역별로 정책 대상인 고령 취약층의 인구 구성 및 사회 인프라 등 격차가 존재하며, 이는 종합재가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차이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센터에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수요 조합(combination)을 개별 센터 입장에서 표준모형에 맞게 선별(screening)하여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상용직/단시간/시급제 등의 고용형태별 인력 규모 및 방문요양/노인돌봄/가사간병/장애인활동지원 등 서비스 종류에 근거하여 현실에서 개별 센터가 직면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와 이에 따른 센터의 인력 배치 대응 조합에 따른 경영수지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한 예로 <표 V-68>에서는 표준모형의 수요에 비해 방문요양의 수요가 다소 줄고 노인돌봄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센터에서 각각 상용직/단시간 월급제/시급제 인력의 이동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수가가 낮은 서비스로의 인력 이동이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결과와 더불어 50명의 추가 인력이 적자 구조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묶여 있는(locked-in) 확대형 모형의 경우 이러한 수요 변화에 더욱 취약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표준모형의 경영수지 결과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취약한

구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개별 종합재가센터의 독립채산의 가능성을 위협한다.

<표 V-68> 종합재가센터 표준모형 경영수지 민감도 분석

(단위: 명, 원, %)

| 구분  | 배치인원 |      | 기본형       |      | 확대형       |       |
|-----|------|------|-----------|------|-----------|-------|
|     | 방문요양 | 노인돌봄 | 경영수지      | 수익률  | 경영수지      | 수익률   |
| 상용직 | 18   | 2    | 7,751,145 | 4.34 | 1,547,395 | 0.62  |
|     | 17   | 3    | 7,242,515 | 4.07 | 1,038,765 | 0.42  |
|     | 16   | 4    | 6,733,829 | 3.79 | 530,080   | 0.21  |
|     | 15   | 5    | 6,225,085 | 3.52 | 21,335    | 0.01  |
|     | 14   | 6    | 5,716,278 | 3.24 | -487,471  | -0.2  |
| 단시간 | 26   | 3    | 7,751,145 | 4.34 | 1,547,395 | 0.62  |
|     | 25   | 4    | 7,333,187 | 4.11 | 1,129,438 | 0.45  |
|     | 24   | 5    | 6,915,754 | 3.89 | 712,004   | 0.29  |
|     | 23   | 6    | 6,498,869 | 3.66 | 295,119   | 0.12  |
|     | 22   | 7    | 6,082,560 | 3.44 | -121,190  | -0.05 |
|     | 21   | 8    | 5,666,855 | 3.21 | -536,895  | -0.22 |
| 시급제 | 43   | 5    | 7,751,145 | 4.34 | 1,547,395 | 0.62  |
|     | 42   | 6    | 7,455,445 | 4.18 | 1,251,695 | 0.5   |
|     | 41   | 7    | 7,159,602 | 4.02 | 955,852   | 0.38  |
|     | 40   | 8    | 6,863,612 | 3.86 | 659,863   | 0.26  |
|     | 39   | 9    | 6,567,473 | 3.7  | 363,723   | 0.15  |
|     | 38   | 10   | 6,271,180 | 3.54 | 67,430    | 0.03  |
|     | 37   | 11   | 5,974,729 | 3.38 | -229,020  | -0.09 |
|     | 36   | 12   | 5,678,118 | 3.22 | -525,632  | -0.21 |
|     | 35   | 13   | 5,381,342 | 3.05 | -822,408  | -0.33 |

자료: 종합재가시설 표준모형 시뮬레이션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저자 재계산

#### 다. 표준모형 전반에 대한 의견

표준모형은 용어 그대로 표준적인 형태에서 작동할 수 있는 모형이다. 현실에서는 표준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은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모형은 시설의 대략적인 독립채산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규모, 서비스 수요자의 특성 등 다양한 가정이 기반하여 설계되었다(<표 V-67>, <표 V-69>, <표 V-70> 참조). 이와 같은 가정은 각 지역의 이질적인 사회서비스 수요 규모 등에 따라 쉽게 위반될 수 있는 가정이며, 표준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흑자 경영 구

조는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담당자도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을 기획, 조율하는 입장에서 가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표준모형만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시된 표준모형은 현장에서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 V-69> 장기요양 등급별 수급자 현황(70인 시설 기준)

(단위: 명)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이하 | 계  |
|-------|-----|-----|--------|----|
| 계     | 8   | 17  | 45     | 70 |
| 일반수급자 | 8   | 11  | 27     | 46 |
| 치매수급자 | -   | 6   | 18     | 24 |

자료: 「사회서비스원 요양시설 시범사업 표준모델(안)」, 보건복지부, 2019.1.10. <참고 2>

이처럼 표준모형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할 수 있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표준모형 점검 및 수정 등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형의 미시적인 수정을 넘어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시설의 독립채산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장기적인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이라 생각된다.

<표 V-70> 어린이집 표준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정원 규모

(단위: 개, 명)

| 80인 미만 |    |           |       |       |       |       |       |
|--------|----|-----------|-------|-------|-------|-------|-------|
| 정원     | 반수 | 반구성 수(정원) |       |       |       |       |       |
|        |    | 0세반       | 1세반   | 2세반   | 3세반   | 4세반   | 5세반   |
| 77명 모형 | 7  | 1(3)      | 1(5)  | 2(14) | 1(15) | 1(20) | 1(20) |
| 78명 모형 | 8  | 2(6)      | 2(10) | 1(7)  | 1(15) | 1(20) | 1(20) |
| 79명 모형 | 7  | 0(0)      | 2(10) | 2(14) | 1(15) | 1(20) | 1(20) |
| 50인 미만 |    |           |       |       |       |       |       |
| 45명 모형 | 7  | 2(6)      | 2(10) | 2(14) | 1(15) | -     | -     |
| 47명 모형 | 7  | 1(3)      | 3(15) | 2(14) | 1(15) | -     | -     |
| 48명 모형 | 8  | 3(9)      | 2(10) | 2(14) | 1(15) | -     | -     |

자료: 이철선 외(2018) <표 5-8>, <표 5-13>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은 시설별 독립채산이 아닌 지역별 사회서비스원 내 모든 시설들의 경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경영 수지 위험을 지역 단위로 분산시키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앞서서 장기요양시설, 종합재가센터, 보육시설의 표준모형을 검토하며, 시설 내 흑자구조를 달성할 수 있으나 자본재 투자에 대한 위험,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할 경우 수익이 매우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지역 사회서비스원 내 시설 전체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사회서비스원 전체로 경영 수지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종합재가센터 표준모형 설명에서도 수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기본형’ 센터의 잉여금 일부를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확대형’으로 전출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시설 간 수지 위험 분산 체계 구축은 앞으로 지역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 등 지자체의 사회복지 사업 규모가 커지고, 지방재정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약 27.1%(2018.1.1. 기준,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 19.0%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 V-71> 참조). 따라서,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지방재정의 사회복지 예산은 여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회서비스원 내 시설들의 독립적인 수익구조가 사회서비스원 체제의 장기 안정성에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V-71> 지방재정(전체 및 사회복지분야) 현황

(단위: 억원, %)

| 구분   | 전체 지방재정 규모 | 사회복지    | 비중    |
|------|------------|---------|-------|
| 2010 | 1,398,565  | 265,342 | 18.97 |
| 2011 | 1,410,393  | 284,632 | 20.18 |
| 2012 | 1,510,950  | 309,157 | 20.46 |
| 2013 | 1,568,887  | 349,921 | 22.3  |
| 2014 | 1,625,793  | 400,832 | 24.65 |
| 2015 | 1,732,590  | 440,629 | 25.43 |
| 2016 | 1,845,825  | 466,075 | 25.25 |
| 2017 | 1,931,532  | 494,509 | 25.6  |
| 2018 | 2,106,784  | 571,293 | 27.12 |

자료: 『행정안전통계연보』 제6장 지방재정, 「6-1-2-2 기능별 예산」을 기반으로 저자 편집

### 3. 비용 효과적인 대안 검토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정책은 현재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하에서 예산을 통해 ‘처우 개선비’ 혹은 ‘고용 안정비’ 등의 목적으로 민간에 지불하는 수가를 인상하여 동일한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사업 설명자료에서도 지적했듯 이 방식은 오랜 사업 경험으로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의 능력을 신뢰하고, 민간 시설에 고용된 인력의 처우를 ‘민간을 통해 개선’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 취지이다.

첫째, 앞선 품질 제고 효과 관련 분석 결과는 국공립 보육·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시설 직영이 품질 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증분석의 결과는 품질 제고 효과가 국공립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근로 조건·처우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라기보다, 앞서 거론되었던 규모의 경제 효과, 경영 투명성 등 국공립시설 특유의 여타 요인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따라서, 민간 시설의 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수가를 통한 처우 개선비·고용 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상하는 정도의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 효과를 견인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수가 인상을 통한 인력 처우 개선 유도가 정책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현재도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상으로 처우개선 명목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2017년 기준 0~2세반 보육교사 월 22만원, 3~5세반 보육교사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으며,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에 따라 처우개선비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 한도로 지급되어왔다(2018년 폐지). 이와 같은 처우개선비는 근로자가 아닌 시설에 지급되었으며 지원 금액이 일부 서비스 유형의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박노옥 외, 2013). 방문목욕, 방문요양의 경우 100%를 상회하는 인건비의 인상이 있었으나,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공동생활 가정 등 일부 서비스의 경우 이 비율이 50~80%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우개선비가 지급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인상시키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구축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민간 주도의 전달 체계하에서 수가 인상을 활용한 근로자 처우 개선을 시



도하는 경우 그 효과가 제한적이며, 일부 치우 개선이 발생된다고 해서 이것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제고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회서비스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직접적인 수가 인상으로 반영한다고 하면 그 지급 금액이 매우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V-31>에 나타난 국비 및 지방비 투입 규모는 2022년 기준 371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복지부안), 이를 2017년 기준 보육통계에 집계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총원 235,704명과 2017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집계 요양보호사 총원 340,624명에 근로자 1인당 지급 금액은 약 64,316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미미한 수준의 수가 인상을 통해 민간 시설을 통한 사회 서비스 품질 제고 효과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워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편이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의견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소속 시설의 직영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예산제약 조건하에서, <표 V-31>에서 계획하는 규모 이상으로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반한 것임을 밝혀둔다.

## 제 VI 장

#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 제1절 종합평가표를 활용한 사업의 종합판단

#### 1. 종합평가의 개요

예비타당성조사의 마지막 단계는 앞서 검토되었던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에는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론 중 하나인 분석적 계층화법(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고 있다. AHP 방법론은 의사결정의 목표 또는 평가기준이 다수이며 개별 평가기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도를 가진 대안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사결정 기법의 하나이다.

과거의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은 다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과 동일하게 AHP 평가 방법론을 통한 종합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관계부처합동, 2019.4.3.) 수립과 함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평가방식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복지사업에 기존 SOC 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다수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기존의 시행·미시행의 이분법적 평가를 지양하고 수혜대상과 전달체계 보완 등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평가항목인 정책성 분석과 경제성 분석을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으로 개편하고 개별 항목에 대한 목별 점검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각 항

목별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전점검 및 사업계획 보완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은 기타재정사업 중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9.05.01.) 제47조(경제사회 환경 분석), 제48조(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제49조(비용-효과성 분석)의 항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제50조(종합평가) 6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 2. 평가 대상(주무부처 사업계획)

본 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유형에 해당된다. 주무부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계획서(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1005, 2018.12.27.)를 통해 사업추진의 목적,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또는 지원률, 사업진행 절차 및 전달체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종합평가에서는 타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주무부처의 사업계획을 “평가 대상 기본(안)”으로 설정하고 종합평가를 수행한다. 한편, 연구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제시한 “평가 대안” 등은 추후 분과위 논의를 거쳐 조건부로 반영될 수 있다.

평가 대상 기본(안) 다음과 같다.

<표 VI-1> 종합평가 기본(안)

| □ 사업 내용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을 광역지자체에 설립하고, 신규 국공립시설을 우선적으로 직영함으로써 서비스 종사자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li> <li>- 사회서비스원은 직영시설의 종사자들을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표준모형(장기요양, 보육, 종합재가)을 기준으로 기존 제도에서 제공하는 수가와 보조금만으로 운영체제를 갖출 예정임</li> </ul> |       |        |        |        |        |         |
| □ 총사업비(중기재정지출 5개년 기준):                                                                                                                                                                                                                                                                |       |        |        |        |        |         |
| (단위: 백만원)                                                                                                                                                                                                                                                                             |       |        |        |        |        |         |
| <총사업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합계      |
| 합계                                                                                                                                                                                                                                                                                    | 8,928 | 18,490 | 26,960 | 38,481 | 37,067 | 129,926 |
| 국비                                                                                                                                                                                                                                                                                    | 5,968 | 10,746 | 14,996 | 19,379 | 15,695 | 66,784  |
| 지방비                                                                                                                                                                                                                                                                                   | 2,960 | 7,744  | 11,964 | 19,102 | 21,372 | 63,142  |

○ 산출근거('19년 기준)

- 중앙지원단: 인건비(40백만원×10명×1개소=400백만원), 시설비(보증금 35백만원+임대료 45백만원=80백만원), 운영비(528백만원)
- 지방사회서비스원: 시설비(500백만원×4개소=2,000백만원), 인건비(40백만원×20명×6/12개월×4개소×50%=800백만원), 사업·운영비(1,080백만원×4개소×50%=2,160백만원)

○ 재원분담

- 국비 668억원, 지방비 631억원
- 중앙지원단(국비 100%), 지방사회서비스원(최초 3년 국비 50%(시설비 100%)+지방자치단체 50%, 이후 국비 30%+ 지자체 70%)

□ 사업기간

- 2019년 시범사업(중앙지원단 및 4개소) 계속 사업

□ 사업수행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운영 계획 수립,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재정지원 등 추진,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등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완요청, 시범사업 관리 및 평가 등
-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원, 업무지원 및 조정, 표준운영지침 마련, 복지부 시범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업무 위탁수행, 기타 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원 정책 관련 하여 위탁하는 사항
-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시범사업 운영,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지역 상황·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범위 및 규모 확정 후 사업 추진, 복지부 시범사업 협의체 참여,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설 품질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홍보 및 안내,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수렴
- (기초지방자치단체)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등 정책 참여
-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 및 종사자 직접고용 통한 서비스 제공(운영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장 및 종사자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 민간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등 수행, 지자체 모니터링, 사업관리, 평가, 지도·점검 등에 협조

□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제공기관) 시설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품질을 향상하여 제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으로 일자리 안정성 향상, 체계적인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이용자)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 향상,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로 서비스 선택권 확대, 지역 시설 간 격차 해소 등에 따른 서비스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 3. 조사 대상 집단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에는 조사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뿐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집단구성원들은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최종 결론을 위한 의사결정 집단 구성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9.5.1.)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 참여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지침 제11조(분과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종합평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소득이전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2명, 해당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책임연구원(PM, Project Manager)이 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 조사에서는 이를 준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종합평가 참여자 총 10인을 구성한다.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대한 연구책임자 1인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회복지·소득이전 분과위원회의 위원 2명이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이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 위촉위원 7인이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종합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의 ‘평가표를 통한 종합평가’에서는 AHP 종합평가와 같이 최대·최소 결과 값을 제외한 결과 값을 토대로 종합평가 결과를 산출한다.

### 4. 종합평가 구조 및 평가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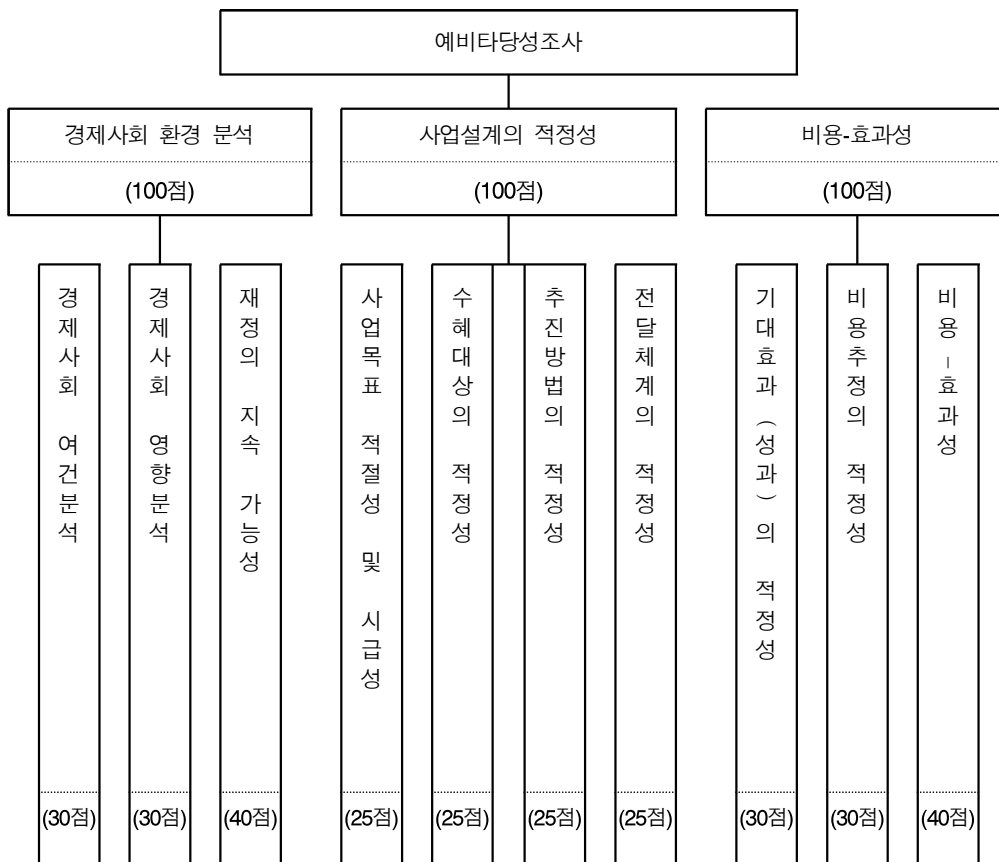
본 종합평가의 최종목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된 ‘경제사회 환경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비용-효과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시행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부수적으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경우 선결 조건의 제시나 대안 추진을 전제로 “조건부 추진”, “사업 재기획”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 2019.5.1.)에 따른 종합평가의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 평가영역은 동일하게 100점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영역인 “경제사회 환경 분석”은 하위 평가항목으로 경제사회 여건분석(30점), 경제사회 영향분석(30점), 재정의 지속 가능성(40점)을 포함한다. 두 번째 영역인 “사업설계의 적정성”은 하위 항목이 동일하게 25점씩 배분되어 있으며, 사업목표 적절성 및 시급성(25점),

수혜대상의 적정성(25점), 추진방법의 적정성(25점), 전달체계의 적정성(25점)을 포함한다. 마지막 영역인 “비용-효과성” 영역은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30점), 비용추정의 적정성(30점), 비용-효과성(40점)이 포함된다. 기존 정량적 수치(B/C ratio)로 대체되었던 비용-효과성 평가항목 외 “장기재정 측면”과 “기대효과의 적정성”을 고려한 정성적 분석 또한 평가항목에 포함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더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시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게 되나 본 조사에서는 추가평가항목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상을 반영하여 본 사업의 종합평가 구조를 정리하면 [그림 VI-1]과 같다.

[그림 VI-1]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계층 구조



각 평가항목의 내용 및 평가기준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VI-2>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항목 및 세부 평가내용

| 영역                     |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
|------------------------|-------------------------------------------------------------------------------------|
| 경제사회<br>환경분석<br>(100점) | <b>① 경제사회 여건분석(30점)</b>                                                             |
|                        | ■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 문제가 적절하게 파악되었는가?                                                     |
|                        | ■ 해당 경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유사한 내용의 민간·지자체·재정사업이 존재하는가?                                     |
|                        | ■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
|                        | ■ 우리나라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 등에 비추어 사업추진이 적절한가?                                           |
|                        | <b>② 경제사회 영향분석(30점)</b>                                                             |
|                        | ■ 해당 사업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은 충분히 되었는가?<br>* 기존집단의 반발,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갈등 가능성 검토 |
|                        | <b>③ 재정의 지속 가능성(40점)</b>                                                            |
|                        | ■ 향후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br>* 유사한 사업과의 비교·검토                                    |
| 사업설계의<br>적정성<br>(100점) | ■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                                                 |
|                        | ■ 사업의 중장기적 재정소요에 변동 위험성은 검토되었는가?                                                    |
|                        | <b>① 사업목표 적절성 및 시급성(25점)</b>                                                        |
|                        | ■ 사업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
|                        | ■ 해당 사업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                        | ■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가 높은가?                                           |
|                        | <b>② 수혜대상의 적정성(25점)</b>                                                             |
|                        | ■ 수혜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사업목표에 부합하는가?                                                       |
|                        | ■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
|                        | ■ 실제 사업대상 외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가?                                              |
|                        | <b>③ 추진방법의 적정성(25점)</b>                                                             |
|                        | ■ 추진방법이 사업목표·수혜대상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되었는가?                                                 |
|                        | ■ 사업추진주체(공공/민간, 중앙/지방)의 역할구분이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
|                        | ■ 동일한 분야·부문의 다른 사업과 적절한 정책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
| 비용·<br>효과성<br>(100점)   | <b>④ 전달체계 적절성(25점)</b>                                                              |
|                        | ■ 전달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                        | ■ 수요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
|                        |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구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은 적절한가?                                       |
|                        | <b>①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30점)</b>                                                         |
|                        | ■ 사업목표 등과 비교하여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성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                        |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시 효과(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가?                                        |
|                        | ■ 향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                        | <b>② 비용추정의 적정성(30점)</b>                                                             |
|                        | ■ 비용추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 ■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
|                        | ■ 수요 변동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검토되었는가?                                           |
|                        | <b>③ 비용-효과성(40점)</b>                                                                |
|                        | ■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가?                                                            |
|                        | ■ 성과 대비 비용은 적정 수준인가?                                                                |
|                        | ■ 제시된 사업계획 대비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 5. 종합평가 방법

### 가. 평가 등급별 평가 점수

평가영역(100점) 내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다음 <표 VI-3>의 평가 등급별 평가 점수 기준에 따라 각 평가자는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40점이 배정되어 있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비용-효과성” 평가영역은 각 평가 구간에 대하여 적정(40~35점), 보통(34~28점), 미흡(27점 이하)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30점이 배정되어 있는 “경제사회 여건분석”, “경제사회 영향분석”,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비용추정의 적정성” 평가 영역에 대해서는 각 평가 구간에 대하여 적정(30~26점), 보통(25~21점), 미흡(20점 이하)이 배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25점이 배정되어 있는 사업설계의 적정성 하위 4개 평가항목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시급성”, “수혜대상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전달체계의 적정성”에는 각 평가 구간에 적정(25~22점), 보통(21~18점), 미흡(17점 이하)이 배분되어 있다.

<표 VI-3> 평가 점수별 평가 등급

| 점수 기준  | 적정     | 보통     | 미흡     |
|--------|--------|--------|--------|
| 40점 기준 | 40~35점 | 34~28점 | 27점 이하 |
| 30점 기준 | 30~26점 | 25~21점 | 20점 이하 |
| 25점 기준 | 25~22점 | 21~18점 | 17점 이하 |

### 나. 평가 결과 산정 방식

영역별 100점이 배분되어 있는 3개의 영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 후 다음 3가지의 결과를 토대로 평가 결과가 산정된다.

- ■ A. 부처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사업 시행  
- 3개 영역 모두 85점 이상
- ■ B. 대안 추진을 조건으로 사업 시행  
- A또는 C 이외의 경우
- ■ C. 사업 전면 재기획 후 조사 재요구  
- 2개 영역 이상이 70점 미만



&lt;표 VI-4&gt;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평가 결과 산정 방식

| 경제사회 환경분석  |                               | Low<br>(70점 미만) |                               |                  | Medium<br>(70점 이상~85점 미만) |                               |                  | High<br>(85점 이상) |                               |                  |
|------------|-------------------------------|-----------------|-------------------------------|------------------|---------------------------|-------------------------------|------------------|------------------|-------------------------------|------------------|
| 사업설계 적정성   |                               | Low<br>(70점 미만) | Medium<br>(70점 이상<br>~85점 미만) | High<br>(85점 이상) | Low<br>(70점 미만)           | Medium<br>(70점 이상<br>~85점 미만) | High<br>(85점 이상) | Low<br>(70점 미만)  | Medium<br>(70점 이상<br>~85점 미만) | High<br>(85점 이상) |
| 비용-<br>효과성 | Low<br>(70점 미만)               | C               | C                             | C                | C                         | B                             | B                | C                | B                             | B                |
|            | Medium<br>(70점 이상<br>~85점 미만) | C               | B                             | B                | B                         | B                             | B                | B                | B                             | B                |
|            | High<br>(85점 이상)              | C               | B                             | B                | B                         | B                             | B                | B                | B                             | A                |

## 6. 종합평가 결과

본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경제사회 환경 분석은 83.3점,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은 85.8점, 비용-효과성 81.1점으로 대안 추진을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었다. 분과위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에 있어서 경성예산제약 조건 작동을 위한 장치 마련 필요성,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비용의 변동 및 추가 재정지원 가능성, 사회서비스원·직영시설·종사자들의 적절한 성과관리 및 유인 체계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사업 시행 조건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직영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평가결과 피드백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지자체와 부담주체, 분담비율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인력(현 20명/개소)은 국비지원 총액의 한도 내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으로 제시하였다. 부처에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lt;표 VI-5&gt; 사회서비스원 예비타당성조사 분과위 의견 종합

|                                                                                                                                                               |
|---------------------------------------------------------------------------------------------------------------------------------------------------------------|
| 1.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직영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평가결과 피드백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
| 2.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지자체와 부담주체, 부담비율 등을 사전에 협의할 필요                                                                                                   |
| 3.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석을 통해 고용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인사관리 및 경력개발 방안도 검토</li> </ul> |
| 4.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인력(현 20명/개소)은 국비지원 총액의 한도 내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

&lt;표 VI-6&gt; 평가자별 종합평가점수

(단위: 점)

|                 | 평가자 1      | 평가자 2      | 평가자 3      | 평가자 4      | 평가자 5      | 평가자 6      | 평가자 7      | 평가자 8      | 종합점수         |
|-----------------|------------|------------|------------|------------|------------|------------|------------|------------|--------------|
| ■ 경제사회 환경 분석    | 83         | 89         | 79         | 87         | 87         | 80         | 75         | 86         | 83.3         |
| - 경제사회 여건분석     | 26         | 29         | 28         | 26         | 29         | 29         | 25         | 28         | 27.5         |
| - 경제사회 영향분석     | 27         | 25         | 24         | 26         | 28         | 29         | 25         | 26         | 26.3         |
| - 재정의 지속가능성     | 30         | 35         | 27         | 35         | 30         | 22         | 25         | 32         | 29.5         |
| ■ 사업설계의 적정성     | 89         | 88         | 86         | 87         | 87         | 85         | 76         | 88         | 85.8         |
| - 사업목표 적절성·시급성  | 23         | 24         | 24         | 24         | 24         | 17         | 15         | 24         | 21.9         |
| - 수혜대상의 적정성     | 23         | 24         | 19         | 24         | 24         | 24         | 23         | 24         | 23.1         |
| - 추진방법의 적정성     | 23         | 20         | 23         | 21         | 21         | 22         | 15         | 20         | 20.6         |
| - 전달체계의 적절성     | 20         | 20         | 20         | 18         | 18         | 22         | 23         | 20         | 20.1         |
| ■ 비용-효과성        | 79         | 87         | 69         | 86         | 87         | 87         | 74         | 80         | 81.1         |
| - 기대효과(성과)의 적절성 | 28         | 24         | 23         | 26         | 26         | 24         | 19         | 23         | 24.1         |
| - 비용추정의 적정성     | 21         | 26         | 19         | 25         | 26         | 29         | 27         | 23         | 24.5         |
| - 비용-효과성        | 30         | 37         | 27         | 35         | 35         | 34         | 28         | 34         | 32.5         |
| <b>총 점(300)</b> | <b>251</b> | <b>264</b> | <b>234</b> | <b>260</b> | <b>261</b> | <b>252</b> | <b>225</b> | <b>254</b> | <b>250.1</b> |

&lt;표 VI-7&gt; 평가자별 종합의견

|          | 평가자 1 | 평가자 2 | 평가자 3 | 평가자 4 | 평가자 5 | 평가자 6 | 평가자 7 | 평가자 8 | 종합 집계 |
|----------|-------|-------|-------|-------|-------|-------|-------|-------|-------|
| A. 원안 추진 |       | V     |       | V     | V     |       |       |       | 3     |
| B. 대안 추진 | V     |       | V     |       |       | V     | V     | V     | 5     |
| C. 사업재기획 |       |       |       |       |       |       |       |       | 0     |

## 제2절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1. 사업개요 및 조사내용

동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기관을 광역지자체에 설립하고, 신규 국공립 시설을 우선적으로 직영함으로써 서비스 종사자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직영시설의 종사자들을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표준모형(장기요양, 보육, 종합재가)을 기준으로 기존 제도에서 제공하는 수가와 보조금만으로 운영체제를 갖추어 예정이다. 2019년에 중앙지원단과 광역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은 4개소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으며, 광역지자체 전부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총사업비는 1,299억원이며, 국비는 668억원, 지방비는 631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운영 계획 수립,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 사회서비스원 중앙지원단 설립 및 운영, 관련 법·제도 마련 및 개선, 재정지원 등 추진,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등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시범사업 사업계획 승인 및 보완요청, 시범사업 관리 및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원, 업무지원 및 조정, 표준운영지침 마련, 복지부 시범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업무 위탁수행, 기타 복지부 장관이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시범사업 운영,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 지역 상황·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범위 및 규모 확정 후 사업 추진, 복지부 시범사업 협의체 참여, 기초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설 품질 향상 및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홍보 및 안내,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시설 수탁운영 및 종사자 직접 고용을 통한 서비스 제공(운영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시설장 및 종사자 행정업무 경감 등 지원), 민간 제공기관 품질 향상 지원,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등 수행, 지자체 모니터링, 사업관리, 평가, 지도·점검 등에 협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시설 수탁 운영기관 선정 및 관리,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본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그리고 비용·효과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경제사회 환경분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 사업은 급속히 확대된 사회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공공기관 직영체제를 일부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직영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은 적시성이 있다. 기존 사업과의 유사 중복 문제는 미약하며, 광역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고 중앙정부가 부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동 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창출하면,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개별 사회서비스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국회에서의 특별법이 계류 중인 상태이다. 동 사업의 직접 사업비 자체는 기관 설립 및 운영 경비로서, 재정적 위험이 미약하지만, 재정소요 변동 가능성은 높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분담 방안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동 사업이 야기할 재정위험은, 직영사업과 직영사업 운영 결과가 초래할 수가 인상 요구 강화의 가능성이다. 동 사업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영시설이 기존의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예산계약하에서 성과를 창출해야만 하므로, 경성예산계약 조건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사업설계의 적정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 사업의 목표 자체는 적절하며,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부합한다고 판단되지만,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어떻게 정의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사업의 핵심은 직영시설을 통한 서비스 질과 직영시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이므로, 새롭게 수혜 대상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사업 수요 문제도 현 단계에서는 국공립 신규시설 중심이므로, 별도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동 사업은 기존 개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상에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은 비교적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며, 기존의 개별 사회서비스 지원기관과의 시너지 발생 가능성은 있다. 다만, ① 재정소요 변동 시 재원분담 계획과 ② 지방사회서비스원과 직영 시설에 대한 성과관리 방안이 보다 구체화 될 필요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③ 개별 사회서비스 지원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명확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비용 효과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 사업의 기대효과인 종사자의 고용의 질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측정하는 성과지표와 목표치는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선이 필요하다. 동 사업은 개선된 근로조건, 사업 운영의 투명성, 지원기능 강화, 그리고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예산제약 조건하에서 창출되어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예산제약 조건을 지킬 유인이나 규정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소요 인력과 시설 및 사업비 규모의 가정을 바탕으로 비용을 재추정한 결과, 계획안의 중기('19~'23) 재정 소요 129,945백만원보다 소폭 감소한 114,940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시설비·운영비는 감소하였다. 현재 복지부의 사업 중기계획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과 지방사회서비스원의 인력을 고정하고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직영시설 증가를 고려할 때, 실제 총사업비는 상당한 크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시한 사업비는 포괄 정책 보조금의 의미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세부 내역에 근거한 사업비 추정은 의미가 미약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와의 재원 분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사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해, 기존 장기요양서비스와 보육서비스의 데이터를 활용

하여, 기관의 특성이 평가나 인증 결과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시설의 규모가 클수록 장기요양기관이나 보육기관의 평가나 인증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여건은 평가 결과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여지가 있으며, 단순히 근로조건을 양호하게 바꾼다고 해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직영시설 종사자들이 직면하는 인센티브 구조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직영시설에 권장하는 표준모형의 유지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서비스 매칭 비율, 인건비 변화, 정규직 고용으로 인한 고용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직영시설의 적자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 2. 종합평가 결과

동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되고, 공공기관 직영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동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진은, 동 사업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나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분과위 논의 결과,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진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을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동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첫째,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포함하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직영시설에 대한 평가지표를 구체화하고, 평가결과 피드백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이 기존 사회서비스의 수가와 보조금 내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유인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업 계획하에서는, 보건복지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 그리고 직영시설에서는 제한된 예산제약 조건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인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도 국공립시설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하여 서비스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동 사업은 이러한 인식을 타파하고, 공공기관이 직영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와 동일한 여건하에서도 근로여건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이러한 성과 창출을 통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개선을 견인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그러므로 동 사업을 예산제약

조건하에서 운영하라는 권고사항 수준이 아니라, 실제 직영시설이 예산제약 조건하에서 유인하도록 하는 유인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서비스원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지자체와 재원분담 원칙에 대해 사전에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광역사회서비스원의 재정 분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합의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의 인원을 광역지자체마다 동일 인원으로 고정하고, 직영시설의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는 직영시설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의 급속한 증가와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 인원을 차별화하여 설정하고, 직영 시설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설명대로,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일정 금액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대한 합의를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직무 분석을 통해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사관리 및 경력개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사회서비스원과 직영시설의 성과관리 및 인력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인력 운영의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품질 유지 문제, 그리고 외부 수요 변화에 따른 서비스 인력의 탄력적 운영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규직 채용의 부작용을 억제하고 동기 부여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인력은 국비지원 총액의 한도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회서비스원의 지역별 업무 부담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인력 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정책 제언

동 사업에 대한 연구진의 정책 제언은 분과위원회에서 대부분 수용되었지만, 다시 한 번 요약한다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기존 사회서비스의 수가나 보조금 내에서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이 운영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사항이지만, 구속력은 거의 없다. 본 조사 결과에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직영시설의 적자발생 위험은 상당하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적자 보전 가능성도 높다. 동 사업에 관계된 이해관계 기관이나 개인들은, 동 사업의 예산제약 조건을 지킬 유인은 미약하다.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직영 시설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기보다는 기존 수가체계의 부적절성이 부각되면서 수가 인상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 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가, 공공기관 직영 방식을 통해 기존 수가체제 내에서도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 제고를 견인하는 것이므로, 예산제약 조건을 지킬 유인체제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영시설이 예산제약 조건 내에서 운영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이나 성과평가 기준 내에 예산제약 조건 내에서의 운영 여부를 담을 필요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직영시설이 주어진 수가와 보조로만 운영되어도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행정 및 기타 지원으로 인해, 민간사업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성예산제약 조건이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으나 이러한 전제가 작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의 인원을 일정 인원으로 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부의 정책의지가 현장에서도 실현되기를 바라지만, 추가 재정소요 발생 시 재원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명확한 합의를 해두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동 예비타당성 연구진의 지자체 면담 결과, 직영시설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서비스원의 인력 및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기대도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재원분담 관련 쟁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원분담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직영시설 종사자들의 적절한 성과관리 및 유인체계 마련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근로조건의 개선이 반드시 질 제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데이터 분석 결과와 조직의 성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듯이,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다. 종사자의 근로 개별기관의 리더십, 인센티브 구조, 경영관리가 품질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의 품질을 제고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역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 평가의 기준과 환류 방안에 대한 개요 정도는 필요하지만, 사업계획에는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 복지부의 평가를 지원한다는 수준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가 광역사회서비스원을 평가하는 목적과 환류 수단에 대한 구체성, 그리고 광역사회서비스원의 직영시설에 대한 성과관리 및 환류 방안의 구체성은 현재의 선언적 내용보다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직영시설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및 환류 방안도 어느 정도는 구체화되어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기초지자체의 위탁계약 갱신 과정에서 성과관리적 요소가 작동할 개연성이 있지만, 이러한 성과관리적 요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직영시설의 성과를 평가할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직영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의 구체화도 필요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직영시설에 종사하게 될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외부 수요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체제가 필수적이다. 정규직 형태 고용이 유발할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인체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제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및 직영시설의 성과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은미·김순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양육스트레스와 보육서비스 만족도가 추가자녀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6(1), 2011, pp. 67~87.
- 강은진,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연구소, 2015.
- 게르트 순드스트룀, 「스웨덴의 노인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역할」,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겨울호 Vol 7, pp. 36~48.
- 국가보훈처, 『2019년 보훈업무시행지침 II권』, 2019.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노인장기 요양보험 통계연보』, 2018.
- 권미경·김길수·함철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4.
- 권찬호 외,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연구용역』,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8.10.
- 기획재정부,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18.
- 김송이,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비교」, 『국제사회보장동향』 2권 4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12, pp. 61~73.
- 김연명 외, 『서울시 사회서비스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중앙대 산학협력단, 2016.
- 김윤수 외, 『정부주도 사회서비스 관리주체 설립방안 마련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7.
- 김은숙 외, 『기초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발전 방안 연구』, 평택복지재단, 2016.12.
- 김은정 외,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사회연구원, 2017.
- 김찬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회적 성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 김태일·김보영·최영준, 「한국 사회서비스를 보는 새로운 시선 : 바람직한 대안적 논의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0), 2018, pp. 387~407.
- 남찬섭,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토론회, 2012.
- 노기성 외,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11.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2017.4.
- 민중통합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2012.12.
- 박노옥·원종학·김용환·임은실·우지은·권소야·윤석강, 『장기요양 급여비용 타당성 조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경영수지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박재간, 『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2010.
-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 \_\_\_\_\_, 「2017년 보육통계」, 2018.3.
- \_\_\_\_\_,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안)」, 2019.2.
- \_\_\_\_\_, 「2019년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2019.
- \_\_\_\_\_, 「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2019.2.12.
- \_\_\_\_\_, 「제 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2017.12.
- \_\_\_\_\_, 『2017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_정량조사』, 2018.
- \_\_\_\_\_, 『2018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8.
- \_\_\_\_\_, 『2019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2019.3.
- \_\_\_\_\_, 『2019년 보육사업안내』
- \_\_\_\_\_, 『201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2019
- \_\_\_\_\_, 『2019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19.
- \_\_\_\_\_, 『2019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2019.
- \_\_\_\_\_, 『2019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2019.
- \_\_\_\_\_,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시범사업 운영모델(안)』, 2019.
- \_\_\_\_\_,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제출자료, 2019.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7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통합지표)」, 2017.
-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II』, 2008.
- 서문희·신나리·유은영,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서울: 여성가족부, 2007.
- 서울시, 「사회서비스일자리 고용안정 및 서비스품질 제고방안 모색 회의」, 2014.8.5
-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 2016.6.
- 손선옥·김소영·노현희, 「기초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유형별 역할과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70(2), 2018.5.
- 신윤정, 『스웨덴의 양육지원 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 신필균, 『복지국가 스웨덴』, 서울: 후마니타스, 2011.
- 양난주, 「한국 사회서비스정책의 전환 : 소비자주의를 넘어」,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8(0), 2018, pp. 365~386.
- 양난주, 「한국의 사회서비스」, 『동향과 전망』, 2014, pp. 93~128.
- 양미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12.
- 여성가족부, 『2019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19.

- 오동일·정지민·김은미·김선아·이다린,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 정립방안』,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 유태균, 「사회서비스 10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다」, 『사회서비스 10주년 기념식 및 포럼 자료집』, 보건복지부·한국사회서비스학회, 2017.5.19
- 유태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9.
- 유태균·유길상·이문국·이인재·이재원, 「자활촉진을 위한 복지-고용-여성가족제도 연계융합 활성화 연구」, 대통령비서실, 2013.
- 윤자영, 「아동보육 돌봄노동시장의 특징과 정책과제」, 『월간 노동리뷰』, 2013년 3월호, 한국노동연구원, 2013, pp. 18~30.
- 이동석·김은정·김용득·조남경, 「돌봄서비스 재정지원방식과 공급주체의 성격 및 품질 관리 기제에 대한 국가비교: 스웨덴,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1), 2013, pp. 161~181.
- 이상구, 「복지지방정부를 위한 6·2 지방선거 시민의제 제안」, 복지국가와 6·2지방선거 시민의제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2010.
- 이용갑·서동민·최태림·김윤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인천발전연구원, 2015.12.
- 이철선 외, 『(가칭)사회서비스원 사업운용모델 마련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12.
- 정경희 외,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발전 전략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좌혜경,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사회서비스체계 모색」, 진보신당, 2009.
- 최연혁,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서울:샘앤파커스, 2012.
- 최윤경·김윤환·이혜민, 『스웨덴의 육아정책(II): 교사정책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감정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15 4분기』, 2016.
- \_\_\_\_\_,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16 4분기』, 2017.
- \_\_\_\_\_,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2017 4분기』, 201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 2018.
- \_\_\_\_\_,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스웨덴』, 20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황덕순, 『사회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민간의 재정분담 및 공급참여 방식(스웨덴)』, 2007, pp. 268~302.

Care Quality Commission, “The state of health care and adult social care in England,” 2017/18.

Chen, L. W., & Shea, D. G.(2004), “The economies of scale for nursing home care,”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61(1), pp. 38~63.

Department for Education, “Survey for Childcare and Early Years Parents in England: Main Summary,”

-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66498/Childcare\\_and\\_Early\\_Years\\_Survey\\_of\\_Parents\\_in\\_England\\_2018.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66498/Childcare_and_Early_Years_Survey_of_Parents_in_England_2018.pdf), 2018.
- Departement for Education, “Survey for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Main Summary,”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88753/Survey\\_of\\_Childcare\\_and\\_Early\\_Years\\_Providers\\_2018\\_Main\\_Summary.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88753/Survey_of_Childcare_and_Early_Years_Providers_2018_Main_Summary.pdf), 2018.
- Halm, E. A., Lee, C., & Chassin, M. R.(2002), “Is volume related to outcome in health care? A systematic review and methodologic critique of the literatur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37(6), pp. 511~520.
- Hentschker, C., & Mennicken, R.(2018), “The Volume - Outcome Relationship Revisited: Practice Indeed Makes Perfect,” *Health services research*, 53(1), pp. 15~34.
- Lagen om stöd och service till vissa funktionshindrade(1993:387). 장애인지원법. Socialförsäkringsbalk (2010:110). 사회보장법. Socialstyrelsen. (2011). Lagesrapport 2011. Hälso-och sjukvård och
- National Audit Office, “Public service markets: Putting things right when they go wrong” <https://www.nao.org.uk/report/public-service-markets-putting-things-right-when-they-go-wrong/> #, 검색일자: 2019.5.14., 2015.
- OECD, “Sweden: A Good Life in Old Age? Monitoring and Improving Quality in Long-Term Care,” OECD Publishing, 2013.
- Pieterbakx, Oweno’ Donnell, Eddy Vandoorslaer, “Spending on Health Care in the Netherlands:Not Going So Dutch,” *FISCAL STUDIES*, vol. 37, no. 3 - 4, pp. 593~625
- Ross, J. S., Normand, S. L. T., Wang, Y., Ko, D. T., Chen, J., Drye, E. E., ... & Krumholz, H. M.(2010), “Hospital volume and 30-day mortality for three common medical condition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2(12), pp. 1110~1118.
- Socialtjänstlag(2001:453). 사회서비스법. SOU 2003:56. Inte bara Samhall(삼할의 활동제고). Stockholm: Fritzes.
- Skolverket, “Facts and figures 2012,” 2013.
- NAO, “Adult social care at a glance,” 2018.
- e-나라지표 사이트([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ggwf.gg.go.kr/>)
-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gjwf.kr/index.php/site/menu?m=22>)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법령/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http://www.law.go.kr/법령/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fwc.welfare.seoul.kr/sfwc/introCenterForm.do>)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about/organization>)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use/part1.go>)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통계  
(<https://central.childcare.go.kr/cccf/community/data/DataSl.jsp?BBSGB=40&flag=Sl&BID=65925>)
-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PageControl.action>)
- 전남복지재단 홈페이지([http://jnwf.kr/page\\_QALe84](http://jnwf.kr/page_QALe84))
- 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5494>)
-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hungsa.go.kr/>)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8275/pt/main/index.do>)
- 통계청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http://kosis.kr/visual/populationKorea/index/index.do?mb=N>)
- 통계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
- Eurostat, (<https://ec.europa.eu/eurostat/web/income-and-living-conditions/overview>),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Living\\_conditions](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Living_conditions))
- OCED stat, (<http://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 스웨덴 교육부(<https://www.skolverket.se/>)
- 스웨덴 보건복지청(<https://www.socialstyrelsen.se/english>)
- 스웨덴 보건복지청 통계(<https://www.socialstyrelsen.se/statistics>),  
(<https://sweden.se/society/elderly-care-in-sweden/>),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
- NAO, (<https://www.nao.org.uk/report/children-in-care/>),  
(<https://www.nao.org.uk/naoblog/the-social-care-challenge/>),  
(<https://www.nao.org.uk/wp-content/uploads/2018/07/Adult-social-care-at-a-glance.pdf>, 2018.)
- 돌봄 질 위원회(CQC), <https://www.cqc.org.uk/>
- 시사인 2010.9.1., ‘일자리 늘리고 주민 삶도 개선하는 사회서비스공단,’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8200>
- 공감신문 2018.10.16. ‘윤소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인프라 확충해야,’  
<https://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34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03.06., ‘사회서비스원, 서울·대구·경기·경남에서 최초 설립·운영’
- The Guardian, Donna Ferguson, “The costs of childcare: how Britain compares with Sweden”  
<https://www.theguardian.com/money/2014/may/31/costs-childcare-britain-sweden-compare>, (2019.3.20.  
검색)2014.5.31.





## 부 록

부록 1. 발송 공문

부록 2. 분과위원 총평

부록 3. 종합평가 설문지





## 부록 1

### 발송 공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불일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조사일정상 2019.03.2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요청자료 목록 1부. 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연구원 03/19 박유미 소장 03/19 원종학

협조자 연임연구위원 03/19 박노숙

시행 재정성과평가센터-13 ( 2019.03.22 ) 접수 ( )

주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http://www.kipf.re.kr>

전화 044)414-2398 /전송 044)414-2064 / [ympark@kipf.re.kr](mailto:ympark@kipf.re.kr) / 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방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동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귀 기관을 방문하여 본 사업추진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문의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및 관련법령 1부  
 2. 방문 계획서 1부  
 3. 사회서비스원 예타관련 질의 내용 1부. 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       |       |       |
|-----|-------|-------|-------|
| 연구원 | 04/03 | 소장    | 04/03 |
|     | 박유미   |       | 원종학   |
| 협조자 | 실장    | 04/03 |       |
|     |       | 박노옥   |       |

시행 재정성과평가센터-17 ( 2019.04.03 ) 접수 (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8 / <http://www.kipf.re.kr>

전화 044)414-2398 /전송 044)414-2064 / [ympark@kipf.re.kr](mailto:ympark@kipf.re.kr) / 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경유)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제도연구센터)

제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자문회의 참석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동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에 대한 자문회의에 참석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문회의 개최(안) 1부. 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           |           |           |
|-------|-----------|-----------|-----------|
| 연구책임자 | 04/08 박유미 | 소장        | 04/08 원종학 |
| 협조자   | 실장        | 04/03 박노옥 |           |

시행 재정성과평가센터-18 ( 2019.04.03 ) 접수 (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http://www.kipf.re.kr>

전화 044)414-2398 /전송 044)414-2064 / [ymperk@kipf.re.kr](mailto:ymperk@kipf.re.kr) / 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신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경유)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제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방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동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귀 기관을 방문하여 본 사업추진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문의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문 계획서 1부. 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연구원 04/11 박유미 소장 04/12 원종학

협조자 실장 04/11 박노옥

시행 재정성과평가센터-20 ( 2019.04.12 ) 접수 ( )

주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http://www.kipf.re.kr>

전화 044)414-2398 / 전승 044)414-2064 / [ympark@kipf.re.kr](mailto:ympark@kipf.re.kr) / 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신자 받는곳참조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방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동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귀 기관을 방문하여 본 사업추진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문의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문 계획서 1부. 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받는곳 대구광역시청(복지정책관), 대구사회서비스원 대문앞

★연주명 04/12 박유미 소장 04/15 원종학

협조자 실장 04/15 박노옥

시행 재정성과평가센터-21 ( 2019.04.15 ) 접수 ( )

주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http://www.kipf.re.kr>

전화 044)414-2398 /전송 044)414-2064 / [ympark@kipf.re.kr](mailto:ympark@kipf.re.kr) / 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방문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동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귀 기관을 방문하여 본 사업추진의 정책적 필요성 등을 문의코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방문 계획서 1부. 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연구총괄 06/07 박유미 소장 05/07 원종학

협조자 실장 05/07 박노욱

시행 재정성과평가센터-24 ( 2019.05.08 ) 접수 ( )

주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http://www.kipf.re.kr>

전화 044)414-2398 / 전송 044)414-2064 / [ympark@kipf.re.kr](mailto:ympark@kipf.re.kr) / 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불일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조사일정상 2019.5.1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요청자료 목록 1부. 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연주원 05/08 박유미 소장 05/08 원종학

협조자 실장 05/08 박노옥

시행 재정성과평가센터-25 ( 2019.05.08 ) 접수 ( )

주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http://www.kipf.re.kr>

전화 044)414-2398 /전송 044)414-2064 / [ympark@kipf.re.kr](mailto:ympark@kipf.re.kr) / 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불일과 같이 중구청의 어린이집 직영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조사일 정상 2019.5.20.(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및 관련 법령  
2. 중구청 질의 내용 1부. 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연구원 06/14 박유미 소장 05/15 원종학

협조자 실장 05/15 박노옥

시행 재정성과평가센터-27 ( 2019.05.15 ) 접수 (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http://www.kipf.re.kr>

전화 044)414-2398 /전송 044)414-2064 / [ympark@kipf.re.kr](mailto:ympark@kipf.re.kr) / 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동 사업과 관련하여 불일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오니 조사일정상 2019.6.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요청자료 목록 1부. 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연구원 06/03 박유미 소장 06/03 원종학

협조자 실장 06/03 박노옥

시행 재정성과평가센터-30 ( 2019.06.03 ) 접수 ( )

주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http://www.kipf.re.kr>

전화 044)414-2398 /전송 044)414-2064 / [ympark@kipf.re.kr](mailto:ympark@kipf.re.kr) / 공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사회서비스자원과장)

(경유)

제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비타당성조사 의견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조세·공공지출·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3. 우리 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2019년 6월 20일에 실시한 1차 점검회의 관련하여 귀 기관이 제출할 의견이나 자료가 있는 경우 2019.6.26.(수)까지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연구원 06/20 실장 06/20 소장 06/20  
박유미 박노욱 원종학

협조자

시행 재정성과평가센터-34 ( 2019.06.20 ) 접수 (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8 /http://www.kipf.re.kr

전화 044)414-2398 /전송 044)414-2064 / ympark@kipf.re.kr / 공개

## 부록 2

### 분과위원 총평

본 부록의 첨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평가를 위하여 구성된 '분과위원회'의 각 분과위원들이 작성한 종합평가서를 표로 정리한 것임.

<참고 26> 사회서비스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분과위원별 총평

| 구분    | 내 용                                                                                                                                                                                                                                                                   |
|-------|-----------------------------------------------------------------------------------------------------------------------------------------------------------------------------------------------------------------------------------------------------------------------|
| 평가자 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은 상당히 사회적 흐름에 있어서 요구되는 사업임</li> <li>공공성 강화와 품질향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향해 나갔으면 좋겠음</li> </ul>                                                                                                                                 |
| 평가자 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규모의 경제의 효과를 가지기위해 좀 더 규모를 키워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li>지역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함</li> </ul>                                                                                                                                         |
| 평가자 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서비스 인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20명(1개소)을 최소 인원으로 조정함)</li> <li>성과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li> </ul>                                                                                                                             |
| 평가자 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서비스 수요증가와 욕구 다변화와 관련해서 서비스 종사자의 경력적 고용구조는 향후 종사자 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적정성 문제 또는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력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을 주문함</li> </ul>                                                                               |
| 평가자 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필요성과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 내용의 구체화</li> <li>②직영시설의 경성예산제약조건 준수를 위한 장치 마련</li> <li>③사회서비스원 운영관련 재정소요 변동시의 재원 분담(중앙-지방)계획의 명시화(명시적 합의)가 필요함.</li> </ul> </li> </ul> |
| 평가자 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사업은 정부부처의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li> <li>1. 규모의 경제성 : 서비스원의 설리로 운영체계로 편입되는 시설이 민간부문 대비 2~3% 정도로 미약하다는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함</li> <li>2. 전달체계로서의 기능 검토 : 현재의 직접 사업기능에서 지자체 내의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의로의 기능전환 검토</li> </ul>  |
| 평가자 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대한 대책 마련과 월급·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력운용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li> </ul>                                                                                                                             |

| 구분    | 내 용                                                                                                                                                                                                                                                                                                                                                                                                                                                                                                                                                                                                                                                                                                                                                                                                                                                                                                                                                                                                                                                                                                                                                                                |
|-------|------------------------------------------------------------------------------------------------------------------------------------------------------------------------------------------------------------------------------------------------------------------------------------------------------------------------------------------------------------------------------------------------------------------------------------------------------------------------------------------------------------------------------------------------------------------------------------------------------------------------------------------------------------------------------------------------------------------------------------------------------------------------------------------------------------------------------------------------------------------------------------------------------------------------------------------------------------------------------------------------------------------------------------------------------------------------------------------------------------------------------------------------------------------------------------|
| 평가자 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별 인구, 인구밀도 등 여건이 상이하므로 기관별 인력제한 및 운영시 사업비 증가 등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li> </ul>                                                                                                                                                                                                                                                                                                                                                                                                                                                                                                                                                                                                                                                                                                                                                                                                                                                                                                                                                                                                                                          |
| 평가자 I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적 지속 가능성 검토 필요<br/>실제 직접고용(무기계약직)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임(최저임금 인상, 경제성장률, 민간서비스기관 형평성, 경력개발)</li> <li>2. 추진방법 및 추진전달체계의 적정성<br/>지속적으로 설치 확대하여 2022년까지 17개소 설치계획인데 20명의 인원으로 면적, 인구 등의 차이가 있는 광역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li> <li>3. 기대효과의 적정성<br/>고용센터 운영 사례 및 직업상담사 경력개발 관리 사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발전방안 수립 및 컨설팅, 평가, 피드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 필요함<br/>시범사업을 토대로 Best practice를 유형별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도, 광역시 등)</li> </ol>                                                                                                                                                                                                                                                                                                                                                                                                                                                                                                                                                                                                                                                               |
| 평가자 J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거시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사회 여건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사회적 문제 파악: 원안동의</li> <li>2) 유사 중복 가능성: 원안 동의</li> <li>3) 중앙정부 개입 타당성: 중앙과 지방, 중앙지원단과 사회서비스원 간의 업무영역 명확화 필요</li> <li>4)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에 비춘 사업추진 적절성: 원안동의</li> </ol> </li> <li>2. 경제사회 영향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사회문제 해결: 원안 동의</li> <li>2) 사회적 의견 수렴: 행정, 경제 전문가 의견수렴 미흡, 국회 설득 미흡</li> </ol> </li> <li>3. 재정의 지속가능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의 지속가능성: 지나치게 단순한 가정에 기반하여 재정소요 추계. 기능확대(특히 신규공공시설 확대)에 따른 운용인력과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대비 미흡</li> <li>2)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 :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비율 등에 대한 합의 필요. 늘어나는 업무량을 업무속련도와 전산시스템 고도화 등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인 가정임</li> </ol> </li> </ol> </li> <li>II. 사업설계의 적정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시급성<br/>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원안 동의<br/>(단,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10% 증가는 너무 단순한 지표)</li> <li>2. 수혜대상의 적정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공인력의 직접고용, 월급제화의 범위가 모호. 고정월급제가 서비스질 제고의 전제인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연구진의 경직성 위험, 유인체계 필요 등의 의견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방안 제시 필요</li> </ol> </li> </ol> </li> </ol> |

| 구분 | 내 용                                                                                                                                                                                                                                                                                                                                                                                                                                                                                                                                                                                                                                                                             |
|----|---------------------------------------------------------------------------------------------------------------------------------------------------------------------------------------------------------------------------------------------------------------------------------------------------------------------------------------------------------------------------------------------------------------------------------------------------------------------------------------------------------------------------------------------------------------------------------------------------------------------------------------------------------------------------------|
|    | <p>3. 추진방법의 적정성</p> <p>1) 사업추진방법의 적절성: 정부직영 방식의 대안으로 서비스원이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 광역단위 사회서비스원이라면 서울, 경기 등 인구 집중지역은 특히 비대화와 권력기관화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p> <p>2) 중앙, 지방 역할: 중앙의 사업평가를 통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 어떠한 강제력을 가지고 환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모호</p> <p>4. 전달체계의 적정성</p> <p>신규시설, 평가가 낮은 시설의 직영화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의 이질성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는 구체적 교육훈련, 인력운용계획 등의 구체화 필요</p> <p>III. 비용-효과성</p> <p>1. 기대효과(성과)의 적절성</p> <p>원안 동의. 하지만 아직 연구와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제시되어있지 않음.</p> <p>2. 비용추정의 적정성</p> <p>비용 추정이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여 설정되었다는 연구진 의견에 동의</p> <p>3. 비용-효과성</p> <p>효과성은 인정되나 비용은 지나치게 낙관적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보임. 정규직 고용이 직접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연결되는지 의문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인력 운용방안과 노무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p> |

### 부록 3

## 종합평가 설문지

평가지 번호 /10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성 명: \_\_\_\_\_ (서 명)  
소 속: \_\_\_\_\_  
직 위: \_\_\_\_\_  
연락처: \_\_\_\_\_ E-mail: \_\_\_\_\_

본 평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하여 수행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평가지의 응답에는 시간제한 등 특별한 제약조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결과를 꼼꼼히 읽어보신 뒤 제시된 질문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시고 귀하의 의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시된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종합결론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각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고견이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 문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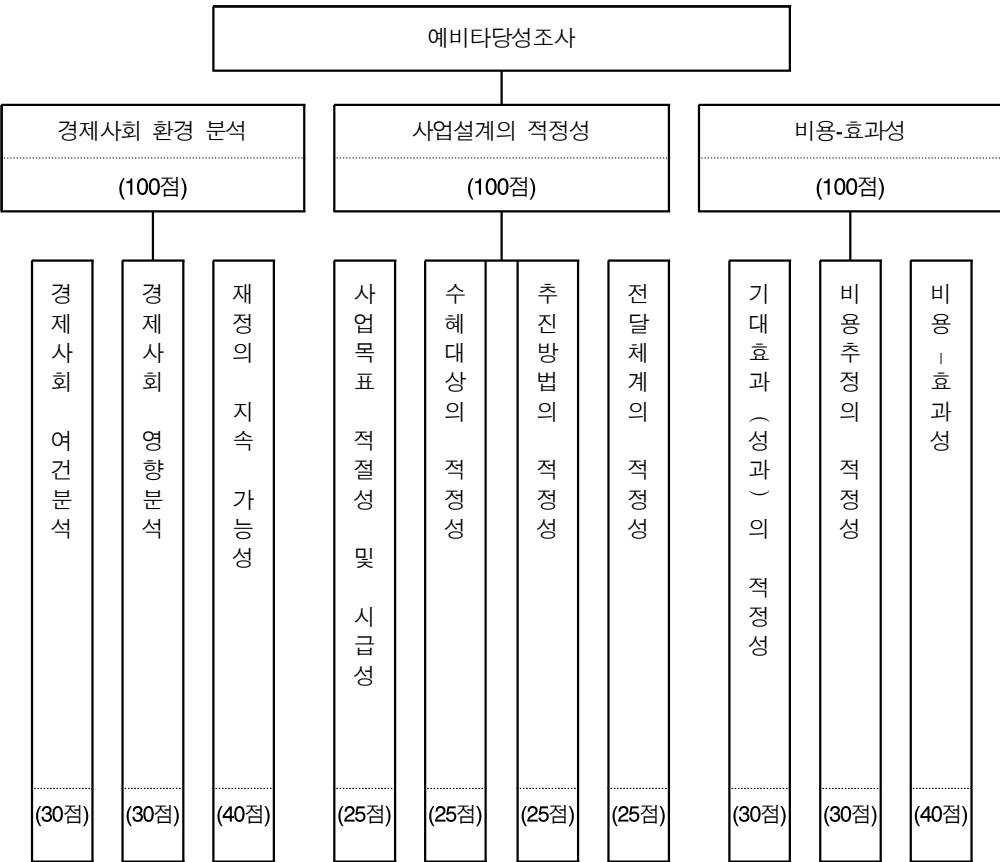
|                       |     |
|-----------------------|-----|
| 1.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  | 458 |
| 1) 평가구조 .....         | 458 |
| 2) 평가내용 .....         | 459 |
| 2. 평가 방법 .....        | 460 |
| 1) 평가 점수별 등급 .....    | 460 |
| 2) 평가 예시 .....        | 460 |
| 3) 평가 결과 산정 방식 .....  | 461 |
| 4) 평가 시 유의사항 .....    | 461 |
| 3. 개인별 평가지 .....      | 462 |
| 1) 종합의견 .....         | 462 |
| 2) 점수표 .....          | 462 |
| 3) 검토의견 .....         | 463 |
| 4. 연구를 위한 추가 설문 ..... | 467 |



1. 평가구조 및 평가내용

1) 평가구조

<표 1>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종합평가 구조



## 2) 평가내용: 세부 평가 기준은 참고용이며, 영역과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

&lt;표 2&gt; 복지 및 소득이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 항목 및 세부 내용

| 영역                      |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기준                                   |
|-------------------------|--------------------------------------------------|
| 경제사회<br>환경 분석<br>(100점) | <b>① 경제사회 여건분석(30점)</b>                          |
|                         | ■ 해결해야 할 경제·사회 문제가 적절하게 파악되었는가?                  |
|                         | ■ 해당 경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유사한 내용의 민간·지자체·재정사업이 존재하는가?  |
|                         | ■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가?               |
|                         | ■ 우리나라 경제규모, 복지제도 발전단계 등에 비추어 사업추진이 적절한가?        |
|                         | <b>② 경제사회 영향분석(30점)</b>                          |
|                         | ■ 해당 사업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가?       |
|                         | ■ 동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은 충분히 되었는가?                |
|                         | * 기존집단의 반발, 국민 다수의 반대여론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갈등 가능성 검토   |
|                         | <b>③ 재정의 지속 가능성(40점)</b>                         |
| 사업설계의<br>적정성<br>(100점)  | ■ 향후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                         | * 유사한 사업과의 비교·검토                                 |
|                         | ■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 조달이 가능한가?              |
|                         | ■ 사업의 중장기적 재정소요에 변동 위험성은 검토되었는가?                 |
|                         | <b>① 사업목표 적절성 및 시급성(25점)</b>                     |
|                         | ■ 사업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되었는가?                       |
|                         | ■ 해당 사업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
|                         | ■ 정부 정책방향,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과 우선순위가 높은가?        |
|                         | <b>② 수혜대상의 적정성(25점)</b>                          |
|                         | ■ 수혜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사업목표에 부합하는가?                    |
|                         | ■ 실질적인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가?                      |
|                         | ■ 실제 사업대상 외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가?           |
|                         | <b>③ 추진방법의 적정성(25점)</b>                          |
|                         | ■ 추진방법이 사업목표·수혜대상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되었는가?              |
| 비용<br>-효과성<br>(100점)    | ■ 사업추진주체(공공/민간, 중앙/지방)의 역할구분이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
|                         | ■ 동일한 분야·부문의 다른 사업과 적절한 정책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
|                         | <b>④ 전달체계 적절성(25점)</b>                           |
|                         | ■ 전달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                         | ■ 수요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달체계가 구성되어 있는가?                  |
|                         |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구의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은 적절한가?    |
|                         | <b>①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30점)</b>                      |
|                         | ■ 사업목표 등과 비교하여 동 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성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                         |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시 효과(성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가?     |
|                         | ■ 향후 성과관리 계획 및 성과지표 등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                         | <b>② 비용추정의 적정성(30점)</b>                          |
|                         | ■ 비용추계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                         | ■ 사업추진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
|                         | ■ 수요 변동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게 되는 비용의 범위는 검토되었는가?        |
|                         | <b>③ 비용-효과성(40점)</b>                             |
|                         | ■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가?                         |
|                         | ■ 성과 대비 비용은 적정 수준인가?                             |
|                         | ■ 제시된 사업계획 대비 비용효과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가?        |

## 2. 평가 방법

### 1) 평가 점수별 등급

평가영역(100점) 내 각가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다음 <표 3>의 “평가 점수별 평가 등급”을 참고하여 등급 및 점수 기재

<표 3> 평가 점수별 평가 등급

| 점수 기준  | 적정     | 보통     | 미흡     |
|--------|--------|--------|--------|
| 40점 기준 | 40~35점 | 34~28점 | 27점 이하 |
| 30점 기준 | 30~26점 | 25~21점 | 20점 이하 |
| 25점 기준 | 25~22점 | 21~18점 | 17점 이하 |

### 2) 평가 예시

- 종합의견: 부처의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사업계획 원안대로 추진, 연구진이 제시하는 대안을 추진, 사업 전면 재기획하여 조사 재요구 중 택1
- 평가표: 각 평가항목별 평가등급 및 평가점수를 기재하고 사업 추진여부에 판단으로 시행·대안추진·미시행 중 택1<sup>1)</sup>
- 검토의견: 평가항목별로 자유롭게 서술하되 조사과정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이 아니라 부처의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 평가자는 연구진이 제시한 대안 이외의 대안 제시는 지양

<표 4> 종합의견: 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종합판단 체크 예시

| 원안 추진 | 대안 추진 | 사업 재기획 |                  |
|-------|-------|--------|------------------|
| ✓     |       |        | ■ 사업추진에 대해 종합 판단 |

1) 평가점수 합계와 평가자의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비교하여 비일관성 여부를확인

ex) 평가점수 합계는 3개영역 모두 85점 이상으로 ‘부처의 사업계획 원안 추진’이나 사업 추진여부 판단은 ‘대안추진’ 또는 ‘미시행’으로 선택하는 경우→비일관성으로 재평가 실시

&lt;표 5&gt; 평가표: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의견 기재 예시

| 평가영역                   | 평가 항목        | 평가등급    |         |         | 평가 점수    |                                          |
|------------------------|--------------|---------|---------|---------|----------|------------------------------------------|
| 경제사회<br>환경분석<br>(100점) | 경제사회<br>여건분석 | 적정      | ✓<br>보통 | 미흡      | 25 / 30점 | ■ “보통” 등급에 체크했으므로, 21~25점<br>범위에서 점수를 부여 |
|                        | 경제사회<br>영향분석 | 적정      | 보통      | ✓<br>미흡 | 19 / 30점 | ■ “미흡” 등급에 체크했으므로, 20점<br>이하로 점수를 부여     |
|                        | 재정의<br>지속가능성 | ✓<br>적정 | 보통      | 미흡      | 37 / 40점 | ■ “적정” 등급에 체크했으므로, 35~40점<br>범위에서 점수를 부여 |
|                        | 종합점수 81 점    |         |         |         |          | ■ 각 평가항목 점수 합산                           |

&lt;표 6&gt; 검토의견: 검토의견 기재 예시

|                                                                                                                       |
|-----------------------------------------------------------------------------------------------------------------------|
| <b>1. 수혜대상의 적절성</b><br><i>예시) 부처가 제시한 수혜 대상기준은 본 사업취지에 비해 과도하게 넓은 대상을 포함할 우려가 있으며,<br/>연구진이 제시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i> |
|-----------------------------------------------------------------------------------------------------------------------|

## 3) 평가 결과 산정 방식

|                                   |                    |
|-----------------------------------|--------------------|
| ※ 영역별 100점을 배분하여 3개의 영역에 대한 평가 수행 |                    |
| ■ A. 부처의 사업계획 원안대로 사업 시행          | - 3개 영역 모두 85점 이상  |
| ■ B. 대안 추진을 조건으로 사업 시행            | - A또는 C 이외의 경우     |
| ■ C. 사업 전면 재기획 후 조사 재요구           | - 2개 영역 이상이 70점 미만 |

&lt;표 7&gt;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평가 결과 산정 방식

| 경제사회 환경분석  |                      | Low(70점 미만)        |                         |                     | Medium(70점~84점)    |                         |                     | High(85점 이상)       |                         |                     |
|------------|----------------------|--------------------|-------------------------|---------------------|--------------------|-------------------------|---------------------|--------------------|-------------------------|---------------------|
| 사업설계 적정성   |                      | Low<br>(70점<br>미만) | Medium<br>(70점~<br>84점) | High<br>(85점<br>이상) | Low<br>(70점<br>미만) | Medium<br>(70점~<br>84점) | High<br>(85점<br>이상) | Low<br>(70점<br>미만) | Medium<br>(70점~<br>84점) | High<br>(85점<br>이상) |
| 비용-<br>효과성 | Low<br>(70점 미만)      | C                  | C                       | C                   | C                  | B                       | B                   | C                  | B                       | B                   |
|            | Medium<br>(70점 ~84점) | C                  | B                       | B                   | B                  | B                       | B                   | B                  | B                       | B                   |
|            | High<br>(85점 이상)     | C                  | B                       | B                   | B                  | B                       | B                   | B                  | B                       | A                   |

## 4) 평가 시 유의사항

첫째, 본 평가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한 종합판단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설문지와 함께 제시된 조사결과 요약록을 꼭 읽어보시고 평가에 응해주십시오  
셋째, 검토의견 작성 시 평가의 근거 및 정책제언 사항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을 부탁드립니다

## 3. 개인별 평가지

|      |      |      |
|------|------|------|
| 성 명: | 소 속: | 직 위: |
|------|------|------|

## 1) 종합의견

| 원안 추진 | 대안 추진 | 사업 재기획 |
|-------|-------|--------|
|       |       |        |

## 2) 점수표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등급 |    |    | 평가점수 <sup>2)</sup> |
|------------------------|---------------|------|----|----|--------------------|
| 경제사회<br>환경분석<br>(100점) | 경제사회 여건분석     | 적정   | 보통 | 미흡 | _____ / 30점        |
|                        | 경제사회 영향분석     | 적정   | 보통 | 미흡 | _____ / 30점        |
|                        | 재정의 지속가능성     | 적정   | 보통 | 미흡 | _____ / 40점        |
|                        | 종합점수 _____ 점  |      |    |    |                    |
| 사업설계의<br>적절성<br>(100점) | 사업목표 적절성·시급성  | 적정   | 보통 | 미흡 | _____ / 25점        |
|                        | 수혜대상의 적절성     | 적정   | 보통 | 미흡 | _____ / 25점        |
|                        | 추진방법의 적절성     | 적정   | 보통 | 미흡 | _____ / 25점        |
|                        | 전달체계의 적절성     | 적정   | 보통 | 미흡 | _____ / 25점        |
|                        | 종합점수 _____ 점  |      |    |    |                    |
| 비용·<br>효과성<br>(100점)   | 기대효과(성과)의 적절성 | 적정   | 보통 | 미흡 | _____ / 30점        |
|                        | 비용추정의 적절성     | 적정   | 보통 | 미흡 | _____ / 30점        |
|                        | 비용·효과성        | 적정   | 보통 | 미흡 | _____ / 40점        |
|                        | 종합점수 _____ 점  |      |    |    |                    |

2019년 \_\_\_\_ 일 \_\_\_\_ 일 평가자: \_\_\_\_\_ (서명)

- 2) 40점 기준: 적정(40~35점), 보통(34~28점), 미흡(27점 이하)  
 30점 기준: 적정(30~26점), 보통(25~21점), 미흡(20점 이하)  
 25점 기준: 적정(25~22점), 보통(21~18점), 미흡(17점 이하)

3) 검토의견: 분과위 토론을 위한 참고용이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      |
|------|------|------|
| 성 명: | 소 속: | 직 위: |
|------|------|------|

## I. 경제사회 환경분석

### 1. 경제사회 여건분석

|             |
|-------------|
| <div></div> |
|-------------|

### 2. 경제사회 영향분석

|             |
|-------------|
| <div></div> |
|-------------|

### 3. 재정의 지속가능성

|             |
|-------------|
| <div></div> |
|-------------|

## II. 사업설계의 적정성

### 1. 사업목표의 적절성과 시급성

### 2. 수혜대상의 적정성

3. 추진방법의 적정성

4. 전달체계의 적절성



### III. 비용·효과성

#### 1. 기대효과(성과)의 적절성

#### 2. 비용추정의 적정성

#### 3. 비용·효과성

2019년 \_\_\_\_ 일 \_\_\_\_ 일      평가자: \_\_\_\_\_ (서명)

#### 4. 연구를 위한 추가 설문: 연구를 위한 설문이며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다음 설문은 본 종합평가의 구조도 중 제1계층인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및 2계층 내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자께서는 본 사업의 평가에 있어, 어느 요인이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추가 설문을 평가 결과에는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 래 <표>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Q. 경제사회 환경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 \_\_\_\_ : \_\_\_\_ : \_\_\_\_**

| 경제사회 환경분석 | 사업설계의 적정성 | 비용·효과성 |
|-----------|-----------|--------|
| 15~65%    | 15~65%    | 15~65% |

<표 8> 복지 및 소득이전사업 종합평가 1계층 구조도



II-1.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사회 환경분석 내 평가항목인 ‘경제사회 여건분석, 경제사회 영향분석,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 래 <표>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Q. 경제사회 여건분석: 경제사회 영향분석: 재정의 지속가능성 = \_\_\_\_ : \_\_\_\_ : \_\_\_\_

| 경제사회 환경분석 | 경제사회 영향분석 | 재정의 지속 가능성 |
|-----------|-----------|------------|
| 15~65%    | 15~65%    | 15~65%     |

II-2.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사업설계의 적정성 내 평가항목인 ‘사업목표 적절성 및 시급성, 수혜대상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전달체계의 적정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 래 <표>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Q. 사업목표 적절성 및 시급성: 수혜대상의 적정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전달체계의 적정성 = \_\_\_\_ : \_\_\_\_ : \_\_\_\_

| 사업목표 적절성 및 시급성 | 수혜대상의 적정성 | 추진방법의 적정성 | 전달체계의 적정성 |
|----------------|-----------|-----------|-----------|
| 10~55%         | 10~55%    | 10~55%    | 10~55%    |

II-3.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비용-효과성 내 평가항목인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비용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성’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45 : 35 : 20

\*\* 아 래 <표>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Q.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비용추정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 \_\_\_\_ : \_\_\_\_ : \_\_\_\_

| 기대효과(성과)의 적정성 | 비용추정의 적정성 | 비용·효과성 |
|---------------|-----------|--------|
| 15~65%        | 15~65%    | 15~65% |

다음 설문은 본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 여부를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 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신중히 판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III.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본사업의 시행 여부를 총괄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55 : 45

**Q.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 : \_\_\_\_\_**

IV-1. ‘경제사회 환경분석’ 관점에서 본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55 : 45

**Q.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 : \_\_\_\_\_**

IV-2. ‘사업설계의 적정성’ 관점에서 본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55 : 45

**Q.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 : \_\_\_\_\_**

IV-3. ‘비용-효과성’ 관점에서 본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55 : 45

**Q.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_\_\_\_\_ : \_\_\_\_\_**

지금까지 평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